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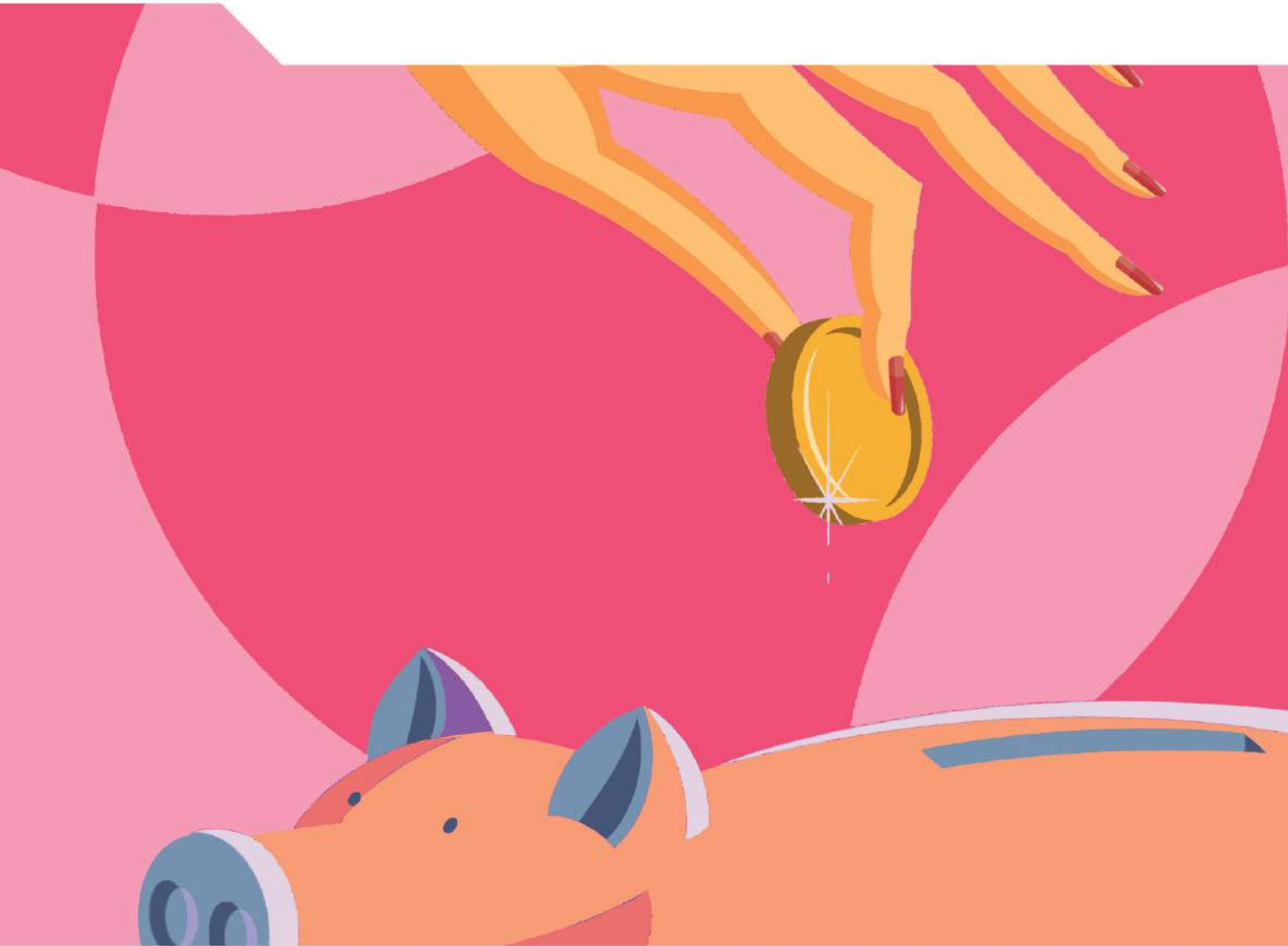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번역의 질과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사항이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합니다.



OECD Korea Policy Centre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OECD 회원국 정부 또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지 © IMAGEZOO MEDIA, INC.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어와 불어로 발간되었습니다.

Pensions at a Glance 2013 : OECD and G20 Indicators

Panorama des pensions 2013 : Les indicateurs de l'OCDE et du G20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3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참조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 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OECD가 2005년 이후 다섯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로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주택, 금융, 자산, 공공서비스 등이 노후 적정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최종희 부본부장, 이인노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박사와 유호선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연금제도관련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주정미**

서 문

금번 발간된 한 눈에 보는 연금 제 5판은 OECD 국가의 연금 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G20 회원국인 다른 주요 경제국의 지표도 함께 제공한다. 제 1장과 2장에서는 최근의 연금개혁과 그 영향, 그리고 노후소득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주택과 금융자산,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고용 노동 사회정책국(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사회정책과(Social Policy Division) 내 연금팀이 작성했다. 연금팀은 Anna Cristina D’Addio, Andrew Reilly, Kristoffer Lundberg, Maria Chiara Cavalleri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 공무원, 특히 OECD 사회 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대표들과 OECD 연금 전문가 그룹 멤버들이 본 보고서에 적극적인 자문과 귀중한 조언을 제공해주었다. OECD 국가의 경우 OECD 연금 모형의 결과는 각국 당국이 확인하고 검증했다.

제 1장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Andrew Reilly, Maria Chiara Cavalleri, Anna Cristina D’Addio가 작성했다. 제 2장 “노인의 적정생활수준을 위해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가 수행하는 역할”은 Anna Cristina D’Addio와 Monika Queisser가 작성했다. 1, 2장 모두 Ken Kincaid가 편집했으며 출간을 위한 원고는 Marlène Mohier가 준비했다.

사적연금에 관련한 지표들은 주로 OECD 금융 기업국(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내 개인연금팀의 Pablo Antolín, Stéphanie Payet, Romain Despalins가 제공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국의 담당 공무원들과 OECD 동료들, 특히 Monika Queisser와 Stefano Scarpetta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본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와 OECD가 함께 연구자금을 지원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되었다. 연금 수급액 지표를 통해 사용된 OECD 연금 모형은 액시아 경제연구소(Axia Economics)에서 개발한 국가간 연금 수급액 비용분석 기법(Analysis of Pension Entitlements across Countries: APEX) 모형을 차용하고 있다.

목 차

논평- 위기의 연금제도	11
본문요약	15
제 1장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19
도입	20
최근의 연금 개혁	20
연금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8
결론 및 정책적 함의	55
주	60
참고문헌	60
제 2장 노후의 적정 생활수준을 위한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의 역할	61
도입	62
적정성	62
적정 생활수준의 측정	64
은퇴 후 생활수준: 노후소득 및 빈곤	71
요약 및 결론	105
주	108
참고문헌	111
부록 2.A1. 연금산정	117
부록 2.A2. 추가 통계자료	120
제 3장 연금제도의 설계	121
공적연금제도의 구성	122
기초연금, 선별적 연금, 최저연금	124
소득비례연금	126
정상/조기/연기 은퇴	128
노동시장의 실질은퇴연령	130
제 4장 연금 수급액	133
방법론과 가설	134
총 연금대체율	136
총 연금대체율: 공적 및 사적연금제도	138
연금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제혜택	140
순 연금대체율	142
순 연금대체율: 공적 및 사적연금제도	144
투자 리스크와 사적연금	146
총 연금자산	148
순 연금자산	150
연금자산의 변화	152
연금 급여 산식의 누진성	154
연금과 소득간의 연관성	156

가중 평균: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158
노후소득보장제도	160
제 5장 노후소득과 빈곤	163
고령자의 소득	164
노후소득 빈곤	166
제 6장 연금제도의 재정	169
기여금	170
연금을 위한 공적 지출	172
연금 급여 지출: 공적 및 사적연금	174
공적연금 지출의 장기적 전망	176
제 7장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측면	179
출산율	180
기대수명	182
노인부양비	184
소득: 평균과 분포	186
제 8장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189
사적연금의 적용범위	190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192
연금 격차	194
연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의 자산	196
연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의 자산 배분	198
연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의 투자 실적	200
연기금 운영 비용과 수수료	202
확정급여형(DB) 기금 적립율	204
제 9장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국가별 현황	207
국가별 현황 가이드	208
아르헨티나	210
호주	213
오스트리아	217
벨기에	220
브라질	225
캐나다	228
칠레	231
중국	234
체코	237
덴마크	241
에스토니아	246
핀란드	249
프랑스	253
독일	258
그리스	262
헝가리	265

아이슬란드 270

인도 273

인도네시아 277

아일랜드 280

이스라엘 283

이탈리아 286

일본 291

한국 295

룩셈부르크 298

멕시코 301

네덜란드 304

뉴질랜드 308

노르웨이 311

폴란드 315

포르투갈 320

러시아 연방 327

사우디아라비아 331

슬로바키아 333

슬로베니아 337

남아프리카공화국 340

스페인 342

스웨덴 345

스위스 351

터키 356

영국 359

미국 364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cdlibrary>



<http://www.oecd.org/oeccdirect/>

이 보고서에는 인쇄된 페이지에서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Statlink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표 또는 그래프 오른쪽 하단에 있는 Statlink를 찾아보세요.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관련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PDF 버전을 보는 경우 링크를 클릭만 하면 더 많은 OECD 간행물에 나타난 Statlink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 평

위기의 연금제도

OECD 국가의 연금상황은 지난 수년간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왔다. 논쟁과, 때로는 정치적인 교착상태가 수십 년 간 벌어진 후에 많은 국가에서 상당 수준의 연금 개혁을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은퇴 연령의 연장, 수급액 산정 방식의 변화, 연금 제도에 저축을 도입하기 위한 기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연금 제도 자체는 국가 별로 크게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새 물결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와 국민들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다. 이 두 목표의 충돌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정부예산적자와 부채에 영향을 미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는 그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 대규모 부과방식 제도의 경우 특히 유럽 대륙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주된 우려사안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달성한 노인 빈곤 감소추세를 유지하면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연금 지출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미권 국가 등 공적연금 제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 들은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율을 확대하고 기여율을 높임으로써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위기 이전에도 많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연금 개혁을 가속화한 주된 요인은 경제 위기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필요였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자산이 타격을 입었지만 연금 수급자들은 대체로 급여액 삭감이라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 전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OECD 국가평균은 약 17%(아이슬란드의 3%부터 이탈리아의 30%까지 분포)- 이제 연금은 재정건전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적 연금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개혁은 연금제도의 여러 주요 요인을 다루었다. 가장 가시적이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조치 중 하나는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이었다. 연금수급연령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금수급연령 67세가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일부 국가 에서는 심지어 68세, 69세로 연장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1년에 2개월씩 연금수급연령을 무한정 연장하기로 결정한 체코만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는 없다.

또한 자동 조정 장치나 지속가능성 인자(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재정적 기준의 변화에 맞춰 연금 제도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인 예산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급여수준, 특히 높은 급여수준을 동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 중이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저소득 퇴직자들을 위한 예외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 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상태로 남아있는 공무원이나 여타 인구 집단의 특별 연금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 및 급여 조건 차이 등 좀더 광범위한 사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특히 복잡하다.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적정성(adequacy) 간의 균형을 잡는 문제가 특히 부각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세대 내 뿐 아니라 세대 간 공정성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연금제도가 계속해서 개혁되면서 노인빈곤 예방의 초점은 더욱 예리해질 것이고 연금 외의 소득 출처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 및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주택 소유여부 및 금융자산이 노후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택소유는 현금 수요는 줄여주면서 노년기에 소득창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금수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설명은 소득의 적정성과 은퇴 후 불평등에 관한 정책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은퇴 후 생활 수준에 대해 좀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다른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실업상태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해 연금이 가구 전체를 부양하는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그보다는 모든 인구집단의 요구를 해결하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답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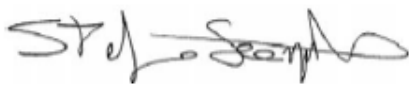
또한 사적연금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퇴직 저축은 세계 금융 위기의 1단계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이제 연기금의 자산과 지불능력은 대체로 회복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금융 부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큰 부담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적립방식의 사적연금 층에 대한 열기가 식어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강제 사적연금제도를 폐지했거나 대폭 축소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공적-사적, 부분 적립 제도의 도입에 관련한 재정비용을 과소평가한 결과였지만 또 다른 이유는 높은 관리 수수료와 실망스러운 수익률로 인해 사적 연기금의 실적에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인 사적 퇴직 저축을 강력히 장려하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독일에서조차 사적연금에 대한 공적 지원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때로는 공적 자금을 차라리 공적 부과방식 제도를 강화하는데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국가들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필요에 좀더 치중한, 저비용의 관리가 잘된 연금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좋은 예가 최근 출범한 영국의 NEST(Nuclear Emergency Search Team, 국가고용저축신탁)로, 새로운 국가 자동 가입 프로그램에서 기본 조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새로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중하위소득 가구의 주요 급여 적정성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적연금급여가 비교적 낮고 사적연금이 자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신규 근로자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앞선 개혁을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처럼 공적 제도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다른 국가들 역시 전적으로

자발적인 사적연금 저축은 높은 가입율과 충분한 기여금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적연금에의 자동가입 같은 부드러운 강제나 사적연금에의 강제적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신중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두드러지는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으로, 이들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이 실질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흑자를 기록했다.

현 경기상황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이해할만하지만 각국이 당초 노후소득원을 다각화하기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의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연금지급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사전에 적립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부과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다가오는 연금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간 소득자들은 노후소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저연금과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저소득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개인 저축과 투자 등 다른 출처의 소득으로 공적연금 급여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두 가지 모두를 통한 사적연금의 확대를 장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사적 제도 운영의 비용 문제를 다루는 일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결국 운영사만이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제도에 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시각이 필요하다. 노후소득은 각 개인의 인생 여정에서 고용상태와 사회적 조건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연금제도만으로는 불평등과 근로중단 기간을 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는 단지 연금 개혁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책상의 조치와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필요로 할 것이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고령자들의 간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개인과 국가간, 공적 서비스 공급자와 사적 서비스 공급자간 책임 분담과 사회적 보호제도에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대간, 세대 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종합적인 논의와 전체적인 계획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OECD는 공적, 사적연금과 광범위한 사회, 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좀더 광범위하게 기여해나갈 것이다.



Stefano Scarpetta

OECD 고용 노동 사회정책국장



Carolyn Ervin

OECD 금융기업국장

요 약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에서는 최근의 연금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택, 금융 자산, 공공서비스가 노인들의 생활수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설계, 소득수준별 남녀의 향후 연금 수급액, 전반적인 연금제도의 재정,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환경,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등 포괄적인 연금정책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연금 제도 현황도 살펴보고 있다.

은퇴 연령 연장 및 사적연금 가입 증가

개혁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은퇴연령 연장을 목표로 하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 개혁으로 연금수급 연령이 높아졌고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연계 규정이 바뀌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다. 연금수급연령은 2050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최소한 67세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수급을 기대수명의 증가와 직접 연계하고 있다. 둘째, 각국 정부는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제도를 눈 여겨 보게 되었다. 체코, 이스라엘, 영국의 경우 확정기여형(DC) 연금 제도를 도입한 반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연금개혁으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낮아졌다.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 감소분을 일부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의 연금을 위해 매년 납부하는 기여금은 개혁 이전에 비해 낮은 급여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득 전 범위에 걸쳐 미래 연금액은 감소하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저소득자들의 급여액은 감소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최고소득자들이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노령층의 적정 생활수준

노인빈곤 감소는 OECD 국가의 가장 큰 사회정책 성공사례 중 하나였다. 2010년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8%로 세계경제 대침체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15.1%보다 감소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빈곤 위험은 젊은 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OECD 국가에서 64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전체인구의 가처분 소득 수준의 약 86%에 달했는데,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거의 100%에 육박했고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는 75%에 못 미쳤다. 하지만 연금수급자의 퇴직 후 요구사항을 좀더 완전하게 파악하려면 주택자산,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OECD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55세 이상 인구 중 75%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은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매도나 임대, 역모기지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 역시 빈곤해질 수 있으며 주택을 유지 관리함과 동시에 생활비까지 감당 하기가 버거울 수 있다.

금융자산은 여타 출처의 은퇴소득을 보완해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최근의 국가별 비교 자료가 없어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자산이 노인빈곤의 위험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는 부의 분배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자산은 소득분포 최상위 계층에 대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의료, 교육, 공공주택(social housing)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노인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장기요양(long-term care)이 매우 중요한데, 필요가 커지면(주 25시간) 간병 비용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의 가처분 소득 중 60%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오래 살고 연금액과 금융자산은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기의 빈곤 위험이 특히 높다. 공공서비스는 생산연령 인구보다는 노인인구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즉,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소득에 더하면 노인의 확대소득(extended income) 중 현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게 되며 생산연령 인구의 경우 24%이다.

주요 분석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OECD 국가에서 연금 지출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개혁은 미래의 연금 지출액을 감축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거나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 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정성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요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 미래의 연금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모든 국가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특별 보호 장치를 갖춰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입기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가 아닌 이들은 공적 제도를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을 수급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적연금 제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유는 사적연금제도의 경우 더 빈곤한 이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미래의 연금 수급액을 확보하고 가입율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고령화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노후소득은 여러 출처로부터 나오며 노동시장, 정책, 경제적 조건, 개인의 상황 등에 관련한 리스크가 서로 다르다. 실업상태이며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연금액을 적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현재 은퇴 상태인 사람들은 전체 인구 대비 소득이 높은 편으로 OECD 평균이 86%이다. 이러한 결과와 노인빈곤의 감소는 지난 수십 년 간 이룬 정책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last-resort benefits)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 중 사회적 낙인, 급여액에 대한 정보 부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이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드러나지 않는 노인빈곤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 공적연금 제도의 축소, 근로기간의 연장 추세 및 사적연금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은퇴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주택 및 금융자산은 공적연금 급여를 보완해주지만 그것 자체로 적절한 연금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금융자산이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면 국가간 비교 자료가 시급하다.
- 공공서비스는 노후소득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서비스는 경제적 형편이 좋은 노인 가구보다는 극빈층 퇴직자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공적 지원은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노인빈곤을 예방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제 1 장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OECD 34개 회원국에서 있었던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한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의 연금 개혁을 살펴보았던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분석을 이어간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지난 20년간 연금 개혁이 분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며, 단순한 은퇴연령 연장을 넘어선 개혁을 실시한 국가 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도입

지난 십 년 간 연금 개혁은 여러 국가에서 주요 의제로 등장해왔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는 연금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개혁은 연금제도를 좀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악영향은 가능한 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결단력있는 실행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기는 했지만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지출은 향후 40년간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제 6장의 표 6.7 참조).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놀라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음 반 세기 동안 현재 65세에서의 기대수명이 5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연금 수급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와 규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수긍하고 있다. 개혁은 물론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별 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OECD 34개 회원국에서 발생한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한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의 연금 개혁을 살펴보았던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분석을 이어간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지난 20년간 연금개혁이 분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단순한 연금수급연령 연장 이상의 개혁을 실시한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했다.¹

최근의 연금개혁

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

본 섹션에서는 핵심 목표 여섯가지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을 살펴보고 있다.

1. 강제적 제도와 자발적 제도의 연금제도 가입율
2. 노후소득의 적정성
3. 납세자와 기여자를 위한 연금예상급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감당가능성.
4.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근로기간 중 저축액을 늘리도록 장려하는 유인책
5. 연금제도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행정적 효율성
6. 공급자(공적연금, 사적연금), 세 개의 층(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재정 형태(부과방식, 적립방식) 측면에서 노후소득 출처의 다각화

남은 일곱 번째 카테고리는 임시 조치 및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조치 등 다른 유형의 변화를 포괄한다.

목표 간에 상충되거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금 예상 급부를 줄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면 연금소득의 적정성에 악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으로는 퇴직연금의 가입율을 높이면 정부의 연금 제공 예산 부담을 덜 수 있고 리스크를 다각화하며 노후 소득의 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연금 개혁의 개요

아래 표 1.1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ECD 34개 회원국이 채택한 개혁 패키지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2는 개혁의 내용을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1.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ECD 34개 회원국의 연금개혁 조치 개요

	가입율	적정성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안정성	기타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캐나다	×		×	×		×	×
칠레	×	×			×	×	×
체코			×	×		×	
덴마크				×	×		
에스토니아		×	×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
한국	×		×		×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터키				×		×	×
영국	×	×	×	×	×	×	×
미국	×	×	×				

주: 연금개혁의 상세 내용은 표 1.2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515>

OECD의 34개 회원국 모두 조사 대상 기간 중 연금 제도 개혁을 실시했다. 벨기에와 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혁이 이전 5년(2004-08년) 중 통과된 법안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수반하고 있다. 그 시기 이후의 개혁은 경제 위기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급여 산정 방식을 개정한 국가들은 경기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들이다. 이탈리아 역시 2012년 확정급여형(DB) 공적연금에서 명목확정기형(NDC) 계정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칠레, 이탈리아, 뉴질랜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노인빈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금 가입률과 사회 안전망급여(safety net benefits)를 개선하는 개혁을 실시했다. 일부 국가가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지속한 반면 근로 기간을 늘려 적정한 노후소득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가들도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여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이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제정했거나 이행했던 개혁 조치를 상세하게 검토, 비교하고 있다.

가입율 (Coverage)

근로자들이 하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년기의 소득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준 보편적 가입율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이건 공적이건 강제 또는 준 강제 연금제도를 수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금에 -심지어 공적연금에도- 가입해있지 않거나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저소득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예컨대 멕시코는 전체 노동인력의 40% 미만이 법정 연금 제도에 가입해 있으며 나머지는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거나 실업 상태이다.

네 개 OECD 국가에서는 최근 특정 집단 근로자들의 공적연금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조치를 최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수발자(family-carers) (오스트리아), 출산급여 수급자(프랑스), 연구비 수혜자(핀란드) 등이다. 2009년부터 포르투갈의 신입 은행원들은 선배들처럼 산업별 사적연금이 아니라 공적 국가 연금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이 조치는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은행 직원들의 연기금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되었다.

2011년 칠레는 연금을 전혀 또는 거의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산조사적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연대 연금 제도(SPS)에 극빈층 노인인구의 60%를 가입시키는 2008년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퇴직연금이나 자발적 연금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공적연금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이들 제도가 향후 은퇴자들의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의 정책적 개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공적 제도 외에 사적 제도 활용: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2. 강제적 퇴직연금의 도입이나 확대: 이스라엘과 한국
3. 자발적 제도에 자동 가입: 영국

일부 정책의 계획은 특정한 근로자 집단의 가입률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저소득자들의 사적연금 참여와 지속적인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룩셈부르크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자발적 연금제도의 월 납부액 하한선을 낮췄다. 칠레 정부 역시, 특히 젊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입율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기여금만큼의 연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발적 연금에 대해 효율적인 새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연금 상품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칠레 정부의 목표는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저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국가가 자발적인 사적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제도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2007년에 이탈리아와 뉴질랜드가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한 후 영국이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자동 가입 퇴직 저축 제도를 2012년에 도입했다. 아일랜드도 2014년에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적정성 (Adequacy)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은 소득 대체와 재분배,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룰 수도 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그리스와 멕시코는 새로운 자산조사적 급여를 도입했고 호주는 다른 방향을 택했다. 즉, 기존의 선별적 제도를 강화하여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칠레와 그리스는 소득비례급여의 배분을 위한 소득 조사방법을 수정했다. 핀란드에서는 소득기준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수당을 보완하는 최저연금이 2011년 3월부터 도입되었다. 급여는 최저소득수준(2011년 기준 월 687.74유로) 미만의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연금수급자를 위한 최저소득보장은 구 제도에서보다 훨씬 높아졌다.

연금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또한 연금 급여 산식의 개혁과도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2011년 정액 공적 급여를 대체하기 위해 소득조사연금을 선택하면서 노령연금 산정 규정을 개정했다.

그 외에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누적적 성격을 개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소득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했고 스페인은 연금이 없는 이들을 위한 유족급여를 인상했다. 칠레는 저소득자의 의료 보험금 납부를 폐지했고 멕시코는 연금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2013년 1월부터 3세 이하의 유아를 돌보는 모든 연금수급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 보조금을 도입했다. 월 보조금 액수는 돌보는 유아의 수와 출생일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스와 영국,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연금수급자들에게 일회성 급여를 지급했다. 그리스에서는 이 급여가 저소득 연금수급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데, 당초의 의도는 향후 몇 년간 이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 조치로 인해 2010년 급여액이 감소했으며 고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다른 일시불 급여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계절적 보너스도 마찬가지였다. 오스트리아는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에 저소득 연금수급자들에게 일시적인 급여(occasional transfer)를 지급했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13월과 14월 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많은 퇴직자들의 소득 기대를 낮췄다.

고소득자들의 연금 수준 역시 최근 개혁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주로 재정건전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월 급여가 5%에서 19%까지 누진적으로 삭감되었으며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연금의 과세는 특히 고액 연금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쳐 제도의 재분배 성격을 강화했다. 한국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9년에서 2028년 사이 49%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연금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Financial sustainability)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특히 국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자주 사용된 조치는 연금 연계 장치의 개혁이었는데, 물론 이러한 조치의 목적과 효과는 국가별로,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다. 새로 도입된 연계 규정 중 일부는 좀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체코와 헝가리, 노르웨이에서는 더 이상 연금을 급여 인상률에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는 최저소득자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자동 조정을 동결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급여의 예상 상황 조정이 50% 축소되었고 독일은 2010년 연방정부예산에 가해질 압박을 피하기 위해 연금 수준을 증가시키려던 계획을 수정했고 2009년으로 예정했던 보험료 기여율 감축시행을 중단했다.

반면 호주와 핀란드, 미국에서는 연금의 동결과 연계 규정의 변경이 표준적인 물가연계지수가 연관되어있는 급여 수준의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세 국가의 정책 조치는 실제로 연금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가장 광범위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실시했다. 아일랜드는 현재 공공부문의 연금에 과세하고 있으며 연기금의 조기 인출과 기타 세제혜택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포르투갈 역시 연금에 과세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리스 정부는 평균 연간 지급률을 인하했으며 연금의 연계 지수를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지수(CPI)의 변동성에 연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금 급여를 최종 급여가 아니라 생애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월 연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따라 5%에서 15%를 삭감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521 뉴질랜드 달러까지의 기여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50% 삭감하고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중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사적연금의 특별과세 기여금(concessionally-taxed contributions)에 허용되는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추고(2009) 사적연금 납부자 중 형편이 좋은 이들에게는 세율을 높여 진행 중인 연금 개혁의 자금 확보가 개선되도록 했다(2013). 2013년 7월부터 50세 이상 인구에 대해 특별과세 기여금에 더 높은 상한선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연금산식을 상당부분 변경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이전부터 젊은 근로자들의 수급액 수준이 기대수명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급여수준 산정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20년이 아니라 기여금 납부 총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핀란드 역시 소득비례연금을 기대수명과 연계하고 있고 스페인도 가까운 장래에 모든 연금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스페인의 경우 현재 개혁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2013년 9월) 언제부터 연금을 기대수명과 연계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027년부터 2019년부터 조정하는 방안).

일부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자금을 사적연금으로부터 공적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평형상태를 깨뜨렸다. 헝가리는 2010년 말부터 의무가입인 두 번째 층 연금을 점진적으로 해체하여 계정을 첫번째 층으로 이전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사적연금의 기여금을 7.3%에서 3.5%로 누진적으로 감축하여 새로 도입한 부과방식의 공적 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에서는 2009년 6월, 근로자들이 사적 확정기여형(DC) 제도로부터 공적 제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노동시장 신규진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2년, 사적연금이 다시 의무화되었다.

근로 인센티브 (Work incentive)

많은 OECD 국가의 연금개혁은 근로기간을 늘림으로써 사람들이 연금 수급액을 좀더 많이 확보하고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채택된 조치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법정 은퇴연령을 높인다. 둘째, 근로 보너스 및 은퇴시 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 셋째, 조기수급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지난 10년간 34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완전한 연금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많은 국가에서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는 이미 67세로 시행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터키, 헝가리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슬로베니아는 2016년까지 여성의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2013년 1월 법제화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 2012년 6월 제정한 법에 따르면 시행일자는 다르지만 남녀모두 연금수급연령을 67세까지 연장하며 남성의 경우 2020년에, 여성의 경우 2040년에 연금수급연령이 67세에 도달하게 된다. 호주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2013년 7월에 65세로 올라가고, 2023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1년 말, 이탈리아 역시 남녀 모두 연금 수급 연령을 2012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는데 2010년까지 연금수급연령이 60세였던 민간부문 여성들의 경우 특히 대폭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여성들도 2013년 12월부터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과 동일한 65세로 연장된다. 그리고 이후 10년에 걸쳐 남성과 여성 모두 연금 수급연령이 67세로 점차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예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이 동일해지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과 스위스만 남녀간 차이를 계속 둘 예정이다.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터키 등 일부 OECD 국가들은 향후 연금 수급연령을 기대수명에 연계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예컨대 덴마크와 이탈리아 모두 향후 연금 수급 연령이 67세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동 조정은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코의 경우 2044년부터 연금 수급 연령이 1년에 두 달씩 증가하게 되는데 2044년에 이미 연금 수급연령은 67세에 도달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기여한 년수와 연령에 의해 연금이 결정된다. 근로자들은 빠르면 62세부터 불이익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기여금 납부 기간은 최소 4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소 기준은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기여금 납부 기간에 관계없이- 2022년까지 67세로 증가하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근로를 계속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해 왔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를 연기하는 근로자들에게 연금액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9년과 2010년에 두 단계에 걸쳐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인상했다. 근로소득세 공제는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65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공제액이 높아진다.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66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낮아진다. 한편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법정 또는 최저 연령 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덴마크,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폴란드에서는 조기수급제도를 폐지했고 포르투갈은 중단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 예측에 대응하여 자격요건을 특정 연령 및 기여 요건으로 한정했다.

그 외에 수급연기를 장려하는 개혁의 예로는 호주처럼 사적연금의 의무 기여에 대한 연령 상한선 폐지가 있다. 반면 룩셈부르크에서는 연금 저축의 증가율을 낮췄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근로자들은 개혁 전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3년 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2050년에 평균 연금 수급액을 받게 되며 이는 현 수급액보다 대략 12% 낮은 수준이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기간을 늘리고자 노동시장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이 근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또는 구직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년퇴직연령(DRA)을 폐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좀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이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OECD 고령화 및 고용정책 시리즈에서는 (OECD, 2006)을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적 효율성 (Administration efficiency)

사적연금의 높은 관리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특히 의무가입 또는 준 의무가입 제도를 갖고 있는 OECD 국가의 경우 최근 수년간 정책적 우려사안이었다. 그러나 행정적 효율성은 자발적 제도의 경우에도 정책상 우선순위를 갖는 사안이다. 비용이 높으면 근로자들이 자발적 연금제도에 가입하기를 꺼리게 되고 강제 연금의 비용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비용의 비효율성은 연금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예컨대 예상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한 명이 사적연금제도에 가입하는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납부하는 기여금의 최대 20% 또는 40%를 차지할 수 있다.²

호주, 칠레, 일본, 스웨덴 등 몇몇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제도를 좀더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혁을 도입했다. 호주에서는 2013년 7월 MySuper라는 단순한 저비용 제도를 신규 도입했는데 목적은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적인 특징을 가진 보장형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칠레 정부도 저렴하고 비용효율적인 제도의 등장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상품 관리회사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저비용 펀드인 AP7이 2010년부터 고비용 투자 옵션들과 경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일본에서는 좀더 낮은 비용으로 공적 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 2010년에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으며 멕시코와 영국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민간연금관리가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덴마크와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와 지급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을 통합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2010년까지 연금제도의 수가 133개에서 단 세 개로 급감했다. 그리스 정부는 또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기여금 납부를 단일한 방식으로 통합했고, 그리스와 한국에서는 연금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에스토니아에서는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의 상한선을 최근 제정했으며 슬로바키아에서는 비용을 연기금의 자산가치가 아니라 투자 수익률에 연계했다.

다각화와 보장 (Diversification and Security)

저축을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1. 근로자의 투자 옵션을 확대하고 펀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연금 제도. 캐나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2. 퇴직저축을 민간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 당사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도록 허용하는 규정. 캐나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했으며 가입자가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면서 리스크가 적은 투자로 자동적으로 옮겨가도록 했다. 이 정책은 OECD의 과거 분석자료(OECD, 2009)에서 권고한 내용이다.
3.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옵션에 대한 제한을 완화. 칠레, 핀란드, 스위스, 터키가 이러한 방식을 따랐고 칠레와 슬로바키아에서는 국가 부도라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연기금이 해외 투자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허용했다.
4. 연기금의 지급가능(solventy)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는 연기금 가입자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투자에 좀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캐나다와 아일랜드에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한 덕분에 재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기금들이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을 만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기금에 대해 좀더 오랜 회복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지급 가능 규정(solventy rule)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기타 개혁 (Other reform)

“기타 개혁” 카테고리에는 여러 정책 조치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들 조치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전형적인 목표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연금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금융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많은 OECD 국가의 우선순위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연금 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연금저축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기둔화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주 정부는 사람들이 홈케어 및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내놓았다. 뉴질랜드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Superannuation Fund)의 공적 기여는 2009년 중단되었다. 이 조치는 당초 2021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점진적

축소를 가속화했다.

이 모든 조치의 목적은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많은 경우, 저소득자들과 연금수급자들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행 계획의 일부이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또한 적립기금을 통해 미래 연금 부채의 재정을 사전에 충당하고자 했던 이전의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재정적 파산 위기에 있던 은행부문의 자본재 확충을 위해 공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대응하여 공적연금 적립기금에 대한 추가 기여를 중단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도 당초 예정한 2020년 보다 훨씬 빠른 2011년에 공적연금 적립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호주와 칠레 등 다른 국가들은 사전 충당에 대한 의지를 고수했지만 이들은 유럽만큼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입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연금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연금제도 중 가장 널리 논의되는 요소는 근로자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으로, 이는 가장 변경이 쉬운 요소이기도 하다. 이 조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하거나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해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2044년부터 매년 2개월씩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기로 한 체코의 경우처럼 매년 일정 기간만큼 연령 기준을 상향한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수급연령을 남성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영국처럼 남녀 공히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연금은 기대수명이 법정 은퇴 연령을 약간 상회하던 시기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OECD 국가에서는 그와 동시에 은퇴 연령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1949년, 남자들의 은퇴연령은 64.3세였으나 1999년에는 62.4세가 되었다. 여성들은 더욱 빨라서 1949년에 62.9세, 1999년에 61.1세였다(OECD, 2011). 금세기 중반이 되면 평균 은퇴 연령은 65세를 초과하게 되며 장기적 전망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은퇴연령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정상수급, 조기수급, 수급연기 자료는 표 3.7 참조).

은퇴연령은 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일수는 있지만 개혁 패키지의 일부일 뿐이다. 이 장의 첫번째 섹션에서는 34개 OECD 국가가 실제로 제정하고 이행한 개혁의 개요를 다루고 있다. 이 섹션은 모형화된 개혁의 결과에 집중한다.

이 섹션의 앞부분에서는 개혁이 지난 20년간 총대체율과 총 연금자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 기간 중 계속해서 은퇴 연령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영향을 고려하는 좀 더 이론적인 접근방식을 살펴본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개혁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근로기간의 연장 및 은퇴 연령 단축으로 왜곡될 수 있는데, 모형에서는 여전히 근로자들이 동일 연령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이 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다루도록 한다.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호주	<p>사적연금 강제기여에 대한 연령제한 (70세) 폐지 (2013)</p> <p>강제적 확정기여형(DC) 기여가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9%에서 12%로 증가 (2013년 개혁).¹⁾ 2009년부터 독신 연금수급자에 대해 선별적 급여(노령연금) 12%, 부부에 대해 3% 인상. 독신자에 대한 인상은 부부의 66.4%.</p> <p>기초연금에 대해 신규 연계 규정 도입(2010년 3월부터). 독신 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남자 총 평균 주당 소득의 25%에서 27.7%로 인상 (은퇴자 부부의 경우 41.76%).</p> <p>소득비례급여를 위한 소득조사로 변경 (2009년 9월).</p>	<p>고소득자에 대해 기여금에 부과하는 보장형 퇴직연금세를 인상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해 비과세 기여금 기준 상향 조정. 2013년 발효.</p> <p>사적연금기여율이 2013-20년에 기초 임금의 9%에서 12%로 점진적 인상 (2013년 개혁).¹⁾</p> <p>저소득 근로자의 사적연금 기여금과 정부 최대 수급액 모두 50% 인하 (2013년).</p>	<p>1952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남녀 공히 연금수급연령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인상.</p> <p>사적연금 강제 기여에 대한 연령제한(70세) 폐지 (2013년).</p> <p>2013년 7월부터 1949년 1월 1일에서 1952년 6월 30일 사이 출생한 여성들의 은퇴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p> <p>(현재 폐지된) 연금 보너스 제도를 대신하여 2011년 7월부터 노령연금수급자들에게 좀더 후한 근로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p> <p>2012년 7월 1일부터 고령근로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 이 공제는 195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p>	<p>2010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청산소(clearing house) 설립. 확정기여형(DC) 급여에 대한 비용을 40% 감축하는 조치 (2010년 12월).</p> <p>뉴“MySuper” 도입 - 간단하고 비용효과적인 확정기여형(DC) 상품으로 2013년 7월 출범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료(new default contribution)를 포함.</p> <p>고용주에 부과된 최소 의무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설정.¹⁾</p> <p>2011년부터 보장형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제도의 관리를 개선하고 복수의 계정을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SuperStream” 개혁 패키지 도입.</p>	<p>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9년, 납세자들에게 최대 900 호주 달러를 세금 보너스로 지급.</p> <p>GST 보충수당, 약품 수당, 공과금 수당, 전화 인터넷 요금 수당, 노인 인터넷 요금 수당을 결합하는 새로운 보충 연금 도입.</p> <p>2010년 7월 1일부터 연금수급자를 위한 선불보조금을 보완하여 선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을 증액하고 매년 수회 선 수급할 수 있도록 함.</p> <p>돌봄급여(Carer Payment와 Carer Allowance) 수급자들을 위한 추가급여(Carer Supplement), 그리고 돌봄급여(Carer Allowance)의 증가.</p>	
오스트리아	<p>가족수발자(family carer)를 위한 연금 기여액 국가지원을 낮은 수준의 장기 요양 급여로 확대 (2006년 1월부터).</p> <p>공적연금제도 보충을 위한 연금 옵션 확대 관점에서 만들어진 확정기여형(DC) 제도의 두 가지 신규 급여 유형 (2012년).</p>	<p>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일시불 지급 허용 (2010년).</p>	<p>2011년 최대 2,000유로의 월 연금만 완전 연계.</p>			

1) 최근 연방 선거에 앞서 정부는 -정권 잡기 전- 강제 확정기여형(DC) 기여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9.25%인 현행대로 유지한 후 2021-22년까지 12%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벨기에			<p>여성의 법적 연금수급 연령을 2009년 1월 65세로 상향조정. 2013년 1월부터 조기 (노령) 퇴직 급여에 대한 연령제한이 60.5세(60세에서) 및 근무년수 38년으로 조정. 이 요건은 2016년에 62세 및 근무년수 40년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p> <p>조기퇴직제도에 고용주의 기여율을 인상함으로써 제도 사용 자체 유도 (2010년 4월 발효). 이 조치는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본 제도를 지나치게 일찍 또는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캐나다	<p>새로운 자발적 퇴직저축제도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이라 불림) 도입. DI 제도로 인해 연방지역(201), 앨버타(2013), 서스캐처원(2013)의 가입율 증가 예상.</p> <p>퀘벡 주의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자발적 퇴직저축제도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안(2013) (비가입 선택 가능)</p>	<p>퀘벡의 공적 기여 두번째 층(tier) 프로그램 (퀘벡 연금제도)의 기여율을 (2011) (고용주와 종업원이 반반씩 납부) 2011년 9.9%에서 2017년 10.8%로 인상. 2018년에는 안정적인 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자동 매커니즘 이행 예정.</p>	<p>공적 기여 프로그램에서 (캐나다/퀘벡 연금 제도) 은퇴연령(현행 65세)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률을 매달 0.5%에서 0.7%로 최대 36%까지 인상. 조기 연금 수급의 경우 (60-65세) 연금은 매달 0.5%가 아니라 0.6%의 비율로 감축.</p>	<p>2013년부터 노령 보장 급여에 대한 선 가입제도가 시행되어 동 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노인들의 부담이 줄고 행정 비용이 감소하게 됨.</p>	<p>연방지역 및 산업(2012), 앨버타(2013), 서스캐처원(2013)에서 새로운 자발적 퇴직저축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도입.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p>	<p>퀘벡정부는 2009년 1월에서 2012년 1월 사이 파산한 기업의 연금제도를 인수하여 5년간 관리. 정부는 연금액이 최소한 연금 만기 시 지급될 감축 연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보증.</p>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p>칠레</p> <p>하위 60% 노인인구를 첫번째 층(pillar) 연대 연금제도 (SPS)로 편입시키는 마지막 단계에 2011년 7월 돌입.</p> <p>고용주 지원 자발적 사적연금제도 준수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신규정 (2011). 자발적 퇴직자축제도에 대한 총 기여금의 15%를 정부가 연간 지원 (2011).</p>	<p>저소득 연금수급자를 위한 의료 기여금 폐지 및 중-고소득 연금수급자는 축소 (2011).</p> <p>2010년부터 가족 및 일인당 소득 정의 변경 및 소득 증명 출처 변경 등 새로운 빈곤축적방법 사용.</p>			<p>새로운 Modelo 제도가 2010-12년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의 확정기여형(DC) 계정 관리 계약 확보. 비용은 기존 평균 대비 24% 저렴. Modelo는 30% 낮은 비용으로 2012-14 계약도 확보.</p> <p>장애 및 유족 보험은 입찰을 통해 계약 (2011년부터 발효).</p>	<p>2010-11에 확정기여형(DC) 제도 포트폴리오 중 허용된 해외자산이 60%에서 80%로 증가.</p> <p>펀드 A부터 E까지 리스크가 큰 것부터 보수적인 것까지 좀더 명확한 방식으로 재 명명하게 되면서 좀더 쉽게 매니저 당 다섯 개 펀드 중 투자 선택할 수 있게 됨. 가입자는 잔여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펀드 배분을 선택할 수 있음.</p>	<p>장애 및 유족보험에 대해 남녀 동일한 보험료 청구. 남성의 위험율이 높으므로 보험료 차액은 여성들의 확정기여형(DC) 계정에 적립.</p>
<p>체코</p>		<p>연금수급가능 소득의 상한선을 평균소득의 400%로 변경 (2010).</p> <p>노령, 유족, 장애연금에 대한 연금규정을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일시 변경하여 연금 증가세를 완화.</p>	<p>매년 두 달씩 연금수급연령을 누진적 연장하며 정해놓은 총착점은 없음. 2041년까지 남녀간 연금수급연령 차이 격차 해소 (2011).</p> <p>완전급여를 위한 기여요건을 2019년까지 20년에서 35년으로 확대 (2010년부터).</p>		<p>개인이 추가 2% 기여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여금의 3%를 확정기여형(DC) 제도로 전용할 수 있는 옵션. 2013년 1월부터 공적연금 급여 감소 예정.</p> <p>2013년부터 자발적 개인 계정의 두번째 층(second pillar) 생성.</p>	
<p>덴마크</p>			<p>2012년 1월 이후 자발적 조기 퇴직제도 (VERP 또는 eferlon) 규모 축소. (조기연금의) 지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하기 위하여 2014-23년 기간 중 연금수급을 위한 적격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연장. 2012년에는 조기수급과 143,300크로네를 적격연령에 비교해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 중 선택.</p>	<p>중앙 집중화된 기관을 설립(Payment Denmark - Udbetaling Danmark)하여 몇몇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와 지급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전환하고 대응성을 개선 (2012).</p>		
<p>에스토니아</p>	<p>2013년 1월 1일부터 3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 공적 제도에서 새로운 보충연금 지원.</p>	<p>확정기여형(DC) 계정에 대한 고용주 기여 감축 (2010년 0%기여에서 2011년 2%, 2012년에는 4%로 복귀). 국가의 첫번째 층(first pillar)에 대한 기여금의 동일한 인상을 허용하기 위해 감축 (2009).</p>	<p>연금수급연령을 2017년에서 2026년 사이, 남성은 63세에서 65세로, 여성은 60.5세에서 65세로 연장 (2010).</p>	<p>2011년 이후 연금 펀드 매니저들은 더 이상 유닛 이슈(unit-issue)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2011년 이후 연간 관리 수수료 역시 관리 중 자산금액에 관련하여 설정된 상한선의 적용을 받음.</p>	<p>확정기여형(DC) 제도의 세가지 펀드 중 보수적(리스크 최소화) 펀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진 투자 제한. 가입자들은 2011년 8월부터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세 번 펀드를 바꿀 수 있음</p>	

제장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본배에 미치는 영향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핀란드	소득비례제도의 적용범위를 연구 지원금 수혜자로 확대 (2009년 1월)	2011년 3월부터 새로운 최저연금인 소득비례 보편적 연금을 보충. 최저연금에 대한 연계 규정이 2010년 임시 변경.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기 위한 조치임. 소득비례연금을 기대수명 증가와 연계 (2010년부터 적용).	소득비례제도에 대한 종업원/고용주 기여금 조합 (TyEL).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0.4%씩 상승하기 때문.	근로기간 중 연금수급 보류 가능성을 (최대 2년) 소득비례연금으로 확대. 현재 임시법안이 2010-13에 적용 (2010년 1월 - 현 정부안은 이 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임). 고용촉진을 위해 보편적 공적 제도에 대한 고용주 기여분을 2009년 0.8% 인하했으며 2010년에는 폐지.		재무건전성 룰(Solvency Rule)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확정급여형(DB) 제도가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2009년 1월 시작. 유효기간은 2010년 4월 연장)	
프랑스	현금 출산수당은 연금목적의 소득으로 간주 (2010년 11월)	10%+ 영구장애로 이어지는 위험하고 힘든 직업의 경우 연금수급연령 60세 고수. 10%+장애인이 힘든 업무를 최소 17년 수행하거나 영구적인 업무관련 장애가 20%이상인 경우 연령 요건 비적용. 후자의 경우 근무연수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2010년 11월)	공무원의 기여율은 2020년까지 7.85%에서 10.55%로 점진적 상승 (2010).	최저연금연령 (기여조건 적용) 2017년까지 60세에서 62세로 연장 (2012년 개정안). 기여금 납입기간을 채운 근로자들이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 복구 (2012).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연장 (2011년 11월). 2009년부터 수급연기로 인한 금액 5%로 인상. 고용주는 2010년 1월까지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전액 연금을 위한 기여금 납입기간이 2012년 확대. 신규요건은 공무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는 40세와 41.5세 사이에 차이가 있음.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이 아니라 2011년에 시작된 완충기금(Fonds de reserve pour les retraites - FRR) 철회.	
독일				1964년 이후 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상 수급연령을 2012년에서 2029년 사이에 65세에서 67세로 연장 (2007).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그리스	<p>노인을 위한 360유로의 새로운 자산조사적, 비자발적 연금 (2010).</p> <p>신규 도입된 800유로의 정액 보너스가 월 2,500유로 미만을 지급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계절적 보너스를 대체 (2010).</p> <p>자영업자를 위해 연대기금(solidarity fund) 설립 (2011년 6월)</p> <p>2009년부터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일회성, 자산조사적 비과세 급여 (solidarity benefit) 제공 (단, 긴축정책으로 인해 2010년에 폐지)</p> <p>연대급여(Solidarity benefit)을 위해 소득조사 외에 자산조사 도입.</p> <p>월 연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5%에서 15%만큼 감축 (2011).</p> <p>월 1,4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에는 5-10% 과세 (2010년 8월부터).</p>	<p>강제 공적연금 인상 2011-15년 동결 - 당초 계획에서 2년 연장 (2011년 6월).</p> <p>연금을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변동대신 CPI에 연계.</p> <p>연금의 최대 10%에 대한 계절적 보너스 지급을 2011년부터 중단하고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보너스는 2013년부터 삭감.</p> <p>일시불 지급액을 2011년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최소 10% 삭감.</p> <p>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기여율 증가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 (2011년 6월).</p> <p>평균 연 지급률이 2%에서 1.2%로 감소 (2010), 소득비례연금 축소.</p>	<p>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2011-13년에 60세에서 65세로 연장 (2010년 개혁).</p> <p>모든 전액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2012년 11월).</p> <p>2015년부터 전액연금에 필요한 기여금 납입기간을 37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고 조기은퇴의 경우 연 6%씩 계리적 삭감 (2010년 7월 개혁).</p> <p>조기 수급 연령을 2011년부터 53세에서 60세로 연장.</p> <p>연금수급연령을 2020년부터 기대수명과 연계.</p>	<p>13개 연금제도를 세 개로 통합 (2010년 7월).</p> <p>가입회피를 방지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징수를 용이하기 하기 위해 통일된 단일 급여 및 보험 기여금 납부 방식 시행 (2011년 6월).</p> <p>모든 근로자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사회보장기록(AMKA) 보유 의무화.</p>	<p>다각화와 보장</p>	<p>기타</p>
헝가리	<p>근로자는 사적 제도에서 탈퇴 허용. 그러나 공적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줌 (즉, 2012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 수급 자격 상실).</p> <p>13월의 연금은 2009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GDP 성장의 3.5%이상인 경우 보너스로 대체.</p>	<p>GDP성장률이 3% 이하인 경우 연금은 물가에 연계.</p> <p>2010-2011년에는 평균 임금 및 물가에 연계. 2012년부터는 인플레이에 연계.</p> <p>2013년부터 연금 급여에 과세.</p>	<p>연금수급연령을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62세에서 65세로 점진적 연장.</p> <p>법 집행 전문가에 대해 조기수급제도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며 기타 근로자들에게는 조건을 엄격히 하는 법안 도입 (2011).</p>	<p>2009년부터 자발적 생애주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강제요건 부과. 이 제도는 가입자들이 세가지 포트폴리오(전통적, 균형,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연금의 국유화로 인해 별로 의미가 없어짐.</p>	<p>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강제적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 공적 제도로 기여금을 전용.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연금에서 적립제도로 변경(2013년 1월까지). 강제적 확정기여형(DC) 제도는 2011년 12월에 폐지하고 자산재미화 146억 불을 정부에 이전.</p>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아이슬란드						<p>자발적 연금제도 가입자는 2008년 위기 이후 본인의 계정에서 자금 인출 허용 (2009년1월).</p> <p>대규모 확정급여형(DB) 연금(총자산의 34%)에서 국내경제를 안정화하고 위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슬란드투자기금(IIIF) 설립(2009년 12월).</p>
아일랜드	<p>특정 소득기준 이상의 젊은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자동 가입. 2014년부터 적용 (2010년 3월).</p>	<p>매년 사적연금 자산에 0.6% 과세 (2011-14). 2009년 3월부터 공공부문 급여에 대한 세금과세는 평균 7.5%.</p> <p>고소득자의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41%에서 20%로 축소. 고용주 기여분은 더 이상 세금공제 대상 아님. 공제대상 기여금에 대한 소득 상한선은 2011년부터 15만 유로에서 11만5천 유로로 인하. 소득 18,300유로 이하의 공적연금 기여금 면제 종료. 세금 혜택 생애 한도는 540만 유로에서 230만 유로로 인하 (2010년 12월). 초과세 일시 연금계좌인출금 한도는 20만 유로이며 이 한도를 넘는 인출금에 대해서는 과세 (2010년 12월). 주급 352유로 미만 소득자에 대한 공적연금제도 기여금에 대한 면제는 폐지(2010년 12월).</p> <p>고용주 기여율을 2011년 7월에서 2013년 사이 8.5%에서 4.25%로 인하 (2011).</p>	<p>수급연령은 2014년부터 65세에서 66세로, 2021년부터는 67세로, 2028년부터는 68세로 연장 (2011 개정안).</p>		<p>지급불능 고용주들로 인한 지급불능상태의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돕기 위한PIPSI(Pension Insolvency Payment Scheme) (2009).</p> <p>2012년 6월부터 3년간의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재원마련 기준 재확립. 이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2012).</p> <p>확정급여형(DB) 제도는 2016년부터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 준비금 명목으로 추가 자산을 보유해야 함(2012).</p> <p>확정급여형(DB) 제도의 신탁 관리자는 연금위원회에 계리적 펀딩 준비금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2012).</p>	<p>2001년 출범한 240억 유로 국민연금 보유기금이 재정부로 이전되어 은행의 자본재확충에 사용. 기여금(GDP의 1.5%) 증단 (2010년 12월).</p>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이스라엘	2009년 1월부터 강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며 2010년 1월부터 적용범위 확대. 종업원 기여율은 2.5%에서 5%로 인상되었으며 고용주 기여율은 2013년부터 2.5%에서 10%로 인상.	자발적 사적연금의 위기 관련 손실 중 50%는 보상하며 상한선은 55세미만자 15%의 잠재적 적용범위 (2009년 1월).					1995년 1월 이후 저축을 시작한 가입자는 벌금이나 세금 납부없이 퇴직자축을 생명보험과 중앙적립식 퇴직자축기금 (provident funds) 간에 전환 가능 (2009).
이탈리아	높은 급여를 받게 될 NDC의 자영업자에 대해 공적연금 기여율 인상 (2011).	2012년부터 NDC 제도로 좀더 신속히 전환. 2012년 노령연금 대체의 접근 요건을 강화한 조기퇴직제도 도입.	여성의 수급연령을 2018년까지 60에서 66세로 연장하여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 남녀 모두 수급연령을 연장한 것은 2018년 이후 기대수명 연장에 대응한 조치. 공공부문 여성의 수급연령은 2012년 61세에서 65세로 연장 (2011).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세 기관의 합병 (INPDAD와 EMPALS 계정이 2012년 3월 31일까지 INPS로 이전).			
일본	기업연금의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통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확정 기여형(DC) 제도에 직접 기여금 납부 가능(2012년 1월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자발적 확정기여형(DC) 제도 적용범위 확대 (2012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2012, 2015년 10월부터 발효). 후생연금을 더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확대 (2012, 2016년 10월부터 발효). 유족을 위한 기초연금을 얼마없는 가족에게 확대 (2012, 2014년 4월부터 발효).	저소득 고령 연금수급자에게 복지 급여 제공(2012, 2015년 10월부터 발효). 출산후가 중인 여성에게 후생연금기여금 납부 면제 (2012, 2014년 4월 발효).	예외적인 연금액 수준(2.5%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폐지 (2012년 정책 조치).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부 부담을 50% 수준으로 영구 고정 (2012, 2014년 4월 발효).		2010년 1월부터 저비용으로 공적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연금서비스 출범. 후생연금제도로의 통합: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을 후생연금에 포함 (2012, 2015년 10월 발효).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2010년까지 납입기간 기록 격차를 보험료 납입을 통해 메울 수 있도록 허용. 후생연금 연기금(EPFs)의 해산을 위한 법안 통과. 비가입을 선택한 (contracted-out) 급여에 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EPF들은 5년 내에 해산해야 함. 그 외의 EPF는 지속될 수 있으나 매년 자산검사를 통과해야 함. 새로운 EPF는 설립 불가. 재정적으로 건실한 EPF가 다른 유형의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장려됨 (2013년 6월, 2014년 4월 발효).

재정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한국	2010년 12월부터 5인 이하 사업장에 강제적 퇴직연금제도 확대 (약 150만 명 해당).	공적 제도의 목표 대체율이 2009년에서 2028년 사이 49.5%에서 40%로 인하 (2007년 7월).			사회보장기여금징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 전자정보시스템 설립 (2010).	
룩셈부르크	자발적 보험에 대한 최소 월 기여금 300유로에서 100유로로 인하 (2012-13).	연금조정 50%로 감축 (2012). 결합된 기여율 (종업원, 국가, 고용주)이 2062년까지 보장 급여의 24%에서 30%로 점진적 인상 (2012).	완전 연금에 대한 납입 요건이 2062년까지 40년에서 43년으로 연장 (2013). 근로기간 연장을 장려하기 위해 인상을 감축 채택. 현 수준의 연금을 확보하려면 가입자는 대략 3년을 더 근로해야 함(2012).			
멕시코	2013년 3월, 65세 이상이고 여타 연금이 없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비 기여 연금 도입. 최저임금의 25배까지의 소득을 가진 수급자들에게 소득세 면제.			개인계정제도 내에서 연기금 (SIEFORES) 재조정(2013).	퇴직계좌 보유자들에게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고 운용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정이 2011년에 시행 (2012).	
네덜란드						재원이 부족한 확정급여형(DB) 제도의 회복기간을 일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09년 2월).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뉴질랜드	<p>키위세이버의 기본 기여율이 2009년 급여의 4%에서 2%로 삭감되었다가 2013년 4월부터 3%로 인상.</p> <p>2013년 4월부터 종업원과 고용주의 최저 의무 기여율이 소득의 2%에서 3%로 인상(2011).</p>	<p>2011년 7월부터 키위세이버 가입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50% 감축되며 상한선은 521 뉴질랜드 달러로 설정.</p> <p>키위세이버 계정에 납부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공제 2009년 폐지. 2012년 4월, 고용주와 종업원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폐지.</p>					<p>공적 적립기금인 뉴질랜드 보장행퇴직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납입이 2009년 중단되었으며 2016-17년에 재개될 예정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짐).</p> <p>은퇴위원회의 권고안은 (2010년 12월) (1) 수급연령을 202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65-66세에 새로운 자산조사적 급여를 제공하며, (2) 임금 연계에서 임금과 물가에 50대50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3) 지금까지 기여금의 약 40% 수준인 키위세이버 세금 인센티브 비용에 대한 우려 제기.</p> <p>재무부에서 권고안을 검토 (2009)한 결과 (1) 수급연령은 65세에서 69세로 연장, 또는 (2) 임금에서 물가 연계로 전환, 또는 (3) 자산조사적 기초연금.</p>
노르웨이	<p>신규 소득조사 연금이 기존의 정액 기여 공적연금을 대체, 새 연금은 최소한 현행법상 지급될 최저연금수준은 보장.</p>	<p>2011년 1월부터 명목 계정 제도가 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54-62년 출생자는 부분적으로 적용. 연금은 소득 상위 20년이 아니라 경력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기대수명에 연계 (2011).</p> <p>연금 지급액을 임금이 아니라 임금 - 0.75%에 연계.</p>	<p>62-75세 탄력적 연금 수급. 급여는 실질 수급 연령에 따라 조정 (2011).</p> <p>개인이 근로와 연금 수령을 조합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을 반드시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님.</p>				

제1장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폴란드	기존의 자발적 퇴직계정(IKEs)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에 새로운 세번째 층(third-pillar) 자발적 저축상품(IKZEI)이 2012년 도입.	2011년 5월부터 공개적인 연금금이 운용하는 두번째 층(second-pillar) 개인계정에서 종업원 기여분의 일부는 폴란드 사회보험기관(ZUS)에서 관리하는 신설 첫번째 층(first-pillar) 하위계정으로 전용. 그 결과 확정기여형(DC) 계정의 기여율은 7.3%에서 2.3%로 인하됐으나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3.5%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 잔여 5% (3.8%로 인하) 신설 하위계정으로 가면서 이전 5년의 명목 GDP 성장률 평균에 따라 연계. 전용은 폴란드의 예산 적자폭을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고려됨.	여성 60세, 남성 65세인 연금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2020년(남성과 2040년 (여성까지 남녀 공히 67세로 점진적 연장. 연금이 50% 삭감되면 조기수급 가능(여성 62세, 남성 65세). 2009년부터 몇몇 조기수급제도 폐지.		주식비율을 2020년부터 40%에서 62%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확정기여형(DC) 계정에 대한 투자제한 축소 (2011)	
포르투갈	2009년 3월 이후 입행한 은행원들은 공적연금제도에 자동 가입. 은행계좌 잔액이 10만 유로 이상인 자는 소득지원수당 수급자격 상실 (2013). 그 외에도 급여 갱신에 대해 엄격한 조건 도입.	2011년 공적연금 동결. 민간부문 기여율 11%에서 18%로 인상. 대신 고용주 기여율은 축소(2013). 목적은 인건비 인하. 월 1,5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에 대해 특별기여세 도입(2010-12).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 연장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사회보장기여율 인하 (2009년 9월). 2012년, 2014년까지 공적 제도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조기수급 중단.		채무를 적절히 헷지하고 투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준비기금(FFFS)을 위한 신규정 도입 (2009).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슬로바키아		2009년 6월까지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계정에서 공적 제도로 복귀 가능.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신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4월 다시 강제제도로 복귀.		2009년 7월부터 수수료를 자산의 일정비율로 감축했으며 이를 투자수익률과 연계.	2012년 4월부터 세가지 기금유형 - 보수적, 혼합형, 성장형- 을 도입했으며 새로운 주식 인덱스 펀드로 보완.	투자성과에 대해 원금보장 도입했으나 2012년 4월부터 가장 리스크가 적은 (채권) 펀드로 제한할 예정. 해외 뮤추얼 펀드에 대한 상한선을 2009년 50%에서 25%로 인하.
슬로베니아			정상수급연령을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남성은 63세에서 65세, 여성은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방안 제안. 전액 연금에 대한 조기수급 요건을 남성은 40년에서 43년 납입, 여성은 37.25년에서 4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1년 6월 국민투표에서 부결.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스페인	은퇴자 및 65세 이상으로 공적연금 미수급자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유족 급여를 사망자의 연금대상 소득의 52%에서 60%로 인상 (소득 한도 적용받음).	2027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연금제도의 관련 기준을 5년마다 기대수명 변화에 맞춰 조정 [2011년 개혁: 연계관련사항은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2013년 9월)]	정상 수급연령을 2013년에서 2027년 사이 65세에서 67세로 연장. 단, 완전 급여는 65세이고 납입기간 38.5년인 경우 가능 (2011년 개혁안, 2013년 발효). 지속가능성 조정은 2027년이 아니라 2019년까지로 예상 (2013년 9월 개혁안). 조기 수급 연령은 61세에서 63세로 연장. 단, 경제위기 시에는 61세. 완전급여를 위한 납입조건은 36년에서 37년으로 연장. 조기수급조건은 30년에서 33년으로 연장.	2011년 4월 개정법에서는 부분 은퇴 허용. 즉, 은퇴연령이 가까워진 근로자는 시간제로 근로하면서 비례적으로 삭감된 연금을 수급.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일제 일자리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은퇴연령 이후 근로 장려책: 이연된 연금에 대해 매년 2-4% 연금액 인상 (2011 개혁안).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스웨덴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초 공제 강화 2009년 도입. 2010년과 2011년에 인상.	NDC 제도의 기초가 되는 균형 메커니즘으로 변경. 2009년부터 마지막 해가 아니라 마지막 3년의 말에 완충기금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잔액을 산정. 이는 2010년 연금액이 4.5%가 아니라 3% 삭감됨을 의미.	근로소득세공제가 근로자 간의 노동력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2007 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과 2010년 강화. 근로소득세공제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큼. 2009년부터 고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 공식을 간소화. 2011년, 65세 미만 근로자의 공제액 상한선은 SEK 21,249였으며 65세 이상자는 SEK 30,000.	근로소득세공제가 근로자 간의 노동력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2007 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과 2010년 강화. 근로소득세공제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큼. 2009년부터 고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공제 공식을 간소화. 2011년, 65세 미만 근로자의 공제액 상한선은 SEK 21,249였으며 65세 이상자는 SEK 30,000.	스웨덴 연금청이 2010년 1월 국민연금운을 운용하던 두 개 기관의 업무를 인수. AP7에서 운용하는 신 기금은 2010년 출범했으며 민간부문의 투자옵션에 대한 정부의 저비용 대안을 상징.	2012년 완충기금의 투자규정 및 지배구조 검토.	
스위스		강제 사적연금에 대한 수익 최저율은 2009년 2.75%에서 2%로, 2012년부터는 1.5%로 인하. 2012년, 유급고용상태가 아닌 가입자의 최대 기여금이 19,350 프랑으로 인상 (최저 기여금의 50배).			부동산 투자 및 모기지 대출에 대한 상한선 인하 (2009).		
터키			수급연령을 2048년까지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8세에서 65세로 연장(2006).		투자목적으로 연기금을 파생상품에 사용하도록 2010년에 최초로 허용. 사적연금에 대한 임금에 적용되는 정부 세금 공제 폐지. 목적은 국내 저축 장려 (2012).	2013년 1월부터 정부는 개인 기여의 25%를 최대 총 월급여 978 리라까지 맞춤. 참여자들은 점진적 수급체계(vesting system)를 통해 정부 기여분에 접근할 수 있음 - 첫 3년 후 15%, 6년 후 35%, 10년 후 60%, 56세로 은퇴 시점에 100%. 탈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과거처럼 누적 가치가 아니라 순 수익률에 적용.	

표 1.2.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제정되었거나 시행된 연금개혁의 상세내용 (계속)

국가 및 주요 목표 별

	적용범위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근로 인센티브	행정적 효율성	다각화와 보장	기타
영국	2012년 10월부터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12만명 이상)에서는 직원들을 사내 제도 또는 국영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에 자동가입시켜야 함. 중간규모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서는 2015년 5월부터 이행. 기여는 2012년 소득의 2%에서 2016년 5%, 2017년 8%로 인상.	연금수급자들에게 60 파운드를 일시 지급 (2009년 1월). 2011년 4월부터 기초 공적연금을 CPI, 소득성장률 또는 2.5% 중 높은 것을 선택하여 인상.	고용주와 종업원 공히 2012-16년에 기여율이 1%에서 2%로 인상. 1% 기여 관련 세금공제 도입. 2017년 10월, 고용주는 3%, 종업원은 4%를 납부 (연금특별법 2011).	2018년까지 수급연령을 남녀 공히 65세로 연장. 2022년까지 66세로, 2026년까지 66세에서 67세로 연장 (2010년 10월 및 2011년 1월과 2012년,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개정법). DRA(Default Retirement Age) 65세를 폐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011년 10월부터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DRA를 이용해 퇴직하도록 중용할 수 없음.	새로운 NEST 제도가 2010년에 계획되어 2012년 시행. 이는 기존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비교해 투자-관리수수료를 크게 낮추는 것이 목적.	새로운 NEST 제도가 2010년에 계획되어 2012년에 시행.	2013년 1월, 근로연금부에서는 정액 단층(single-tier) 연금(STP)을 도입하여 기존의 복층(multi-tier) 공적연금제도를 대체하는 법률 초안을 내놓음. STP는 2016년 4월 시행 예정. 당 개혁은 근로 이력으로 인해 소득의 부가연금을 예상하는 이들에게 특히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 이는 국가제도를 크게 간소화한 것이며 퇴직저축의 명확한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또한 공적연금 수급연령의 연장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성인기 중 고정비용을 은퇴 후에 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공적연금연령을 설정하는 정기적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 공공부문 근로자의 기여율 인상 및 의회위원들에 대한 확장급여형(DB) 제도 개정 (2010).
미국	OASDI에 대한 고용세율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11년과 2012년 인하.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미화 250불 일시 지급 (2009년 5월). 급여 인하를 피하기 위해 연금을 2010년에 중단되었던 인플레이(COLA)에 연계하여 자동 조정. 그러나 급여인상은 2011년 동결.	2011년 12월, 사회보장제도의 지급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보울스-심슨 (Bowles-Simpson)” 계획: 사회보장 고용세율을 인상하고 급여, 특히 상위소득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상. 당 계획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힘.				

주: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NDC = 명목계정, GDP = 국내총생산, CPI = 소비자 물가지수, admin = 행정, cohort = 출생연도에 따른 집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534>

연금개혁이 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은퇴 후 총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총 소득 간의 비율인 총대체율은 미래 연금 수급액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총대체율 가치의 변화는 개혁이 수급자의 미래 최초 연금(initial pension)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은 소득수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자의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년간 빈곤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장의 결론은 “완전경력”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20세부터 해당 국가의 표준 연금수급 연령까지 매년 근로한 경우로 정의된다. 개혁에 관한 과거 OECD 분석자료(OECD, 2007 참조)에서는 대체율을 산출하기 위해 평균 소득을 사용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개혁을 분석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최저 소득자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섹션에서는 단순히 평균 임금을 곱하기 보다는 소득 분포 자료를 이용한 산출법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다룬다. 문제의 소득분포자료는 2008년부터 취합한 것이다. 이 자료는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의 나머지 부분에 등장하는 자료와 일관되도록 2012년 평균 소득을 사용해 가중치를 재 적용했다. 그리고 개인이 경력 전기간에 걸쳐 동일한 소득분포 지점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산출은 미래 예측적이며, 개혁의 각 단계에서 연금제도에 반영된 장기적 룰에 따라 완전경력 근로자를 가정하여 이루어졌다.

개혁에 관한 앞서의 OECD 분석자료(OECD, 2007, 2009)에서는 “현재의”(자료 저술 시점) 연금 제도를 1990년대 초의 제도와 비교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을 택하면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놓치게 된다. 그 격차를 메우고 각 개혁의 영향을 완전하게 평가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그 사이 기간 중 발생한 개혁의 모형화된 결과를 고려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유일하게 검토된 결과는 1990년대 초와 현재의 자료뿐이다. 이 집단에서는 개혁이 여러 소득 수준에 걸쳐 동일한 영향을 미친 국가와 좀더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킨 국가를 한번 더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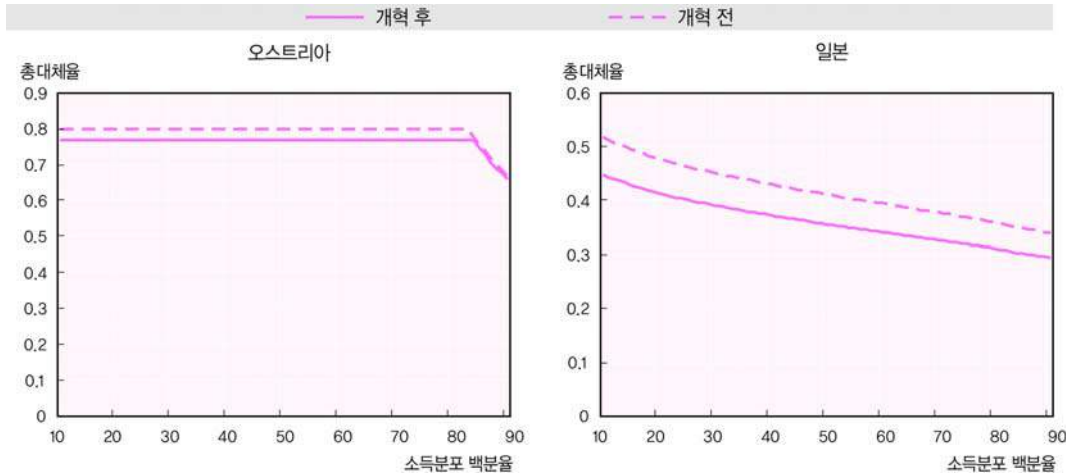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단 한번의 주요 개혁을 실시한 국가들

도표의 세로축은 수급개시 시점의 총대체율이며 가로축은 소득분포 백분위수를 나타낸다. “개혁 전” 곡선은 1990년대 초 실시되었던 연금제도에 적용되며 “개혁 후”는 최대 20년 후 도입된 가장 최근 -또는 “현재”- 제도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1은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연금제도개혁이 대체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두 국가 모두 지급률을 삭감했으며 모든 개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조치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최고 소득자 -기여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들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여러 소득 수준에 걸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 분포 꼭대기에 적용되는 대체율을 가장 크게 삭감하며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특별조항이 최근 연금 개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두번째 국가 그룹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의 경우 규모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 대한 삭감폭이 모두 적었다.

그림 1.1. 연금개혁이 대체율에 미친 동일한 영향. 오스트리아와 일본, 2009-13



출처: OECD 연금 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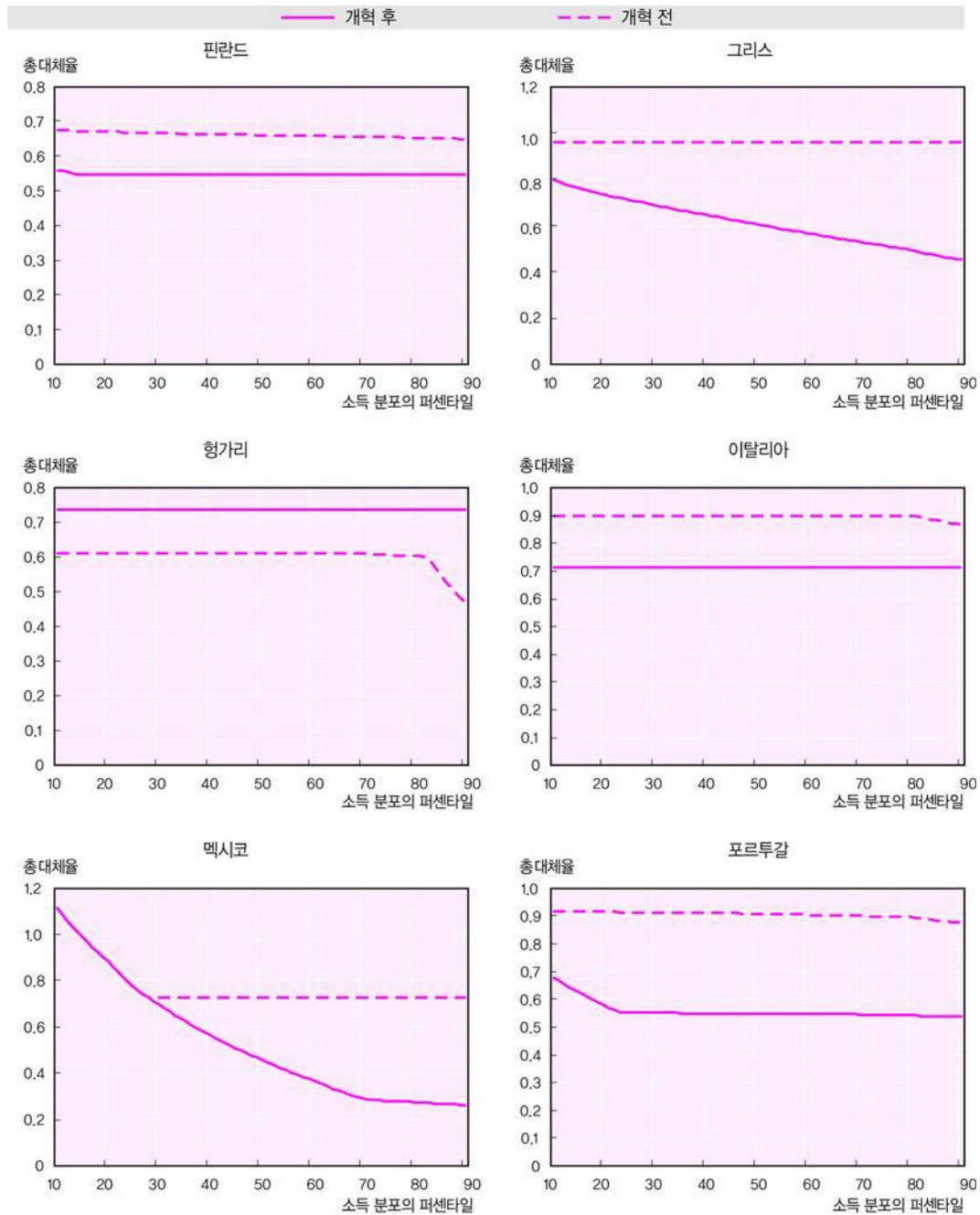
핀란드와 이탈리아, 이들보다 정도가 덜하긴 하지만 헝가리와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 일본처럼 대체율 하락폭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와 포르투갈의 경우 최저소득자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비교적 적었다. 즉, 핀란드의 경우는 15번째 백분율 미만, 포르투갈은 약 25번째 백분율 소득자였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의 연금 수급액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양국 모두 안전망 급여가 가장 취약한 계층은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그룹에서는 이탈리아가 기여금 한도 때문에 고소득자를 가장 적게 삭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개혁 전, 개혁 후 모형 둘 다 확정급여형(DB) 소득비례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헝가리의 2009년 연금개혁의 결과 지급율과 수급연령이 바뀌었으며 13월 지급도 사라졌다. 지급율 변화는 완전경력 근로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성의 은퇴연령이 5년 연장되었으므로 개혁 후 모형은 더 높은 대체율을 낳게 된다.

그리스와 멕시코는 소득 증가에 따른 미래 연금수급액 상승을 감축하고 있는데 멕시코는 30 퍼센타일(percentile) 미만 소득자의 경우 최저연금 수급자격이 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감축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개혁 전 대체율은 모든 소득 수준에서 100%를 약간 밑도는 일정한 수준이었다가 2010년 개혁에서 지급률을 삭감했고 2012년 개혁에서 수급연령을 연장했다. 대체율은 소득이 증가 하면서 현재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 소득자에 대해서는 80%, 90퍼센타일의 최고 소득자에 대해서는 45%이다.

그리스와 멕시코는 둘 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대체율 감소폭이 적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소득분포 전체에 걸쳐 감축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유는 그리스와 멕시코가 연금 규모에 한도를 두었고 멕시코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림 1.2. 연금개혁은 저소득자에게 더 큰 보호막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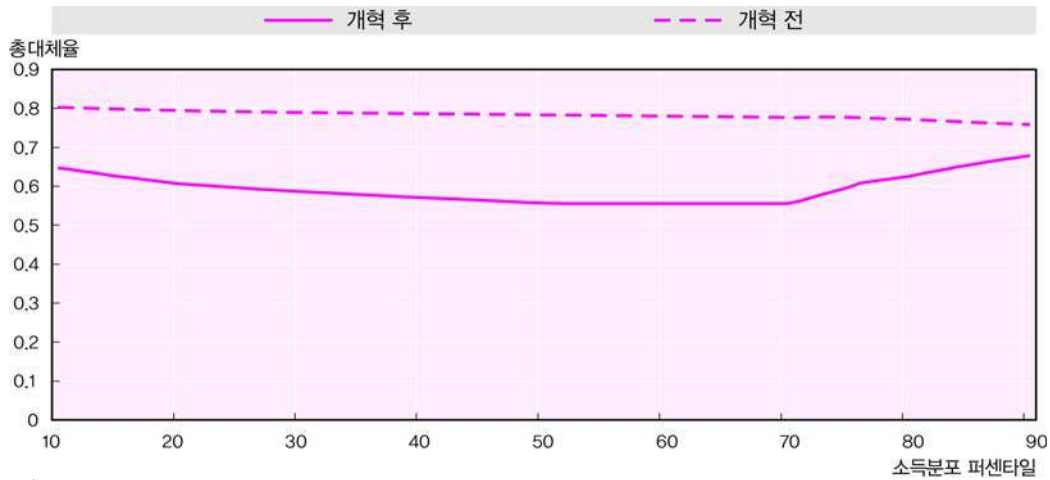
주: 헝가리는 1998년에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했으며 2009년 연금개혁의 결과 2012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러므로 당 제도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401>

그림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소득자의 대체율 보호에 예외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이 최고소득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으며 저소득자는 평균소득자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40 퍼센타일에서 70 퍼센타일 사이의 소득자가 개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인데 총 대체율이 20 퍼센트 포인트 이상 깎이게 된다. 반면 80퍼센타일 이상 소득자의 대체율 감소 정도는 10퍼센트 포인트 미만에 그쳤다.

그림 1.3.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최고소득자의 대체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420>

지난 20년간 몇 차례의 개혁을 시행한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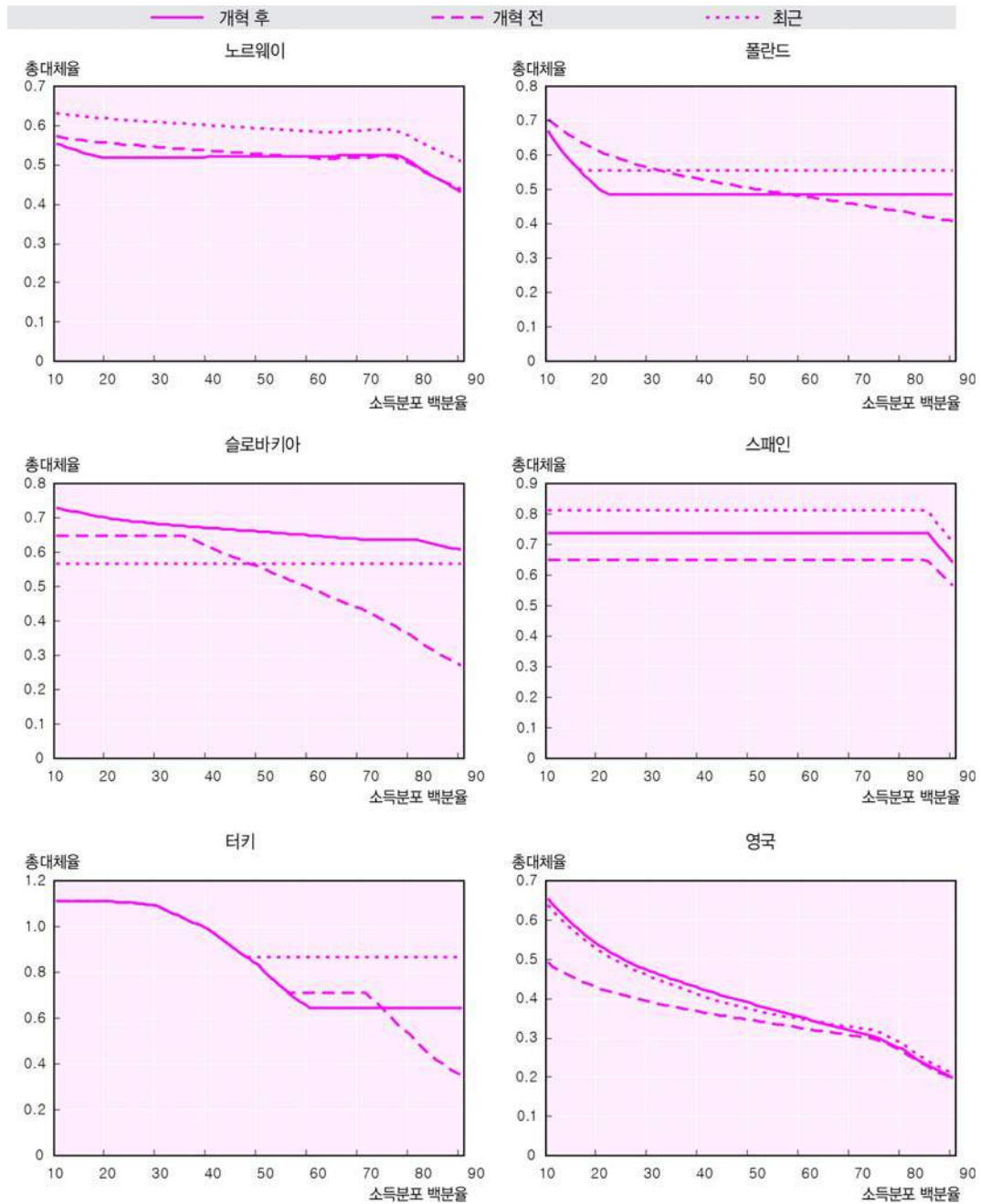
지금까지 다룬 모든 국가는 지난 20년간 한차례의 주요 개혁을 통과시켰다. 소득 분포에 미친 영향은 한결같았으나 저소득자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보호받았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연금제도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면서 많은 OECD 국가가 몇 차례의 개혁을 시행하여 이에 대응했다. 이에 해당하는 6개국인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영국이다. 이번에도 모든 개혁은 근로 경력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영향을 완전하게 평가하고자 했다.

1990년대 초(“개혁 전”)과 가장 최근의 법안(“개혁 후”) 사이의 기간에 시행된 개혁을 나타내기 위해 “최근”이라는 곡선을 도표에 추가했다. “최근” 개혁은 일반적으로 2008년에 이루어졌으며 한눈에 보는 연금(OECD, 2011) 최근판에 모형화되어 있다. 그림 1.4는 “개혁 후” “최근” “개혁 전”이라는 각 기간 중 발생한 개혁이 대체율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개혁 후 최종 대체율은 대개 1990년대 개혁 전 시나리오보다 낮다. 그러나 “최근” 또는 임시 개혁이 더 높은 대체율로 이어진 경우도 드물지는 않는데 노르웨이와 스페인에서는 소득분포범위 전체에 걸쳐서, 폴란드에서는 35퍼센타일 이상에서, 터키는 50퍼센타일 이상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슬로바키아 개혁 전 자료는 소득비례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개혁 시나리오는 2005년 도입된 부가적인 확정기여형(DC)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 조치로 재분배 성격이 상실되었는데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개별 연금 단지(pot)를 만들어 은퇴 시 연금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개혁 전후 소득대체율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439>

반대로 확정급여형(DB) 소득비례제도는 최종 급여 또는 평균 급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연금 단지에서 연금을 지급하므로 개별 기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저소득자에게 비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슬로바키아의 개혁 전 제도는 모든 소득 수준에 걸쳐 동일한 대체율을 보였는데, 다시 말해 중위소득 미만자의 대체율은 감소하고 그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대체율은 증가했다. 개혁 후 모형에 반영된 수급연령의 상당한 상승으로 최종 대체율은 개혁 전 시나리오나 “최근” 개혁 시나리오보다 높다.

폴란드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역시 두 단계의 개혁을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확정기여형(DC) 요소로 소득비례제도를 대체했고 다음으로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노르웨이 역시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는 재분배를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소득비례 요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다. 그 외에 그림 1.6의 3개국 -스페인, 터키, 영국-은 모두 연금제도에 소득비례적 요소를 갖고 있어 재분배 접근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60퍼센타일 미만 소득자는 개혁의 매 단계마다(약간) 높은 대체율의 혜택을 받았다. 2003년 최저, 선별적 연금 요소가 도입되고 향후 30년간 시행될 수급연령 상승이 반영되면 연금 제도에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60퍼센타일 이상의 소득자는 모든 소득 단계에서 거의 동일한 대체율을 보였는데 고소득자의 대체율 감소로 이어지는 다양한 연금 요소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금 자산에 미친 영향

총 연금자산은 노후소득의 할인된 생애 흐름의 총 가치를 측정한다. 이 지표는 대체율보다 넓은 범위의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은퇴 직후에 지급될 연간 연금만을 추정한다.

대체율은 특정 연도에 대한 단일 산출값이다. 이것은, 예컨대 급여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동(indexation)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금이 임금에 연계된다면 근로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의 상태는 상수(constant)가 된다. 하지만 물가에 연계되거나 물가 및 임금을 조합한 값에 연계된다면 연금수급자의 상대적 위치는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하락할 것이며 은퇴 후 수년간 급여액의 가치는 동일한 상대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총 연금자산은 가장 최근의 UN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미래의 기대수명 추정값의 변화도 고려한다. 이 수치는 총 연간 개인 소득의 배수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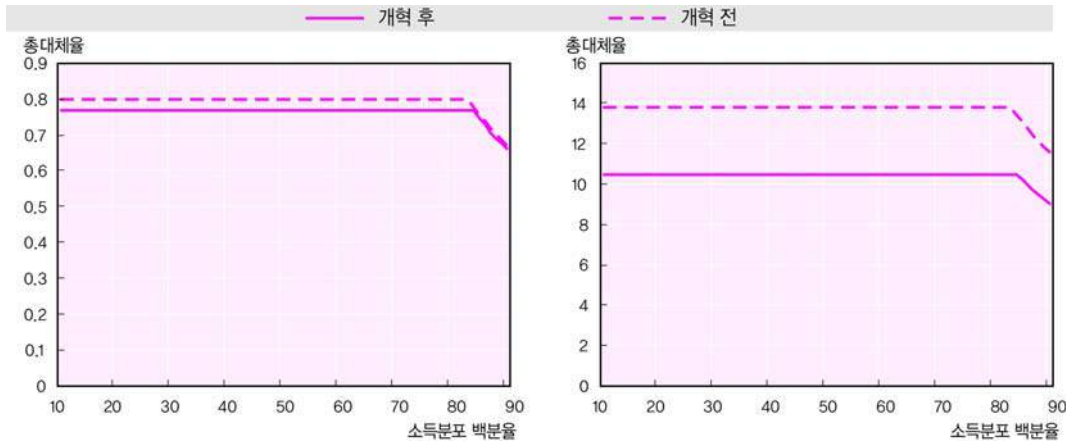
연금자산은 개혁의 영향, 특히 연금수급연령 연장의 영향을 좀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은 그 성격상,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지급 기간을 단축시킨다. 물론 기대수명의 연장 추정치와 은퇴연령 연장 속도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게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모형에서 여전히 노동시장에 20세에 진입하여 공식 은퇴연령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금 납입기간은 길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총대체율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 국가들도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개혁의 영향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총대체율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새로운 연금자산 수치와 인접해 나타냈다. 그러므로 각국은 두 지표 사이의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의 그래프는 대체율과 유사한 연금자산 곡선을 보여주고 있어 아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유일한 예외는 영국이었다. 영국의 연금제도 내에는 과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납입기간이 충족되면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기초 연금요소가 있다.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초연금의 평균 지급 기간은 단축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금-자산 요소(pension-wealth component) 역시 낮아질 것이다.

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개혁 전과 개혁 후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패턴을 따르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사례연구를 보면 두 개 그래프 사이에 흥미로운 비교점을 찾을 수 있다(그림 1.5).

그림 1.5. 오스트리아 사례 연구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458>

그림 1.5는 연금자산의 감소가 대체율보다 훨씬 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 후 총대체율은 대부분의 소득 분포에서 개혁 전 80% 대비 76.6%로 3.4 퍼센트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연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체율 하락은 연금자산 예상급부(pension wealth promise)의 더 큰 하락으로 이어졌다. 개혁 전 연금자산은 13.8로, 이것은 평균적으로 마지막 연 소득의 13.8배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혁 후 연금자산은 10.5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대체율이 조금만 하락해도 더 유의미한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혁이 미래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대체율과 연금자산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 대체율을 다루고 있는 그 외 국가들 -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은 연금자산 결과가 대체율을 따르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유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상세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쉽게 참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총대체율 추정치를 그림 1.6의 왼쪽에, 총 연금자산 결과는 오른쪽에 옮겨놓았다. 헝가리의 경우, 개혁 전과 후의 그래프가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두 그래프의 상대적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는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이는, 개혁 후 대체율이 더 높지만 연금수급연령의 상승율이 기대수명의 예상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승률이 높는데다 임금 연계에서 물가 연계로의 변화가 더해져서 연금자산의 하락이라는 논리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연금자산 수치의 주요 변화는 2004년 소득비례제도의 급여산식 변화(급여승률에서 포인트제로 개혁)와 2005년 확정기여형(DC) 급여가 도입되면서 발생했다. 그 외에도 최근의 개혁은 미래의 은퇴 연령에 기대수명이라는 요소를 부가했다. 이러한 연금수급연령의 상승 속도로 인해 최고소득자의 연금자산이 약간 하락하게 될 것인데 이는 기여금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그 외 요소로는 연금의 포인트 값에 따라 증가하는 계수 및 연금 삭감에의 조정 등이 있는데 이는 약간의 연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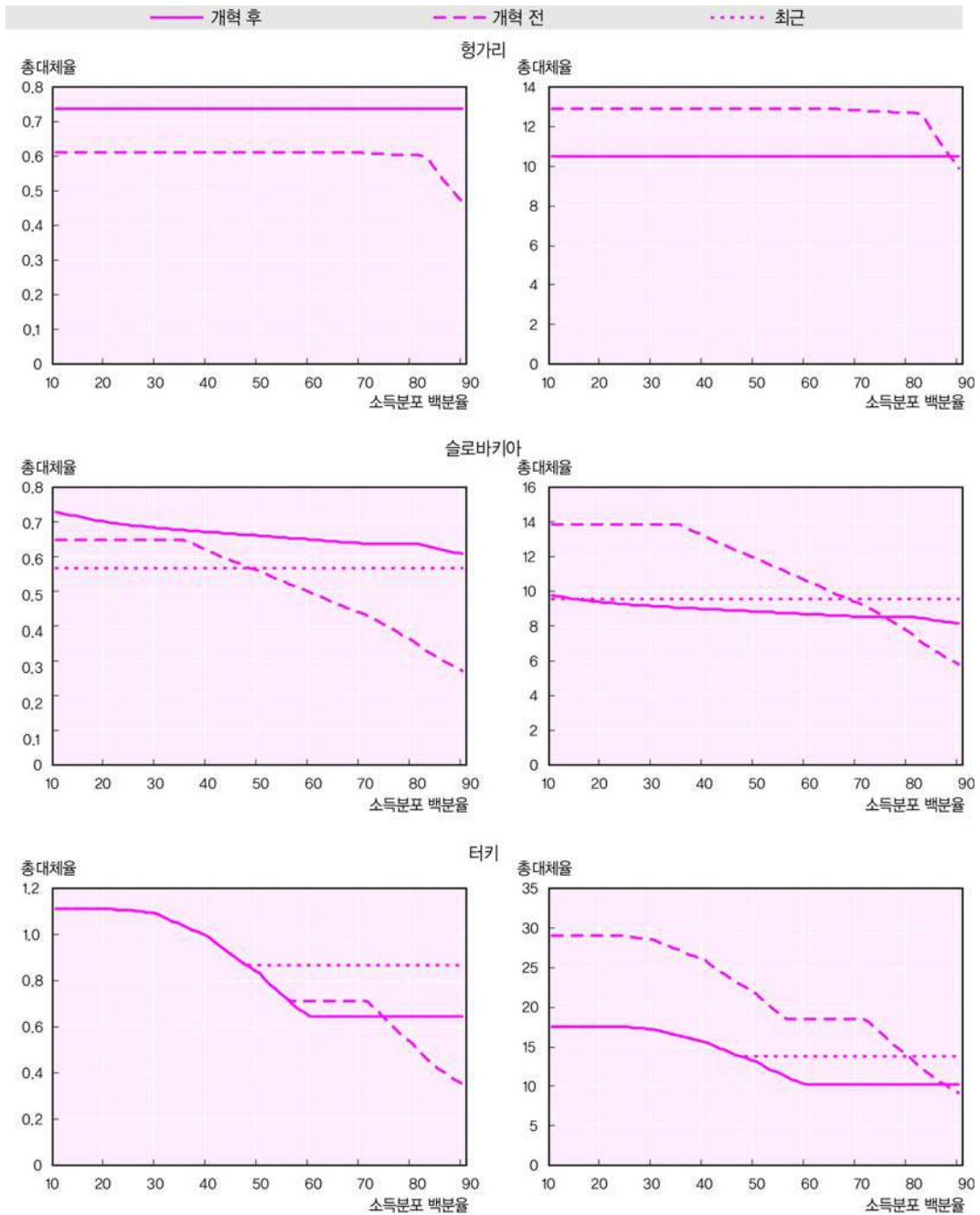
터키는 연금수급연령을 지배하는 규정 때문에 다른 OECD 회원국가의 비교가 어려운데 개혁 전 제도에 따르면 남성은 45세, 여성은 40세에 연금수급이 가능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개혁 전 시나리오에서 연금자산 수치가 멕시코를 제외한 어느 국가보다 높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금수급연령의 상승은 최저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개혁 전 제도와 “최근” 제도 사이의 기간동안 대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결과는 연금자산이 40% 하락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개혁에서는 지급률을 삭감했는데, 이는 “최근” 개혁과 개혁 후 연금 사이에 대체율과 연금자산이 둘 다 하락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고려된 결과를 보면 각국의 연금 제도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급률에 발생한 모든 변화가 포함되었으며 직접 기여 제도를 모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수급연령의 변화를 도입한 모든 법안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다음 섹션에서는 개혁이 연금제도에 미친 영향을 더욱 잘 측정하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의 변화부분을 제거했다.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이 섹션 도입부에서 지적했듯이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는 연금 개혁은 그 외 다른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OECD 연금 모형화 프레임워크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수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율만 고려하면 잘못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금수급연령과 관계가 없는 개혁은 평가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개혁으로 인해 확정기여형(DB) 제도의 지급률이 다소 낮아지고 연금수급연령이 5년 연장된다면, 전반적인 대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체율이 삭감된다면 실제로 더 낮아져야 한다.

그림 1.6. 총대체율과 총 연금자산의 비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477>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려면 세가지 시나리오를 모형화해야 한다. 첫번째는 모든 예정된(“개혁 후”) 변화가 포함된 현재의 법정 제도이다. 두번째는 동일한 법정제도에서 연금수급연령 연장만 제외한 제도(“연령연장 후”)이다. 세번째는 “연령연장 후”나 “개혁 후” 조치가 도입되기 전 1990년대 초반에 시행되었던 “개혁 전”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수급연령 연장의 영향을 다른 개혁 조치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문제의 국가들 -호주, 체코, 프랑스, 독일, 슬로바키아, 터키-에 대한 세가지 모형의 결과는 그림 1.7에 나타나 있다. 첫 네 개 국가의 개혁은 수급연령의 연장뿐이었고(호주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 슬로바키아와 터키에서도 수급연령 연장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다른 주요 연금제도 개혁도 제도화했다.

그림 1.7의 왼쪽 그래프는 총대체율을, 오른쪽은 연금자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끌어낼 수 있는 주된 결론은 수급연령의 변화는 연금자산보다는 대체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은 동일하고 가장 높은 수급연령까지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대체율도 당연히 높아져야 하므로 특별히 의외의 결론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 기간이 단축된다면, 수급연령의 법정 연장이 기대수명의 예상 증가율 미만이면 연금자산은 증가할 것이다.

터키는 개혁 후 변화를 개혁 전 현황과 비교하면 대체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수급연령은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도, 다른 대상 국가들이 수급연령을 5년에서 7년 높인 반면 터키는 20년 높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연령연장 후부터 개혁 후까지 60 퍼센타일 미만 소득자의 대체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두 경우 모두 최저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체율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금자산의 가치는 수급연령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낮는데, 이유는 물론 납입기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근로기간이 20년 연장된다면 은퇴 후 기간은 모형이 기대수명의 변화를 반영한다 해도 대략 그만큼 단축될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대체율 상승은 수급연령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터키와 비슷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연금자산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수급연령이 7년 상승한 것이 지급률 변화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다른 국가의 경우, 대체율은 수급연령이 개혁 전 수준으로 남아있을 경우 대비 현 제도에서 항상 더 높았다. 그러나 연금자산은 호주, 체코, 독일에서는 완전 개혁 시나리오에서 하락했고 프랑스의 경우 상승했다.

그림 1.7. 수급연령 변화가 없는 경우 총대체율과 총 연금자산의 비교, 199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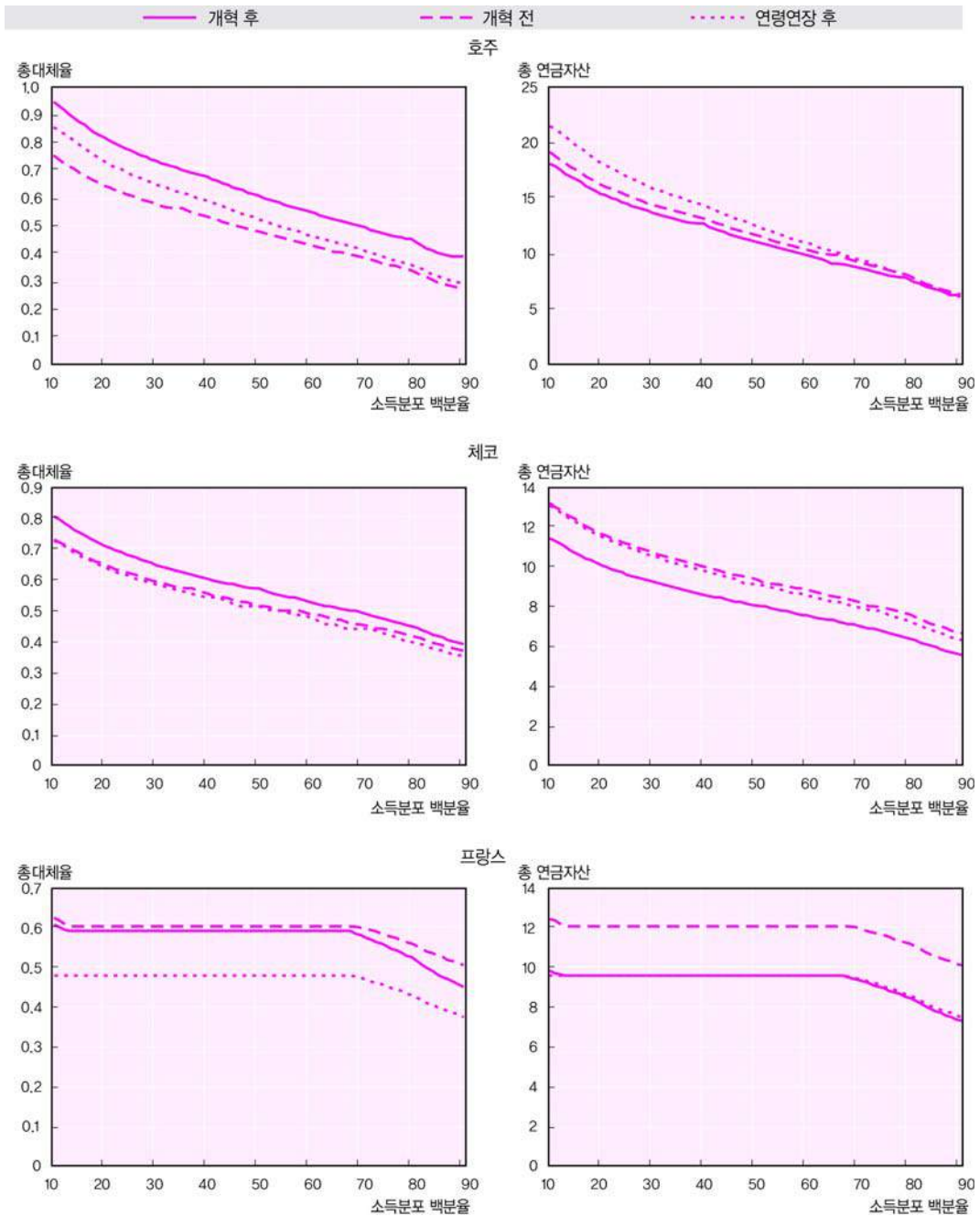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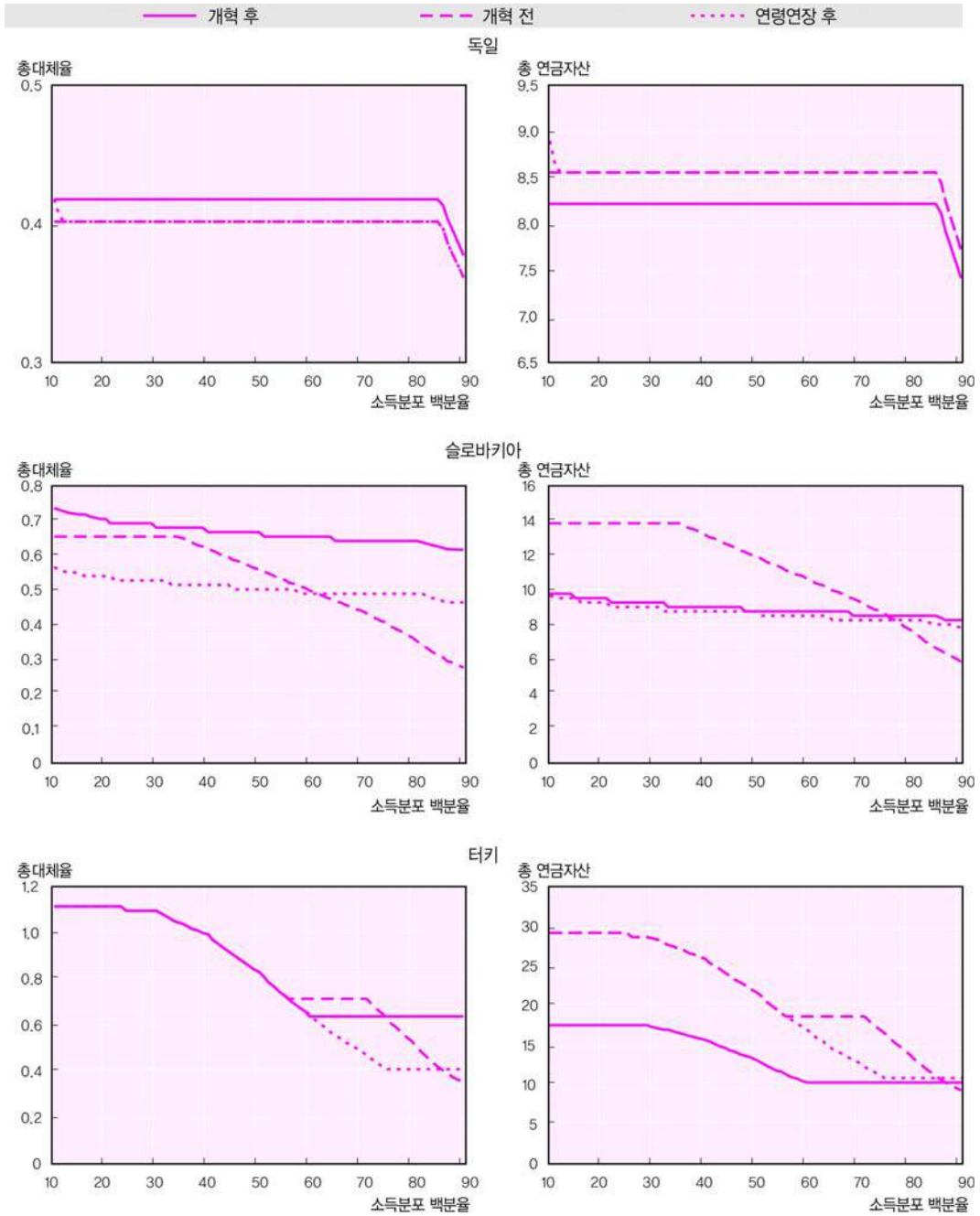



그림 1.7. 수급연령 변화가 없는 경우 총대체율과 총 연금자산의 비교, 1990-2013 (계속)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496>

결론과 정책적 함의

이 장에서는 지난 5년간 OECD 국가에서 시행된 연금 개혁을 다루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 연금개혁이 서로 다른 소득수준에 속하는 개인의 미래 연금예상금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한다

정상 수급연령의 상승은 지난 5년간 가장 일반적인 개혁내용이었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대다수는 금세기 중반까지 수급연령이 최소 67세가 된다. 몇몇 국가는 연금수급연령을 기대수명 변화에 직접 연계하여 67세를 초과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연금제도를 완전히 변경한 대규모의 구조적인 개혁은 드물었다. 그러나 체코, 이스라엘,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을 결정했다. 그와 동시에 두 개 국가는 민간에서 관리하는 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는데 전자는 폴란드, 후자는 헝가리이다.

빈곤층은 현재 보호받고 있지만 향후 모든 수급자의 연금이 삭감된다

금융 및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에는 연금수급자들이 대체로 보호받았고 심지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금액 임의 증액의 혜택을 본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수급자가 재정안정화의 맥락에서 지출 삭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연금 급여액은 2009년 이래 증가하지 않았지만 수급자들은 여전히 생산연령 인구보다 소득 감소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연금 급여액 수준이 2011년에 동결되었으며 13월과 14월 지급은 고액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체코는 연금의 연계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미래의 연금 증가액 역시 축소되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은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들이 시행한 일련의 개혁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 적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이러한 감소분을 일부 만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여금 납부 기간 1년당 개혁 전에 비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급여액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연금의 목표 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50%에서 40%로 하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금 수급액 지급률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여기간 1년당 2%에서 1.78%로 줄어들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최대 지급률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연수가 늘어났다. 다양한 소득 기준선에서의 지급률은 체코와 영국에서도 감소했다.

신흥국 근로자의 가입율이 높아져야 한다

OECD 비 회원국의 경우 최근의 개혁은 주로 가입율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들 국가의 가입율이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도시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 거주민들에게 사회적 부조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새로운 농촌지역연금(rural pension)을 도입했다. 이것은 2011년 지역차원의 실험을 거쳐 2012년부터 봉급생활자가 아닌 도시 거주민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5월 인도 정부는 과거 정부 공무원들만 가입했던 신 연금제도에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했다. 이 제도는 현재 부분적

으로 공동 기여(matching contribution)와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비조직 부문 근로자 3억 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남아공은 구체적인 개혁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가입률을 높이고 급여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수많은 자문 보고서를 만들었다.

가입률이 좀더 높은 OECD 비회원국의 경우 지난 2년간 큰 개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에서는 NDC 연금이 정액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었다. 200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개인 계좌 제도가 폐지되었고 모든 근로자와 이들의 계좌 잔액은 새로운 단일 층의 부과방식 제도로 이전되었다. 브라질에서는 공적 제도에 변화는 없었지만 2012년 5월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확정기여형(DC)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부문 근로자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한다. 나머지 두 나라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연금 제도에 어떤 변화도 가하지 않았다.

향후 급여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향후 급여액은 모든 소득분포구간에서 감소하겠지만 양상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저소득자들을 급여액 삭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멕시코에서는 최저연금 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 중 하위 30%에 근로 기간 중 필수 납입 기간을 채우기만 했다면 완전한 보호를 제공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소득분포 하위 25%의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연금급여액 삭감이 훨씬 적었다. 스웨덴은 이 점에서 특이한 사례인데 저소득자들은 평균 소득자보다는 보호를 받았지만 개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위 20%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고 가장 큰 급여액 삭감의 타격을 입은 것은 40퍼센타일에서 70퍼센타일 사이의 근로자들이었다.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최고소득자들이 개혁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상위 10% 근로자의 미래 연금액은 개혁 전에 비해 절반수준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역시 최고소득자의 연금액은 약 40% 삭감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미래 연금 수급액의 감소가 소득분포 전체에 걸쳐 모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핀란드만이 최저 소득자들의 삭감액이 약간 적은 수준이다. 헝가리에서는 향후 소득 대체율이 최근 개혁 이후 증가할 예정이지만 이는 제도 상의 변화때문이라고 보다는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때문이다. 개혁전과 개혁 후 제도는 확정급여형에 기반하고 있다.

조기 수급 요건은 강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개혁 분석은 완전경력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조기수급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조기수급 요건을 강화하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벨기에에서는 조기수급 급여액에 대한 고용주 기여를 늘렸으며 덴마크에서는 자발적 조기수급제도가 2012년 1월 이후 축소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조기수급에 대한 연간 연금 급여액 삭감비율이 6%에서 7.2%로 늘어났으며 그리스에서는 조기수급연령이 53세에서 60세로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조기수급이 최소한 2014년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기타 사정때문에, 수급 연령까지, 때로는 그 이상까지 근로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 근로가 가능한 근로 조건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을 가진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하고 삭감되지 않은 급여를 받기 위한 경력기간의 연장과 젊어서부터 67세 또는 그 이상까지 일하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정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 최근(recent) 및 개혁 후(post-reform) 연금 개혁


연금 적격 연령	조정된 퇴직 인센티브	급여 산식 기간 변화 또는 자격 요건	기대수명과 연계 및/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정기여형(DC) 제도	기타	
호주 개혁 후	여성 노령 연금은 에서 세로 상승 남녀 노령연금이 년에 세에서 세로 추가 상승 예정	공적연금에 대한 새로운 소득조사 혜택			공적연금의 소득조사에 대한 감액을 증가	
오스트리아 개혁 후	조기수급연령이 세 상승 세에서 세 사이 연계연금 여성의 수급연령을 남성에 맞춰 조정	조기수급에 대한 급여액 삭감 도입 및 증액 예정 조기수급 제한	최고 년에서 년으로 연장	지속가능성 요인 도입 논의 중	지급률 감축 고액 연금에 대해 연계 요건 강화	
체코 개혁 후	수급연령을 년까지 세로 점진적 상황조정 수급연령은 년 이후 매년 개월씩 상승 예정 모형에서는 수급연령을 세로 가정	증액 변경 및 조기수급 수급연기에 대한 감액	기여 년수를 년에서 년으로 연장			
핀란드 개혁 후		세 근로자에 대해 지급률 확대	마지막 년에서 생애 평균으로	기대수명의 배수 년부터	소득조사적 공적연금의 기초부분 과거 소득의 재평가 비중은 높이고 연금 연계는 낮춤	
프랑스 개혁 후	모형에 따르면 수급연령을 세로 연장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조기수급 수급연기 급여액 조정 변경	최저 기여 기간 연장 공적연금의 소득측정은 최고 년에서 최고 년으로 연장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최저 기여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예정	목표최저소득은 최저임금의 두 제도 모두 재평가가 실질적으로 물가에 연계	
독일 개혁 후		세 이전 수급에 대해 급여액 삭감		제도 의존 비율이 악화되면서 재평가 및 연계 다시 삭감	자발적 확정기여형 연금에 세제혜택	연금소득에 부과되던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그리스 개혁 후	수급연령 세에서 세로 상승			년부터 수급연령이 기대수명에 연계		

표 1.3. 최근(recent) 및 개혁 후(post-reform) 연금 개혁 (계속)

연금 적격 연령	조정된 퇴직 인센티브	급여 산식 기간 변화 또는 자격 요건	기대수명과 연계 및/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정기여형(DC) 제도	기타	
헝가리 개혁 후	수급연령이 여성 세 남성이 세에서 남녀 공히 세로 점진적 상승 년에서 년이 세에서 세로 다시 상승	지급률은 초기 연도에 더 높지 않고 선형으로 나타남	연금산정은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	확정기여형 제도의 연금 산정을 통해	년 확정기여형 제도 종료	최저연금 폐지(예정 요건이 강화된 연금 지급액 연계 도입 연금도 소득세의 대상이 됨)
이탈리아 개혁 후	남성의 수급연령은 세에서 세로 여성은 세에서 세로 공히 세로 상승	명목상 연금 산정을 통해 조기수급 급여액 조정	장기근속 연금 필요 연수가 년에서 년으로 연장	명목상 연금 산정을 통해	확정기여형에서 명목계정으로 고액 연금에 대해서는 연계 요건 강화	
일본 개혁 후	수급연령 세에서 세로 상승		연금 산정 대상 소득에 보너스도 포함	예상되는 부양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급여액 조정	지급률 감축	
멕시코 개혁 후				강제적 사적 확정기여형 제도가 공적 확정기여형 제도를 대체		
노르웨이 최근				강제적 고용주 확정기여형 기여		
노르웨이 개혁 후				년 월부터 명목 계정 제도		
폴란드 최근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게는 조기수급 감액		최종 년 중 최고 년 연속에서 생애 평균으로	공적제도의 명목 연금 산정과 확정기여형 연금 산정을 통해	신규 근로자와 세 미만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제도 가입 의무화	기초연금 폐지에서 명목 계정으로
폴란드 개혁 후				년부터 확정기여형 계정의 기여율이 에서 로 감소 년부터 로 점진적 증가 나머지는 로 감소해 두번째 제도로 이동		
포르투갈 개혁 후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남성 수준인 세로 상승	수급연령에 대한 증액 및 조기수급에 대한 감액 도입	마지막 년 중 최고 년에서 생애 평균 소득으로	급여액에 기대수명 조정	고액 연금에 대해 연계요건 강화	
슬로바키아 최근	남녀 공히 수급연령을 세로 연장		마지막 년 중 최고 년에서 생애평균 소득으로	확정기여형 제도의 연금 산정을 통해	확정기여형 제도를 신규근로자에게는 의무화 기존 근로자는 자발적 가입	확정기여형에서 포인트 제도로

표 1.3. 최근(recent) 및 개혁 후(post-reform) 연금 개혁 (계속)

연도	연금 적격 연령	조정된 퇴직 인센티브	급여 산식 변화 또는 요건	기대수명과 연계 및/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정기여형(DC) 제도	기타
2027	15	(DC) (DC) (DB)				
슬로바키아 개혁 후				수급연령을 기대수명에 연계	기여율이 1년 월 일부터 인하되었으나 1년 후로 인상	
스페인 최근			수급연령에 대해 소득 증액 도입			
스페인 개혁 후	수급연령을 1년까지 세로 연장		년부담 연금 파라미터와 기대수명 간 자동 연계			지급률 산정 변경
스웨덴 개혁 후			최고 1년에서 생애 평균으로 공적 소득비례제도	확정기여형 제도의 연금 및 명목 연금 산정을 통해 명목 계정에서 추가적인 지속가능성 조정	확정기여형 제도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적용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에서 확정기여형 으로 변경	확정기여형 에서 명목 계정으로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세 혜택 폐지
터키 최근	수급연령 세로 연장					지급률 산정 변경
터키 개혁 후						지급률 감축
영국 최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 및 보장 크레딧 수급요건을 세에서 세로 연장	공적연금 수급 연기에 따른 증액 확대 일시불 옵션 추가			고용주에게 확정기여형 제도 선택권 제공 의무화 이해당사자	기초연금 증가 자산조사적 보충연금 확대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누적성 강화
영국 개혁 후	수급연령 세로 연장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553>

연금 적정성 문제는 잔존해 있다

여기서 논의된 연금개혁의 재정적 영향을 완전하게 살펴볼 수는 없는데 상당수의 개혁이 최근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제 6장에 나와 있는 비용 예측 자료에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최근 개혁으로 인해 미래의 연금 지출액은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우려가 일부 국가에서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와 영국처럼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제한적이었던 국가들은 자동 가입 제도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적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호주에서는 같은 이유로 강제적 적립방식의 연금에 대한 기여가 늘어났고 독일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에게 세금공제를 해주는 정책을 선택했다. 사적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분배상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오랜 기간동안 충분한 금액을 기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주

1. 다양한 시나리오 상의 모형에 포함된 모든 개혁의 세부내용은 이 장 마지막의 표 1.3에 포함되어 있다. 개혁 전 제도는 이들 개혁이 이행되기 전에 시행 중이던 제도를 의미한다.
2.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도 이 잔여 집단에 대해 표 1.2에 언급되어 있다.

참고문헌

- OECD (2012), OECD Pensions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69401-en>.
-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1-en.
-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9-en.
- OECD (2007), Pensions at a Glance 2007: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7-en.
- OECD (2006), Live Longer, Work Longer,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35881-en>.

제 2 장

노후의 걱정 생활수준을 위한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의 역할

제 2장은 현재와 미래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보다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다. 노후의 생활수준은 다른 여러 요인의 영향도 받는 만큼 이 장에서는 주택자산, 금융자산, 공적 제공 서비스의 가치가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도입

모든 측면의 변화 -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변화 - 로 인해 OECD 국가들은 자국의 연금정책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인구고령화의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많은 국가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했고 여기에는 공적연금제도의 축소와 현재 및 향후 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축이 포함된다.

공적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노후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적응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밀려날 위험을 감수할 수 없거나 감수하지 않을 근로자들은 특히 그러할 것이다. “감수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은퇴했거나 곧 은퇴하게 되는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로 기간을 늘리거나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 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적절한 노후소득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장에서는 OECD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적정성의 정의와 측정 방식을 살펴본다. 노후소득 적정성 판단의 결정요인은 물론 공적 또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 급여액 수준이지만 부가적 소득 또는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다른 출처들도 존재한다.

OECD 국가의 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근로연령 인구와 달리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이며 저축액이 상당해서 이를 인출해 노후 소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 의료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서비스 등 - 역시 연금수급자들에게 특히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주택과 금융자산, 공적 제공 서비스가 적절한 노후 생활수준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료는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자주 취합되지 않아 연금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출처가 노후의 적정 생활수준 유지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명확한 최신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초로 실시한 이번 분석에서는 노인의 주택소유와 자산보유의 일정한 양상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탐구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적정성 논의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적정성

적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연금 적정성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적정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히 사회복지혜택에 적용될 때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말이다. 또한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지 또는 광의의 의미로 적정한 노후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일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¹

협회의 정의에서는 노후소득원이 어떤 절대적인 최저수준을 충족하면 적절한 노후소득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고 시간이 흐름이 따라서도 달라진다. 광의의 정의를 보면 적정성이라는 것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은퇴자의 금전적, 비금전적 니즈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광범위한 의미 -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정의 -에서는 노후소득이 한 근로자의 소득을 대체하여 생산활동을 하던 시기에 누리던 것에 비견할만한 생활수준을 은퇴 후에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노후소득이 근로소득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협회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절대적, 상대적 기준으로 노후소득빈곤을 측정한다.² 광의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소외 위험 등 금전적, 비금전적 매트릭스를 조합하고 있다. 가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산출된 두 유형의 지표 모두 과거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확보 가능하다.

연금대체율은 소득 대비 비율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이 유지되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한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급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소득의 지표이며 공적연금 제도 규정을 이용해 산출된다.³ 대체율은 한 사람의 과거 소득에 관련하여 개인 관점의 적정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평균적인 국가차원의 소득에 관련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고령층에게 사회안전망 급여 - 선별적, 기초, 최저연금 등 -를 제공하여 빈곤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하고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최저 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별로 이러한 급여액을 비교하는 것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관한 국가 전략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노인 빈곤과 여타 노후소득의 출처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미래 대체율에 대한 시각을 풍부히 함으로써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관해 좀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고자 한다.

적정성의 금전적, 비금전적 측면

금전적, 비금전적 측면은 현재 은퇴자의 생활수준과 그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확보하고자 할 때 둘 다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다.

금전적 적정성은 소득이나 지출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일련의 요소들이 웰빙을 결정한다면 소득은 연금수급자가 최저 생활수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경제적 웰빙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구, 혹은 가족의 일정 기간 - 주 단위건, 월 또는 연 단위건 - 동안의 소득을 측정함으로써 판단해왔다.

소득의 개념은 현금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은 의료 및 장기 재가 요양처럼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 중에 현금을 저축하고/또는 주택 등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현금 등가물 급여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금전적 적정성 매트릭스는 개인의 지출인데 이것은 소득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접근방식이다. 지출은 시간이 흘러도 대체로 일정하게 발생하긴 하지만 습관, 취향,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다. 지출은 또한 소득에 비해 측정 오류가 많아 정확히 기록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지출, 월간, 분기별 지출을 연간 변수로 취합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니즈의 수, 유형, 빈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 명 이상의 환자나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빈곤한 가구의 경우 동일 소득에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가구보다 빈곤하게 살 확률이 높다.

(비)적정성에 몇 가지 측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물질적 결핍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득만 분석해서는 포착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생활수준의 적정성 측정

현금과 비 현금 소득

소득의 개념을 크게 잡으려면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들을 정의해야 한다. Haig-Simons의 종합적 정의를 참고한다면 소득을 한 사람의 연간 소비 가치에 그 사람의 건강의(실제) 가치의 순 증감을 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⁴ 이러한 정의는 현물 소득(예: 자가 주택의 거주지 가치)과 자산의 실 가치의 순 증가분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암묵적으로 소득의 비 반복적 출처를 의미할 수 있다.⁵

하지만 소득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Haig-Simons와 다르다. 첫째, 여기에서는 발생한 자본이득을 무시한다. 가구 조사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이미 실현되어 소득으로 창출된 자본이득만을 측정한다.⁶ 둘째, 물가인상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자산(wealth)과 기타 비현금성 구성요소가 가구 소득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부는 무형, 유형 등 광범위한 자산들로 구성된다. 유형 자산은 금융자산(예: 현금 예금, 주식, 생명보험, 채권, 뮤추얼 투자펀드, 사적연금)과 실물자산(예: 주택, 자동차, 금, 보석) 등이다. 무형 자산은 현물 서비스 보조와 사회적, 인적 자본 등이다.

주택 자산을 측정하고 이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것은 특히 복잡한 일이다. 주택은 자산이자 소비재이지만 그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소위 “귀속 임대료” - 집주인이 자가 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현금 가치를 계산하는 법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다. 국가마다 다른 자료와 방법을 사용해 귀속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는 이 섹션 뒷부분에서 “노후소득 중 주택 소유: 귀속 임대료의 개념”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주택 자산은 또한 다른 자산보다 유동성이 덜하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고, 담보대출 상환 수수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이유로 인해 주택은 소득의 흐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다른 유형의 투자보다 측정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Verbist and Matsaganis, 2012). 많은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금전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실제 생산 비용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비교적 쉽게 투입 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생산 비용을 이용하는 경우 또 유리한 점은 수급자의 주관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⁷ 그리고 이것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산출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자산 자원과 이들이 창출하는 소득의 흐름 측면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자 한다면 과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은 총 기준 또는 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소득세, 부유세, 사회보험기여금, 가구간 이전 등의 반영 여부를 의미한다. 국가 세금-혜택 제도의 특징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쳐 적정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혜택 제도에 대한 좋은 국가간 비교 자료가 나와 있긴 하지만⁸ 여러 자산 유형에 대한 과세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⁹

소득을 측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득 단위 -개인 또는 가구처럼 더 큰 단위-의 성격이다. 대부분의 개인이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모여서 한 가구의 니즈를 충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성을 분석하는 자연스러운 출발점은 개인 소득보다는 가구 소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열악한 경우에는 그 가구의 일부 구성원만 그 영향을 받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가구 수준에서 개인 수준으로 쪼개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Atkinson et al., 2002; Förster and Mira d'Ercole, 2009). 해당 가구/가족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서 개인의 시각도 반영하기 위해 균등화 척도가 사용된다.¹⁰ 이렇게 되면 한 가구의 니즈가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성인이나 아동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다.

빈곤 측정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협의로 정의하려면 노후 빈곤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년간 OECD 국가들이 사회정책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노후 빈곤을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제 중 여전히 우선순위에 올라있는데, 그 이유는 일부 노인 집단이 빈곤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자들, 특히 여성들, 그리고 장기적인 개인 요양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¹¹

최근 수십년간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인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급여 수급액은 대체로 삭감되었으며 근로 경력도 이전 세대에 비해 불안정해졌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노후 빈곤을 점검하고 방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빈곤은 서로 다른 최저소득과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각국의 전통, 정치적 프로세스, 경제성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통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각국의 빈곤을 측정하게 되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Förster, 1994).

절대빈곤. 절대빈곤 매트릭스는 사람들이 최저 생활수준을 누리려면 일정 수준의 자원(또는 재화와 서비스)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 수준 즉 최저 생활수준 미만의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 절대적 빈곤 기준은 공통적으로 가구 예산 측정값에 바탕을 둔다. 빈곤 기준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만 이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을 빈곤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국가별로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가장 확실한 예가 난방비인데 따뜻한 국가보다는 추운 국가에서 난방비가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도 소득과 함께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빈곤의 의미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Fisher, 1995; Madden, 2000). 박스 2.1은 절대 빈곤 측정을 위한 주된 접근방식 중 일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스 2.1. 절대적 빈곤 측정지표

절대 빈곤의 첫번째 지표 중 하나는 1901년 영국인 Rowntree가 만들었다. Rowntree 라인에서는 문제의 분석 단위 -가구 또는 가족에 대한 최저생존수준을 충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재화와 서비스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어 사용했다. 그는 연료나 주거 등 다른 유형의 지출을 포괄하는 고정된 금액의 돈을 이 바스켓의 금전적 가치에 더해 기준선을 설정했다. 그는 가구소득이 이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를 빈곤한 것으로 분류했다. 그의 방법은 바스켓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식료품 제외)를 잘못 선택했다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 다른 절대적 빈곤 측정지표는 미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Molly Orshansky (1963-65)가 설정한 빈곤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샨스키는 서로 다른 가족 규모에 대해 최저 식료품 예산 -미 EFP(Economy Food Plan)에서 결정- 비용에 3을 곱해서 빈곤 기준선을 산정했다. 3이라는 숫자는 농무부의 1955년 가구 식료품 소비 조사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 조사에서는 3인 가족이 해당 연도에 소득(세후)의 약 3분의 1을 식료품에 소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빈곤 기준은 지금도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계되며 처음 만들어진 이래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Orshansky, 1965, 1069).

그러나 오샨스키의 방법은 몇 가지 기술적 오류를 갖고 있다. 하나는 분석의 단위로 가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거하는 커플은 별도의 분석 단위로 간주하고 있어 이들의 자원은 한데 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추정자료에서는 식료품 지출이 가족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트릭스에서 가정하듯이 3분의 1이 아니라 약 6분의 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배수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오샨스키 지표는 대부분의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비용이나 일부 현물 급여의 가치 등 가치분 소득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일부 구성요소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1969년 이래 몇몇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팀에서 빈곤기준 조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세계은행의 빈곤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하루에 1인당 미화 1.25달러를 빈곤선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필요한 자원의 가치로 보는 시각이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5년 미 달러 구매력평가지수(USD PPP)로 나타난 이 추정 빈곤선은 샘플로 선택한 빈곤국가들의 국가 빈곤선 평균값이다.

또 다른 지표는 최저소득기준(MIS, minimum income standard) 접근방식(Bradshaw et al., 2008) 또는 기준 예산(www.referencebudgets.eu 및 Vrooman, 2009 참조)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MIS 접근방식에서는 영국의 예산 기준들 -Family Budget Unit(FBU)과 Consensus Budget Standard(CBS)-을 개발하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최고의 것을 조합하고자 한다. FBU 접근방식에 따라 전문가 패널이 예산 기준을 구성하고 있으며 CBS는 일반인들이 만들었다. CBS 접근방식에서는 최저기준을 정의하는데 협상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MIS 프로젝트의 결론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론은 빈곤 조건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른 빈곤 지표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전통적인 빈곤측정지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니즈는 과소평가하고 주택 비용을 감안하고 난 후의 연금수급자의 니즈는 과대평가해왔다.

기준예산 접근방식에서는 여러 가구 유형에 대해 전형적인 지출 패턴을 살펴 괜찮은 생활방식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생애 주요 품목들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비재를 모아놓은 바스켓은 건강상 혹은 신체적 자율성을 갖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보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하여 구성한다. 이 방법론을 선호하는 이들은 이 방법론이 특히 복지수당 및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에 지침으로 삼기에 유용하며(Nordenanckar, 2009) 가구 소득과 소비 니즈를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한다.

절대적 빈곤 측정지표는 분석단위(가구, 가족, 개인)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가간 비교시에는 구매력 평가지수를 감안해야 하며 기준으로 동일한 상품이 포함된 바스켓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에는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

1. 평균 소득. 빈곤선은 평균 소득의 비율로 표현되므로 가구 소득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2. 국가 생활수준. 빈곤선은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부유한 국가에서 빈민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덜 부유한 국가에서 빈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이들보다 소득이 높다.

실제로는 상대적빈곤선은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에 비례한다. 중위 소득은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에 대해 민감도가 덜하기 때문에 좀더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OECD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빈곤선을 중위 균등화 소득의 50%로 설정한다. 소득이 중위 균등화 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은 “빈곤의 위험”에 놓였다고 본다. EU에서는 60% 기준(주택비용 반영 전)을 사용하며,¹² 더 낮은 기준은 “극심한 빈곤” 측정지표로 때때로 사용된다(Brewer et al., 2010).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빈곤율(headcount ratio, HCR)”인데 이 지표는 단순히 빈곤 기준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을 보여준다. 2000년대 후반의 HCR을 보면 OECD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12.8%가 빈곤한 상태였다(그림 2.8). 하지만 이 숫자로는 빈곤선 미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빈곤한지를 알 수가 없다. 빈곤의 정도는 빈곤층의 중위소득이 빈곤선 밑으로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빈곤 격차 지표로 포착된다(그림 2.9).

물질적 결핍. 빈곤 지표는 빈곤의 비 금전적 측면을 다루는 물질적 결핍 측정지표로 보완된다. 여기에서는 괜찮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내용에서 추출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역시 적정한 생활수준을 구성하는 항목의 유형과 숫자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양하다. 그 결과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물질적 결핍의 정도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U의 물질적 결핍 지표는 다음 중 최소 세가지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설문 응답자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1.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2. 매년 1주일간 휴가
3. 밀린 비용(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료, 공과금 또는 할부금) 청산
4. 식사할 때 고기, 생선 또는 단백질 대용품은 매일 섭취
5. 가정에서 충분한 난방 유지
6. 세탁기 보유
7. 컬러 TV 보유
8. 전화 보유
9. 자동차 보유

목록의 아홉 가지 항목 중 네 개 이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설문 응답자는 “심각한 물질결핍” 상태로 간주된다(Guio, 2005, 2009; Guio et al., 2009).¹³

물질 결핍의 다른 예 중에는, 네 가지 지표를 조합하여 구성한 Carstairs and Morris(1991) 종합지수도 있는데 네 가지 지표란 남성의 실업, 낮은 사회적 지위, 자동차 소유여부, 가족 수 대비 작은 집 거주 여부이다. 다른 지표들 역시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 및 삶의 만족 지수 등 결핍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Boarini and Mira d'Ercole, 2006).

많은 비 EU 국가에서도 금전적 빈곤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결핍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Saunders and Wong(2012)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대다수의 호주인들이 필수품이라고 여기는 항목들을 갖고 있지 않고 가질 여유가 없는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결핍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품이란 오늘날 어떤 호주인이건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Saunders and Wong(2012)에 나온 목록은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복, 의료적 니즈, 주택, 사회적 참여, 저축부터 자동차 보험, 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목록이 전문가와 학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지역사회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두 지역(온타리오와 유콘)에서는 영양상태와 의복에서 주택, 교통까지 망라하는 목록을 가지고 물질적 결핍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온타리오의 물질결핍 조사(OMDS)에서는 목록에 나타난 항목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 이유가 해당 가구가 여유가 없어서인지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과 뉴질랜드의 가구 조사에서는 결핍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Kenworthy, 2007).

퓨 연구소의 글로벌 태도 조사에서는 물질적 결핍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국가별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가족을 위해 식료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 가족을 위한 의료 보건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다, 가족의 의복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 이 조사는 40개국 이상의 3만8천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Boarini and Mira d'Ercole, 2006).

연금의 소득대체율

적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 -은퇴자들이 근로기간 중 누렸던 것에 비견할만한 생활수준을 누리야 한다는 시각-은 자연스럽게 연금대체율이라는 측정지표로 이어진다. 연금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공적, 사적 또는 둘 다)이 근로 시의 소득을 대체하는 수준을 측정한 값이다. 총 연금대체율 또는 순 연금대체율로 표현되며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안하기 전후의 대체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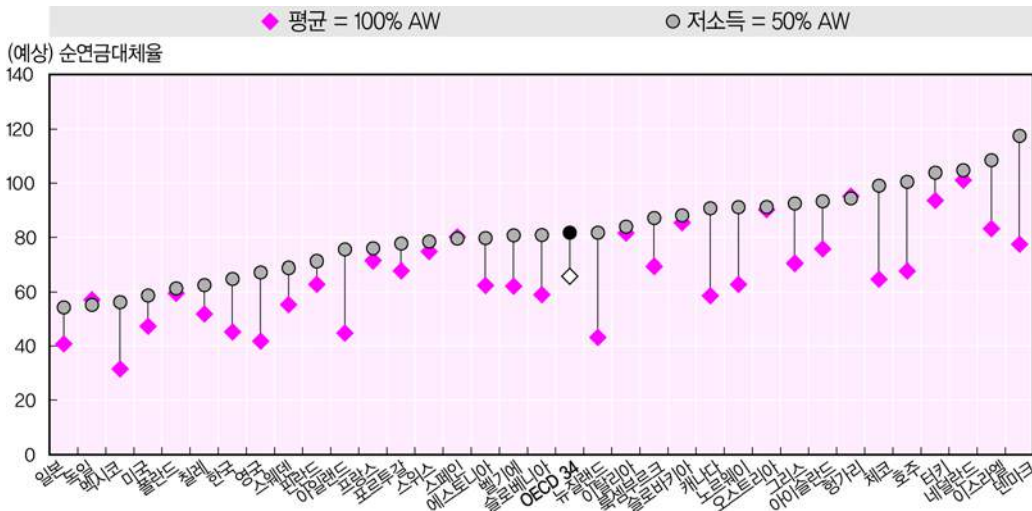
이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은 대체할 소득을 선택하는 것이다. 대체율은 최종 소득(은퇴 직전) 대비 연금의 비율로 널리 정의된다. 그러나 한눈에 보는 연금에서는 연금 지급액을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로 표현하고 있다(국가차원의 소득증가에 맞춰 재평가). OECD 연금 모형의 표준 가정은 한 사람의 소득이 국가차원의 평균 소득에 맞춰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소득 또는 평균 생애 소득을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대체율은 어떤 대체율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가는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다. 쉬운 출발점은 은퇴 후 생활수준은 근로 시 누리던 생활수준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연령의 사람들은 교통비나 근로 관련 지출 등 은퇴자들은 더 이상 필요없는 여러 니즈를 충족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근로 시 저소득자였던 사람들은 100 혹은 그 이상의 대체율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고소득자였던 사람들이라면 대체율이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도 있다.


그림 2.1에서는 2012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경력 근로자(full-career works)들의 국가 평균 대비 평균 및 저소득 수준에서의 OECD 국가별 순 연금대체율(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소득 대비 연금 급여액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대체율은 이 근로자들이 각국의 표준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경력 전체에 걸쳐 현재의 연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되므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이며 미래 수급액에 적용된다. 저소득자의 순 연금대체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로 모두 100%를 넘는다. 대체율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멕시코, 폴란드, 미국으로 저소득자들의 연금 급여액이 은퇴 전 소득의 50에서 60% 사이에 불과하다.

그림 2.1. 2012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완전 경력 근로자들의 여러 소득 수준에서의 이론적인 순 대체율, OECD



주: “평균” 및 “저” 소득 수준은 100% AW와 50% AW를 각각 의미한다. 본 보고서의 제 7장을 참조한다.

출처: OECD pension models. 본 보고서의 제 4장 표 4.7 “소득별 순연금대체율”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800>

최저급여와 선별적 급여의 수급 및 비중

이 섹션에서는 미래의 이론적 연금대체율보다는 일부 특정 공적연금 프로그램에서 빈곤한 연금 수급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 보고서의 표 3.2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노후 빈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첫번째 층(first-tier) 재분배 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자산조사적 연금, 기초연금, 최저연금이 그것이다. 모든 OECD 국가가 이러한 유형의 일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만 경력 단절이 잦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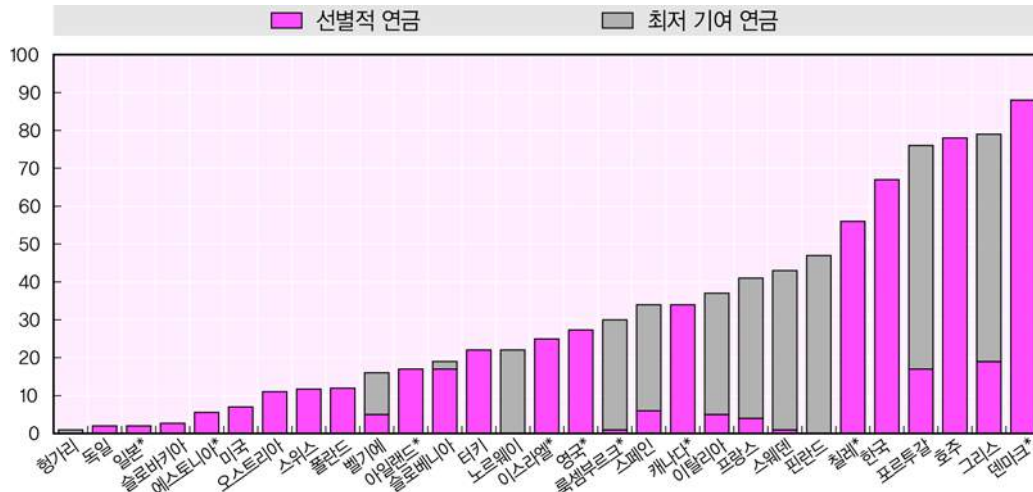
이들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가치 분석은 많은 국가에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

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제도를 통한 급여가 부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들 간에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 퇴직급여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22.9%이다. 열한 개 국가에서는 이 안전망 수준을 상회하는 최저연금을 제공한다.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평균 퇴직소득-기여 최저연금 포함-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28.2%이다.

노인의 약 3분의 1이 평균적으로 기초, 선별적, 최저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2.2의 적용 범위는 비 기여 안전망 급여 및 기여 최저연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림 2.2. 65세 이상 인구의 선별적 연금(targeted) 및 최저연금 수급현황, 2012년



주: 국가 명 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첫번째 층(first-tier)이 기초연금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본 보고서 제 3장의 “기초, 선별적, 최저연금” 지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819>

해당되는 경우, 도표에서는 “선별적”연금과 최저 기여연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저 기여 연금이 더 높다. 비율이 가장 높은 덴마크에서는 은퇴자의 거의 90%가 평균 급여의 최대 18% 수준까지 안전망 급여를 수급한다. 수급률은 그리스에서도 높게 나타나는데 은퇴자의 거의 20%가 평균 급여의 약 14% 수준과 동일한 선별적 연금을 수급한다. 동시에 약 60%는 기여최저연금을 수급하는데 이것은 평균 급여의 36% 수준이다(포르투갈은 수급자 및 급여 수준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스의 비율은 부가적인 것으로, 약 75%의 연금 수급자가 하나 이상의 안전망 급여를 받고 있다.

호주(65세 이상 인구 중 거의 80%가 자산조사적 연금액 수급)와 핀란드, 스웨덴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최저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40%를 초과한다. 반면 독일, 헝가리, 일본, 슬로바키아에서는 은퇴자 중 불과 2%만이 최저연금이나 선별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안전망 급여의 가치-총 기준과 순 기준 모두-는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평균 총 소득과 비교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이들 급여의 적정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이 안전망 퇴직급여 수급자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료가 나와 있는 22개 OECD 국가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별적 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순 소득의 26%인 반면 평균 총 급여(pay)의 19%에 불과하다. 이보다 높은 수준인 기여최저 연금은 순소득의 33%, 총 소득의 25%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세후 안전망 급여 가치를 빈곤선과 비교하면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는 순 선별적 연금 및 최저연금 급여는 2009년, 각각 빈곤선의 40%와 93% 수준이었다. 반면 벨기에에서는 둘 다 빈곤선의 100%를 초과했다(Whitehouse et al., 2011 참조).

많은 국가에서 중요성이 큰 문제는 자산조사적 급여의 수급(또는 미 수급)이다. 사회적 낙인, 수급 기준에 대한 무지, 신청 비용 및 복잡성 등의 이유로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이 100%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09-2010년 자료를 보면 자산조사적 연금 크레딧 요건을 갖춘 이들 중 62%에서 68% 정도만이 이를 수급했다. 하지만 수급 금액은 사람들이 수급해야 할 금액의 73%에서 80%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수급액이 적은 사람들이 수급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수급은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04년 담당건수의 58-66%, 총 수급액의 68-76%를 차지한 것으로 영국 정부의 노동연금부에서는 밝히고 있다(2006, 2010).

Matsaganis et al. (2010)에서는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해 최근 증거자료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추정치를 보면 담당건수 및 총 급여액 둘 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스의 사회연대 급여 미수급율이 63%였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미수급율은 29%에서 46%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스페인의 보충연금은 수급률이 10% 미만인 반면 비 기여 최저연금의 미수급률은 수급권자의 약 44%, 지출 기준으로는 4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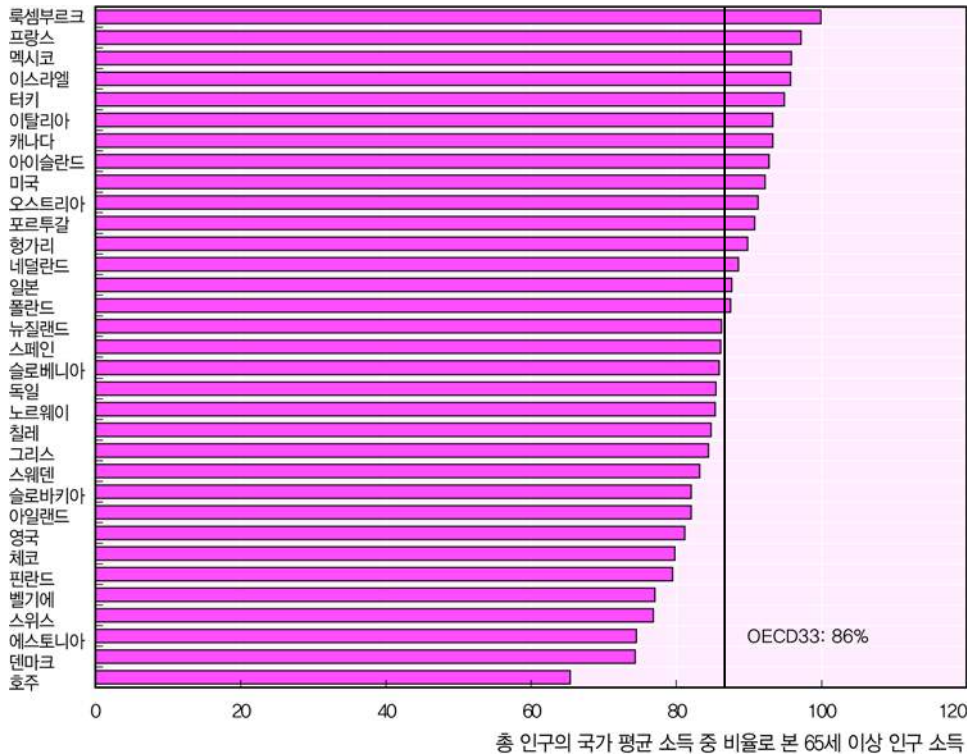
낮은 수급률은 미국에서도 문제인데 2001년 자산조사적 급여의 -보충적 보장소득(SSI)- 수급자격이 있는 노인 중 61-68%만이 실제로 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5). 추가 자료를 보면 장애로 인한 SSI 수급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Elder and Power, 2006),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1974-2004년 기간 동안 약 20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캐나다는 노인의 자산조사적 급여 수급율이 가장 높는데, 최근 추정자료에 따르면 약 87%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¹⁴(수급률에 관한 자료는 Wiseman and Yeas, 2008; Poon, 2005; Currie, 2006 참조).

은퇴 후 생활수준: 노후소득 및 빈곤

OECD 노후소득 현황

연금 수급자의 웰빙을 한눈에 살펴보려면 전체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된다. 그림 2.3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평균 균등화 소득이 퇴직급여제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유사함을 보여준다. 2000년대 말에는 OECD 국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노후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의 86.2%에 해당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 미국에서는 93%를 초과했다. OECD 3개국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에서는 국가 평균 균등화 가구 가치분 소득의 7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
 균등화 가구 가치분 소득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의 자료를 가지고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838>

노후소득의 소득원

노후소득의 출처를 분석하면 이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좀더 명확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2.4를 보면 은퇴 후 사람들은 소득 비례 또는 자산 조사적 급여 형태의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하는데 34개 OECD 국가에서 이들 급여가 노후소득의 평균 59%를 차지한다.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가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40%, 한국과 칠레에서는 20% 미만에 불과하다.

칠레와 한국, 멕시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근로로 충당하며 일본은 44%,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근로 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많은 노인들이 공적 소득 제도를 이용해 완전 기여를 할만큼의 근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수급액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림 2.4.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원
총 가구소득 중 비율



주: 근로소득은 소득(고용 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둘 다 포함한다. 자본은 비 연금성 저축의 수익률을 통한 소득뿐 아니라 사적연금을 포함한다.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의 자료를 가지고 저자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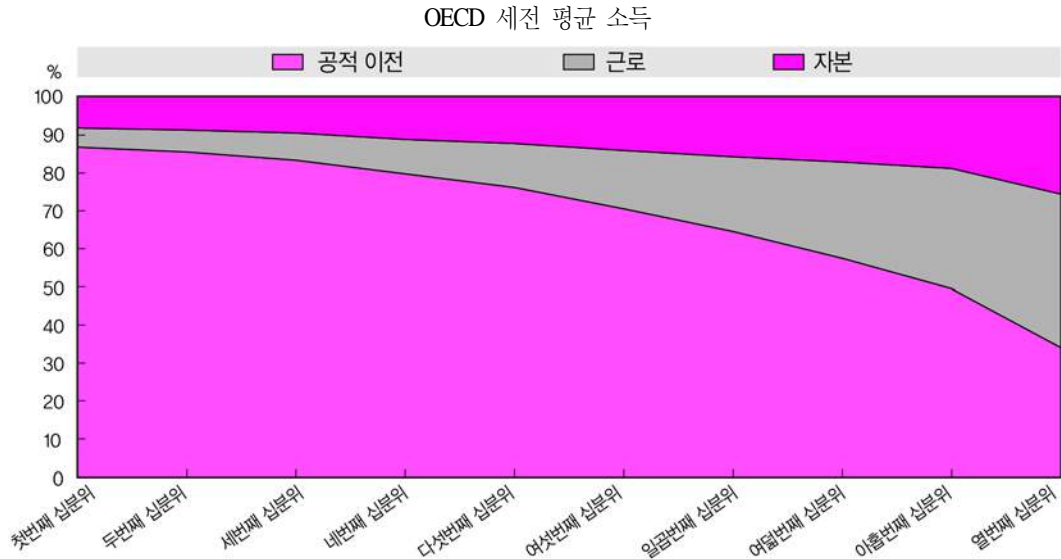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857>

또는, 은퇴 연령의 연장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미국에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는데 미국은 정상 수급개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41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자들은 2010년 당시 여전히 60세에 연금수급을 시작했는데 근로를 통한 소득이 노후소득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자본-주로 사적연금의 형태-은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소득의 30%에서 45%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조합한 퇴직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빈곤한 노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공적 이전에 의존하며 부유한 노인들은 근로나 사적연금 혹은 기타 자본 소득에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그러나 멕시코나 한국처럼 소득분포의 하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 중 상당부분을 근로가 차지하는 OECD 국가도 있다(그림 2.5) (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Disney and Whitehouse, 2001).

그림 2.5. 소득 십분위 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원, 2000년대 후반



주: 근로소득은 소득(고용 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둘 다 포함한다. 자본은 비 연금성 저축의 수익률을 통한 소득뿐 아니라 사적연금을 포함한다.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의 자료를 가지고 저자가 산출;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Suchomel, M., A.C. D'Addio, A. Reilly and E. Whitehouse(2013), "Income Inequality in Oldage Over Time in OECD Countries: Trends and Determinant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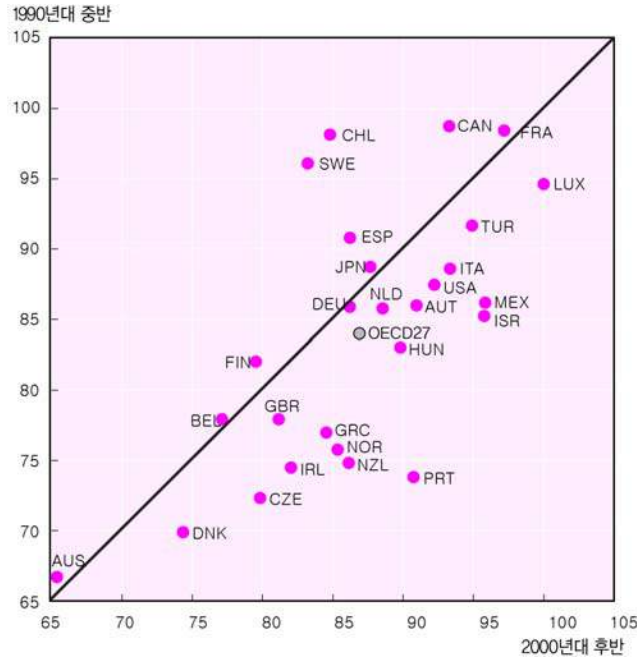
그림 2.5는 OECD 국가의 소득 분포 십분위별 노인의 평균 소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 기반 소득의 비율은 소득 최저 10% 중 5% 미만부터 최고 십분위의 40% 이상까지 증가하고 있다. 자본 소득의 분포 역시 부유한 소득 집단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 그 정도는 약하다. 이에 따라 공적이전은 최저 십분위에서는 소득의 85%를 차지하지만 최고 십분위에서는 40% 미만이었다.

호주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에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의 비중이 여덟 번째 십분위나 아홉 번째 십분위에서 정점을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 중 가장 부유한 10%는 그 밑의 십분위 인구에 비해 사적연금을 포함한 자본 소득이 더 컸다(Suchomel et al., 2013).


반대로, 칠레와 한국, 멕시코, 터키는 가장 부유한 노인 집단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칠레와 한국에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 크게 나타났고 멕시코는 특이하게도 최고 십분위 노인들의 공적이전 비중이 그 아래 십분위에 비해 높았다. 이 결과는 아마도 개혁 전 공적연금제도의 연금 급여액이 높았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양상인데 자본과 근로가 둘 다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어 최저 십분위와 최고 십분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소득분포의 중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공적 이전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chomel et al., 2013).

이전의 OECD 분석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자료가 나와 있는 21개 OECD 국가에서 고령인구의 소득이 총 인구 소득보다 좀더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OECD, 2008M 2013a). 그림 2.6에서는 2000년대 후반(X축)과 1990년대 중반(Y축) 노인들의 상대적 소득을 비교하면서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45도 선 오른쪽에 위치한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이 전체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왼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림 2.6.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노인소득 추이
총 인구 소득 중 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본 보고서의 제 5장 그림 5.2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895>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총 인구 대비 노인들의 소득 증가가 10퍼센트 포인트 이상으로 가장 컸다. 체코와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도 7에서 9퍼센트 포인트로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8개국에서는 노인소득 증가가 전체 인구 소득 증가에 미치지 못했으며 가장 큰 하락은 칠레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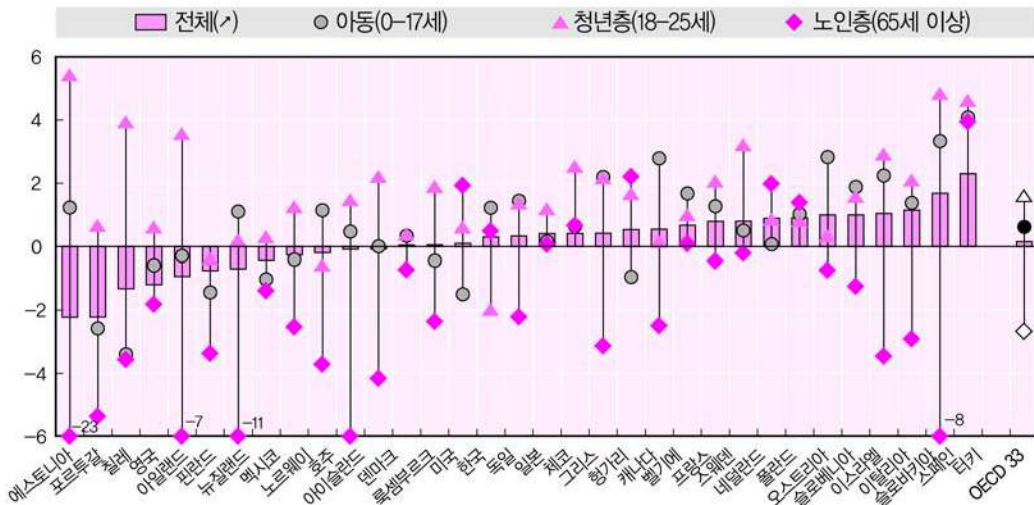
연금제도의 적용범위와 만기는 초고령 노인의 급여소득 증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이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가는 연금수급초기부터 높은 급여를 수급했던 각 수급자 집단에 대해 이득을 주었다.

노인빈곤율

지난 수십년간 노인들의 상대적 소득이 늘고 빈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적 상황은 대체로 개선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 OECD 연구 결과(OECD, 2008)에 나타난 하락세는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도 계속되었다(그림 2.7). 이 3년간 OECD의 평균 소득 빈곤은 아동은 12.8%에서 13.4%로 청년층은 12.2%에서 13.8%로 상승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상대적 소득빈곤은 15.1%에서 12.8%로 줄었는데 20개국에서는 하락했고 약 2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국가는 터키, 캐나다, 폴란드뿐이었다.

그림 2.7. 연령별 빈곤율 변화, 2007-10



주: 소득빈곤은 현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이용해 측정.
 출처: OECD(2013),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New Results from th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Policy Brief, OECD, available at www.oecd.org/els/soc/OECD2013-Inequality-and-Poverty-8p.pdf.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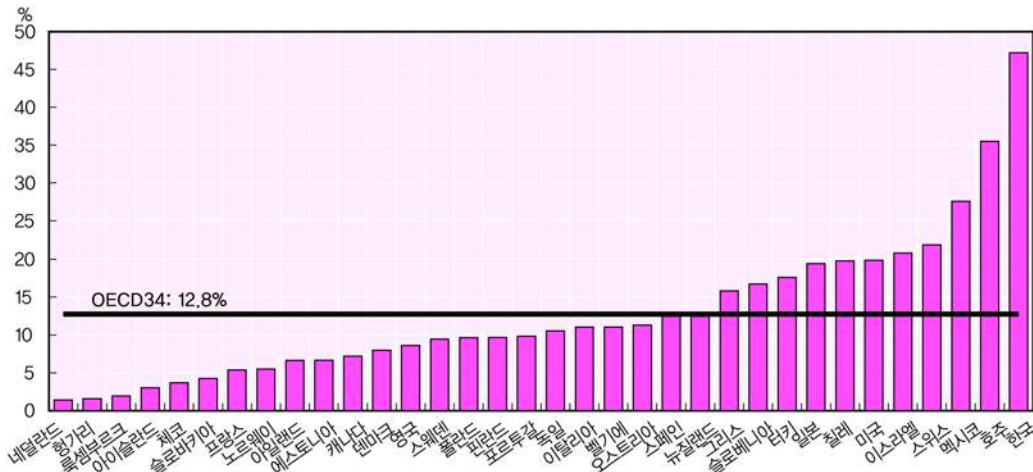
중위 균등화 가구소득의 50% 기준선에 대해 측정하는 노인빈곤의 위험은 OECD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 평균 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2.8에 나타난 빈곤율은 노인 빈곤 위험을 부분적으로만 포착하고 있는데 공적 제공 서비스의 가치 등 비 현금성 보조는 사용된 소득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8에 나타나 있는 비율은 국가별로 존재하는 큰 차이를 가리고 있다. 즉, 2000년대 후반, 호주와 멕시코, 한국, 스위스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이 소득빈곤층이었다. 노후 빈곤 위험은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슬로베니아, 터키, 미국에서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¹⁵ 반면, 체코와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5% 미만이었다.

빈곤 지표는 빈곤선에 가깝다면 최저 노인 및 안전망 급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 (Whitehouse et al., 2011). 금액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빈곤 혹은 비 빈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 아일랜드에서는 기초연금이 8,870유로인 반면 빈곤선은 10,775유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적연금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와 후반 사이 빈곤층으로 분류된 사람의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그림 2.8.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

중위 균등화 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올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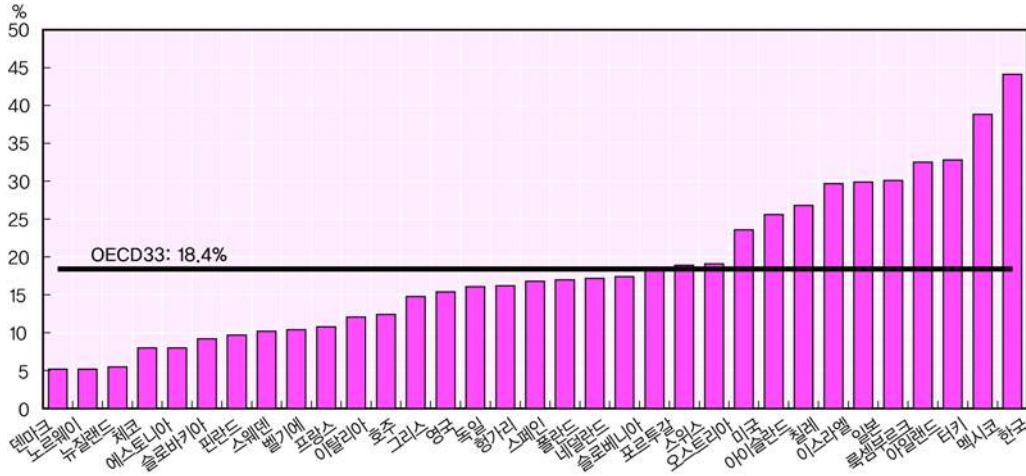
뉴질랜드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2000년대 중반 2% 미만에서 2000년대 후반 12%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사이 최대 23%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보편적 노령연금 수준보다는 생산연령 인구 소득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기간 중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연금 급여가 물가와 함께 상승하면서 중위 소득에 비교하여 측정하는 연금 수급자 빈곤이 늘어난 것이다.

중위 빈곤 위험 격차(The median at-risk-of-poverty gap)

그림 2.9에 나타나 있는 중위 빈곤 격차는 빈곤의 정도에 관한 수치 정보를 보완한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 “빈곤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즉, 50% 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의 중위 소득은 2000년대 후반 빈곤선 미만 18.4% 였다. 국가별 차이는 컸다. 그림 2.9에 나타난 국가들 중 빈곤위험 격차는 한국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에서 가장 컸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의 중위 균등화 소득이 해당 국가의 빈곤선으로부터 30% 이상 아래에 있었다.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5% 미만) 덴마크와 노르웨이였(고 뉴질랜드가 근소하게 그 뒤를 따랐다). 평균 이상의 격차는 오스트리아, 칠레,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빈곤 격차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낮게 선정되어 있는가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요인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자료가 성별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연구를 보면 빈곤 격차는 독신 여성 사이에서 크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크게 나타난다. 이들의 노후소득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은 빈곤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Wolff, 2004).

그림 2.9.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인구의 중위 빈곤 격차



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2009년 자료. 체코는 2011년 자료.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의 자료를 가지고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952>

자산과 은퇴 후의 적정소득

이 섹션에서는 적정한 소득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인 소득 적정성 평가에 자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빈곤한 은퇴자의 경우에는 공적 보험 및 기타 소득 이전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소득원이다. 그 외 소득원으로는 사적연금제도와 직장이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노인들이 노후소득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주택 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공적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은퇴 후 생활 수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현금 소득에만 집중한다면 은퇴 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을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타 자원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소득 개념을 확대 하여 은퇴자가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소득 흐름을 포함 시켰다.

주택 자산

주택은 소비재이기도 하고 투자재이기도 하다. 구매 후 소비되는 다른 재화와 달리 주택은 유지 관리를 필요로 한다.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은 또한 주택 소유자가 특히 은퇴 후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거나 다른 필요를 충족할 자금 확보용으로 일시불 소득을 얻기 위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이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잇점이 있다. 물론,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대비 자가 주택 소유자의 잇점을 계량화하기 위해 “귀속 임대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한다.

주택을 소유한 노인들은 대체로 고소득 집단에 속한다. 하지만 자가주택에 거주하여 자산상으로는 부유하다 해도 현금소득이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소득 빈곤에 시달릴 수도 있다. 부록 2.A2의 그림 2.A1.1을 보면 실제로 노인의 주택 소유와 빈곤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생활수준과 주택소유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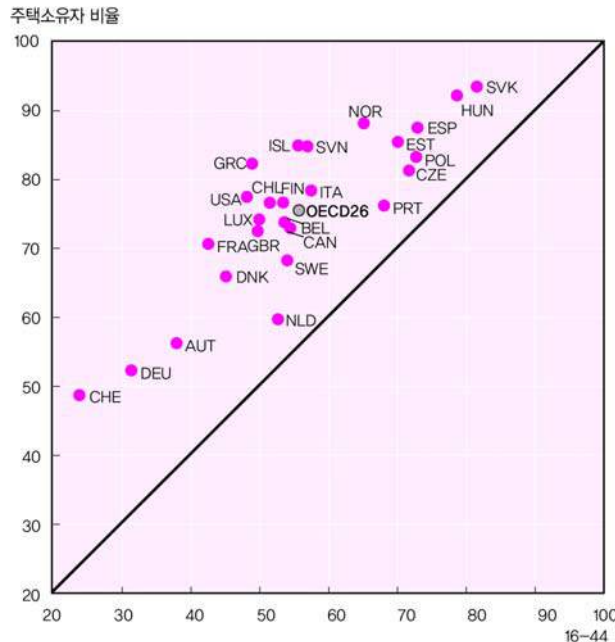
국가별로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주요 OECD 국가에서 주택소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했다 (Andrews et al., 2011; Andrews and Caldera Sanchez, 2011).

주택 소유 증가 추세는 부분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12개 OECD 국가에 관한 연구(Andrews et al., 2011의 박스 1 참조)에서는 자가 거주 비율의 평균값 상승 중 최대 1퍼센트 포인트는 고령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소유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은 캐나다, 덴마크, 독일, 스위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주택이 은퇴 후 소득의 적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려면 연령 집단별 주택소유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그림 2.10을 보면 평균적으로 55세 이상 세대주의 77%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45세 미만 집단의 경우 그 비율이 60%이다. 칠레와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미국의 경우 노인집단의 주택소유비율은 4분의 1에서 3분의1 정도 더 높다.

체코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작았다.

그림 2.10. 45세 미만 집단과 55세 이상 집단의 주택소유율,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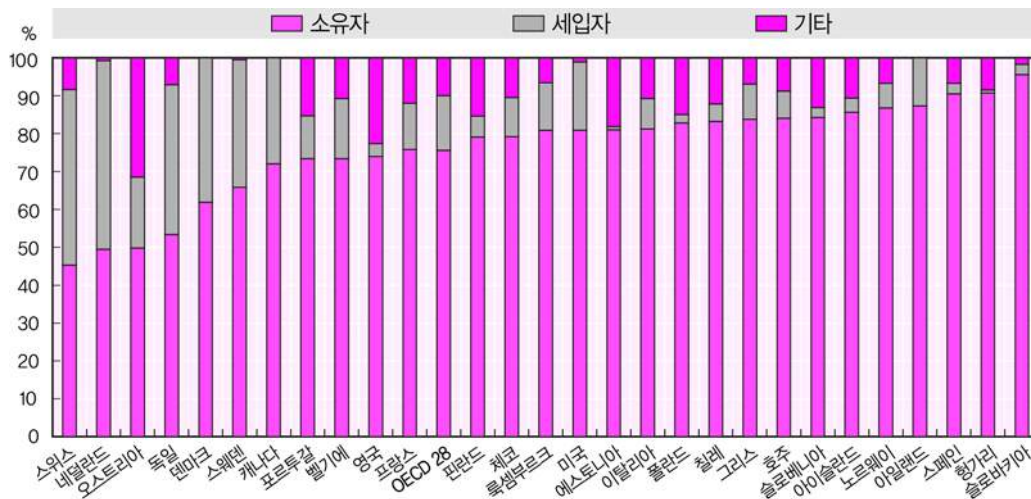
출처: EU-SILC Revision 1, March 2013; and Eurostat,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data,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income_social_inclusion_living_conditions/data/database. 캐나다와 칠레, 미국의 경우 국가 출처에서 발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971>

일본의 자료를 보면 2006년 주택소유율은 세대주 34세 이하인 경우 23%, 65세 이상은 85%였다(Hirayama, 2010). 2010년 인구조사결과에 바탕을 둔 자료를 보면 멕시코에서는 전체 가구의 76.44%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4.3%가 세입자였다(INEGI - 멕시코 지리 및 인구통계국, 2011). 그러나 인구집단별 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ENIGH(멕시코 국가 가구 소득지출 조사)에 따르면 보고된 자가 주택 거주율은 71.2%로 그보다 낮았다(Guerrero and Soto, 2012).¹⁶

그림 2.11에서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28개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주택소유 패턴이 나와 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연령집단의 세대주 중 약 76%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24% 중에서 시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15% 였으며 무료 혹은 시가보다 적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즉, “기타 상태”) 세입자는 9%였다.

그림 2.11. 선별된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주택 소유현황, 2011



주: “소유자” 카테고리는 소유자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인 소유자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
출처: EU-SILC 2013년 3월 개정 1판을 바탕으로 저자가 산정. 호주와 캐나다, 칠레, 미국 자료는 국가별 출처에서 발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5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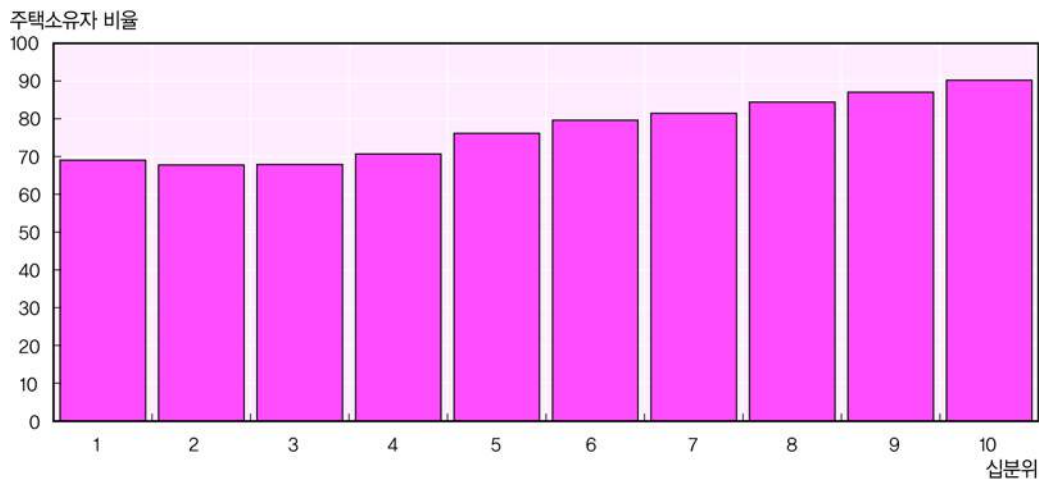
고령층의 주택소유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스위스의 경우는 노인 중 40% 이상만이 완전한 주택소유자-주택담보대출 상환 완료 상태이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그 비율이 90%가 넘는다. 호주와 칠레, 미국의 경우 노인의 8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70% 정도가 주택 소유자이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노인의 17%는 2010년 정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Uppal, 2010). 2011년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중 6.5%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이었다.

많은 동유럽 국가, 아이슬란드, 스페인, 영국에서 시가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는 5% 미만이었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 그 비율은 최소한 30%였다.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는 경우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영국의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이 노인 주거지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라는 것은 국가별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기타” 카테고리에 시청이나 비영리기관, 일부 잔여 카테고리로 임대한 거주지를 포함한다. 일부 마을(헬싱키 등)은 시 정부 및 비영리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가보다 낮지만 다른 지역은 더 높은 경우가 있다.

노인들의 주택소유 정도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소유자의 소득이 특히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그림 2.12는 OECD 23개 국가 65세 이상 인구의 주택소유현황 (European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자료로 추정)을 소득 오분위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저소득 노인 중 무주택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비 EU OECD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찰되는데 캐나다의 경우 70세 이상 인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소득 분포도 최저 십분위에서 52%, 중간 십분위에서 80%, 최고 십분위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주택소유자 비율 (총 인구 중)은 최저 오분위에서 42%, 두번째, 세번째 오분위에서 평균 66%, 최고 오분위에서 87%로 나타났다.

그림 2.12. 소득 오분위별 65세 인구의 주택소유현황



출처: 2011년 OECD 23개국에 대해 EU-SILC 2013년 3월 1일 개정판을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009>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노인 가구의 비율 역시 소득과 함께 증가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가구 수는 소득분포의 상위 소득 오분위 대비 최하위 오분위에서 훨씬 낮게 나타난다 (그림 2.13).

주거비 부담 역시 소득분포에 따라 고르지 않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11년,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에서는 주거비가 가구 소득의 20%, 중간 소득(moderate-income) 가구 -즉, 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 가구-는 32%를 차지했다(Haas et al., 2012). 호주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최저 십분위에서는 주거비가 가구 소득의 26%, 두번째와 세번째 십분위에서는 20%, 고소득 십분위에서는 10%에서 15% 사이에 불과했다(ABS, 2013).

그림 2.13. 2011년 23개 OECD-EU 국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65세 이상 세대주



출처: 2013년 1월 개정된 EU-SILC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028>

호주 주택도시연구소(AHURI)의 연구에서도 2007-08년 주택을 매수한 호주의 저소득 가구 중 61%가 매수 후 첫 4년간 주택담보대출 비용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했으며 14년 후에도 동일한 금융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Hulse et al., 2010). 반면 고소득 가구 중 “불과” 20%만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소득의 30%를 지출했는데 14년 후에는 그 비율이 8%로 떨어졌다. 2009-10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주 국가 주택공급위원회에서 내놓은 추정자료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NHSC, 2012).

2011년에 EU-SILC(EU 소득생활환경조사)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일부 국가에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노인은 청년층에 비해 주택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다. 즉, 주택 비용이 주택소유자의 균등화 가치분 소득의 40%를 초과한다.¹⁷ 반면 스페인은 정반대이다 (Eurostat, 2013; Pittin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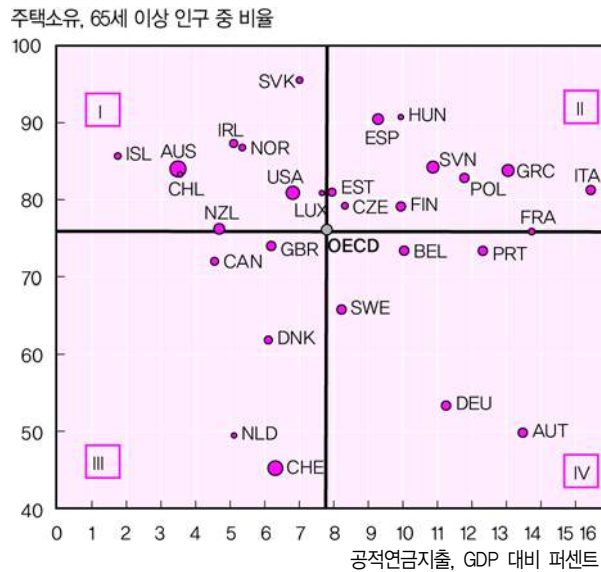
저소득 노인 주택소유자의 상황은 노후소득 적정성 논의와 특히 관련이 있다. 주택의 위치 역시 중요하다. 저소득 노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적은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모기지연맹(EMF)의 2012년 보고서는 2012년 1분기 프랑스에 등록된 전년 대비 물가 상승은 파리 수도권의 일 드 프랑스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고하고 있다(EMF, 2012 참조).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4% 상승부터 8% 하락까지 주택가격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붕괴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연금, 주택, 노후빈곤의 종합적 조망

노인의 주택 자산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복지국가 특히 연금제도의 관대함(*generosity*)이 주택소유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이다(Fahey, 2004; Kemeny, 1992). Castle(1998)에 따르면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높으면 관대한 연금에 대한 필요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풍요로운 복지국가가 아닌 경우 사람들은 사회적 보호의 형태로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주택의 소유를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Kemeny, 1981, 2005). 이러한 “예방책”이 또한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령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미래의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구매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14에서는 OECD 및 EU의 자료를 이용해 2000년대 후반 노인들의 공적연금 지출, 빈곤, 주택소유의 측면에서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적연금 지출은 연금 관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지출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 급여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조기에 은퇴하면서 비교적 적은 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다.

그림 2.14. 주택소유 및 연금 지출



주: 모든 자료는 2000년대 후반 자료임.

출처: 노후빈곤율은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주택소유는 EU-SILC 및 국가별 자료, 공적연금 지출은 본 보고서 제 6장의 지표 6.2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047>

그래프에 나타난 동그라미의 크기는 노후 빈곤율의 규모를 나타낸다. 좌측상단의 국가들 -호주, 칠레, 미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에서는 노인들의 공적연금 지출은 평균 수준 미만이고 주택소유비율은 평균 이상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은 이들 국가간에도 차이가 큰데 이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측 상단의 국가들(2사분위)은 주택소유와 공적연금 지출이 둘 다 평균을 초과한다. 노인 빈곤

률이 낮은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빈곤율은 1사분위 국가들과 훨씬 더 비슷하다. 좌측하단 사분위(3사분위)의 국가들은 공적연금 지출과 주택소유는 평균 미만이고 스위스만 제외하고는 빈곤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사분위(4사분위) 국가들은 평균 이상의 공적연금 지출과 결합해 노인들의 주택소유가 평균 미만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집단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두드러진다.

그림 2.14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나타난 국가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1사분위와 3사분위에 위치한 많은 국가에서 사적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공적연금은 2사분위와 4사분위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동그라미의 크기는 선별적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예: 스위스)에 비해 기초 및 최저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서 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2사분위의 일부 국가(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사회급부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1사분위와 3사분위에 위치한 국가들은 좀더 자유로운 복지 제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의 주택소유율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가 이에 속한다.

그래프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또 한가지는 주택과 연금 간의 명확한 관계이다.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은퇴 관련 고려사항이나 예상 연금수급액보다 다른 요인들이 주택 소유에 있어서 더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주택자산을 노후소득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주택소유는 여러 국가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국가의 주택 정책, 개인의 선호도, 심지어 지역 문화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고르게 분포하지 않게 때문에 주택과 연금 간의 연관관계를 정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주택투자의 잠재적 이익과 관련 리스크 역시 노후소득 적정성 평가에 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융 및 경제 위기 중 겪었던 것과 같은 주택가격의 심한 등락은 노후 대비용으로 매수한 주택의 가치를 급격하고도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어 은퇴자가 재정적 은퇴 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만든다. Lusardi and Mitchell(2007)은 주택가격의 13.5% 하락(미국에서 2005년 주택가격이 2002-03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의 낙폭)이 주택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총 순 가치의 10%를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¹⁸

노후소득 중 주택소유의 비중: 귀속임대료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아낄 수 있는” 소득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귀속 임대료”라고 한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은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으로도 볼 수 있다(박스 2.2 참조).

연구자료는 일반적으로 귀속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는데 임대료 균등화, 사용자 비용, 자가평가가 그것이며 주택소유의 장점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다. 첫번째 방법론에서는 임대료를 잇점으로 본다. 즉,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론에서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률에 중점을 둔다. 세번째 방법론은 사람들이 자가주택에 대해 얼마의 임대료를 내야 할지 개인적으로 추정할 값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임대료 균등화 또는 시장가치 방법론에서는 귀속 임대료가 “유사한” 주거지에 거주할 경우 내야

할 임대료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주거지에 대한 실제 임대료를 시장에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임대 부문이 아주 소규모일수도 있고 다른 임대용 부동산들이 귀속 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동산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실제 임대료의 가치는 외부 가격 통계자료나 임대료, 기타 자료를 통해 추산해야 한다. 호주에서 귀속 임대료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¹⁹ 유럽연합통계청에서도 간접적 임대료 균등화 접근방식을 권고하는데 이 방식은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낮은 가격 또는 무료로 임대한 주거지와 유사한 주거지의 임대료에서 모든 관련 비용을 제하는 것이다.²⁰

박스 2.2. 귀속임대료의 정의

45년여 전 유엔에서는 자가주택 거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국민계정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유엔의 정의를 인용해 Yates(1994)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총 산출액(gross output)에 포함시킬 소유자 거주 주거지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시설의 시장 임대료로 평가해야 한다. 운영비, 유지관리 및 수리비용, 수도요금, 보험서비스 비용, 세금, 감가상각, 주택담보대출이자와 주택에 대한 투자금 이자, 기타 순 이익 요인 등의 항목을 포괄하는 값을 가지고 시장 임대료를 추산해야 할 수도 있다.”

Yates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귀속 임대료 -자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는 총 임대료 추산액에서 유지관리비, 운영비, 보험관련 비용 및 세금을 제한 값과 같다. 그래서 귀속 임대료는 개인 가구의 블로소득이며 이자수입, 배당금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United Nations, 1977). The Canberra Group(2001) 역시 국제적 조사에서 가치분 소득을 산출할 때 귀속 순 임대료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귀속 임대료를 가치분 가구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질적 웰빙을 좀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OECD, 2013a; Canberra Group, 2011).

사용자 비용 방법론은 소유자가 임대료를 설정할 때 고려하는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귀속 임대료를 결정한다. 자본시장 접근방식에서는 사용자 비용은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의 “기회 비용”이다. 즉, 이자와 배당금에 실질 소득 흐름을 창출한다. 이 기회비용은 주택 자산에 대한 순 이익을 나타낸다. Americ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와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BHPS)는 둘 다 자본시장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PSID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소유자 거주 주거지의 가치를 추산하고 미지급 부채(주택담보대출 등)의 가치를 제한다. 그 차액이 플러스인 경우 귀속 임대료는 6%의 금리로 계산한다(Butrica and Jurkat, 1996). 네 개 유럽 국가(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만이 자본시장 접근방식을 선택했다(Junto and Rejo, 2010; Törmälehto and Sauli, 2013).

자가평가 접근방식에서는 소유자에게 만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입자로 거주한다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낼 것인지 직접 추산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는 독일 사회경제패널 주택 조사 등에서 취합되었다.

캐나다는 좀더 실용적이고 미묘한 접근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의 시장 바구니지표(MBM)를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에 대해 갖는 잠재적 “주택소유의 잇점”을 설명하는 것이다(박스 2.3 참조).

박스 2.3. 캐나다가 저소득 지표에 주택담보대출 없는 주택소유자의 잇점을 포함시키는 방법

MBM(Market Basket Measure)은 소박하지만 괜찮은 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하나의 바구니에 모아놓고 그 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저소득 측정지표이다. 이것은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나타내는 다섯가지 구성요소인 식료품, 의복, 신발, 주거, 교통과 기타 필수 재화 및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바구니의 총 비용은 캐나다 10개 지방의 49개 지역에 대해 산출된다. 만일 한 가족의 MBM 가치분 소득이 바구니 비용보다 낮으면 해당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래 MBM 바구니 중 주거 요소는 각 해당 지역에서 방 두 세 개짜리 주거지(4인 가족의 주거 필요를 충족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간주)에 대한 중위 임대 비용을 바탕으로 했다.

1차 MBM 검토 중,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가주택소유자의 구체적인 주거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 시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주거지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연간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의무적 주거비용이 낮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소유자들이 누리는 부가적인 자원을 반영하기 위해 이들의 가치분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산출. 세입자의 경우는 각 MBM 지역에서 방 두세 개짜리 주택담보대출 없는 주거지에 대한 중위 주거비를 바탕으로 한다.
- 주택소유자의 주거비와 세입자 주거비 간의 차액을 산출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잇점을 설정한다.
- 해당 MBM 지역의 주택소유자 잇점을 MBM 가치분 소득에 추가함으로써 모기지 없는 주택소유자의 가치분 소득을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모기지 없는 주택소유자와는 관련이 없다. 주택소유자의 잇점을 모기지 없는 주택소유자의 가치분소득에 추가하는 것은 MBM 바구니에 포함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금전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접근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귀속 임대료의 국가간 비교는 어려우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섹션에서는 소유자 별 비용을 제외한 귀속 임대료를 사용한다. 소유자 별 비용(부동산에 대한 세금, 유지관리비용,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의 처리는 국가별로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귀속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Smeeding and Weinberg(2001)은 “순 귀속임대료가 소득에 포함되면 국가별 가치 측정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국제적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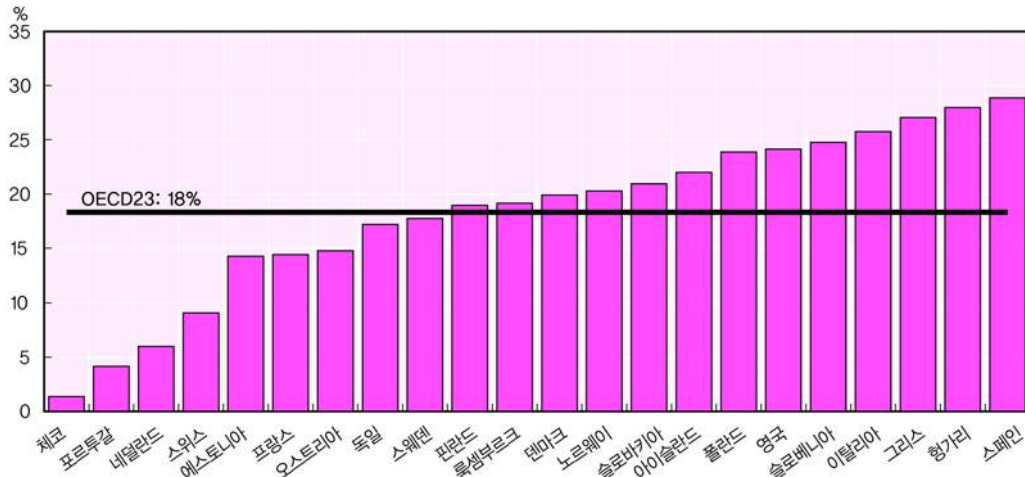
소득에 귀속 임대료를 포함하는 경우 몇 가지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 소유권 상태
- 모기지 차입금의 수준과 분포
- 주택 매수자와 임대료 납부자에 대한 주택 지원 및 재정 인센티브 유형.²¹
- 임대 시장의 규모와 구조
- 귀속임대료 산출에 사용된 방법론과 접근방법

호주의 예는 모기지상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9-10년 모기지없는 소유자의 순(소유자 별 정보를 뺀) 귀속 임대료 가치는 251 호주달러였고 모기지있는 소유자의 경우 31 호주달러에 불과했다(ABS, 2012, 표 19).


귀속임대료 요인을 소득에 포함시키게 되면 자가주택 거주자나 시장가격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EU-SILC에서 취합한 비교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2개 회원국에서(Törmälehto and Sauli, 2013)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순 귀속 임대료가 추가되면 평균 18% 상승했다(그림 2.15).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에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20%에서 29% 사이로 상당했다. 5% 정도로 가장 영향이 약하게 나타난 국가는 체코, 네덜란드, 포르투갈이었고 귀속 임대료가 가구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약 10-15%를 차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이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국가는 임대료 균등화 방법을 사용해 귀속 임대료를 측정했던 스페인이었다.

그림 2.15. 65세 이상 가처분 소득 비율로 본 순 귀속 임대료



주: 가처분 소득은 모든 가구원에 대한 고용소득, 자영업소득, 노령연금, 유족급여, 장애급여, 질병수당, 교육관련수당 등 개인 소득 요소의 총합으로부터 산출한 균등화(균등화 척도 제공근) 소득으로 정의된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가족 및 아동 관련 수당, 주택 수당, 정기적인 가구 내 현금 이전 수급, 이자, 배당금, 비법인화 사업에 대한 자본투자 수익, 16세 미만인 가구원이 수령한 소득 등 모든 것이 소득에 포함된다. 모기지 이자, 소유한 재산에 대한 정기적 세금, 정기적인 가구 내 현금 이전,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귀속 임대료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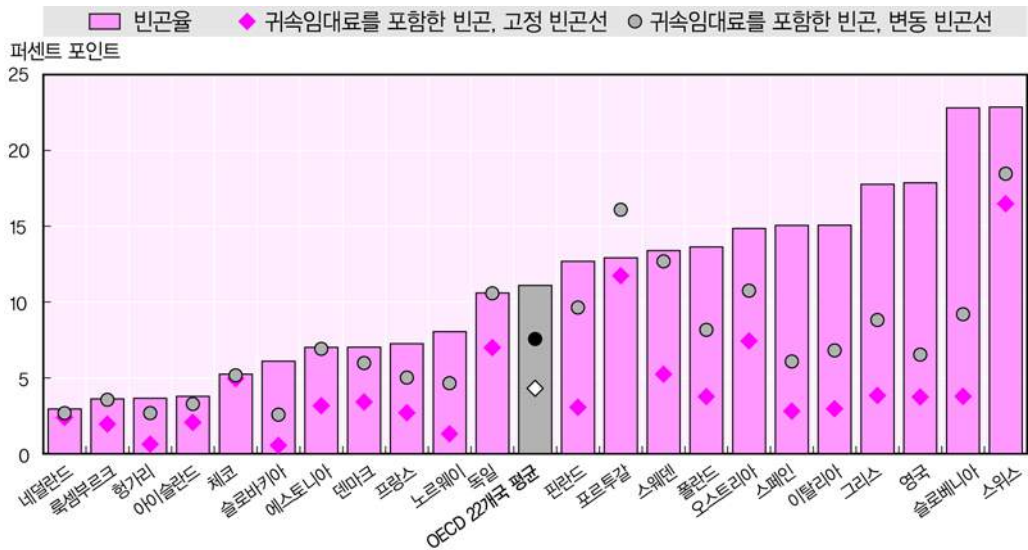
출처: EU-SILC 2013년 3월 1일자 개정판 자료를 사용해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066>

최근 연구를 보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모기지를 완전히 상환한 고령 주택소유자의 경우, 특히 독거 여성 노인의 경우 가장 크다. 유럽연합통계청(2013)에서는 “임대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리적으로 넓고 복잡한 임대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가격이 지나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어서 귀속 임대료 균등화는 과대 계상될 수 있다”²²고 정확히 보고 있다. 개인 임대 시장이 아주 소규모인 국가에서 사용하는 귀속 임대료 접근방법 역시 임대료 추정치가 왜곡될 수 있어 귀속 임대료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16은 귀속 임대료 포함 전 후의 선별된 유럽 OECD 국가에서의 빈곤율을 고정 및 변동 빈곤선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고정 빈곤선의 경우 빈곤은 순 귀속 임대료로 강화된 소득을 귀속 임대료없이 계산된 원래의 빈곤 기준선과 비교하여 산출한다. 변동 빈곤선은, (순) 귀속 임대료를 포함하는 새로운 소득 기준선을 참조하여 빈곤을 산출하게 된다.

그림 2.16. 가구소득에 귀속 임대료(IR)를 포함하기 전 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빈곤율



출처: EU-SILC 2013년 3월 1일자 개정판 자료를 사용해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085>

그림에 나타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귀속임대료가 포함되면 빈곤율은 하락한다. 하락폭은 빈곤선이 고정되면 약 7퍼센트 포인트, 변동의 경우 3.5퍼센트 포인트에 달한다. 양쪽 기준 60% 이상의 가장 큰 하락은 슬로베니아와 스페인에서 나타났다. 반면 체코와 에스토니아, 독일, 룩셈부르크에서는 귀속임대료가 빈곤율에의 노출 감소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포르투갈은 변동 빈곤선을 채택하면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고령층의 빈곤 감소 결정 요소(귀속 임대료 고려와 연계)는 이들의 소유상태 및 모기지 수준이다. 스페인의 경우, Calvo and Sanchez(2010)에 따르면 가구소득에 귀속 임대료를 포함해도 거주지 기준으로 빈민과 비 빈민의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빈곤 인구의 구성 중 소득에 귀속 임대료를 포함시킴으로써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가구 유형, 가구원의 연령, 소유상태이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귀속임대료를 포함시키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이 10퍼센트 포인트 하락한다.

귀속임대료를 포함시키면 각국의 노인 빈곤율 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귀속 임대료 포함 전후 모두 빈곤척도의 아래쪽에, 스위스는 위쪽에 남아 있는 반면 다른 모든 국가들은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은 순위가 훨씬 높아진다. 소득에 귀속 임대료를 포함시키는 경우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은 순위가 낮아지는데 이유는 빈곤 감소폭이 다른 국가보다 작기 때문이다(D'Addio, 2013). 주택 자산은 주로 소득분포도의 상위권에 위치한 가구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가주택소유로 인한 소득은 고령층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귀속 임대료가 빈곤 감소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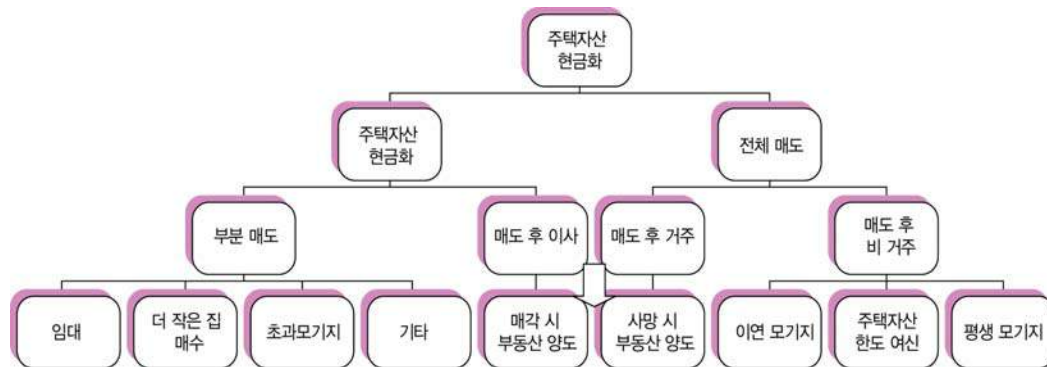
영향은 귀속 임대료 자체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택 자산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체코의 경우 귀속 임대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귀속 임대료 포함 여부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²³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귀속 임대료를 포함시키면 고령층의 빈곤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들 사안은 귀속 임대료 산출에 서로 다른 접근방식들이 사용되는 것부터 비교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것, 있다 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주택자산의 유동자산 전환(Releasing home equity)

주택소유자가 주택자산을 현금화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Davey, 1995). 주택을 유산으로 상속해주거나 매도하여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할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가 주택에 머무는 쪽을 선호한다. 이 경우, 그림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자산의 유동자산 전환 제도(ERS)를 이용해 주택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림 2.17. 자산 유동화 제도



출처: Adapted from Ong, R., M. Haffner, G. Wood, T. Jefferson and S. Austen(2013), "Assets, Debt and the Drawdown of Housing Equity by an Ageing Population", Positioning Overmortgage Paper, No. 153,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Melbourne.

ERS는 주택소유자가 인생의 다른 시기에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평생 모기지(lifetime mortgage)와 부동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도하는 역 모기지(home reversion plan)가 그것이다.

평생 모기지, 주택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금은 나중에 집을 떠날 때까지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평생 모기지(연금 역 모기지 또는 주택 소득제라고도 불림)는 롤 업(roll-up), 종신행 고질 상환, 또는 이자 지급 모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이자 납부 방식과 시기 모두 차이가 있다.

또 다른 ERS인 역 모기지(home reversion)는 소유자가 소유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매도하고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한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가격은 실제 시가보다 낮으며 할인율과 주택 소유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한다. 매도자는 매달 연금을 받거나 일시불로 받거나 두 형태를 혼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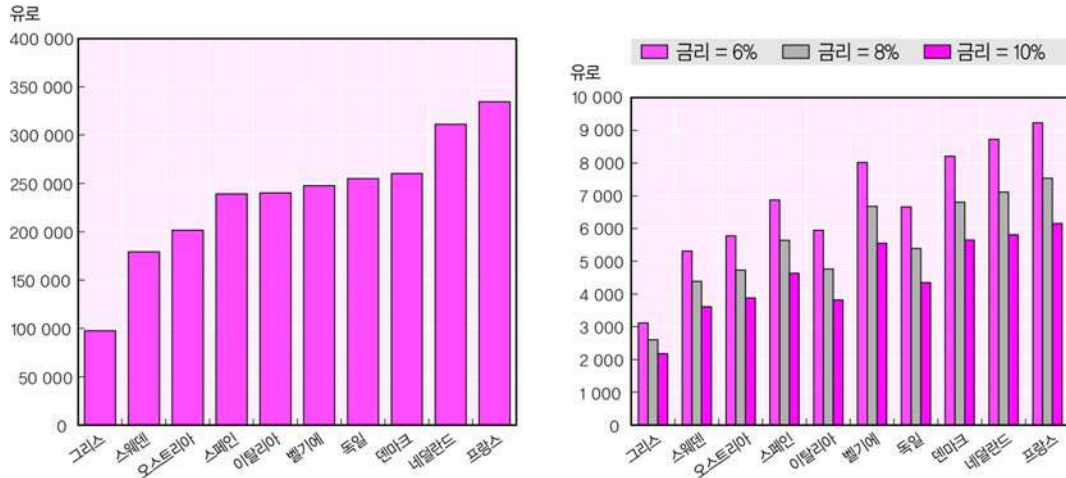
현금화할 수 있는 주택자산의 금액은, 제도 자체의 비용과 리스크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제도 별로 차이가 있다(Ong et al., 2013a and 2013). 완전한 주택매도는 자산의 최대 100%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가치뿐 아니라 대출자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ERS 시장의 현황에 대한 비교 자료는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소득적정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²⁴ 하지만 ERS의 이용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꾸준히 확산되어 왔으며(Springer, 1985; Leather, 1990; Jacobs, 1985; Wilson, 1988; Carter, 1985),²⁵ 이는 주택의 발전 및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혁신에 의해 촉진되었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특히 젊은 인구 집단에서 자산 현금화제도(equity release schemes)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Smith, 2004), 호주(Ong et al., 2013a, 2013b), 뉴질랜드(Davey, 2007)가 그렇다.

현재 나와 있는 증거자료를 보면 제도의 이용과 숫자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Reifner et al. (2009a and 2009b)에 따르면 유럽에서 자산 현금화 모기지의 총 가치는 약 33억 천만 유로로 2007년에 약 45,238건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²⁶ 그러나 여전히 유럽 전체 모기지 시장의 약 0.1%에 불과하다. 호주에서는 자산 현금화 제도를 이용한 대출 건수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영국도 1992년에서 2011년 사이 금액과 숫자 모두 상당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06년 ERS 관련 대출이 4,500건 발생했으며 전체 금액은 2억2천7백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미국에서는 62세 이상 인구에 대한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프로그램 상의 대출 건수가 2009년(회계연도)에 11만5천 건으로 정점에 달했고 2011년까지 약 72,000건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HECM 프로그램으로 74만 건의 대출이 발생했으며 약 58만2천 건이 여전히 미지급(outstanding) 상태이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세대주가 62세 이상인 2천4백만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불과 2-3%만이 실제로 역모기지제도를 사용했다(Bowen Bishop and Shan, 2008; CFPB, 2012).

Coda Moscarola et al. (2012)는 이탈리아의 평균 가구에 역모기지제도가 갖는 가치를 연구한 결과 노후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득분포 하위 20%에 속하는 유주택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역모기지제도를 활용해 들어오는 연금이 소득의 11%를 차지하며 상위 20% 가구의 경우 35%라고 추산했다. 약 30만 유로 정도의 평균 주택 자산을 가진 저소득 가구는 역모기지를 통해 가처분 소득의 24%를 차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평균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면 중간소득 가구에는 16%, 저소득 가구에는 10%를 부가할 수 있다. Ong(2008)과 마찬가지로 Coda Moscarola et al. (2012)에 따르면 소득은 낮지만 평균 이상의 주택 자산을 가진 가구들 중 ERS는 80대 이상 독신 여성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다.²⁷


두번째 연구에서 Coda Moscarola et al. (2013)은 금리는 6%, 7%, 8%로, 기대여명은 18.8년으로 가정하고 다수의 선별된 유럽 국가에서 역모기지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일시불 금액을 시뮬레이션으로 산출했다.²⁸ 그림 2.18의 왼쪽 패널은 조사대상 국가에 대해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에서 제공한 평균 주택 가치를 유로로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패널은 65세 이상 노인이 금리 6%, 7%, 8%로 주택자산을 100% 전환하는 경우 수급하게 될 평균 연금을 보여준다.²⁹

그림 2.18. 주택자산 100%를 역모기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주: 주택의 가치는 SHARE 설문 중 “귀하의 부동산을 오늘 매도한다면 얼마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추출했다. 평균 재산 산출을 위해 저자들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금리 6%, 8%, 10%로 주택자산을 완전하게 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가정했다.

출처: Coda Moscarola, F., A.C. D’Addio, M.C. Rossi and D. Sansone(2013), “Making Assets a Tool Against Poverty?”, SHARE conference, November, forthcomi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104>

물론 설문조사에서 보고된 주택자산의 가치 차이는 엄격히 비교불가하며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을 감안하고 Coda Moscarola et al. (2013)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이 균등화 소득 60%에 설정된 빈곤선에 대해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OECD에서 50% 기준선과 세가지 금리를 사용한 것과는 다른 방법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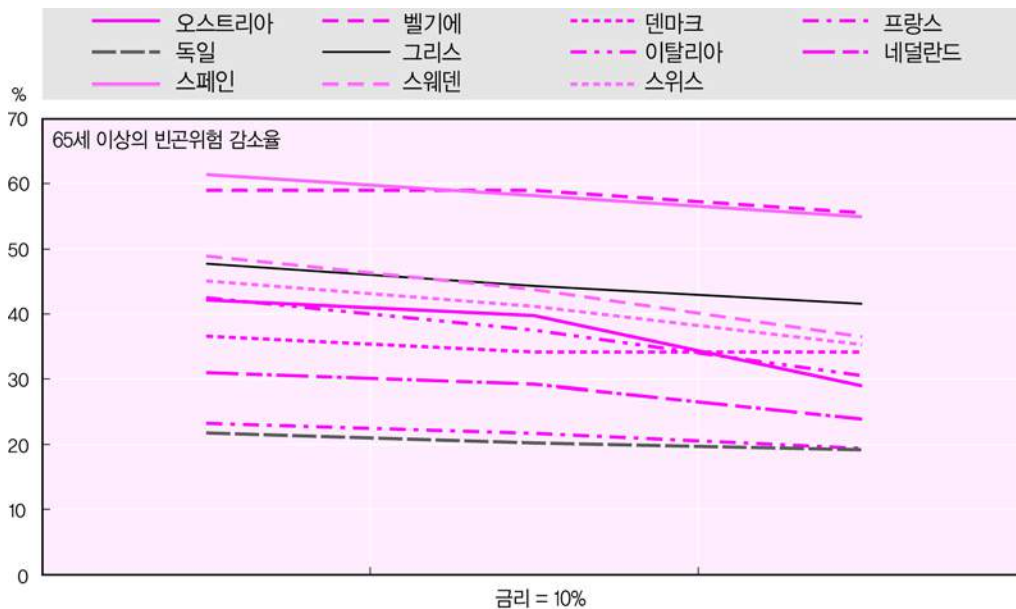
주택소유에 관한 실제 자료를 이용해 Coda Moscarola et al. (2013)은 주택자산의 100%를 현금화하여 확보한 역모기지 연금은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빈곤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감소폭이 매우 크다고 보고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한가지 이유는 빈곤한 사람들은 빈곤선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이 이들을 빈곤에서 막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노인들이 주택자산 전부를 현금 소득으로 전환할 확률은 매우 낮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일수도 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일수도 있다. 만일 이들이 주택자산을 전적으로 현금화한다면, 기대여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을 다 써버리고 수중에 자원이 별로 남지 않을

위험도 있다. 하지만 Coda Moscarola et al. (2013)에 따르면 이들이 주택자산의 50%만 현금화한다 해도 소득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에서는 빈곤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었고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그 정도의 폭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로 인한 수익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금융기관이 특히 저소득 고객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이러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가치는 금리가 올라가면 감소하고 기대여명이 줄면 상승하기 때문이다.³¹ 주택소유자는 또한 주택자산 전환에 따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견딜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2.19. 주택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 발생하는 빈곤감소



주: X축은 연금 산정에 사용된 금리이고 Y축은 SHARE 조사에서 추출한 가구 균등화 소득 60%를 기준으로 측정한 65세 이상 빈곤위험 감소율이다.

출처: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data in Coda Moscarola, F., A.C. D'Addio, M.C. Rossi and D. Sansone(2013), "Making Assets a Tool Against Poverty?", SHARE conference, November, forthcoming, and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the SHARE survey.

금융자산

가구는 은퇴 후 대비 및 기타 목적으로 저축을 한다. 금융자산은 예금, 채권, 주식, 뮤추얼 투자 펀드, 생명보험, 연금을 포함하는 투자 및 금융자산을 망라한다.³² 이 섹션에서는 두 곳의 주요 출처를 바탕으로 이러한 금융자산과 그것이 적절한 노후소득에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첫번째 출처는 룩셈부르크 자산조사(LWS)로, 국가별 조사시기에 차이가 크긴 하지만³³ 11개 OECD 국가의 금융 및 비금융 자산과 부채를 다루고 있다. LWS에서 추출한 변수는 예금, 주식, 채권, 기타 뮤추얼 펀드의 총액으로 금융자산을 정의하며 강제연금이건 자발적 연금이건 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두번째 출처는 1차(1st wave) HCFS(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이다. 2013년 5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유로화 지역 국가의 비교 가능한 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Network, 2013a and 2013b).³⁴ HCFS에서 추출한 변수는 개인사업(자영업 제외)에 대한 투자, 요구불 예금, 저축 예금, 뮤추얼 펀드, 채권, 주식, 별도 관리계좌, “기타” 자산, 개인 대출, 자발적 연금상품, 종신보험의 총액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은 제외된다(적립식 사적연금에 관해서는 박스 2.4 참조).

OECD 국가의 금융자산 분포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독자가 이러한 한계를 양해해준다면 현재 나와있는 자료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노후 소득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에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스 2.4. 적립식 사적연금의 가입률

사적연금은 미래 은퇴자의 소득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연금은 13개 OECD 국가에서 강제적 또는 준 강제적 제도이다.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측정지표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매달 지급된다.

자발적 연금은 일시불 인출이 좀더 일반적이다. 20개 OECD 국가에서 적립식 연금제도는 자발적 제도로서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해 연금제도를 마련할지를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국가 중 뉴질랜드는 자동가입 및 정부 보조금의 도입으로 가입율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했다. 2007년 “키위세이버”가 도입될 때까지 가입율은 생산연령 인구의 10% 미만까지 하락했으나 “키위세이버”가 가입율을 2010년 55%까지 끌어올렸다.

선별된 OECD 국가에서 사적연금제도의 가입률, 2009-10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출처: OECD(2012), OECD Pensions Outlook 2012, Chapter 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6940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142>

박스 2.4. 적립식 사적연금의 가입율 (계속)

그러나 이탈리아는 2007년 자동가입 도입 이후 가입율을 높이는데 뉴질랜드만큼의 성공을 거두진 못했으며 2010년 말 생산연령인구의 13.3%만이 사적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 영국은 2012년 10월에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 가입률을 평가하기엔 이르다.

가입율 격차와 이것이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적연금이 자발적 제도인 국가의 경우- 가입율을 여러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2012a)는 8개 OECD 국가(호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의 사적연금 가입율에 대한 가구 데이터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연령, 소득, 성별, 고용형태(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 계약 유형(정규직, 임시직) 등이 적용되어 있다. OECD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히 자발적 사적연금 제도의 경우 가입율이 고르지 않으며 일부 인구집단에서는 사적연금제도 가입율이 매우 낮다.

청년층은 사적으로 관리되는 적립식 연금, 특히 자발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연령이 올라가면서 가입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강제적 또는 준 강제적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율은 연령 집단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데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가입율, 특히 자발적 제도의 가입율은 소득과 함께 증가하다가 소득 7번째 또는 8번째 십분위를 지나면 평평한 상태에 도달한다. 하지만 저소득 집단에서는 사적제도 가입율이 상당히 낮는데 29%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약 15% 수준이다. 반면 호주와 네덜란드의 강제적/준 강제적 제도는 더 빨리 -2번째 3번째 십분위 이후- 평평한 지점에 도달하며 저소득 집단의 가입율은 65%를 초과한다.

가입율에는 남녀간 차이도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곳은 네덜란드로 남성의 자발적 개인연금제도 가입율이 여성과 16.4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은 아일랜드(10.3 퍼센트 포인트), 이탈리아(5.4), 스페인(3.0)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영국, 미국에서는 남녀간 가입율 차이가 미미했다.

출처: OECD(2014),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Ireland, forthcoming; OECD(2012), OECD Pensions Outlook 2012, Chapter 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69401-en>; Antolin, P., S. Payet and J. Yermo (2012), "Coverage of Private Pension Systems: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4d6gh2w6c-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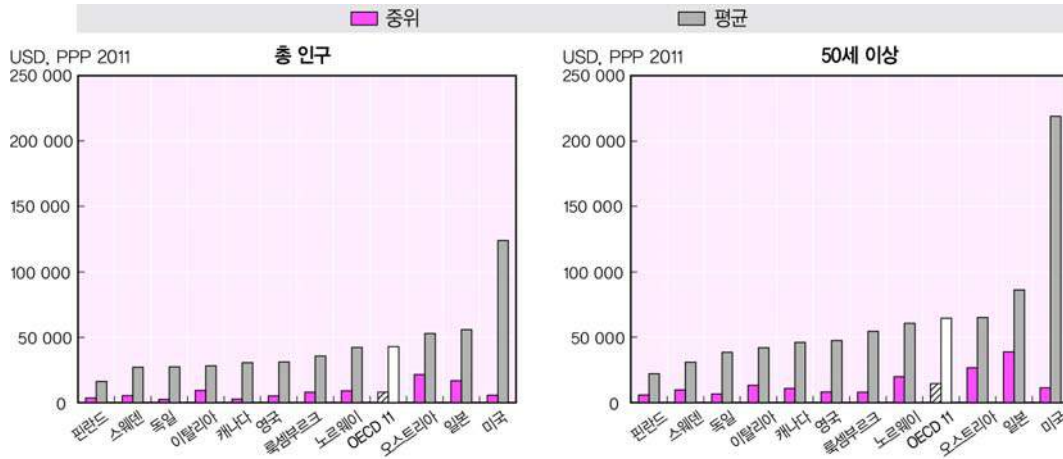
평균 및 중위 금융자산은 차이가 크다

그림 2.20은 LWS 조사대상국의 2011 미 달러 기준 구매력평가지수로 표현된 평균 및 중위 가구 금융자산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값이 단순평균을 반영하는 반면 중위값은 인구 전체를 중위 선을 기준으로 둘로 나눈 값을 보여준다. 금융자산의 경우에 그렇듯이 분포가 매우 불평등한 곳은 중위값이 평균값보다 훨씬 낮다.

LWS의 비교 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전체 인구의 평균 중위 자산은 미화 약 8,200달러이다. 이 값은 독일의 2,600달러(2011년 PPP 율 기준)에서 오스트리아의 거의 22,000달러까지 분포한다. 평균 자산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43,100달러로 나타나는데 핀란드의 16,300달러부터 미국의 124,000달러까지 분포한다.

고 연령집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 집단의 중위 금융자산은 14,300달러이고 평균자산은 약 63,000달러에 달한다. 국가별 차이는 이번에도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중위 자산은 핀란드의 5,600달러부터 일본의 39,000달러까지 분포하고 평균자산은 핀란드의 22,000달러부터 미국의 219,000달러까지 분포한다.

그림 2.20. 중위 및 평균 금융자산, 2011



출처: LW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정.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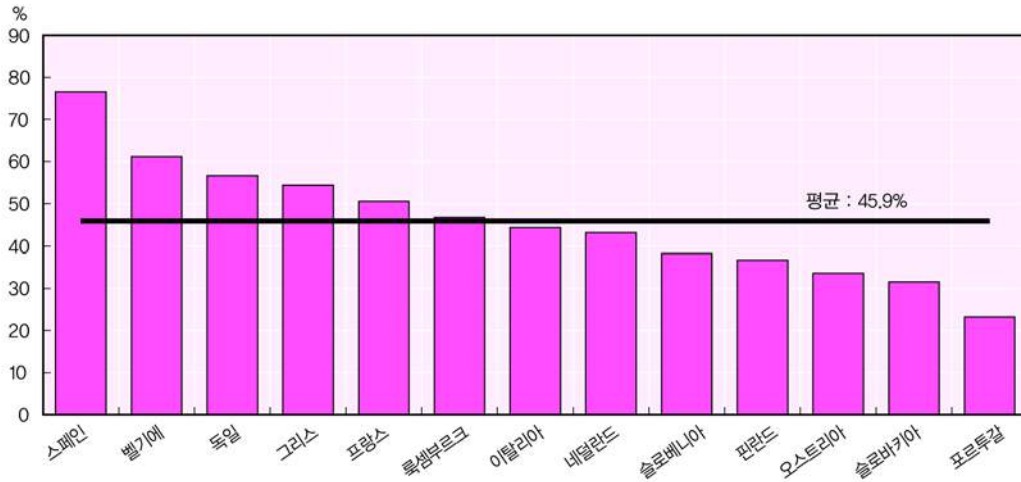
유로시스템 HFCS 자료를 보면 유로존 국가들의 양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³⁵, 노인의 94%가 2010-11년 일정 형태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이 없는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슬로베니아와 그리스(약 25%)였고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는 고령층 중 거의 100%가 일정 형태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다. 평균 금융자산은 2010년 유로 존 지역의 총 인구에 대해 약 12만 유로였으며 슬로바키아의 7,700유로부터 스페인의 26만 유로 이상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위자산은 평균 2만 유로로 훨씬 낮았으며 최저는 슬로바키아의 3천 유로, 최고는 네덜란드의 69,000유로였다.

자산 보유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보유량이 훨씬 적었다. 그림 2.21에 나타난 국가 가운데에서는 노령의 남녀간 자산 격차가 평균 약 46% 정도였다.³⁶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이었다(D'addio et al., 2013도 참조).

금융자산의 고르지 못한 분포는 그림 2.22에서도 명확히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유럽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Lorenz Curve의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다. X축은 가구를 자산 십분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Y축은 가구별 금융자산 누적 비율을 보여준다. 완벽히 평등한 분배는 45도 선으로 나타나는데 인구의 각 10%가 전체 자산 중 정확히 10%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 곡선이 45도 선으로부터 멀리 나타날수록 금융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LWS 자료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22의 13개 OECD 국가에서 자산 분포 상위 30% 계층이 금융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Wolff(2012)는 2010년, 미국 인구 중 상위 1%가 사적 금융자산의 42.1%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 19%가 53.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80%는 불과 4.7%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1%의 보유자산 비율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하위 80%의 자산은 2.3 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상위 19%의 자산은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ibid., Domhoff,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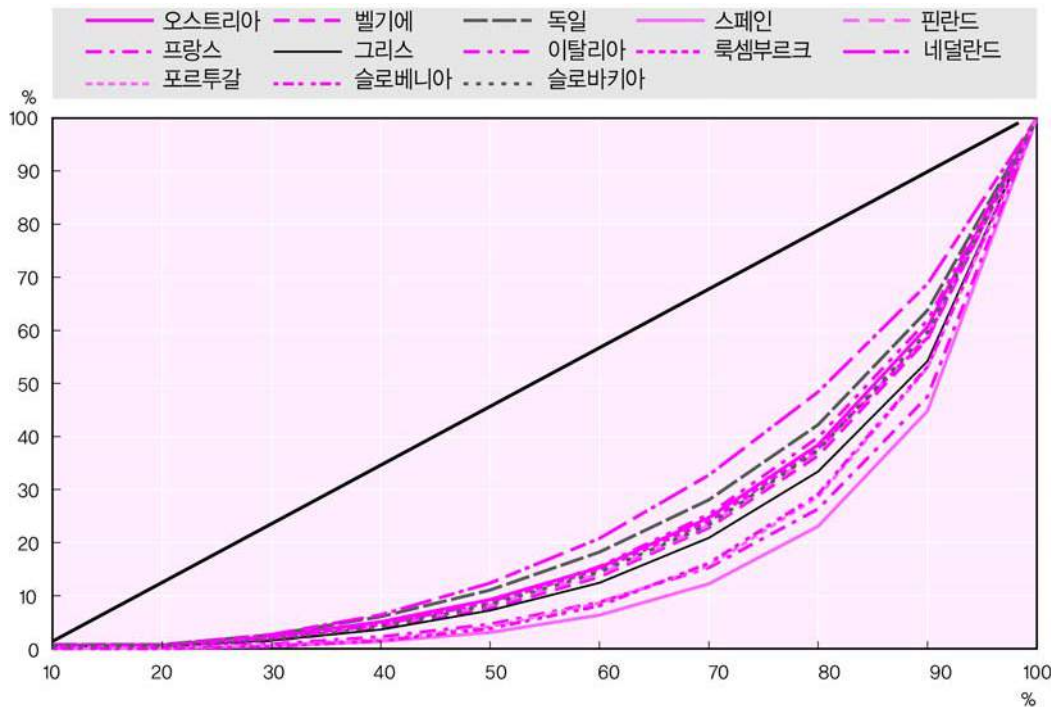
그림 2.21. 65세 이상 (평균) 남녀간 자산 격차



출처: 1차 HCF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180>

그림 2.22. 금융자산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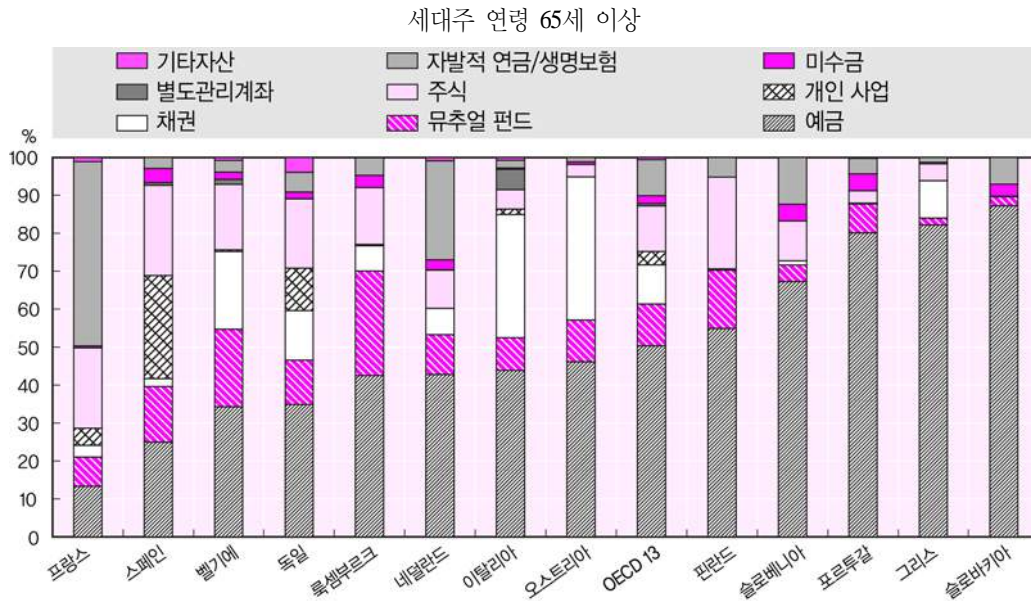


출처: 2013년 1차 HCF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199>

그림 2.23은 HCFS에서 대상으로 한 13개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평균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예금 50%, 주식 12%, 뮤추얼 펀드 11%, 채권 10%, 사적 연금이나 생명보험 9%, 개인사업 3.5%(자영업 제외), 나머지 3%는 별도 관리계좌 및 미수금 등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만이 총 금융자산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미만이었는데, 이는 그림 2.23에 나타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층의 보유자산이 대부분 유동 자산임을 의미한다. 주식, 뮤추얼 펀드, 개인 사업 투자 등이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의 고령층 총 자산 포트폴리오 중 40%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2.23. 선별된 OECD 국가에서 자산의 구성, 2010-11



출처: 2013년 1차 HCF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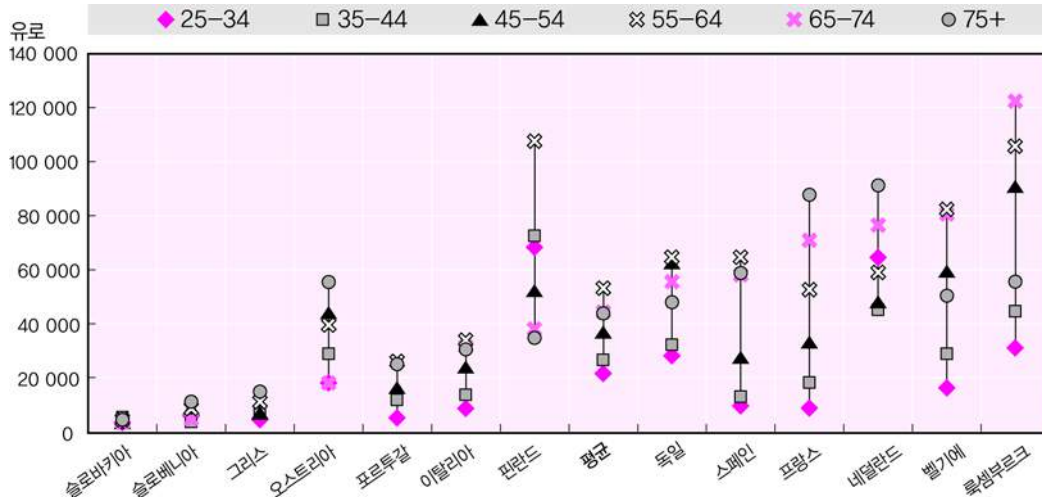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218>

개인의 취향 외에 투자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구조, 사용 가능한 금융상품, 서로 다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도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보유자산 중 자발적 연금/생명보험 요소는 프랑스에서는 비중이 매우 커서 자산의 48%를 차지하는데 이유는 생명보험상품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인출 및 소득 흐름

HCFS 자료에서는 또한 25세에서 64세 인구의 평균 총 자산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축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소한다(그림 2.2). 평균 중위 총 자산은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약 5만3천 유로로 정점에 달한다. 하지만 평균값의 이면에는 국가별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핀란드의 경우 5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의 중위 자산은 10만7천 유로가 넘지만 슬로바키아의 경우 4,400유로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우 연령에 따라 거의 직선으로 상승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림 2.24. 연령 집단 별 중위 금융자산



출처: 2013년 1차 HCF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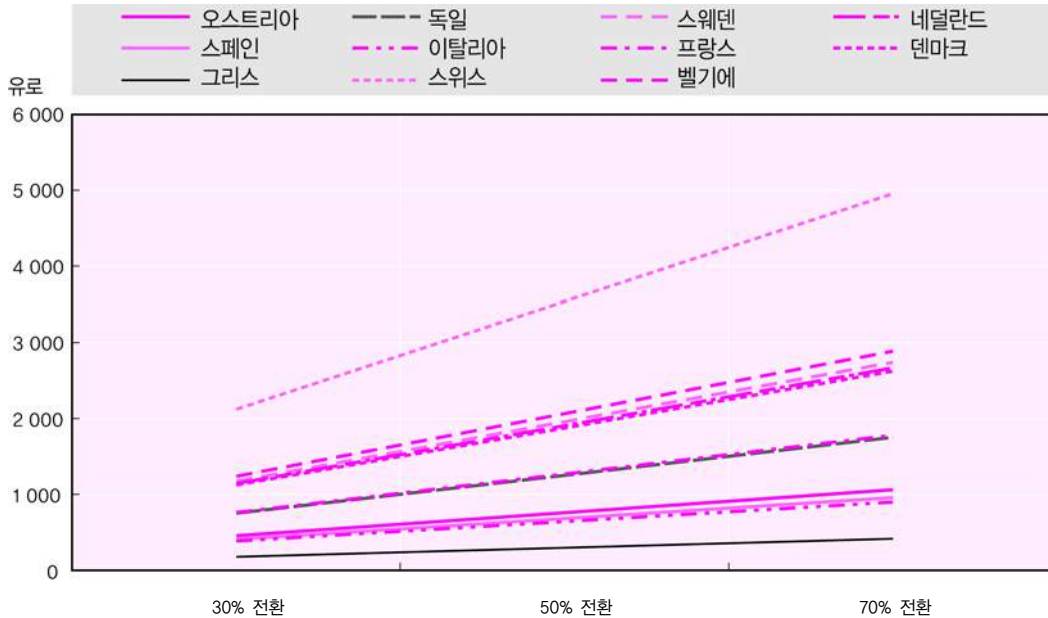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소득은 이자, 배당금, 자본소득의 형태로 들어온다. 금융자산을 전환하면 노후소득의 다른 출처를 보충하는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축액을 서서히 인출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Bloom et al., (2006)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30대 초반부터 은퇴 시까지 저축액이 늘어나며 그 이후 줄어든다. 하지만 65세에서 75세 사이에 명확한 저축액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Bloom and Canning, 2006도 참조). Börsch Supan et al. (2003)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며 독일인들은 실제로 저축을 중단하는 일이 없다. Hayashi et al. (1988)에서는 미국의 은퇴자들이 은퇴 후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자산 최고액의 약 3분의 1을 인출해 쓴다고 한다. 대부분 주택 자산으로 구성되는 나머지 자산은 유산으로 남겨진다. 이들은 미국의 양상이 일본의 고령층에서도 관찰되며 부부 가구(자녀 유무에 관계없이)와 독신 가구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부 가구는 계속해서 저축하는 반면 독신가구는 인출한다(Hayashi, 1989도 참조). SHARE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럽 국가 연구에 따르면 저축과 인출율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 소득, 자산의 분포 역시 고령층의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은퇴자가 말년까지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같은 금융상품의 가용성 및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Romiti and Rossi, 2012도 참조). LWS 자료를 바탕으로 부록 2.A1에서는 자산을 평생의 소득 흐름으로 바꾸는 계리 및 소득 분포 분석에서 나온 표준 기법들을 조합하여 연금을 산정하는 예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자산을 전환하여 확보한 소득 흐름은 주택자산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LWS에서 다루고 있는 11개 OECD 국가에서는 금융자산을 전환한 소득이 핀란드의 68달러부터 미국의 453달러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평균값은 그다지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자산의 분포가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위값은 얘기가 다르다. 오스트리아와 일본만 제외하고 모든 분석 대상 국가에서 인구의 절반 정도는 금융자산을 미화 30달러 미만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의 분포는 자산의 분포와 매우 비슷한데 오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Coda Moscarola et al. (2012)는 유사한 연금 산정 절차를 채택했다. 금리 2.5%를 가정하며 연금을 산정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금융자산의 70%를 전환하기로 한 경우 그리스의 415유로부터 스위스의 약 4,955유로까지 나타났다. 전환하는 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확보되는 연금액도 당연히 낮으며 금리가 상승하면 금액도 높아진다(그림 2.25 참조). 안타깝게도 연금이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일관된 추정값은 나와있지 않았다.

그림 2.25. 총 금융자산 중 전환하는 비율에 따라 확보되는 연금액



출처: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provided in Coda Moscarola, F., E. Fornero, A. Romiti, M.C. Rossi and D. Sansone(2012b), "Is Housing an Impediment to Consumption Smoothing?", CERP, Italy on the second wave of the SHARE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256>

금융자산의 분포가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에 빈곤감소의 척도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특성과 연금제도의 성격(즉, 강제적 제도인지 자발적 제도인지)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 소득분포 최상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빈곤 감소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비용은 금융자산을 전환하겠다는 개인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금액이 지급되는 기간은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확정연금(term annuity)의 경우 지급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반면 종신연금(life annuity)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회경제적 위치(성별, 결혼여부, 건강 등)가 고려되어야 한다. 종신연금은 유동성이 없고 유연하지 않으며 상속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은퇴 후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싼 편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의 판매 수수료 및 서류작업 비용 역시 상당한 경우가 많아서 저소득 집단에게는 매력이 없고 가입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OECD 국가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부터 교육, 공공주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Verbist et al., 2013; Verbist and Matsaganis, 2012; D'Addios and Cavelleri, 2013). 재가요양, 시설 요양, 여가활동 및 재활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사적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 노인 가구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물 공공 노인요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료 이동 서비스, TV 및 라디오 라이선스, 전기 및 가스 보조금 등의 다른 서비스도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주택 급여 패키지(Household Benefits Package)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65세에서 69세의 노인들에게는 자산조사를 통과한 경우만, 70세 이상은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에서는 노인을 위한 수많은 정부 서비스를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며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초고령 층에게는 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ECD 지역에서 전체 인구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출은 2009년 GDP의 평균 14.6%로 해당 비용의 현금이전 가치(12.6%)를 약간 상회했다. 멕시코와 칠레, 한국, 아이슬란드, 호주는 현금이전보다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많은 EU 국가,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에서는 현금 이전의 비중이 훨씬 크다(그림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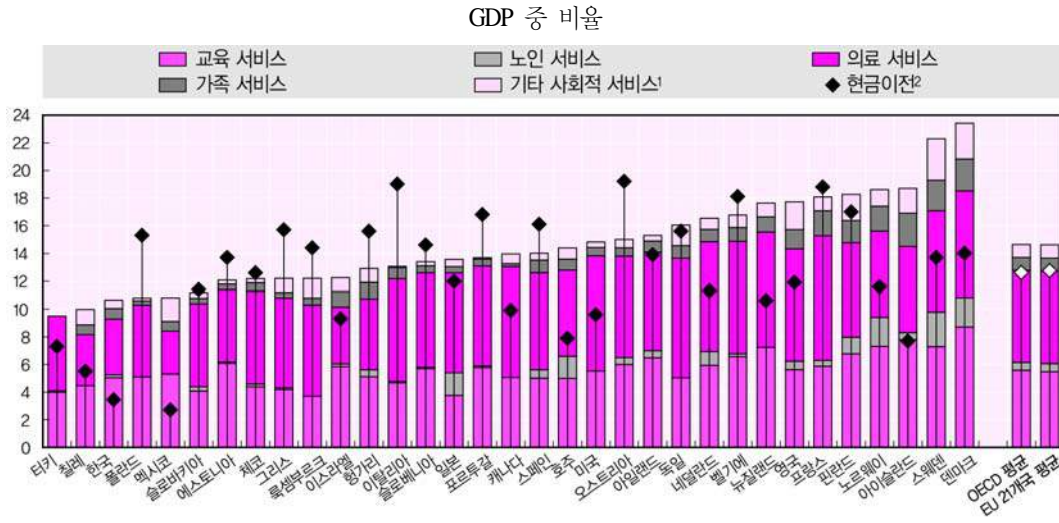
현물 보조금은 최근 수년간 현금 이전보다 빠르게 성장해왔다.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OECD 지역에서 현물 보조금에 대한 지출³⁷은 GDP에서 2.5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반면 현금이전³⁸은 1.5퍼센트 증가했다. 예를 들어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비중은 칠레, 호주,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네덜란드에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현금 이전은 멕시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물 사회 보조금에 대한 공공지출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로 2009년 교육은 GDP의 5.8%, 의료는 6.6%를 차지했다.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는 여전히 비중이 적어 GDP의 0.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호주, 북유럽, 네덜란드에서는 좀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European Commission(2012)의 최근 추정자료를 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EU 지역에서 2060년까지 노인요양 비용이 두 배 -세 배도 가능-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GDP의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 및 돌봄 비용

장기요양 비용 지출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1; OECD, 2014b). OECD의 2011년 보고서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에 따르면 제한적인 요양 니즈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비용(즉, 주당 10시간)은 노인의 경우(65세 이상)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네번째 십분위까지 1인당 가용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그림 2.27). 광범위한 니즈(주당 25시간)를 충족하는 요양 비용은 8번째 십분위까지 가처분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있다(OECD, 2011c). 기대수명이 길고 연금자산이 적은 여성의 경우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면 특히 노후빈곤에 노출된다(OECD, 2014b).

그림 2.26. 총 인구에 대한 보조금 유형별 (현금/현물) 총 공공지출, 2009



주: 국가 표시는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의 옴름순으로 배열. 그리스와 룩셈부르크, 터키의 교육 서비스 자료는 2005년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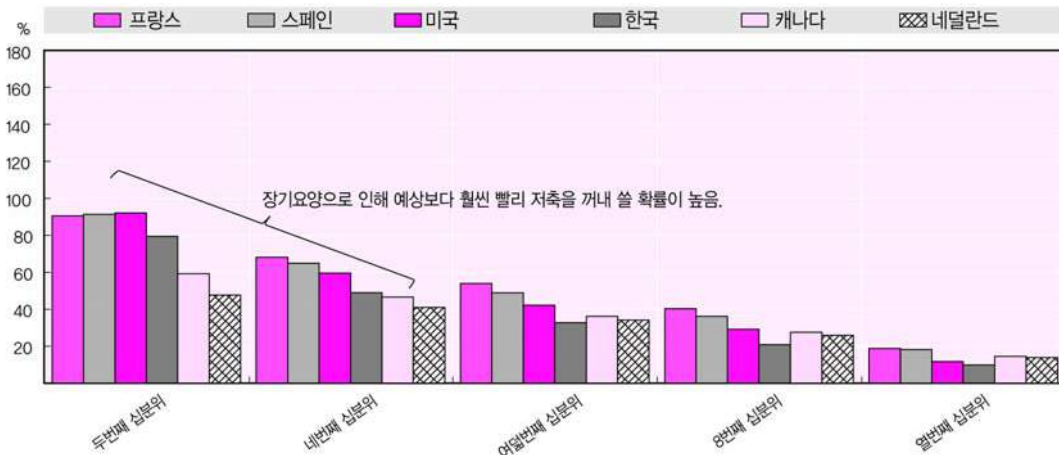
1. “기타 사회적 서비스”는 유족, 장애인, 실업자, 공공부조, 주택 서비스를 포함하며 공공주택에 대한 추정치는 포함되지 않음.
2. “현금 이전”은 노인, 유족, 장애인, 가족, 실업자에 대한 현금이전을 망라하며 공공부조도 포함된다.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Educa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275>

그림 2.27. 노인(65세 이상)의 (낮은) 요양 니즈 연관 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십분위별 조정 가치분 소득 비중, 2000년대 중반



주: 낮은 요양 니즈는 공공 보조금을 제외하고 각국의 일반적인 시간당 요율로 봤을 때 월 43.33시간의 요양으로 정의된다.

출처: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www.oecd.org/health/longtermcare/helpwanted; OECD(2014), Women and Pensions, OECD Publishing, forthc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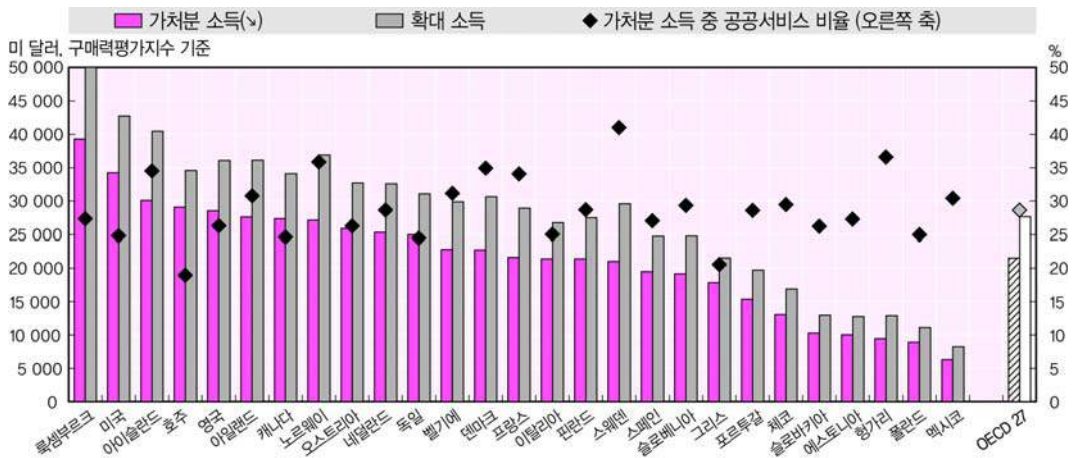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294>

OECD 추정자료를 보면 전일제 간호사와 개인 요양의 비율 -현재 전체 인력의 1%에서 2% 사이- 이 2050년까지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가족 수발자 중 거의 3분의 2는 여성으로 이들은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기 위해 유급 근로를 포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다(주 20시간 이상). 남부 유럽, 체코, 폴란드에서는 가족 수발자의 30% 이상이 이러한 상황이며 스페인(50% 이상)과 한국(60% 이상)은 더욱 심하다. 돌봄이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빈곤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나 수발자의 연금 수급액의 적정성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가족수발자의 대다수가 연금제도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는 노후소득 적정성을 개선한다

27개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에 대한 교육, 의료, 육아, 노인요양, 공공주택서비스 등을 모두 합치면 가구 소득은 28.8% 늘어나며 그 효과가 가장 큰 곳은 스웨덴(41%)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호주(19%)였다(그림 2.28). 특히 의료 서비스는 평균 14% 정도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프랑스(17.9%)와 스웨덴(17.2%)에서 두드러졌지만 네덜란드(10.9%)에서는 훨씬 미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노인요양 서비스가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았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소득 강화 잠재력은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단,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가구 소득의 약 5%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28. 총 인구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소득 강화 효과,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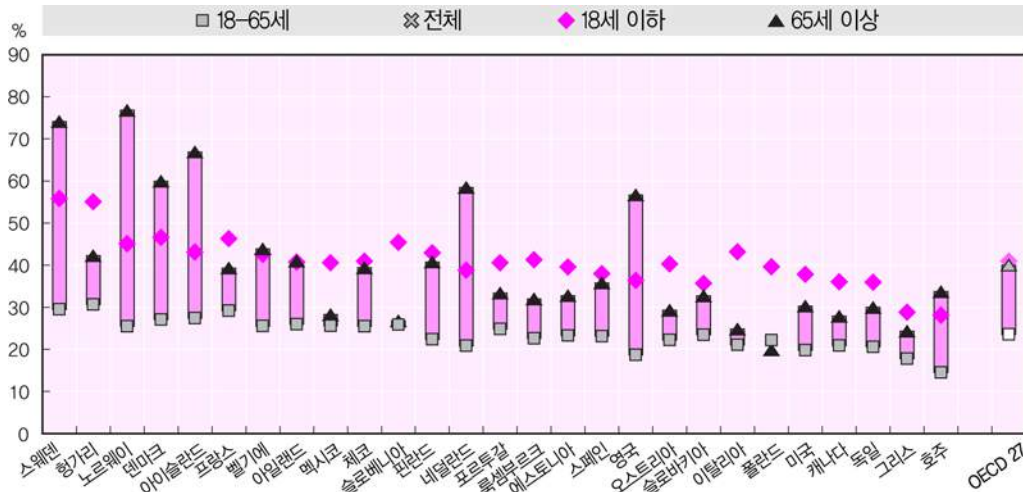
주: 각국의 소득 자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정한 후(2007년부터 다른 연도의 자료인 경우) 2007년의 실제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미 달러로 환산. 이 환산율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공공부문이 무료(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한 소비재와 서비스로 구성된 기준 바구니의 비용을 나타낸 것.

출처: Verbist, G., M. Forster and M.Vaalavuo(2012), "Th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view of New Results and Metho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363c5szq-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313>


그림 2.29에서는 또한, 공공서비스가 생산연령인구보다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확대소득 중 약 40%가 현물 공공서비스로 구성되며 생산연령 인구의 경우 24%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의 가처분 소득 중 공공서비스 비중이 훨씬 높았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70%를, 아이슬란드와 덴마크에서는 60%를 초과했다.

그림 2.29. 연령별 공공서비스의 소득 개선 효과, 2007



주: 각국의 소득자료는 65세 이상 인구의 일인당 순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다. 균등화 척도는 가구 규모의 제공근이다. 소득 자료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가져왔으며 2000년대 중반 자료를 참조했다. 소득은 인플레이에 맞춰 조정된 후 해당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미 달러로 환산한다.

출처: Verbist, G., M. Forster and M. Vaalavuo(2012), "Th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view of New Results and Metho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3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363c55zq-en>; an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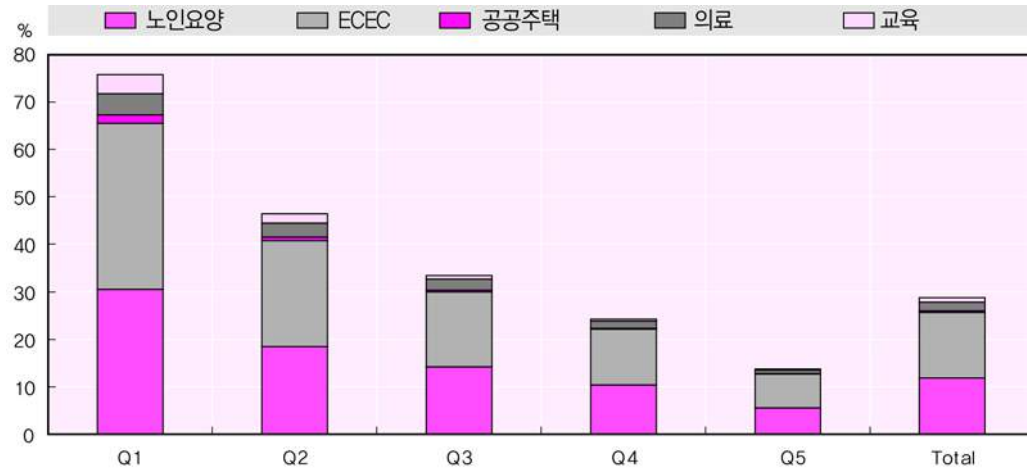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및 노인요양은 소득분포 하위부분에서 가구소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Verbist et al. (2012)에 따르면 서비스의 총 가치는 하위 20%의 가처분 소득 중 평균 76%에 해당하지만 상위 20%에게는 14%에 불과하다(그림 2.30).

특히 장기요양에 대해 Verbist et al. (2012)에서는 재분배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소득분포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혜택이 크다(그림 2.31).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의 경우 최 하위 오분위는 40%에서 50% 사이로 장기요양을 받고 있다. 그림 2.31을 보면 14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장기 현물 요양 보조금은 최저 오분위의 소득을 3분의 1 이상 개선하며 최고 오분위 소득을 개선하는 효과는 5분의 1 미만이다(Verbist et al., 2012).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동 빈곤선의 경우 총 인구의 빈곤을 평균 46% 낮춘다. 그림 2.31에서 보여주듯이 조사대상인 14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빈곤율이 10%에서 6%까지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이었으며(60% 정도 감소) 감소폭이 가장 적은 곳은 에스토니아와 스웨덴(27%)이었다. 빈곤율은 공공서비스 없이 가처분 소득에 대해 산정했을 때 6%

에서 18% 사이지만 공공서비스를 감안하면 3%에서 10% 사이로 감소한다.³⁹ 또한, 고령층 인구가 은퇴 후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는데 공공서비스가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도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2.32에서는 그 외에 서비스가 가장 큰 소득 개선 효과를 갖는 국가에서는 노후 빈곤율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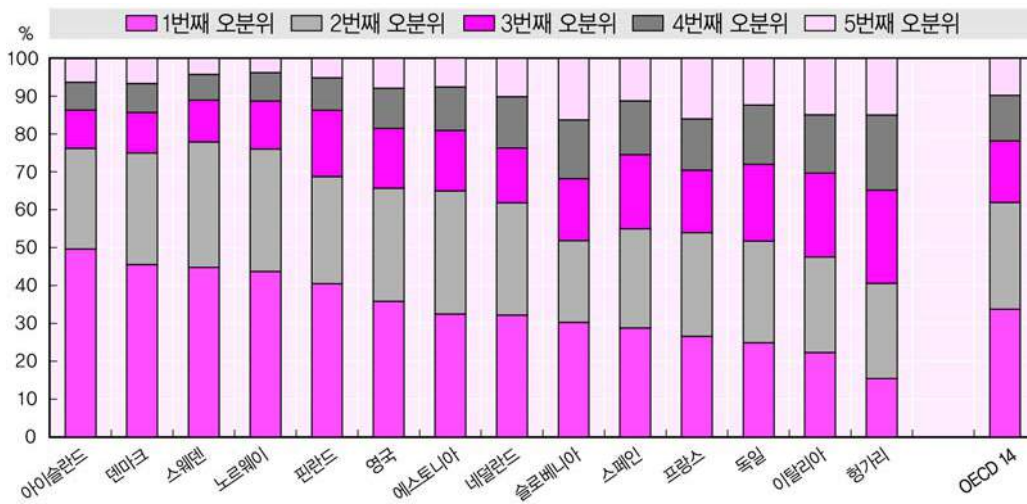
그림 2.30. 현물 서비스가 총 인구 중 소득분포 오분위별 가구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 2007년



출처: Verbist, G., M. Forster and M. Vaalavuo(2012), “Th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view of New Results and Metho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363c5szq-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351>

그림 2.31. 오분위별 장기요양 현물 보조금 분배



출처: Verbist, G., M. Forster and M. Vaalavuo(2012), “Th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view of New Results and Metho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363c5szq-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370>

그림 2.32. 현물 급여의 노후소득 개선과 노후빈곤을 감소효과, 2007



출처: Authors 's calculation based on data from Verbist, G., M. Forster and M. Vaalavuo(2012), "Th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view of New Results and Metho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363c5szq-en>, and data OECD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389>

소득개념을 확대하여 공적 사회서비스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은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OECD 전역에서 현금이전과 현물 서비스의 조합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좀더 널리 사용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수급자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다. 분석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서비스는 노인의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노후소득 패키지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단순히 현재와 미래 은퇴자의 연금 수급액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은퇴 후 생활 수준은 광범위한 다른 요인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주택 자산, 금융 자산, 공적제공 서비스의 가치가 노인들의 소득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후의 다양한 소득원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금전적 생활수준은 현재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인구 가처분 소득의 약 86% 수준이며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100%에 가깝고 가장 낮은 호주와 덴마크, 에스토니아는 7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OECD 국가의 은퇴자들은 소득을 여러 출처에서 얻는데 그 내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적 이전이 노후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본 소득 -특히 사적연금제도로부터의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이 그러하다.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노후소득의 상당 부분을 벌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저소득 은퇴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공적연금과 기타 소득 이전에 의존하고 있다.

노후 빈곤의 감소: 정책의 성공

지난 수십년간 노후빈곤의 감소는 OECD 국가의 사회 정책 중 가장 큰 성공사례였다. 2010년 평균 OECD 노인 빈곤율은 12.8%로 경제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15.1%보다 감소했다. 캐나다와 폴란드, 터키만 이 기간 동안 노인 빈곤이 증가했다. 많은 국가에서 현재 청년층의 빈곤 위험율이 노인보다 높은 실정이다. 낮은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안전망 급여를 수급하는 노인들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최종 보조금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사회적 낙인, 수급에 관한 정보 부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최종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은 노인 빈곤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소유주택은 노후 자산

연금 수급자의 은퇴 후 니즈를 좀더 완전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 장에서는 이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살펴보았는데 주택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의료와 장기 요양 서비스 등 공적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면, 분석자료는 주택소유가 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재정적 잇점을 누리면서, 필요할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거나 역모기지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 소유율은 연령이 높아지면 증가한다. 평균적으로 55세 이상 인구 중 77%가 주택 소유자인데 45세 미만은 60% 정도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한 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노인 주택소유자들은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노인 중 40%만이 대출금 상환이 끝난 상태이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그 비율이 90%가 넘고 호주와 칠레, 미국은 80% 정도이다.

유럽 국가에서 주택 소유는 고소득 집단에서 좀더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인 하위 10% 중에서도 거의 7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소득 최상위 십분위에 속하는 70대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미상환 대출 규모도 소득 하위층보다는 소득이 높은 은퇴자 층에서 좀더 크고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귀속 임대료는 소득을 강화하고 빈곤율을 감소시킨다

사람들이 자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귀속 임대료”라고 한다. 국가마다 이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국가간에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의 경우 귀속 임대료를 노인의 가처분 소득에 더하면 가처분 소득이 평균 18% 정도 증가한다. 주택이 가처분 소득에 29% 정도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국가는 스페인이다.

가처분 소득을 더하면 노후 빈곤율도 감소하게 된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노인 빈곤은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50%로 고정된 빈곤 기준선에 대해 평균 7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귀속 임대료를 포함하여 좀더 높아진 중위 소득에서 이끌어낸 변동 빈곤선에 대해서도 3.5% 퍼센트 감소한다. 이번에도 자료는 한정된 국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OECD 차원에서 회원국들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주택자산은 또한 역 모기지를 통한 노후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그리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 미국만이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다 해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역 모기지는 유럽에서 비교적 흔치 않은 제도로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특히 장기 요양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좀더 널리 사용될 전망이다.

주택 자산이 은퇴자의 생활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노후에 자원이 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첫째, 주택은 자산일 뿐 아니라 소비재이기도 하다. 소유자는 주택을 유지 관리할 돈이 필요하며 이 비용이 소득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의 가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인구 고령화는 강력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노후 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 집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고소득 은퇴자들의 주택보다 가치가 현저히 낮을 확률이 높다. 주택자산을 소득의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사항인지는 소득분포 중 주택소유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료 부족으로 노인들의 잠재적인 부(wealth)의 분석이 어렵다

일관된 자료의 부족은 노인들의 금융자산에 대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기준 분석을 할 수 있는 최근의 국가간 비교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는데 노인들의 부가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남년간 격차가 커 여성 노인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나타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노후소득을 강화하는데 금융자산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부유한 은퇴자들이며 이들의 생활수준과 노후소득의 적정성은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사안이 아니다.

주택 및 금융자산은 공적연금 급여액을 보충한다. 이것 자체가 적절한 연금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은 아니다. 국가간 비교 가능한 자료가 나와야 주택 및 금융자산이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 노후 생활에 가치를 부가

한편 공공서비스는 은퇴자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는 특히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각국은 무료 교통서비스, TV 라이선스, 만화 및 사회 활동에 무료 참여 등 다른 서비스들도 제공한다. 공공 현물 서비스는 노후 생활에 가치를 부가한다. 즉, 노인들의 소득을 평균 40% 증가시키며 생산연령 인구의 소득은 24% 증가시킨다.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인 가처분 소득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 여기 제시된 분석에서는 또한 서비스가 고소득 노인 가구보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현물 서비스는 총 인구의 빈곤율을 평균 46% 감소시키며 이러한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는 국가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의 기여는, 그 정의상 노인에게 집중되는데, 여전히 소규모이다. 현재 이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는 극소수이나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다. 공공 지원은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빈곤 예방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금 전망

이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OECD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적정성 관련 요소가 많다. 공적연금 수급액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후소득 제공의 중추로 남아 있는 만큼 사람들이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래 연금 수급액을 구축하기 위해 기여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 장에서 OECD 국가의 연금 개혁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미래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모든 국가들이 저소득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의무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적연금으로 적정한 노후소득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적연금도 마찬가지로 인데,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연금제도 가입율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고 많은 신흥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부분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OECD에서 펴낸 *OECD Pensions Outlook*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주

1. 예를들면 유럽연합(2012a)와 whitehouse et al. (20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들 지표는 Eurostat과 OECD에서 모두 발행. 예는 OECD(2008)과 OECD(2009, 2011a, 2011b) 참조.
3. 행정적 자료는 현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제도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 대체율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연금대체율은 또한 현재 규정을 미래에 은퇴할 근로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미래 연금 급여액을 평가하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이 OECD 연금 모형의 핵심이다.
4. Haig(1921) and Simons(1938). Goode(1977)에서는 von Schanz가 1986년 Haig-Simons의 정의에 참여했으므로 “Schanz-Hai-simon”이 맞다고 보고 있다.
5. 일회성 소득이 자산의 매도, 보험계약의 정산 등 정기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나타난다.
6. 자본 이득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발생한다. 자본이득은 소유자가 자산을 매도하여 이익으로 현금을 취득하면 실현된다.
7. Smeeding and Moon(1980)은 일련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비교했는데 사용가치 등 생산비와 좀더 주관적인 메트릭스간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보았다.
8. 임금과 급여액 지표는 OECD 웹사이트 “Going social: the great tax-benefit balancing act”, www.oecd.org/els/benefitsandwagesoecdindicators.htm을 참조한다.
9. Eurosystem(2009)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주택 세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EMF, 2012도 참조). 여러 형태의 자산에 관한 세제 정보는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ension Supervisors(IOPS)에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IOPS, 2008).
10. 척도는 가구의 니즈가 가구원(성인이건 아동이건)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OECD, 2011b). 소비단위의 수를 판단하는데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중 상당수를 Atkinson et al. (1995)에서 검토하고 있다. 단위에 가치를 할당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가구의 규모와 가구원의 연령(성인인지 아동인지)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는 다음과 같다.
 - OECD-균등화 척도로 첫번째 가구원에 1을 할당하고 그 외 성인 가구원에 0.7을, 아동 한 명당 0.5를 할당한다.
 - OECD-수정 척도로 세대주에게 1을, 그 외 성인 가구원 한 명당 0.5, 아동 한 명당 0.3을 할당한다.

- 제공근 척도는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공근으로 나눈다.
- 11.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독신(unattached)”이라는 것이 노인들 사이에서 저소득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저소득 노인의 약 80%가 독신이다.
- 12. 균등화 척도와 사용된 기준선 둘 다 다르기 때문에 Eurostat과 OECD 빈곤 측정지표는 중복되지 않는다.
- 13. 현재 EU-SILC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다섯가지 주요 영역 또는 항목 집단에 걸친 물질적 결핍의 분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1) 경제적 압박 (2) 주거지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 (3) 소비 박탈 또는 내구재(의 강요된 부족) (4) 주택 결핍 (5) 주거 환경이 그것이다. 다른 저자들은 결핍의 “기본적” 형태와 “2차적”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rostat의 최근 연구에서는 1차적 지표에서 결핍의 환경적 측면과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Guio and Maquet, 2007 참조).
- 14. 이 숫자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87%는 세금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의 수치이다.
- 15. 새로운 보충 빈곤지표(SPT)와 함께 미국에서 측정된 최근의 노인빈곤 예측치를 보면 약 15% 또는 16%로 “전통적” 추정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러나 연령 요소는 차이가 있다. 즉, SPT에 따르면 노인 빈곤은 전통적 지표(9%)보다 높다(15%). www.census.gov/prod/2012pubs/p60-244.pdf의 그림 5를 참조한다. 공식적 추정치와 SPT의 주된 차이는 후자는 세금과 일부 현물 이전을 고려한다는 점이다(Short, 2012).
- 16. Flores Rodriguez(2009)와 Salles and de la Paz LÓpez(2008)도 참조한다.
- 17. 미국과 호주에서는 주택 비용이 과다한 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선은 일반적으로 가구 가처분 소득의 30%로 설정되어 있다.
- 18. Moriizumi, and Naoi(2012)도 참조한다.
- 19. 예를 들어 호주통계국(ABS)에서는 주인이 점유한 주거지의 임대료 증가액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헤도닉 함수를 사용한다(ABS, 2008). 일반 세입자가 내는 임대료 자료는 일정한 주거지 특징으로 회귀한다(예: 위치 및 주거지 구조). 그리고 추정치는 주인 점유 및 기타 시가 미만으로 임대된 주거지의 임대료 균등화에 대한 귀속 가치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 20. Brown et al. (2010), Milligan(2008), Lafrance and LaRochelle-Côté(2011), Pendakur(1998 and 2001)도 참조한다.
- 21. 이 카테고리는, 예를 들면, 리노베이션 및 유지보수작업(예: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공사)을 위해 주택소유자에게 주는 지원금,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시가 미만으로 주거지를 임대한 세입자의 혜택을 포함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한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22. 임대 시장의 규모는 국가마다 다른데 동유럽 국가, 아이슬란드, 스페인의 10% 미만부터 독일의 거의 40%까지 분포한다.
- 23.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임대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낮은 임대료를 내거나 임대료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폴란드와 체코처럼 상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 24. 예는, 유럽의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Reifner et al. (2009a and 2009b)와 Reifner et al. (2010)과, 호주,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제도를 비교한 Ong et al. (2013a and 2013b), 그리고 호주와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시장을 비교한 Coda Moscarola et al. (2012), 영국과 뉴질랜드의 제도를 비교한 Davey(2007)이다. Rossi and Sansone(2013)과 Mitchell and Piggot(2003)도 참조한다.
- 25. Ong et al. (2013a and 2013b)은 주택 자산 인출 제도(HEW)를 참조하고 있다.
- 26. Reifner et al. (2010)도 참조한다.
- 27. 결과는 또한, 이탈리아에서 주택이 상당 규모의 소득 강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저소득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국세청(the Agenzia delle Entrate)에 따르면 주택소유자의 71%가 총 수입이 2만6천 유로 미만인 것으로 신고했으며 이들이 총 납세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이 1만 유로 미만인 이들 중 4분의 1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Agenzia delle entrate, 2012도 참조).
- 28. 저자들이 설명했듯이 현재 주택의 인화된 가치는 금리와 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한 산수지만 기대수명이 짧고 금리가 낮으면 가치는 높아진다. 금리가 8%라면 동일한 65세 노인에게 있어 동일한 주택의 현재 가치가 34,843 유로로 낮아지며 금리가 10%라면 평균 24,835유로로 낮아진다.

29. 척도 때문에 스위스는 그림 2.18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주택의 가치는 87만 유로 이상으로 가장 높다. 연금 역시 높는데 금리가 6%이면 2만3천 유로 이상이며 금리가 10%이면 1만5천 유로이다.
30. 빈곤율은 2005년 Eurostat 빈곤 기준선에 관련하여 정의되었다.
31. 예를 들어, 2004년과 2006년 65세 노인의 평균 주택 자산이 146,000유로라고 가정하자. 65세에서 기대여명이 18.8년(Eurostat의 산정에 따름)이고 연 금리가 6%이면 그 주택의 현재 가치는 49,250 유로 정도가 된다. 금리가 8%라면 동일한 65세 노인에 대해 주택의 가치는 34,843유로, 금리가 10%라면 24,835유로가 된다. 금융 제공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저자들은 대출자의 기대여명이 5년을 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10만 유로의 가치를 가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기대여명이 12년인 대출자는 6% 금리에서 5,928유로가 아니라 3,544유로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연금은 다음 공식을 이용해 산정된다.
- $$\text{연금} = \text{주택 가치} \frac{r}{(1+r)^{\text{life expectancy} + 5} - 1} \quad (\text{life expectancy: 기대여명})$$
- R은 적용된 금리이고 기대여명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쪽의 기대여명이다.
32. 부의 회계처리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투자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게 봤을 때 부유세(wealth taxes)에는 세 유형이 있는데 1) 부의 순가치에 대한 세금, 2) 자본 이전에 대한 세금(상속세, 증여세 등), 3) 자본 이득세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금의 상당수가 유럽 및 OECD 국가에 존재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OECD(2011d)에 따르면 2010년 OECD 지역에서는 총 세수의 1%가 부유세를 통한 것이었다. 부유세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여전히 자본이득세이며 나머지 두 종류의 세금은 예상보다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들 종류의 세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Center on Household Assets and Savings Management(CHASM, 2013)에서 지적했듯이 OECD 회원국들 중 절반이 1990년 부유세를 두고 있었는데 10년 뒤에는 3분의 1로 줄었고 2010년까지는 세 개 국가만(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부유세를 재도입했고 일시적으로만 도입한 경우(예: 아이슬란드와 스페인)도 있었다.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2011)도 참조한다.
33. LWS 자료가 바탕을 두고 있는 조사는 다음 연도에 실시되었다. 호주 2004년, 캐나다 1999년, 핀란드 1998년, 독일 2006년, 이탈리아 2004년, 일본 2003년, 룩셈부르크 2007년, 노르웨이 2002년, 스웨덴 2002년, 영국 2000년, 미국 2000년.
34. 마지막으로 일부 분석은 SHARE 1차, 2차 서베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Coda Moscarola et al., 2012 and 2013).
35. HFCS 자료는 유로 존에 속하는 열다섯 개 유럽 국가의 가구 및 개인이 가진 부에 관해 비교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을 분석에서 다루고 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도 서베이에 기록되어 있으며 부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urosystem HFCN(2009, 2011, 2013a, 2013b) 참조.
36. 그 차이는 $[1 - (\text{여성 자산의 평균값}/\text{남성자산의 평균값})]$ 으로 표현된다.
37. 현물 급여의 정의는 노인, 가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의료, 교통, 주택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한다.
38. 현금 이전은 노령연금, 유족 및 장애인 연금, 가족 수당, 실업급여, 기타 현금 이전으로 구성된다.
39.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of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에 관한 GAO(2011)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현금지불 의료비용을 고려할 경우 미국의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공식 빈곤 지표 9%에서 이들 비용을 설명하는 대안 지표 17%가 된다.

참고문헌

- Agenzia delle Entrate (2012), *Gli Immobili in Italia*, Chapter 3, Dipartimento delle Finanze e dall'Agenzia del Territorio.
- Andrews, D. and A. Caldera Sánchez (2011), "Drivers of Homeownership Rat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49,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g9mccw7jf-en>.
- Andrews, D., A. Caldera Sánchez and Å. Johansson (2011), "Housing Markets and Struc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3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gk8t2k9vf3-en>.
- Antolin, P., S. Payet and J. Yermo (2012), "Coverage of Private Pension Systems: Evidence and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4d6gh2w6c-en>.
- Atkinson, A.B. (1987), "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Econometrica*, Vol. 55, pp. 749-764.
- Atkinson, T., B. Cantillon, E. Marlier and B. Nolan (2002),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Atkinson, A.B., L. Rainwater and T.M.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Policy Studies, No. 18, OECD Publishing.
- 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 (2013), *Housing Occupancy and Costs 2011-12*, Table 2.
- Bloom, D. and D. Canning (2006), *Booms, Busts, and Echoes, Finance and Development: A Quarterly Magazine of the IMF*, Vol. 43, No. 3, September.
- Bloom, D.E., D. Canning, R. Mansfield and M. Moore (2006), "Demographic Change, Social Security Systems, and Savings", *NBER Working Paper*, No. 12621, October.
- Boarini, R. and M. Mira d'Ercole (2006), "Measures of Material Deprivation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3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866767270205>.
- Börsch-Supan, A. (ed.) (2003), *Life-Cycle Savings and Public Policy*, Academic Press, New York.
- Bowen Bishop, T. and H. Shan (2008), *Reverse Mortgages: A Closer Look at HECM Loans*, NBER, Cambridge, United States.
- Bradshaw, J., S. Middleton, A. Davis, N. Oldfield, N. Smith, L. Cusworth and J. Williams (2008),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Britain: What People Thin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Brandolini, A., S. Magri and T.A. Smeeding (2010), "Asset-based Measurement of Poverty", *Luxembourg Wealth Study Working Paper Series*, No. 10.
- Brewer, M., J. Browne and R. Joyce (2011), "Child and Working-Age Poverty from 2010 to 2020", *IFS Commentary C121*,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ww.ifs.org.uk/comms/comm121.pdf.
- Brewer, M., J. Browne, R. Joyce and L. Sibieta (2010), "Child Poverty in the UK Since 1998-99: Lessons from the Past Decade", *Working Paper*, No. 10/23,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ww.ifs.org.uk/publications/5303.
- Brown, M., Feng Hou and A. Lafrance (2010), "Incomes of Retirement-age and Working-age Canadians: Accounting for Home Ownership", *Statistics Canada*, ISBN 978-1-100-16319-2.
- Browning, M. and Th.F. Crossley (2000), "The Life Cycle Model of Consumption and Saving",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of an Aging Population Research Papers*, No. 28, McMaster University.
- Browning, M. and A. Lusardi (1996),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4, No. 4, pp. 1797-1855.
- Butrica, B. and D. Jurkat (1996), *Codebook for PSID-GSOEP Equivalent File 1980-1994*, Syracuse University.
- Calvo, J.L. and C. Sánchez (2010),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Spanish Poor Households: The Case of Imputed Rent", Document prepared for the 50th Anniversary European Congres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
- Canberra Group (2011),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UNECE.
- Canberra Group (2001), "Expert Group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s", Ottawa.
- Carstairs, V. and R. Morris (1991), *Deprivation and Health in Scotland*, Aberdeen University Press, Aberdeen.

- Carter, R.A. (1985), "Towards More Flexible and Responsive Housing Policies for the Elderly", Symposium on Ageing: Myths and Realitie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Castles, F. (1998), "The Really Big Trade-off: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Vol. 33, pp. 5-19.
- 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2), "Reverse Mortgages, Report to Congress", United States.
- CHASM – Centre on Household Assets and Savings Management (2013), "Wealth Taxes: Problems and Practice Around the World", *Briefing Paper*, University of Birmingham.
- Coda Moscarola, F., A.C. D’Addio, M.C. Rossi and D. Sansone (2013), "Making Assets a Tool Against Poverty?", SHARE conference, November, forthcoming.
- Coda Moscarola, F., M.C. Rossi and D. Sansone (2012a), "How to Make Real Asset Liquid? The Case of Reverse Mortgages in Italy", mimeo, CERP, Italy.
- Coda Moscarola, F., E. Fornero, A. Romiti, M.C. Rossi and D. Sansone (2012b), "Is Housing an Impediment to Consumption Smoothing?", CERP, Italy.
- Currie, J. (2006), "The Take-up of Social Benefits", in A.J. Auerbach, D. Card and J.M. Quigley (eds.), *Public Policy and the Income Distribution*,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pp. 80-148.
- D’Addio, A.C. (2013), "Housing Wealth and Imputed Rents for Adequate Living Standards in Old-age",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June.
- D’Addio, A.C. and M.C. Cavalleri (2013), "Publicly-provided Services for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in Old-age",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June.
- D’Addio, A.C., M. Suchomel and E. Whitehouse (2013), "Financial Wealth for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forthcoming.
- Davey, J.A. (2007), "Making Use of Home Equity – Comparisons between Britain and New Zealand", mimeo, Social Policy Group,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Davey, J.A. (1995), "Putting Housing Wealth to Work: Home Equity Conversion in New Zealand", Ministry of Housing, Wellington.
- Disney, R.F. and E.R. Whitehouse (2001), "Cross-Country Comparisons of Pensioners’ Incomes", *Research Report*, No. 142,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London.
- Domhoff, G.W. (2013), "Wealth, Income and Power", *Power in America*,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Cruz.
- Elder, T.E. and E.T. Powers (2006), "The Incredible Shrinking Program: Trends in SSI Participation of the Aged", *Research on Ageing*, 28:241.
- European Commission (2012a), "Pension Adequacy in the European Union 2010-2050", Report prepared jointly by the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May.
- European Commission (2012b), "The 2012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27 EU Member States (2010-2060)", *European Economy*, No. 2-2012, European Union publishing.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2012), *Hypostat 2011*, Brussels.
- Eurostat (2013), "Housing Conditions – Statistics Explained (2013/10/6)",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Housing_conditions.
- Eurosystem (2009), "Housing Finance in the Euro Area", *Occasional Paper*, No. 101, Task Force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of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uropean Central Bank publishing, March.
-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Network (2013a), "The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 Methodological Report for the First Wave", *Statistics Paper Series*, No. 1, April.
-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Network (2013b), "The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 Results from the First Wave", *Statistics Paper Series*, No. 2, April.
-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Network (2011), "Core Output Variables", available at: www.ecb.europa.eu/home/pdf/research/hfcn/core_output_variables.pdf.

-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Network (2009), “Survey Data on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Research Summary and Policy Use”, *Occasional Paper*, No. 100, European Central Bank.
- Fahey, T. (2004), “Housing Expenses and Income Poverty in EU Countri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3, No. 3, pp. 437-454.
- Fisher, G. (1995), “Is there Such a Thing as an Absolute Poverty Line Over Time?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Britain, Canada, and Australia on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Poverty Line”, *Poverty Measurement Working Papers*, US Census Bureau.
- Flores Rodríguez, L. (2009), “La Vivienda en México y la población en condiciones de pobreza”, Documento de Trabajo, No. 63, Preliminary version, Centro de Estudios Sociales y de Opinión Pública.
- Förster, M. (1994), “Measurement of Low Incomes and Poverty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4, OECD Publishing.
-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9), “The OECD Approach to Measurin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Strengths, Limits and Statistical Issues”, Paper prepared for the Joint OECD/University of Mary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882106484586>.
- Goode, R. (1977), “The Economic Definition of Income”, in J.A. Pechman (ed.),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1), “Older Adults and the 2007-2009 Recession”, A Report to the Chairman, Subcommittee on Primary Health and Aging,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 US Senate.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5), “Means-Tested Programs: Information on Program Access Can Be an Important Management Tool”, Report to the Ranking Minority Member, Committee on the Budget, House of Representatives, United States.
- Guerrero Segovia, A. and C.E.G. Soto (2012), *El sector inmobiliario en México*, Federal Attorney’s Office of Consumer (PROFECO).
- Guio, A.C., A. Fusco and E. Marlier (2009), “An EU Approach to Material Deprivation EU-SILC and Eurobarometer Data”, *IRISS Working Paper*, No. 2009-19, CEPS/INSTEAD, Luxembourg.
- Guio, A.C. and I. Engsted-Moquet (2007), “Non-income Dimension in EU-SILC: Material Deprivation and Poor Housing”, *Comparative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ssu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of the EU-SILC Conference, Helsinki, 6-8 November 2006,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Luxembourg.
- Guio, A.C. (2005), “Material Deprivation in the EU”, *Statistics in Focus*, No. 21/2005, Eurostat,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 Haas, P., R. Hickey, J. Lubell and S. Morse (2012), “Losing Ground. The Struggle of Moderate-Income Households to Afford the Rising Cost of Housing and Transportation”, Report by the Center for Housing Policy and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 United States.
- Haig, R. (1921), “The Concept of Income: Economic and Legal Aspects”, in R. Haig (ed.), *The Federal Income Tax*,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Hayashi, F. (1989), “Japan’s Saving Rate: New Data and Reflections”, *NBER Working Papers*, No. 320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Hayashi, F., A. Ando and R. Ferris (1988), “Life Cycle and Bequest Savings. A Study of Japanese and US Households Based on Data from the 1984 NSFIE and the 1983 Survey of Consumer Finance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2, No. 4, pp. 450-491, December.
- Hirayama, Y. (2010), “The Role of Home Ownership in Japan’s Aged Society”,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 10, No. 2, pp. 175-191.
- Hulse, K., T. Burke, L. Ralston and W. Stone (2010), “The Benefits and Risks of Home Ownership for Low-moderate Income Households”, *Final Report*, No. 154,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
- INEGI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2011),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2010*, Mexico.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1), “Dimensions of Tax Design”, *The Mirrlees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for IFS.
- IOPS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 (2008), “Complementary and Private Pensions throughout the World 2008”, Document co-produced by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 (IOPS) and the OECD,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48829-en>.
- Junto, A. and M. Reijo (2010), “The Comparability of Imputed Rents”,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European Union publishing.
- Kemeny, J. (2005), “The Really Big Trade-Off between Home Ownership and Welfare: Castles’ Evaluation of the 1980 Thesis, and a Reformulation 25 Years 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 22, No. 2, pp. 59-75.
- Kemeny, J. (1995), “From Public Housing to the Social Market: Rental Policy Strategy in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 Kemeny, J. (1992), *Housing and Social Theory*, Routledge, London.
- Kemeny, J. (1981), *The Myth of Home Ownership*,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 Kenworthy, L. (2007), “Measuring Poverty and Material Deprivation”, Report prepared for *Statistics Canada*, Ottawa.
- Lafrance, A. and S. LaRochelle-Côté (2011), “Consumption Patterns Among Aging Canadians”, *Perspectives on Labour and Income*, Component of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75-001-X.P. 3-12, March.
- Leather, P. (1990), “The Potential and Implications of Home Equity Release in Old Age”, *Housing Studies*, Vol. 5, No. 1, pp. 3-13.
- Lusardi, A. and O.S. Mitchell (2007),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s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54, No. 1, pp. 205-224, <http://dx.doi.org/10.1016/j.jmoneco.2006.12.001>.
- Madden, D. (2000), “Relative or Absolute Poverty Lines: A New Approach”,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6, pp. 181-199.
- Matsaganis, M., H. Levy and M. Flevotomou (2010), “Non Take-up of Social Benefits in Greece and Spain”,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44, No. 7, pp. 827-844.
- McIntosh, G. and J. Phillips (2003), “Caring for the Elderly – An Overview of Aged Care Support and Services in Australia”, *E-Brief*, Social Policy Group, Australia.
- Milligan, K. (2008), “The Evolution of Elderly Poverty in Canada”, *Canadian Public Policy*, Vol. 34, No. s1,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79-94, November.
- Mitchell, O. and J. Piggott (2003), “Final Report: Unlocking Housing Equity in Japan”,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 Modigliani, F. and R. Brumberg (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Chapter 15 in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pp. 388-436.
- Moriizumi, Y. and M. Naoi (2012), “Unemployment Risk, Homeownership and Housing Wealth: Lessons from Bubble Aftermath in Japan”, in C. Jones, M. White and N. Dunse (eds.), *Challenges of the Housing Econom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ttp://dx.doi.org/10.1002/9781118280829>.
- National Housing Supply Council (2012), *Key Indicators, 2012 –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hapter 5, “Trends in Housing Affordability”, Australian Government.
- Nordenanckar, V. (2009), “Reference Budgets as Component in Social Policy – A Method of Comparing Income with Consumption Needs”, Conference of the EU Progress Project “Standard Budgets”, Vienna, 20-22 October 2009.
- OECD (2014a),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Ireland*, OECD Publishing, forthcoming.
- OECD (2014b), *Women and Pensions*, OECD Publishing, forthcoming.
- OECD (2013a),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i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3b),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New Results from th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Policy Brief*, OECD, available www.oecd.org/els/soc/OECD2013-Inequality-and-Poverty-8p.pdf.
- OECD (2012), *OECD Pensions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69401-en>.

- OECD (2011a), *Pensions at a Glance: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data-00625-en>.
- OECD (2011b),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 OECD (2011c),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97759-en>.
- OECD (2010), *Revenue Statistics 201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rev_stats-2010-en-fr.
-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9-en.
-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44197-en>.
- Ong, R. (2008), “Unlocking Housing Equity Through Reverse Mortgages: The Case of Elderly Homeowner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Vol. 8, No. 1, pp. 61-79.
- Ong, R., M. Haffner, G. Wood, T. Jefferson and S. Austen (2013a), “Assets, Debt and the Drawdown of Housing Equity by an Ageing Population”, *Positioning Paper*, No. 153,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Melbourne.
- Ong, R., S. Parkinson, B.S. Searle, S.J. Smith and G. Wood (2013b), “Channels from Housing Wealth to Consumption”, *Housing Studies*, <http://dx.doi.org/10.1080/02673037.2013.783202>.
- Orshansky, M. (1969), “How Poverty is Measured”, *Monthly Labor Review*, Vol. 92, pp. 37-41.
- Orshansky, M. (1965), “Counting the Poor: Another Look at the Poverty Profile”, *Social Security Bulletin*, pp. 3-29, June.
- Pendakur, K. (2001), “Consumption Poverty in Canada 1969 to 1998”, *Canadian Public Policy*, Vol. 27, No. 2, pp. 125-149, June.
- Pendakur, K. (1998), “Changes in Canadian Family Income and Family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1978 and 1992”,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4, No. 2, pp. 259-283, June.
- Pittini, A. (2012), “Housing Affordability in the EU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Trends”, *CECODHA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Research Briefing*, Year 5, No. 1, January.
- Poon, P. (2005), “Who’s Missing Out on the GIS?”, *Perspectives on Labour and Income*, Vol. 6, No. 10, pp. 5-14, available at www.statcan.ca/english/freepub/75-001-XIE/11005/high-1.htm.
- Reifner, U., S. Clerc-Renaud, E.F. Pérez-Carillo, A. Tiffe and M. Knobloch (2010), “Equity Release Schemes in the European Union”, Printed by Books on Demand GmbH, Norderstedt.
- Reifner, U., S. Clerc-Renaud, E.F. Pérez-Carillo, A. Tiffe and M. Knobloch (2009a), “Study on Equity Release Schemes in the EU – Part I: General Report”, Institut für Finanzdienstleistungen e.V., Hamburg.
- Reifner, U., S. Clerc-Renaud, E.F. Pérez-Carillo, A. Tiffe and M. Knobloch (2009b), “Study on Equity Release Schemes in the EU – Part II: Country Reports”, Institut für Finanzdienstleistungen e.V., Hamburg.
- Romiti, A. and M.C. Rossi (2012), “Housing Wealth Decumulation. Portfolio Composition and Financial Literacy Among the European Elderly”, *Carlo Alberto Notebook*, No. 289, December, www.carloalberto.org/research/working-papers.
- Rossi, M.C. and D. Sansone (2013), “Ho una casa ma non ho soldi. La via del reverse mortgage”, InGenere, February.
- Rowntree, B.S.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Macmillan, London.
- Salles, V. and M. de la Paz López (2008), “Viviendas pobres en México: un estudio desde la óptica de género”, Retos para la integración social de los pobres en América Latina.
- Saunders, P. and M. Wong (2012), “Material Deprivation in Australia: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Presented to the ACOSS National Conference, Sydney, 29-30 March 2012.
- Shan, H. (2009), “Reversing the Trend: the Recent Expansion of the Reverse Mortgage Market”,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No. 2009-4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United States.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M.E. Sharpe, New York.
- Short, K. (2012),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1”,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prod/2012pubs/p60-244.pdf.

- Simons, H.C. (1938), *Personal Income Tax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Smeeding, R. and M. Moon (1980), “Valuing Government Expenditures: The Case of Medical Care Transfers and Pover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26, pp. 305-324, September.
- Smeeding, T.M. and D.H.Weinberg (2001), “Toward a Uniform Definition of Household Incom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7, No. 1, pp. 1-24.
- Smith, J. (2004), “Exploring Attitudes to Housing Wealth and Retirement”, *Housing Finance*, Vol. 63, pp. 22-33, Autumn.
- Springer, P.B. (1985), “Home Equity Conversion Plans as a Source of Retirement Income”, *Social Security Bulletin*, Vol. 48, No. 9, pp. 19-19.
- Suchomel, M., A.C. D’Addio, A. Reilly and E. Whitehouse (2013), “Income Inequality in Old-age Over Time in OECD Countries: Trends and Determinant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 Törmälehto, V.M. and H. Sauli (2013),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Imputed Rent in EU-SILC 2007-2010”, Theme: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European Union Publishing.
- Törmälehto, V.M. and H. Sauli (2010),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Imputed Rent in EU-SILC”,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Toussaint, J. (2011), “Housing Wealth in Retirement Strategies: Towards Understanding and New Hypotheses”, Dissertation,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Department of Housing Systems.
- Toussaint, J. and M. Elsinga (2009), “Exploring ‘Housing Asset Based Welfare’. Can the UK Be Held Up as an Example for Europe?”, *Housing Studies*, Vol. 24, No. 5, pp. 669-692.
- United Nations (1977), “Provisional Guidelines on Stat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Accumulation of Households”, *Studies in Methods*, Series M, No. 61.
- Verbist, G. and M. Matsaganis (2012), “The Redistributive Capacity of Services in the EU”, *Gini Discussion Paper*, No. 53,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AIAS).
- Verbist, G., M. Förster and M. Vaalavuo (2012), “The Impact of Publicly Provided Service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view of New Results and Metho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363c5szq-en>.
- Vrooman, C. (2009), “Measuring Poverty Through a Generalised Budget Approach – An Empirical Test in 11 Countries”, Research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ference Budgets for Social Inclusion”, Vienna, 20-22 October 2009.
- Wärneryd, K. (1999), *The Psychology of Saving: A Study on Economic Psychology*, Edward Elgar Publishing.
- Whitehouse, E., A.C. D’Addio and A. Reilly (2011), “Evaluating Adequacy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s”, Paper Prepared for the 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DELSA/ELSA/WP1/RD(2011)3, OECD, Paris.
- Wilson, P. (1988), “Converting Home Equity to Retirement Income”, *Occasional Paper*, 2nd edition, Australian Council on the Ageing, Melbourne.
- Wiseman, M. and M. Yéas (2008), “The Canadian Safety Net for the Elderly”, *Social Security Bulletin*, Vol. 68, No. 2.
- Wolff, E.N. (2004), “Changes in Household Wealth in the 1980s and 1990s in the US”, *Working Paper*, No. 407, Annandale-on-Hudson,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New York.
- Wolff, E.N. (2012), “The Asset Price Meltdown and the Wealth of the Middle Class”,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 Yates, J. (1994), “Imputed Rents and Income Distributio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0, No. 1, pp. 43-66.

부록 2.A1

연금산정

여기에서 사용된 방법은 Disney and Whitehouse(2001)에서 차용한 것이다. 가장 좋은 접근방법은 먼저 독신자에 대한 연금을 산정한 후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독신자에 대한 산정은 단순한 계리적 산정이다. 생존함수 s - 한 개인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생존해 있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_t = \prod_{t=0}^T (1 - \lambda_t)$$

여기에서 λ 은 위험함수(해당 연령까지 생존한다는 조건으로 그 연령에 사망할 확률)이다.

개인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조건에서 기간당 한 단위의 소득흐름의 순현재 가치는 다음과 같다.

$$a_0 = \sum_{t=0}^T S_t (1 - z)^t$$

여기서 z 는 금리이며 결과 a 는 연금계수이다. 기간 0의 보유 자산을 연금계수로 나누면 해당 개인이 일정한(할인된) 소비 수준을 유지하다가 사망 시 순 자산 0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성인 두 명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더 복잡해진다. 출발점은 둘 중 한 명(또는 둘 다) 생존해 있을 때 한 단위를 지급하는 공동종신연금(joint life annuity)이다. 연금계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a_0 = \sum_{t=0}^T (S_{1t} S_{2t} + (1 - S_{1t}) S_{2t} + S_{1t} (1 - S_{2t})) (1 - z)^t$$

여기서 생존함수는 가구원 두 명에 대해 1.2로 연계된다.

하지만 단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2인 가구와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더 적다. 달리 표현하면 2인 가구와 총 소득이 동일한 1인 가구는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균등화 척도로 포착된다. 이는 또한 연금제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유족들에게는 더 낮은 급여액을 지급한다.

국제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OECD, 2008에서 사용된 척도 포함) 단순한 척도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는 것이다. 즉,

$$Y_E = \frac{Y}{n^\varepsilon}$$

여기에서 Y_E 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고 Y 는 가구소득, n 은 가구원 수이고 ε 는 균등화 탄력성으로 여기에서는 0.5로 잡았다(OECD, 2008 참조).

이 척도를 연금 산정에 적용하면서, 가구원 중 한 명만 살아있을 경우 둘 다 살아있을 때보다 지출이 줄어든다고 가정했다. 즉,

$$a_0 = \sum_{t=0}^T (S_{1t} S_{2t} \sqrt{2} + (1 - S_{1t}) S_{2t} + S_{1t} (1 - S_{2t})) (1 - z)^t$$

여기에서 2의 제곱근은 가구원 둘 다 살아있는 경우의 균등화 척도를 실행한다.

이 방법을 규모가 더 큰 가구로 확대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공식이 두 명의 가구원에 대해 서로 다른 치환을 위해 세가지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3인 가구는 7개의 조건, 4인가구는 13개의 조건, 5인 가구는 21개의 조건을 포함하게 된다. 추적 가능한 결과를 위해서는 약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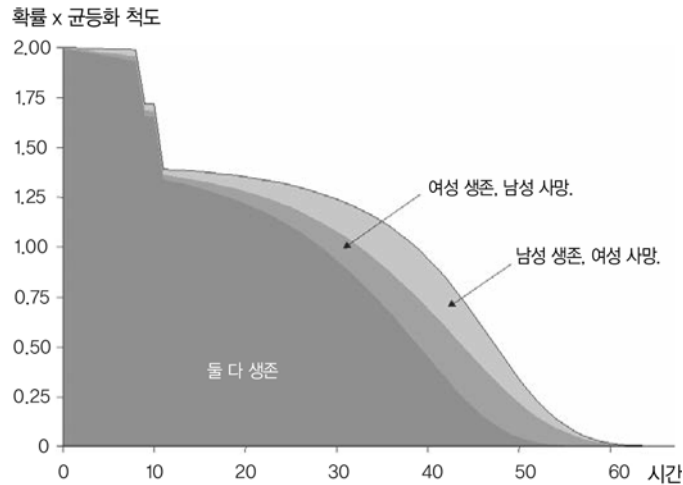
첫째, 연금산정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소득 단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 소득 단위는 최대 2인의 성인과 이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구 내 자녀들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의 생애주기 연금 산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데 자녀가 성장하면 가구를 떠나 독립된 가구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현재는 18세로 상정) 가구의 자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두번째 간소화는 해당 사망률 표를 적용하기 보다는 자녀가 18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산의 부담은 크게 줄고 정확성의 희생 정도는 미미하다.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실제 연금계수는 동일 연령의 기간확정연금(term certain annuity)의 99.43%이다.*

이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43세와 37세 부부와 10세, 8세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있다고 하자. 결과값은 그림 2.A1.1에 나타나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사망률은 매우 낮아지므로 가구의 니즈 평가(생존 확률을 해당 균등화 척도로 곱한 것)는 균등화 척도 값에 가깝다. 그러므로 두 자녀 모두 18세 미만이면 값은 2에 가까우며(4의 제곱근) 한 명만 18세 미만이면 1.73(3의 제곱근)이다. 두 자녀 모두 18세가 되면 곡선은 균등화 척도 1.41의 약간 아래인 1.34로 떨어지는데 이 시점 이전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확률이 더 이상 미미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곡선은 천천히 0으로 내려간다. 연금계수는 summation curve 아래 부분의 크기로 시각화할 수 있다(그림 2.A1.1).

* 이 중 상당 부분이 출생 시 사망률을 반영하며 여기서 사용된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0.4%이다. 가구 조사에서 관찰된 대부분의 자녀는 신생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오류는 본 산식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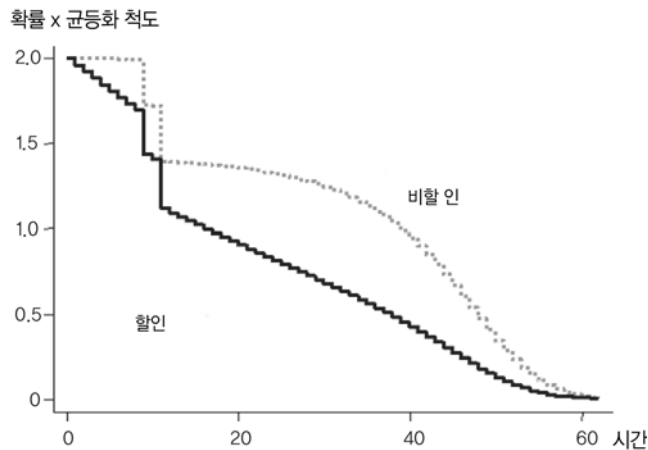
계리적 산정의 두번째 부분은 2% 할인율을 사용해 미래 소득 흐름을 할인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 2.A1.1의 균등화 척도와 생존 확률에 적용하면 그림 2.A1.2의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 할인된 균등화 흐름의 총합이다. 이 예에서 결과는 45.6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가구의 금융자산이 2만 유로라면 이는 2만 유로/45.6 = 440유로를 비 자본 소득원(이전, 근로소득 등)으로부터 해당 가구의 균등화 소득에 더하는 것이다. 비교 목적으로 동일 연령(43세)의 독신 남성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의 연금 계수는 27.1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원에 대해 더 큰 재량을 가질 수 있다. 동일한 금융자산이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그의 소득에 740유로를 더해주는 셈이 된다.

그림 2.A1.1. 한 가구에 대한 계리적 산정: 생존 및 균등화



출처: OECD 연금 모형을 가지고 저자가 산정

그림 2.A1.2. 한 가구에 대한 계리적 산정: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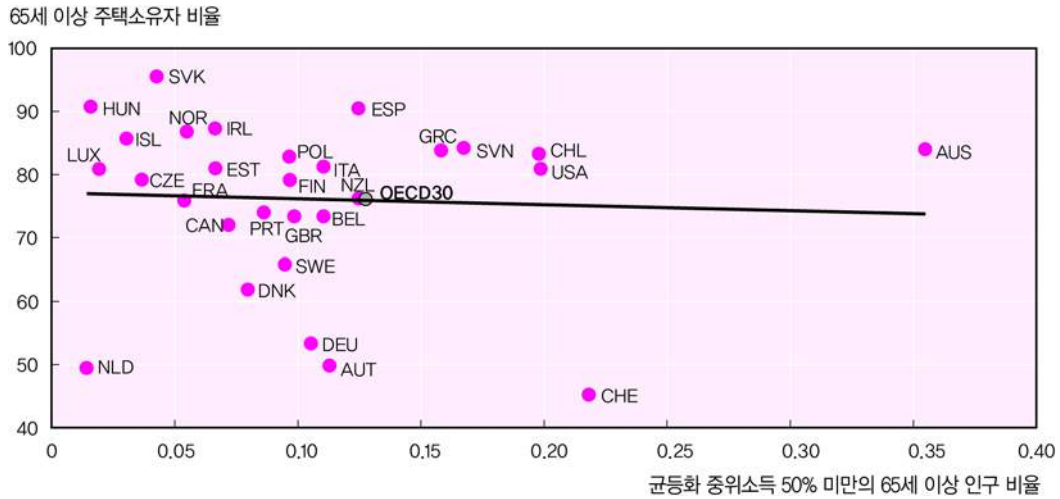


출처: OECD 연금 모형을 가지고 저자가 산정

부록 2.A2

추가 수치

그림 2.A2.1. 빈곤 위험에 빠진 65세 이상 및 주택소유율, 2000년대 후반



주: 그림에 나타난 빈곤율은 노령의 빈곤 위험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는데 비현금성 지원과 공적제공 서비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EU-SILC(2013년 3월 개정 1판) 및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가 산정. 호주와 칠레, 캐나다, 미국은 국가별 출처에서 주택소유 자료 발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36408>

제 3 장

연금제도의 설계

본 섹션의 다섯 개 지표는 OECD 국가 및 여타 주요 국가들의 국가 연금제도의 설계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첫번째 지표는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연금 프로그램들을 분류해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42개국 연금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세 개 지표는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와 룰을 보여준다. 기초, 선별적, 최저연금을 포괄하는 두번째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며 이들 급여의 가치와 이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노령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세번째 지표는 소득비례적 연금인 소득 비례 및 확정기여형 제도를 살펴본다. 이들 제도에서 급여액이 산정되는 방식 및 연금제도에서 포괄하는 소득 범위를 보여준다. 네번째 지표는 “정상” 수급과 “조기” 수급 가능 연령을 보여준다. 또한 연금 제도별로 조기 수급과 수급 연기의 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마지막 지표는 이 문헌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인데 현재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효 노동 시장 이탈 연령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

연금제도는 다양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이 관련되어 있다. 연금제도와 서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분류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사용된 연금 분류법은 두 가지 강제적 “층(tier)”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분배 부분과 저축 부분이 그것이다. 자발적 제도는 개인연금이건 직장 연금이건 간에 세번째 층을 이룬다.

그림에 나타난 프레임워크는 제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역할과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분배 부분인 첫번째 층은 연금수급자들이 절대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 층인 저축 요소는 근로자 시절과 비교해 노후에도 일정한 목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층 안에서 제도는 공급자 별(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분류되고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또 한번 분류된다. 한 눈에 보는 연금은 연금제도의 강제적, 준 강제적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발적, 사적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국가별 제도의 구조를 표를 통해 보여준다.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 첫번째 층인 재분배 제도는 공적 부문에서 제공하며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다.

자산조사(Resource-tested) 또는 선별적(targeted) 제도는 더 빈곤한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급여액을 지급하며 형편이 나은 수급자에게는 급여액을 낮춘다. 이 제도에서는 급여액의 액수가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거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모든 국가가 이런 유형의 일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많은 소수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표에서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12개 OECD 회원국만 해당 칼럼에 표시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완전경력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의 30%)가 자산조사(resource-tested)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정액을 지급하거나(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과거 소득이 아니라 근로 연수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진다. 부가적인 노후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 13개 OECD 회원국이 기초연금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조사(resource-tested) 제도와 특징이 상당히 비슷한 최저연금은 18개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급액의 가치는 연금 소득만 감안한다. 즉, 자산조사적(resource-tested) 제도와 달리 최저연금은 저축 등으로 인한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벨기에와 영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득 비례 제도의 최저 크레딧도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즉, 소득이 매우 낮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실제보다 높았던 것처럼 산정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만 강제적 두번째 층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른 32개 국가에는 네 종류의 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DB) 제도는 18개 OECD 국가에서 공적 부문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적(퇴직)연금제도는 3개 국가(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강제 또는 준 강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은 기여연수와 개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개 OECD 국가에는 **포인트** 제도가 있다.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공적 부문에서 운영)와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바키아의 공적 제도가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포인트를 적립한다. 은퇴 시 연금 포인트의 합계에 연금 포인트 가치를 곱하여 정기적인 연금 급여로 전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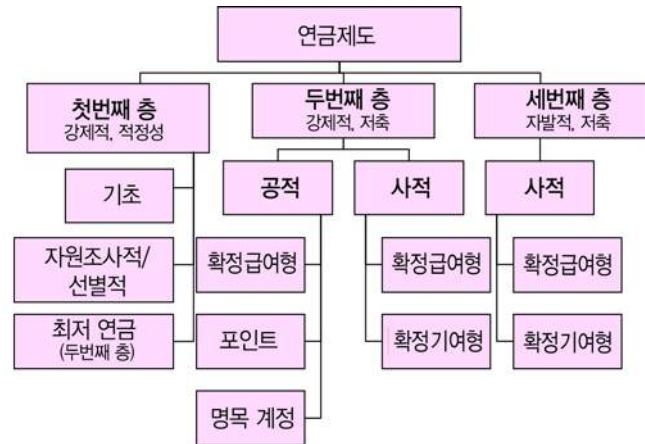
확정기여형(DC) 제도는 10개 OECD 회원국에서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면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 기여금과 투자 수익을 적립하여 은퇴 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덴마크와 스웨덴에는 강제연금 외에 준 강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네 개 OECD 국가(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에는 **명목 계정**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개인 계정에 기여금을 기록하고 잔액에 수익률을 적용한다. 계정은 “명목”상의 것으로 잔액은 관리 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한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상 자본은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한 산식을 사용해 연금 급여액으로 전환된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흉내내어 설계된 것이므로 명목 확정기여형제도(NDC)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문헌

OECD (2005a),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5: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5-en.
 OECD (2005b),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789264017009-en-fr>.

3.1. 분류: 연금제도의 유형



주: 분류에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논의는 OECD(2005a)와 OECD(2005b)의 제 1장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034>

3.2. 연금제도의 구조

	공적			공적 유형	사적 유형	공적			공적 유형	사적 유형
	선별적	기초	최저			선별적	기초	최저		
OECD 회원국										
호주	✓				DC					
오스트리아				DB					✓	NDC DC
벨기에	✓		✓	DB					✓	NDC DC
캐나다	✓	✓		DB					✓	DB
칠레	✓		✓		DC				✓	포인트 DC
체코		✓	✓	DB					✓	DB
덴마크	✓	✓			DC				✓	DB
에스토니아		✓		포인트	DC				✓	NDC DC
핀란드			✓	DB				✓	✓	DB DB
프랑스			✓	DB+포인트					✓	DB
독일	✓			포인트				✓	✓	DB
그리스			✓	DB						DB
헝가리				DB						
아이슬란드	✓	✓			DB					
아일랜드		✓							✓	DB
이스라엘		✓			DC					DB
이탈리아	✓				NDC				✓	NDC/DC
일본		✓		DB						DB+DC
한국	✓	✓		DB						DC
룩셈부르크	✓	✓	✓	DB					✓	NDC DC
멕시코			✓		DC					DB
네덜란드		✓			DB				✓	
기타 주요 경제국										
아르헨티나									✓	DB
브라질										DB
중국									✓	NDC/DC
인도										DB+DC
인도네시아										DC
러시아 연방									✓	NDC DC
사우디아라비아										DB
남아공									✓	

주: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강제 퇴직연금에 대해 기여율, 최저 수익률, 그리고 누적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금율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는 암묵적인 확정급여형(DB) 제도이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NDC=명목 계정

출처: 이 보고서의 제 9장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053>

주요 결과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이 OECD의 연금 제도 분류 중 첫 번째 층을 구성한다.

안전망 퇴직 급여(safety-net retirement benefit)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22.9% 수준이며 열 한 개 국가에서 이 안전망 수준을 초과하는 최저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완전 경력 근로자의 경우 평균 연금급여 -이러한 기여적 최저연금 포함-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28.2%이다.

노인 중 약 3분의 1이 평균적으로 기초, 선별적 또는 최저연금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노인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충족할 급여를 제공한다. 표의 왼쪽 부분은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의 가치를 보여준다. 가치는 절대적 기준 -국가별 통화 단위로 제시됨으로써 본 보고서의 제 9장 “국가별 현황”에 나타나는 상세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대적 기준 -평균 근로자 소득 중 비율-으로도 제시되고 있다(제 7장 “소득: 평균과 분포”의 지표 참조).

제시된 급여액 가치는 독신자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 대개 최저 기여 연금의 경우 - 부부 두 사람이 각각 개인 급여를 수급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 특히 선별적 제도의 경우 - 부부는 평가의 한 단위로 묶여 독신자가 받는 수급액의 두 배보다 적은 금액을 수급한다.

많은 국가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액 가치의 분석은 복잡한 작업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제도상의 급여가 부가적 연금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들 간에 일정한 대체관계가 있다. 그래서 급여액 가치는 두 경우에 대해 왼쪽 수치로 요약해놓았다. 파란색 막대는 비 기여성 급여의 전반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적 최저 안전망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회색 막대는 최저 기여성 급여를 보여준다. 그래프에 나타나는 수급액은 20세부터 표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매년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값이다. 이 값은 저소득 완전경력 근로자의 최저 소득으로 나타난다.

21개 국가에는 비 기여성 급여만 존재한다. 이 집단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처럼 기초연금이 거주조건(residency-tested)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는 수급액이 기초 급여와 자산조사적 급여를 혼합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 부조를 포함해 자산조사적 제도만을 의미한다.

13개 국가는 좀더 복잡하다. 저소득은 사회안전망 급여, 고소득에서는 기여성 최저연금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아일랜드에서는 기여성 최저연금이 자산조사적 연금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는 기여성 최저연금이 안전망 소득보다 크게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비 기여성 급여는 국가차원의 평균 소득의 22.9% 수준인 반면 기여성 급여는 평균 28.2% 수준이다.

적용범위

첫번째 층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표의 첫 두 개 칼럼과 오른쪽 부분에 나타난다. 자료는 비 기여성 안전망 급여와 기여성 최저연금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다. 이들 급여의 중요성은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노인의 약 60%가 기여성 최저 연금을 수급하며 그 외 19%가 안전망 급여를 받는데 포르투갈의 경우 두 제도 모두 그 비율이 약간 낮다. 호주는 거의 80%가 자산조사적 제도로부터 최소한 얼마간의 급여를 수급하며 덴마크는 거의 90%가 수급하고 있다.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최저 기여성 급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은퇴자의 37-47%가 수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안전망 급여를 수급하는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2% 미만이다.

참고문헌

European Union, Social Policy Committee (2006),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Older People and their Contribution to Adequacy in Retirement”, *Special Pensions Study*, Brussels.

Pearson, M. and E. Whitehouse (2009), “Social Pensions in High-Income Countries”, in R. Holzmann and N. Takayama (eds.), *Closing the Coverage Gap: The Role of Social Pensions*, World Bank,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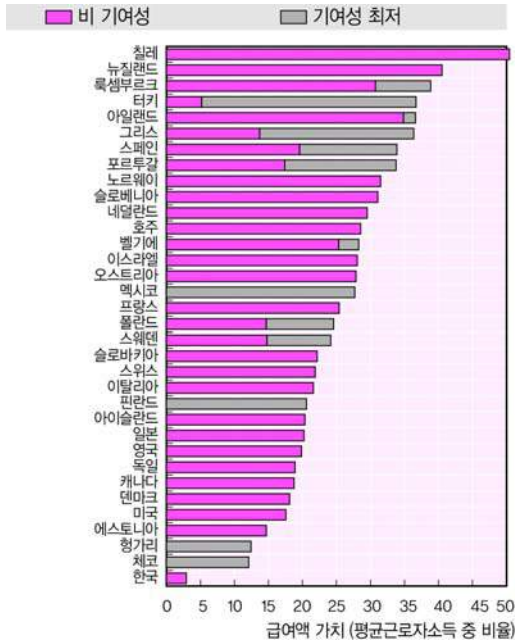
3.3 기초, 선별적, 최저연금의 가치와 적용범위

	상대적 급여액 (평균근로자소득 비율)			절대적 급여액 (연 국가 통화 단위)			적용범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상대적 급여액 (평균근로자소득 비율)			절대적 급여액 (연 국가 통화 단위)			적용범위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기초	선별적	최저	기초	선별적	최저	선별적	최저	기초	선별적	최저	기초	선별적	최저	선별적	최저		
호주	x	28,6	x	x	21 018	x	78	x	일본	16,4	20,3	x	786 500	969 840	x	2	x	
오스트리아	x	27,9	x	x	11 407	x	11	x	한국	x	2,9	x	x	1 135 200	x	67	x	
벨기에	x	25,3	28,3	x	11 689	13 052	5	11	룩셈부르크	10,2	30,8	38,9	5 232	15 780	19 944	1	29	
캐나다	13,9	18,8	x	6 511	8 828	x	34	x	멕시코	x	x	27,7	x	x	26 112	x	..	
칠레	15,5	50,5	x	966 336	3 141 096	x	60	x	네덜란드	29,5	x	x	13 714	x	x	x	x	
체코	9,1	x	12,1	27 240	x	36 480	x	..	뉴질랜드	40,6	x	x	20 804	x	x	x	x	
덴마크	17,5	18,1	x	68 556	71 196	x	88	x	노르웨이	x	x	31,5	x	x	160 956	x	22	
에스토니아	13,2	14,7	x	1 442	1 609	x	6	x	폴란드	x	14,7	24,6	x	5 724	9 590	12	..	
핀란드	x	x	20,6	x	x	8 586	x	47	포르투갈	x	17,4	33,8	x	2 736	5 307	17	59	
프랑스	x	25,4	22,5	x	9 326	8 248	4	37	슬로바키아	x	22,2	x	x	2 177	x	3	x	
독일	x	18,9	x	x	8 484	x	2	x	슬로베니아	x	31,1	13,2	x	5 397	2 315	17	2	
그리스	x	13,7	36,4	x	2 760	7 303	19	60	스페인	x	19,6	33,9	x	5 008	8 665	6	28	
헝가리	x	x	12,4	x	x	342 000	x	<	스웨덴	x	14,8	24,2	x	61 644	93 720	1	42	
아이슬란드	6,5	20,4	x	393 300	1 240 000	x	..	x	스위스	x	21,9	16,0	x	19 050	13 920	12	..	
아일랜드	36,7	34,9	x	11 976	11 388	x	17	x	터키	x	5,2	36,8	x	1 433	10 124	- 22 -	..	
이스라엘	14,8	28,1	x	17 772	33 712	x	25	x	영국	15,6	19,9	10,2	5 587	7 142	3 654	27	..	
이탈리아	x	21,6	19,3	x	6 253	5 582	5	32	미국	x	17,6	x	x	8 376	x	7	x	

주: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자료.
.. = 자료 없음.
X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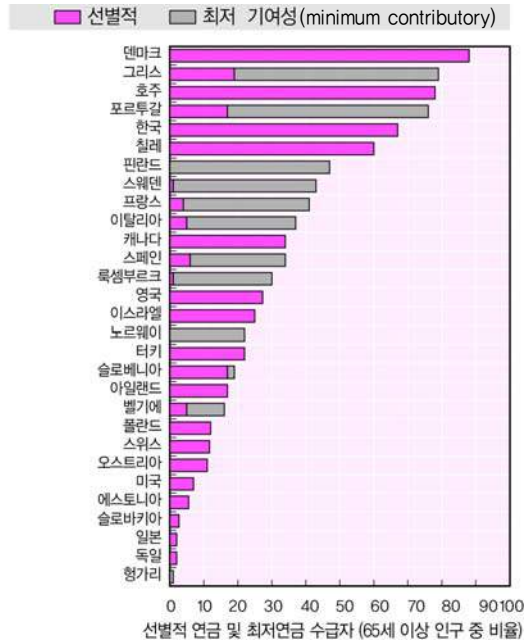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072>

3.4. 기초연금, 선별적 급여, 최저연금의 가치
평균근로자소득 중 비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091>

3.5. 선별적 급여 및 최저연금 적용범위
65세 이상 인구 중 비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091>

주요 결과

OECD의 연금제도 분류 중 두번째 층은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이들 제도의 주요 파라미터와 룰이 수급액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법제화된 연금 개혁의 장기적 효과가 포함된다.

소득비례제도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DB), 포인트 또는 명목계정(NDC)이 그것이다. 지급률은 적용기간 중 매년 어떤 비율로 급여액이 적립되는지를 보여준다. 지급률은 연금제도에서 “포괄하는” 소득의 비율로 나타난다.

포인트 제도의 경우 유효 지급률은 연금 포인트 가치 대비 연금 포인트 비용의 비로 산정된다. 명목 계정 제도에서는 유효 지급률이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기여율, 명목 금리, 연금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비례제도(세 유형 모두)를 갖고 있는 국가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국가에서 급여승률(accrual rates)은 “선형(linear)”으로 나타난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적용기간 중 매년 수급하는 급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개인 소득이나 연령, 기여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승률(accrual rates)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여덟 가지 경우 중 체코,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의 공적 제도는 “누진적” 제도이다. 저소득자에게는 높은 대체율의 급여액을 지급한다. 영국의 경우 급여승률(accrual rates)은 U자 형태이다. 즉, 저소득자에게 가장 높고 그 다음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진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퇴직연금은 공적 제도의 재분배성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되어 공적연금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대체율을 제공한다. 스위스에서는 퇴직연금(occupational plans), 핀란드에서는 지급률이 연령에 따라 높아진다.

두 개 국가에서는 급여승률이 근로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룩셈부르크의 경우 기여기간이 길수록 올라가고 스페인은 반대이다. 적용기간의 첫 2년간 지급률이 가장 높고 그 이후부터는 낮아진다.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소득 측정지표도 국가마다 다르다. 약 21개 OECD 회원국에서는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생애 소득을 사용하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경력의 과반수(great majority of careers) (34-35년)를 사용한다. 최종 급여를 급여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회원국은 없었으나 스페인은 마지막 25년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과 슬로베니아의 모든 급여는 최고 25년과 최고 24년 소득을 각각 사용한다.

소득 측정지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재평가인데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간에 생활수준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조정한다(때로는 은퇴 전 연계(pre-retirement indexation)라 불림). 급여액이 최종 연도 임금에 기준을 둔다면 재평가는 필요 없다. 하지만 급여가 더 오랜 기간동안의 소득에 근거한다면 연금 수급액의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 연금 포인트 가치와 포인트 및 명목 계정 제도에서 명목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각각 확정급여형(DB) 제도의 재평가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작업이다.

가장 일반적인 관행은 평균 소득의 증가와 함께 과거 소득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에서는 소득을 물가 상승률만 감안하여 재평가하며 벨기에와 프랑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생애 평균을 급여 산식에 입력하는 반면 프랑스 공적제도는 25년을 급여 산식에 입력한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포르투갈은 초기 연도의 소득을 물가와 임금 인플레이션을 혼합하여 재평가하며 터키는 물가와 GDP를 혼합한다.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주요 파라미터는 개인 계정에 지급되어야 하는 소득의 비율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준 강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해 여기 나타난 열 개국에 대한 평균 기여율은 7.9%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여책임(contribution liability)과 연금 급여액 둘 다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에 한도를 설정한다. 20개국에서 공적연금의 평균 상한선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191%이며 4개국은 공적연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상한선은 강제적 사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다.

연계(indexation)는 지급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연계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섯 개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을 혼합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그 외 두 개 국가에서는 물가와 GDP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개 국가에서는 세트 차감(set deduction)과 함께 임금에 연계하여 인상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누진적 연계를 실시하여 낮은 연금은 더 많이 인상하고 있다.


3.6. 소득 대체 연금의 파라미터와 룰

	소득비례제도					DC 제도 기여율(%)	연금대상 소득 상한선 (평균근로자소득의 %)	
	유형	급여승률(%)	소득 지표	재평가	연계		공적	사적
호주	없음					12,0		249
오스트리아	DB	1,78	40	w ¹	d		145	
벨기에	DB	1,33	L	p	p		111	
캐나다	DB	0,63	b34	w	p [c]		107	
칠레	없음					10,0		298
체코	DB	0,53-2,04	L	w	33w/67p		None	
덴마크	없음					10,8 ²		
에스토니아	포인트	1,00	L	50w/50p	80w/20p	6,0	None	None
핀란드	DB	1,5-4,5	L	80w/20p	20w/80p		None	
프랑스	DB/포인트	1,06	b25/L	p/p	p/p		99/297 ³	
독일	포인트	1,00	L	w [c]	w [c]		150	
그리스	DB	0,8-1,5	L	p	50p/50GDP		327 ⁴	
헝가리	DB	1,22	L	w	p			
아이슬란드	DB	1,40	L	fr	p			None
아일랜드	없음							
이스라엘	없음					15,0		100
이탈리아	NDC	1,75	L	GDP	p ⁵		332	
일본	DB	0,55	L	w	p		155 ⁶	
한국	DB	0,89	L	w	p		121	
룩셈부르크	DB	1,84 [y]	L	w	p/w		180	
멕시코	없음					6,5		604
네덜란드	DB	1,75	L	w [c]	w [c]			None
뉴질랜드	없음							
노르웨이	NDC	0,98	L	w	w-0,75	2,0	191	
폴란드	NDC	0,52	L	w	p	3,8	250	
포르투갈	DB	2,25 [w]	L	25w/75p	p/GDP ⁷		None	
슬로바키아	포인트	1,25	L	w	50w/50p	6,0	500	
슬로베니아	DB	1,25	b24	w (d)	w		154	
스페인	DB	2,7 [y]	f25	p	p		153	
스웨덴	NDC	0,75 [w]	L	w [c]	w-1,6 [c]	2,5+4,5 ⁸	114	110/none ⁸
스위스	DB	[w/a]	L	fr	50w/50p		96	96
터키	DB	1,5-3,5	L	p+30% GDP	p		259	
영국	DB	0,21-0,83	L	w	p		113	
미국	DB	0,91-2,57	b35	w ⁹	p		264	

주: 파라미터는 2012년에 대한 것이나 미래에 발효되는 모든 법제화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급여액 산정 시 대상이 되는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비어있는 칸은 파라미터가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a] = 연령에 따라 다름; b = 최고 년수; [c] =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따른 재평가/연계; d = 재량 연계; DB = 확정급여형; DC = 확정기여형; f = 최종 년수; fr = 재평가율 고정; GDP = 국내총생산 성장률; L = 생애 평균; NDC = 명목 계정; p = 물가 연계/재평가; w = 평균소득연계/재평가; [w] = 소득에 따라 다름; [y] = 근무연수에 따라 다름.

1. 오스트리아: 소득지표의 평균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재평가가 소득으로 이동할 것으로 가정.
2. 덴마크: 준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기여율.
3. 프랑스: 첫번째 상한선은 공적연금제도의 상한선, 두번째는 여기에 모형화된 강제적 퇴직연금의 상한선 (ARRCO).
4. 그리스: 최대연금에서 산정한 유효 상한선.
5. 이탈리아: 연계는 저소득은 물가에 백 퍼센트, 고 연금에 대해서는 90% 또는 75% 수준으로 이루어짐.
6. 일본: 상한선은 피용자연금 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평균 월 급여의 200%로 산정. 보너스 제외.
7. 포르투갈: 연금액이 낮으면 물가 연계 비율이 높아짐. GDP 성장률이 높으면 연계는 좀더 후하게 이루어짐.
8. 스웨덴: 기여율은 개인연금의 2.5%부터 공적연금의 상한선까지 분포. 준 강제적 퇴직연금의 경우 기여율은 저소득은 4.5%, 고소득은 30%이며 상한선 없음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9. 미국: 60세에 소득 재평가, 60-62세는 조정 없음. 62세-67세는 물가 재평가.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129>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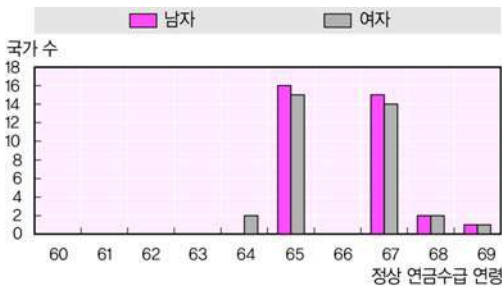
은퇴와 연금수급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한데 서로 상충되는 정부 목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 즉, 인구고령화가 연금 개혁의 주된 원인이 되면서 국민들이 좀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표를 보면 연금제도의 장기적 파라미터 상의 정상수급, 조기수급, 수급연기 규정이 나와있는데 법제화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개정사항도 포함한다. 이들 파라미터는 이 보고서 제 4장의 연금 수급액 모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4개국 중 14개국에서는 전반적인 연금 패키지의 여러 구성요소 별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따로 보여주도록 한다.

정상 연금수급 연령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미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두 개 국가만이 여성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을 64세로 낮출 예정인데 바로 이스라엘과 스위스이다.

남녀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 장기 규정



출처: 제 9장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148>

17개국은 남녀 공히 정상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를 넘게 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만 현재 67세로 정하고 있고 호주와 덴마크, 독일, 미국은 향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국은 68세로 예정하고 있다.

조기 수급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영국 등 9개국은 강제적 연금제도에서 조기 수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기수급이 특정 제도에만 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는 강제적 사적연금에만 조기수급을 허용하고 캐나

다, 스웨덴은 기초연금이나 선별적 연금에는 조기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기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은 연금지급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삭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확정급여형(DB) 및 포인트 제도에서는 조정은 단순히 연금제도의 파라미터이다. 급여는 조기수급에 해당하는 각 연도에 대해 x%만큼 영구 삭감된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명목계정제도에서 조기수급과 수급연기에 대한 조정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폴란드는 조기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누적된 명목 자산을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서로 다른 연금율 또는 요인을 가지고 산정하므로 연금산정에 사용된 할인율 및 연령별 사망률 예측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조정의 규모는 큰 차이가 있다. 표준 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인데 비율을 6.0%에서 7.2%로 인상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조정이 예상되는 곳은 체코(가장 빠른 조기수급자의 경우)와 스페인 (기여연수가 적은 수급자의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는 -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했던 급여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수급연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상 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개 급여액이 인상된다. 그러나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 근로와 연금수급을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상액 규모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로하도록 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Queisser, M. and E.R. Whitehouse (2006),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sig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4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351382456457>.

Whitehouse, E.R. (2010), “Decomposing Notional Defined-Contribution Pensions: Experience of OECD Countries’ Reform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9,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m68fw0t60w-en>.

3.7. 모든 의무가입제도 및 준 강제적 제도의 유형별 연금수급 연령과 조기수급, 수급연기의 장기적 규칙

	제도	조기수급 연령	감액(%)	정상개시 연령	인상(%)		제도	조기수급 연령	감액(%)	정상개시 연령	인상(%)
호주	T	..		67		이탈리아	NDC	62	-	67	-
	DC	60	-	67	-		일본	기초/DB	60	6,0	65
오스트리아	DB	62	5,1	65	4,2	한국	DB	60	6,0	65	7,2
벨기에	DB	62	0	65	0	룩셈부르크	DB	57/60	0	65	..
캐나다	기초/T	..		67	7,2	멕시코	최저	60	0	65	0
	DB	60	7,2	65	8,4		DC	연령무관/60	-	65	-
칠레	기초/T	..		65		네덜란드	기초	..		67	..
	DC	연령무관	-	65/60	-	뉴질랜드	기초	..		65	..
체코	DB	64	3,6-5,6	69	6,0	노르웨이	최저	..		67	
덴마크	기초/T	..		67	5,8	폴란드	NDC/DC	62	-	67	-
	DC	..		67	-		포르투갈	DB	55	6,0	65
에스토니아	포인트	62	4,8	65	10,8	슬로바키아	포인트	65	6,5	67	6,0
	DC	62	-	65	-	DC	65	-	67	-	
핀란드	최저	63	4,8	65	7,2	슬로베니아	DB	60	3,6	65	4,0
	DB	63		68	4,8	스페인	DB	65	6,0-8,0	67	2,0-4,0
프랑스	DB	62	5,0	67	5,0	스웨덴	최저	..		65	
	DB(퇴직)	60	4,0-7,0	67	0		NDC	61	4,1-4,7	65	4,9-6,1
독일	포인트	63	3,6	67	6,0	DC	55/61	-	65	-	
그리스	DB	62	0/6,0	67	0	스위스	DB	63남/62여	6,8	65남/64여	5,2-6,3
헝가리	DB	..		65	6,0		DB(퇴직)	58	6,35-7,1	65남/64여	4,5-5
	아이슬란드	기초/T	..	67		터키	DB	..		65	0
아일랜드	DB(퇴직)	65	7,0	67	6,0	영국	기초/DB	..		68	10,4
	기초/T	..		68	..		미국	DB	62	5,0/6,7	67
이스라엘	기초/T	..		67남/64여	5,0						
	DC			67	-						

주: 자료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수급연기 산정은 최대 개시연령을 70세로 가정한다.

DB = 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최저 = 최저급여; ..=조기수급 또는 수급연기가 불가한 국가; NDC=명목 확정기여형; 퇴직= 퇴직급여; T=선별적 연금. 남녀의 연금수급연령이 다를 경우 남/녀로 표시. - =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조기수급과 수급연기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급여.

암묵적 조정은 연금 급여액의 연계(indexation) 및 법안에 구체화된 할인율, 예상 사망률을 이용한 연금 산정으로부터 계산된다.

출처: 본 보고서 제 9장의 “국가별 현황”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167>

주요결과

2012년 OECD 국가의 노동시장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남자 64.2세, 여자 63.1세였다. 노동시장의 실질은퇴연령은 22개 OECD 국가에서 공식 은퇴 연령보다 낮았다. 2012년의 경우 실질은퇴연령은 룩셈부르크의 남자와 벨기에 및 슬로바키아의 여자가 각각 57.6세와 58.7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연령은 멕시코 남자로 72.3세, 칠레 여자로 70.4세였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실질은퇴연령은 공식은퇴연령보다 낮다. 34개 OECD 국가 중 19개국에서 남녀모두 더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3개국은 남자가 더 낮았고 3개국은 여자가 더 낮았다.

평균적으로 공식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의 실질은퇴연령보다 남자는 0.8세, 여자는 0.4세 높았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남자의 경우 실질은퇴연령이 7.4년 낮았고 벨기에와 프랑스는 모두 5년 이상 낮았다. 이 세 국가 모두 경력기간이 긴 경우 조기은퇴를 허용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지만 현재 좀더 엄격해지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에도 이 세 국가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는 5년, 벨기에는 6.3년이였다.

반면 노동시장의 실질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훨씬 높은 국가도 많았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남자였는데 11.1년 더 길었고 칠레 여자는 10.4년 더 길었다. 여자의 경우 이번에도 한국이 약 10년 정도 실질은퇴연령이 길었고 남자의 경우 두번째로 긴 국가는 7.3년인 멕시코였다.

영국에서는 실질은퇴연령이 남자 63.7세, 여자 63.2세였다. 남자의 경우 공식은퇴연령보다 1.3년 짧은 반면 여자는 2년 길었는데 이는 현재 남녀간 은퇴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은퇴연령이 계속해서 남자의 은퇴연령에 맞춰져 가면서 이러한 상황은 바뀌게 될 것이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남녀간 은퇴연령의 차이가 5년이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실질은퇴연

령이 남자는 공식연령보다 높고 여자는 낮는데, 남자의 공식 은퇴연령이 1년 높은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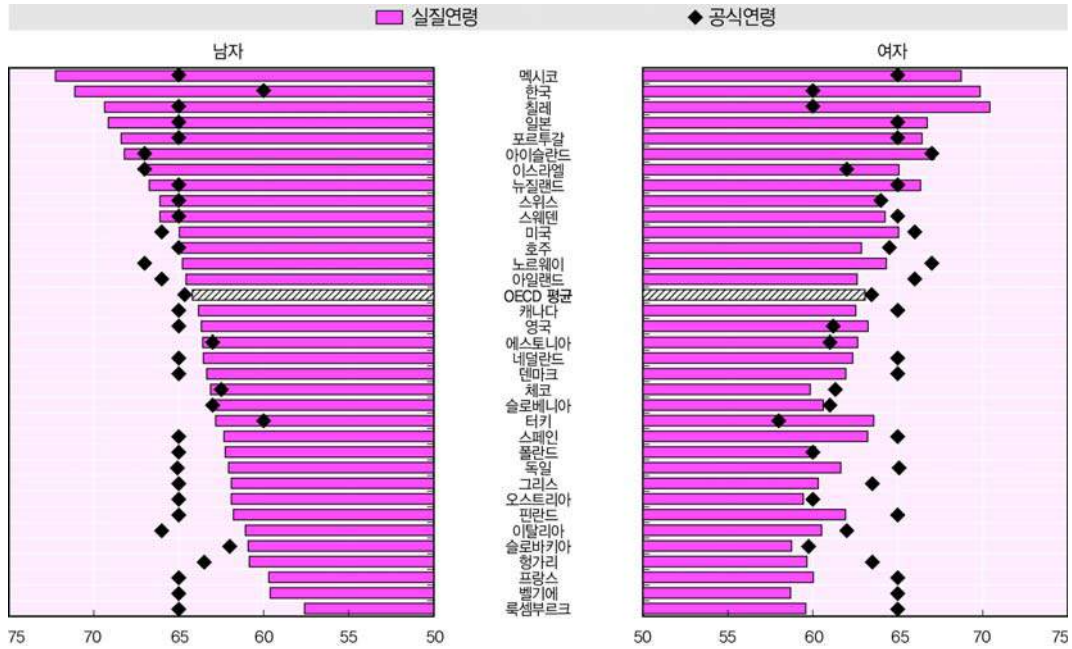
34개 회원국 중 6개국만이 남자보다 여자의 실질은퇴연령이 높지만 이들 중 2개국 -핀란드와 프랑스-에서는 그 차이가 기껏해야 0.3년 정도이다. 칠레와 스페인은 약 1년의 차이를 보이고 룩셈부르크는 2년, 터키가 가장 커서 9.4년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실질은퇴연령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1970년에는 실질은퇴연령이 남자는 68.4세, 여자는 66.4세였다. 그런데 2000년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남자는 63.2세, 여자는 61.1세였다. 하지만 국가간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2000년 남자의 경우 헝가리의 58.3세가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곳은 75세의 멕시코였다. 여자의 경우 헝가리의 55.8년부터 멕시코의 69.8세까지 분포했다.

정의와 측정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5년 단위의 기간 중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으로 정의된다. 인구 연령 구조의 구성적 효과로부터 발췌하기 위해 노동력 수준이 아니라 노동력 참여율의 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은퇴를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5년 단위로 분류한 각 (합성) 연령 집단에 대해 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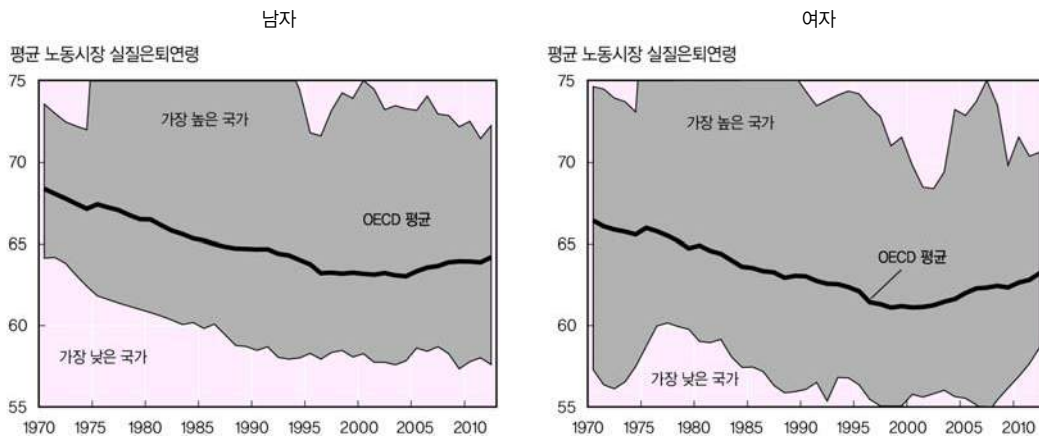
3.8. 노동시장의 평균 실질은퇴연령 및 정상 연금수급연령



주: 여기 나타난 실질은퇴연령은 2007-12년까지 5년에 대한 자료이다. 연금수급연령은 2012년 기준이다.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 및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를 바탕으로 OECD에서 추정.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186>

3.9.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연령, 1970-2012



출처: 국가 노동력 조사 및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를 바탕으로 OECD에서 추정. 일부 국가의 초기 자료는 국가 인구통계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205>

제 4 장

연금 수급액

연금 수급액은 OECD 연금 모형을 이용해 산정한다. 이론적 계산은 2012년에 적용된 국가별 파라미터 및 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2012년에 20세의 나이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법제화되었으나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금 개혁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 지표를 제시하기 전에 방법론과 가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한다.

지표는 이미 익숙한 대체율, 즉 개인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독신자에 대해 모든 강제적, 준 강제적 출처의 총(세전) 대체율을 살펴본다. 두번째로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의 대체율을 따로따로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가입율이 높은 자발적 사적연금 자료가 포함된다. 그리고 연금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제혜택 분석이 이어진다. 네번째, 다섯번째 지표는 순(net) 기준의 대체율로 소득과 연금에 대해 지급되는 세금과 기여금을 고려한다. 이 집단의 마지막 요소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검토인데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수익률이 전반적인 노후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연금 자산” 즉, 퇴직급여 흐름의 생애 가치에 관한 세 개 지표를 설명한다. 이것은 연금 수급연령, 연계(indexation), 기대수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율보다 좀더 포괄적인 측정지표이다. 첫번째 두 개 지표는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을 포괄하며 세번째 지표는 총 연금자산의 변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이다.

두 가지 정책 목표 -적정한 노후소득 제공과 소득에 대한 목표 비율을 대체 간의 균형은 그 이후의 두 가지 지표에서 모색한다. 여기에서는 연금 급여액 산식의 누진성과 연금과 소득 간의 연계를 요약하고 있다.

마지막 두 개의 수급액 지표는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개인들의 평균값인데 연금 수준, 연금자산, 퇴직급여제도의 각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개요

제 4장에서 다루게 될 연금 수급액의 지표와 제 8장의 연금 “저축 격차” 분석은 OECD 연금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방법론과 가정은 모든 국가의 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설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수급액을 현재의 파라미터와 룰에 준해 추정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연금 수급액은 현재 OECD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룰을 가지고 산정했다. 이미 법제화되었으나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룰의 변화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12년부터 법제화된 개혁들은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포함시켰다.

모든 연금제도 파라미터의 가치는 2012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산정값은 현재 제도에 가입하여 완전경력을 마친 후 은퇴하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액을 보여주고 있다. 주된 결과는 독신자에 대한 값이다.

경력 기간

완전경력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표준 연금수급 연령까지 근로하는 경우로 정의되는데 물론 표준 연금수급 연령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경력기간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60세이면 40년, 65세이면 45년, 67세이면 47년이 되는 것이다. OECD 국가의 대략적인 평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은 20세이지만 일부 국가는 이 평균보다 낮거나 높다. (근로자들이 20세가 아니라 25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기간이 5년 짧은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2007년 한 눈에 보는 연금에 제시된 바 있다.)

사람들은 실업, 교육, 육아, 장애가 있거나 연로한 친지 돌봄 등의 이유로 유급 근로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런 기간에 대한 연금 수급액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실업이나 육아 기간에 대한 룰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제 9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설명하고 있다. OECD 연금 모형은 이러한 룰을 포함한다. 지면관계상, 그 결과는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적용범위

여기 제시한 연금 모형은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모든 강제적 연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적 제도인지 (즉, 국민계정제도에서 정의한대로 정부나 사회보장

기관의 지급액과 관련) 사적 제도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국가별로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주된 국가 제도는 모형화했다.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는 제외했다.

거의 보편적인 가입율을 보이는 제도 역시 포함시켰는데 근로자의 85% 이상이 가입된 경우에 국한했다. 이러한 제도를 본 보고서에서는 “준 강제적”이라고 부르는데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후소득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발적 퇴직연금의 가입율이 높은 OECD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연금제도 수급액의 대체율도 함께 표시했다. 또한 연금 “저축 격차” 분석도 포함했는데 즉, 공적연금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의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은퇴자들이 수급할 수 있는 자산조사적 급여 역시 모형화했다. 이는 자산과 소득이 둘 다 고려되는 자산조사적(means-tested) 연금일수도 있고 순수하게 소득 조사적,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다. 산정방식에서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이들이 이들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자산까지 고려하는 광범위한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소득 조사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노후의 소득 전체가 강제 연금제도(또는 자발적 제도가 모형화된 국가에서는 강제적 제도 + 자발적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가정했다.

연금 수급액은 일정 범위의 소득 수준을 가진 근로자, 즉 평균 근로자 소득의 0.5배부터 2배까지의 근로자들에 대해 제시했다. 이 범위는 소득분포 전체에 걸쳐 미래의 수급액 분석을 가능케 한다.

경제적 변수

비교는 모든 OECD 국가와 분석대상이 된 기타 주요 경제국에 대해 동일한 일련의 경제적 가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는 연금 수준은 경제성장, 실질소

득성장과 인플레이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일련의 경제적 가정을 한 것은 서로 다른 연금 제도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별 연금 수준 차이는 연금제도와 정책의 차이만을 반영하게 된다. 기준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격 인플레이는 연 2.5%로 가정했다. 실제로는 연계(indexation)때문에 이 가정은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질소득성장은 연 2%로 가정했다(가격 인플레이 가정을 감안하면, 이는 명목 임금 상승률 4.55%를 의미한다). 개인 소득은 국가차원의 평균에 맞춰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개인이 근로 기간 중 매년 평균 근로자 소득 중 동일 비율만큼 벌어들임으로써 소득 분포에서 동일 지점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소득분포 자료는 일부 복합 지표에 사용된다 (제 7장의 “소득: 평균과 분포”지표 참조).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연금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실질수익률은 연 3.5%로 가정한다.

할인율 (계리적 산정에 대한)은 연 2%로 가정한다. 실질소득성장률과 동일하게 설정했는데 이는 성장 모형 및 기타 동적 경제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할인율에 대한 논의는 Queisser and Whitehouse, 2006 참조).

기준 모형화에서는 2060년 유엔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국가별 사망률 추정치를 사용했다.

이러한 기준 가정의 변화는 당연히 연금 수급액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차원의 소득성장 차이가 미치는 영향과, 개인 소득이 평균보다 빨리 혹은 느리게 성장하는 경우의 영향은 한눈에 보는 연금 첫번째 판 (OECD, 2005)에서 다루었다. 수익률 차이의 영향은 “투자 리스크 및 사적연금”에 관한 지표에서 평가하고 있다.

산정 시 가정하고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급여액이 계리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가격 연계 종신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률 추정

치를 가지고 산정된다.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연금액을 인출한다면 은퇴 시점의 자본 총액은 동일할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급여액이 분산되는 방식뿐이다. 마찬가지로 명목계정 제도에서의 명목 연금율은 (대부분의 경우) 개별 국가에서 차용하고 있는 연계 틀과 할인 가정을 이용한 사망률 자료로부터 산정된다.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연금 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정보는 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 웹사이트의 온라인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모형에서는 세금제도와 사회보장기여 제도가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세금 혜택이나 기여 한도 같은 “가치” 파라미터가 매년 평균근로자 소득에 맞춰 조정되는 반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율 같은 “비율” 파라미터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2012년 일반 조항 및 근로자의 세제혜택은 OECD의 *Taxing Wages*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지급액을 세금으로 간주하는가 등 그 보고서에서 사용한 관행을 여기에서도 따르고 있다.

참고문헌

- D’Addio, A.C., J. Seisdedos and E.R. Whitehouse (2009), “Investment Risk and Pensions: Measuring Uncertainty in Return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7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24016838064>.
- OECD (2013), *Taxing Wages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3-en.
- Queisser, M. and E.R. Whitehouse (2006),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sig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4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351382456457>.
- Whitehouse, E.R., A.C. D’Addio and A.P. Reilly (2009), “Investment Risk and Pensions: Impact on Individual Retirement Incomes and Government Budget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24005547774>.

주요 결과

총연금대체율은 근로 시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수준을 보여준다. 평균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총대체율은 34개 OECD 회원국에서 평균 54%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영국인데 현재 근로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 미래 대체율은 3분의 1 미만이다. 네덜란드는 가장 높은 국가로 대체율이 90%를 넘는다. 그 외에 대체율이 높은 국가는 79%인 덴마크와 77%인 오스트리아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평균 소득자보다 높은 대체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노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균의 절반 소득 근로자들은 약 71%, 평균 소득자는 약 54%의 대체율이다. 그러나 다섯 개 국가의 대체율은 평균과 평균의 절반이 동일했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이 그러하다.

분포도의 맨 위쪽에는 2개 국가가 저소득자에게 근로 시 소득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는데 덴마크(대체율 121%)와 이스라엘 (104%)이다. 반대쪽에는 독일과 폴란드가 있는데 대체율은 각각 42%와 49%이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평균 소득자에게는 비교적 적은 급여를,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평균 이상의 급여액을 제공한다.

34개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 1.5배 소득자(여기에서는 “고소득자”로 통칭)의 총대체율은 48%로 평균 소득자의 54%보다 다소 낮았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별 차이가 컸다. 네덜란드의 대체율은 89%인 반면 아일랜드와 영국의 대체율은 25% 미만이었다.

중위소득 - 근로자를 딱 절반으로 나눈 소득 수준 -에서는 34개 회원국 평균 총대체율이 58%였다.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자의 총대체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위 소득은 평균의 55%에서 96% 사이이다. 제 7장의 “소득: 평균과 분포”지표 참조.)

여성의 총 연금대체율은 호주,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등 5개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남성보다 여

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낮고 남녀구분이 있는 사망률 자료를 사용하므로). 남녀간 차이는 호주와 칠레, 이스라엘에서 특히 컸는데 여성의 대체율이 남성의 79%에서 92% 사이였다. 스위스에서는 여성의 대체율이 남성의 98%였다. 여성의 대체율은 멕시코에서도 97% 정도로 낮게 나타났지만 이는 연금수급연령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다는 여성의 연금율이 높기 때문이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대체율의 차이가 컸는데 평균 소득자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약 14%, 사우디아라비아는 100%였다. EU 27개국의 평균은 평균 및 고소득자의 경우 OECD 34개국 평균보다 높았다.

정의와 측정

노령 연금대체율은 연금제도가 제공하는 급여가 은퇴 전 주된 소득원이었던 근로소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하는가를 측정한다. 총대체율은 총 연금 수급액을 총 은퇴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중중 대체율은 연금 대 최종 소득 비 (은퇴 직전)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중 비율로 나타난다 (국가 차원의 소득 증가율에 맞춰 재평가). 기본 가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경력 전체에 걸쳐 올리는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 비율의 소득을 올린다. 이 경우 생애 평균 재평가 소득과 개인의 최종 소득은 동일하다. 만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득 분포 범위의 위쪽으로 이동한다면 은퇴 직전의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높을 것이고 개인의 최종 소득에 대해 산정된 대체율은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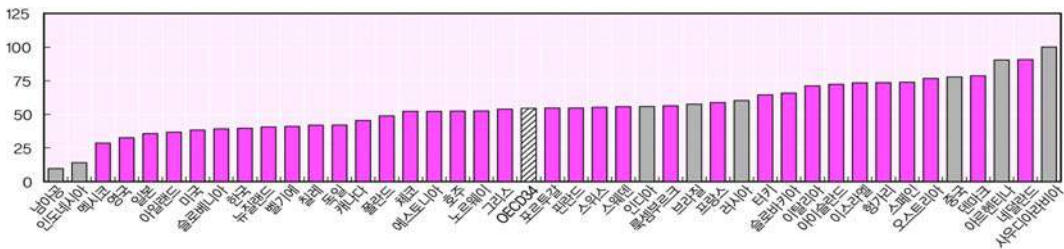
4.1. 소득별 총(gross)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남성에 대한 평균의 배수 (여성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표시)									
	중위 소득자			중위 소득자			중위 소득자		
	0.5	1.0	1.5	0.5	1.0	1.5	0.5	1.0	1.5
OECD 회원국	OECD 회원국 (계속)								
호주	60.2 (55.8)	91.1 (86.6)	52.3 (47.8)	39.4 (34.9)	노르웨이	52.3	63.4	52.5	41.6
오스트리아	76.6	76.6	74.0	폴란드	48.8	49.3	48.8	48.8	
벨기에	41.4	58.2	41.0	30.2	포르투갈	55.0	67.5	54.7	54.1
캐나다	51.0	80.1	45.4	30.2	슬로바키아	67.9	74.2	65.9	63.4
칠레	45.5 (36.6)	57.3 (48.3)	41.9 (33)	37.3 (27.9)	슬로베니아	40.6	62.0	39.2	36.7
체코	59.9	85.2	52.2	41.2	스페인	73.9	73.9	73.9	73.9
덴마크	83.7	120.7	78.5	64.4	스웨덴	55.6	70.2	55.6	67.9
에스토니아	55.3	65.2	52.2	47.9	스위스	58.4 (57.6)	64.3 (63.7)	55.2 (54.3)	36.8 (36.2)
핀란드	54.8	64.1	54.8	54.8	터키	66.8	73.5	64.5	64.5
프랑스	59.1	64.8	58.8	47.5	영국	37.9	55.8	32.6	22.5
독일	42.0	42.0	42.0	42.0	미국	41.0	49.5	38.3	33.4
그리스	64.0	75.4	53.9	46.7	OECD 34개국	57.9 (57.2)	71.0 (70.3)	54.4 (53.7)	48.4 (47.7)
헝가리	73.6	73.6	73.6	73.6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이슬란드	73.8	91.7	72.3	70.1	아르헨티나	96.2 (88.9)	115.2 (107.9)	90.4 (83.1)	82.1 (74.8)
아일랜드	44.2	73.4	36.7	24.5	브라질	57.5 (52.3)	55.4 (50.3)	57.5 (52.3)	61.7 (56.1)
이스라엘	86.7 (76.8)	103.7 (93.9)	73.4 (64.8)	48.9 (43.2)	중국	82.5 (65.1)	97.9 (78.5)	77.9 (61)	71.2 (55.2)
이탈리아	71.2	71.2	71.2	71.2	인도	60.4 (56.3)	75.6 (71.2)	55.8 (51.8)	49.2 (45.3)
일본	37.5	49.8	35.6	30.8	인도네시아	14.1 (13)	14.1 (13)	14.1 (13)	14.1 (13)
한국	43.9	59.2	39.6	29.2	러시아 연방	63.0 (56.4)	72.4 (65.8)	60.2 (53.6)	56.1 (49.5)
룩셈부르크	59.3	77.7	56.4	53.0	사우디아라비아	100.0 (87.5)	100.0 (87.5)	100.0 (87.5)	100.0 (87.5)
멕시코	44.7	55.5	28.5 (27.7)	27.2 (25.1)	남아프리카공화국	11.8	19.1	9.6	6.4
네덜란드	91.4	94.4	90.7	89.4	EU 27개국	60.0 (59.7)	69.6 (69.3)	58.0 (57.7)	53.3 (53.1)
뉴질랜드	50.1	81.1	40.6	27.0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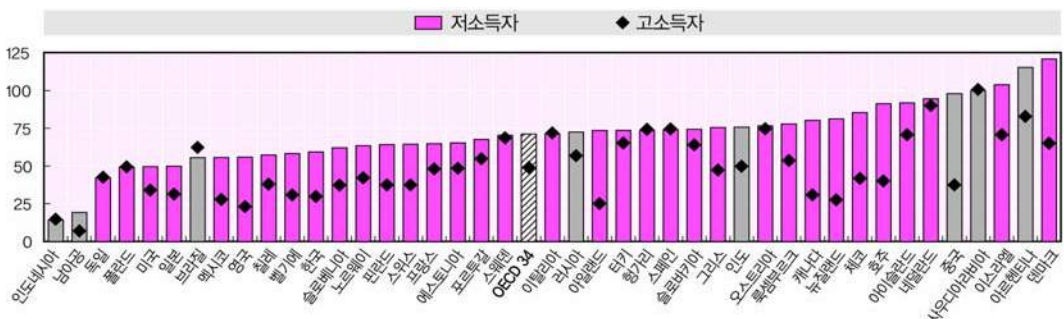
4.2. 총 연금대체율: 평균 소득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243>

4.3. 총 연금대체율: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262>

주요결과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제공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하며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구분한 총 연금대체율에 나타나 있다. 공적제도만 놓고 봤을 때 평균 소득자에 대한 OECD 평균 대체율은 41%인 반면 강제적 사적연금을 포함하면 54%가 된다. 자발적 사적연금을 일반적인 룰을 기준으로 추가하면 평균 대체율은 평균소득자에 대해 68%가 된다.

강제적 수급액 산정이 공적 제도에만 국한되는 13개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소득자의 대체율은 평균 58%였다. 공적 제도와 강제적 사적제도를 갖춘 3개 OECD 국가에서는 평균 대체율이 59%였다. 34개 회원국 전체에서는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사적연금을 합쳐 평균 대체율이 61%였다.

이는 서로 다른 제도 유형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호주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에서는 고도의 선별적(targeted) 공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중간 및 고소득자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공적 대체율을 강제적 사적연금으로 보충하고 있다. 칠레와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는 공적 제도의 일부를 강제적 사적연금 개혁으로 대체했다. 캐나다와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적연금은 비교적 낮고 사적연금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강제적인 공적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다. 남아공은 자발적 사적제도를 갖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자산조사적 요소로 인해 평균소득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의 제도는 전적으로 강제적인 사적 제도이며 공적 요소는 없다.

강제적 사적연금

첫번째 13개 국가 집단은 강제적 사적연금 또는 거의 보편적 가입율에 가까워 “준 강제적”이라 불리는 사적 연금을 갖고 있다(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사적연금은 확정 급여형(DB)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확정기여형(DC)이다. 평균 소득자의 강제적 사적 제도 대체율은 13개 국가 중 8개국에서 22%에서 39%까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이 범위보다 훨씬 높았고 노르웨이에서는 훨씬 낮았다.

6개국에서 대체율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 대해 동일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공적제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위해 설계된 사적연금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칠레와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사적연금의 대체율이 소득에 따라 높아진다. 이는 또한 스웨덴에서 평균 소득의 150%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율이 훨씬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스위스는 양상이 복잡하다. 저소득자들은 공적 급여를 감안하여 대체율이 낮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소득 한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발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이용되는 아홉 개 국가의 대체율이 나타나 있는데 근로자의 40%에서 65% 사이를 포괄한다(“사적연금의 적용범위” 지표 참조). 자발적 사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경력 기간 내내 해당 제도에 가입해 있다고 가정한다. 자발적 사적연금은 자발적 퇴직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을 둘 다 포함한다.

모형화된 룰은 제 9장 “국가별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 아홉개국 모두 확정기여형(DC) 제도가 모형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대체율을 지급한다. (소득별 실제 기여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 걸쳐 평균 또는 일반적인 비율을 가정한다.) 벨기에는 세금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연금대상 소득 한도 때문에 예외이다. 독일 역시 한도가 평균 근로자 소득의 150%로 이 범주에 속한다. 노르웨이에서는 강제적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율은 소득과 함께 증가하는데 사적 제도가 공적 퇴직 급여의 재분배 일부를 상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4.4. 공적 제도, 강제적 사적 제도,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의 총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중 비율

	공적			강제적 사적			자발적 DC			총 강제적			총 자발적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OECD 회원국															
호주	52.4	13.6	0.6	38.7	38.7	38.7				91.1	52.3	39.4			
오스트리아	76.6	76.6	74.0							76.6	76.6	74.0			
벨기에	58.2	41.0	30.2				15.1	15.1	11.2	58.2	41.0	30.2	73.3	56.2	41.4
캐나다	63.1	39.2	26.1				33.9	33.9	33.9	63.1	39.2	26.1	97.0	73.1	60.1
칠레	20.4	4.8	0.0	36.9	37.2	37.3				57.3	41.9	37.3			
체코	71.8	43.5	34.1				39.2	39.2	39.2	71.8	43.5	34.1	111.0	82.8	73.4
덴마크	68.0	30.6	18.1	52.6	47.9	46.4				120.7	78.5	64.4			
에스토니아	40.4	27.4	23.0	24.8	24.8	24.8				65.2	52.2	47.9			
핀란드	64.1	54.8	54.8							64.1	54.8	54.8			
프랑스	64.8	58.8	47.5							64.8	58.8	47.5			
독일	42.0	42.0	42.0				16.0	16.0	16.0	42.0	42.0	42.0	58.0	58.0	58.0
그리스	75.4	53.9	46.7							75.4	53.9	46.7			
헝가리	73.6	73.6	73.6							73.6	73.6	73.6			
아이슬란드	25.9	6.5	4.3	65.8	65.8	65.8				91.7	72.3	70.1			
아일랜드	73.4	36.7	24.5				43.0	43.0	43.0	73.4	36.7	24.5	116.4	79.7	67.5
이스라엘	44.5	22.2	14.8	59.3	51.1	34.1				103.7	73.4	48.9			
이탈리아	71.2	71.2	71.2							71.2	71.2	71.2			
일본	49.8	35.6	30.8							49.8	35.6	30.8			
한국	59.2	39.6	29.2							59.2	39.6	29.2			
룩셈부르크	77.7	56.4	53.0							77.7	56.4	53.0			
멕시코	30.7	3.8	2.5	24.7	24.7	24.7				55.5	28.5	27.2			
네덜란드	59.1	29.5	19.7	35.3	61.1	69.7				94.4	90.7	89.4			
뉴질랜드	81.1	40.6	27.0				14.1	14.1	14.1	81.1	40.6	27.0	95.3	54.7	41.2
노르웨이	57.9	45.7	34.3	5.5	6.8	7.2	8.3	11.3	16.5	63.4	52.5	41.6	71.6	63.8	58.1
폴란드	24.5	24.5	24.5	24.3	24.3	24.3				48.8	48.8	48.8			
포르투갈	67.5	54.7	54.1							67.5	54.7	54.1			
슬로바키아	45.9	37.6	35.1	28.3	28.3	28.3				74.2	65.9	63.4			
슬로베니아	62.0	39.2	36.7							62.0	39.2	36.7			
스페인	73.9	73.9	73.9							73.9	73.9	73.9			
스웨덴	48.6	33.9	25.7	21.7	21.7	42.2				70.2	55.6	67.9			
스위스	49.3	32.0	21.4	14.9	23.1	15.4				64.3	55.2	36.8			
터키	73.5	64.5	64.5							73.5	64.5	64.5			
영국	55.2	32.6	22.5				34.5	34.5	34.5	55.2	32.6	22.5	89.7	67.1	57.0
미국	49.5	38.3	33.4				37.8	37.8	37.8	49.5	38.3	33.4	87.4	76.2	71.2
OECD 34	57.4	40.6	34.5							70.1	54.0	48.0	88.9	67.9	58.6
기타 주요 경제국															
아르헨티나	115.2	90.4	82.1							115.2	90.4	82.1			
브라질	55.4	57.5	61.7							55.4	57.5	61.7			
중국	97.9	77.9	71.2							97.9	77.9	71.2			
인도	75.6	55.8	49.2							75.6	55.8	49.2			
인도네시아				14.1	14.1	14.1				14.1	14.1	14.1			
러시아 연방	30.6	30.6	30.6	17.3	17.3	17.3				47.9	47.9	47.9			
사우디아라비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아공	0.0	0.0	0.0				54.5	54.5	54.5	0.0	0.0	0.0	54.5	54.5	54.5
EU27	59.2	47.0	41.3							69.0	57.6	53.0			

DC = 확정기여형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281>

주요 결과

개인 세금 제도는 노후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금 수급자들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적이며 연금 수급액은 대개 은퇴 전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 소득의 평균 세율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노인에게 추가 수당이나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소득이나 연금 소득자에게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

절반을 약간 넘는 (34개국 중 18개국) OECD 회원국이 개인 소득세 상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기초 감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수당(tax allowance)이나 세금공제(tax credit)의 형태를 띤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와 영국- 이러한 추가 감면은 소득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특별한 노후소득원으로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은 11개 OECD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총 소득에 따라 공적연금(사회보장) 소득의 15%에서 50% 사이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외 네 개 국가에서는 사적연금 소득은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과세된 투자 수익과 연금 기여금으로부터 나온 급여는 60세 이상 인구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강제적 확정기여형 제도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자발적 기여에 적용된다.)

반대로 스웨덴에서는 연금보다 근로소득에 대해 적게 과세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는 중 저소득자를 위한 것이며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역할을 한다. 세금 공제는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더 크며 근로 장려책을 강화하고 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이다.

전반적으로 23개 OECD 회원국에서는 개인 소득세 제도에 따라 노인 또는 연금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11개 국가에서만 연금과 연금수급자에 대해 생산연령 인구나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만 예외이다. 이 두 개 국가와 추가로 17개 국가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은퇴자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하는 15개국의 기여율은 항상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기여율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연금이나 실업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연금수급자는 의료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광범위한 급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solidarity)”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증적 결과

수치는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로자부터 보면 평균 소득자 수준에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를 평균 소득자의 은퇴 후 대체율과 비교했다(위의 “총 연금대체율” 지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8개 OECD 국가와 모든 기타 주요 경제국에서는 이러한 연금 수급자는 은퇴 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 외 슬로바키아나 터키 같은 국가에서도 연금 수급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연금 소득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 소득세 감면보다 낮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자에 대한 총대체율에 해당되는 연금 수급자들은 세금과 기여금으로 소득의 10.9%를 납부한다.

수치는 또한 소득과 연금의 서로 다른 세금 및 기여금 처리가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평균 소득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기여금 액수는 OECD 국가에서 평균 26.9%였으며 기타 주요 경제국은 10.2%였다.

마지막 비교는 연금수급자가 동일 소득을 올린다면, 즉 연금이 평균소득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면 그 연금 수급자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 평균 16.9%였는데 동일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보다 10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다.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가진 연금수급자의 17%와 평균소득자의 총대체율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된 11% 사이의 차이를 보면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Keenay, G. and E.R. Whitehouse (2003), “The Role of the Personal Tax System in Old-age Support: A Survey of 15 Countries”, *Fiscal Studies*, Vol.24, No. 1, p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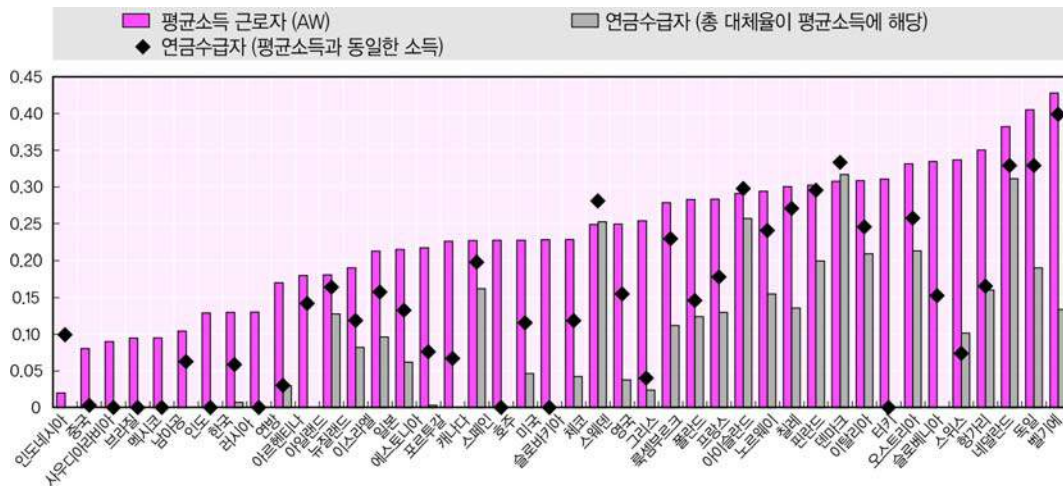
4.5.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제도에 따른 연금과 연금소득자의 처리

	추가 세금			연금소득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사회보장 기여금	추가 세금	연금소득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사회보장 기여금
	수당/크레딧	공적제도	사적제도				수당/크레딧	공적제도	사적제도	
OECD 회원국					연금					
호주	✓	✓	✓	없음	뉴질랜드					없음
오스트리아				저	노르웨이	✓	✓			저
벨기에		✓		저	폴란드					저
캐나다	✓	✓	✓	없음	포르투갈					없음
칠레	✓			없음	슬로바키아		✓			없음
체코	✓	✓		없음	슬로베니아	✓				저
덴마크				없음	스페인					없음
에스토니아	✓			없음	스웨덴	✓				없음
핀란드		✓		저	스위스					저
프랑스		✓	✓	저	터키		✓			없음
독일				저	영국	✓				없음
그리스				저	미국	✓	✓			없음
헝가리				없음						
아이슬란드				없음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일랜드	✓			저	아르헨티나		✓			없음
이스라엘	✓			저	브라질		✓			없음
이탈리아	✓		✓	없음	중국					
일본	✓			저	인도	✓				없음
한국	✓	✓		없음	인도네시아					없음
룩셈부르크	✓			저	러시아 연방					저
멕시코	✓			없음	사우디아라비아					저
네덜란드	✓			저	남아공	✓				없음

출처: 온라인 국가별 현황 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300>

4.6. 연금수급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출처: OECD pension models; OECD tax and benefit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319>

주요 결과

평균 소득자(average earner)의 경우 OECD의 순연금대체율은 평균 66%로 총 연금대체율보다 11 퍼센트 포인트 높다. 이는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에 대해 납부하는 것보다 근로 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과 기여금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순 대체율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큰데 평균 소득자에 대해 3분의 1미만인 멕시코부터 100%를 초과하는 네덜란드까지 분포한다.

저소득자(평균 소득의 절반)의 경우 OECD의 평균 순 대체율은 82%이다. 고소득자(평균 소득의 150%)의 경우, 평균 순 대체율은 저소득자보다 낮은 60%이다. 총대체율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른 대체율 차이는 최저급여 및 연금대상소득 한도 등 연금 제도의 누진적 특징을 반영한다.

앞쪽의 “연금 및 연금수급자의 세계혜택” 지표는 개인세금과 사회보장기여제도가 노후소득 지원에 있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지 않고 소득세상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의 누진성과 총대체율 100% 미만이라는 것은 연금수급자가 근로자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순 대체율은 대체로 총대체율보다 높아진다.

평균 소득자의 경우 국가별 연금대체율 양상은 총 연금대체율에 비해 순연금대체율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벨기에와 독일의 연금제도는 총대체율보다 순 대체율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보장기여제도에 상 연금소득을 우대해주기 때문이고 둘째, 대체율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고 소득세의 누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근로 시보다 은퇴 후에 소득세를 훨씬 적게 납부한다. 독일에서는 연금 소득에 대한 관대한 세계혜택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인데도 여전히 그러하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총대체율과 순 대체율 간의 차이는 연금 산식의 결과인데, 연금 급여액은 순 기준으로 직접 산정된다. 반대로 스웨덴은 순 기준에서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때문에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다르게 과세하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2009년에 재도입됐다.

저소득자의 경우 세금과 기여금이 순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척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근로자들보다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평균 근로자 대비 세금과 기여금을 적게 납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들의 노후소득은 개인소득세 표준 감면수준(수당,

크레딧 등) 미만이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상 연금이나 연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자의 총대체율과 순대체율 간의 차이는 평균 11퍼센트 포인트이다. 벨기에와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는 총 기준보다 순 기준의 저소득자 대체율이 훨씬 높다.

평균의 150%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순 대체율은 터키와 네덜란드, 헝가리에서 가장 높았다. 대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국과 뉴질랜드, 멕시코였다. 모든 국가에서 평균의 150% 소득 근로자는 근로 시 순 소득의 3분의 1 미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

비 OECD 국가에서는 소득 범위에 걸쳐 국가 내 순 대체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간의 차이는 상당해서 평균 소득자의 경우 남아공의 11%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110%까지 분포한다. 총대체율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자에 대한 EU27개국 평균 순 대체율은 71%로 OECD 34개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정의와 측정

순 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수급액을 순 세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대체율의 정의와 측정값은 총대체율과 동일해진다(이전 지표 참조).

국가 세금제도가 연금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 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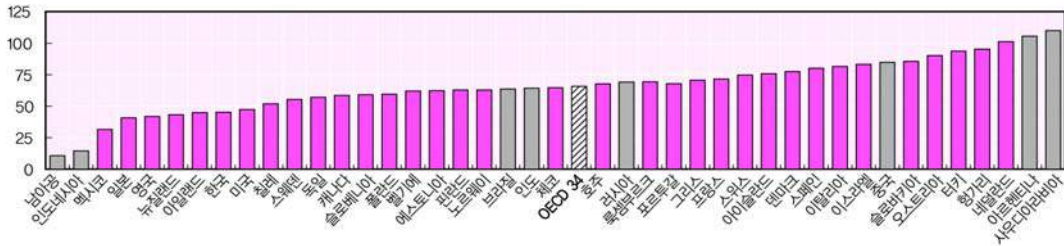
4.7. 소득별 순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남성의 평균 배수 (여성 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표시)									
	중위 소득자			중위 소득자					
	0.5	1.0	1.5	0.5	1.0	1.5			
OECD 회원국				OECD 회원국 (계속)					
호주	75.6(70.0)	100.5(95.6)	67.7(61.9)	64.3(48.2)	노르웨이	63.8	91.1	62.8	51.3
오스트리아	89.9	91.2	90.2	86.2	폴란드	59.8	61.3	59.5	59.1
벨기에	63.9	80.7	62.1	44.6	포르투갈	65.6	77.7	67.8	68.4
캐나다	64.4	90.7	58.6	40.8	슬로바키아	86.1	88.1	85.4	84.7
칠레	54.1(44.1)	62.5(53.2)	51.8(41.6)	47.7(37.2)	슬로베니아	59.0	80.8	59.0	57.0
체코	73.4	99.1	64.7	51.6	스페인	79.8	79.5	80.1	79.8
덴마크	82.4	117.5	77.4	67.4	스웨덴	55.3	68.8	55.3	72.9
에스토니아	67.1	79.7	62.4	55.5	스위스	77.8(76.6)	78.4(77.7)	74.7(73.5)	49.1(48.3)
핀란드	62.4	71.3	62.8	63.2	터키	94.9	103.9	96.9	97.2
프랑스	72.3	75.9	71.4	60.9	영국	48.0	67.2	41.8	30.5
독일	57.8	55.2	57.1	56.1	미국	49.9	58.7	47.3	42.9
그리스	79.6	92.5	70.5	65.0	OECD 34개국	69.1(68.3)	81.7(80.9)	65.8(65.0)	59.7(53.8)
헝가리	94.4	94.4	95.2	96.1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이슬란드	77.8	93.3	75.7	73.3	아르헨티나	11.2(10.3)	134.6(126.1)	105.6(97.1)	98.4(90.1)
아일랜드	52.2	75.5	44.8	34.6	브라질	63.1(57.4)	60.2(54.7)	63.5(57.7)	90.3(64.0)
이스라엘	95.5(85.9)	108.5(98.8)	83.2(74.7)	59.1(53.0)	중국	89.7(70.8)	106.4(85.3)	84.7(66.3)	78.2(60.9)
이탈리아	82.0	83.9	81.5	83.3	인도	68.7(6.4)	85.9(80.9)	64.1(59.2)	58.2(53.5)
일본	42.5	54.3	40.8	35.7	인도네시아	14.4(13.2)	14.4(13.2)	14.4(13.2)	14.5(13.4)
한국	49.1	64.8	45.2	34.2	러시아 연방	72.4(64.9)	83.2(75.6)	69.1(61.6)	64.5(56.9)
룩셈부르크	70.5	87.1	69.4	66.8	사우디아라비아	109.9(96.2)	109.9(9.62)	109.9(96.2)	109.9(96.2)
멕시코	45.3	56.2	31.5(30.7)	31.3(28.9)	남아프리카공화국	12.9	19.7	10.7	7.5
네덜란드	103.8	104.8	101.1	97.2	EU 27개국	72.7(72.3)	81.6(81.2)	70.6(70.3)	65.6(65.3)
뉴질랜드	51.7	81.7	43.2	30.6					

출처: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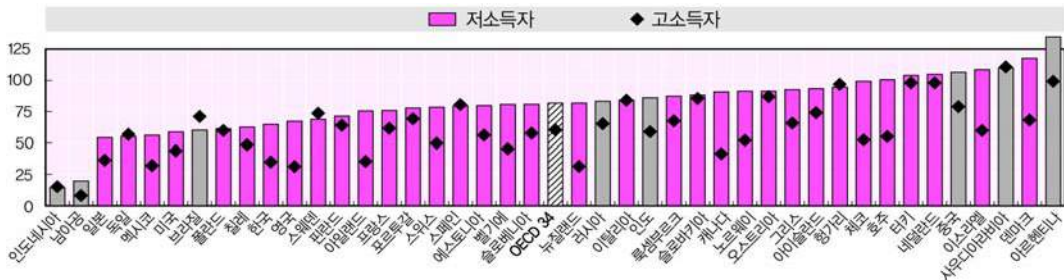
4.8. 순 연금대체율: 평균 소득자



출처: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337>

4.9. 순 연금대체율: 저소득자 및 고소득자



출처: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376>

주요 결과

OECD 국가에서 공적제도만을 통한 평균소득자의 순 대체율은 평균 49%이며 강제적 사적연금을 포함하면 64%가 된다. 일반적인 룰을 적용했을 때 자발적 사적연금을 추가하면 평균 순소득은 평균소득자에 대해 79%가 된다.

개인세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금수급자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소득세는 누진적이고 연금 수급액은 은퇴 전 소득보다 대개 낮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노인에게 추가 수당이나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연금 소득이나 연금소득자에게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 그래서 순 대체율은 대개 총대체율보다 높다.

산정이 공적제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있는 13개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대체율은 평균 71%이다. 공적제도와 강제적 사적제도에 대한 자료가 있는 13개 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대체율은 68%이다. 34개 회원국 전체에서는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 자발적 사적제도를 포함하면 평균 대체율은 79%가 된다. 전반적인 순 대체율은 총대체율보다 평균 11퍼센트 포인트 높다.

기타 주요 경제국의 경우에는 국가별,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크다. 후자의 예외는 러시아 연방으로 소득 전 범위에 걸쳐 순 대체율이 동일하다.

강제적 사적연금

첫번째 13개 국가 집단에서는 강제적 사적연금 또는 거의 보편적 가입율에 가까워 “준 강제적”이라 불리는 사적연금을 갖고 있다(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사적연금은 확정 급여형(DB)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확정기여형(DC)이다. 평균 소득자의 강제적 사적 제도 순 대체율은 13개 국가 중 8개국에서 22%에서 37%까지로 나타났다. 그런데 호주,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이 범위보다 훨씬 높았고 노르웨이에서는 훨씬 낮았다.

공적제도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하고자 설계된 사적연금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의 조합과 세금 제도 사이에서는 어떤 국가도 소득수준 전 범위에 걸쳐 동일한 대체율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주와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적연금의 대체율이 소득과 함께 증가한다. 이는 또한 스웨덴에서 평균 소득의 150%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적 사적제도의 대체율이 평균 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스위스는 양상이 복잡하다. 저소득자들은 공적 급여를 감안하여 대체율이 낮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적용되어야 하는 소득 한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자발적 사적연금

자발적 사적연금이 널리 이용되는 아홉 개 국의 대체율이 나타나 있는데 근로자의 40%에서 65% 사이를 포괄한다(제 8장의 “사적연금의 적용범위” 지표 참조). 자발적 사적연금에 가입해있는 근로자의 비교할만한 비율이 나와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지만 전형적인 룰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근로자들은 경력기간 내내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에 가입해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화된 룰은 제 9장 “국가별 현황”에 포함되어 있다. 아홉개국 모두 확정기여형(DC) 제도가 모형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소득에 따라 일정한 대체율을 지급한다. (소득별 실제 기여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범위에 걸쳐 평균 또는 일반적인 비율을 가정한다.) 그러나 세금제도의 차이는 순대체율이 소득범위에 걸쳐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 벨기에는 세금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연금 대상 소득 한도 때문에 예외이다. 독일 역시 이 범주에 속하지만 한도가 150% 소득 범위이다.

4.10. 공적연금, 강제적 사적, 자발적 사적연금제도의 순 연금대체율

개인 소득 중 비율

	공적			강제적 사적			자발적 DC			총 강제적			총 자발적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OECD 회원국															
호주	57.7	17.5	0.9	42.7	50.1	53.5				100.5	67.7	54.3			
오스트리아	91.2	90.2	86.2	91.2	90.2	86.2									
벨기에	72.9	50.1	39.9				19.0	18.5	14.8	72.9	50.1	39.9	91.8	68.6	54.7
캐나다	71.5	50.6	35.2				38.5	43.8	45.8	71.5	50.6	35.2	110.0	94.4	81.0
칠레	22.3	5.9	0.0	40.3	45.9	47.7				62.5	51.8	47.7			
체코	79.7	50.7	40.1				43.5	45.7	46.1	79.7	50.7	40.1	123.2	96.4	86.2
덴마크	66.2	30.1	18.9	51.2	47.3	48.5				117.5	77.4	67.4			
에스토니아	49.4	32.7	26.7	30.3	29.7	28.8				79.7	62.4	55.5			
핀란드	71.3	62.8	63.2							71.3	62.8	63.2			
프랑스	75.9	71.4	60.9							75.9	71.4	60.9			
독일	55.9	55.3	54.4				21.3	21.1	20.8	55.9	55.3	54.4	77.2	76.4	75.2
그리스	92.5	70.5	65.0							92.5	70.5	65.0			
헝가리	94.4	95.2	96.1							94.4	95.2	96.1			
아이슬란드	26.4	6.8	4.5	66.9	68.9	68.8							93.3	75.7	73.3
아일랜드	71.4	37.3	27.9				41.8	43.7	49.0	71.4	37.3	27.9	113.2	81.0	76.9
이스라엘	46.5	25.2	17.9	62.0	58.0	41.2				108.5	83.2	59.1			
이탈리아	78.0	78.2	77.9							78.0	78.2	77.9			
일본	54.3	40.8	35.7							54.3	40.8	35.7			
한국	64.8	45.2	34.2							64.8	45.2	34.2			
룩셈부르크	87.1	69.4	66.8							87.1	69.4	66.8			
멕시코	31.1	4.2	2.9	25.0	27.3	28.4				56.2	31.5	31.3			
네덜란드	65.6	33.0	21.4	39.2	68.2	75.8				104.8	101.1	97.2			
뉴질랜드	83.0	43.5	30.6				14.5	15.2	16.0	83.0	43.5	30.6	97.5	58.7	46.6
노르웨이	71.5	52.0	39.5	6.8	7.7	8.3	10.2	12.9	19.0	78.3	59.7	47.8	88.5	72.6	66.8
폴란드	30.4	29.9	29.7	30.2	29.6	29.5				60.6	59.5	59.1			
포르투갈	77.7	67.8	68.4							77.7	67.8	68.4			
슬로바키아	54.4	48.7	46.8	33.6	36.7	37.8				88.1	85.4	84.7			
슬로베니아	80.8	59.0	57.0							80.8	59.0	57.0			
스페인	79.5	80.1	79.8							79.5	80.1	79.8			
스웨덴	47.6	33.7	27.6	21.2	21.5	45.3				68.8	55.3	72.9			
스위스	60.2	43.4	28.5	18.2	31.3	20.6				78.4	74.7	49.1			
터키	103.9	93.6	97.2							103.9	93.6	97.2			
영국	61.7	38.0	27.2				38.6	40.2	41.7	61.7	38.0	27.2	100.3	78.1	68.9
미국	56.2	44.8	40.4				42.9	44.2	45.8	56.2	44.8	40.4	99.1	88.9	86.2
OECD 34	65.7	48.7	42.6							79.4	64.1	58.3	100.1	79.5	71.4
기타 주요 경제국															
아르헨티나	134.6	105.6	98.4							134.6	105.6	98.4			
브라질	60.2	63.5	70.3							60.2	63.5	70.3			
중국	106.4	84.7	78.2							106.4	84.7	78.2			
인도	85.9	64.1	58.2							85.9	64.1	58.2			
인도네시아				14.4	14.4	14.5				14.4	14.4	14.5			
러시아 연방	35.2	35.2	35.2	19.9	19.9	19.9				55.1	55.1	55.1			
사우디아라비아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남아공	0.0	0.0	0.0				56.1	60.8	61.8	0.0	0.0	0.0	56.1	60.8	61.8
EU27	68.6	56.6	50.7							80.0	69.1	64.3			

DC=확정기여형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395>

주요 결과

OECD 국가의 사적연금이 평균적으로 위기 전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고 해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마이너스 성장도 드물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들 중 주요 부분은 일반적으로 투자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조사적 연금이 저소득 근로자들을 투자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세금제도 역시 노후소득의 “자동 안정화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투자 리스크의 측정

투자 리스크의 척도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8개 OECD 국가에 대해 역사적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왔다. 그리고 상세한 계량 경제학적 결과를 사용해 40년 투자 호라이즌(horizon)에 대한 결과와 확률의 분포를 시뮬레이션했다. 또한 연금 포트폴리오의 두 가지 주요 자산을 분석했는데 주식과 정부채권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자산에 똑같이 배분한 포트폴리오의 결과는 아래 표에 나와 있다.

투자 리스크의 정도: 연금에 미치는 영향

수익률 분포, 백분위수 포인트	10%	25%	50%	75%	90%
연간 실질 수익률	2.5%	3.3%	4.3%	5.3%	6.0%
대체율	26.9%	31.9%	39.9%	50.5%	60.0%

상기 표에 따르면 전체의 50%는, 투자수익률이 실질 기준으로 연 4.3%보다 높거나 낮아진다. 이것은 본 보고서의 기준 가정인 3.5%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체의 약 10%는, 실질 수익률이 2.5% 미만 또는 6.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률은 최악의 경우인 27%부터 최상의 경우 60%까지 광범위한 대체율을 창출한다.

실제 투자 리스크

표는 수익률이 상, 중, 하인 경우, 즉 수익률 분포 10 퍼센타일, 50 퍼센타일, 90 퍼센타일의 총대체율과 순 대체율을 보여준다. 표의 왼쪽에는 확정기여형(DC) 제도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10개 국가가 나와있다. 오른쪽의 아홉 개 국가는 자발적 사적제도 가입율이 높은 국가들이다(제 8장의 “사적연금의 적용범위”지표 참조).

투자 리스크가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많은 급여 -공적 소득비례 제도나 기초연금-가 투자 수익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에서는 최상의 경우 확정기여형 연금이 최악의 경우 대비 2.6배의 가치가 있다(수치 참조). 그러나 전반적인 급여는 1.6배 지수(factor)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자산조사적 급여는 투자 리스크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즉, 확정기여형 연금액이 적으면 선별적(targeted)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급여는 커진다. 예를 들어 후주의 경우 확정기여형(DC) 연금은 수익률 기준 최악의 경우 대비 최상의 경우에 2.4배 커진다. 자산조사적 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은 겨우 1.5 지수(factor)의 차이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자산조사적 급여 역시 투자 리스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 리스크 관련 노후소득의 마지막 안정화 장치는 세금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한계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즉, 개인소득세가 누진적이므로) 확정기여형(DC) 연금의 소득이 감소하면 납세의무는 그 이상으로 감소한다. 그 효과가 가장 큰 곳은 덴마크이다. 세전 기준 최상과 최악의 경우 사이의 총 연금비는 1.7이고 세금을 감안하면 1.6이 된다. 세금의 영향은 폴란드에서도 뚜렷하지만 슬로바키아는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노후소득의 자동 안정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D’Addio, A.C., J. Seisdedos and E.R. Whitehouse (2009), “Investment Risk and Pensions: Measuring Uncertainty in Return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7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24016838064>.

Whitehouse, E.R., A.C. D’Addio and A.P. Reilly (2009), “Investment Risk and Pensions: Impact on Individual Retirement Incomes and Government Budget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24005547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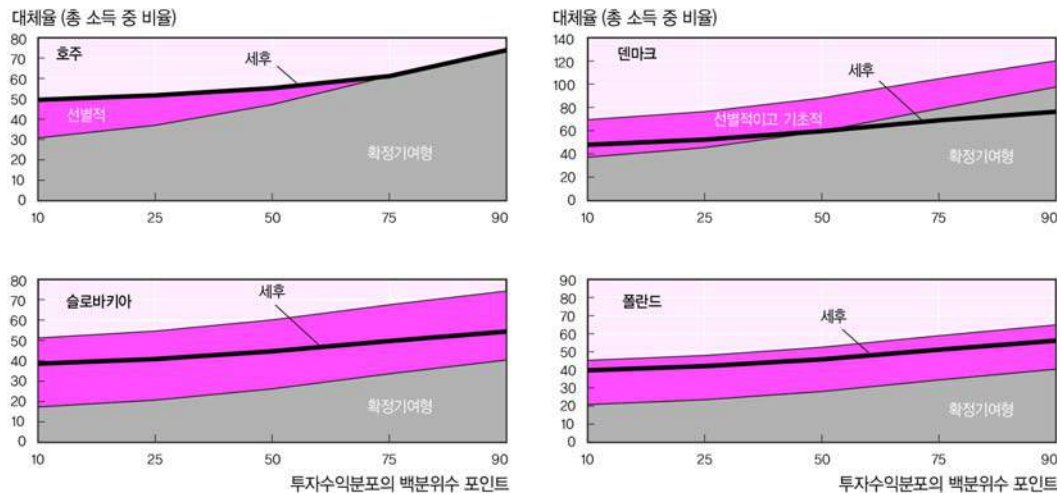
4.11. 투자수익률에 따른 총대체율과 순대체율

	강제적 또는 준 강제적 확정기여형(DC) 제도						자발적 또는 주로 자발적 확정기여형						
	총대체율(%)			순대체율(%)			총대체율(%)			순대체율(%)			
수익률 백분위수	10	50	90	10	50	90	수익률 백분위수	10	50	90	10	50	90
연 실질 수익률(%)	2.5	4.3	6.0	2.5	4.3	6.0	연 실질 수익률(%)	2.5	4.3	6.0	2.5	4.3	6.0
호주 DC	30.7	47.1	73.9	39.8	61.0	95.6	벨기에 DC	11.9	18.6	29.7	15.1	22.4	34.3
기타	18.8	8.1	0.0	24.3	10.4	0.0	기타	41.0	41.0	41.0	52.0	49.5	47.3
합계	49.5	55.2	73.9	64.1	71.5	95.6	합계	52.9	59.6	70.8	67.1	71.9	81.6
칠레 DC	29.1	45.7	73.4	36.4	55.6	82.1	캐나다 DC	26.3	42.1	69.0	34.0	54.4	89.2
기타	7.1	2.3	0.0	8.9	2.8	0.0	기타	39.2	39.2	39.2	50.6	50.6	50.6
합계	36.2	48.0	73.4	45.3	58.3	82.1	합계	65.5	81.3	108.2	84.6	105.0	139.8
덴마크 DC	37.2	59.5	97.5	37.1	58.1	89.4	체코 DC	30.1	49.2	82.7	35.5	56.6	92.6
기타	32.3	28.7	22.6	32.2	28.1	20.8	기타	43.5	43.5	43.5	51.4	50.1	48.8
합계	69.5	88.2	120.1	69.3	86.2	110.2	합계	73.6	92.7	126.2	87.0	106.7	141.4
에스토니아 DC	19.5	30.5	48.7	23.7	35.8	55.4	독일 DC	12.4	19.9	32.6	16.5	26.0	41.7
기타	27.4	27.4	27.4	33.3	32.2	31.1	기타	42.0	42.0	42.0	55.6	54.9	53.7
합계	46.9	57.9	76.1	57.0	68.1	86.4	합계	54.4	61.9	74.6	72.1	80.9	95.4
이스라엘 DC	39.7	63.4	104.0	46.0	70.7	109.4	아일랜드 DC	33.2	53.6	89.0	35.4	53.5	81.5
기타	22.2	22.2	22.2	25.8	24.8	23.4	기타	36.7	36.7	36.7	39.2	36.6	33.6
합계	61.9	85.7	126.2	71.7	95.5	132.9	합계	69.9	90.3	125.7	74.6	90.0	115.1
멕시코 DC	19.4	30.4	48.6	21.5	33.6	53.7	뉴질랜드 DC	11.1	17.4	27.8	11.9	18.5	29.4
기타	8.3	4.5	6.8	9.2	5.0	7.5	기타	40.6	40.6	40.6	43.7	43.4	43.0
합계	27.7	34.9	55.4	30.7	38.5	61.2	합계	51.7	57.9	68.3	55.6	61.9	72.4
폴란드 DC	20.8	28.0	40.4	25.5	34.1	48.7	노르웨이 DC	8.8	14.0	23.0	10.2	15.7	24.8
기타	24.5	24.5	24.5	30.0	29.8	29.5	기타	50.9	54.1	59.5	58.9	60.6	64.1
합계	45.3	52.5	64.9	55.5	63.9	78.3	합계	59.7	68.1	82.5	69.1	76.4	88.8
슬로바키아 DC	22.0	35.2	57.7	28.5	45.6	74.7	영국 DC	26.6	43.0	71.4	31.5	49.3	80.2
기타	37.6	37.6	37.6	48.7	48.7	48.7	기타	32.6	32.6	32.6	38.6	37.3	36.6
합계	59.6	72.8	95.3	77.2	94.3	123.4	합계	59.2	75.6	104.0	70.2	86.6	116.9
스웨덴 DC	17.3	26.2	40.4	17.3	25.9	39.3	미국 DC	29.4	46.9	76.9	34.5	54.5	86.3
기타	33.9	33.9	33.9	34.0	33.5	33.0	기타	38.3	38.3	38.3	45.1	44.5	43.0
합계	51.2	60.1	74.3	51.3	59.4	72.3	합계	67.7	85.3	115.3	79.6	98.9	129.3


출처: OECD pension models; Whitehouse et al. (2009)도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414>

4.12. 투자수익률에 따른 총연금대체율 및 연금에 대한 세금 및 기여금



출처: OECD pension models; Whitehouse et al. (2009)도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433>

주요 결과

연금자산(pension wealth)은 노후소득의 생애 흐름에 대한 총 가치를 측정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연금자산은 평균 연소득의 9.3배이다. 여자의 경우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 수치는 더 커져서 개인 소득의 10.6배가 된다.

연금대체율은 연금 예상급부를 시사하는 지표가 되지만 종합적인 측정지표는 아니다. 은퇴 시점의 급여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기대수명, 은퇴 연령, 연금의 연계(indexation)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들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연금 급여가 얼마동안 지급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연금 자산-연금 급여액의 미래 흐름을 측정한 값은 이들 요인을 고려한 지표이다. 이것은 의무가입한 연금제도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액수를 제공하는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목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총 연금자산은 남녀 모두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았으며 남자는 평균 소득의 17.6배, 여자는 20.3배였고 OECD 34개국 평균인 9.3배와 10.6배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평균 소득자의 연금 자산은 남자 4.8배, 여자 5.1배로 멕시코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유는 연금대체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평균 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연금 자산이 높다는 의미이다. 평균의 절반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남자의 경우 연금자산은 평균적으로 개인 소득의 12.3배이며 평균 소득자는 9.3배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여성의 경우 연금자산은 14.1배이며 평균 소득자는 10.6배이다. 저소득자의 연금자산이 가장 높은 2개국 (덴마크와 룩셈부르크)에서는 남자는 개인 소득의 거의 20-21배이며 여자는 23배 정도이다.

기대수명의 영향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처럼 기대수명이 짧은 국가에서는 은퇴 후 예상 기간도 짧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금예상급부가 좀더 여유있어진다.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 등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는 정반대이다. 대체율 측정지표와 달리 감당가능성(affordability)과 기대수명 간의 연관성이 연금자산지표에 반영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 여성의 연금자산은 모든 국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

난다. 이것은 단순히 연금 급여액의 지급기간이 좀더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연금 자산은 연금수급연령의 영향도 받는다. 룩셈부르크처럼 연금수급연령이 낮으면 연금자산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이미 늦춰거나 앞으로 늦추고자 하는데 이는 연금 자산을 감축하고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연계(indexation)의 효과

연금자산은 연계(indexation) 룰의 영향도 받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현재 지급 연금을 물가(price)에 연계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경우 연금을 평균소득에 연계하고 있으며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 6개국은 인플레이션(price inflation)과 소득증가를 혼합한 것에 연계하고 있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소득이 물가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금 자산은 물가연계의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서로 다른 연계 정책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연금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기대수명이 길기 때문에 좀더 관대한 연계 방식(예를 들어 인플레이를 초과하는 연계 등)에서 좀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 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아공의 경우 남성 평균 소득자는 개인소득의 1.3배에 불과하며 여성은 1.6배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성은 18.4배, 여성은 19.3배였다. 남아공의 연금자산이 낮은 것은 대체율이 낮고 기대수명도 짧기 때문이다.


정의와 측정

연금자산의 산정에는 일정하게 할인율 2%를 사용한다. 비교는 예상 연금 수급액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산정 시 가장 최근의 UN 인구자료를 사용해 2060년의 연령별 성별 국가별 사망률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연금자산은 총 연 개인소득의 배수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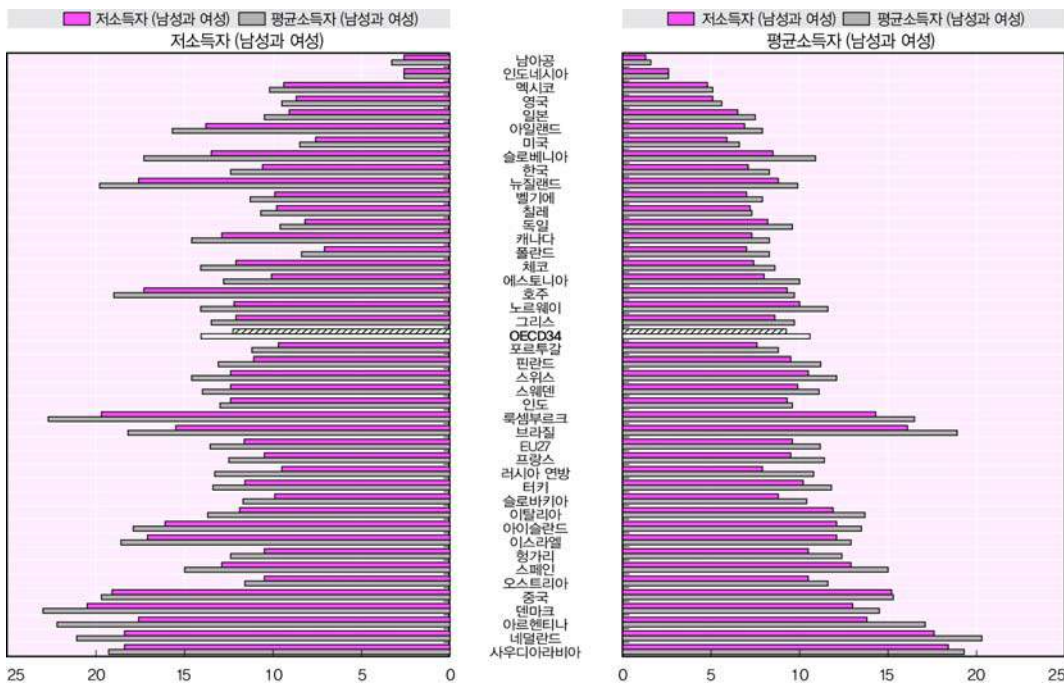
4.13. 소득별 총 연금자산


	개인 소득, 평균의 배수						개인 소득, 평균의 배수											
	0.5			1.0			0.5			1.0			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OECD 회원국																		
호주	17.3	9.3	6.6	19.0	9.7	6.6	노르웨이	12.2	10.0	7.9	14.1	11.6	9.1					
오스트리아	10.5	10.5	10.1	11.6	11.6	11.2	폴란드	7.1	7.0	7.0	8.4	8.3	8.3					
벨기에	9.9	7.0	5.1	11.3	7.9	5.8	포르투갈	9.7	7.6	8.1	11.2	8.8	9.1					
캐나다	12.9	7.3	4.9	14.6	8.3	5.5	슬로바키아	9.9	8.8	8.5	11.7	10.4	10.0					
칠레	9.8	7.2	6.4	10.7	7.3	6.2	슬로베니아	13.5	8.5	8.0	17.3	10.9	10.2					
체코	12.1	7.4	5.8	14.1	8.6	6.8	스페인	12.9	12.9	12.9	15.0	15.0	15.0					
덴마크	20.5	13.0	10.4	23.0	14.5	11.6	스웨덴	12.4	9.9	12.0	14.0	11.1	13.4					
에스토니아	10.1	8.0	7.2	12.8	10.0	9.1	스위스	12.4	10.5	7.0	14.6	12.1	8.1					
핀란드	11.1	9.5	9.5	13.1	11.2	11.2	터키	11.6	10.2	10.2	13.4	11.8	11.8					
프랑스	10.5	9.5	7.7	12.5	11.4	9.2	영국	8.7	5.1	3.5	9.5	5.6	3.8					
독일	8.2	8.2	8.2	9.6	9.6	9.6	미국	7.6	5.9	5.1	8.5	6.6	5.7					
그리스	12.1	8.6	7.5	13.5	9.7	8.4	OECD 34개국	12.3	9.3	8.2	14.1	10.6	9.4					
헝가리	10.5	10.5	10.5	12.4	12.4	12.4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이슬란드	16.1	12.1	11.7	17.9	13.5	13.0	아르헨티나	17.6	13.8	12.5	22.2	17.1	15.4					
아일랜드	13.8	6.9	4.6	15.7	7.9	5.2	브라질	15.5	16.1	17.3	18.2	18.9	20.3					
이스라엘	17.1	12.1	8.1	18.6	12.9	8.6	중국	19.1	15.2	13.9	19.7	15.3	13.8					
이탈리아	11.9	11.9	11.9	13.7	13.7	13.7	인도	12.4	9.3	8.2	13.0	9.6	8.4					
일본	9.1	6.5	5.6	10.5	7.5	6.5	인도네시아	2.6	2.6	2.6	2.6	2.6	2.6					
한국	10.6	7.1	5.2	12.4	8.3	6.1	러시아 연방	9.5	7.9	7.3	13.3	10.8	10.0					
룩셈부르크	19.7	14.3	13.5	22.7	16.5	15.5	사우디아라비아	18.4	18.4	18.4	19.3	19.3	19.3					
멕시코	9.4	4.8	4.6	10.2	5.1	4.6	남아프리카공화국	2.6	1.3	0.9	3.3	1.6	1.1					
네덜란드	18.4	17.6	17.4	21.1	20.3	20.0	EU 27개국	11.6	9.6	8.8	13.6	11.2	10.2					
뉴질랜드	17.6	8.8	5.9	19.8	9.9	6.6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452>

4.14. 소득별 성별 총 연금자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471>

주요 결과

순 연금자산은 총 기준의 균등화 지표처럼 연금 급여 생애 흐름의 현재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여금을 감안한다. 연금 자산에 대한 두 수치 모두 개인 총 소득의 배수로 표현된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OECD 국가의 순 연금자산은 남자는 총 개인소득의 평균 8.1배, 여자는 9.3배이다. 값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는데 주된 이유는 기대수명의 차이이다.

연금자산이 개인 총 소득의 배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총 연금자산보다 적거나 (은퇴 후 기간 중 납세 의무가 있다면) 동일(연금수급자가 과세되지 않거나 연금소득이 세금 기준선 아래라면)하다. 이것은 두 가지 수치로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와 터키에서는 연금 자산이 순기준, 총기준 모두 동일한데 이유는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자산의 수준은 국가 순위 측면에서 총기준보다는 순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크게 바뀐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평균 소득자에 대해 OECD 국가 중 총 연금자산이 세번째로 높는데 순 기준으로 하면 아홉번째가 된다. 덴마크의 순 연금자산 대 총 연금자산은 68%이다. 상황은 다른 네 개 북유럽국가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은퇴자가 상당한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강제적 제도의 총대체율이 높은 수준임을 반영한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과세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간에 비교해보면 순연금자산수준의 차이는 총 연금자산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

비 OECD 국가를 보면 순연금자산과 총 연금자산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에서 동일했다. 총 연금자산 산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간에는 차이가 컸는데 남아공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남자는 1.3배, 여자는 1.6배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높아 남자가 18.4배, 여자가

19.3배였다.

이러한 산정은 연금제도의 급여부분만을 살펴본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 인구가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이 근로 시 대비 은퇴 후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앞의 “순연금대체율” 지표에서 이미 논의했다.

정의와 측정

순연금자산은 연금 급여액 흐름의 현재 가치이며 은퇴자가 연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 이 값은 개별 국가의 총 연간 개인소득의 배수로 측정하고 표현한다. 비교 기준으로 총 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은퇴 후 납부하는 세금 및 기여금의 영향을 근로 시 납부하는 세금 및 기여금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이 정의는 연금에 소득세와 기여금이 과세되지 않을 경우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세금과 기여금은 개인이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강제적 연금 수급액의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은 모든 표준 세금 공제(tax allowances)와 세제혜택, 그리고 연금소득이나 연금수급연령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감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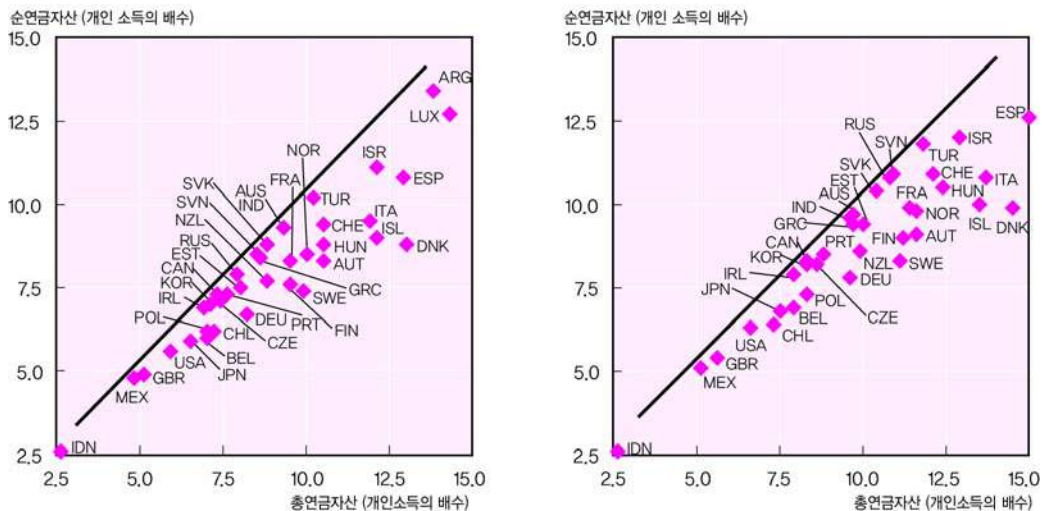
국가 세금제도가 연금수급자에게 적용하는 룰의 세부 사항은 온라인 국가별 현황 www.oecd.org/pensions/pension_satagance.htm을 참조한다.

4.15. 소득별 순 연금자산

	개인 연 총 소득의 배수						개인 연 총 소득의 배수											
	0.5			1.0			1.5			0.5			1.0			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OECD 회원국							OECD 회원국 (계속)											
호주	17.3	9.3	6.6	19.0	9.7	6.6	노르웨이	13.6	8.5	6.4	15.8	9.8	7.3					
오스트리아	9.8	8.3	7.4	10.8	9.1	8.2	폴란드	6.5	6.2	6.1	7.7	7.3	7.2					
벨기에	9.9	6.0	3.9	11.3	6.9	4.5	포르투갈	9.7	7.3	7.5	11.2	8.5	8.4					
캐나다	12.9	7.3	4.9	14.6	8.3	5.5	슬로바키아	9.9	8.8	8.5	11.7	10.4	10.0					
칠레	8.7	6.2	5.3	9.6	6.4	5.3	슬로베니아	13.5	8.5	7.7	17.3	10.9	9.9					
체코	12.0	7.1	5.5	14.0	8.2	6.3	스페인	12.0	10.8	10.2	14.0	12.6	11.9					
덴마크	14.4	8.8	7.0	16.1	9.9	7.8	스웨덴	9.8	7.4	8.6	10.9	8.3	9.6					
에스토니아	10.1	7.5	6.5	12.8	9.4	8.2	스위스	10.7	9.4	6.3	12.5	10.9	7.3					
핀란드	10.0	7.6	7.0	11.8	9.0	8.3	터키	11.6	10.2	10.2	13.4	11.8	11.8					
프랑스	9.7	8.3	6.6	11.6	9.9	7.9	영국	8.6	4.9	3.4	9.4	5.4	3.7					
독일	7.4	6.7	6.1	8.6	7.8	7.1	미국	7.5	5.6	4.8	8.4	6.3	5.3					
그리스	11.9	8.4	7.3	13.3	9.4	8.1	OECD 34개국	11.4	8.1	6.9	13.1	9.3	7.8					
헝가리	8.8	8.8	8.7	10.5	10.5	10.3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이슬란드	13.3	9.0	8.2	14.8	10.0	9.0	아르헨티나	17.1	13.4	12.1	21.5	16.6	14.9					
아일랜드	13.8	6.9	4.6	15.7	7.9	5.2	브라질	15.5	16.1	17.3	18.2	18.9	20.3					
이스라엘	16.5	11.1	7.4	18.0	12.0	8.0	중국	19.1	15.2	13.9	19.7	15.3	13.8					
이탈리아	10.9	9.5	8.9	12.5	10.8	10.1	인도	12.4	9.3	8.2	13.0	9.6	8.4					
일본	8.0	5.9	4.9	9.3	6.8	5.7	인도네시아	2.6	2.6	2.6	2.6	2.6	2.6					
한국	10.6	7.0	5.2	12.3	8.2	6.0	러시아 연방	9.5	7.9	7.3	13.3	10.8	10.0					
룩셈부르크	18.6	12.7	11.1	21.4	14.6	12.7	사우디아라비아	18.4	18.4	18.4	19.3	19.3	19.3					
멕시코	9.4	4.8	4.6	10.2	5.1	4.6	남아프리카공화국	2.6	1.3	0.9	3.3	1.6	1.1					
네덜란드	14.6	12.1	10.8	16.7	14.0	12.4	EU 27개국	10.8	8.4	7.3	12.6	9.8	8.5					
뉴질랜드	15.4	7.7	5.1	17.3	8.6	5.8												

출처: OECD pension models.

4.16. 남녀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자산 vs. 순 연금자산



주: 두 수치의 척도 모두 연금자산을 개인소득의 15배로 상한선을 두었다. 브라질, 중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는 두 수치 모두, 아르헨티나와 룩셈부르크는 여자 데이터에 빠져 있다.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509>

주요 결과

총연금의 변화는 추가로 1년간 고용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받게 되는 연금예상급부의 수준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 중 절반에서 저소득자나 평균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고용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의 인센티브가 낮았다. 반대로 8개 OECD 국가에서는 고용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저소득자나 중간 소득자에게 좀더 유리했다.

표의 왼쪽에는 개인 소득별로 은퇴 인센티브의 변동이 큰 25개 OECD 회원국이 있다. 오른쪽의 아홉 개 국가에서는 은퇴 인센티브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여섯 개 국가에서는 대체로 일정하다.

은퇴 인센티브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국가 중에서 헝가리는 개인소득과 연금 급여액의 연계가 강력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때문에 모두에게 연금자산의 변동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은퇴 인센티브가 소득과 대체로 무관한 여섯 개 국가는 호주, 헝가리, 뉴질랜드의 연금제도와는 대조적으로 누진적인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영국에서는 개인 소득이 낮을 수록 근로 인센티브가 조금 커진다. 미국은 반대로 근로 인센티브가 고소득자에게 약간 더 크다.

개인소득과 은퇴 인센티브의 관계가 가장 큰 국가들은 (표의 왼쪽)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표 위쪽의 8개국에서 저소득자 또는 중간소득자의 근로 인센티브가 더 큰 이유는 주로 연금 급여액의 누진성이다. 누진성은 국가별 제도의 서로 다른 특징에 의한 것이다. 즉, 아일랜드는 기초연금, 슬로바키아는 저소득자의 최저 크레딧, 체코와 한국은 소득비례연금의 누진적 급여액 산정 방식이 그것이다.

표의 왼쪽 아래에 위치한 17개국에서는 중간 또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은퇴 인센티브가 컸다. 이는 대부분 연금제도의 안전망 조항 때문이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는 누진성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progressivity accentuates the negative rather than the positive).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최저연금이나 자산조사적 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저소득 근로자는 초기에 은퇴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평균소득자와 고소득자는 그렇지 않다. 멕시코는 최저연금 때문에 조기은퇴 인센티브가 저소득자에게 특히 크다.

세금의 역할

연금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개인소득세제도에서 과세대상이다. 15개 회원국에서는 연금이 사회보장기여금(대개 의료 또는 장기요양)의 대상이 되며 소득에 대해서보다는 낮은 비율로 부과된다. 이러한 세금과 기여금을 고려하면 “연금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계혜택” 지표에서 설명 - 근로기간을 늘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금자산의 순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림 4.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의 변화는 많은 국가에서 동일하다. 우선 슬로바키아와 터키에서는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평균소득자의 연금 수급액이 소득세 납부 수준 미만인 국가들도 많다. 후자에 속하는 것이 호주,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베니아이다.

정의와 측정

연금자산의 변화는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의 인센티브를 측정하는 것이다. 산정은 추정값이며 현재의 연금정책이 미래에 은퇴할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까지 근로하는 경우 연금자산의 연평균증가분을 산정했다.


참고문헌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and G20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1-en.

4.17.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총 연금자산의 연 5년 평균 변화, 남자, 소득수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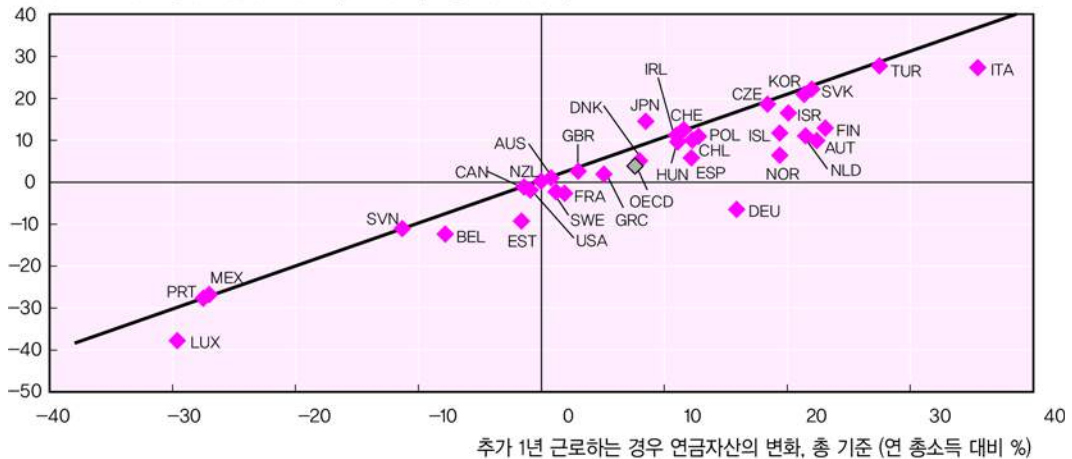
	개인소득 (평균 대비 %)				개인소득 (평균 대비 %)		
	저 (50%)	평균 (100%)	고 (200%)		저 (50%)	평균 (100%)	고 (200%)
중/저소득자의 근로지속 인센티브가 큰 국가				은퇴 인센티브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국가			
오스트리아	22,4	22,4	16,2	호주			
체코	27,7	18,4	13,7	헝가리	0,8	0,8	0,8
프랑스	18,2	1,9	-7,2	뉴질랜드	11,1	11,1	11,1
아일랜드	21,9	11,0	5,5		0,0	0,0	0,0
이스라엘	23,3	20,1	10,0				
한국	31,9	21,4	11,8				
슬로바키아	46,8	22,0	13,9				
스위스	13,3	11,6	5,8				
중/저소득자의 근로지속 인센티브가 적은 국가				은퇴인센티브가 소득과 대체로 무관한 국가			
벨기에	-8,8	-7,8	-4,4	캐나다	-1,4	-1,4	-2,1
칠레	12,3	12,3	17,3	덴마크	8,8	8,0	7,6
에스토니아	-4,1	-1,6	-0,3	이탈리아	35,5	35,5	34,5
핀란드	8,1	23,1	23,1	일본	8,8	8,5	8,2
독일	-15,1	15,9	12,0	영국	3,6	3,0	1,5
그리스	1,5	5,1	7,0	미국	-0,1	-0,9	0,3
아이슬란드	10,0	19,4	19,4				
룩셈부르크	-99,7	-29,6	-23,8				
멕시코	-59,0	-27,0	0,6				
네덜란드	12,4	21,5	26,1				
노르웨이	-28,4	19,4	11,5				
폴란드	-0,2	12,8	12,8				
포르투갈	-67,4	-27,5	-27,7				
슬로베니아	-57,3	-11,3	-8,1				
스페인	5,2	12,2	9,4				
스웨덴	-12,3	1,2	3,6				
터키	0,0	27,5	27,5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528>

4.18. 평균소득남성의 60-65세 근로 시 총 연금자산 변화

추가 1년 근로하는 경우 연금자산의 변화, 순 기준 (연 총소득 대비 %)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547>

주요 결과

재분배 지수(*progressivity index*)는 근로 시 소득과 은퇴 후 소득 간의 관계를 요약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를 보면 순수한 기초연금(아일랜드와 뉴질랜드 등)의 100부터 헝가리의 0, 마이너스인 스웨덴 (-13)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스웨덴의 전반적인 연금제도가 역진(*regressive*)적임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지수는 39이다. 지역적 차이가 상당해서 영어사용 국가의 평균 지수는 82로 공적연금이 상당히 재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 유럽 국가들은 평균 23으로 소득과 연금 급여 간에 매우 강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순수 기초” 연금제도는 소득 이력과 다른 소득원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한다. 상대적 연금 수준은 소득과 관계가 없고 대체율은 소득과 함께 하락한다. 반면 “순수 보험(*pure-insurance*)” 제도는 동일한 대체율을 모든 근로자에게 은퇴 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근무연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제공하는 소득비례 제도처럼 이러한 순수 보장형 모델을 따른다.

이 두가지 기준은 강제 제도의 연금 급여 산식을 국가별로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재분배 지수”를 뒷받침한다. 지수는 순수기초연금제도가 100점, 순수보험 제도가 0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었다. 전자는 최대의 재분배적 특성을 가지며 후자는 대체율이 일정하므로 재분배적이지 않다. 점수가 높거나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점수가 높은 국가와 점수가 낮은 국가는 단지 서로 목표가 다를 뿐이다.

표에서는 OECD 평균을 근거로 합성된 소득 분포를 가정한 급여 산식의 재분배 지수와 총 연금 급여의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수가 100인 2개국 외에 캐나다와 이스라엘, 영국은 모두 지수가 80에 가깝거나 그 이상으로서 고도로 누진적인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선별적제도 또는 기초연금을 갖고 있다.

반면 핀란드와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는 거의 전적으로 비례적인 제도를 갖고 있으며 누진성은 제한적이다. 지수는 5 미만이다. 이 집단에는 설계상 기여금과 급여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명목계정을 가진 두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 두 집단 사이에 위치한다. 포르투갈과 스웨덴의 경우 마이너스 재분배 지수를 보여 두드러진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역진은 제 9장의 “국가별 현황”의 총대체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모두 평균 소득자보다 높은 대체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개 칼럼은 연금 수급액의 불평등이 국가 소득 분포의 불평등에 의한 것인지 급여 산식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탐구하고 있다. 사실 재분배 지수는 완전한 자료를 갖춘 29개 국가에 대해 두 기준 모두 약 38-39 정도가 평균이다.

연금 급여 산식의 재분배 지수는 연금제도 중 의무 가입의 연금 부분만을 측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사적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사적연금의 적용범위” 지표 참조). 이들을 고려하면 연금 수급자의 소득 분포는 더 넓어진다.

정의와 측정

OECD 국가의 연금제도는 보험과 재분배의 역할에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둔다. 재분배 지수는 순수 기초 제도에 100점, 순수 보험 제도에 0점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산정은 불평등의 기준 측정지표인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공식적으로 재분배 지수는 100에서 연금 수급액의 지니계수 비율을 소득의 지니계수로 나눈 것을 뺀 값인데 두 경우 모두 소득분포로 가중치를 준다. 산정은 국가별 자료(있는 경우)와 OECD 평균 소득 분포를 가지고 실시한다. 지표는 Musgrave and Thin (1948)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참고문헌

D’Addio, A.C. and H. Immervoll (2010), “Earnings of Men and Women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Enriched Data for Pensions and Tax-Benefit Modell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n7smt2r7d2-en>.
 Musgrave, R.A. and T. Thin (1948), “Income Tax Progression 1924-4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6, pp. 498-514.


4.19. 연금 수급액과 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OECD 평균과 국가 소득 분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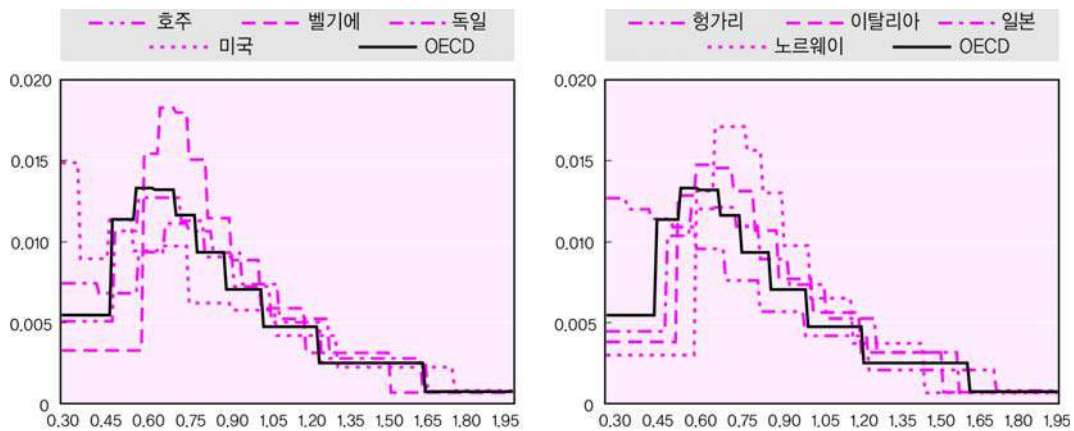
	OECD 평균 분포		국가 소득 분포			OECD 평균 분포		국가 소득 분포			
	연금 지니	재분배 지수	연금 지니	재분배 지수	지니 임금	연금 지니	재분배 지수	연금 지니	재분배 지수	지니 임금	
OECD 회원국											
호주	7,3	71,9	7,3	71,7	25,6	폴란드	25,8	0,9	26,1	1,0	26,3
오스트리아	18,9	27,5	18,2	27,9	25,3	포르투갈	26,2	-0,8	29,1	1,0	29,4
벨기에	10,3	60,6	9,8	57,0	22,9	슬로바키아	22,4	13,9	22,4	13,9	26,0
캐나다	2,1	92,1	1,7	93,1	25,0	슬로베니아	12,8	50,7			
칠레	18,8	27,9	19,7	24,1	19,8	스페인	24,5	26,2			
체코	9,8	62,2	9,8	62,2	26,0	스웨덴	29,4	-13,1	26,0	-18,7	21,9
덴마크	11,2	57,0	9,5	56,8	21,9	스위스	8,6	66,9	7,5	68,0	23,3
에스토니아	19,4	25,6	25,1	3,5	29,3	터키	4,4	30,7			
핀란드	25,0	4,0	21,3	1,5	21,6	영국	3,8	85,4	3,8	85,4	26,0
프랑스	18,0	30,6	17,1	30,4	24,5	미국	14,9	42,6	14,9	42,6	26,0
독일	19,4	25,4	18,0	26,8	24,6	OECD 34개국	15,8	39,2			
그리스	15,9	39,0	16,2	40,2	27,1	OECD 29개국	15,9	39,0	15,7	38,5	25,5
헝가리	26,0	0,0	27,7	0,0	27,7						
아이슬란드	21,7	16,6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일랜드	0,0	100,0	0,0	100,0	26,1	아르헨티나	19,1	26,4			
이스라엘	5,3	79,5	26,5	-2,0		브라질					
이탈리아	25,7	1,4	23,4	1,4	23,8	중국	19,6	24,7			
일본	13,8	46,9	13,2	46,3	24,5	인도	17,5	32,6			
한국	7,4	71,5	7,4	72,7	27,2	인도네시아	26,0	0,0			
룩셈부르크	20,5	21,1	20,9	21,8	26,8	러시아 연방	19,8	23,8			
멕시코	13,7	47,4	19,3	37,2	30,7	사우디아라비아	26,0	0,0			
네덜란드	25,0	3,9	23,4	3,9	24,4	남아공	0,0	100,0			
뉴질랜드	0,0	100,0	0,0	100,0	26,0	EU27	18,5	29,1			
노르웨이	14,2	45,3	12,1	43,9	21,5						

주: OECD 29는 국가 소득 분포 자료가 있는 국가들을 의미.


출처: OECD pension models;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566>

4.20. 소득 분포: OECD 평균 및 선별된 국가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585>

주요 결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연금과 소득 수준 간에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 기여금 납부 기간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림을 보면 세로축은 상대적 연금 수준, 가로축은 은퇴 전 개인 소득이다. 평평한 곡선은 연금과 소득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선이 올라가면 연관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연금 급여액이 은퇴 전 개인 소득과 관련이 있(거나 없)는 정도에 따라 국가를 분류했다. 분류는 소득 분포 대비 연금 급여의 분포를 바탕으로 했으며 앞쪽의 “연금 급여 산식의 재분배” 지표에 나타나 있다.

패널 A는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7개국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 남아공의 정액제도 외에 캐나다에서도 상대적 연금 수준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소득자는 38%, 평균소득자 이상은 44%였다. 캐나다가 소득 비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 대체율은 매우 낮고 한도는 대략 평균 근로자 소득과 동일하며 자산조사적 급여는 이 제도를 통한 소득에 대비해 지급된다. 영국에서는 소득비례제도가 누진성이 큰 산식을 갖고 있으며 기초연금프로그램도 있다.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곡선이 주로 자산조사적 공적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또한 고용주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기여해야 하는 소득에 대한 한도도 존재한다.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에 연관성이 매우 강한 8개국 있다(패널 F). 네덜란드에서는 준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의 연금대상 소득에 한도가 없다. 헝가리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에서는 연금대상소득의 한도가 평균 근로자 소득의 세 배 이상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상대적 연금수준이 소득과 함께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나타난 범위 대부분을 초과한다.

패널 E의 8개국은 은퇴 전 개인 소득과 연금 간의 연관성이 패널 F보다는 다소 약하다. 이 집단은 EU27개국 평균을 포함한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에는 확정기여형

(DC),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연금 - 소득 간 연관성이 강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패널 F에 나타난 국가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등 분석된 대부분의 비 OECD 국가는 대부분 연금 - 소득 연관성이 비교적 강해 마지막 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정식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이 많은 국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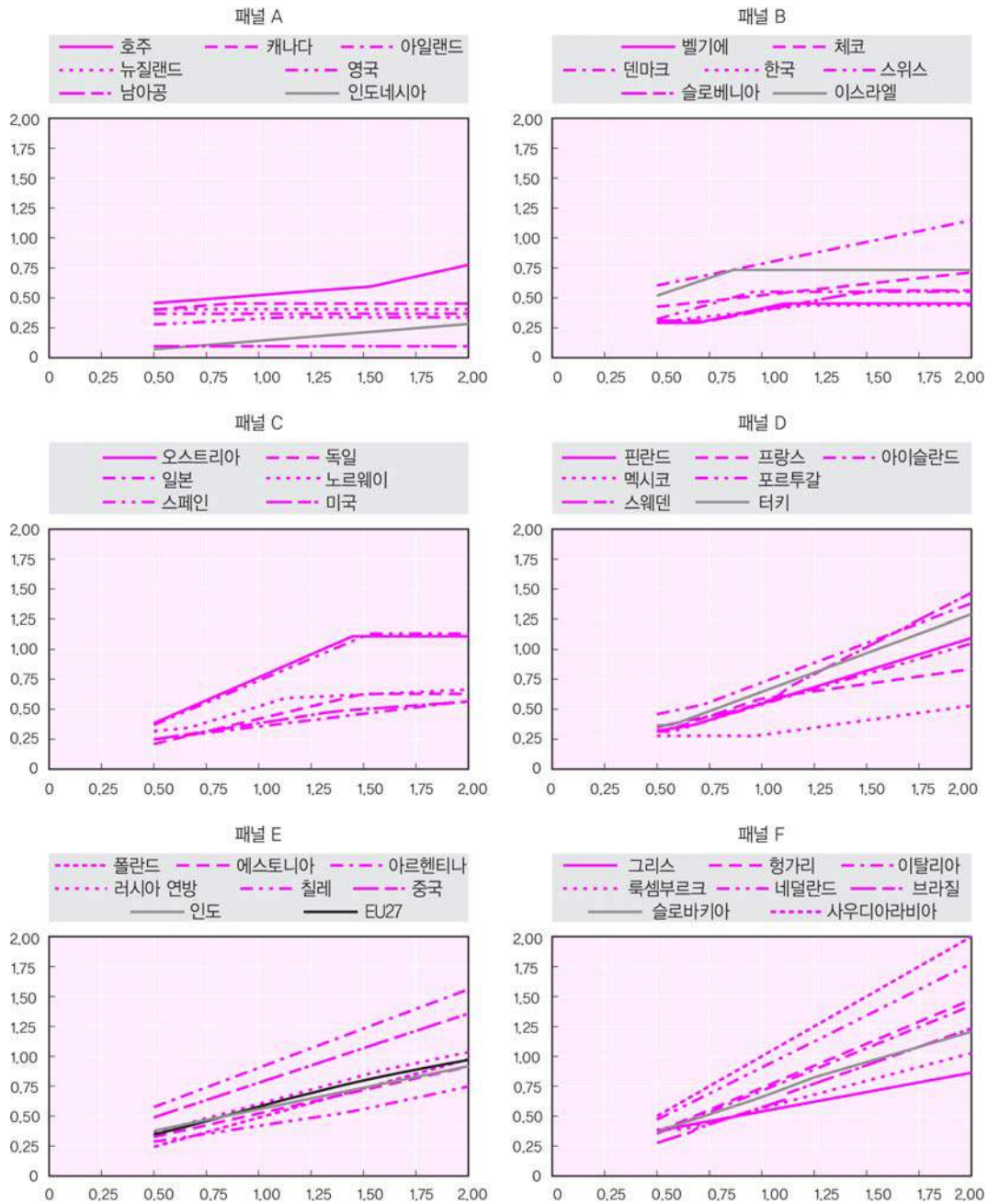
한가지 이유는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은 평균소득의 35%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기초연금에서 재분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연금대상소득 한도가 평균근로자소득의 114%로 비교적 낮아 패널 F의 국가들에 비해 급여-연금 간 연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간에 속한다. 패널 B와 C의 13개 국가는 첫번째 집단에 속하는 국가들(패널A)에 비해 연금과 퇴직 전 소득 간 연관성이 강하지만 이들의 연금 제도는 패널 F에 나타난 다섯 개 국가보다 훨씬 더 재분배적인 산식을 갖고 있다. 체코와 한국, 노르웨이, 미국에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이러한 재분배는 누진적인 급여 산식의 결과이다. 이들 공적 제도는 평균 및 고소득 근로자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퇴직 전 소득 중 더 많은 비중을 대체한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러한 누진성의 상당부분이 기초 및 선별적 연금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된다.


패널 D의 6개국은 연금 수급액과 은퇴 전 소득 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OECD 국가들 중 중간에 해당된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저소득 범위에서는 재분배 연금 프로그램 -최저 및 선별적 제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수준에서는 강력한 소득 - 급여 연관성을 보인다.

4.21. 은퇴 전 소득과 연금 수급액 간 연관성

총 연금 수급액의 국가 차원의 평균 소득 중 비율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604>

주요 결과

지금까지의 지표들은 대체율, 상대적 연금 수준, 연금 자산을 소득수준별로 보여주었다. 이들 지표를 소득 범위에 걸쳐 가중치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은퇴 시 연금 수준과 연금 자산, 연금 지급액의 생애 가치의 평균값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첫번째 지표는 평균 연금의 수준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소득이 서로 다른 근로자들은 다르게 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평균 연금 수준은 OECD 34개 회원국에서 남자는 평균 근로자 소득의 55.9%, 여자는 55.2%이다. 두번째 지표는 노후소득 제공의 총 비용을 요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중치 평균 연금 자산은 평균적으로 남자는 연 평균 근로자 소득의 9.5배, 여자는 10.9배이다.

가중치 평균 상대적 연금 수준은 소득 분포 자료를 연금 수급액 산정과 조합한 것이다. 이 종합적 측정지표는 평균 근로자 소득 중 비율로 표현된다.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저 소득자에 대해 더 높다. 하지만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결과는 남녀에 대해 표의 첫번째, 두번째 칼럼에 각각 나타나 있다. 범위의 맨 꼭대기에는 네덜란드가 있는데 남녀 공히 가중치 평균 연금 수준이 95%에 약간 못 미친다. 그 외 3개국 - 덴마크, 헝가리, 터키 - 에서는 가중치 평균 연금 수준이 평균 소득의 80%를 초과한다. 범위의 다른 쪽 끝에는 8개 OECD 국가(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가 있는데 가중치 평균 연금 수준은 남녀 공히 평균 소득의 40% 미만이다.

동일한 유형의 가중치 적용은 연금 자산 측정지표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 자산은 현재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예상급부의 규모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연금수급연령, 기대수명, 연계 정책이 있어서 국가간 차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중치 평균 연금 자산은 평균 근로자 소득의 배수로 나타낸다.

결과는 표의 세번째, 네번째 칼럼에 나와 있다. 가중치 평균 연금 자산이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즉 남자는 11.9에서 17.7 사이, 여자는 평균 소득의 13.3에서 20.4로 나타난 경우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이었다. 미 달러로 환산하면 (시장 환율) 평균 연금 예상급부액은 남자는 42만3천 달러, 여자는 48만3천 달러였다(표의 다섯번째, 여섯번째 칼럼). 이들 수치는 각 사회가 현 연금제도 규정에 따라 향후 은퇴할 근로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약속하는 이전의 현재 가치를 보여준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평균 연금 자산이 미 달러 기준으로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멕시코, 폴란드 등 기대수명이 비교적 짧은 국가에서는 연금 자산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연금 예상 급부가 OECD 34개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는데 예외는 사우디아라비아였으며 남자는 84만6천 달러, 여자는 88만 8천 달러로 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의와 측정

지표는 국가 평균의 0.3배에서 3배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에 대한 연금 수급액 산정액(연금수준과 연금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각 개인소득 수준에는 소득의 재분배에 갖는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다. 산정은 국가별 자료를 사용한다 (제 7장의 “소득” 평균과 분배” 지표 참조). 소득 분포는 모든 국가에서 비스듬하게 나타난다. 분배의 방식 (또는 정점)과 중위 소득 (근로자를 딱 둘로 나눈 중간 소득 수준)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므로 저소득자의 수가 고소득자에 비해 훨씬 많으며 그러한 이유로 저소득자들에게는 고소득자보다 지표 산정 시 더 큰 가중치가 주어진다.

참고문헌


D’Addio, A.C. and H. Immervoll (2010), “Earnings of Men and Women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Enriched Data for Pensions and Tax-Benefit Modell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m7smt2r7d2-en>.

4.22. 가중 평균: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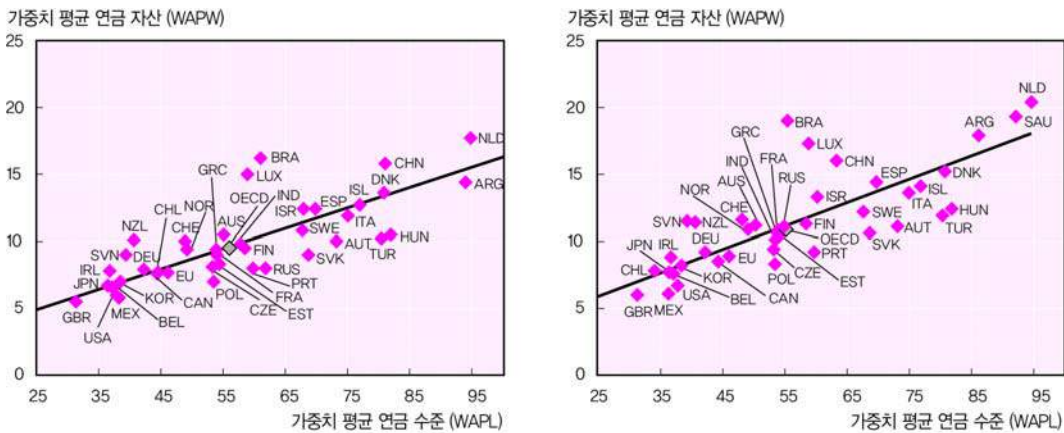
평균 근로자 소득 중 비율

	가중치 평균 연금 수준		가중치 평균 연금 자산		평균 연금 자산 (미 달러)			가중치 평균 연금 수준		가중치 평균 연금 자산		평균 연금 자산 (미 달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OECD 회원국							OECD 회원국 (계속)						
호주	55.0	50.3	10.5	11.2	802 000	856 000	노르웨이	49.1	49.1	9.4	10.9	863 000	1 000 000
오스트리아	73.1	73.1	10.0	11.1	539 000	598 000	폴란드	53.4	53.4	7.0	8.3	88 000	104 000
벨기에	37.1	37.1	6.6	7.6	401 000	462 000	포르투갈	59.7	59.7	8.0	9.2	166 000	191 000
캐나다	44.3	44.3	7.6	8.5	357 000	400 000	슬로바키아	68.6	68.6	9.0	10.6	117 000	137 000
칠레	44.5	34.1	7.7	7.8	100 000	101 000	슬로베니아	39.3	39.3	9.0	11.5	204 000	261 000
체코	53.2	53.2	8.1	9.4	128 000	148 000	스페인	69.7	69.7	12.4	14.4	418 000	485 000
덴마크	80.7	80.7	13.6	15.2	943 000	1 054 000	스웨덴	67.6	67.6	10.8	12.2	642 000	726 000
에스토니아	54.3	54.3	8.3	10.5	120 000	152 000	스위스	48.8	48.1	10.0	11.9	949 000	1 101 000
핀란드	58.4	58.4	9.5	11.3	520 000	618 000	터키	80.3	80.3	10.2	11.6	157 000	184 000
프랑스	53.9	53.9	9.0	10.8	435 000	522 000	영국	31.3	31.3	5.5	6.0	321 000	350 000
독일	42.2	42.2	7.9	9.2	467 000	544 000	미국	37.8	37.8	6.0	6.7	286 000	319 000
그리스	53.8	53.8	9.4	10.6	249 000	281 000	OECD 34개국	55.9	55.2	9.5	10.9	423 000	483 000
헝가리	81.8	81.8	10.5	12.4	131 000	154 000	기타 주요 경제국						
아이슬란드	76.8	76.8	12.7	14.1	601 000	668 000	아르헨티나	93.8	86.1	14.4	17.9	157 000	195 000
아일랜드	36.7	36.7	7.8	8.8	336 000	379 000	브라질	60.9	55.4	16.2	19.0	166 000	195 000
이스라엘	67.8	60.2	12.4	13.3	398 000	427 000	중국	80.9	63.3	15.8	16.0	119 000	120 000
이탈리아	74.9	74.9	11.9	13.6	454 000	518 000	인도	57.7	53.5	9.8	10.1	43 000	44 000
일본	36.4	36.4	6.7	7.7	371 000	426 000	인도네시아	14.8	13.7	2.6	2.6	4 000	4 000
한국	38.4	38.4	7.0	8.2	253 000	296 000	러시아 연방	61.7	54.9	8.0	11.1	84 000	117 000
룩셈부르크	58.8	58.8	15.0	17.3	1 015 000	1 170 000	사우디아라비아	105.3	92.1	18.4	19.3	846 000	888 000
멕시코	38.2	36.3	5.8	6.1	42 000	44 000	남아공	9.6	9.6	1.5	1.9	24 000	30 000
네덜란드	94.6	94.6	17.7	20.4	1 083 000	1 248 000	EU27	46.0	46.0	7.7	8.9	269 000	313 000
뉴질랜드	40.6	40.6	10.1	11.4	428 000	483 000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623>

4.23. 가중치 평균 비교: 남녀의 연금 수준 vs. 연금 자산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642>

주요 결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가연금 시스템을 구성하는 지표의 분류를 통해 다양한 구성요소로 나뉜다. 이 프레임워크는 연금 제도를 두가지 강제적 층(tier)으로 나눈다. 첫번째는 재분배 층으로 연금 수급자들이 절대적인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번째는 저축 부분으로 근로 시 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목표 소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가지 층과 공적, 사적 제도 간 연금 제도의 구분을 보여주는 이 지표 역시 국가별 정책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첫번째 층(tier)의 경우 중요한데 첫번째 층 프로그램 모두 기여 이력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14개 OECD 회원국 (제도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국과 멕시코 포함)이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급여의 가치는 개인 소득이나 여타 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강제적 연금은 전적으로 기초연금에서 나온다. 일본과 한국, 영국에서는 기초연금이 총 연금 예상 급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도 그 비중이 크다.

10개 국가에는 최저연금이 존재한다. 벨기에와 영국에서는 최저연금 크레딧이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거 더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가정하여 급여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크레딧은 그리스와 영국의 전반적인 급여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모든 OECD 회원국들이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전경력 근로자들은 저소득이라 할지라도 수급자격이 없다. 단, 7개 국가는 예외이다. 호주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호주의 첫번째 층 제도 전부가 자산조사적이며 이 제도가 총 연금 패키지의 거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와 칠레, 덴마크에서도 연금 예상급부의 17%에서 20%를 제공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첫번째 층과 두번째 층 제도 간의 균형은 위쪽 그림에 나타나 있다. 두번째 층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절반에서 76%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국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터키-

에서는 이것이 두번째 층의 높은 목표 대체율을 반영한다.

스위스,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공적제도의 급여 산식이 누진적이다. 즉, 다른 국가에서는 첫번째 층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가 이들 국가에서는 두번째 층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소득비례제도의 대부분이 최저 크레딧으로부터의 급여로 들어간다.

두번째 층 제도

강제 급여의 두번째 층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 사적 제도와 확정기여형(DC) 및 확정급여형(DB) 또는 소득비례형 제도로 나뉜다. 25개 회원국에는 공적 소득비례제도가 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 완전경력 근로자에 대해 전체 급여의 90% 이상을 제공한다.

13개 OECD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제도가 강제적 또는 준 강제적이다.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확정급여형(DB)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확정기여형(DC)이다.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네 개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이 전체 강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약 50-60%를 차지한다. 사적연금은 칠레와 아이슬란드, 멕시코에서는 중요성이 훨씬 크다. 사적급여의 공적, 사적 제도간 균형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자발적 사적연금(나타나 있지 않음)이 중요한 소득원임을 유념해야 한다.

정의와 측정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는 위의 가중 평균 연금 자산 지표를 이용해 여러 구성요소로 나누어져 표현된다. 가중치는 소득 분포 자료에서 발췌한다.

4.2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

가중 평균 연금 자산에 연금제도의 강제적 요소가 기여하는 비율

	첫번째 층			두번째 층				합계	OECD 회원국 (계속)	첫번째 층			두번째 층				합계
	선별적	기초	최저	공적 소득 비례	공적 확정 기여형	사적 확정 급여형	사적 확정 기여형			선별적	기초	최저	공적 소득 비례	공적 확정 기여형	사적 확정 급여형	사적 확정 기여형	
OECD 회원국																	
호주	38,8						61,2	100,0	뉴질랜드							100,0	
오스트리아				100,0					노르웨이			0,7	88,1		11,2	100,0	
벨기에			2,1	97,9					폴란드				51,1		48,9	100,0	
캐나다	17,8	31,7		50,5					포르투갈			2,8	97,2			100,0	
칠레							83,0		슬로바키아				57,8		42,2	100,0	
체코		18,2		81,8					슬로베니아		6,3		93,7			100,0	
덴마크	19,8	25,4					54,8 ²		스페인				100,0			100,0	
에스토니아		29,4		28,2			42,4		스웨덴			3,1	52,5		44,4 ⁸	100,0	
핀란드			0,5	99,5					스위스				65,4		34,6	100,0	
프랑스				100,0 ³					터키				1,1		98,9	100,0	
독일				100,0					영국		0,1	51,0	36,4 ⁹	12,5		100,0	
그리스 ⁴			45,0	55,0					미국				100,0			100,0	
헝가리				100,0												100,0	
아이슬란드	2,9	11,9					85,2		기타 주요 경제국							100,0	
아일랜드				100,0					아르헨티나			30,4	69,6			100,0	
이스라엘							66,0		브라질			100,0				100,0	
이탈리아				100,0					중국			53,2		46,8		100,0	
일본		42,7		57,3					인도				29,8	70,2		100,0	
한국		54,1 ⁷		45,9					인도네시아					100,0		100,0	
룩셈부르크		20,2 ⁶	1,9	77,9					러시아 연방			22,8	49,1		28,1	100,0	
멕시코		11,9 ⁵	15,6				72,5		사우디아라비아				100,0			100,0	
네덜란드				36,7			63,3		남아공			100,0	0,0			100,0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ER=소득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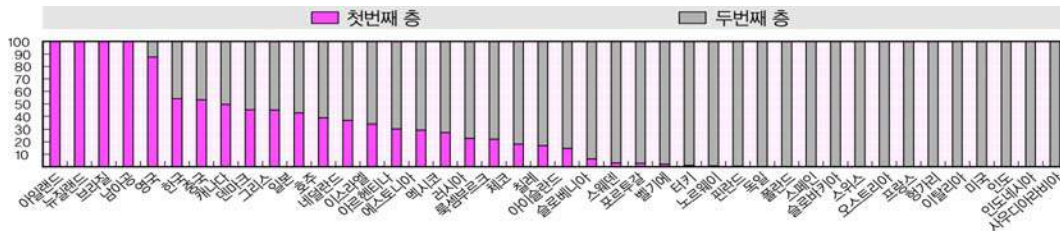
1. 벨기에: 최저연금과 최저 크레딧 둘 다 포함.
2. 덴마크: 사적 확정기여형(DC) 제도가 준 강제적 퇴직연금(49.1%)과 특별 연금 (5.7%)을 모두 포함.
3. 프랑스: 공적제도는 공적연금(80.4%)과 보충 퇴직연금 (19.6%)을 둘 다 포함.
4. 그리스: 공적연금이 주 요소(45.0%)와 보충적 요소 (55.0%)로 구성.
5. 한국: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으로, 이것은 개인소득보다는 평균에 근거하며 공적연금의 일부를 구성.
6. 룩셈부르크: 기초연금이 연말 수당도 포함.
7. 멕시코: 확정기여형(DC) 계정에 대한 정률 정부 기여로부터 산정한 기초연금금이 1997년부터 실제 최저 임금의 5%임.
8. 스웨덴: 사적 확정기여형(DC) 제도가 DC 제도를 둘 다 포함 (12.1%와 32.3%)
9. 영국: 최저연금이 공적 소득비례 제도의 최저 크레딧과 연관.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661>

4.25. 첫번째 층인 재분배 프로그램과 두번째 층인 강제적 소득 대체 제도 간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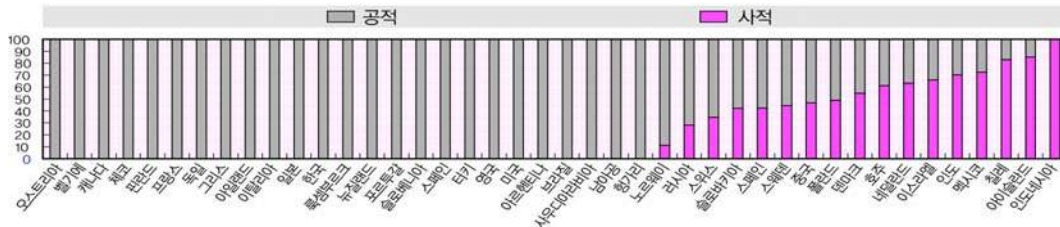
가중치 평균 연금 자산의 비율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680>

4.26. 강제적 연금의 공적, 사적 제도 간 균형



출처: OECD pension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699>

제 5 장

노후소득과 빈곤

이 두 지표는 최근 수년간 노인 인구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첫번째 지표는 노인의 소득을 전체 인구의 소득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노인의 연령과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소득원에 관한 자료 -공적 급여, 소득, 자영업, 사적급여, 또는 기타 저축 등- 역시 제시한다.

두번째 지표는 노인 빈곤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국가 평균의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사는 노인 인구 비율과 이것이 노인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또한 노인의 빈곤율을 인구 전반의 빈곤율과 비교한다.

이들 지표는 제 4장의 연금 수급액 분석을 보완해주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연금 수급액의 산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데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액 가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빈곤에 관한 이들 지표는 과거의 공적연금 제도가 현재 적정한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

노인들의 소득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낮는데 가구 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후반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이 전체 인구 소득의 86%였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 사이 자료가 나와 있는 27개국 중 18개국에서는 노인의 소득이 인구 전체의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노인 소득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2000년대 후반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 소득의 86.2%였다. 노인 소득은 프랑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에서 가장 높아서 국가 평균의 95% 정도였다. 반면 호주와 한국은 노인 소득이 인구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66-75세 인구는 75세 이상 인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대적 소득이 비교적 높으며 각각 전체 인구 소득의 90%와 80% 수준이다. 노인들의 소득이 전체 인구 대비 소득보다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75세 이상 인구 집단이 평균 기대수명 이상 생존해 있는 인구, 특히 급여가 낮고 근로 시간이 짧으며 경력 중단 기간이 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 소득은 상대적 기준뿐 아니라 절대적 기준(미 달러)으로도 나타나 있다. 소득은 2000년대 후반 평균 21,500달러 정도로 멕시코의 7천 달러부터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의 1만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 룩셈부르크의 4만4천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분포한다.

소득 추세

자료가 나와 있는 27개국 중 18개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사이 노인들의 소득은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이었다. 그 15년 동안 노인들의 상대적 소득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칠레와 스웨덴이었다.

소득원

노인들이 의존하는 세가지 주요 소득원 중 공적 이전소득(소득비례연금, 자산조사적 급여 등)이 가장 중요하다. 공적 이전소득은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 이전소득에 가장 의존하는 곳은 헝가리와 룩셈부르크로 각각 소득의 86%와 72%가 공적이전소득에서 나온다. 한국의 경우 공적이전(transfer)의 비중이 적는데 공적연금제도가

1988년어야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근로는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약 24%, 자본은 18%를 차지한다.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는 근로가 특히 중요하며 노인 소득의 40% 이상을 근로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 7개 OECD 국가에서 근로는 노인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이스라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상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보다 높다.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기여 이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근로한다. 또한 소득은 가구에 대해서도 측정되는데, 노인들은 동거하는 젊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구에 살고 있으므로 근로는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소득원일 가능성이 크다.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는 대부분 사적연금인 자본이 노후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정의와 측정

고용, 자영업, 자본, 공적 이전으로부터의 소득. 제시된 자료는 가치분 소득에 대한 것이다(즉,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 소득은 가구 기준으로 측정되며 가구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균등화한다. 정의와 자료 출처에 대해 좀더 상세한 정보는 *Growing Unequal?* (OECD, 2008)을 참조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의 “노인의 소득 및 빈곤”에서 좀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44197-en>.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9-en.

5.1. 노인의 소득, 200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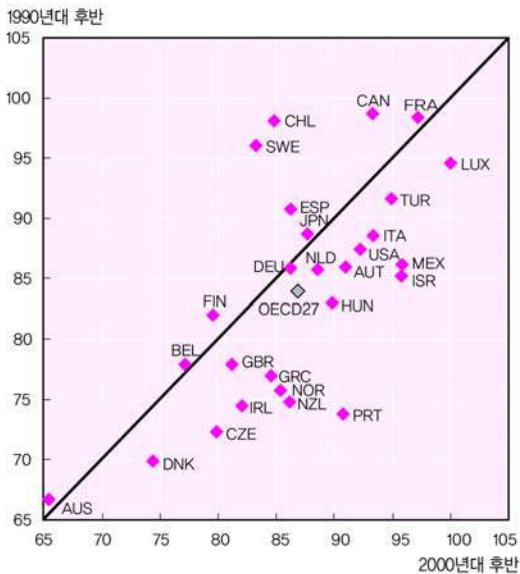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65세 이상 평균 소득 (미 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65세 이상 평균 소득 (미 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65세 이상 인구 전체	66-75세	75세 초과		65세 이상 인구 전체	66-75세	75세 초과		
호주	65.4	69.3	60.0	21 622	한국	62.4		15 685	
오스트리아	91.3	95.0	86.0	28 258	룩셈부르크	99.9	101.8	96.7	43 761
벨기에	77.1	80.2	73.5	21 180	멕시코	95.8	98.0	92.0	7 088
캐나다	93.3	95.8	89.9	31 690	네덜란드	88.6	93.3	81.8	26 353
칠레	84.8	85.6	83.6	12 354	뉴질랜드	86.2	97.8	69.2	24 048
체코	79.8	82.5	75.8	13 362	노르웨이	85.3	95.3	73.0	32 083
덴마크	74.3	79.4	67.2	23 004	폴란드	87.5	87.5	87.4	12 653
에스토니아	74.5	77.7	70.1	10 135	포르투갈	90.8	97.0	83.4	16 591
핀란드	79.5	86.4	71.0	22 440	슬로바키아	82.1	82.3	81.6	12 742
프랑스	97.2	103.4	90.8	27 652	슬로베니아	85.9	90.1	79.7	19 169
독일	85.4	89.6	80.0	24 790	스페인	86.1	90.6	81.5	19 098
그리스	84.4	89.6	77.9	16 418	스웨덴	83.2	94.8	66.1	22 860
헝가리	89.8	91.0	87.9	10 239	스위스	76.9	81.7	68.9	30 275
아이슬란드	92.8	102.9	80.0	26 435	터키	94.9	99.2	87.0	10 886
아일랜드	82.0	86.4	75.4	25 225	영국	81.2	86.0	75.4	24 170
이스라엘	95.8	100.0	90.4	19 507	미국	92.2	102.4	79.3	32 821
이탈리아	93.3	99.1	86.9	23 306	OECD34	86.2	90.1	79.9	21 480
일본	87.7	89.0	86.1	22 404					

주: 구매력평가지수 환율은 실제 소비의 국가별 비교를 기반으로 산정.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ee OECD (2008), 그림 2.4는 연령별 상대적 소득, 표 5.A1.1은 절대적 소득.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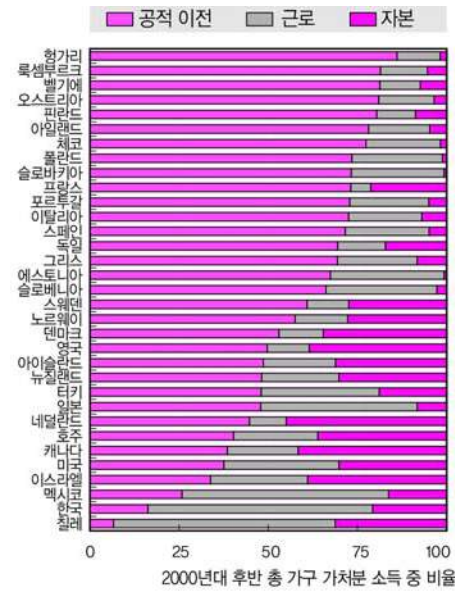
5.2. 소득 추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ee OECD (2008), Figure 2.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737>

5.3. 소득원, 2000년대 후반



주: 근로를 통한 소득(income)은 근로소득(고용소득)과 자영업소득을 둘 다 포함. 자본 소득은 비연금성 저축의 수익률로 인한 소득과 사적연금 포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756>

주요 결과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중 12.8%는 소득 빈곤 상태이며 소득 빈곤은 국가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정의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큰데 노인빈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개국부터 빈곤율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4개국까지 분포한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데 평균 11.3%이다.

2010년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한국(47%)에서 매우 높았고 호주(36%)와 멕시코(28%), 스위스(22%)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헝가리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빈곤 노인의 비율이 가장 적어서 2% 미만이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에서는 OECD 평균인 12.8%에 가깝게 나타났다.

34개국 중 16개국에서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 미만이었다. 두 빈곤율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호주와 한국, 스위스였다. 18개국에서는 노인들이 빈곤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캐나다, 에스토니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 빈곤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4.7퍼센트에서 6.1퍼센트 포인트 낮았다.

빈곤과 연령

“젊은 노인(66-75세)”의 빈곤은 “고령 노인(75세 이상)”보다는 일반적으로 드문 편이다. 젊은 노인의 평균 빈곤율은 11.3%, 고령 노인은 13.8%이다. 이 두 빈곤율의 차이는 호주에서는 두 자릿수 이고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미국에서는 약 8퍼센트 포인트 더 높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질 소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늦게 은퇴한 집단일수록 초기 급여액이 더 높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 인구는 여성이 압도적이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66-75세 인구의 53%, 75세 이상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에서는 75세 이상 인구가 젊은 노인들보다 빈곤율이 약간 낮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네덜란드의 격차는 모두 0.4퍼센트 포인트 이하이다.

노후빈곤 발생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급여가 설정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이 급여액이 2000년대 후반, 빈곤 기준선 미만이었다. 반대로 뉴질랜드의 기초연금(노인)은 빈곤 기준선보다 약간 높았다(“기초, 선별적, 최저연금” 지표 참조). 한국의 고령 노인 빈

곤율이 매우 높은 것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의 은퇴자들은 수급액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반적인 인구 빈곤율은 11.2에서 11.3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15.1%에서 12.8%로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33개 OECD 국가 중 8개국만이 그 3년간 노인 빈곤율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결과가 금융위기 이후 나온 최초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전체 인구 대비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 분석 역시 급여 수준에 대한 빈곤율의 민감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고령 노인 빈곤율은 2007년 23.5%에서 2010년 12.5%로 감소했는데 빈곤 기준선에 대한 정액 급여 제도 덕분이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에 빈곤율이 13.4%에서 8.0%로 줄었다.

정의와 측정

국가별 비교에서 OECD는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빈곤의 기준은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의 중위 가구 소득에 의존한다. 여기에서는 빈곤 기준선이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에 설정되어 있다. 정의 및 자료 출처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OECD (2008), *Growing Unequal*을 참조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09의 “노인의 소득 및 빈곤”에서 좀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OECD (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Table 5.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44197-en>.

5.4. 소득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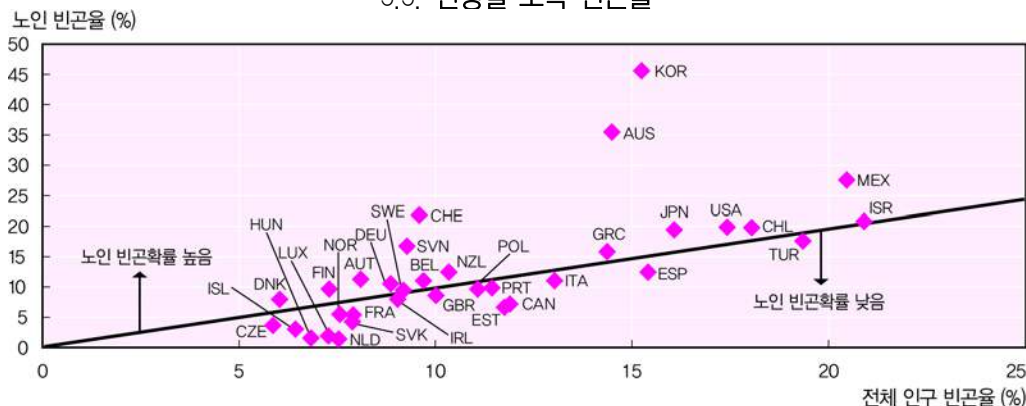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 소득 비율

	2007				2010			
	노인 인구(65세 이상)			전체 인구	노인 인구(65세 이상)			전체 인구
	65세 이상	66-75세	75세 이상		65세 이상	66-75세	75세 이상	
호주	39.2	35.2	44.7	14.6	35.5	31.2	41.5	14.4
오스트리아	9.9	9.0	11.2	7.2	11.3	11.1	11.5	8.1
벨기에	13.5	12.0	15.4	9.1	11.0	10.9	11.2	9.7
캐나다	5.0	5.4	4.5	11.3	7.2	6.9	7.6	11.9
칠레	21.6	21.3	22.1	19.2	19.8	20.0	19.5	18.0
체코	3.6	3.2	4.2	5.4	3.7	3.4	4.0	5.8
덴마크	12.1	9.3	15.8	6.1	8.0	5.7	11.2	6.0
에스토니아	29.5	24.6	36.7	13.9	6.7	4.6	9.5	11.7
핀란드	13.0	7.7	19.4	8.0	9.7	6.1	14.0	7.3
프랑스	5.3	3.6	6.8	7.2	5.4	4.5	6.3	7.9
독일	10.1	8.1	13.0	8.5	10.5	8.5	13.3	8.8
그리스	15.2	11.5	20.7	13.9	15.8	13.2	19.1	14.3
헝가리	4.7	5.1	4.3	6.4	1.6	2.2	0.7	6.8
아이슬란드	9.4	5.0	14.5	6.5	3.0	0.7	6.0	6.4
아일랜드	13.4	12.4	14.7	9.8	8.0	6.9	9.6	9.0
이스라엘	22.1	21.1	23.4	19.9	20.8	20.1	21.7	20.9
이탈리아	14.5	14.1	15.0	12.0	11.0	10.5	11.7	13.0
일본	21.7	19.4	24.5	15.7	19.4	16.6	22.8	16.0
한국	44.6	43.2		14.8	47.2	45.6		15.2
룩셈부르크	2.7	2.6	2.8	7.2	1.9	1.4	2.8	7.2
멕시코	29.0	28.4	30.1	21.0	27.6	26.7	29.1	20.4
네덜란드	1.6	1.6	1.7	6.7	1.4	1.3	1.6	7.5
뉴질랜드	23.5	19.7	29.3	11.0	12.5	10.2	15.8	10.3
노르웨이	8.0	4.0	12.6	7.8	5.5	2.7	9.0	7.5
폴란드	7.7	8.6	6.4	10.1	9.7	11.2	7.7	11.0
포르투갈	15.2	12.6	18.7	13.6	9.9	7.6	12.6	11.4
슬로바키아	7.2	6.6	8.1	6.7	4.3	3.5	5.7	7.8
슬로베니아	17.5	15.1	21.1	8.2	16.7	13.1	22.0	9.2
스페인	20.6	17.4	24.2	13.7	12.5	11.6	13.4	15.4
스웨덴	9.9	5.9	15.1	8.4	9.5	6.3	14.2	9.1
스위스					21.8	19.4	25.8	9.5
터키	13.7	13.9	13.1	17.0	17.6	15.9	20.7	19.3
영국	12.2	9.9	14.9	11.3	8.6	7.0	10.5	10.0
미국	22.2	18.9	26.3	17.3	19.9	16.4	24.3	17.4
OECD	15.1	13.2	16.7	11.2	12.8	11.3	13.8	11.3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2008), Table 5.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775>

5.5. 연령별 소득 빈곤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ee OECD (2008), Tables 5.1 and 5.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794>

제 6 장

연금제도의 재정

여기 등장하는 지표들은 앞의 두 장에서처럼 개인의 연금과 은퇴 후 소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반적인 연금 제도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의 자금조달 방식을 살펴본다. 첫번째 지표는 공적연금과 의무 사적연금을 분리할 수 있는 국가에서 각 연금의 보험료율을 보여준다. 또한 연금 기여로 인한 수입(revenues) 자료도 제공한다.

세 개의 연금 지출(Pension expenditures) 지표 중 첫번째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적 지출을 살펴보고 있다. 이 지표는 공적연금을 지급하는데 국민 소득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며 전반적인 정부 예산에서 공적연금이 갖는 중요성도 보여준다. 그 외에, 가능한 경우 “비 현금성” 급여의 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시한다. 두번째 지출 지표는 사적연금에 초점을 맞추는데, 강제적, 준 강제적, 자발적 사적연금에 대한 급여액 지출을 살펴본다. 또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사적 연금의 공적 지원 비용에 관한 정보도 보여준다.

첫번째 지표는 연금 지출의 장기적인 재정적 예측과, 특히 2010년부터 2060년 사이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 변화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EU 27개국과 노르웨이는 EU 2012 고령화 보고서에서 발췌했으며 그 외 일부 OECD 국가와 기타 주요 경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출처를 사용했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

연금 보험료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별도의 공적 기여금을 부과하는 25개 OECD 국가의 평균 보험료율을 1994년의 19.2%에서 2012년에는 19.6%로 증가했으며 2004년에 최고 20.0%에 도달했었다. 이는 아마도 높은 근로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인구 고령화와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연금 제도 재정의 압박보다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나와 있는 23개국에서 이들 기여금으로 인한 수입은 국민 소득(national income)의 평균 5.2%로, 세금과 기여금으로 인한 정부 세입 전체의 15.8%를 차지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에서 제시한 측정 지표 대부분은 연금 제도의 급여액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번에 다루는 지표들은 기여 부분을 다룬다.

표의 왼쪽은 기여율의 변화이다. 별도의 연금 기여가 이루어지는 국가들 중 약 3분의 2 가량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기여율의 변화가 없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가 이에 해당된다. 독일과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에서는 아주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체코는 기여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핀란드와 일본은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미국은 기여율이 감소했다.

표의 오른쪽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 금액을 보여준다. 수입(Revenues) 수치는 연금 제도의 다른 파라미터의 영향을 보여주므로 기여율 자료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연금 기여율 상한선이 있는데 평균 소득 수준부터 이탈리아의 3.3배, 멕시코의 6.0배까지 분포한다. 상한선이 낮으면 물론 해당 기여율에 대한 수입(revenues)이 감소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는 기여율 하한선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자들이 기여금을 전혀 또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의 수입(revenues)은 비공식 부문의 규모 또는 소득 축소 신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연금 기여율로 인한 공적 수입(revenues)은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높아서 GDP의 9.2%였으며 그 다음이

9.0%인 핀란드와 이탈리아였다. 터키는 기여율이 OECD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이 국민 소득의 2.4%에 불과해 비공식 경제 부문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기여 수입(revenues)은 캐나다에서도 낮으며 -GDP의 2.6%- 그 이유는 기여율이 낮고(OECD 평균의 절반) 상한선이 낮기 때문(평균 소득수준)이다.

평균적으로 피고용 근로자들의 기여는 고용주 기여인 GDP의 3.0% 대비 GDP의 총 1.9% 정도이다. 피고용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35%를, 고용주들은 57%를 납부한다. (나머지는 주로 자영업으로부터의 기여이며 실업 등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기여도 포함한다.) 기여의 상당 부분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국가는 체코와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그러나 고용주에 부과되는 기여금은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수많은 경제 분석에 나타나 있으며 임금이 낮아지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국가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기여하고 있는데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위스가 이에 해당한다.

표의 마지막 칼럼에서는 연금 기여금이 세금과 기여금으로 거둔 정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스페인이 전체 세입의 28%를 연금 기여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그 뒤를 25.5%의 그리스가 이었다. 호주와 덴마크, 뉴질랜드에서는 연금의 재정이 일반 세입으로 충당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연금 기여는 캐나다, 한국, 터키에서는 정부 세입 중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1. 공적연금 기여율과 수입

	연금 기여율 (총 소득 중 비율)							연금 기여 수입, 2011 (GDP 중 비율)			(전체 세금 중 비율)
	1994	1999	2004	2009	2012	고용 근로자 2012	고용주 2012	고용 근로자	고용주	합계	
OECD 회원국											
호주					사적연금 기여만			0,0	0,0	0,0	0,0
오스트리아	22,8	22,8	22,8	22,8	22,8	10,3	12,6	3,5	3,7	7,8	20,1
벨기에	16,4	16,4	16,4	16,4	16,4	7,5	8,9	2,3	2,0	4,7	11,5
캐나다	5,2	7,0	9,9	9,9	9,9	5,0	5,0	1,2	1,2	2,6	9,1
칠레			29,8	29,8	29,8	28,8	1,0				
체코	26,9	26,0	28,0	28,0	28,0	6,5	21,5	1,8	6,0	8,3	24,7
덴마크					사적연금 기여만			0,0	0,0	0,0	0,0
에스토니아			35,0	22,0	22,0	2,0	20,0				
핀란드	18,6	21,5	21,4	21,6	22,8	5,2	17,7	1,8	6,8	9,0	22,9
프랑스	21,5	16,7	16,7	16,7	16,7	6,8	9,9				
독일	19,2	19,7	19,5	19,9	19,6	9,8	9,8	2,8	3,2	6,9	20,2
그리스	20,0	20,0	20,0	20,0	20,0	6,7	13,3	3,4	4,3	9,2	25,5
헝가리	30,5	30,0	26,5	33,5	34,0	10,0	24,0	1,4	6,4	8,3	23,0
아이슬란드					별도의 연금 기여 없음						
아일랜드					별도의 연금 기여 없음						
이스라엘			6,1	6,9	6,9	3,9	3,1				
이탈리아	28,3	32,7	32,7	32,7	33,0	9,2	23,8	2,2	6,8	9,0	21,1
일본	16,5	17,4	13,9	15,7	16,8	8,4	8,4	3,2	3,1	6,3	22,8
한국	6,0	9,0	9,0	9,0	9,0	4,5	4,5	1,2	0,9	2,1	9,0
룩셈부르크	16,0	16,0	16,0	16,0	16,0	8,0	8,0	2,8	2,4	5,9	17,4
멕시코					사적연금 기여만			0,0	0,0	0,0	0,0
네덜란드	17,9	17,9	17,9	17,9	17,9	17,9	0,0				
뉴질랜드					기여 없음			0,0	0,0	0,0	0,0
노르웨이					별도의 연금 기여 없음						
폴란드		19,5	19,5	19,5	19,5	9,8	9,8	3,0	2,6	6,8	24,1
포르투갈					별도의 연금 기여 없음						
슬로바키아	28,5	27,5	26,0	18,0	18,0	4,0	14,0	0,9	2,5	4,3	16,4
슬로베니아			24,4	24,4	24,4	15,5	8,9				
스페인	29,3	28,3	28,3	28,3	28,3	4,7	23,6	1,4	6,8	9,2	28,0
스웨덴	19,1	15,1	18,9	18,9	18,4	7,0	11,4	2,5	3,6	6,2	14,6
스위스	9,8	9,8	9,8	9,8	9,8	4,9	4,9	2,7	2,7	5,9	21,5
터키	20,0	20,0	20,0	20,0	20,0	9,0	11,0	1,1	1,3	2,4	12,0
영국					별도의 연금 기여 없음						
미국	12,4	12,4	12,4	12,4	10,4	4,2	6,2	2,1	2,1	4,2	18,5
OECD 34개국 평균	19,2	19,3	20,0	19,6	19,6	8,4	11,2	1,8	3,0	5,2	15,8
기타 경제국											
아르헨티나			28,0	23,7	23,7	11,0	12,7				
브라질			31,0	31,0	31,0	11,0	20,0				
중국			28,0	28,0	28,0	8,0	20,0				
인도			24,0	24,0	24,0	12,0	12,0				
인도네시아			6,0	6,0	6,0	2,0	4,0				
러시아연방			28,0	26,0	22,0	0,0	22,0				
사우디아라비아			18,0	18,0	18,0	9,0	9,0				
남아공					기여 없음						
EU27개국평균			23,8	22,5	22,6	8,0	14,6				

주: 어떤 경우에는 수입(revenues)이 여러 사회보장프로그램에 기여율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된다는 가정하에 연금 기여금 수입(revenues)을 산정. 총 기여는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들(주로 자영업)의 납부액을 포함.

출처: OECD (various years), Taxing Wages; OECD (2013), Revenue Statistic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various year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OECD pension and tax mode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813>

주요 결과

OECD 국가에서 현금성 노령 연금과 유족연금을 위한 공적 지출은 1990년에서 2009년 사이 GDP의 6.1%에서 7.8%로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27% 빠르게 증가했다. 공적연금은 정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경우가 많으며 평균적으로 총 정부 지출의 17%를 차지한다.

2009년 기준 이탈리아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연금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GDP의 15.4%를 기록했다. 총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외에도 유럽 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그리스도 GDP의 약 14%에서 13%, 폴란드와 포르투갈이 12% 정도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이 총 공적 지출의 24%에서 30%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지출액은 부분적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들 6개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한 국가에 속한다.

왼쪽 수치는 2009년 연금 지출을 해당 연도의 노년 부양율(old-age dependency ratio)과 비교한 것이다(부양율은 65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제 7장의 “노인부양비(old-age support ratio)”의 반대개념이다). 상관관계가 강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본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도 비슷하거나 더 심한 인구학적 요인을 갖고 있지만 척도의 상위 7개국보다는 연금지출액이 크게 낮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GDP의 1.7% 정도를 공적연금에, 한국은 2.1%를 지출한다. 모두 비교적 젊은 국가들이다. 또한,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공적 소득비례제도가 1988년에야 도입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연금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좁은 것(고용 근로자의 35% 정도에 불과)이 낮은 지출의 한 원인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연금의 상당부분이 강제적 퇴직연금에 의해 제공된다(다음 지표인 “연금 급여 지출: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참조). 그래서 노후소득 제공에 있어 공적 부문의 역할이 작다.

지출은 또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인구학적으로 유리한 상황의 국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터키는 OECD 국가 중 인구학적 측면에서 두번째로 젊은 국가이지만 GDP의 6.8%를 공적연금에 지출한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보다 높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는 터키에 비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두 세배에 달한다.

추세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1990-2009년의 기간동안 연금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다섯 개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지출이 국민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4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1992-94년 기초연금 가치 동결과 연금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 정책의 결과이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에서는 공적연금 지출이 대폭 감소했지만 노르웨이는 현재 1990년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섯 개 OECD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지출이 국민 소득 대비 두 배 이상이다. 한국과 멕시코(정도는 덜하지만) 터키에서는 이런 현상이 1990년의 출발점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와 포르투갈은 OECD 평균을 밑돌다가 평균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일본의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것이다.

총 지출과 순 지출

표의 끝에서 두번째 칼럼은 순 기준(급여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 제외)으로 공적 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수치는 이를 총 연금 지출과 비교하고 있다. 지출이 가장 큰 국가 중 두 곳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과 세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순 지출이 총 지출보다 훨씬 낮다. 연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곳(슬로바키아)이나 공적 급여가 기초 세제 혜택 미만인 곳(호주와 체코, 아일랜드, 영국)에서는 총 지출과 순 지출이 비슷하다.

비 현금성 급여

표의 마지막 칼럼은 비현금성 급여를 포함해 노인에 대한 총 공적 지출의 합계를 보여준다. 여섯 개 국가에서는 급여가 GDP의 1%를 초과한다.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시설보호서비스 및 재가 지원 서비스(residential care and home-help services)가 가장 중요하다. 호주와 일본 역시 비현금성 혜택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6.2.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위한 공적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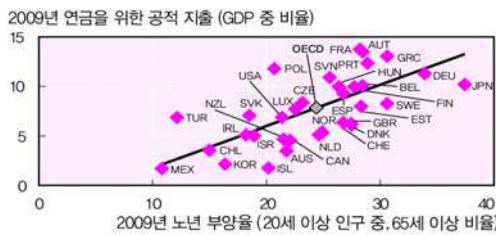
	현금성의 노령 및 유족연금 급여를 위한 공적 지출										
	수준 (GDP 중 비율)					증감 (%)	수준(총 정부 지출 중 비율)		순 기준의 수준 (GDP 중 비율)		비현금성 포함 합계 (GDP 중 비율)
	1990	1995	2000	2005	2009'		1990-2009	1990	2009'	2009'	
호주	3.0	3.6	3.8	3.3	3.5		14.7	8.5	9.4	3.4	5.1
오스트리아	11.4	12.3	12.2	12.4	13.5		18.3	22.1	25.5	11.8	14.0
벨기에	9.1	9.3	8.9	9.0	10.0		10.2	17.4	18.7	8.9	10.2
캐나다	4.2	4.7	4.3	4.1	4.5		7.4	8.5	10.3	4.3	4.5
칠레	6.7	7.3	5.7	3.6						3.5	3.6
체코	5.8	6.1	7.2	7.0	8.3		42.9	18.5	8.3	8.6	
덴마크	5.1	6.2	5.3	5.4	6.1		19.3	9.2	10.5	4.5	8.2
에스토니아			6.0	5.3	7.9				17.6	7.8	8.1
핀란드	7.3	8.8	7.6	8.4	9.9		36.3	15.1	17.7	8.3	11.1
프랑스	10.6	12.0	11.8	12.4	13.7		29.2	21.4	24.2	12.8	14.1
독일	9.7	10.5	11.1	11.4	11.3		15.7	23.4	10.9	10.9	11.3
그리스	9.9	9.7	10.8	11.8	13.0		31.2	24.2	13.0	13.0	13.2
헝가리			7.6	8.5	9.9				19.4	9.9	10.5
아이슬란드	2.2	2.4	2.2	2.0	1.7		-21.3	3.4	1.6	2.2	
아일랜드	4.9	4.3	3.1	3.4	5.1		5.2	11.5	10.5	4.8	5.6
이스라엘		4.7	4.9	5.1	5.0				11.1	4.9	5.2
이탈리아	10.1	11.3	13.5	13.9	15.4		53.3	19.1	29.8	13.5	15.6
일본	4.8	6.1	7.3	8.7	10.2		111.4	19.1	9.5	11.8	
한국	0.7	1.2	1.4	1.5	2.1		193.5	3.7	6.5	2.1	2.4
룩셈부르크	8.2	8.8	7.5	7.2	7.7		-6.1	21.6	17.8	6.9	7.7
멕시코	0.5	0.7	0.9	1.2	1.7		269.0		7.3	1.7	1.7
네덜란드	6.7	5.8	5.0	5.0	5.1		-23.9	12.2	9.9	4.7	6.1
뉴질랜드	7.4	5.7	5.0	4.3	4.7		-36.7	14.0	11.1	4.0	4.7
노르웨이	5.6	5.5	4.8	4.8	5.4		-5.2		11.5	4.4	7.4
폴란드	5.1	9.4	10.5	11.4	11.8		129.1		26.4	10.8	11.8
포르투갈	4.9	7.2	7.9	10.3	12.3		151.9		24.8	11.6	12.5
슬로바키아		6.3	6.3	6.2	7.0				16.9	7.0	7.4
슬로베니아			10.5	9.9	10.9				22.1	10.9	11.0
스페인	7.9	9.0	8.6	8.1	9.3		17.3		20.1	9.0	9.9
스웨덴	7.7	8.2	7.2	7.6	8.2		6.8		15.0	6.2	10.8
스위스	5.6	6.7	6.6	6.8	6.3		11.9	18.6	19.5	6.4	6.6
터키	2.4	2.7	4.9	5.9	6.8		188.7		16.8	6.8	6.9
영국	4.8	5.4	5.3	5.6	6.2		28.1	11.6	12.1	5.9	6.8
미국	6.1	6.3	5.9	6.0	6.8		12.6	16.4	16.3	6.4	6.9
OECD	6.1	6.7	6.9	7.0	7.8		27.0	16.6	7.3	7.3	8.3

주: 자료, 출처, 방법론에 관해 좀더 상세한 사항은 Adema, W. and M. Ladaï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참조.

1. 스위스 자료는 2008년 자료임.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6.3. 인구학적 압력과 공적연금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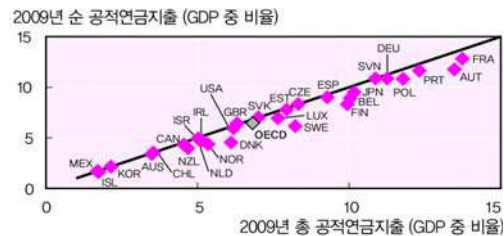


주: 회귀선은 연금 지출 = $-2.408 (1.917) + 0.4186 (0.07774) \times$ 부양비로 괄호 안은 이분산성 조정 표준 오류이다. 부양비의 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하며 회귀의 R²는 0.4832이다.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 Highlight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851>

6.4. 총 & 순 공적연금 지출



주: 그림은 45도 선을 보여준다. 자료, 출처, 방법론에 관해 좀더 상세한 사항은 Adema, W. and M. Ladaï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참조.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870>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로부터의 연금액은 자료가 나와 있는 25개 OECD 국가에서 2009년 평균 GDP의 1.6%였다. 이는 연금급여액에 대한 평균 공적 지출의 5분의 1 수준이다. 사적연금 납부액은 1990년에서 2009년 사이 GDP보다 27% 빠르게 증가했다.

사적연금은 34개 OECD 회원국 중 10개국에서 강제적이거나 노사관계 협약을 통해 거의 보편적인 적용범위 (“준 강제적”)를 달성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 - 개인연금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연금 -의 가입율이 높다.

사적연금액의 흐름이 가장 큰 곳은 스위스로 2009년 GDP의 5.8%였다. 공적 지출에 추가하여 총 급여액은 GDP의 9.2%인데, 이는 체코, 스페인의 공적연금 지출과 비슷하다. 스위스의 퇴직연금제도(occupational plan)는 강제적 제도인데, 단 사적연금 급여 자료에는 법정 최저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가 포함된다.

퇴직연금제도가 “준 강제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사적연금 지급액이 GDP의 5.6%로 두번째로 높다. 다음 네 개 국가 - 캐나다,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은 사적연금 지급액이 GDP의 3.7%에서 4.6% 사이이다. 영국의 경우 공적 소득비례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개인들을 위한 소규모 강제적 요소가 있다. 제 9장의 “국가별 현황”을 참조한다. 일본 (사적연금에 자발적 가입)은 사적연금에 대한 급여액 지출이 그 다음으로 높아 GDP의 3.1% 이상이다.

호주, 에스토니아,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1990년대에 많은 국가가 강제적 사적연금을 도입했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중부, 동부 유럽- 주로 젊은 근로자들이 이 새 제도에 가입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연금수급을 시작하지 않았다. 호주와 스웨덴에서 기록된 지급액의 상당수는 사적연금이 강제적 제도가 되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각각) 사적, 준 강제적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경우에, 모든 은퇴자들이 강제적 사적연금제도 상 완전경력을 채우려면 몇십년이 지나야 한다.

추세

사적연금지급액의 증가가 가장 빨랐던 것은 기준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GDP의 0.5% 미만). 그러나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같은 예외도 있다. 스위스의 퇴직연금은 1985년에 강제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입률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이후 세대의 은퇴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적연금의 적용을 받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적연금 수급액은 빠르게 늘어났다.

세제 혜택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 저축에 대해 유리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도 전부 혹은 일부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는 연금 지급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제 4장의 “연금과 연금 수급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표 참조).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의 비용은 1960년대에 개발된 “세금 지출” 개념을 가지고 측정된다. 기준 세제 대비 세제혜택의 가치를 계량화하려는 노력이다. 개념은 이것이 정부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직접 지출)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 저축에 대한 세금 지출 자료는 21개 OECD 회원국에 대해 나와 있다. 이들 국가 중 절반 이상이 GDP의 0.2%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까지 5개국만이 GDP의 1% 이상으로 세금 지출을 보고하고 있다.

세금 지출을 볼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선택된 기준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명칭은 세금 지출이지만 직접 지출과는 다르므로 공적 세금 지출에 이 수치를 부가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Adema, W. and M. Ladaique (2009),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Gross and Net Indicators in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2,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20615515052>.
 OECD (2010),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76907-en>.
 Yoo, K.Y. and A. de Serres (2004),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and the Net Tax Cost Per Unit of Contribution to Tax-Favoured Schem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0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387535760801>.

6.5. 연금 급여액 지출: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199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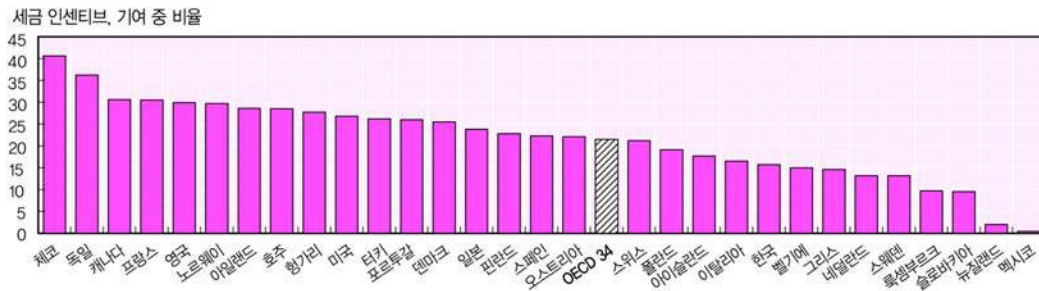
제도 유형	사적연금제도의 급여액 지출						공적 & 사적 급여액 지출 (GDP 중 비율)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혜택 (GDP 중 비율)	
	수준 (GDP 중 비율)					증감 (%)			
	1990	1995	2000	2005	2009 ¹				
호주	v	1.8	2.9	1.9	2.0		5.5	2.0	
오스트리아	v	0.4	0.4	0.5	0.5	60.2	14.2	0.1	
벨기에	v	1.0	1.7	1.4	1.5	1.4	38.0	11.5	0.2
캐나다	v	2.6	3.5	4.0	4.3	3.7	43.9	8.2	1.3
칠레	m		0.9	1.1	1.3	1.3		4.9	
체코	m	a	a	0.2	0.2	0.4		8.8	0.1
	v	a	0.0	0.0	0.0	0.1			
덴마크	q/m	1.5	1.8	2.0	2.3	2.5	59.3	8.6	
에스토니아								7.9	
핀란드	v	0.1	0.4	0.3	0.2	0.3	184.3	10.2	0.1
프랑스	m	0.2	0.1	0.2	0.2	0.2	-1.4	14.1	0.0
	v	0.1	0.1	0.1	0.1	0.1	189.6		
독일	v	0.7	0.7	0.8	0.8	0.8	22.9	12.1	0.9
그리스	v	0.4	0.4	0.5	0.5	0.4	-0.1	13.4	
헝가리								9.9	
아이슬란드	v	1.4	1.8	2.3	2.8	3.7	166.5	5.5	1.1
아일랜드	v	0.9	1.0	0.8	0.8	1.1	23.1	6.2	1.2
이스라엘								5.0	
이탈리아	m	2.7	3.1	1.2	1.1	1.2	-55.2	17.0	0.0
	v	0.3	0.2	0.2	0.2	0.3	0.2		
일본	m	0.2	0.3	0.5	a	a		13.3	0.6
	v	a	a	3.0	2.3	3.1			
한국	v	m	0.0	0.0	0.0	0.0		2.2	
룩셈부르크	v	a	a	a	0.6	0.6		8.2	0.0
멕시코								1.7	0.2
네덜란드	m	a	0.0	0.0	0.0	0.0		10.7	
	q	3.9	4.7	4.8	5.2	5.6	44.6		
뉴질랜드								4.7	
노르웨이	v	0.6	0.6	0.6	0.6	0.6	11.2	6.0	0.9
폴란드								11.8	0.0
포르투갈	v	0.3	0.3	0.4	0.6	0.5	64.5	12.8	0.1
슬로바키아	v	a	0.1	0.2	0.4	0.3		7.3	0.2
슬로베니아								10.9	
스페인								9.3	0.2
스웨덴	q/m	1.2	1.9	1.8	2.1	2.4	99.3	10.7	
스위스 ¹	m	3.2	4.9	5.8	6.0	5.8	84.3	12.1	
	v	0.0	0.0	0.0	0.0	a			
터키								6.8	
영국	v/m	4.3	5.2	6.1	4.8	4.6	6.7	10.8	1.4
미국	v	2.7	3.1	3.8	3.8	3.9	44.6	10.7	0.8
OECD		1.3	1.4	1.5	1.5	1.6	26.7	9.2	0.5

M=강제적 사적제도, q=준 강제적, v =자발적

1. 스위스 자료는 2009년 자료임.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 (SOCX);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database); 자료, 출처, 방법론에 관한 세부사항은 Adema and Ladaique (2009)참조.

6.6.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출처: Yoo and de Serres (200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908>

주요 결과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은 앞서 두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증가해왔다. 장기적 전망을 보면 연금 지출이 자료가 나와 있는 31개 회원국 중 28개국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평균적으로 연금 지출은 2010년 GDP의 9.3%에서 2050년 GDP의 1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지출 증가의 주요 이유는 인구학적 변화이다.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전망치는 EU의 고령화 보고서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작성- 또는 국가별 전망치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자료는 주로 2060년까지의 전망인데 여섯 개 국가는 2050년까지의 전망을 보여준다. 장기적 전망은 연금 정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연금 개혁 시기와 개혁이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 간에 격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망치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가별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국가가 많은 반면 일부는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전망에서는 연금 지급자를 위한 자산 조사적 급여에 대한 지출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료의 적용 범위는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X)와도 차이가 있는데, 앞의 두 지표에서 과거 지출 추이 자료는 바로 이 SOCX에서 발췌하였다. 2010년 수치는 SOCX 데이터베이스와 여기서 사용된 출처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 급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치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연금 지출은 2010년부터 2060년까지 OECD28과 EU27 모두 평균적으로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인데 각각 26%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국민 소득의 유의미한 부가적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증가속도는 인구학적 변화의 속도보다는 훨씬 느리다. 제 7장의 “노인 부양비” 지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연금수급연령 인구 수 대비 생산연령 인구 수는 절반으로 줄

어줄 전망이다. 이는 국민 소득 중 공적연금에 사용되는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증가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래의 은퇴자들에 대해 급여액을 삭감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높게 되면 공적연금 지출 증가세를 줄일 수 있다.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연금 지출은 앞으로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 두 국가만이 향후 지출의 상당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공적 소득비례 급여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강제적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유사한 개혁은 공적연금 지출의 증가세를 역전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개 국가에서는 연금 지출이 2010년에서 2060년 사이 두 배가 되거나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공적 지출이 이미 OECD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2060년까지 GDP의 18%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속도는 한국에서도 매우 빠르다. 그러나 낮은 기준에서 출발했고 연금 지출은 2060년에도 OECD 평균을 훨씬 밑돌 전망이다. 이렇게 빠른 증가세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도입되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도 한국 못지않게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2010년 GDP의 11.2%에서 2060년에는 18.3%가 될 전망이다.

연금 지출의 증가속도는 다섯 개 국가에서 평균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스위스, 영국은 출발점이 낮는데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 반면 벨기에와 노르웨이에서는 기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6.7.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 전망, 2010-60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OECD 회원국											
호주	3,6	3,6	3,7		4,3		4,7		4,9		
오스트리아	14,1	14,4	15,1	16,1	16,7	16,7	16,5	16,4	16,4	16,4	16,1
벨기에	11,0	11,9	13,1	14,5	15,5	16,2	16,5	16,7	16,7	16,8	16,6
캐나다	5,0	5,4	5,8	6,3	6,6	6,6	6,5	6,4	6,3	6,3	6,2
칠레											
체코	9,1	8,6	8,7	8,7	8,9	9,2	9,7	10,3	11,0	11,6	11,8
덴마크	10,1	10,4	10,8	10,6	10,7	10,5	10,3	10,0	9,6	9,5	9,5
에스토니아	8,9	7,8	7,7	7,9	8,2	8,1	8,1	8,1	8,0	8,0	7,7
핀란드	12,0	12,8	14,0	14,9	15,6	15,5	15,2	14,9	14,9	15,1	15,2
프랑스	14,6	14,4	14,4	14,5	14,9	15,2	15,2	15,2	15,1	15,1	15,1
독일	10,8	10,5	10,9	11,4	12,0	12,4	12,7	12,8	13,0	13,2	13,4
그리스	13,6	14,1	13,7	13,6	14,1	14,6	14,9	15,3	15,4	15,0	14,6
헝가리	11,9	11,9	11,5	11,4	11,1	11,4	12,1	12,8	13,5	14,2	14,7
아이슬란드	4,0								6,9		
아일랜드	7,5	8,3	9,0	9,0	9,0	9,4	10,0	10,6	11,4	11,7	11,7
이스라엘											
이탈리아	15,3	14,9	14,5	14,4	14,5	15,0	15,6	15,9	15,7	15,0	14,4
일본											
한국	0,9	1,1	1,4	2,0	2,5	3,1	3,9	4,8	5,5	6,0	6,5
룩셈부르크	9,2	9,9	10,8	12,4	14,0	15,4	16,5	17,6	18,1	18,7	18,6
멕시코	2,4								3,5		
네덜란드	6,8	6,8	7,4	8,3	9,1	10,0	10,4	10,5	10,4	10,4	10,4
뉴질랜드	4,7	4,8	5,3	5,9	6,7	7,3	7,7	7,8	8,0		
노르웨이	9,3	10,9	11,6	12,3	12,9	13,4	13,7	13,8	13,9	14,0	14,2
폴란드	11,8	10,7	10,9	11,1	10,9	10,6	10,3	10,1	10,0	9,9	9,6
포르투갈	12,5	13,3	13,5	13,4	13,2	13,1	13,1	13,2	13,1	12,9	12,7
슬로바키아	8,0	8,1	8,6	9,1	9,5	10,0	10,6	11,3	12,2	13,2	13,2
슬로베니아	11,2	11,8	12,2	12,5	13,3	14,5	15,8	16,9	17,9	18,3	18,3
스페인	10,1	10,4	10,6	10,5	10,6	11,3	12,3	13,3	14,0	14,0	13,7
스웨덴	9,6	9,7	9,6	9,8	10,1	10,2	10,2	9,9	9,9	10,1	10,2
스위스	6,3	6,6	6,8	7,5	8,1	8,6	8,6	8,8	8,6		
터키	7,3								11,4		
영국	7,7	7,4	7,0	7,3	7,7	8,0	8,2	8,0	8,2	8,7	9,2
미국	4,6	4,8	4,9	4,9	4,9	4,9	4,8	4,8	4,8	4,7	4,7
OECD28	9,3	9,5	9,8		10,6		11,2		11,7		
기타 주요 경제국											
아르헨티나	5,9								8,6		
브라질	8,5								15,8		
중국	2,2								2,6		
인도	1,7								0,9		
인도네시아	0,9								2,1		
러시아 연방	7,1	8,5	8,9	9,0	9,0	8,7	8,4	8,0	7,5	7,2	6,9
사우디아라비아	2,2								7,1		
남아공	1,3	1,7	1,8	1,8	1,7	1,6	1,6	1,5	1,5	1,5	1,4
EU27	10,8	10,9	11,1	11,5	11,9	12,3	12,6	12,9	13,1	13,2	13,2

주: OECD28은 2010년에서 2050년 사이의 완전한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국가들을 의미한다. EU27은 회원국들의 단순 평균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장 평균 아님)이다. 공무원 및 기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제도는 EU 회원국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정값에 포함되어 있다. European Commission, The 2012 Ageing Report 참조.

캐나다, 일본, 남아공, 미국은 이들 제도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별도의 자산조사적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나와 있지 않는데 미국과 European Commission, op.cit에서 명시한 일부 EU 회원국들이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료도 소득비례제도는 포함하고 있으나 기초(자산 조사적) 연금은 제외되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2), The 2012 Ageing Report;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0),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Canada: Calculations provided by the Office of the Chief Actuary,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Korea: National Pensions Research Institute; Russian Federation: World Bank staff estimates; South Africa: OECD Secretariat estimates assuming a universalised basic pension;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0),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Document 111-137, House of Representatives, United States; Argentina, Brazil, China, Iceland, India, Indonesia, Mexico, Saudi Arabia, Turkey: Standard and Poor's (2010), Global Aging 2010: An Irreversible Tru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927>

제 7 장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측면

인구고령화는 지난 20년간의 연금 정책과 개혁에 대한 주된 동인이었다. 고령화는 두가지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이다.

첫번째는 출생아 수의 감소이다. 본 섹션의 첫번째 지표를 통해 출산율과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추세에 대해 간단히 논의를 포함한다. 두번째는 기대수명의 증가이다. 기대수명의 변화 - 출생 시 및 65세 기준 -를 제시하도록 한다. 앞으로 기대수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의하도록 한다.

인구 고령화 그 자체는 세번째 지표에서 다룬다. 고령화의 정도는 부양비로 측정하는데, 연금 수급연령자 수 대비 생산연령인구 수이다. 노인 부양비는 한 세기에 대해 제시한다. 즉, 1960년의 과거자료와 2060년까지의 전망치를 사용한다.

마지막 지표는 경제적 맥락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2012년 기준 OECD “평균 근로자” 측정 지표를 사용해 산출한 평균 소득 자료를 제시한다. 이 자료는 보고서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연금 수급액에 대한 결과와 여러 파라미터의 값을 국가 평균 소득 중 비율로 표현한다.

또한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도 제시한다. 연금 수급액 지표는 중위 소득, 즉 인구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에 대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금 패키지의 구성, 연금 누적성, 연금 수준과 연금 자산의 가중치 평균 지표를 산정할 때 소득 분포 자료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

합계 출산율은 2010-15년 34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대체 수준 - 총 인구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아동의 수 - 을 밑돌고 있다. 예외는 이스라엘로 대체율이 2.9이며 멕시코는 2.2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3분의 2는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다소 상승해왔다. 출산율은 연금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출산율이 기대수명과 함께 인구 고령화의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2010-15년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은 평균 1.74로 인구 대체를 보장하는 수준을 밑돌고 있다.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는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다. 출산율 감소는 개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적절한 주거 확보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벽찬 양육비 등 일상 생활의 제약사항에 의한 것이다.

여성이 낳고 싶어하는 아이의 숫자와 실제로 낳는 숫자 간의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이러한 제약사항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영향은 결혼 상태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미혼 여성의 비중이 높아져서 출산율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특히 일본과 한국 등 결혼과 출산 간 상관관계가 강한 국가들이 그렇다. 상관관계는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현재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혼외자이다. OECD 국가에서 평균 혼외 출생 비율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이다.

최근의 출산율 상승은 5년마다 0.03만큼 증가하므로 매우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될 전망이다. 2060-65년까지 OECD 국가에서 평균 1.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출산율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첫째, 인구 감소는 가입연령 여성 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둘째, 고령의 가족을 도와줄 가족구성원의 수가 줄어든다. 셋째,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 인구가 지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넷째, 근로인력 역시 고령화되므로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생산성이 줄고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소비를 위해 저축을 사용하게 되므로 경제 전반의 투자를 뒷받침할 저축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기타 주요 경제국 중에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이 모두 현재 대체율을 훌쩍 뛰어넘는 2.1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추세는 OECD 국가를 따라가고 있어 2030-35년까지 대체율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와 측정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있고 매 연령에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과 일치한다면 이 여성이 출산하게 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산정한다. 이주가 없고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합계출산율이 여성 1명당 자녀 2.1명이면 인구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참고문헌

D'Addio, A.C. and M. Mira d'Ercol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880242325663>.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08-en.

7.1. 합계출산율, 1980-2065

	1980-85	1990-95	2000-05	2010-15	2020-25	2030-35	2040-45	2050-55	2060-65
OECD 회원국									
호주	1.91	1.86	1.75	1.88	1.87	1.86	1.86	1.86	1.86
오스트리아	1.60	1.48	1.38	1.47	1.57	1.66	1.71	1.76	1.79
벨기에	1.60	1.61	1.68	1.85	1.89	1.91	1.93	1.94	1.95
캐나다	1.63	1.69	1.52	1.66	1.74	1.79	1.82	1.84	1.86
칠레	2.67	2.55	2.00	1.83	1.77	1.77	1.79	1.80	1.82
체코	2.01	1.66	1.19	1.55	1.71	1.80	1.86	1.89	1.91
덴마크	1.43	1.75	1.76	1.88	1.91	1.92	1.93	1.94	1.95
에스토니아	2.09	1.63	1.39	1.59	1.71	1.79	1.84	1.86	1.88
핀란드	1.69	1.82	1.75	1.85	1.87	1.88	1.89	1.89	1.90
프랑스	1.87	1.72	1.88	1.98	1.98	1.99	1.99	1.99	1.99
독일	1.46	1.30	1.35	1.42	1.50	1.57	1.62	1.66	1.69
그리스	1.96	1.37	1.28	1.52	1.61	1.69	1.74	1.78	1.80
헝가리	1.82	1.74	1.30	1.41	1.53	1.62	1.69	1.74	1.77
아이슬란드	2.23	2.19	1.99	2.08	2.00	1.93	1.90	1.88	1.87
아일랜드	2.76	1.91	1.97	2.00	1.99	1.98	1.98	1.97	1.97
이스라엘	3.13	2.93	2.91	2.91	2.69	2.49	2.33	2.19	2.08
이탈리아	1.54	1.28	1.25	1.48	1.61	1.70	1.76	1.80	1.83
일본	1.75	1.48	1.30	1.41	1.54	1.63	1.69	1.74	1.78
한국	2.23	1.70	1.22	1.32	1.46	1.57	1.65	1.71	1.75
룩셈부르크	1.47	1.66	1.65	1.67	1.74	1.78	1.82	1.84	1.85
멕시코	4.25	3.16	2.54	2.20	1.94	1.80	1.74	1.74	1.76
네덜란드	1.52	1.58	1.73	1.77	1.81	1.84	1.86	1.87	1.88
뉴질랜드	1.97	2.07	1.95	2.05	1.94	1.88	1.84	1.83	1.83
노르웨이	1.69	1.89	1.81	1.93	1.93	1.94	1.94	1.94	1.94
폴란드	2.33	1.89	1.27	1.41	1.53	1.62	1.69	1.74	1.77
포르투갈	2.01	1.51	1.45	1.32	1.38	1.49	1.58	1.65	1.71
슬로바키아	2.27	1.87	1.22	1.39	1.52	1.61	1.68	1.73	1.77
슬로베니아	1.87	1.36	1.23	1.50	1.60	1.68	1.73	1.77	1.80
스페인	1.88	1.28	1.29	1.50	1.63	1.71	1.77	1.81	1.83
스웨덴	1.64	2.01	1.67	1.92	1.95	1.97	1.98	1.99	1.99
스위스	1.54	1.54	1.41	1.53	1.62	1.69	1.74	1.77	1.80
터키	4.07	2.87	2.33	2.05	1.89	1.80	1.76	1.75	1.77
영국	1.78	1.78	1.66	1.89	1.89	1.90	1.90	1.90	1.90
미국	1.80	2.03	2.04	1.97	1.98	1.98	1.99	1.99	1.99
OECD28	2.04	1.83	1.65	1.74	1.77	1.80	1.82	1.85	1.85
기타 주요 경제국									
아르헨티나	3.15	2.90	2.35	2.18	2.06	1.97	1.91	1.88	1.86
브라질	3.80	2.60	2.25	1.82	1.71	1.68	1.69	1.72	1.75
중국	2.69	2.05	1.55	1.66	1.72	1.76	1.80	1.82	1.84
인도	4.47	3.67	3.00	2.50	2.25	2.08	1.96	1.88	1.85
인도네시아	4.11	2.90	2.48	2.35	2.12	1.98	1.89	1.85	1.84
러시아 연방	2.04	1.55	1.30	1.53	1.66	1.74	1.79	1.83	1.85
사우디아라비아	7.02	5.45	3.54	2.68	2.24	1.98	1.82	1.75	1.73
남아공	4.56	3.34	2.80	2.40	2.18	2.01	1.91	1.85	1.82
EU27	1.94	1.67	1.46	1.60	1.68	1.74	1.79	1.82	1.84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946>

주요 결과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증가는 지난 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였다.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0-15년,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자는 77.2세, 여자는 82.7세였다. 여자들 중에서는 일본의 수명이 가장 길었고 (86.9세)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남자는 아이슬란드의 출생 시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고 (80.2세) 호주와 스위스, 일본,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랐다.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연금제도의 재정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연로한 사람일수록 이전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있다. 2010-15년,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65세 여성이 추가로 20.8년을 더 사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2060-65년까지 25.8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연령의 남자는 2010-15년에는 17.4년을 더 살고 2060-65년까지 4.5년이 늘어나 21.9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인구 기대수명의 남녀간 격차는 상대적 기준으로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겠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국가 평균 3.4년에서 3.9년).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하면 65세부터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20%의 비용을 더 발생시키게 된다.

고령인구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간 차이가 크다. 일본 여성들은 2060-65년에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29.7년을 더 살게 된다. 반면 슬로바키아 여성들은 2060-65년에 65세에 도달하면 이후 21.9년을 더 살게 된다. 일본과 한국의 수치(29.5)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으며 프랑스가 29.2년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는 국가별 편차가 작았다. 일본은 2060-65년 65세 시점에 24.1년을 더 살게 되어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고 한국이 23.8년으로 그 뒤를 이었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는 65세 남성의 기대수명이 17.5년으로 가장 짧았다.

65세 시점의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2060-65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이 3-5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는 프랑스와 일본, 한국이었는데 격차가 거의 6년에 달했고 멕시코와 영국은 격차가 2년으로 작았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연금수급 연령을 이미 높였거나 앞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부분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11의 제 1장 “연금 연령과 기대수명”을 참조한다. 그 외 다른 국가에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준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요소를 연금제도에 도입했다. 이 부분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11의 제 5장 “연금을 기대수명에 연계”를 참조한다.

집작하다시피 출생 시 기대수명도 일본에서 가장 높다. 2010-2015년 여자가 86.9년이고 OECD 평균은 82.7

년이다. 남자의 경우 일본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를 기록했지만 80.0년으로 아이슬란드 (80.2), 호주 (80.1), 스위스 (80.1)보다는 짧았다.

전반적인 기대수명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쉬워진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우 그 폭이 작았다. 사망률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생산연령 인구에 비해 연금수급연령 (65세 이상)에서 낮았다.

비 OECD 주요 경제국들을 살펴보면 기대수명이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보다 낮았다. 남아공은 출생 시 기대수명이 여자 59.1세, 남자 54.9세였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이 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자는 최소한 9년, 남자는 7년 짧은 것인데 HIV/AIDS의 만연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역시 출생 시 기대수명의 남녀간 격차가 12.7년에 달해 두드러졌으며 OECD 평균은 5.5년이었다.

정의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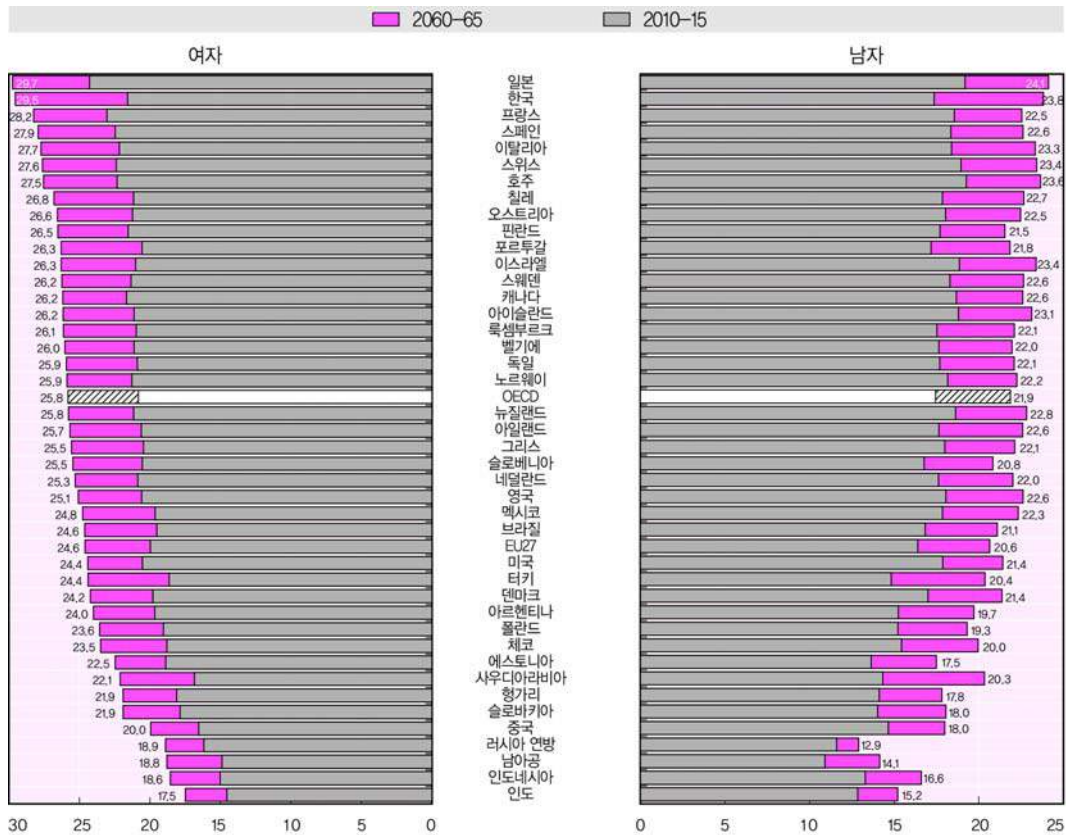
기대수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들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사망률을 경험할 경우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연수로 정의된다. 이 경우는 2010-15년, 2060-6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대수명의 결정요소는 서서히 변하므로 기대수명은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고문헌

Whitehouse, E.R. (2007), “Life-Expectancy Risk and Pensions: Who Bears the Burd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60,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060025254440>.

Whitehouse, E.R. and A. Zaidi (2008),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Implications for Pension Policy”,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7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231747416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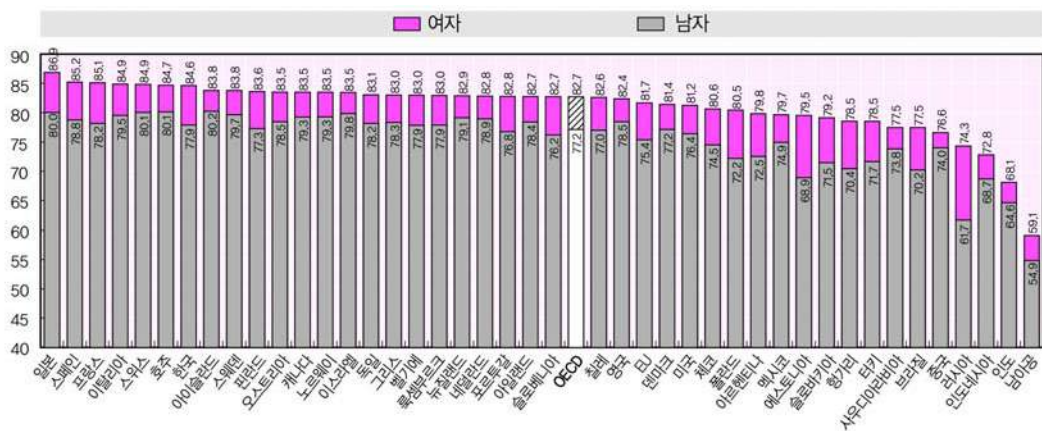
7.2. 65세의 추가적인 기대수명 (년), 남자와 여자, 2010-15년과 2060-65년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965>

7.3. 출생 시 기대수명 (년), 남자와 여자, 2010-15년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7984>

주요 결과

인구고령화는 최근 수년간 있었던 일련의 연금 개혁을 일으킨 주요 동인 중 하나이다. 노인 부양비는 인구학적 요소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제기하는 압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노인 부양비는 은퇴 연령자(65세 이상) 수 대비 생산연령자(20-64세) 수를 측정한다. 현재 평균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자 한 명당 생산연령자는 네 명에 약간 못 미친다.

OECD 국가들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평균 부양비가 6.4에서 5.1로 줄었다. 그러나 좀더 최근에는 감소 속도가 둔화되어 5.1에서 3.9로 줄어드는 데에는 32년이 걸렸다. 2012년부터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까지 부양비는 3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더욱 감소해 1.9가 될 전망이다.

2012년, 인구학적으로 가장 늙은 OECD 국가는 일본으로 부양비가 2.4에 불과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부양비가 3.0 미만이었다.

가장 젊은 국가는 멕시코와 터키로 부양비가 각각 8.8과 8.0이었고 그 뒤를 6.3의 칠레가 이었다. 다섯 개 영어사용 회원국 중 네 곳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은 모두 비교적 유리한 인구학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부양비는 4.2에서 5.2사이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근로자의 유입 때문이며, 아일랜드와 미국은 현재 출산율이 대체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이다. 그 외에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도 부양비가 각각 5.2와 4.6으로 비교적 젊은 국가들이다.

부양비의 변화는 사망률, 출산율, 이주에 달려 있다. 앞서 두 개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회원국들은 기대 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를 목격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연금 수급자의 수 역시 늘어난다.

그 외에 출산율도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당연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 수를 줄어든다. 이미 태어난 아기들의 수는 파악이 되므로 향후 20년간 생산연령에 도달하는 사람 수의 변화 척도는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을 전후 해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대체수준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새로운 세대가 그 부모 세대보다 수가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00년까지 출생아 수를 통해 “밀레니엄 베이비” 집단이 부모 세대보다 20-25% 정도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OECD 전체적으로는 부양비의 감소가 앞으로 상당히 꾸준한 속도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구학적으로 젊은 국가들이 좀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

어 OECD 국가 간에 상당한 수렴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는 한국이다. 부양비는 2012년의 5.6에서 2060년까지 1.3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OECD에서 네번째로 젊은 국가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학적으로 젊은 다른 OECD 국가들 - 칠레, 멕시코, 터키 역시 비교적 빠르게 고령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2060년까지 가장 젊은 OECD 국가로 남아있을텐데 멕시코의 부양비는 2.3, 터키는 2.2가 될 전망이다. 칠레의 부양비는 2060년 1.8로 감소함으로써 칠레는 34개 OECD 국가 중 24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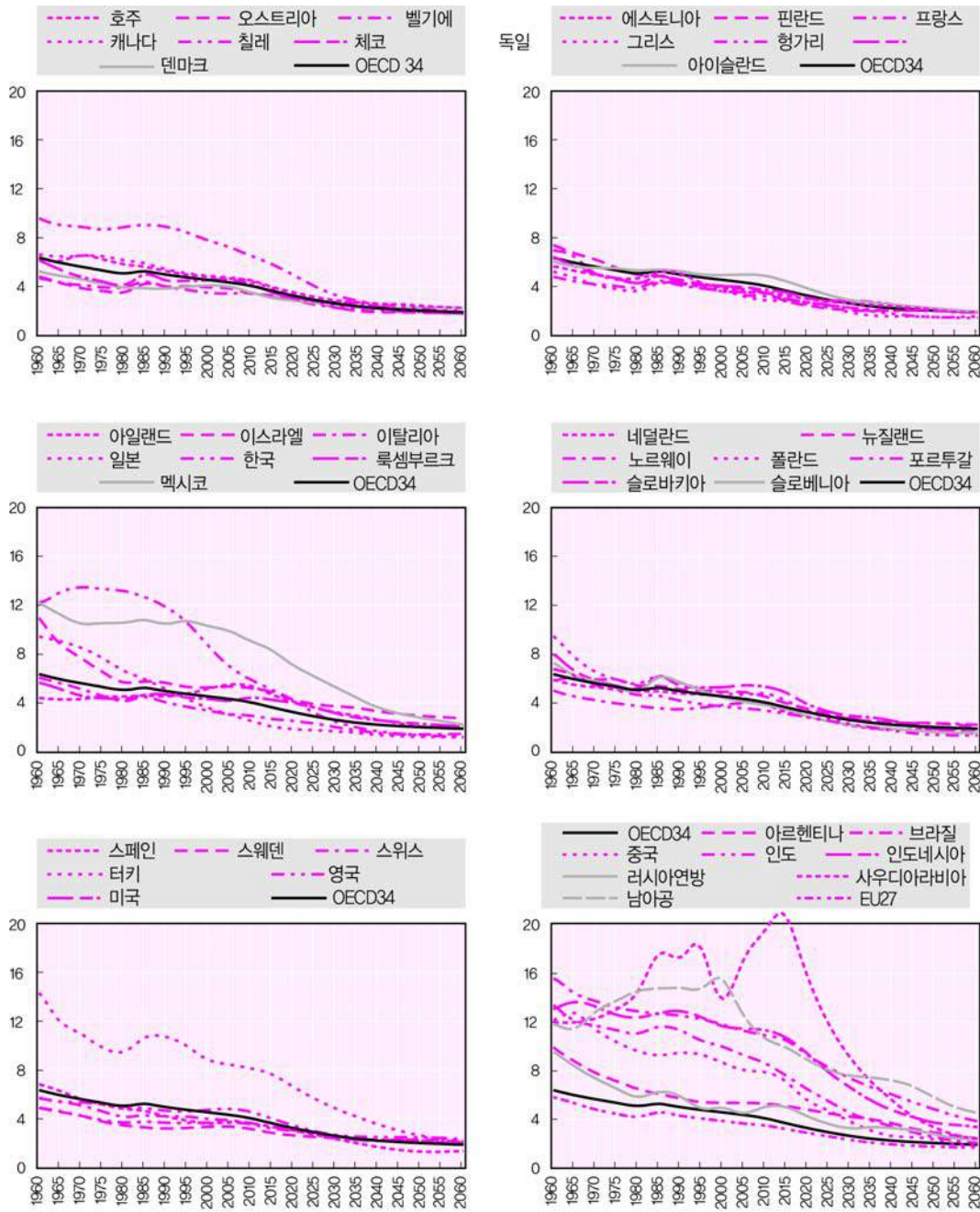
EU 27개국의 양상은 대체로 OECD 평균을 따르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더욱 고령화되어 있다. 2012년 EU27개국의 부양비는 3.4이고 OECD의 부양비는 3.9였다. 2060년까지 EU의 부양비는 1.7에 불과하게 된다.

다른 주요 경제국들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부양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향후 수십년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맞게 된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중국은 부양비가 현재의 8에서 2060년에는 각각 2.1과 1.9로 떨어진다. 예측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남아공만이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인구학적으로 젊은 국가가 되는데 부양비는 4.5이고 3.8의 인도가 그 뒤를 따른다.


정의와 측정

여기에서 사용된 노인부양비 전망은 가장 최근의 “중간 - 변동 (medium-variant)” 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에서 발췌했다.

7.4. 노인부양비: 과거 및 예측 값, 1960-2060



출처: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2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003>

주요 결과

“평균 소득”은 연금 모형화의 결과와 시스템 파라미터 표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소득의 분포는 연금제도의 누진성, 연금 패키지의 구조, 가중치 평균 등 종합적인 지표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표 7.5는 2012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 지표에 따른 평균 소득 수준을 보여준다. 소득은 모든 종류(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공제 전 총 임금으로 정의되며 종업원에게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및 기타 현금성 보충 소득은 포함된다.

평균 소득은 각국의 통화 및 미 달러로 나타나 있다 (시장 환율과 구매력평가지수). 구매력평가지수 환율은 달러의 구매력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한다. 즉, 국가별로 한 바구니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는 정기적으로 구매력평가지수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빅맥” 지수를 내놓는데 빅맥 햄버거가 전세계 곳곳에서 얼마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각국의 통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www.economist.com/content/big-mac-index 참조).

OECD 국가의 소득은 2012년 시장 환율로 평균 미화 42,700달러였다. 구매력평가지수로는 36,500달러였다. 구매력평가지수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적은 것은 많은 OECD 국가의 대 달러 환율이 일정한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균등화하는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요 경제국의 평균 소득은 평균 근로자 소득이나 다른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며 이러한 일련의 자료는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는 국가별 출처로부터 수집되었으므로 평균 개인 소득, 평균 대상 임금, 자료가 나타나 있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평균 임금 간에 차이가 있다.

평균 및 중위 소득

이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 대부분은 평균 소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핵심 지표 중 상당수가 “중위” 소득, 즉 근로자 소득의 절반 수준을 사용해 제시되기도 했다. 표는 또한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중위 소득을 평균 소득 중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간 차이가 상당하며 터키와 멕시코의 광범위한 소득 분포는 중위 소득이 평균 소득의 약 5분의 3 정도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중위 소득이 평균의 무려 90%, 아이슬란드는 95.5%에 달했다.

표에서는 또한 소득 분포의 위쪽과 아래쪽 끝도 보여준다. 소득 최저 십분위 (10%의 근로자가 이 수준 미만의 소득을 올림)의 경우, OECD 29의 평균은 평균 소득의 50%에 약간 못 미치는데 이 수준은 주요 지표에서 “저소득자”의 경우로 사용된다. 상위 십분위 -10%의 근로자가 이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림 -는 OECD29에서 평균 166%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고소득자”는 평균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정의와 측정

“평균 근로자(AW)” 시리즈는 한눈에 보는 연금 두번째 판 (OECD, 2007)부터 채택되었다. 이 개념은 이전에 사용하던 “평균 제조업 근로자(APW)” 기준보다 광범위한데 AW가 더 많은 경제 부문을 포괄하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근로자를 둘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AW 지표는 OECD 보고서인 *Taxing Wages*에서 도입되었으며 혜택 및 임금(Benefits and Wages)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연금 세번째 판 (OECD, 2009) 역시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8개국에 대해 소득의 신규 지표에 따른 대체율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D’Addio, A.C. and H. Immervoll (2010), “Earnings of Men and Women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Enriched Data for Pensions and Tax-Benefit Modell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m7smt2r7d2-en>.

Gandullia, L., N. Iacobone and A. Thomas (2012), “Modelling the Tax Burden on Labour Income in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and South Africa”,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 1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8x9b1sw437-en>.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9-en.

OECD (2007), *Pensions at a Glance 2007: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07-en.

7.5. 평균 근로자 소득(AW)과 소득 분포의 포인트, 2012


시장 가격 및 구매력평가지수 환율 기준의 국가별 통화 및 미 달러

	OECD 평균 소득 지표			미 달러 환율		소득 분포의 포인트 (평균 소득 중 비율)		
	국가별 통화	미 달러, 시장 환율	미 달러, 구매력 평가지수	시장 환율	구매력평가 지수	최저 십분위	중위	최고 십분위
OECD 회원국								
호주	73 500	76 400	48 100	0,96	1,53	49,5	83,3	167,5
오스트리아	40 900	53 900	47 800	0,76	0,85	48,1	82,7	164,0
벨기에	46 100	60 700	51 800	0,76	0,89	60,4	84,5	153,4
캐나다	46 900	47 000	38 300	1,00	1,22	44,6	89,1	166,9
칠레	6 218 600	13 000	15 400	478,90	403,24			
체코	300 400	15 800	21 400	19,03	14,02	49,3	85,2	153,1
덴마크	392 500	69 400	45 500	5,66	8,62	60,9	89,0	150,4
에스토니아	11 000	14 400	19 900	0,76	0,55			
핀란드	41 500	54 700	43 800	0,76	0,95	62,3	89,5	147,9
프랑스	36 700	48 400	40 500	0,76	0,91	55,1	81,2	159,5
독일	44 800	59 100	53 200	0,76	0,84	43,4	87,0	165,7
그리스	20 100	26 500	28 100	0,76	0,72	42,8	68,0	147,7
헝가리	2 749 600	12 500	19 000	220,84	144,57	37,8	74,3	176,0
아이슬란드	6 079	000 47	300 42	900	128,40	141,64	95,5	
아일랜드	32 600	43 000	35 700	0,76	0,92	45,2	82,7	169,0
이스라엘	119 900	32 100	31 100	3,73	3,85			
이탈리아	28 900	38 100	32 800	0,76	0,88	56,1	85,1	156,6
일본	4 788 300	55 300	45 300	86,58	105,66	52,4	87,6	162,7
한국	38 500 000	36 100	47 800	1 065,31	804,96	39,9	81,7	181,7
룩셈부르크	51 300	67 700	51 800	0,76	0,99	48,9	77,9	167,3
멕시코	94 100	7 300	10 600	12,96	8,91	27,4	62,2	216,7
네덜란드	46 400	61 200	54 400	0,76	0,85	51,7	84,0	158,8
뉴질랜드	51 300	42 400	31 600	1,21	1,62	51,2	87,2	160,6
노르웨이	510 700	91 800	49 900	5,56	10,23	63,2	88,9	149,0
폴란드	38 900	12 600	19 500	3,09	1,99	39,2	80,3	169,3
포르투갈	15 700	20 700	22 500	0,76	0,70	40,9	69,3	189,2
슬로바키아	9 800	12 900	17 400	0,76	0,57	45,1	78,7	163,5
슬로베니아	17 200	22 700	26 800	0,76	0,64			
스페인	25 600	33 700	33 900	0,76	0,76	52,3	78,2	171,2
스웨덴	387 300	59 500	40 500	6,51	9,55	56,0	89,8	150,9
스위스	86 900	94 900	51 400	0,92	1,69	56,6	84,9	153,4
터키	27 500	15 400	21 700	1,79	1,27	42,0	55,2	203,7
영국	35 900	58 300	53 600	0,62	0,67	39,6	75,5	165,9
미국	47 600	47 600	47 600	1,00	1,00	36,7	77,1	177,6
OECD 34		42 700	36 500			48,2	81,2	166,2
기타 주요 경제국 (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최근 연도)								
아르헨티나	53 600	10 900	17 500	4,92	3,07			
브라질	21 000	10 200	12 200	2,05	1,72			
중국	46 800	7 500	12 000	6,23	3,91			
인도	240 400	4 400	13 100	54,85	18,29			
인도네시아	16 100 000	1 600	2 500	9 799,95	6 533,33			
러시아 연방	321 900	10 500	14 800	30,53	21,82			
사우디아라비아	172 500	46 000	61 900	3,75	2,79			
남아공	135 600	16 000	23 800	8,49	5,69			
EU27	35 100	33 000						

주: 평균소득은 100단위로 반올림했으며 환율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했다.

PPP=구매력평가지수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D'Addio and Immervoll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022>

제 8 장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의 지표 범위는 한눈에 보는 연금 지난 번 판(제4판)의 형식을 따른다. 이 여덟 개 지표 중 첫번째 지표는 사적연계에 가입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다. 여기에서는 강제적, 준 강제적, 자발적 제도를 구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직장별 제도와 업계 차원의 제도로 구분하며 개인이 연금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눈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제도적 구조를 그 다음에 살펴본다. 이는 연금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의 유형을 보여주는데 연기금, 장부 적립금(book reserves), 보험 계약을 구분한다. 이 지표는 또한 연금의 유형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DC), 하이브리드 형으로 나눠서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연금 격차의 분석이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은퇴 후 특정한 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 사적연계에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네번째 지표는 2011년의 사적연금 자산과 공적연금 자산을 보여준다. 이들 자산이 투자된 방식은 다섯번째 지표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2010년과 2011년의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적립금의 투자 성과 분석이 나온다.

일곱번째 지표는 사적연금제도의 운영비와 선정된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연금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살펴본다.

마지막 지표는 확정급여형(DB) 적립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데 2010년과 2011년 비율이 제시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급여액이 줄어들면서 최근 수년간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8개 OECD 국가에서 사적연금은 강제적 또는 준 강제적 제도이다(즉, 단체협상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준 보편적 가입을 달성). 그 외 8개 OECD 국가에서는 자발적 사적연금(퇴직 및 개인)에 생산연령 인구의 40% 이상이 가입해 있다.

34개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강제적 또는 준 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두어 생산연령 인구의 높은 가입률을 달성하고 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퇴직연금이 강제적이며 생산연령 인구의 거의 70% 또는 그 이상이 이에 가입해 있다. 고용주는 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기여율은 정부에서 정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입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생산연령 인구의 84.8%에 달한다. 다른 퇴직연금제도는 준 강제적 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주는 업체차원 또는 국가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종업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모든 업종의 산업체가 이러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제도는 강제적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의 퇴직연금제도가 좋은 예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입율이 강제 제도를 가진 국가의 가입율에 가까우며 대상이 되는 생산연령 인구의 60% 이상이 가입해 있다.

남미와 중부유럽, 동부 유럽에서는 강제적 개인계정 제도가 널리 이용되며 부분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이러한 강제적 개인연금 제도를 갖춘 OECD 국가로는 덴마크, 이스라엘, 스웨덴이 있다.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웨덴에서는 거의 보편적 가입에 가까운 반면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서 고령 근로자들은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재 40-60% 정도의 가입율은 새로운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비공식 고용의 빈도가 높아 가입률 수준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헝가리에서는 2010년 말 정부가 실질적으로 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폐쇄할 것을 결정한 이후 소수의 사람들이 그 제도에 잔류해 있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들 제도가 자발적 제도라고 불리는 것은, 고용주들이, 일부 국가에서는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제도는 개인이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발적 연금제도의 가입율(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둘 다)이 체코와 뉴질랜드에서는 50% 이상, 미국에서는 50%에 가깝다. 한편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율이 매우 낮다(5% 미만). 이들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이 관대하기 때문에 사적연금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적연금의 가입율은 강제적 사적연금제도가 있는 멕시코(1.9%), 폴란드(1.3%)에서도 낮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은 자동가입요소(탈퇴 조항 삽입)를 국가 차원의 사적연금제도에 도입했다. 결과는 국가마다 다르다. 뉴질랜드는 새로운 “키위세이버” 제도 가입율 64%를 달성했다(2007년 도입).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부터 민간부문 근로자의 퇴직연금(TFR(Trattamento di Fine Rapporto)라고도 함)이 본인이 TFR 제도에 남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납부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생산연령 인구 중 자발적 연금 제도 가입율은 14%에 불과하다. 영국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자동가입의 성공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정의와 측정

사적연금 적용범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측정지표들이 공존한다. 개인은 사적연금제도에 자산을 갖고 있거나, 사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이들의 이름으로 기여금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 사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한한 관점에서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려면 제도에 자산을 갖고 있거나 발생한 급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실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들의 이름으로 기여금이 1년간 납부되지 않고 있는 개인의 경우라도 연금에 자산이 있거나 발생한 급여를 갖고 있다면 제도의 가입자로 간주된다. 두 가지 가입율 지표 간에 차이가 큰 경우는 비공식 부문의 규모가 큰 국가에서 발생한다.

동일인이 퇴직연금에도 가입해 있으면서 동시에 자발적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행정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입자 수를 중복해서 계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 자발적 연금제도 가입율은 퇴직연금자료와 개인연금자료를 합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생산연령 인구의 41.6%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있으며 22.0%는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발적 연금 가입율은 47.1%이다. 이는 퇴직연금가입자의 40%가 개인연금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8.1. 제도 유형 별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율, 2011

생산연령인구 중 비율(15-64세)

	강제적/준 강제적	자발적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계
호주	68,5	×	19,9	19,9
오스트리아	×	19,6	18,0	..
벨기에	×	45,2
캐나다	×	33,4	32,8	..
칠레	75,6
체코	×	×	62,1	62,1
덴마크	ATP: 83,7 QMO: 61,9	×	23,6	23,6
에스토니아	68,9	×
핀란드	74,2	6,4	19,1	254
프랑스	×	16,5	5,4	..
독일	×	56,4	35,2	71,3
그리스	×	0,2
헝가리	1,5	×	20,0	20,0
아이슬란드	84,8	×	41,9	41,9
아일랜드	×	31,0	12,0	41,3
이스라엘	81,8	×	×	×
이탈리아	×	7,5	6,9	14,0
일본
한국	12,2	×	23,4	23,4
룩셈부르크	×	3,0
멕시코	59,5	1,9	×	1,9
네덜란드	88,0	×	28,3	28,3
뉴질랜드	×	7,9	63,7	..
노르웨이	68,1	..	23,2	..
폴란드	56,5	1,3
포르투갈	×	3,3	5,1	..
슬로바키아	44,4	×
슬로베니아	×	38,2
스페인	×	3,3	15,7	18,6
스웨덴	PPS: ~100 QMO: ~90	×	27,1	27,1
스위스	70,5	×
터키	0,9	0,2	4,7	..
영국	×	30,0	11,1	43,3
미국	×	41,6	22,0	47,1

주: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가입율은 전체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에 대한 것이다. 독일은 사회보험기여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입율이며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전체 고용에 대한 가입율이다.

PPS=프리미엄 연금제도, QMO=준강제적 퇴직연금, ..=자료없음, X = 해당없음.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estimates and OECD calculations using survey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041>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 2011년,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사적연금자산의 76%를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19%는 생명보험사와 연금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연금보험계약이 보유하고 1%는 장부 유보금(book reserves)이었다.

연기금 내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확정급여형(DB) 제도가 연기금자산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일부국가에서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비중이 여전히 큰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퇴직(직장) 연금에 대해 확정급여형(DB)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기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연금보험계약의 역할이 더 큰 국가들이나 장부 유보금 -고용주의 대차대조표를 뒷받침(sponsor)하는 유보금이 주된 재정확보 수단이 되는 국가들은 제외된다. 개인연금제도는 연금보험계약이나 은행과 자산관리자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의 주된 예외는 칠레,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 수립되어 있는 강제적 개인연금 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자산 축적 단계(은퇴 전)에 연기금을 통해서만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은퇴 시 축적된 자산은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어(또는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연금 전환) 연금보험상품으로 분류된다.

2011년,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OECD 사적연금 시장의 76%를 연기금이, 19%를 생명보험사 및 연금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보험계약이, 4%를 은행이나 투자관리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상품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1%는 장부 유보금이었다.

연금 급여 산정 방식과 내재적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 제도는 성격상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는 가입자들이 리스크를 지는 반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리스크의 대부분을 진다. 일부 국가의 고용주들은 혼합형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도입했는데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에 일정 수준의 리스크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같은 국가의 조건부 연계 제도에서는 급여수준(전체이전 부분이전)은 기금의 지불가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 잔액제도(Cash balance plan) (또 다른 유형의 혼합형 확정급여형(DB) 제도)는 고정 기여율과 보장 수익률(고용주가 보증하므로 확정급여형(DB)으로 분류)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는 벨기에(법적으로 고용주가 최저 수익률 보증을 제공해야 함)와 독일, 일본, 미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혼합형 제도는 확

정급여형(DB) 요소와 확정기여형(DC)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요소는 한 제도의 일부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은퇴 전의 특정 연령까지는 확정기여형(DC) 산식에 따라 급여를 산출하며 이후에는 확정급여형(DB) 산식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처럼 보장된 급여액이나 수익률을 제공하며 리스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지는 확정기여형(DC) 제도도 있다. 이들은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되는데 재원이 부족할 경우 고용주에게 상환 청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확정급여형(DB) 제도와 유사하게 미래 급여액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퇴직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확정급여형(DB)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퇴직연금제도의 스폰서들이 확정기여형(DC)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규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DB) 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며 어떤 경우에는 기존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지급도 동결)하는 고용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 제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퇴직(직장)연금제도로서 확정급여형(DB)이 선호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확정급여형(DB) 자산은 캐나다, 핀란드, 독일, 한국,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미국 등 공적 부문의 연기금이 확정급여형(DB)을 고수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연기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으로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는 모든 연기금이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된다. 그 외 OECD에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비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의와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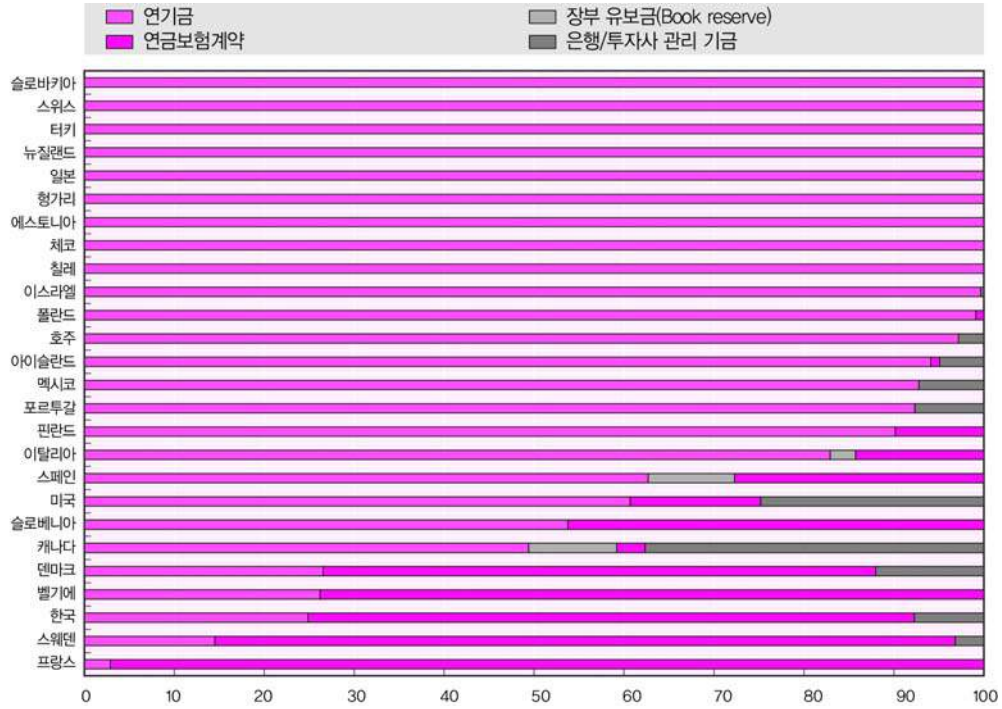
OECD는 연금 분류를 위한 일련의 지침을 수립했으며(OECD, 2005 참조) 분석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자료는 연기금에 대해 나와 있다. 한편 연금보험계약이나 은행 또는 투자관리사의 퇴직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국가에서 수집, 보고하고 있지 않다. 제도 스폰서가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자산의 법적 분리 없이) 연금 제공(pension provision)을 의미하는 장부 유보금(book reserves) 정보도 몇몇 국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 그러므로 제도 유형별 구분은 연기금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OECD (2005), *Private Pensions: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017009-en-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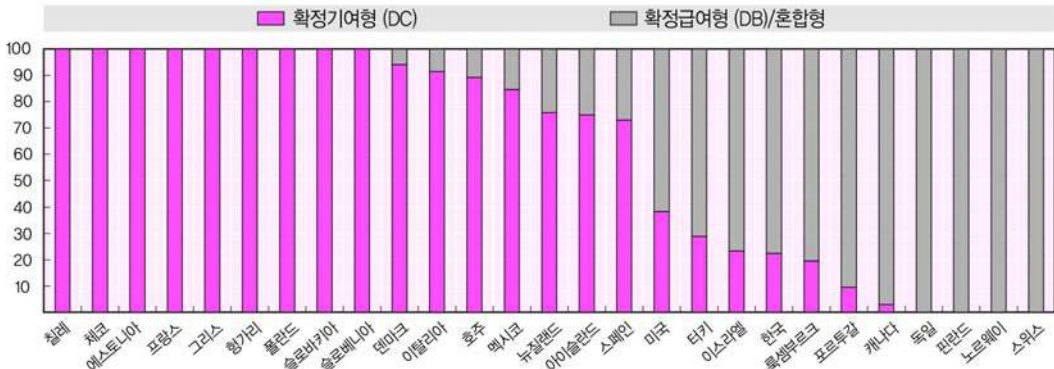
8.2. 선별된 OECD 국가에서 재원확보 수단별 사적연금자산, 2011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060>

8.3. 일부 OECD 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 연기금 자산의 상대적 비율, 2011
총 자산 중 비율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079>

주요 결과

OECD 34개 회원국 중 의무 연금 제도의 대체율이 평균 미만인 국가가 17개국이다. 이러한 연금 격차는 멕시코 평균 여성 소득자의 경우 급여의 26%를 넘는다. 멕시코 남성의 경우 25%, 영국의 평균 소득자는 21%를 넘는다.

연금 격차를 메우고 전반적인 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보험료는, 보험료를 완전경력 기간 중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의 최대 7.5%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야 자발적 사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여 기록을 상실한 20년 경력의 근로자의 경우 3개국에서 10-1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게 된다.

산정은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의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이는 강제적 사적연금과 광범위한 사회부조 제도를 포함할 수 있다. 17개 국가가 속한 이 집단에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연방 국가가 6개국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2개의 동아시아 회원국 -일본과 한국도 포함되며 벨기에와 독일도 포함해 유럽 대륙에 위치한 일부 국가도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사적연금제도는 평균 소득자의 전반적인 연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대체율 21.5%가 필요하다. 호주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는 17개국 중 연금격차가 가장 작으며 각각 소득의 1.6%, 1.8%, 1.9%이다. 17개국 전체적으로는, 의무가입인 연금의 대체율은 평균소득자에 대해 41.0%였다. 이는 평균 연금 격차가 13.1%임을 의미한다. 멕시코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결과값이 달랐는데 연금이 성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여성은 은퇴 후 더 오랜 기간동안 적립금을 나누어 받기 때문이다.

연금격차를 메우는데 있어 비교목적으로 첫번째 그림과 동일한 순서로 국가들을 배열했다. 결과는 연금수급연령의 국가간 차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연금수급연령이 낮다는 것은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기여기간이 짧고 은퇴 후 기간이 길다는 의미이다. 독일과 영국, 미국의 경우 기여율이 더 낮는데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장기적으로 67세 및 68세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의 차이 역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멕시코에서는 65세 인구가 23.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의 동년배는 26.9년을 더 살게 된다. 기대수명이 길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기여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금을 더 오랜기간동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 기여 경력을 가진 경우 연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 퇴직저축상품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 비율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 일본과 영국은 약 5%, 아일랜드와 미국은 약 4%이다.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필요 기여율은 2.1%에서 3.5% 사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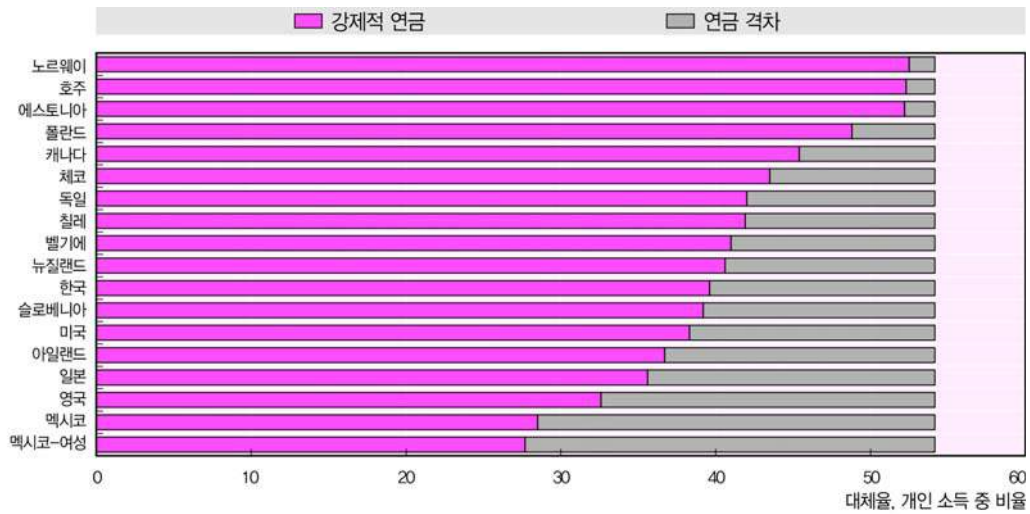
그러나 근로자들이 항상 완전경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몇 년씩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경력의 시작을 10년과 20년간 연기시킨 이들을 예로 들고 있다. 제시된 국가의 경우 필요 기여율 평균은 완전경력의 3.4%에서 10년을 미룬 경우 3.7%, 20년을 미룬 경우 7.1%로 올라간다. 20년을 미룬 경우 필요 기여 수준은 일본이 11.2%, 영국이 9.7%로 완전경력에 필요한 수준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정의와 측정

연금 격차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대체율을 국가 차원의 강제적 수준에서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리려면 자발적 사적연금에 얼마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를 측정한다. 간단하고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산정 시에는 자발적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갖고 있어 급여액의 가치가 기여금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모형에서는 다른 지표의 산정 시와 동일한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연금저축에 대한 연 실질 수익률을 행정적 수수료로 제하고 3.5%로 했다.

8.4. 연금 격차 수준

평균 소득자의 의무 연금제도 총대체율 및 OECD 평균 대체율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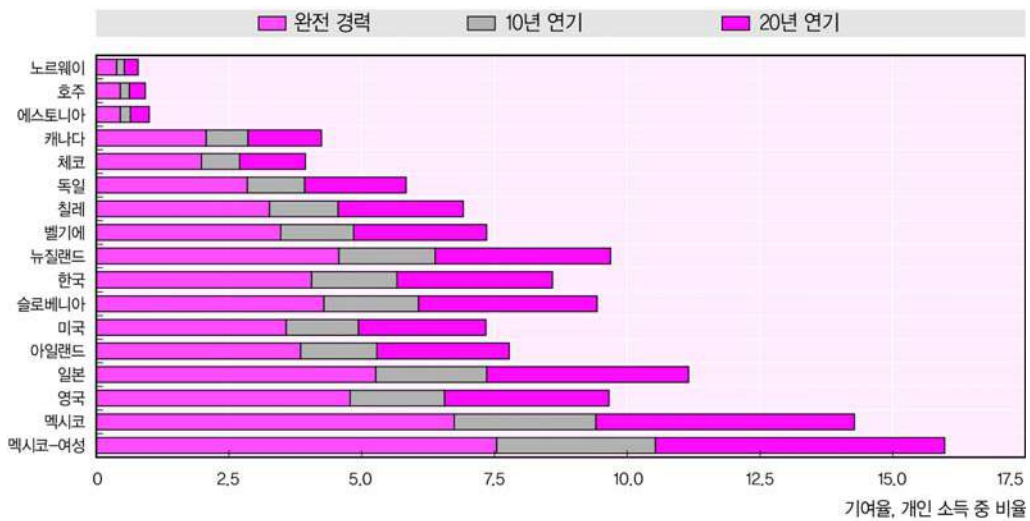


출처: OECD pension models;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098>

8.5. 연금 격차 만회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총대체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여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117>

주요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미래의 연금 지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 OECD의 총 연기금 자산은 2011년 GDP의 74% 수준이었다. OECD 국가 중 절반이 연금 지급을 위해 공적연금 적립금도 구축해두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총 공적연금 적립금은 GDP의 거의 19%에 달했다.

2011년 OECD 연기금 자산은 미화 20조6천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10조8천억 달러로 OECD 전체의 52.6%를 차지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최대의 연기금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대규모 연기금 제도를 보유한 OECD 회원국은 2조3천억 달러로 2011년 OECD 연기금 시장의 11.2%를 차지한 영국, 1조5천억 달러로 7.1%를 차지한 일본, 1조3천억 달러로 6.5%를 차지한 호주, 1조1천억 달러로 5.5%인 네덜란드, 1조1천억 달러로 5.4%를 기록한 캐나다 등이었다.

2011년에는 3개국만이 자산 대 GDP 비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네덜란드(135.5%), 아이슬란드(128.7%), 스위스(110.7%)였다. 이들 국가 외에 호주(93.2%), 핀란드(75.0%), 영국(95.8%)이 OECD의 가중 평균 자산 대 GDP 비율인 73.8%를 초과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적립된 연금이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영국을 제외하고는 강제적 또는 준강제적 사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연기금 자산의 GDP 대비 비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34개 회원국 중 13개국만이 20%를 넘는 자산 대 GDP(asser-to-GDP)비를 보였다. 다른 국가들은 최근 수년 사이 강제적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중 칠레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OECD 평균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적립했다(58.5%). 에스토니아,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강제적 사적연금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성장 전망 역시 매우 밝다. 자산은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멕시코와 폴란드에서는 GDP의 13%에서 15%에 도달했다. 이들 수치는 향후 수년, 수십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데 이유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기존 가입자도 계속 납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대개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충당되는데 일부 사전적립(prefunding)도 발생한다. 일부 공적연금 제도의 향후 재원마련에 있어서 공적연금 적립기금(PPR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구 고령화가 정부예산에 가하는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다. 2011년 말까지 PPRF의 총 금액은 자료가 나와 있는 16개 회원국에서 5조1천억 달러 수준이었다. 가장 대규모의 적립금은 2조7천억 달러로 미 사회보장신탁기금이 보유하고 있는데 총 OECD 자산의 52.8%를 차지한다. 단, 이 자산은 미 재무부에서 사회보장신탁에 발행한 비 거래용 차용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정부연금투자기금이 두번째로 1조4천억 달러 규모이며 OECD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캐나다, 스웨덴이 대규모의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각각 전체의 6.2%, 3.7%, 2.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경제 대비 총 자산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PPRF 자산이 2011년 OECD 지역에서 GDP의 18.9%를 차지했다. 비율이 가장 큰 곳은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GDP의 28.2%였다. 그 외에 비율이 상당했던 국가는 25.0%의 스웨덴과 23.2%의 일본이었다. 호주와 벨기에, 칠레, 뉴질랜드, 폴란드의 PPRF는 비교적 최근에 수립되었으며(2002년에서 2006년사이) 이는 지금까지 적립된 자산의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자산 풀의 확대는 향후 수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축의 일부를 이미 인출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기금의 일부를 은행권 구제금융을 위해 사용했다.

정의와 측정

연기금은 연금 급여액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연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을 가지고 매수한 독립적 법인체를 구성하는 자산 풀이다. 제도/기금 가입자들은 연기금 자산에 대해 법적 권리나 수급권(beneficial right) 또는 기타 계약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PPRF는 공적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기관이 만든 적립금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과방식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적립기금의 자산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정부 부문의 일부를 형성한다.


8.6. OECD 국가의 연기금 및 공적연금 적립금 자산, 2011

GDP 중 비율과 금액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연기금		공적연금 적립금	
	GDP 중 비율	백만 달러	GDP 중 비율	백만 달러
OECD 회원국				
호주	93.2	1 345 506	5.0	75 366
오스트리아	4.9	20 534	x	x
벨기에	4.2	21 740	5.0	25 574
캐나다	63.7	1 106 091	10.9	189 755
칠레	58.5	145 512	1.9	4 750
체코	6.5	14 019	x	x
덴마크	49.7	165 741	x	x
에스토니아	5.3	1 577	x	x
핀란드	75.0	199 809	x	x
프랑스	0.3	6 954	4.3	119 520
독일	5.5	195 358	x	x
그리스	0.0	102	x	x
헝가리	3.8	5 287	x	x
아이슬란드	128.7	18 089	x	x
아일랜드	46.2	100 556	8.6	18 658
이스라엘	49.4	120 101	x	x
이탈리아	4.9	106 889	x	x
일본	25.1	1 470 350	23.2	1 360 686
한국	4.5	49 721	28.2	314 917
룩셈부르크	1.9	1 156	x	x
멕시코	12.9	149 010	0.1	1 539
네덜란드	135.5	1 134 726	x	x
뉴질랜드	15.8	24 734	8.8	14 046
노르웨이	7.4	35 977	5.0	24 410
폴란드	15.0	77 433	0.8	4 325
포르투갈	7.7	18 410	5.2	12 340
슬로바키아	8.4	8 065	x	x
슬로베니아	2.9	1 666	x	x
스페인	7.8	116 355	6.2	92 928
스웨덴	9.2	49 635	25.0	134 620
스위스	110.7	703 448	x	x
터키	4.1	32 090	x	x
영국	95.8	2 313 484	x	x
미국	72.2	10 839 889	17.8	2 677 925
OECD34				
기타 주요 경제국	73.8	20 600 013	18.9	5 071 358
아르헨티나	0.0	0	10.8	46 566
브라질	13.8	308 240	x	x
EU27
중국
인도	0.2	2 848
인도네시아	1.8	15 058
러시아 연방	3.2	54 740	x	x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82.5	300 276	x	x

주: OECD34는 자료가 나와있는 국가에 대해 GDP의 비율이나 총 기금의 자산금액의 가중치 평균을 나타낸다.
X=해당없음.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136>

주요 결과

2011년 말, 전통적인 자산 등급 (주로 채권과 주식)이 여전히 연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11년 자료가 나와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채권과 주식이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자산으로써 11개 OECD 국가에서 2011년 말 현재 전체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전체 연기금 자산의 46.0%가 채권에 투자되었으며 34.8%가 주식에 투자되어 벨기에 연기금의 총 평균 가중치 80.7%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 2011년 전체 연기금 포트폴리오 대비 채권과 주식의 비율은 99.1%였으며 칠레는 98.6%, 헝가리는 94.5%, 폴란드는 93.1%, 노르웨이는 91.3%, 스웨덴은 87.3%, 체코는 87.1%, 이스라엘은 85.4%, 룩셈부르크는 82.8%, 에스토니아는 82.3%였다. 반면 독일(44.7%)과 일본(44.6%), 한국(5.4%)의 경우는 50% 미만이었다.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2011년 현재,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있긴 하지만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주식이 더 선호되기도 했다. 호주의 경우 주식이 투자를 49.7% 대 9.0%로 압도했으며 핀란드는 41.3% 대 35.4%, 미국은 45.7% 대 22.3%였다.

“채권” 카테고리 안에서도 회사채가 아니라 국공채가 많은 국가의 연기금 직접 (뮤추얼 펀드를 통한 투자 제외) 채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전체 직접 채권 보유의 94.7%를 국공채가 차지했으며 헝가리는 92.5%, 오스트리아는 88.1%, 아이슬란드는 87.1%, 이스라엘은 85.1%였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45.1%, 노르웨이는 38.1%, 호주는 21.9%, 독일은 8.8%에 불과했다.

일부 OECD 국가에서는 현금과 예금 역시 연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슬로바키아는 28.8%, 슬로베니아는 31.6%, 그리스는 40.4%, 한국은 59.0%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출과 부동산(토지와 건물),

무배당 보험계약, 사적투자펀드 (그림에서는 “기타”로 표시)는 연기금 자산 중 비교적 적은 액수를 차지했으나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와 포르투갈, 핀란드, 캐나다, 호주에서는 연기금 포트폴리오 중 상당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전체 자산의 5-10% 범위). 비공식적 증거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격차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대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져 연기금들이 리스크를 헛지하고 기초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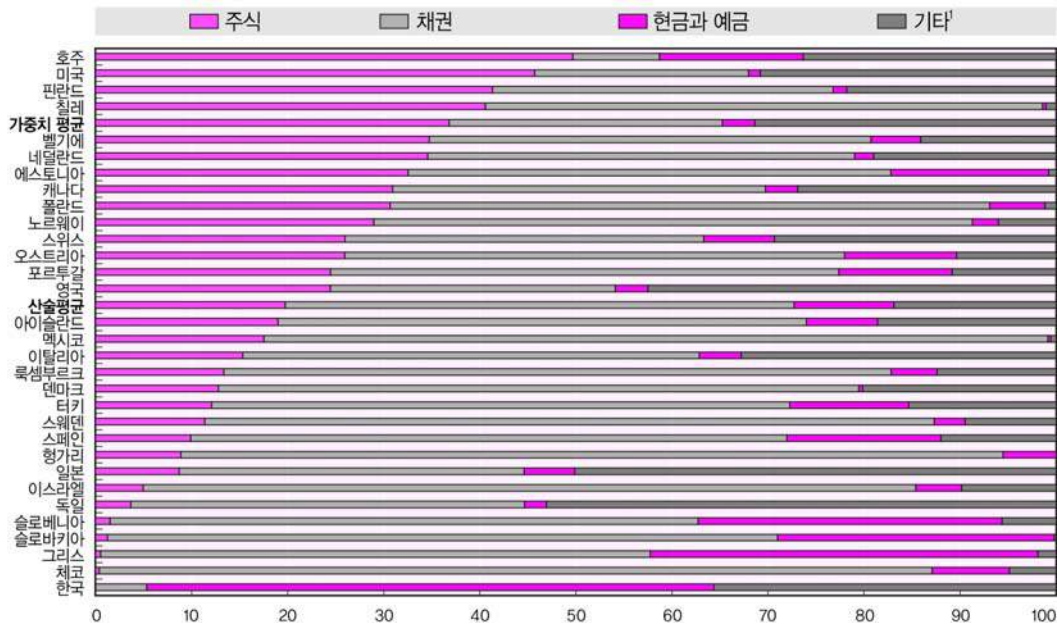
채권과 주식은 또한 2011년 말 현재 PPRF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배적인 자산 클래스이다. 일부 적립기금은 주식에 크게 치우쳐 있는데 이는 이들의 장기적 투자전망과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재량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2011년, 노르웨이의 정부 연기금은 자산의 57.3%를 주식에 37.4%를 채권에 투자했으며 스웨덴의 AP 펀드는 약 50%를 주식에 36%를 채권에 투자했다(AP2, AP3, AP4 펀드). 퀘벡 연기금은 주식에 42.1%를, 채권에 21.3%를 투자했다. 주요 캐나다 적립기금인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의 적립금은 주식(34.3%)과 채권(33.6%)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한편 칠레,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폴란드의 적립기금은 2011년, 주식보다 채권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다.

극단적인 경우는 벨기에와 스페인, 미국의 PPRF인데 법적으로 정부 채권에 전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단, 스페인 기금의 경우 총 자산의 1.5%는 현금과 예금에 투자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면 국내 정부 채권에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투자하는 셈이다).

일부 PPRF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비 전통적 자산 클래스와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했다. 예컨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호주(2011년 총 자산의 25.1%), 캐나다(16.3%), 뉴질랜드(11.3%)이다.

8.7. 일부 OECD 국가의 (일부) 투자 카테고리에 대한 연기금 자산 배분 현황, 2011

총 투자에 대한 비율



주: The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Database는 집합투자제도에의 투자 및 현금과 예금, 채권, 주식 및 기타 카테고리에 대한 대략적인 투자 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대략적인 정보를 각국에서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금과 예금, 채권, 주식 및 기타에 대한 집합투자제도의 투자 배분이 이들 카테고리에 대한 연기금의 직접 투자와 같을 것으로 가정하여 값을 추정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의 자산 배분 자료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집합투자제도를 통한 간접 투자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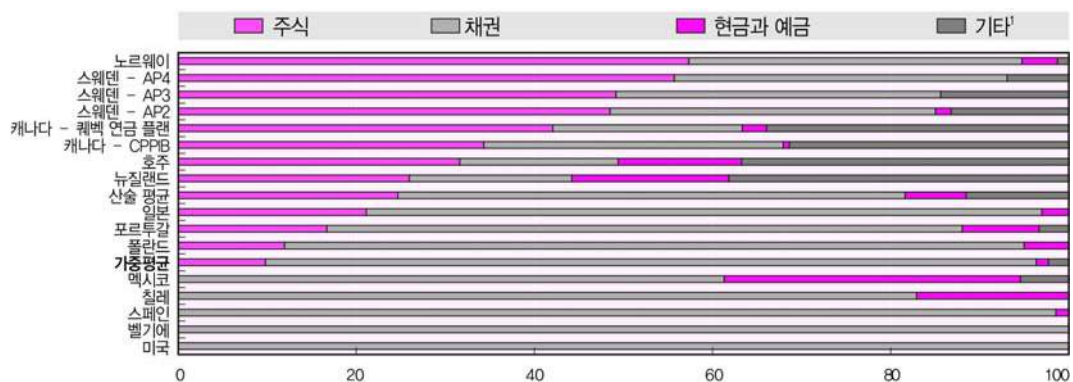
1. “기타” 카테고리는 대출, 토지와 건물, 무배당 보험계약,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상품, 기타 뮤추얼 펀드(즉, 현금, 채권, 주식에 투자되지 않음)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한다.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155>

8.8. 일부 OECD 국가의 일부 투자 카테고리에 대한 공적연금 적립금의 자산 배분, 2011

총 투자 중 비율



1. “기타” 카테고리는 대출, 토지와 건물, 사모, 비상장 인프라 투자, 헤지펀드, 상품, 기타 투자를 포함한다.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155>

주요 결과

OECD 회원국 중 절반에서 2010년 연기금이 플러스 수익률을 낸 이후 2011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했다. 2011년, 연기금은 평균적으로 실질투자수익률이 -1.3%였다. 공적연금 적립기금도 마찬가지로 2010년에는 플러스 수익률이었고 2011년에는 평균적으로 실적이 제로였다.

2009년과 2010년,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세계 금융 위기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던 연기금과 공적연금 적립기금의 실적이 회복되었다. 2011년에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다시 발생하면서 증시는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고 특히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연기금과 적립기금에 악영향을 미쳤다. 유럽 국가부채 위기에 노출된 연기금과 적립기금의 채권 포트폴리오 역시 실적 악화를 경험했다. 한편 안전한 지역의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연기금과 적립기금은 가치 재평가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2010년 OECD 연기금은 실질 기준 1.7%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0년 연기금 실적이 가장 좋은 OECD 회원국은 뉴질랜드(11.0%), 네덜란드(8.8%), 칠레(8.3%), 캐나다(7.9%)였다. 한편, 그리스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연기금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각각 -7.8%와 -5.2%). 그리스의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테네주식거래시장의 붕괴와 그리스 채권 가격 하락 때문이었다.

2011년, 순 투자수익률은 시장 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지역의 가중치 평균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의 경우 연기금의 연 실 투자수익률은 -1.3%였으며 실적이 가장 좋은 국가(덴마크)의 12.1%부터 가장 저조한 국가(터키)의 -10.8%까지 분포해 있다. 덴마크 연기금의 실적은 주로 채권 투자와 금리 헷지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덴마크 다음으로 2011년 수익률이 높았던 곳은 네덜란드(4.3%), 아이슬란드(2.3%), 뉴질랜드(2.3%)였다. 한편,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연기금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2.3%에서 -3.6% 사이였다. 그 외 9개 회원국에서는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이 실질 기준으로 -4% 미만이었다. 실질 순 투자수익률은 연기금의 명목 실적과 인플레이의 합이므로 낮은 수익률의 원인은 낮은 수익일 수도 있고 인플레이일

수도 있다.

2010년, 대부분의 PPRF의 실적은 양호했으며 평균(연말 기준 투자된 자산 별 가중치 적용) 순 투자수익률은 실질 기준 3%였다. 세 곳의 적립기금만이 이 기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포르투갈(-2.4%), 아일랜드(-4.2%), 칠레(-8.4%)이다. 2010년 실적이 가장 좋았던 곳은 노르웨이(12.2%), 캐나다(퀘벡 연금 플랜 11.4%), 뉴질랜드(11.0%)였다.

2011년은 실질기준으로 PPRF가 평균 제로의 수익률을 기록한 해였다. 자료가 나와 있는 23개 기금 중 1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질 투자수익률은 아일랜드의 -38.2%에서 칠레의 9.9%까지 분포한다. 아일랜드의 공적연금 적립기금이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보유하고 있던 얼라이드 아이리쉬 은행과 과뱅크 오브 아일랜드의 일반주와 우선주의 가치평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금은 이 부분에서 명목상 수익률 -58.1%를 기록한 반면 재량적 운영 포트폴리오는 2.1%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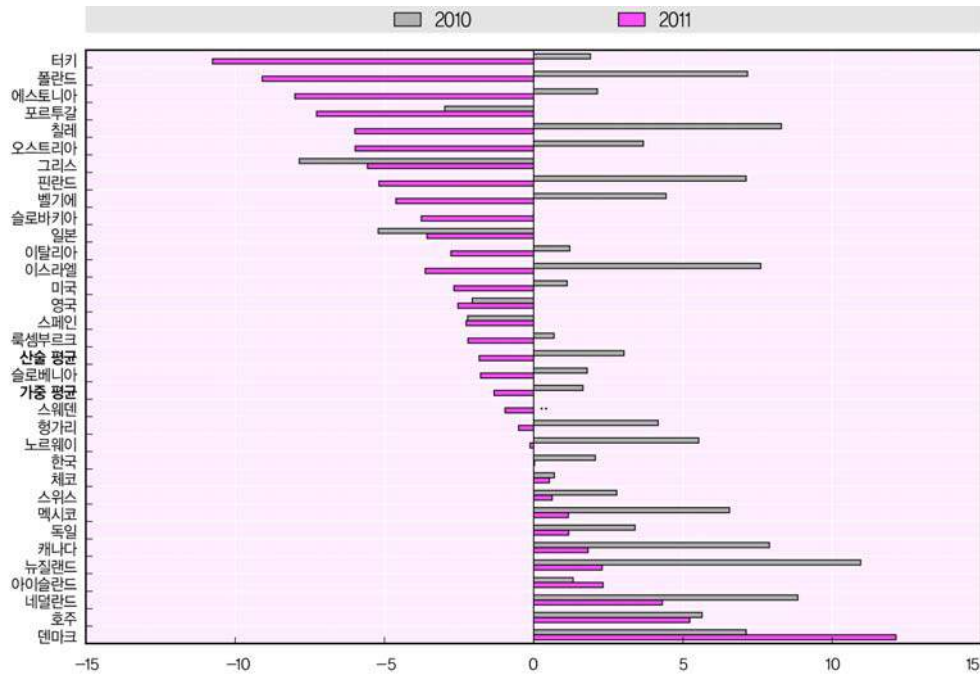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

실질(인플레이 제외) 수익률은 투자관리비용을 제한 후 현지 통화로 산정된다.

연기금의 평균 명목 순 투자 수익률은 호주, 이스라엘, 한국, 스웨덴, 미국 등 명목상 수익률을 각국의 산정 방식을 사용해 제공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공통 산식을 이용한 산정값이다. 공통 산식은 연말 기준 순투자수익과 연중 자산의 평균 수준 간의 비율에 해당된다.

PPRF의 경우 명목 수익률은 각자 사용하고 있는 산식과 방법론을 이용해 기금에서 직접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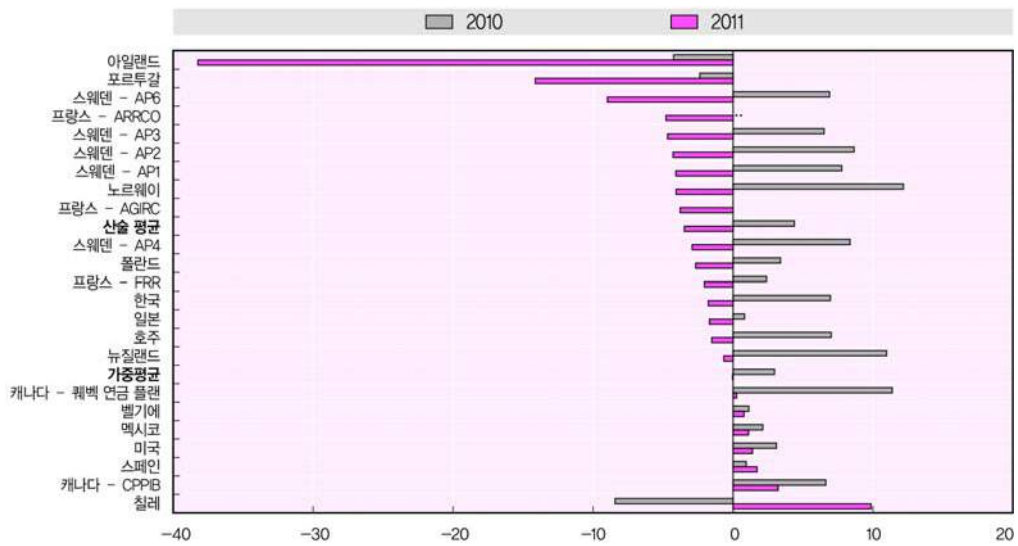
8.9. 일부 OECD 국가 연기금의 실질 순 투자수익률, 2010-11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193>

8.10. 일부 OECD 국가 PPRF의 실질 순 투자 수익률, 2010-11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212>

주요 결과

사적연금제도의 효율성은 관리되는 자산 대비 총 운영 비용으로 측정되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연간 관리 중 자산의 0.1%부터 1.3%까지 분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그 구조와 수준이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사적연금제도의 효율성은 관리되는 자산 대비 총 운영 비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총 운영비는 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운영 및 투자관리 비용을 포함한다.

그림은 2011년 OECD 회원국들이 보고한 연기금 운영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제도를 가진 국가와 소규모 기금의 수가 많은 국가들이 소수의 확정기여형(DB), 혼합형, 또는 단체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둔 국가들보다 운영비용이 높다. 스페인의 경우 운영비가 관리 중인 자산의 1.3%이며 헝가리는 1.0%, 슬로베니아와 그리스, 멕시코는 0.9%, 호주와 터키는 0.8%, 체코는 0.7%이다. 반면 독일(0.2%)과 포르투갈(0.2%), 룩셈부르크(0.1%), 네덜란드(0.1%)와 덴마크(0.1%)에서는 총 자산의 0.3% 미만에 불과하다.

확정기여형(DC) 사적연금제도에서는 공급사들이 운영비를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충당한다. 국가별 수수료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번 분석에서는 몇 개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수수료만을 고려한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예: 남미, 중부유럽, 동유럽)이 유사한 수수료 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역이 멀어지면 차이도 커질 수 있다.

기여금에 대한 변동 수수료는 급여 대비 비율이나 기여금 대비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가 이런 경우다. 칠레는 유일하게 수수료가 급여 대비 비율로 표현되었다. 기여금에 대한 수수료는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멕시코는 2008년 3월 현재 Afores가 유일하게 자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그 이전에는 자산과 기여금 둘 다

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기금에 대한 변동 수수료는 기금의 가치에 대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수익률에 대해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연기금이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얻고자 더 노력할 수도 있다. 자산에 대한 수수료는 질레를 제외하고 표에 나타난 모든 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자산과 수익률 둘 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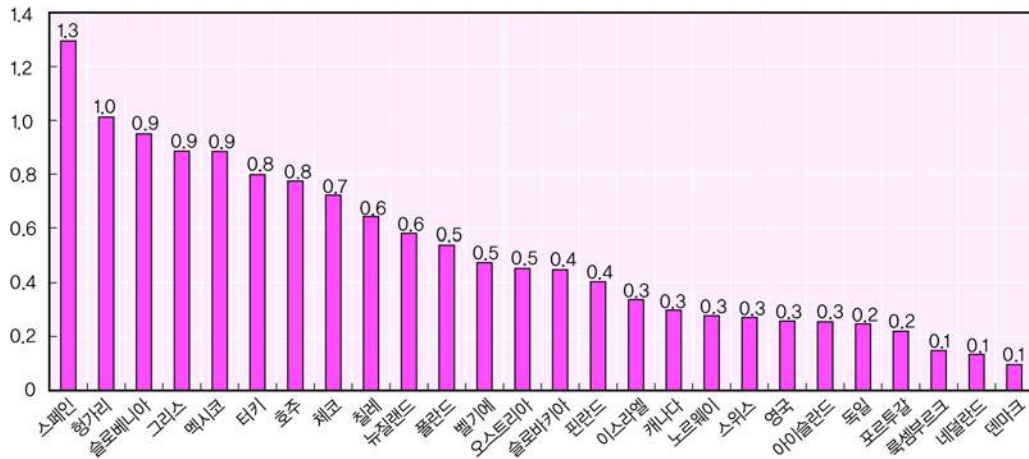
정의와 측정

운영비는 잠재적 가입자에 대한 상품 마케팅, 기여금 징수, 기여금을 투자 펀드 매니저에게 보내는 것, 계정 기록 보관, 가입자에게 보고하는 것, 자산의 투자, 계정 잔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을 지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일부 비용은 완전하게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국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기금에서 관리비용을 직접 제한다. 이러한 비용은 각 연기금 관리자가 연금 감독기관에 별도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영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수수료는 고정형이거나 변동형이다. 고정형 수수료는 급여나 기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변동 수수료는 유입되는 기여금 또는 관리 중인 자산 금액이나 관리 중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대한 비율의 형태를 띌 수 있다. 표에서는 변동형 수수료만 보고하고 있다.

8.11. 일부 OECD 국가의 전체 투자 중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난 연기금의 운영비용, 2011
총 투자 중 비율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231>

8.12. 일부 OECD 국가의 확정기여형(DC) 제도의 평균 관리 수수료, 2011

	다음 대비 수수료(%)			
	기여금	급여	자산	수익률
호주			0.50	
칠레		1.42		
체코			0.60	15.00
에스토니아			1.49	
그리스			0.90	
헝가리	4.50		0.80	
이스라엘	4.07		0.35	
한국			0.70	
멕시코			1.50	
폴란드	3.50		0.46	
슬로바키아 (두번째 층(pillar))	1.50		0.30	5.60
슬로바키아 (세번째 층(pillar))			0.083-0.165	
스페인(퇴직)			0.19	
스페인(개인)			1.44	
터키	3.52		1.80-2.55	
영국			1.50	

출처: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data, IOPS, OECD, World Bank.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250>

주요 결과

2011년 말 현재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의 평균 기금 적립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 OECD에 자료를 보고한 국가들을 보면 기금 적립수준은 2010년 대비 2011년에 개선되었는데 네덜란드는 예외적으로 금리하락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다. 적립 수준은 각국의 (규제적) 평가 방법론을 사용해 산정하므로 국가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OECD 연금 자산의 약 60%는 확정급여형(DB) 및 수익률이나 급여액을 보장하는 기타 제도에 속한다. 기금 적립율은 2011년 말 현재 몇몇 OECD 국가에서 서로 매우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포르투갈,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의 연기금은 적립이 과도하여 평균 기금 적립율이 약 110%였다. 반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는 2011년 말 기금 적립율이 낮았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기금은 53%에 불과했다.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한 이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들 제도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자산도 크게 감소했다.

노르웨이, 스페인, 아이슬란드에서는 기금 적립율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포르투갈과 독일에서는 연기금에서 적립 상태를 개선했는데 포르투갈에서는 평균 기금 적립율을 5퍼센트 올렸으며(107%에서 112%) 독일은 2퍼센트(110%에서 112%) 올렸다. 네덜란드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 연기금의 적립 상황이 9퍼센트만큼 악화되었다(107%에서 98%). 적립율의 감소는 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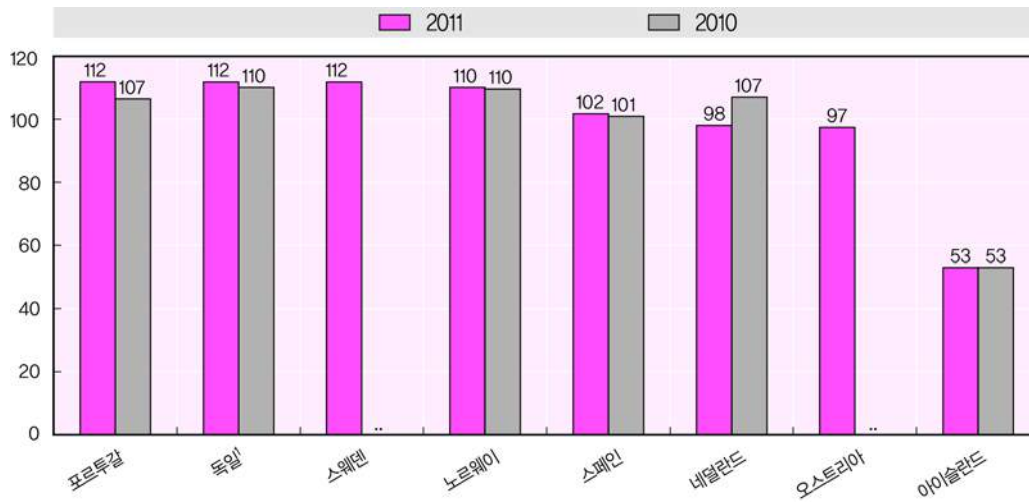
기금 적립율은 국가별(규제적) 평가 방법론을 이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 방법론의 차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크다. 예컨대 독일과 스

페인은 고정 할인율을 사용하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시장 할인율을 사용한다. 할인율은 기금 적립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할인율이 1% 하락하면 연기금의 지급 의무는 대략 20% 상승하게 된다. 최근,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할인율 설정을 위해 방법론의 변경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연기금들은 만기가 긴 경우에 대해 성장과 인플레이에 대한 장기적 가정을 바탕으로 UFR(Ultimate forward rate)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감독당국이 할인율의 하한선을 설정한다.

정의와 측정

기금 적립율, 즉 부채 대 연금자산의 비율은 국가별 방법론을 사용해 추정한다. 방법론은 사용되는 산식, 할인율(예: 시장 할인율, 고정 할인율), 미래 급여가 반영되는 방식(예: 부채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도, 가입자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일자 기준 예상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의 측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는 각 연기금에 대한 기금 적립율을 산정하고 평균(산술평균이나 가중평균)을 산정하는 반면 일부는 연기금 업계 전체에 대해 합계 기금 적립율만을 산정한다.

8.13. 일부 OECD 국가의 확정급여형(DB) 연금의 평균 기금 적립율, 2010-11
비율



주: 평균 확정급여형(DB) 기금 적립율은 각국의 연금 당국에서 직접 제공한 규제적 기금 적립율이다.

1. 자료는 Pensionskassen and Pensionfonds를 의미.

출처: OECD, Global Pension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269>

제 9 장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국가별 현황

제 9장에서는 연금 제도의 국가별 현황을 제시한다. 국가별 현황에서는 제도의 구조를 요약하고 인구학적 측면, 공적연금 지출과 평균 소득에 대한 주요 지표를 제공한다. 그리고 2012년 연금 제도의 상세한 파라미터와 룰을 제시하며 연금 수급액 산식을 설명하고 주된 결과를 보여준다. 앞부분은 국가별 현황의 목차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이다.

국가별 현황 가이드

국가별 현황은 공통된 분석구조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제도를 간략히 요약하고 핵심 지표를 표로 보여준다. 이 표는 평균 근로자 소득, 공적연금 지출, 기대수명, 부양비(근로자 100명당 연금수급자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국가의 데이터와 OECD 전체의 평균이 둘 다 나타나 있다.

둘째, 각국의 퇴직연금제도를 구성하는 연금제도의 룰과 파라미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수급요건: 연금 수급가능(또는 “은퇴”) 연령과 연금을 수급하는데 필요한 기여금 납부 기간
- 급여액 산정: 공적 소득비례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 뿐 아니라 기초, 자산조사적, 최저연금 등 연금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룰.
- 자발적 사적연금: 일반적인 자발적 연금 제도에 따른 대체율이 제 7장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총대체율” 지표에 모형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이들 제도의 파라미터도 제시했다.
- 경력의 차이 1: 근로자가 조기은퇴 혹은 표준 은퇴 연령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규정과 조건 및 이것이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
- 경력의 차이 2: 육아나 실업 등의 이유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사람들의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룰.

연금수급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제도 상의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다루지 않았다(2012년 현재 적용되는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현황의 온라인 버전(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에는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OECD(2012), 참조.

모든 연금 파라미터의 값과 최저 임금 등 기타 관련 수치는 각국의 통화 및 평균 소득 중 비율로 표현된다(제 7장 “소득: 평균과 분포” 지표 참조).

각 국가현황에서, 표는 강제적 연금 제도에 대한 상대적 연금 가치, 대체율, 연금 자산을 몇 가지 소득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여러 지표의 정의와 측정은 제 6장을 참조한다). 이들 자료는 총 기준과 순 기준으로 제시된다(순 기준은 근로 시 및 연금 수급 시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을 고려한 값).

그림은 한 국가의 개별 연금제도가 총 상대적 연금가치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첫번째 열의 그림들). 이들 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다. 설명된 특정 국가 제도는 국가 연구(country study)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표준 약어가 그림의 범례에 사용되었다.

- 사회부조: SA(Social Assistance)
- 선별적 연금제도(Targeted): 고령 인구를 위한 별도의 자산조사기반 제도
- 최저연금제도(Minimum): 소득비례 연금제도 내의 최저연금
- 기초연금제도(Basic): 적용기간 또는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related): 소득과 관련된 일체의 공적 제도.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제도는 물론 명목 계좌 및 포인트 제도도 포함
- 확정기여형 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의무가입 개인 연금제도
- 기업연금(Occupational): 사업장 또는 산업별 제도(네덜란드), 직종별 제도(스웨덴), 공적 제공되는 의무가입 또는 준 의무가입 연금제도(핀란드, 프랑스)

국가별 차트의 두 번째 행은 개인 소득세와 사회 보장 기여금의 상대적 연금 가치와 소득 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총 가치와 순 가치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차트에서는 국가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 척도를 사용하였다. 소득 대체율의 척도는 125%, 상대적 연금 가치의 척도는 평균 소득의 2.5배까지 표시한다. 차트는 소득이 경제전반 평균 소득의 50-200% 사이인 인구의 연금 수급액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크게 두 가지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과 부가적인 사회보장연금이 그것이다. 70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사회부조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령자특례 노령연금도 있다.

핵심 지표

		아르헨티나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페소(ARS)	53 600	209 900
	미 달러(USD)	10 9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여명	출생 시	76.2	79.9
	65세 시점	17.4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9.2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288>

수급요건

기초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근로기간 30년 이상인 65세 남자, 60세 여자이다. 납부 기간요건을 충족을 위해, 가입자는 수급개시 연령 이후 2년으로 부족한 납부기간 1년을 대체할 수 있다.

부가적 연금(사회보험): 근로기간 30년 이상인 65세 남자 또는 60세 여자

부가적인 고령자특례 노령연금(사회보험) :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이고 70세에 도달한 자로서, 피용 근로 또는 자영업 종료직전 8년 동안 최소 5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자. 자영업자는 최소 5년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비 기여형 노령연금(사회부조): 70세 이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자.

급여 산정

기초연금

월 연금 1,022.84페소(2013년 3월 현재)

부가적 연금(사회보험)

월 연금은 평생 근무기간(lifetime service)의 매 1년에 대해 마지막 10년간 가입자의 평균 조정 월 소득(자영업자는 전 기간에 대해 가중 평균 조정 금액)의 1.5%.

고령자특례 노령연금

월 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의 70% + 부가연금.

최저 월 특례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 부가연금의 합)은 2,165.00페소(2013년 3월 현재).

결합 최저 월 노령 연금(모든 기여형 연금의 합)은 2,165.00페소(2013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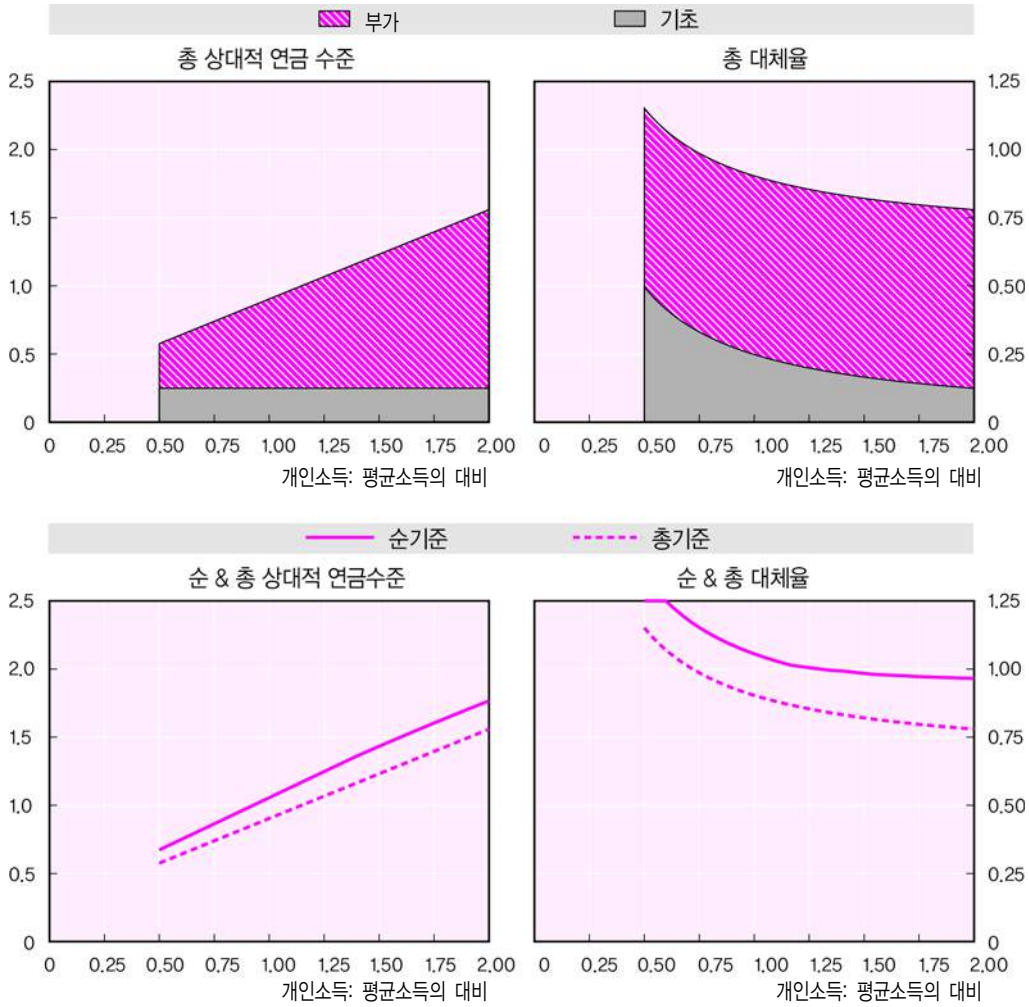
최대 월 특례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부가연금의 합)은 15,861.24페소

연금수급자들은 매달 연금을 받으며 열세번째 지급액은 정기적인 월 지급액을 둘로 나눈 금액을 6월과 12월에 지급받는다. 급여액은 국가 세수, 임금지수 그리고 사회보장청의 세입의 변화에 기초하여 3월과 9월에 자동 조정된다.

비 기여형 노령연금 (사회부조)

월 연금액은 1,515.50페소이다(최저연금 2,165.00페소의 70%).

연금 모형화 결과: 아르헨티나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소득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77.9	57.6	74.0	90.4	123.1	155.9
(평균 총 소득 %)	72.0	53.9	68.5	83.1	112.2	141.3
순 상대적 연금수준	91.0	67.3	86.4	105.6	143.2	176.6
(순 평균소득 %)	84.1	63.0	80.1	97.1	131.1	162.2
총 대체율	96.2	115.2	98.6	90.4	82.1	77.9
(개인총소득 %)	88.9	107.9	91.3	83.1	74.8	70.7
순 대체율	112.4	134.6	115.3	105.6	98.4	96.5
(개인 순소득 %)	103.9	126.1	106.7	97.1	90.1	88.6
총 연금 자산	14.7	17.6	15.1	13.8	12.5	11.9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8.3	22.2	18.8	17.1	15.4	14.5
순 연금 자산	14.2	17.1	14.6	13.4	12.1	11.2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7.7	21.5	18.2	16.6	14.9	13.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307>


호주

호주: 2012년 연금제도

호주의 연금체계는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고로 조달되는 자산조사 기반의 노령연금, 고용주 부담의 강제가입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 마지막으로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에 자발적 기여금 및 기타 개인저축.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는 세제혜택을 통해 장려된다.

핵심 지표

		호주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호주달러(AUD)	73 500	41 100
	미 달러(USD)	76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3,5	7,8
기대여명	출생 시	82,4	79,9
	65세 시점	20,8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3,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326>

수급 요건

노령 연금은 남자 65세부터 지급 가능하다. 여자의 수급개시 연령 -현재 64.5세-은 점차 연장되어 2014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연금 수급 연령은 2017년부터 2년마다 6개월씩 연장되어 2023년에는 67세가 된다.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현재 55세이지만 점진적으로 연장되어 2025년까지 60세로 올라갈 전망이다.

급여 산정

확정기여형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강제적 기여로 구성된다. 연금은 고용주가 운영할 수도 있고 산업별 협회와 금융 서비스 회사, 심지어 개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강제 기여율은 2002-03년(tax year)부터 근로자 소득의 9%였다. 2013-14년부터 기여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2019-20년까지 12%에 도달하게 된다(최근의 연방 선거 전에 정부는 -야당으로 있을 당시- 기여율을 2016년 6월까지 9.25%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2021-22년까지 12%로 점진적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또한 부가적인 사적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월 450 호주 달러(연 5,400 호주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선택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이 최저값은 과거 증가하지 않았다).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에 대한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 고용주들은 이 기준선 이상은 기여할 필요가 없다. 2012-13년도의 분기별 상한금액은 45,750 호주달러였다. 이 상한선은 평균 임금의 거의 2.5배에 해당되며 평균 소득 지표와 연계된다.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인출 단계는 급여 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일부 확정급여형(DB) 퇴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해 있다. 가입자들은 적립된 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도 있고 일정 소득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급여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다. 다른 국가(확정급여형(DB) 제도가 주도적인 국가들)와의 비교를 위해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의 적립금은 물가연동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금 산정은 호주의 사망률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선별적 연금

노령연금은 근로 기간 중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못한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퇴직 저축을 보충해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소득 조사와 자산 조사를 사용해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정한다.

호주의 노령 연금은 주로 소득 대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다른 OECD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급여액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호주의 노령 연금은 정액제이며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 연금 수급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령 연금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급액 외에 호주의 노인들은 의료, 임대료 보조, 약품 및 기타 생활비에 대한 부조와 감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세급 감면을 통해 지원되는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를 통해 사적 퇴직연금을 지원한다.

호주 정부는 2009년 9월, 연금 개혁을 실시했으며 이는 연금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금인상지수를 개선한 점이다. PBLCI(연금수급자 및 수혜자 생활비 지수)라는 새로운 생활비 지표가 도입되어 연금수급자들이 직면한 가격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하게 되었다.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에 연동된 연금의 수준은 독신수급자의 경우 근로자평균임금 대비 25%에서 27%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환산액 기준 41.8%로 향상시켰다.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유급고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소득에 대한 소득 조사적 감면인 근로 보너스가 도입되었다.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자산 조사를 엄격히 하고 2023년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것 등이 있다.

노령연금의 가치는 1년에 두 번 조정되며 2주에 한번 지급된다. 2012년 9월, 최대 독신자 연금액과 연금 보충액은 2주에 772 호주달러였으며 2013년 3월에 808 호주달러로 인상되었다(모든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연 급여액은 21,018 호주달러가 된다.

노령연금의 가치는 소비자가격지수(CPI)와 PBLCI의 측정에 따른 가격 인상폭이 클수록 높아진다. 필요한 경우 추가 인상을 통해 부부의 합계 비율이 국가별 정의(OECD 분석에서 사용된 소득 평가 지표와 약간 다름) 상 세전 남성 총 평균 주당 소득의 41.8%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다.

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 연 소득이 “공제구간”으로 알려진 기준선을 일단 초과하면 감액되기 시작한다. 공제선은 1년에 한번 7월에 조정된다. 2010-12년 적용 공제선은 상반기에 150 호주달러, 하반기에 152 호주달러였다(이번에도 2주단위로 산정). 자산 조사도 적용된다. 전체 연금

수급자의 거의 41%가 자산조사(means test)로 인해 급여액이 삭감되어 노령연금의 일부만 받고 있다. 이 집단 중 69%는 소득조사로 인해 연금액이 삭감되었으며 31%는 자산조사(asset test)로 삭감되었다. 연금수급자의 약 59%는 노령 연금을 최대액수까지 받고 있다.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퇴직연금 급여액(보장형 퇴직연금 급여액 포함)은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60세로 상향 조정 중) 수급가능 연령(preservation age) 혹은 그 이후에 은퇴할 경우 수급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근로하는 이들의 경우에도 수급가능연령부터 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으나 출퇴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득활동일 때만 가능하다. 노령 연금은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데 수급개시 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4세이며 2014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적인 연금수급연령은 2023년까지 67세로 연장 될 예정이다.

수급연기

퇴직연금 수급을 65세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을 위해 보장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 보너스로, 노령연금수급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2주에 250 호주달러까지는 소득조사 상의 소득으로 잡지 않는 혜택을 준다. 2주에 250 호주달러 미만을 버는 연금수급자들은 실제 소득과 250 호주달러 혜택간의 차액을 최대 6,500 호주달러까지 적립했다가 미래 고용 소득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보너스와 소득공제구간을 합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독신 연금수급자는 매년 약 10,450 호주달러까지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육아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에서는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는 없다. 유급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자발적 기여금 납부는 가능하다.

노령연금의 자산조사적 구조는 근로 중단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제공하는데, 근로 기간 중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퇴직연금을 보충해주고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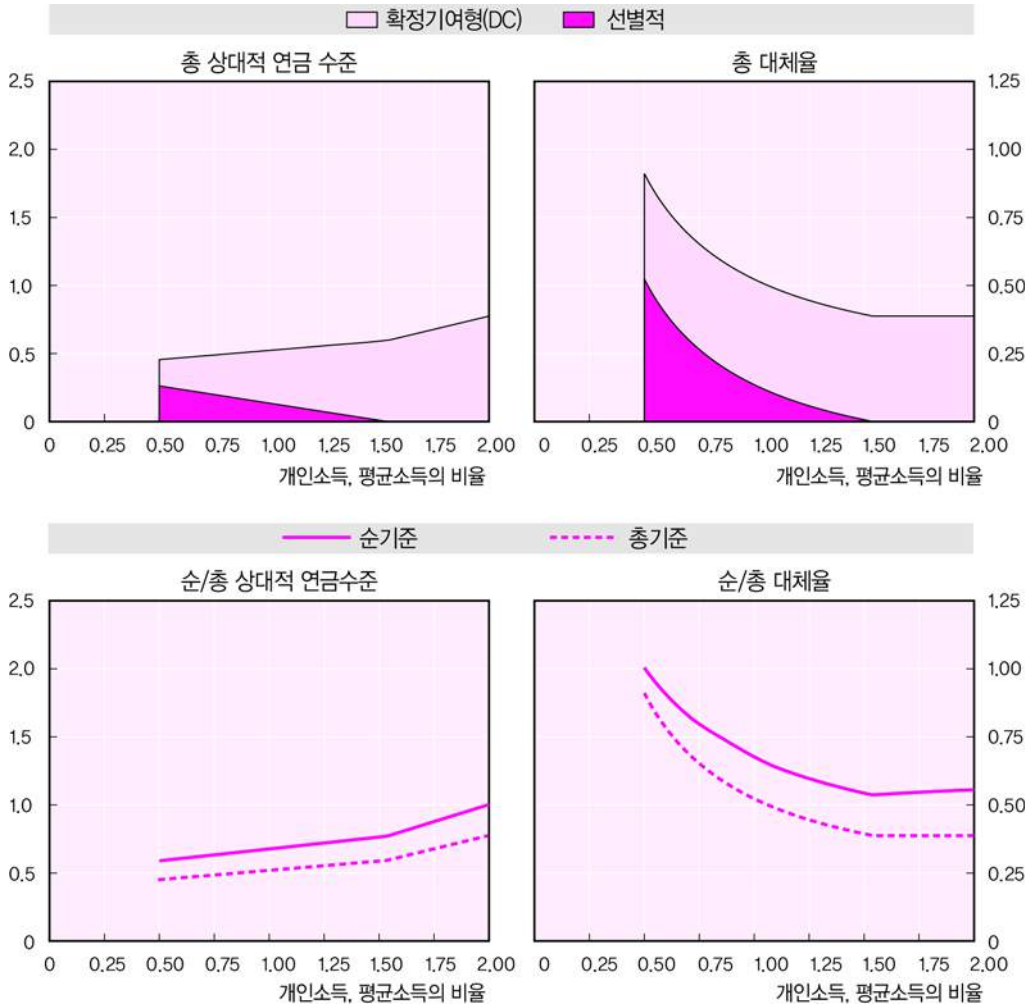
실업

기업 퇴직급여보장제도에서는 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장치는 없다. 유급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자발적 기여금 납부는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에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노령연금의 자산조사적 구조는 근로 중단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제공하는데, 근로 기간 중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퇴직연금을 보충해주고 안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금 모형화 결과: 호주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50.0	45.5	48.9	52.3	59.0	77.5
(평균 총 소득 %)	46.3	43.3	45.6	47.8	52.3	68.6
순 상대적 연금수준	64.7	58.9	63.3	67.7	76.4	100.3
(순 평균소득 %)	59.9	56.1	59.0	61.9	67.7	88.7
총 대체율	60.2	91.1	65.2	52.3	39.4	38.7
(개인총소득 %)	55.8	86.6	60.8	47.8	34.9	34.3
순 대체율	75.6	100.5	79.7	67.7	54.3	55.6
(개인 순소득 %)	70.0	95.6	74.3	61.9	48.2	49.2
총 연금 자산	10.9	17.3	11.9	9.3	6.6	6.5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6	19.0	12.8	9.7	6.6	6.5
순 연금 자산	10.9	17.3	11.9	9.3	6.6	6.5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6	19.0	12.8	9.7	6.6	6.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34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와 저소득 연금수급자를 위한 조산조사형의 보충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지표

		오스트리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호주달러(AUD)	40 900	32 400
	미 달러(USD)	53 9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3.5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0	79.9
	65세 시점	19.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9.7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364>

수급요건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남자의 경우 65세이다. 여자는 현재 60세로 되어 있지만 2024년에서 2033년 걸쳐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을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전 마지막 30년 동안 180개월(15년) 이상 혹은 생애 전체 기간 중 300개월(25년) 이상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니면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가입만 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라)이 180개월이 되어야 한다. 가입 개월 수는 기여금을 납부한 개월 수(고용을 통한 기여나 자발적 기여) 크레딧(가입기간 인정) 기간으로 제한적인 액수의 기여금만을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2005년 연금 개혁에서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유급 고용으로 인한 최소기여연수 요건은 1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었다. 나머지 최소기여연수 8년은 육아 기간 등으로 채울 수 있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연금 급여액은 현재 기여기간 1년당 지급률은 현재 1.78%이다. 소득 측정지표는 현재 최고 24년간 소득이다. 재평가 절차는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조정 폭이 소득 증가율보다는 가격 인플레이에 더 가까웠다. 평균을 내는 대상 기간은 연장되고 있는데 2029년부터 40년이 된다. 2005년부터의 신규 연금 계정 제도의 재평가는 소득 증가율에 맞춰 이루어진다. 모형은 이러한 완전경력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연도의 소득을 소득 증가에 맞춰 재평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마지막 1년은 조정되지 않는다.

기여금 납부대상이 되는 소득의 상한은 연 59,200유로이며 이는 평균소득의 145%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지급 연금의 연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CPI에 맞춰 이루어진다.

2012년 대부분의 연금은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되었다. 다만 월 총 연금액이 3,300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감액된 연동율이 적용되었다.

선별적 연금

독신자에게는 월 814.82유로, 부부에게는 1,221.68유로의 최저 퇴직연금을 보장하는 자산조사적

보충연금(Ausgleichszulage)이 있으며 매년 14회 지급된다. 이 사회안전망 급여의 조정은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모형에서는 평균소득에 맞춰 증가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다음을 근거로 할 때만 가능하다.

1. 장기 보험 기간 (“Vorzeitige Alterspension bei langer Versicherungsdauer”). 현재는 최소 37.5년의 보험기간이 필요하며 이 연금은 2017년부터 단계별로 사라지게 된다. 2012년 7월의 수급개시 연령은 남자의 경우 63세 8개월이며 여자는 58세 8개월이며 2017년에는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상향 조정되고 수급가능 조건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7.5년에서 40년으로 단계별로 올라가게 된다.
2. 장기 보험 기여 (“Langzeitversichertenpension - Hacklerregelung”). 현재 여자 40년, 남자 45년 이상의 기여년수를 필요로 한다(2014년부터 수급이 어려워지는데 현 수급개시 연령은 남자 60세, 여자 55세이나 2014년부터는 남자 62세, 여자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2세로 상승한다 (deduction per year: 4.2%).
3. 노동강도가 센 근로에 장기 보험 기간 45년 이상 (“Schwerarbeitspension”). 연금수급연령: 남자 60세, 여자 55세 (deduction per year: 1.8%)
4. Corridor-pension (“Korridorpension”). 남녀 공히 62세이며 가입기간 37.5년 이상인 경우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7.5년에서 단계적으로 40년까지 증가하게 된다(deduction per year: 5.1%)
5. 장애: “연금보다는 재활과 예방 우선”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장애연금제도를 개혁. 1964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2014년부터 임시의 장애연금대신 의료 또는 직업 재활 지원을 제공한다.

수급 연기

65세에서 68세 사이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면 연금은 연 4.2%씩 증가하며 68세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근로자들은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므로 수급액은 늘어나게 된다.

근로와 연금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득 한도가 있다. 65세 미만의 연금 수급자가 376.26유로 이상을 벌면 연금은 전액 취소된다. 65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에 제한없이 연금수급이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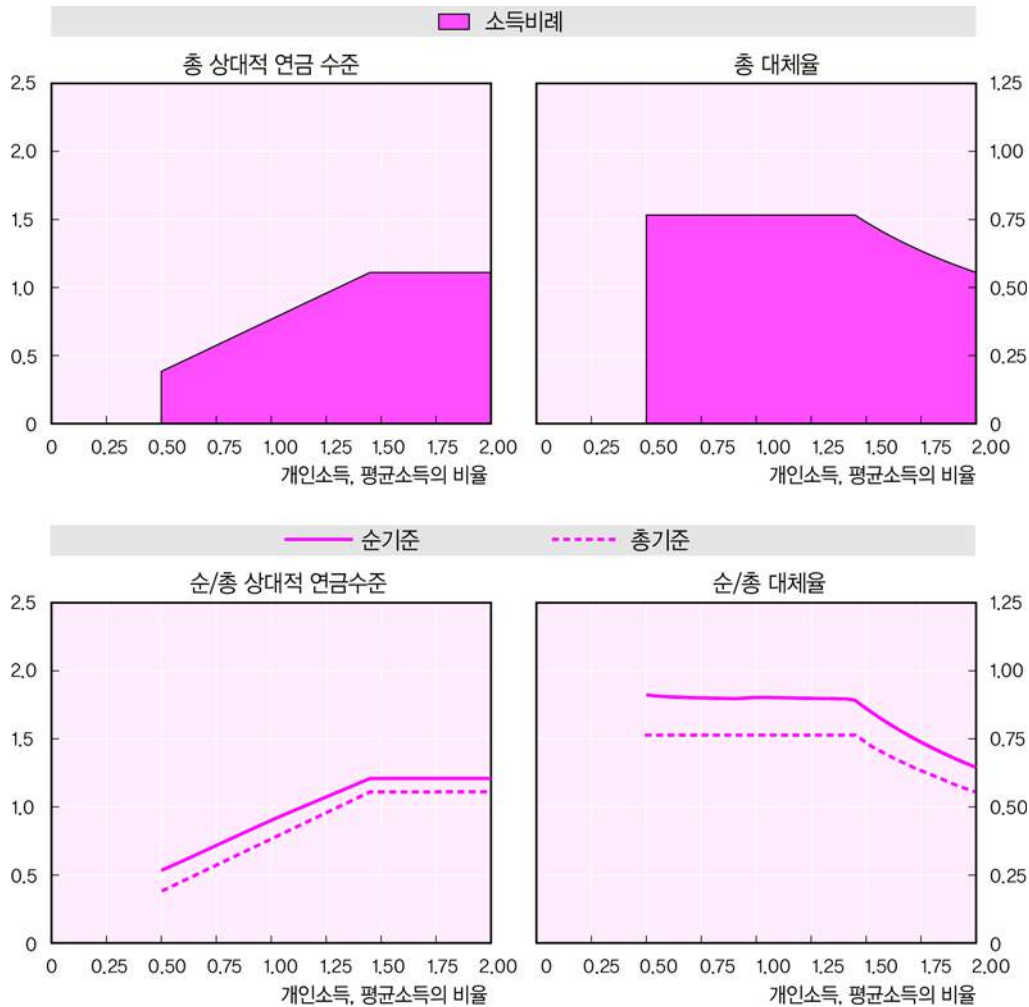
육아

육아를 위해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두가지 방식으로 고려된다. 월 1,570유로의 가상의 연금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4년까지 크레딧이 적립된다. 그러나 연금 수급 조건 충족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자녀 한 명당 2년씩 인정된다(1955년 이후 출생자는 4년 - 위 “수급조건” 섹션 참조.)


실업

실업보험 급여와 실업수당 수급 기간(평가 기준의 70%)은 기여기간으로 간주한다.

연금 모형 결과: 오스트리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63,6	38,3	57,5	76,6	111,1	111,1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77,6	53,3	71,7	90,2	120,9	120,9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76,6	76,6	76,6	76,6	74,0	55,5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89,9	91,2	90,1	90,2	86,2	64,5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5	10,5	10,5	10,5	10,1	7,6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5,5	10,8	9,7	9,1	8,2	6,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383>


벨기에

벨기에: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다음의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연금을 보장하는 소득비례 공적연금과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사회안전망이 그것이다.

핵심 지표

		벨기에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0 900	32 400
	미 달러(USD)	53 9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3,5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0	79,9
	65세 시점	19,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9,7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402>

수급조건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남녀 관계없이 모두 65세이다. 벨기에의 법적 규정에 따르면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45년간의 근로경력이 필요하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적

연금산정을 위한 기준율(소득대체율)은 독신의 경우 60%, 피부양배우자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75%이다. 그러므로 가입 1년당 추정 지급률은 남자의 경우 $60\%/45년 = 1.33\%$ 정도이다. 연금산정을 위한 소득은 생애평균소득이 사용된다(급여산정모형 간소화를 위한 가정 상). 과거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재평가되며 동시에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기 위해 또 다른 재평가지수가 적용된다(매년 다른 계수 적용). 하지만 우리의 급여산정모형에서는 이러한 과거소득의 재평가 방식은 적용되지 않았다.

위의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연금 전액이 지급된다. 기여년수가 짧아도 연금은 제공되지만 기여년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산정할 때는 연 연금대상 소득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는 2012년에 평균소득의 111%에 해당하는 51,092.44유로였다.

지급연금은 CPI(일부 상품은 제외한 소위 “건강 지수”)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재량적 실질 상향 조정(“웰빙 조정(adaptations to well-being)”)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액 인상은 최근 최저연금이나 장기가입 연금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관련법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의 권고를 바탕으로 2년에 한번씩 연금 상향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부가적인 지급(“휴가” 및 “보충” 수당)도 있으며 1년에 한번 지급된다. 액수는 월 연금액과 동일하며 한도는 독신자의 경우 603.61유로이고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는 754.52유로(2012년 5월 지급액 기준)이다.

최저 소득크레딧

경력기간 내내 소득이 낮거나 시간제로 근로한 연금수급자의 경우 해당 연금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실제보다 일정수준 높게 인정하는 소득크레딧제를 두고 있다. 연 소득 21,326.67유로 미만(2012년 1월 1일 적용되는 액수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금은 22,189.36유로)은 이 소득수준을 적용한다. 최저소득 크레딧을 얻으려면, 전일제 고용의 1/3에 해당하는 1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이렇게 되면 45년의 기여이력을 가진 독신자인 전일제 근로자의 유효 최저연금이 경력 기간 중 매 1년당 이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최저 연 크레딧의 적용은 “가족연금”을 연금의 경우 17,513.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 또는 “독신자(isolated person)”을 연금의 경우 14,012.34유로를 초과하는 연금의 귀속으로 이어질 수 없다. 만일 연금을 산정한 결과 이러한 연금이 나온다면 “최저 연 크레딧” 적용은 연금이 이 한도(2012년 12월 1일부터 17,866.12유로와 14,292.82유로)를 초과할 때까지는 모든 적격 경력 년수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최저 소득비례 연금

최저 소득비례연금도 있는데 2012년 2월 1일 기여기간 조건(45년)을 충족한 연금수급자에 대해 독신자의 경우 13,052.88유로(2012년 12월 1일부터 13,313.61유로)였으며 피부양배우자가 있는 경우 16,310.21유로(2012년 12월 1일부터 16,636.77유로)였다. 완전경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전체 기여년수의 최소 3분의 2를 채웠다면 위의 최저연금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산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액은 단순히 급여 산식의 적용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최저연금에 맞춰 급여를 “상향조정”하지 않는다).

최저연금은 특정 소비상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된다. 연금은 누적 물가상승률이 마지막 조정 이후 어떤 기준(2%)을 초과할 때마다 2%씩 인상된다.

연금수급자는 여기에서 설명한 최저연금과 산정된 연금 중 높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된다(경력기간 조건을 충족한 이들의 경우 궁극적으로 “최저 연 크레딧” 적용).

연금 보너스

2007년 1월 1일부터 2013년 이전까지의 연금의 경우 62세부터 정상 법적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근로 혹은 44년의 기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세대 협약(generation pact)”에 따라 근로기간 하루당 2.25유로(2012년 2월 1일 기준)의 보너스(물가에 연동)를 받게 되며 한도는 근로 기간 중 만근한 1년당 702유로이다.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개혁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근로자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일했는지에 따라 연금 보너스가 누적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6년 이상 근로할 경우 하루에 1.5유로부터 2.5유로까지).

기준 연금수급연령을 넘어 이루어지는 계속 근로는 연금액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기간의 공백을 메우거나 연금액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연금액 산정 시 마지막 45년의 기간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안전망 소득: 선별적 연금

직업경력이 없어 연금수급권을 얻지 못했거나 수급가능한 연금액이 매우 적은 노인들의 경우 자산조사적 안전망 소득을 수급할 수 있다. 소위 GRAPA(Garantie de revenue aux personnes âgées)가 사회부조제도인데 사회보장급여(예: 모형화된 대로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법적 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자산조사적 안전망 소득은 독신 수급자의 경우 11,668.68유로이며 타인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7,779.12유로이다. 이번에도 특정 상품을 제외한 물가에 연동된다. 자산조사 시 통상의 연금소득은 수령액의 90%만 가용자원으로 고려된다.

연령 제한은 법적 연령인 65세이다.

자발적 사적연금

부문별 보완적 연금제도는 2003년 도입되었으며 목적은 두번째 층(2nd pillar) 연금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여율은 (부문별) 단체 노동협약을 통해 정해지며 경제 부문별로 다를 수 있다(모형에 사용된 기여율은 4.25%이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2005년부터 조기수급은 기여기간이 35년인 경우 60세부터 가능하다. 이 조건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기여기간 40년에 62세로 강화될 계획이다(아래 표 참조). 피용자 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 시 계리적 감액제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력기간의 단절로 인해 (45년 미만) 전액 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기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소득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 수급 연령 이후 적용되는 소득조사보다 더 엄격하다.

시작일	조기수급연령	경력기간	예외
2013년 1월 1일	60.5	38	60세 & 40년 경력
2014년 1월1일	61	39	60세 & 40년 경력
2015년 1월 1일	61.5	40	60세 & 41년 경력
2016년 1월 1일	62	40	60세%42년 경력 또는 61세&41년 경력

수급연기

정상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 수급연기를 통해 단절된 경력기간을 메워 완전한 연금액을 받거나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급여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간이 마지막 45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 내에서 연금과 소득을 병행(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 소득이 21,436.50유로(독신자) 또는 26,075.00유로(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미만인 경우 연금은 감액

되지 않는다(2013년 기준 21,865.32유로와 26,596.50유로). 이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액은 소득 초과분만큼 감액된다. 만일 실질 소득이 한도를 15% 초과하면 연금액은 전액 취소된다(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2013년부터는 추가적인 개혁이 적용되어 최소 42년의 경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은퇴자에 대해서는 한도가 완전히 면제된다.

법적(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는 연금과 소득의 합산액 한도가 각각 7,421.57유로 또는 11,132.37유로가 되며(2013년 7,570유로와 11,355.02유로) 15% 소득 제한은 동일하다.

육아

육아의 경우 최대 총 3년이 유급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소위 “tijdskrediet”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Tijdskrediet는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가 가진 권리이며 tijdskrediet 기간의 시작을 위해 적용 전 15개월 동안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간은 급여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때 인정소득으로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의 소득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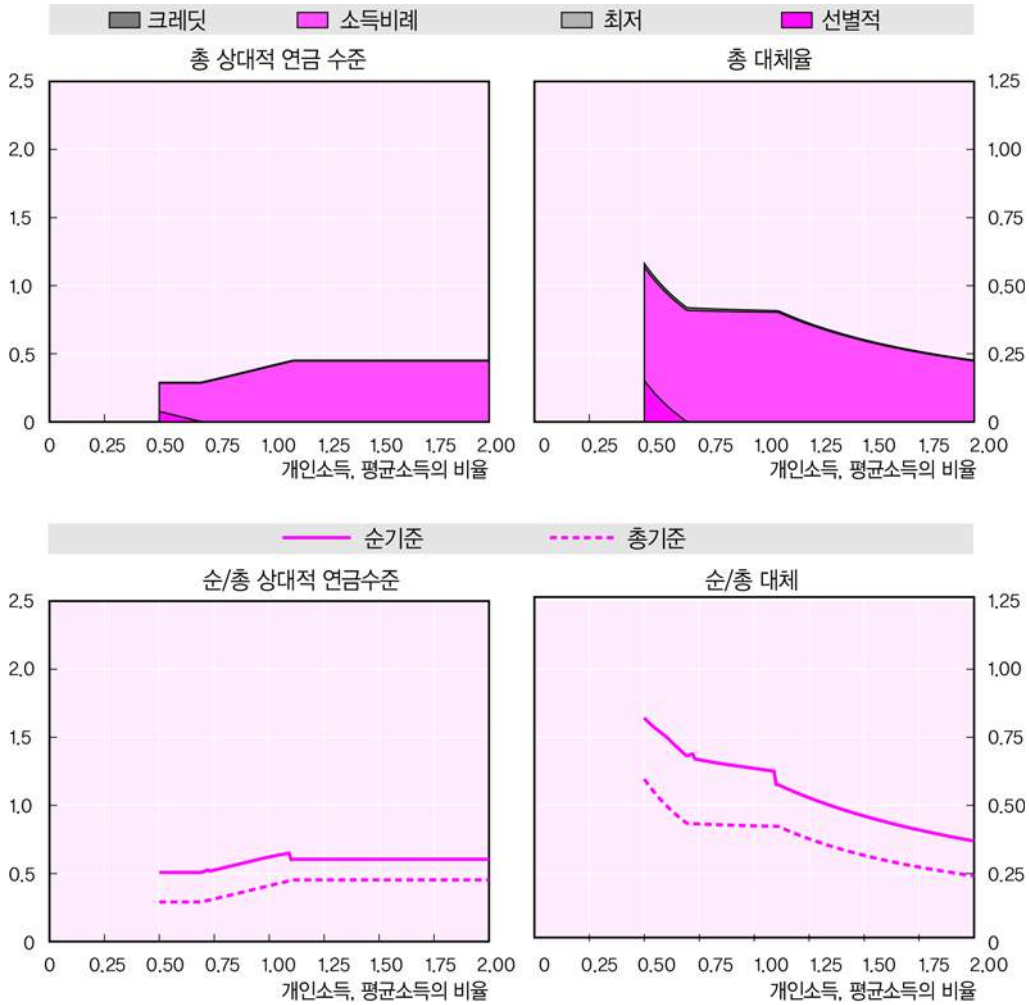
실업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연금제도상 완전한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2012년까지는 실업직전 소득이 전체 실업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인정되는 년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때는 노동시장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보다는 약간 낮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되는데 실업기간에 대한 산정금액이 실질임금상승률을 완전하게 따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62세 이후 또는 경력기간 42년 이후의 실업은 이 기간에 대한 “연금 보너스”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2013년 1월 1일부터 연금권에 대한 실업기간의 인정은 조정되었다. 일시불 수당으로 보상된 실업기간에 대해서는(실업기간 최대 48개월 이후 시작) 소위 “최저 연 크레딧”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연금 모형 결과: 벨기에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5,2	29,1	31,3	41,0	45,3	45,3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6,4	50,8	52,5	62,1	60,4	60,4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41,4	58,2	41,7	41,0	30,2	22,6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63,9	80,7	65,3	62,1	44,6	35,4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0	9,9	7,1	7,0	5,1	3,8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4	11,3	6,8	6,0	3,9	2,9
	7,3	11,3	7,8	6,9	4,5	3,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421>


브라질

브라질: 2012년 연금제도

RGPS(Regime Geral de Previdência Social)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하는 기여금(payroll tax)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며 판매세를 통한 세수와 연방정부 전입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이 제도는 의무가입의 부과방식 단일 층(single-pillar) 제도로 국가사회보장국(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에서 운영한다.

핵심 지표

		브라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헤알(BRL)	21 000	87 500
	미 달러(USD)	10 2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여명	출생 시	73.8	79.9
	65세 시점	18.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2.2	25.5

I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440>

수급조건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기여년수가 최소 15년이면 남자 65세, 여자 60세에 연금 전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여연수가 남자는 35년, 여자 30년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모형에서는 남자 55세, 여자 50세로 가정했다.

급여 산정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산정은 1994년 7월부터 연금 수급일까지 최고 월 소득의 80%를 평균 낸 값에서 출발한다. 이 월 평균에 소득에 곱하는데 Factor Previdenciario를 곱하여 연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Factor Previdenciario가 1보다 클 때에만 그렇게 한다. “Factor Previdenciario”는 가입자의 기여율, 기여기간, 연령,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한 계리적 지수이다. “Factor Previdenciario”는 기여년수 15년, 20년, 25년의 고된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산정에 사용되는 최저 월 소득은 법적 월 최저임금(622 헤알)과 같다. 급여산정에 사용되는 최대 월 소득은 3,916.20 헤알이다. 최저 월 기여에 대한 최저연금은 법적 월 최저임금과 같다.

기여금은 소득수준별로 다른데 8%의 경우 월 소득 최대 1,174.86까지는 9%, 월소득 9%의 경우 1,174.87에서 1,958.10까지, 11%의 경우 1,958.11에서 3,916.20까지이다.

급여는 1년에 13회 지급되며, 급여액은 CPI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급여액은 역시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

장기가입자의 노령연금

기여년수 남자 35년, 여자 30년이라는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액은 1994년

7월부터 연금수급시점까지 최고 월 소득의 80%의 평균값이다. 이 평균에 “Factor Previdenciario”를 곱하는데 조기 은퇴자들의 경우 1.0을 훨씬 밑돌 수 있다.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최저 월 소득은 법적 월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최저 월 소득은 3,916.20 헤알이다. 최저월 기여금에 대한 최저연금은 법적 월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1년에 13회 지급되며 급여액은 CPI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급여액은 역시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부조 프로그램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한 급여도 있다. BPC-LOAS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남녀 공히)나 1인당 가구소득이 최저임금의 4분의 1(하한선) 미만인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며 조건은 2년에 한번씩 개정된다. 이 급여는 배타적이다. 즉, 수급자들은 정부로부터 다른 비 기여성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관리(Logistics)는 INSS(의학인증 및 자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급여에 대한 책임은 사회개발부와 기근대책기구(Fight Against Hunger - MDS)에 있다.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로 시골지역에서 최소 180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들을 위한 지방 연금(Previdencia Rural)이라는 급여도 있다. 급여액은 최저임금과 같다.

경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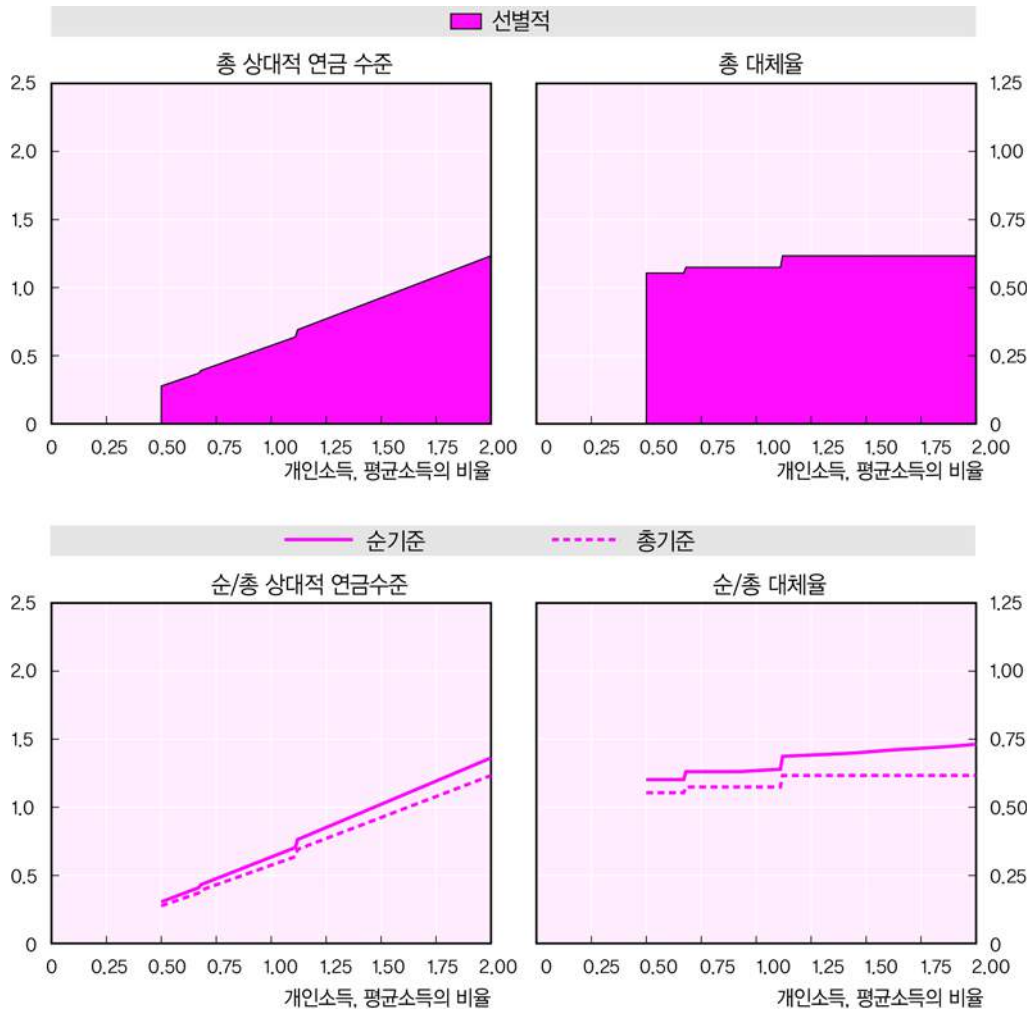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기여년수가 최소 30년인 53세의 남자 또는 기여년수 최소 25년에 48세 여자에게 허용된다.

수급연기

연금은 근로 중에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연기의 인센티브는 없다.

연금 모형 결과: 브라질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46.5	27.7	43.1	57.5	92.5	123.3
(평균 총 소득 %)	42.3	25.2	39.2	52.3	84.1	112.2
순 상대적 연금수준	51.4	30.6	47.6	63.5	102.2	136.3
(순 평균소득 %)	46.8	27.8	43.3	57.7	93.0	123.9
총 대체율	57.5	55.4	57.5	57.5	61.7	61.7
(개인총소득 %)	52.3	50.3	52.3	52.3	56.1	56.1
순 대체율	63.1	60.2	63.1	63.5	70.3	73.2
(개인 순소득 %)	57.4	54.7	57.4	57.7	64.0	66.6
총 연금 자산	16.1	15.5	16.1	16.1	17.3	17.3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8.9	18.2	18.9	18.9	20.3	20.3
순 연금 자산	16.1	15.5	16.1	16.1	17.3	17.3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8.9	18.2	18.9	18.9	20.3	20.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459>


캐나다

캐나다: 2012년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보편적 정책 급여를 제공하는데 소득조사적 급여와 소득비례 공적제도로 보충할 수 있다.

핵심 지표

		캐나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캐나다달러(CAD)	46 900	42 600
	미 달러(USD)	47 0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4.5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4	79.9
	65세 시점	20.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3.7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478>

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OAS)은 거주조사형 급여이며, 18세부터 최대 40년 거주 시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다. 40년에서 거주기간 1년이 부족할 때마다 2.5%씩 감액한다.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0년 거주이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65세부터 지급 가능하다.

2012년 6월, 캐나다 정부는 OAS 제도를 개정했다. 2023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GIS의 수급 가능 연령은 65세에서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 조정되며 2029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이 예상된다.

소득비례제도는 완전연금을 수급하려면 40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지만 수급권을 갖는 데에는 단 한번의 유효 기여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이지만 60세부터 조기수급도 가능하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OAS 연금의 2012년 완전연금액 수준은 6,510.60 캐나다달러였다. 기초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한다.

이 연금은 세금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환수”). 2012년의 경우 연소득 69,562 캐나다 달러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씩 연금이 감액된다. 환수기준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선별적 연금

소득보조연금(GIS)이 기초노령연금(OAS)에 추가된다. 두 가지를 합치면 2012년 독신 수급자의 경우 최대 급여액이 15,338.52 캐나다달러였다.

GIS는 기초연금 외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을 50%가 적용된다. GIS는 가격에 연동된다.

소득비례 연금

소득비례연금과 급여는 캐나다연금 및 퀘백연금제도에서 제공한다. CPP와 QPP는 대체로 비슷한 급여액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연금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상한(YMPE)까지의 생애평균소득(단, 총

가입기간에서 소득이 낮은 기간(15% 제외)의 25%를 목표 소득대체율로 잡고 있다. 퇴직전 소득은 전가입자 소득상승률에 연계하여 재평가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여를 전액 수급하려면 약 40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며 근로 이력이 짧아지면 비례적으로 급여액도 감액된다. 2012년 최대 소득비례 퇴직연금은 월 986.67캐나다달러였다.

연 3,500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기여 상한선, 즉 YMPE는 2012년 50,100 캐나다달러였다. 기여 하한은 명목기준으로 동결되어 있지만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증가에 연계된다.

은퇴 후 소득비례연금 가치는 가격에 맞춰 매년 상향 조정된다.

자발적 사적연금

부가적인 자발적 연금이 있으며 이는 확정기여형(DC)인 것으로 가정한다. 기여율은 8.5%로 가정한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국가 소득비례 제도의 경우 60세부터 가능하며 급여액은 감액된다. 감액은 2011년 연 6%였으며 2012년부터 5년에 걸쳐 연 7.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기수급은 다른 두 개의 공적 제도(기초연금과 자산조사적 연금)에서는 불가능하다.

수급연기

소득비례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65세부터 최대 5년까지 매년 급여액이 증가한다. 2010년에는 연 6% 증가했으며 3년의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 중인데 2013년에는 연 8.4%로 올라갔다. 현재 기초연금과 소득조사적 연금은 연기할 수 없다. 후자에 대한 소득조사(income-test)는 근로소득(earning)을 포함하지만 전자의 경우 많은 소득에 대해 환수하며 이번에도 근로소득(earning)을 포함한다.

2013년 7월부터 개인은 최대 5년까지 기초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수급이 연기된 연금은 최초 수급가능 연령 이후 매달 0.6%씩 상향 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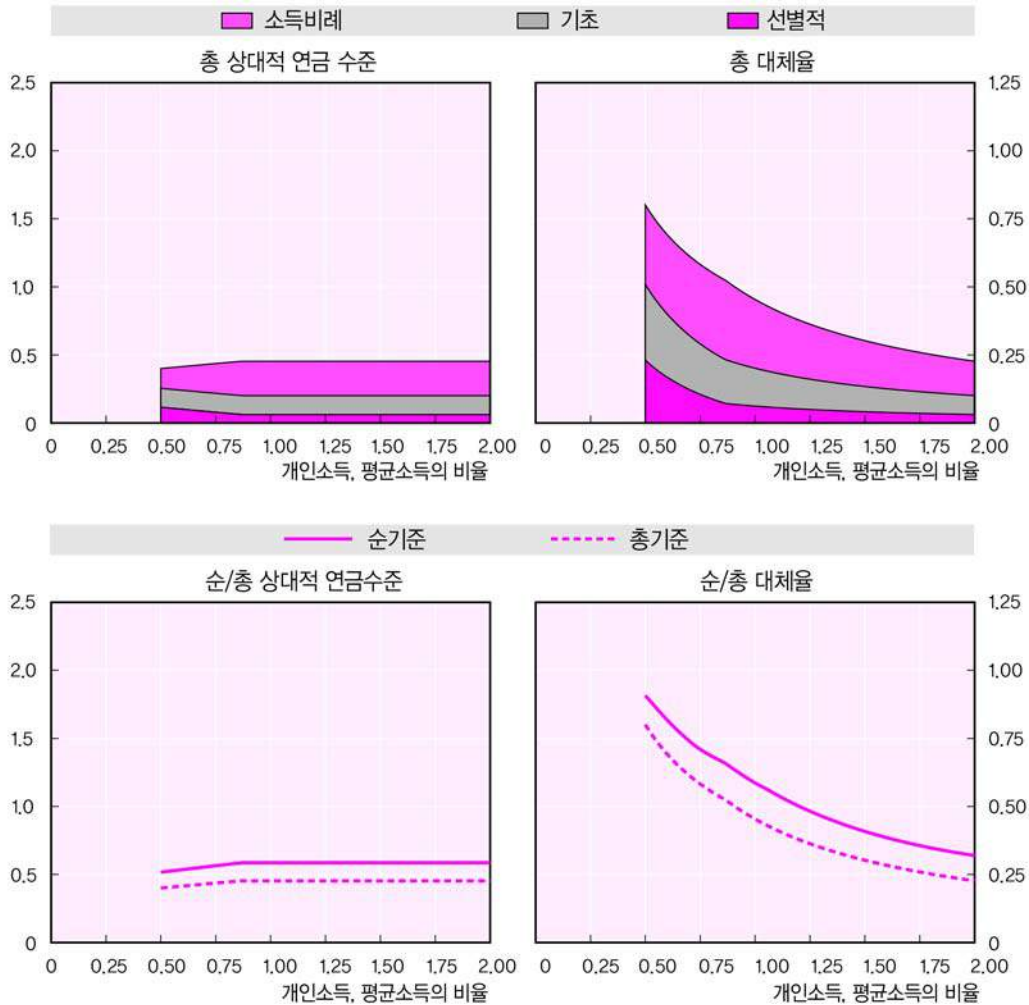
육아

7세 미만의 자녀를 돌본 육아 기간은 생애평균소득의 산정을 위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소득비례제도상 기여년수에서도 빠지게 된다.

실업

최대 15%까지의 기여년수가 소득비례제도의 평균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업, 질병, 재학 기간 등을 소득이 낮거나 없는 기간을 배려해서이다.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 결과: 캐나다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5.4	40.0	43.7	45.4	45.4	45.4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8.6	51.7	56.4	58.6	58.6	58.6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1.0	80.1	58.2	45.4	30.2	22.7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64.4	90.7	70.9	58.6	40.8	32.0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12.9	9.4	7.3	4.9	3.7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12.9	9.4	7.3	4.9	3.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497>


칠레

칠레: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3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분배 성격의 제도(1층), 강제가입의 개인계정연금(2층) 그리고 자발적 가입의 연금(3층) 이 그것이다. 1981년에 도입된 개인 계정은 확정기여형(DC) 제도이다. 재분배적인 첫번째 층(first tier)은 2008년 연금개혁으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핵심 지표

		칠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칠레페소(CLP, 백만)	6,22	20,45
	미 달러(USD)	13 0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3,6	7,8
기대여명	출생 시	79,8	79,9
	65세 시점	19,5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6,0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516>

수급조건

확정기여형(DC) 제도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이다. 연금 급여는 이 연령 이후 어떤 시점이건 수급 가능하다. 개인은 연금 수급을 위해 근로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기초 및 보충 연금제도

기초연대연금(PBS)은 65세부터 지급가능하며 칠레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수급신청 전 5년 중 최소 4년간 거주한 경우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지급된다. 보충 복지연금의 수급조건도 동일하다.

급여 산정

확정기여형(DC) 연금

개인 계정의 기여율은 소득의 10%이다. 기여금 외에 관리비용이 따로 부과된다(강제적 기여에서 부과되는 것 아님).

기여금에는 한도가 있으며 2012년 12월 67.4 “UF”(인플레이가 반영된 실질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월 1,542,559 칠레페소로 2012년 12월 최저임금의 8배이며 평균소득의 거의 세배 수준이다. 한도는 평균소득에 연계한다.

은퇴 시, 축적된 자본은 즉시종신연금(immediate life annuity)을 매수하거나 이연종신연금(deferred life annuity)으로 임시 소득을 얻거나 프로그램화된 인출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화된 인출과 함께 즉시종신연금을 매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개인연금계정으로부터 15UF의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남녀별 연금율을 사용한 계리적 공정 연금을 가정하여 대체율을 산정했다.

기초연금

기초연대연금(PBS)은 2012년 12월 80,528 칠레페소였다. 이는 물가에 연동된다. 2008년 개혁은 또한 이전의 최저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소득조사적 보충연금을 도입했다. 이 최저연금의 목표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은퇴 후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확정기여형(DC) 연금이 특정 금액, 즉 최대 복지연금 기준(PMaS) 미만인 모든 개인에게 지급가능하다. PMaS는 가격에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보충 급여는 기초연금의 가치(PBS)로 정의되는데, 이는 PMaS의 값에 대한 PBS의 비율에 확정기여형(DC)연금값을 곱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PBS 대 PMaS 비는 29%이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 계정에 축적된 자본이 특정 기준선을 초과하는 연금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충분하기만 하다면 어떤 연령에서건 허용된다. 첫번째 조건은 급여액이 PMaS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조건은 연금 인출 전 10년간의 소득 대비 최소 70%의 대체율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특정 직업의 경우 고된 근로조건 하의 근로기간 5년당 1년 또는 2년씩 감해진다. 최대 10년까지 감할 수 있다.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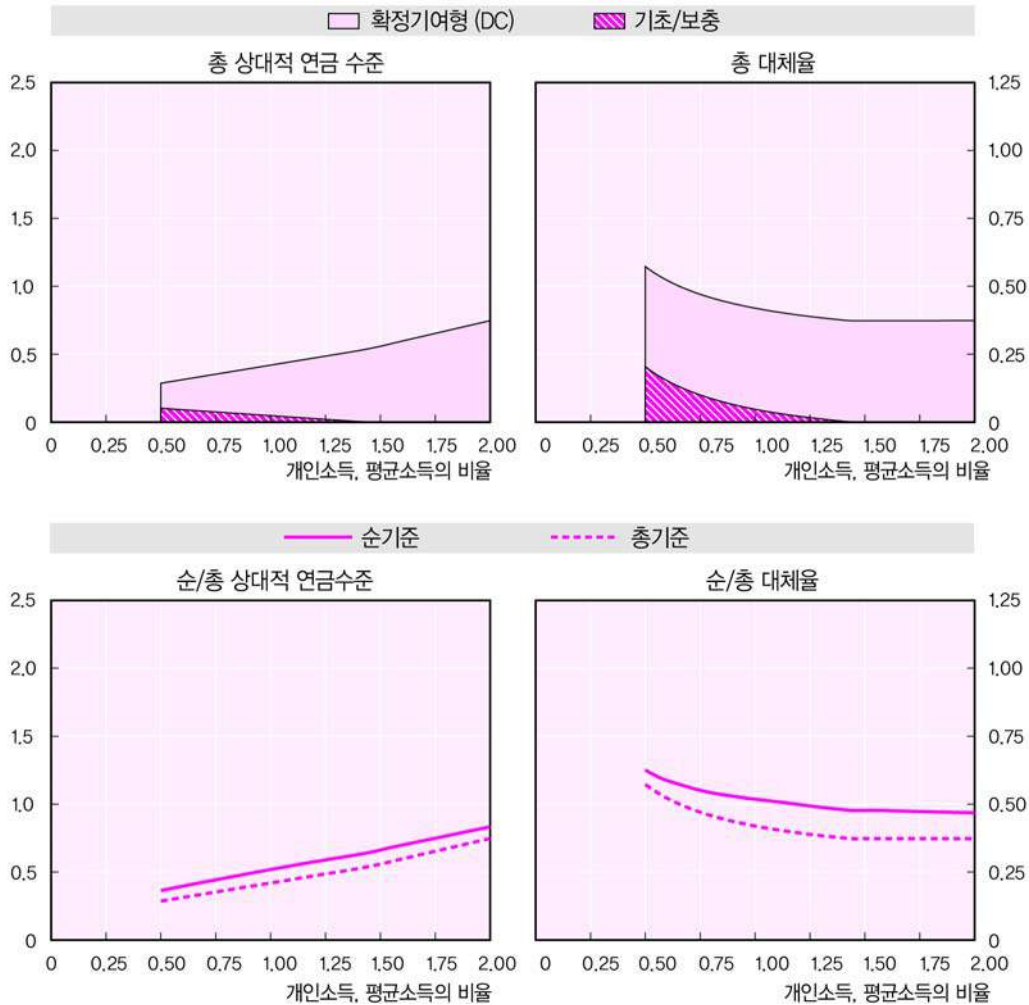
육아

여성은 65세가 되면 자녀 한 명 당 하나의 연금 바우처를 받는다. 바우처는 출산시점의 최저임금 18개월분의 10%에 출산시부터 연금수급시까지의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평균 순 수익률을 더한 값이다. 평균 금리는 사적연금의 “펀드 C”에 대해 산정되는데, 이는 위험 - 수익 좌표상 중간 값이다. 이것은 여성이 연금수급신청을 할 때 연금으로 전환된다.

실업

크레딧은 없으며 별도의 실업보험제도가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연금 모형 결과: 칠레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36.9	28.6	35.3	41.9	55.9	74.7
(평균 총 소득 %)	29.6	24.2	28.6	33.0	41.8	50.6
순 상대적 연금수준	46.1	36.4	44.2	51.8	66.3	83.3
(순 평균소득 %)	37.6	31.0	36.3	41.6	51.6	60.9
총 대체율	45.5	57.3	47.0	41.9	37.3	37.3
(개인총소득 %)	36.6	48.3	38.1	33.0	27.9	25.3
순 대체율	54.1	62.5	55.1	51.8	47.7	46.8
(개인 순소득 %)	44.1	53.2	45.2	41.6	37.2	34.2
총 연금 자산	7.8	9.8	8.1	7.2	6.4	6.4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1	10.7	8.4	7.3	6.2	5.6
순 연금 자산	6.8	8.7	7.1	6.2	5.3	5.0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2	9.6	7.5	6.4	5.3	4.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535>


중국

중국: 2012년 연금제도

중국은 두 개 층(tier)으로 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데 기초연금과 두번째 층 제도에 대한 강제적 근로자 기여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06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대상은 도시 근로자들이며 파라미터 중 상당수가 성 (province) (국가가 아님) 차원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지표

		중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위안화(CNY)	46 800	266 100
	미 달러(USD)	7 5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3,0	7,8
기대여명	출생 시	75,3	79,9
	65세 시점	15,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3,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554>

수급조건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남자 60세, 블루칼라 여자 50세이며 화이트칼라 여자 55세이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기여년수 최소 15년 이상 가입기간 중 매 1년에 대해 재평가된 개인별 평균소득과 성(province) 차원의 평균 소득 평균의 1%를 지급한다. 연금지급액은 임금 및 가격을 혼합한 값에 연계하는데 평균 소득 증가율의 40%에서 60% 사이이다. 모형에서는 임금이 50% 연계를 가정했다.

확정기여형(DC) (적립식 또는 명목 계정) 연금

두번째 층 제도는 개인 계정으로 구성된다. 북동부에 위치한 성(요녕, 길림, 흑룡강)외에도 추가적으로 8개 성이 적립식 개인 계정 제도를 갖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계정은 대체로 명목계정이며 명목 금리가 사용된다.

근로자는 개인 계정제도에 임금의 8%를 납부한다. 펀드 또는 명목 계정에 축적된 잔액은 정부가 정한 연금 계수로 나누어 개별 은퇴연령 및 평균 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은퇴시점에 연금액으로 전환된다. 모든 성에서 남녀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금계수는 (월 급여액에 대해) 다음과 같다.

연령	40	45	50	55	60	65	70
계수	233	216	195	170	139	101	56

연금지급액은 임금과 가격을 혼합한 값에 연계된다(위의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 참조).

경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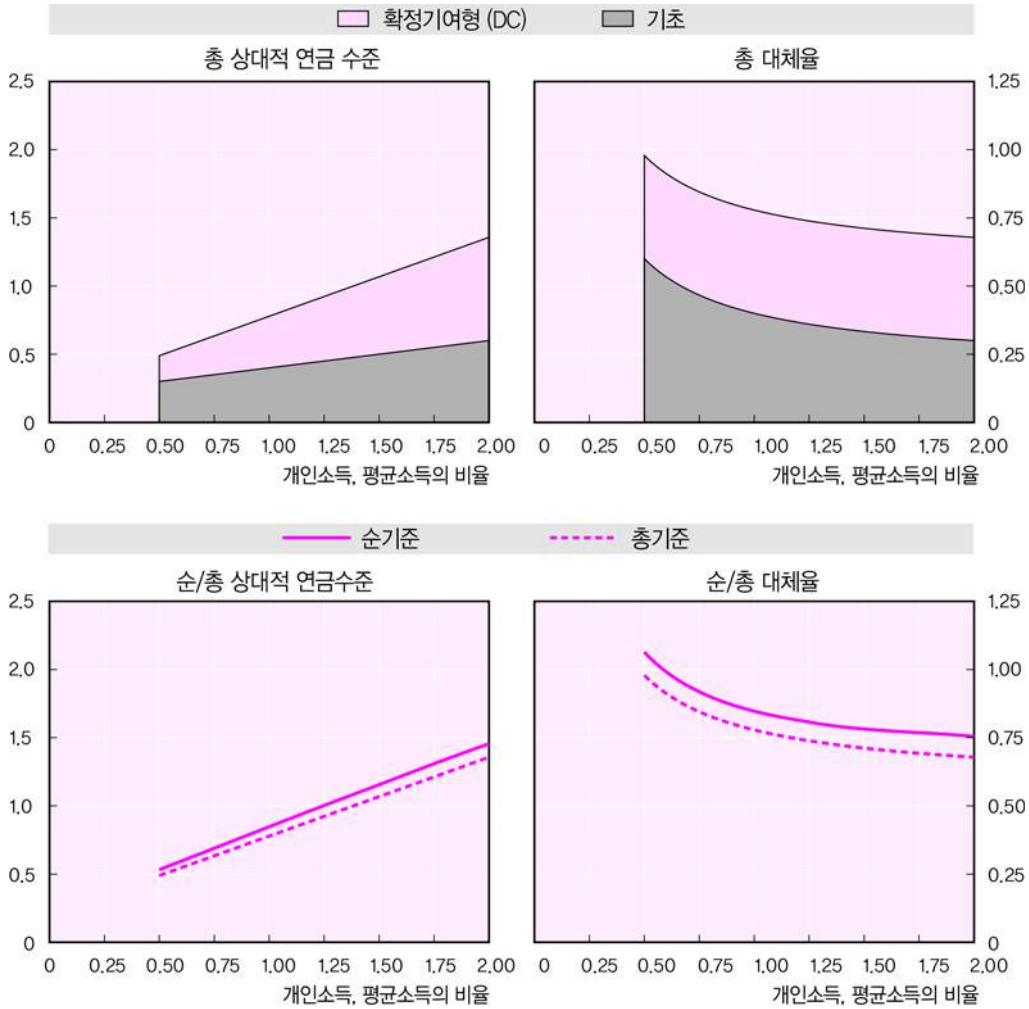
조기수급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수급이 가능하다. 완전한 장애인인 경우 기여 연수가 15년이면 남자 50세, 여자 45세에 수급을 시작할 수 있다.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로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금 급여액은 재평가되지 않는다.

연금 모형 결과: 중국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66.9	48.9	63.4	77.9	106.8	135.7
(평균 총 소득 %)	52.7	39.2	50.1	61.0	82.7	104.5
순 상대적 연금수준	72.7	53.2	69.0	84.7	115.6	145.5
(순 평균소득 %)	57.4	42.7	54.5	66.3	90.0	113.2
총 대체율	82.5	97.9	84.5	77.9	71.2	67.9
(개인총소득 %)	65.1	78.5	66.8	61.0	55.2	52.2
순 대체율	89.7	106.4	91.9	84.7	78.2	75.5
(개인 순소득 %)	70.8	85.3	72.6	66.3	60.9	58.7
총 연금 자산	16.1	19.1	16.5	15.2	13.9	13.3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3	19.7	16.8	15.3	13.8	13.1
순 연금 자산	16.1	19.1	16.5	15.2	13.9	13.1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3	19.7	16.8	15.3	13.8	13.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573>


체코

체코: 2012년 연금제도

체코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제도와 의무가입(단, 최초 가입후 탈퇴 불가)의 적립식 사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기초급여와 누진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비례급여를 가지고 있다.

핵심 지표

		체코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코루나(CZK)	300 400	812 600
	미 달러(USD)	15 8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8,3	7,8
기대여명	출생 시	77,6	79,9
	65세 시점	17,1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5,3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592>

수급조건

표준 연금수급 연령은 출생집단별로 2개월씩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다(향후 여자도 상한선이 사라질 예정). 여성의 수급가능연령은 4개월씩 연장되었고 2019년부터 6개월씩 연장되어 남자와 동일해진다(1975년 출생자의 경우 66세 8개월). 이제까지 연금수급을 위해 최저 2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했으나 이는 2010년부터 1년에 1년씩 연장되어 3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기간 15년(점차 20년까지 연장 중)인 사람들은 출생연도가 동일한 남자들의 경우 기준 수급개시 연령보다 5년 연장된 연령부터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2012년 기초연금 액수는 2,270 코루나 또는 법적 평균임금의 9%이다. 법적 평균임금은 2012년 25,136코루나였다.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은 매 재직년당 소득의 1.5%를 지급한다. 소득 측정지표는 현재 1986년부터 시작해 모든 연도에 걸쳐 평균을 내고 있지만 점차 생애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 과거소득은 국가차원의 평균소득 증가율에 연계된다.

누진적 급여 산식이 사용되는데, 이 산식에 따라 소득기준선이 적용되어 평균 경력 소득을 산정 기준값으로 감액한다. 마지막 단계(final state)에서 첫 기준선은 평균 임금의 44%이며 두번째는 400%이다.* 2012년 첫번째 감액 기준선은 11,061 코루나이며 두번째는 100,548이다. 첫번째 기준선까지 소득은 100% 대체되며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선 사이는 26% 대체된다. 두번째 기준선을 초과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5년간의 과도기간 때문에 2012년 수치는 미래 연금수급자(과도기간 이후)에게 적용되는 값과 다르지만 임금과 가격은 2012년 것을 사용했다.

종합한 총 평균 연금 급여액(정액 및 소득비례 요소)이 가격 인플레이의 100% (2013-15년 가격 인플레이의 3분의 1에 불과)에 실질 급여 상승의 3분의 1을 더한 만큼 상승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비례연금 요소에 대한 법정 연계 요건이 있을 예정이다.

최저연금

신규 제공된 최저 월 공적연금 급여액의 총 가치는 3,040 코루나이며 최저 소득비례연금 770코루나와 기초연금 2,270코루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평균소득의 12.1%에 해당한다.

사회부조

최저생계비는 단일하게 설정되며, 기본적 요구와 기타 개인적 욕구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개인(그리고 독거 연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월 3,410코루나였다. 주택의 사회적 보호 문제는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 프레임워크와 주택에 대한 추가세금(surcharge)에 의한 물질적 필요의 부조 제도 안에서 해결된다.

자발적 사적연금

2013년 1월 현재 모든 가입자는 사적으로 관리되는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 제도에는 참여는 취소할 수 없다. 강제적 완전 적립식 제도는 총 소득의 5%만큼의 기여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동시에 소득비례적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인의 기여율은 3퍼센트 포인트 낮아졌다(28%에서 25%로). 그 결과 가입자의 총 기여율은 총 소득의 30%로 증가했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율 감소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요소의 지급률에 영향을 미친다. 지급률은 개인의 적립식 제도 기여기간에 대해 매년 1.2%(1.5% 아님)씩 감소한다.

기여금은 사적연금회사가 운영하고 가입자가 연기금에 대한 저축 배정의 조합으로 선택하는 개인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되는 개인계정에 축적된다. 각 연금회사에서는 수익-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연기금을 제공한다.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이 제공되면 가입자는 이 적립식 제도로부터 저축액 인출을 시작할 수 있다. 인출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평생연금, 추가 3년간의 유족연금이 있는 평생연금, 20년 기한 연금이 그것이다.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정기여형(DC)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2.8%로 가정했다.

자발적 사적연금제도는 기본 사례에는 모형화되어 있지 않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가입기간 25년이면 표준 수급개시 연령보다 3년 먼저(5년으로 증가, 그러나 60세 미만은 불가) 수급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일반자격요건에 따라 35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총 지급계수(즉, 기여

년수를 지급률로 곱한 것)는 조기수급의 첫 360일간 90일마다 0.9%씩 영구 감액(연 3.6%)되며 361일째부터 720일까지는 90일당 1.2%씩 (연 4.8%), 이후에는 90일마다 1.5%(연 6%)씩 감액된다. 완전 경력 근로자의 경우 이는 조기수급을 하게 되면 연금수준(대체율이 아님)이 $3.6/64.5 (1.5\% \times 43년) = 5.6\%$ 만큼 감액됨을 의미한다.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후로 연금 신청을 연기할 수도 있다. 총 지급 계수는 연기한 기간에 대해 90일마다 1.5%씩 증가(연 6%)한다. 수급연기에 대해 추가적인 연금 지급은 없다. 근로를 계속하면서 연금을 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전액을 받는다면 근로기간에 대해 360일마다 0.4%씩 증액되며 노령연금의 절반만 수급한다면 180일마다 1.5%씩만 증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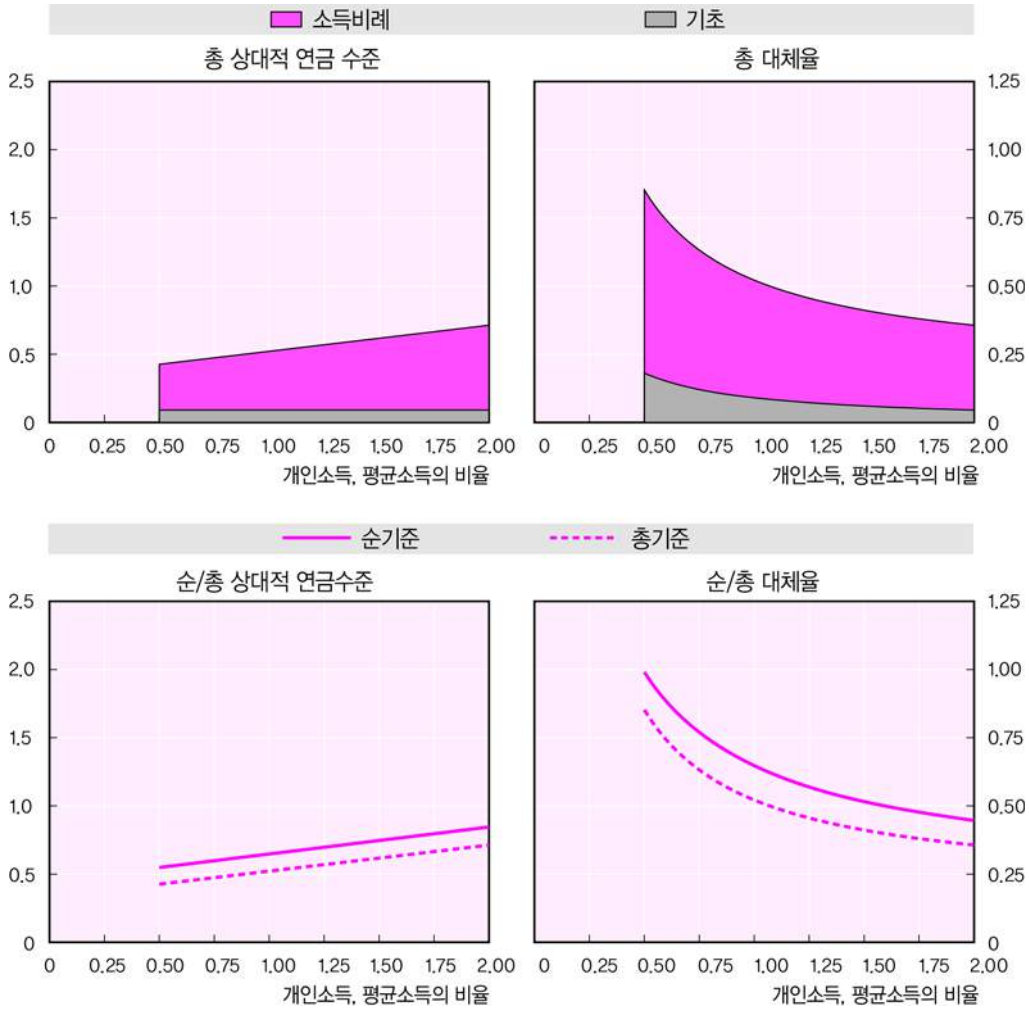
육아

4세 이하 자녀(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연령)의 양육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크레딧이 발생한다. 이 기간은 연금 목적으로 소득을 산정할 때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육아기간으로 인해 평가 기준이 감액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모든 비 기여성 기간에 대해 사용된다.)

실업

소득비례적 실업보험 수급 기간은 연금제도에 반영된다. 실업보험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0세까지는 5개월, 50세-55세는 8개월, 55세를 넘으면 11개월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 3년간 실업보험수급없이 실업상태로 지내는 경우 역시 반영된다(단, 55세 미만의 경우 수급없이 실업상태로 보낸 1년간만 반영됨). 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실업기간은 최대 80%까지만 인정되는데, 이는 경력 기간 중 5년간 실업상태였다면 연금 목적으로는 실업기간을 4년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실업기간이 평균 평가 기준 산정에 대한 결정적인(기준) 기간에 속한다면, 이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보험료가 납부된 소득만 사용된다.

연금 모형 결과: 체코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8.5	42.6	47.4	52.2	61.7	71.3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61.0	54.8	59.8	64.7	74.6	84.5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9.9	85.2	63.2	52.2	41.2	35.6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73.4	99.1	77.0	64.7	51.6	44.7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5	12.1	9.0	7.4	5.8	5.1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3	12.0	8.7	7.1	5.5	4.6
	10.0	14.6	10.6	8.6	6.6	5.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611>


덴마크

덴마크: 2012년 연금제도

공적 기초제도가 존재한다. 자산조사적 보충연금 급여액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연금수급자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개인의 기여기록 즉, ATP를 바탕으로 한 제도도 있다. 그 외에도 단체협상의 일환으로 협상된 강제적 퇴직연금제도도 있는데 전일제 근로자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다.

핵심 지표

		덴마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네(DKK)	392 500	241 600
	미 달러(USD)	69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6.1	7.8
기대여명	출생 시	79.3	79.9
	65세 시점	18.4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9.9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630>

수급조건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현재 65세이지만 2019-22년에 67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전액 공적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4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기간이 짧아지면 비례적으로 수급액도 줄어든다.

노동시장 보충연금(ATP)상 전액을 수급하려면 완전경력에 기여금 납부가 필요하다. ATP 제도는 1964년에 수립되었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완전 기초연금액은 월 5,713크로네 또는 연 68,556크로네로 평균소득의 약 17% 정도에 해당된다. 기초소득조사가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이 291,200크로네 (평균소득의 약 75%)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급여액은 이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율로 감액된다.

선별적 연금

이 보충제도의 완전액은 독신자의 경우 월 5,933크로네 또는 71,196크로네이며 부부는 연 34,416크로네이다. 실제 금액은 공적연금 외에 개인소득의 모든 출처에 대해 조사된다(ATP 및 퇴직연금 포함). 만일 가구 개인소득이 64,300크로네를 초과한다면 선별적 연금 보충액은 독신자의 경우 초과된 소득의 30.9%만큼 감액된다. 부부 가구 소득 조사는 128,900크로네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6%의 비율로 감액된다.

공적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11,200 크로네의 보충 연금 급여액이 지급된다. 보충연금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 1회 지급된다. 자산조사적 급여이며 현금 저축이 별로 없는 극빈층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최대 현금 저축액 77,700크로네).

공적 노령연금(기초연금, 보충수당 그리고 선별적 보충연금)은 평균소득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조정은 이전 2년간의 임금 인상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2%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0.3%가 사회지출 유보금으로 배정된다. 그러므로 연금 및 기타 사회급여의 연계는 임금인상에서 유보금에 대한 할당분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2008년, 근로 관련 소득에 대한 특별 세금 공제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 은퇴 시기를 늦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 7월부터 노령연금 대상인 연금수급자는 기초 및 선별적 연금을 산정할 때 매년 최대 30,000크로네의 근로소득을 차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이들 제도는 사회적 파트너 간에 합의된 완전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제도이다. 이들 제도의 가입율은 준 보편적이다.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9%에서 17%사이이다. 2006년, 덴마크 근로자의 대다수는 기여율이 10.8%로 인상되었으며 이 기여율이 모형에 사용되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 (annuity)으로 인출된다. 금리는 최근 기여 또는 신규 제도에 대해 1.5%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제도는 “영리(with-profit)” 기준으로 운영되어 연금이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기금의 사망률 이력에 따라 증가한다. 많은 제도에서는 또한 일시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 연금 산정은 남녀 공통의 사망률 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

ATP(덴마크 노동시장 보충연금)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법정 완전적립식 단체 보험이다. ATP는 65세부터 종신 연금을 제공하며 가입자 사망 시 피부양자에 대해 유족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ATP는 모든 급여 소득자와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ATP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ATP는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어 보편적 연금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서 ATP의 노령연금은 보장형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이다. 기여액은 고정이며 - 소득의 일정비율이 아님- 근로시간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전일제 근로자는 2012년 3,420크로네를 납부했다. 기여금의 3분의 2는 고용주가, 3분의 1은 근로자가 납부한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여 스케줄(고용주와 근로자 기여의 합)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수	<39	39-77	78-116	>116
2008년부터 기여금, DKK/월	0	81	163	244
월 근로시수	<39	39-77	78-116	>116
2008년부터 기여금, DKK/월	0	90	180	270

기여금은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하면 조정된다. 지난 20년간 기여금은 대략 평균 소득에 맞춰 단계별로 인상되었다. 모형에서는 기여금이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2009년에는 대략 10%의 인상이 합의되었다.

2002년까지 기여금 396크로네 당, 지급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65세부터 지급된 연금 급여액 100 크로네가 발생했다. 이것은 (모든 발생 집단에 걸쳐) 약 4.5%의 평균 금리를 의미한다. 2002년부터 명목금리를 1.5%로 가정했다. 모형에서는 다른 OECD 국가의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제도에서 가정한 것과 동일한 금리가 ATP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ATP 제도는 재정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지급 연금과 연금수급권을 똑같이 인상시키며 이것은 보너스 수당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상은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모형에서는 가격 인플레이에 대한 완전 연계를 가정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ATP 연금 지급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모형은 이를 테면 1.5%의 고정된 명목 금리가 아니라 스왑 금리에 기반하고 있다. 새 연금 지급 제도는 보장 및 보너스 풀에 대한 연령차등적 할당이 아니라 일률적인 분배(division)을 채택했으며 모든 기여금의 80%는 보장 풀로, 20%는 보너스 풀로 간다.

경력 차이

수급연기

공적 노령연금 수급은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1년간 연기하면 연금 인출 시의 평균 기대 여명 대비 연기 기간의 비율만큼 증액된다. 예를 들어 인구 예측자료상 68세의 기대여명이 17.1년 이라면 67세부터 1년간 연기할 경우 증액은 $1/17.1=5.8\%$ 만큼 이루어진다.

육아

출산휴가와 부성/모성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기여금액의 두 배가 ATP에 납부된다. 수급자는 기여금의 1분의 3을 납부하며 3분의 2는 정부/지방정부에서 납부한다. 출산/부성/모성 육아휴직 급여는 다 합해서 최대 52주간 지급될 수 있다. 출산 4주 전과 출산 후 첫 14주는 어머니가 사용한다. 아버지는 출산 후 첫 14주 중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부성휴가). 마지막 32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육아휴직) 나눠서 혹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한 경우에는 대개 ATP 기여를 하는 다른 제도로 옮겨가게 된다.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한 젊은 부모가 휴가기간 만료 후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ATP에 기여하면서 일종의 공적 급여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육아로 인한 유급근로를 중간한 기간에 대해 기여나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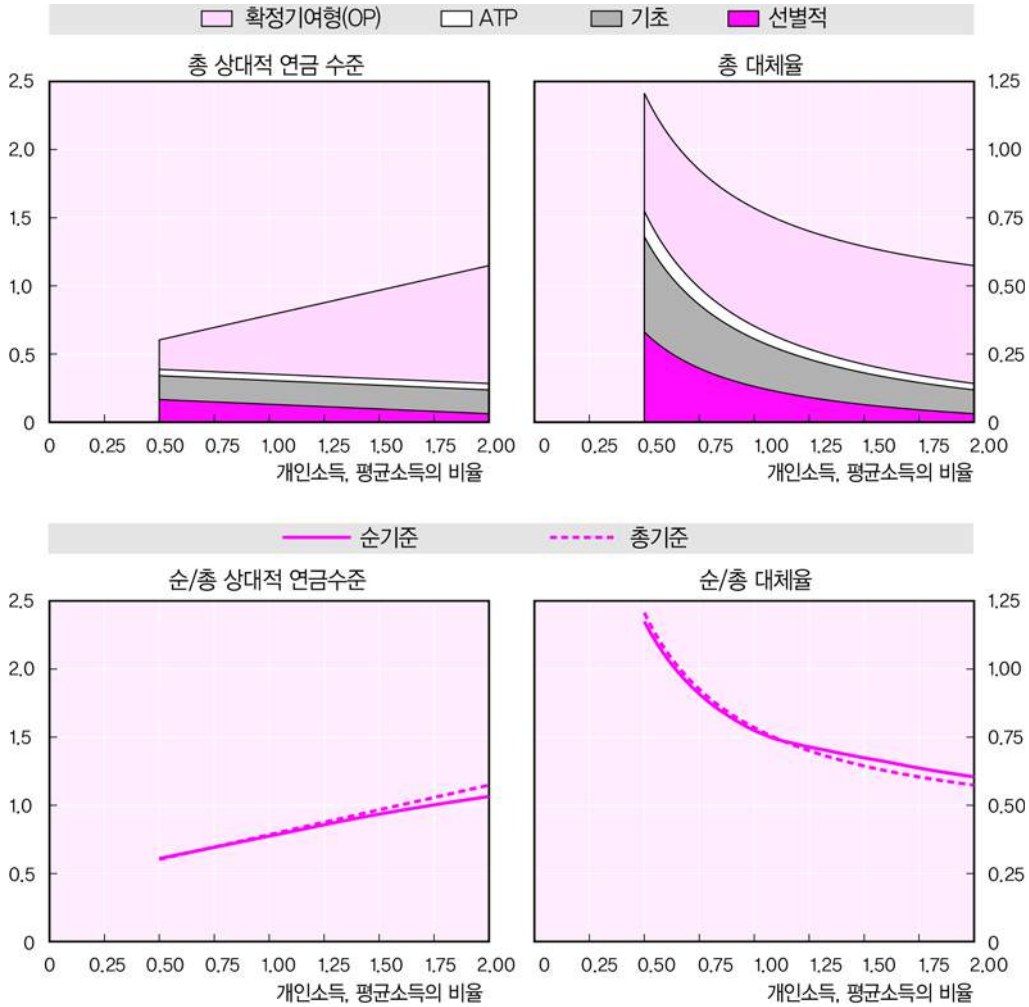
실업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 보험(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정부)이 고용주의 납부 의무를 대신하며 ATP 기여금은 실업보험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회적 부조를 받는 경우 정상 비율) 두 배로 납부된다. 실업보험 급여기간이 종료된 개인이 실업/사회부조 수급 상태인 경우 정부가 3분의 2를 부담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실업기간에 대한 기여나 크레딧은 없다.

실업보험과 연계된 자발적 조기 은퇴 프로그램도 있는데 60세부터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62세로 점차 연장) 정상 은퇴 연령 사이에 급여액을 지급한다. 수급 조건은 최소 30년간 실업보험 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자발적 조기수급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조기수급 제도로 옮겨가는 과도기간 중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액은 실업 급여액과 동일한데 실업 급여의 최대율인 91%를 한도로 하며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3,585 크로네, 시간제 근로자는 2,390 크로네에 해당한다(2012년 자료). 사회연금과 자발적 조기수급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여액 수급자격을 갖춘 후 최소 2년간 자발적 조기수급을 연기하고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실업 급여의 최대율에 해당하는 (2012년 주당 3,940 크로네) 자발적 조기수급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발적 조기수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3년간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일회성 일시불 금액이 2012년의 경우 최대 147,516 크로네까지 지급된다.

연금 모형 결과: 덴마크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74.5	60.3	69.4	78.5	96.7	114.8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73.8	61.0	69.2	77.4	93.4	106.5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83.7	120.7	92.5	78.5	64.4	57.4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82.4	117.5	90.9	77.4	67.4	60.5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9	20.5	15.5	13.0	10.4	9.2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5	14.4	10.7	8.8	7.0	5.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649>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2012년 연금제도

소득비례공적연금과 강제가입 적립형 연금과 결합시킨 연금체계를 두고 있다. 또한, 정액 기초요소와 안전망 공적연금도 있다.

		핵심 지표	
		에스토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11 000	32 40
	미 달러(USD)	14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9	7.8
기대여명	출생 시	74.2	79.9
	65세 시점	16.3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9.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668>

수급조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남자 63세, 여자는 2016년부터 63세로 올라간다. 이후에는 연금수급연령이 점차 연장되어 남녀 공히 2026년에는 65세에 도달하게 된다. 자격조건은 연금수급을 위해 최소 15년 가입하여야 한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정액 기초금액은 2012년 4월 현재 월 120.2유로였으며 소득비례연금과 함께만 지급가능하다.

소득비례연금

연금 급여액은 납부된 평균 기여금 대비 해당 개인 명의로 납부된 기여금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것은 해당 개인의 연간 연금지급계수(coefficient)이다. 은퇴 시 이러한 계수의 누적값에 가입1년당 지급되는 연금액을 곱하여 수급연금액을 산정한다. 1년간의 가입1년당 지급연금액은 2011년 7월 4.34유로였으며 2012년 4월 4.52유로였다.

기여금이나 급여목적의 소득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급연금은 소비자 가격상승률 20%, 기여금 세수변동률 80%를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된다. 이것은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의 1년당 지급액, 선별적 제도상의 급여액 조정 시에도 적용된다.

선별적 연금

최저 퇴직연금보증을 공적연금이 제공한다. 2012년 4월 134.1유로였다.

확정기여형(DC) 연금

적립식 옵션을 선택한 가입자는 소득의 추가 2%를 본인의 연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2011년에는

기여금의 절반,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는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다가 2012년부터는 전액 기여가 재개되었다.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기여금의 4퍼센트가 이 기금으로 전용된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즉, 1983년 이후 출생자)들은 적립식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2011년부터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이 두번째 층(second pillar)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63만명 이상이 개인 계정을 선택했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공적연금 은퇴자가 은퇴했고 기여기간 15년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준연령(장기적으로 60세부터)으로부터 최대 3년 이전에 수급할 수 있다. 연금은 조기수급 매 1년당 4.8%씩 감액된다.

수급연기

공적연금은 정상 수급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금수급을 연기하면 매년 10.8%씩 증액된다. 연기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며 수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여금도 납부하며 연금은 매년 재산정된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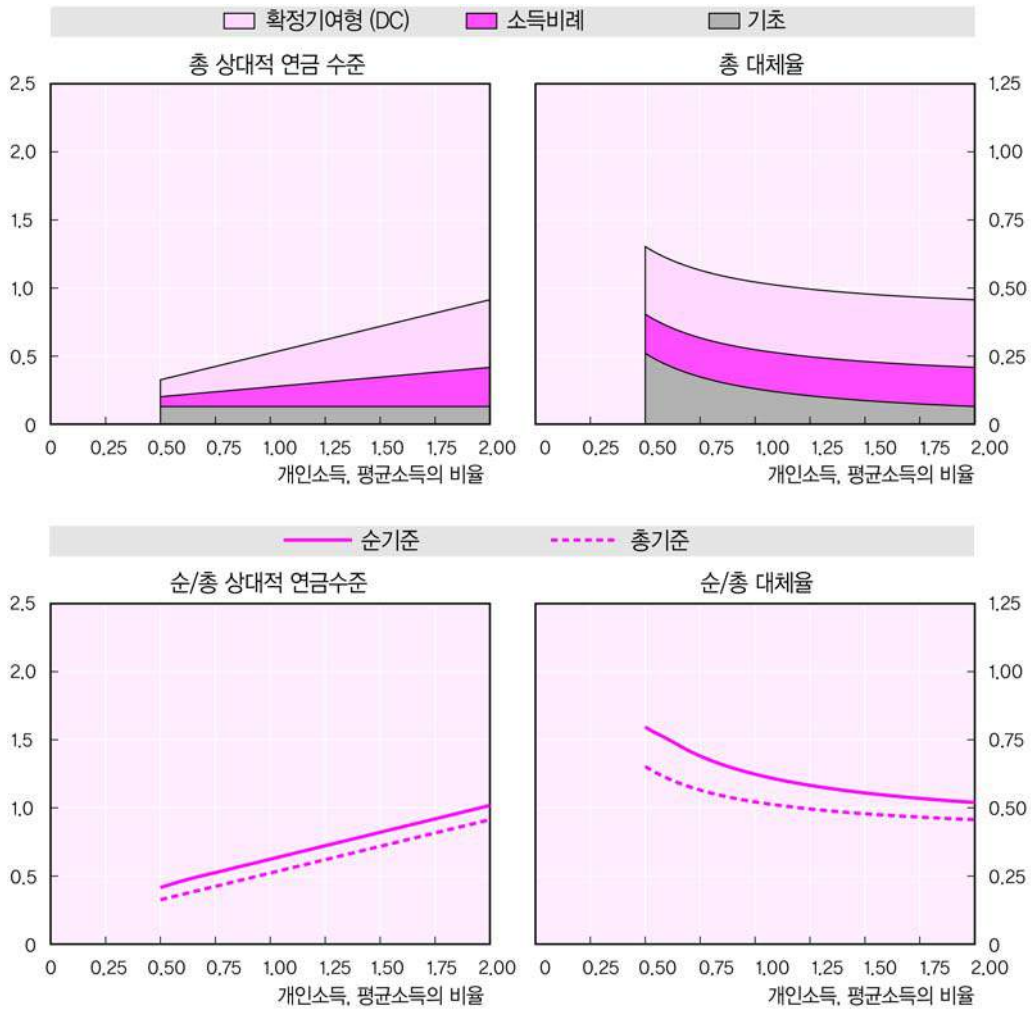
국가에서 자녀당 최대 3년간 양육수당 수급자 앞으로 기여금을 납부해준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20%이다(2012년 290유로). 육아급여 수급자들은 기여금(기여율 1%)을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제도가 바뀌게 된다.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간 소득 비례연금제도에 국가 평균 임금의 4%에 해당하는 월 기여금을 한 쪽 부모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간 연금대상 서비스 연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 규정은 출생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부 부모는 이전 규정에 따라 자녀 한 명당 추가 연금가입연수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실업

실업 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 결과: 에스토니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4.8	32.6	42.4	52.2	71.8	91.4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4.9	41.5	52.5	62.4	82.1	101.8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5.3	65.2	56.5	52.2	47.9	45.7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67.1	79.7	69.0	62.4	55.5	52.0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4	10.1	8.7	8.0	7.2	6.9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1	10.1	8.4	7.5	6.5	6.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687>


핀란드

핀란드: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연금소득조사를 실시하는 기초적 국가연금(국민연금+보충연금), 그리고 적용집단별로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는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제도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사전 적립식이며 공공부문 제도는 부과식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미래 연금부담금의 상수를 분산시키기 위해 보충기금을 두고 있다). 사전 적립은 급여액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지표

		핀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1 500	32 400
	미 달러(USD)	54 7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9.9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4	79.9
	65세 시점	19.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0.9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706>

수급조건

국민연금은 거주기간 조사를 통해 지급하며, 소득비례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 따라 감액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전액으로 받으려면 성인으로서 핀란드에 40년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이 줄어들면 비례적으로 금액도 조정된다. 62세에서 65세 사이에 노령 공적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도 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가장 이른 연령은 195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3세이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얻는데 있는데 필요한 최소대기기간이나 최소 금액한도는 없다. 다만, 최저소득수준에 대한 규정은 있다. 연금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연금은 18세 이후부터 68세까지 발생한다.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지급가능하다.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62세에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하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여러 소득비례 제도 중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TyEL)를 여기에서 다룬다. 이 제도는 핀란드 근로자의 50% 이상이 가입해 있는 제도이다. 다른 소득비례연금 제도의 룰은 TyEL과 매우 비슷하다.

2005년부터 지급률은 18-52세에 연금대상소득의 1.5%이며 53-62세에 1.9%, 63-67세에 4.5%이다.

연금대상 소득은 2005년부터 전체 경력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연금이 연령 집단별로 다르게 발생하므로(상기 참조) 고령 근로자들의 소득은 전체 연금에서 더 큰 가중치를 갖는다. 연금대상 소득이 산정되면 근로자의 연금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에서 차감된다. 2012년, 근로자의 연금 기여는 53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5.15%였고 53세 이상은 6.5%였다. 단, 대체율은 이러한

연금대상 소득 지표가 아니라 전체 총 소득에 대비해 나타난다(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퇴직전 과거소득은 국가차원의 소득과 가격의 조합에 맞춰 재평가된다. 2005년부터 임금 상승은 80%의 가중치를, 가격 인플레이션은 20%의 가중치를 가진다. 가격과 임금 상승에 대한 기초가정에서 이 정책은 연금의 가치를 앞선 연도 급여의 전체 소득 재평가 정책과 비교해 91.5%로 감액한다. 은퇴 후 소득비례연금은 소득 인플레이션 20%와 가격 인플레이션 80% 산식을 이용해 상향 조정된다.

2010년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소득비례연금은 2009년부터의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감액된다. 과거 기록을 기준으로 한 (lagged)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 산정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경우 자료는 2006-10년 평균 자료이며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는 2003-0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012년에서 2050년 사이, 핀란드 통계청의 사망률 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63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에서 26.8년으로 증가한다(남녀공통 사망률로 산정). 조정은 연 2%의 할인율을 이용해 연금 산정의 형태를 띤다. 사망률 예측을 기준으로 한 2050년 예상 조정은 개혁 전 규정에 따르면 가치의 81.7%로 급여액을 삭감한다. 기대여명 계수는 62세에 각 집단에 대해 산정된다.

기여금이나 연금대상 소득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다. 즉, 연금 상한선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에 대해 최저 소득 한도는 있다. 이 한도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여도 가능하다.

핀란드 연금 센터에서는 제도를 조율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소득비례연금 제도의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연금지급을 통일하고 있다.

최저연금(국민연금 및 보증연금)

2012년 독신 연금수급자에 대한 전액 기초 월 급여액은 608.32유로(평균소득의 약 5분의 1)였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소득과 소액 공제(small disregard) 간 차액의 50%만큼 감액되는데 공제액은 2012년에 연 644.40유로였다. 일단 핀란드와 다른 국가로부터의 다른 연금소득이 월 1,257.96유로 또는 1,120.46유로를 초과하면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증연금은 2011년에 발효되었다. 이 연금은 핀란드의 연금수급자들에게 월 713.73유로의 최저 연금수준을 보장해주지만 국가 및 소득비례연금이 합해서 713.73유로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2005년부터 63세 이후 발생한 소득비례(고용)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 시 무시된다.

기초연금 급여는 소득조사와 지급연금액의 기준이 되며 가격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실제로는 별도의 결정에 의해 추가적인 인상이 있었다.

경력 차이

비 표준 경력의 경우, 무급기간에 대한 연금을 산정하는데 급여기준이 사용된다. 연금 발생이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바탕으로 한다면 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는 없다(위의 급여 산정/소득비례 참조). 대개 해당 금액은 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이 계산될 때 이미 차감된다.)

조기수급

조기 국가 노령 연금은 가입자의 63번째 생일 다음 달 초부터 수급이 가능하다(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62번째 생일). 금액은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65세 이전에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 매달 0.4%씩 영구 감액(정상 노령 연금과 비교해)된다. 연금은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도 정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조기수급은 1952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 62세에 가능하며 63세까지 한 달에 0.6%씩 급여액이 삭감된다. 63세 이후에는 연금 삭감이 없다. 그러나 이 연령 이후에는 소득비례 급여의 발생이 더 빨라진다(상기 참조).

수급연기

공적연금은 65세 이후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은 한 달에 0.6%씩 증액된다.

2005년부터 68세 이후 수급연기되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증액은 월 0.4%(종전 연 4.8%)로 낮춰졌다. 63세에서 68세 사이에는 조정이 없으며 이유는 이 시기에 연금 발생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과 근로를 겸할 수도 있다. 2005년부터는 노령연금 수급 이후 소득이 추가적 연금을 발생시키며 지급률은 68세까지 연 1.5%이다.

육아

2005년부터 출산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은 임금의 1.17배를 기준으로 발생되며 이는 가족급여의 기준이 된다. 최대 유급 육아휴가는 11개월이다.

육아수당을 수급하는 무급 육아휴직 기간(아버지건 어머니건)에 대해서는 휴직자가 평균소득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월 675.98유로(2012)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이 발생한다. 이 조건은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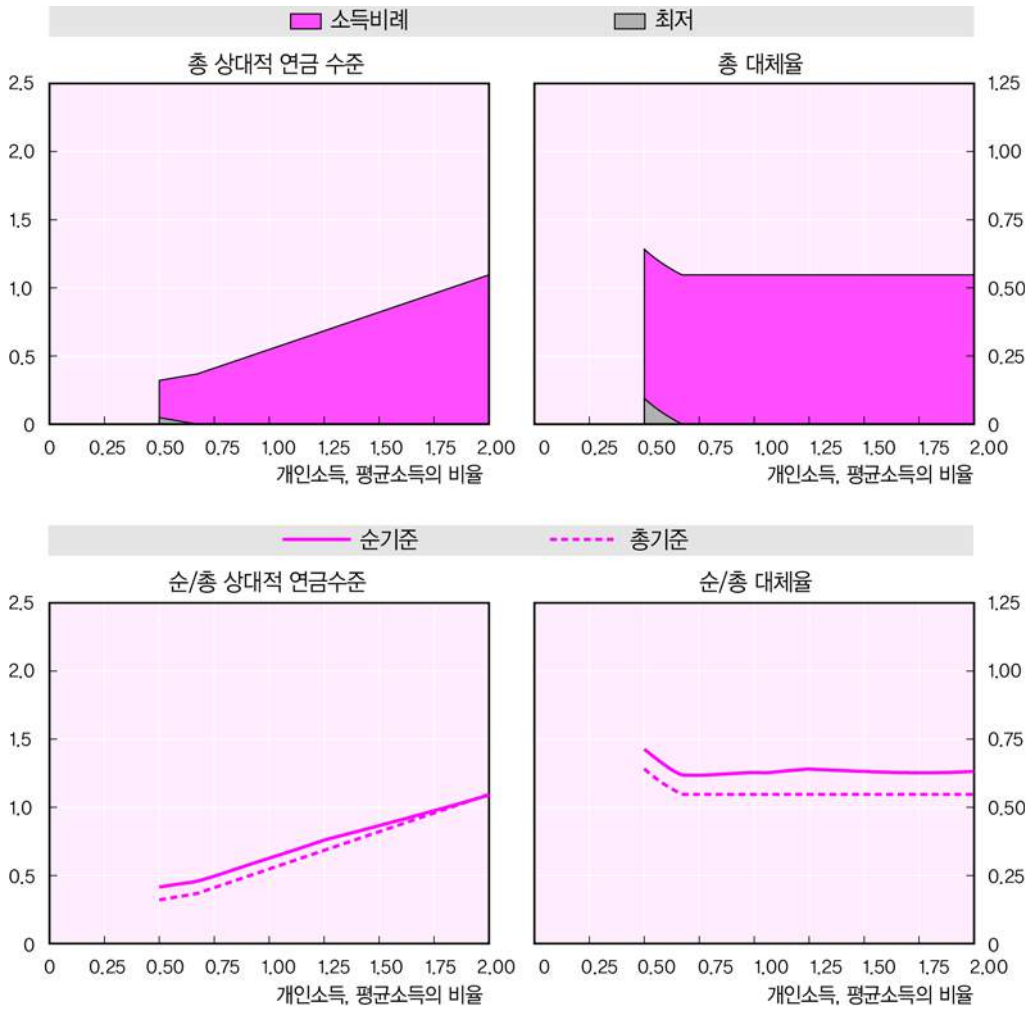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은 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유급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금은 소득비례연금제도에서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가 기간에 대한 연금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실업

2005년 개혁 이후 소득비례 실업 급여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비율(75%)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을 발생시킨다. 63세 이전에 수급하는 실업급여만 연금 크레딧을 발생시킨다.

실업 보험 급여는 500일간 지급된다(약 23개월간 월 평균 21.5일). 500일이 끝나기 전에 59세가 되는 경우(1955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는 60세) 소득비례 실업급여가 65세까지 지급될 수 있다. 500일 이후 수당을 수급하는 사람들은 63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할 자격이 생긴다(1958년 이전 출생자는 62세 가능). 이런 경우 조기수급에 대한 감액은 없으며 소득비례 실업 급여는 중단된다. 소득비례 실업급여 기간 이후에는 정액 또는 소득조사적(다양한 조건에서) 실업 부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들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연금 수급권 용도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연금 모형 결과: 핀란드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9.3	32.1	41.1	54.8	82.1	109.5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7.5	41.5	49.5	62.8	86.6	108.9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4.8	64.1	54.8	54.8	54.8	54.8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62.4	71.3	61.7	62.8	63.2	63.2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5	11.1	9.5	9.5	9.5	9.5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7	10.0	8.0	7.6	7.0	6.6
	9.1	11.8	9.4	9.0	8.3	7.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725>


프랑스

프랑스: 2012년 연금제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프랑스 연금체계는 두 개의 강제가입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인트 제도에 기반한 소득비례공적연금과 기업퇴직연금제도가 그것이다. 공적제도는 또한 자산조사없는 최저 기여 연금(minimum contributif)을 갖고 있다. 그 외에 노인을 위한 선별적 최저소득이 있다(minimum vieillesse).

핵심 지표

		프랑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36 700	32 400
	미 달러(USD)	48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3.7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6	79.9
	65세 시점	20.8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0.0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744>

수급조건

완전 공적연금을 수급하려면 최저 기여 기록(40년에서 41.5년으로 연장)이 있고 최저 법적 연금 수급연령(60세에서 62세로 상향)에 도달했거나 전액 연금 수급 연령(65세에서 67세로 상향)에 도달해야 한다. 최저 기여기간은 법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2010년 개혁에 따르면 최저연금수급 연령이 2017년까지 60세에서 62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출생년도와 전액 연금 연령에 따라 다르며 전액연금 연령은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최저 기여 연금(minimum contributive)은 은퇴자가 전액 연금의 법적 조건을 충족할 때 연금 수준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모형에서 주된 가정은 2012년 20세의 나이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기여기간은 47년이라는 것이다. 이들 가정은 2059년 연금 수급개시 연령 67세가 됨을 의미한다(62세 은퇴연령보다 5년이 연장).

급여 산정

소득비례

공적연금은 완전경력(상기 설명했듯이 연장되는 중)이후 대체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빠진 각 분기에 대해, 연금은 두가지 수단을 통해 감액된다.

- 연금율은 1.25%만큼(또는 각 빠진 연도에 대해 5%씩) 감소한다. 이 비율(décote)은 1953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 그리고 연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각 빠진 분기에 대해 0.61% - 1/N씩. 여기서 N은 완전 경력의 분기 수.)

소득 지표는 소득 최고기간 년수를 기반으로 하며 가격 인플레이에 맞춰 재평가된다. 2008년부터 소득지표는 최고소득기간 25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값을 적용한다.

연금 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지표의 년수에 대한 기준과 가격에 맞춘 재평가 정책 때문에 프랑스 공적 제도의 대체율은 근로자의 경력 기간 전체 중 소득의 시간 프로파일에 민감하다. 근로자의 경력 기간 중 실질 소득성장이 계속해서 2%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점과 OECD 산정에서는 생애 재평가 평균 소득을 기준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된 대체율은 프랑스에서 관찰된 임금 누진을 이용해 산정된 대체율보다 낮는데, 프랑스에서는 인상이 실질적으로 주로 경력의 전반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연금대상 소득에는 한도가 있는데 2012년에는 36,372유로였다. 이는 OECD 지표의 평균 소득과 대략 비슷하다. 지급 급여는 가격에 연계된다.

기여 최저연금 (“minimum contributive”)

“일반 제도(regime general)”와 비례제도에 비 선별적 최저연금이 존재한다. 즉, 다른 기초 또는 보충 연금제도로부터 수급하는 연금액수는 관계가 없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기여기간 41.5년이 있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한다(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 (기간이 짧으면 최저연금은 비례적으로 감액). 2012년, 연 급여액은 7,451.10유로였다. 이 금액은 연금수급자가 최소 120 분기동안 기여금을 납부했을 때 8,142.01유로로 상승한다. 이것은 OECD 지표의 평균소득의 22%에 해당된다. 최저연금의 가치는 가격에 연계한다.

강제적 퇴직연금

ARRCO 제도는 민간부문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전문직/관리직 종사자(cadres)와 전문직/관리직 비 종사자(non-cadres)”). 그리고 AGIRC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직/관리직 종사자”에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은 “비 종사자(non-cadres)”에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실제 기여가 더 높다 하더라도 급여는 공적제도 상한선 미만 소득의 6%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공적제도 한도의 1~3배 사이에서 급여는 소득의 16%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ARRCO 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세 배인 109,116유로이다(전문직/관리직 종사자를 위한 AGIRC 제도 상한선은 공적연금제도의 8배).

매년 적립한 포인트의 수는 연금포인트 비용으로 나눈다. 은퇴 시, 적립된 포인트는 연금 포인트 가치를 곱하여 연금 급여액으로 환산된다. 연금 포인트 가치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2135유로였으며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2414유로여서 2012년에 대한 연간 수치는 1.2344유로가 된다. 연금 포인트 비용은 2012년의 경우 15.0528유로였다.

연금 포인트의 비용과 가치의 조정이 사회적 파트너 간에 합의되었다. 2012년까지 유효한 현재의 합의는 연금 포인트 비용을 소득에 맞춰 인상하고 연금포인트 가치는 최소한 가격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다. 모형에서는 포인트의 비용과 가치를 이렇게 다르게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초반 년도의 수급액을 가격에 맞춰 실질적으로 재평가하는 이러한 정책 때문에 급여액은 소득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보다 낮아진다.

이 두 개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지급연금의 경로(여기에서는 “연계”로 표현)와 연금을 발생시킨 시점과 수급하는 시점 간의 연금 수급액 가치 변화(소득비례제도의 “재평가” 프로세스와 유사) 둘 다에 영향을 미친다.

선별적 최저연금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PSA)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 자산조사적 최저 소득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데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1일까지 독신자의 경우 연 8,907.34유로 (부부는 14,181.30유로)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는 각각 9,325.98유로와 14,479.10유로)이다. 이 급여는 OECD 평균 소득의 24%에 해당되는데 가격에 맞춰 조정된다. 완전 경력 근로자들은 강제적 퇴직연금에서 공적 연금 급여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노령 부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 즉 최저 법적 연금수급연령 이전의 연금 수급은 기여기간 요건을 채운 사람들의 경우 공적연금 제도에서 허용된다. 1952년 출생자로서 16세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실질 기여를 최소 43.5년간 했던 이들의 경우 56세(+8개월), 16세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최소 43.5년간 가입한(실질 기여기간 최소 42.5년)이들은 59세(+4개월), 20세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가입기간 최소 43.5년 (실질 기여기간 최소 41.5년)인 이들의 경우 60세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모형에서는 20세 진입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조기 수급연령은 62세이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조기수급이 가능한데 수급연령 또는 기여년수 또는 둘 다에 따라 감액된다. 기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0세 수급이 감액없이 가능하다. 기여기간이 부족한 경우 연금은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금수급연령 또는 빠진 년수 중 유리한 쪽에 맞춰 조정된다. 예를 들어 완전 연금 은퇴연령보다 5년 앞서 수급하는 경우 연금은 전체 금액의 78%로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기간이 1년 부족한 경우라면 96%까지만 감액된다.

완전 연금수급연령(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까지의 거리	10	9	8	7	6	5	4	3	2	1
완전 기여기록에서 빠진 년수						5	4	3	2	1
계수	0.43	0.50	0.57	0.64	0.71	0.78	0.83	0.88	0.92	0.96

수급연기

법적 최저 연금수급 연령 이후에도 근로하면서 전액 연금의 기여조건을 충족한 경우 (2012년에는 가입기간 41년), 공적제도상 1년에 5%씩 급여액이 인상된다. 연기된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ARRCO 포인트를 축적하게 된다.

전액 연금을 받는 경우 근로와 연금수급을 한도없이 병행할 수 있다. 전액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한 한도가 있다.

육아

2010년 이후 출생했거나 입양된 아동에 대해 공적제도에서는 자녀 1명당 3분기의 크레딧이

어머니에게 주어지는데 어머니가 이 기간 중 계속해서 근로를 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또한, 생물학적 부모 중 한 사람에게 4년의 크레딧이 주어진다(교육기간 1년당 1분기). 자녀가 16세가 되기 전에 최소 9년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공적 제도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최종 연금 지급액을 10% 인상해준다.

육아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거나 시간제로 근로한 기간 역시 공적제도와 퇴직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AVPF-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 Foyer). 크레딧은 부모가 최저임금을 버는 것으로 가정해 주어진다. 첫 두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이 적용되며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가족 급여 수급 및 소득 조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 크레딧은 공적제도에서 자녀 한 명 당 2년씩 누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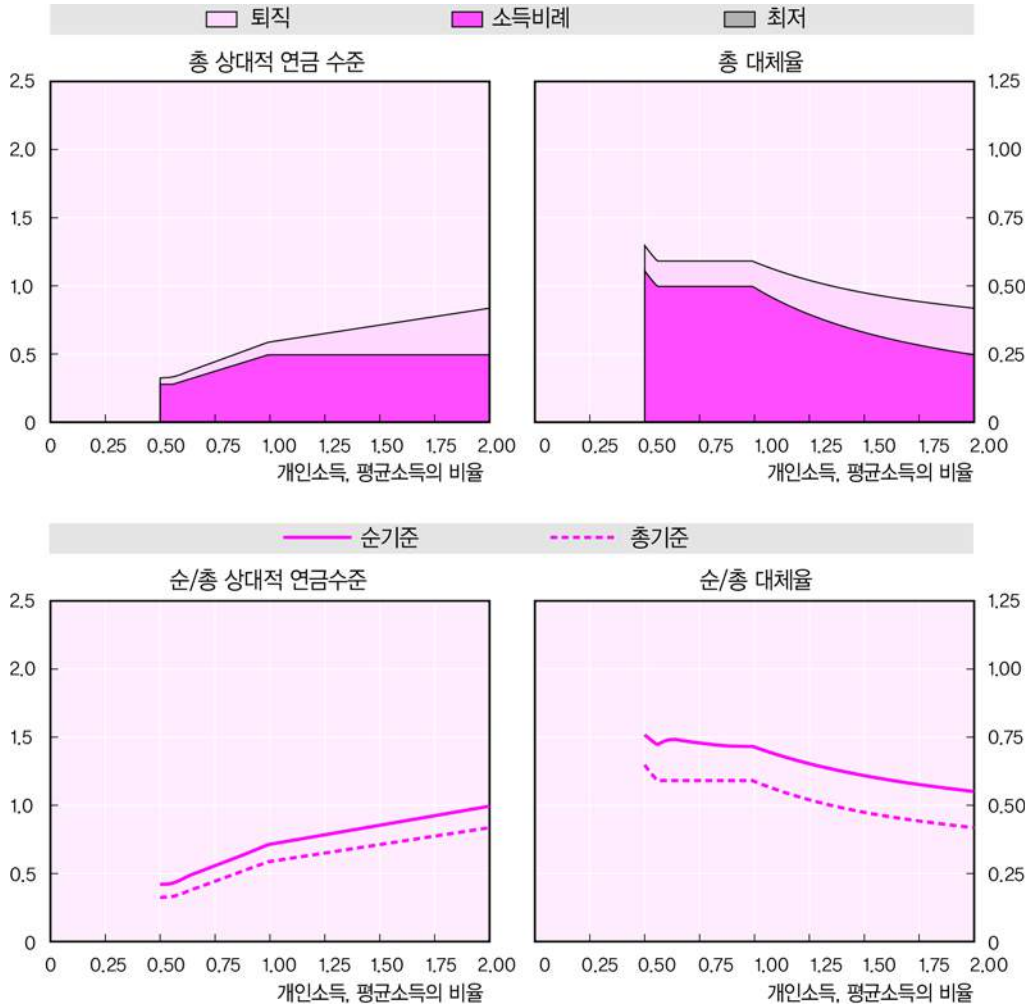
실업

비자발적 실업 기간은 공적연금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미만의 경우 1년(55세 이상은 5년)이 한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50일을 기여기간 1분기로 산정하며 연 최대 4분기까지 인정된다. 이 기간은 25년간의 최고 소득기간을 바탕으로 하는 평균 기준 임금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최초 실업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의 크레딧이 있다(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기간에 대해서는 1년반). 이후의 비자발적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기간 이후인 경우에만 최대 1년까지 크레딧을 준다. 사회적 부조 (revenue minimum d'insertion) 수급 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실업기간 시작 이전에 강제적 퇴직연금제도 중 한 곳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실업기간 중에 연금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이 포인트는 “일간 기준 임금”에 맞춰 산정되며 일간기준임금은 마지막 임금(연봉)을 365로 나눈 금액이다.

연금 모형 결과: 프랑스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7.9	32.4	44.3	58.8	71.2	83.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9.4	42.0	55.7	71.4	85.4	99.4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9.1	64.8	59.1	58.8	47.5	41.8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72.3	75.9	72.9	71.4	60.9	55.1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6	10.5	9.6	9.5	7.7	6.8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5	9.7	8.6	8.3	6.6	5.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763>


독일

독일: 2012년 연금제도

법정 공적연금체계는 단일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비례 부과방식 제도이다. 연금의 산정은 연금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나오는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사회부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지표

		독일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4 800	32 400
	미 달러(USD)	59 1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1,3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6	79,9
	65세 시점	19,3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4,8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782>

수급조건

현재 일반 노령연금은 최소 기여년수 5년이면 65세 1개월부터 수급할 수 있다. 기여년수가 5년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2년부터 이후 20년간 법정 수급개시 연령은 67세로 점차 상향 조정된다. 1964년 및 그 이후 출생자들은 법정 수급개시 연령이 67세가 된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

가입자가 평균소득 수준으로 1년간 기여하면 1 연금 포인트를 확보한다. 평균소득은 국민계정 평균소득과 거의 비슷하다. 기여의 근거가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얻게 되는 연금 포인트도 1보다 크거나 작아진다. 기여는 2012년 연 소득 최대 67,200유로에 대해서 부과된다. 상한선은 관련 평균 소득의 207%에 해당된다. 평균소득은 2012년 32,446유로였다. 이는 OECD 평균 소득 지표의 72%에 불과하다.

은퇴 시에는 매년 취득한 연금 포인트가 합해진다. 그리고 연금 포인트의 합계를 “연금 포인트 가치”로 곱하는데 201년에는 336.84 포인트였다. 연금 포인트 가치는 신규 은퇴자 및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연금 포인트 가치는 출발점으로 총 임금상승에 비례하여 매년 조정된다. 뿐만 아니라 “기여 인자(contribution factor)”는 법정 연금 제도와 보조금을 받는 (자발적)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기여율 변화를 반영한다. 기여율이 증가하면 연금 포인트 가치의 조정이 줄어들게 된다. 표준화된 연금수급자 수 대비 표준화된 기여자 수 변화를 측정하는 “지속가능성 인자(sustainability factor)”는 연금 포인트 가치 조정을 법정 연금제도의 부양비 변화에 연계한다. 이 부양비는 연금 수급자 대 기여자의 비율이다. 연계 산식에서 이 두가지 요소는 조정의 규모를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1인당 총 임금 대비 연금포인트 가치 증가율을 14% 낮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여율 증가는 현재의 19.6%에서 22%로 제한된다.

연금 포인트 가치뿐 아니라 연금 포인트 산정을 위한 관련 평균 소득은 동독지역에서는 약간 다른 값이 적용된다. 이 차이는 임금과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가정했다.

사회적 부조

만일 모든 소득원으로부터의 개인 노령 연금액이 충분치 않다면 부가적인 자산조사적 급여를 사회적 부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급여는 개인의 일차적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조사적 급여는 개인의 니즈와 가중치 가구 균등화 소득(연금 급여를 포함)의 차이이다. 이러한 니즈의 평균은 자산조사적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2011년 1인당 8,484유로로 산정되었다. 이는 관련 평균 총 소득(2011년 30,300유로)의 28%, OECD 평균소득(2011년 43,700유로)의 19%에 해당한다.

자발적 사적연금

은행, 보험회사 또는 투자펀드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자발적, 사적연금(소위 **Riester** 연금)도 존재한다. **Riester** 연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모형에서는 기여율을 4%로 가정하고 있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입기간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급여액은 영구 차감에 의해 감액되는데 법정 은퇴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감폭도 커진다. 67세 이전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급여는 연금수급자가 법정 연금수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까지 매년 3.6%씩 영구 감액된다. 그리고 63세에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는 67세에 개시하는 이와 비교했을 때 연금 수급액이 훨씬 낮아지는데 근로년수가 4년 짧고 추가 연금 포인트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도 있다. 장애정도 최소 50%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35년 이상의 기여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60세에 연금 수급개시가 가능하며 최대 감액률은 10.8%이다. 이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2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법정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데 있어서 예외가 존재한다. 연금 가입상태로 45년간, 고용 또는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이나 육아를 한 경우 감액없이 65세에 연금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수급연기

연금수급연령을 연기하면 법정연금수급연령 이후 한 달에 0.5%씩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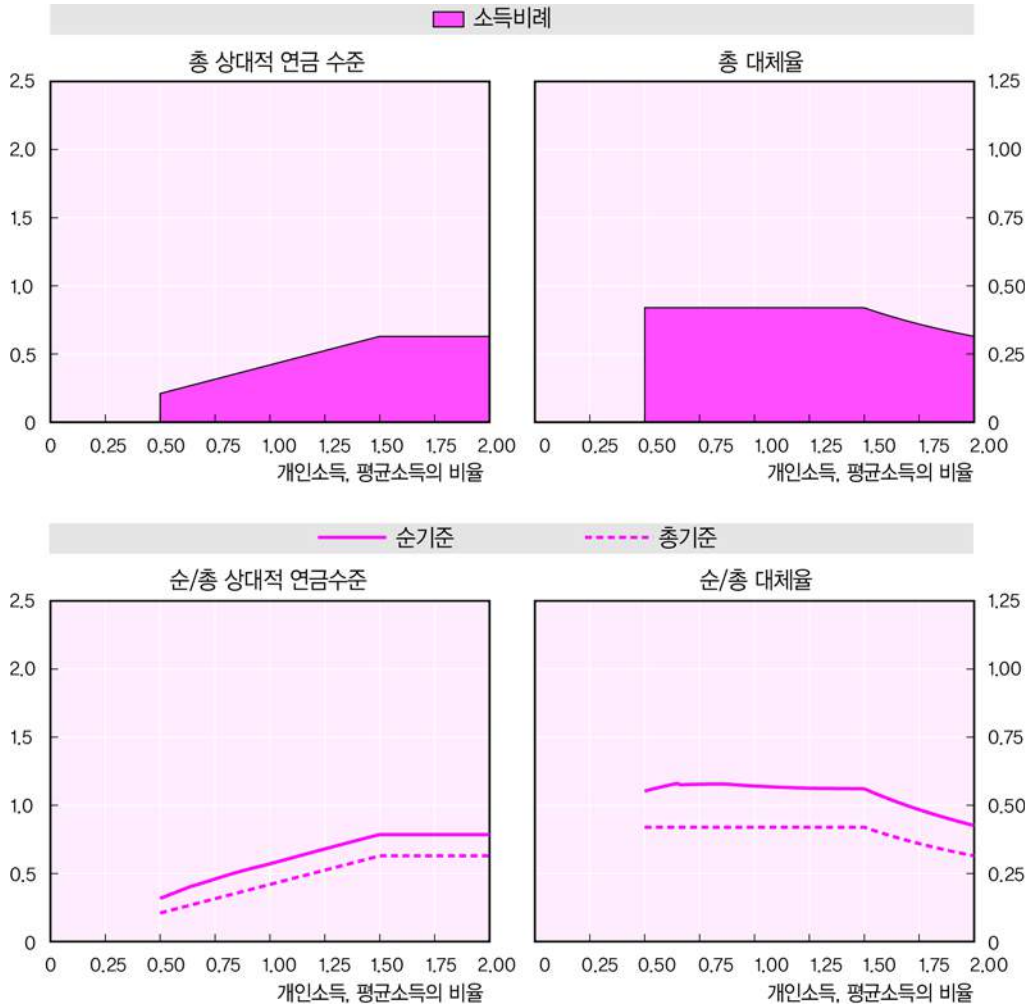
1992년 또는 그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한 명의 부모가 3년간 연 1포인트씩 연금포인트를 취득한다(평균소득 기준 기여와 동일). 1992년 이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가 1포인트만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부모가 고용상태이건 아니건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양쪽이 나눠가질 수 있다. 또한, 1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양육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기간은 연금 수급요건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며 (*Berücksichtigungszeit*) 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10세 미만 혹은 최

소한 두 자녀가 10세 미만일 때 근로하는 부모는 연 최대 0.33 포인트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액이 연 1 연금포인트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이러한 양육관련 혜택은 세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

실업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을 대신해 연금제도에 기여한다. 1단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실업 직전 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한다. 1단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 및 기여년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된다. 그 이후에는, 자산조사적이며 더 낮은 비율이 지급되는 두번째 유형의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로 넘어가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실업보험이 연금제도에 어떤 재정적 기여도 하지 않는다.

연금 모형 결과: 독일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6.5	21.0	31.5	42.0	62.9	62.9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1.8	31.7	45.9	57.1	78.6	78.6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42.0	42.0	42.0	42.0	42.0	31.5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57.8	55.2	57.7	57.1	56.1	42.6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8.2	8.2	8.2	8.2	6.2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9	7.4	7.1	6.7	6.1	4.6
	8.1	8.6	8.4	7.8	7.1	5.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801>

그리스

그리스: 2012년 연금제도

연금은 소득비례공적제도와 일련의 최저연금/사회안전망을 통해 제공된다.

		핵심 지표	
		그리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20 100	32 400
	미 달러(USD)	26 5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3,0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7	79,9
	65세 시점	19,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1,7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820>

수급조건

2013년 1월1일부터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남녀 공히 67세이다. 연금을 수급하려면 4,500일의 기여 이력(15년에 해당)이 필요하다. 기여이력 12,000 근로일(40년)인 근로자들은 62세라면 급여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고되거나 비위생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부양자 또는 장애아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는 혜택이 있다. 최저 노령연금은 15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다.

수급 산정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 지급률(2015년 1월1일부터)은 연 0.80%(보험가입기간 300일부터 4,500일까지)에서 연 최대 1.5%(11,701일부터 15,000일까지의 임금에 대해)로 증가한다.

2013년 1월 1일 현재 크리스마스, 부활절, 여름 보너스(소위 13월과 14월 연금) 지급은 중단되었다.

1993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입자에 대해 노령연금 급여액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액은 2011년 2,773.40유로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연금의 절반은 GDP 성장률의 연 증감에, 나머지 반은 CPI 증감에 연계되며 CPI의 연 증감이 조정의 한도가 된다.

기초연금

2015년 1월 1일부터 수급자가 67세 이상이고 최소 15년간 그리스에 영구 거주했으며 과거 소득을 바탕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모든 사회보장기구가 기초연금을 제공하게 된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능하다. 패널티(월 1/200씩 감액)가 따른다. 다만, 경력기간이 매우 길거나(62세에 40년), 고되고 건강에 해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며 더 유리한 조건에 따라 노령 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연수	가능 연령	조건
15	67	감액 없음
15	62	감액 있음(1/200)
40	62	감액 없음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가능하며 공공부문 근로자를 제외하고 강제수급은 없다. 연금수급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인출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007.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소득분은 70% 감액되지만 피부양 자녀가 있으면 임금이 여섯 배 증액(increment of six wages)된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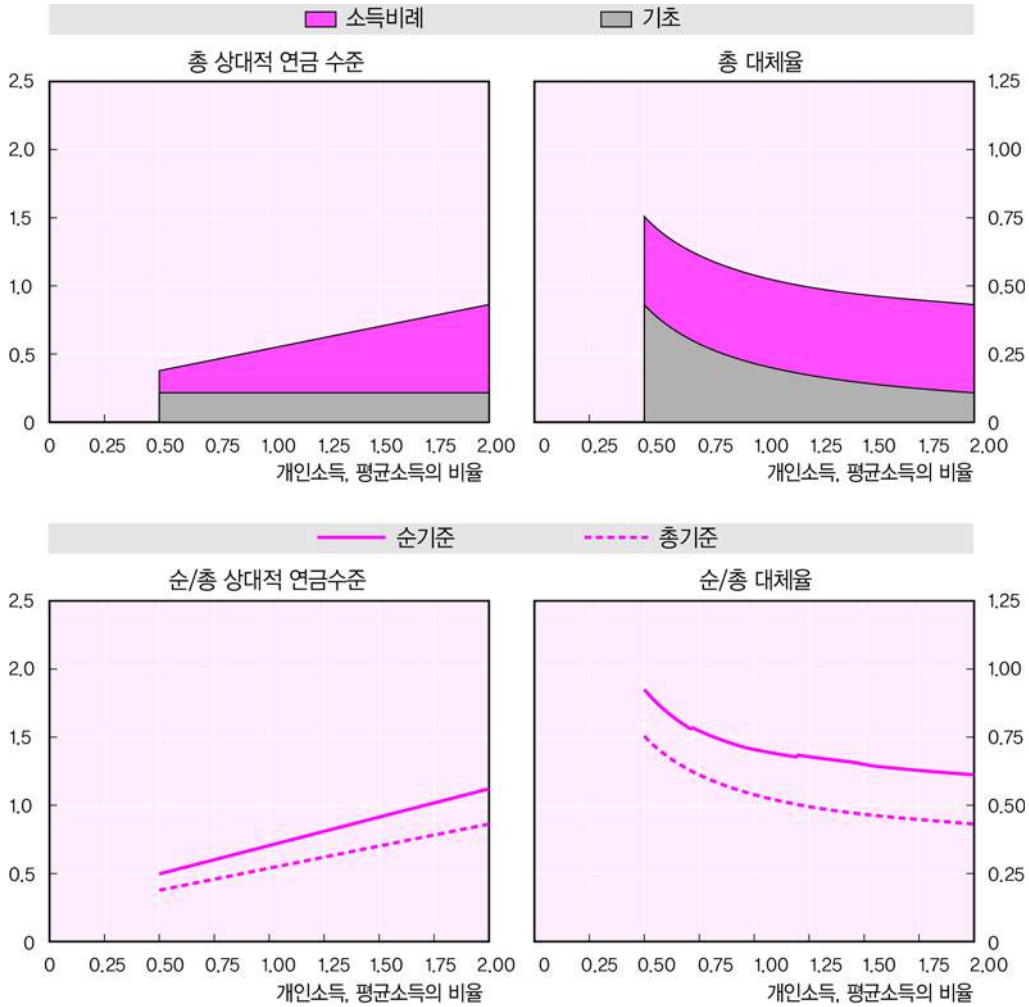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수급조건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첫번째 자녀에 대해 1년(가입기간 300일),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2년(가입기간 600일), 최대 세 자녀까지 연금 수급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단,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들이어야 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급조건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이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 중 어느 쪽이건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는데 가상의 보험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 또는 300일, 두번째 및 그 이후 자녀는 2년이며 전부 합해 최대 5년까지). 2013년부터 가상의 보험기간 최대 한도는 6년이 되었다.

실업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엄격한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의 경우, 실업기간(자발적 실업이건 비자발적 실업이건)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전제조건 충족을 위한 가상의 보험 기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평생 1년 또는 3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3년부터 최대 6년간의 가상기간이 적용된다. 연금 수급자격요건에 고려되는 모든 가상의 기간은 2014년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금 모형 결과: 그리스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3.5	37.7	45.8	53.9	70.1	86.2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7.2	49.7	60.1	70.5	91.3	112.1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64.0	75.4	61.1	53.9	46.7	43.1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79.6	92.5	77.3	70.5	65.0	61.2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2	12.1	9.8	8.6	7.5	6.9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5	13.5	10.9	9.7	8.4	7.7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0	11.9	9.6	8.4	7.3	6.7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2	13.3	10.7	9.4	8.1	7.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839>


헝가리

헝가리: 2012년 연금제도

헝가리 연금제도는 강제적이고 통일된 확정급여형(DB) 부과방식 제도로 소득비례 공적연금을 최저연금과 결합시키고 있다.

핵심 지표

		헝가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포린트(HUF, 백만)	2,75	9,43
	미 달러(USD)	12 5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9,9	7,8
기대여명	출생 시	74,5	79,9
	65세 시점	16,1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7,2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858>

수급조건

표준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녀 공히 62세 6개월이다. 이는 2010년부터 상향조정 중이며 2022년에 65세에 도달하면 끝난다. 뿐만 아니라 소득비례제도와 최저연금 둘 다 20년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 15년 근무한 경우 부분연금만 수급할 수 있다. 은퇴는 필수는 아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사회보험연금제도가 개혁되었다. 이 일자 이후부터 이전의 조기수급 연금은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표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는 통일된 강제적, 확정급여형 제도로 소득비례연금은 가입 첫 10년 평균 소득의 33%에 11년에서 25년까지는 추가 1년당 2%씩 부가된다. 26년에서 36년까지는 1년에 추가 1%, 36년에서 40년까지는 연 1.5%씩 추가된다. 40년 이후에는 매년 2%씩 더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1988년부터 모든 년도의 순총 급여(즉, 총 임금에서 종업원의 기여분을 뺀 것)에서 전체 생애(full lifetime)로 이동해가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 순 급여로 바뀌었다. 초반 년도 급여는 2006년에 은퇴 2년 전 시점까지 국가차원의 평균 급여로 재평가되었다. 은퇴 전 마지막 3년의 소득은 전혀 재평가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재평가로 바뀌었다(은퇴 직전연도까지, 2009년). 연금지급액은 2001년부터 절반은 임금에 절반은 가격에 연계되었으나 추가적인 임시 인상이 적용되었다. 연간 조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연금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화에 연동되므로 연금인상지수는 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2012년까지 연금대상 소득에는 일 21,000 포린트의 한도가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 한도가 폐지되었다.

최저연금

최저연금액은 월 28,500포린트이다(평균 소득의 약 12%). 정부는 그 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은 2009년 이래 변경되지 않았다.

강제적 사적연금의 전환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강제적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제도에 대한 모든 기여금 납부가 중단되었고 모든 기여금은 공적연금제도로 방향을 틀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가입자들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잔류할지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로 돌아갈지 결정해야 했다.

전환 전(2010년 말)에는 혼합형 제도의 가입자가 약 310만 명이였다(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전환 후에는 10만2천명의 가입자만이 확정기여형(DC) 제도에 잔류했다. 2011년 12월 31일부터 사회보장기여금 전체(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분)가 연금보험기금(Pension Insurance Fund)으로 가고 있다. 사적연금 가입자들은 개인 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 이전에 탈퇴를 선택했던 가입자들 역시 공적 소득비례연금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2012년 3월 31일까지). 확정기여형(DC) 사적연금제도에 누적된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연금은 공적연금제도와 동일한 연금지급액 연계를 제공해야 한다. 연금율 산정은 남녀공통의 사망률 표를 사용한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2011년 1월 1일부터 적격기간 40년인 여성을 위한 새로운 조기수급 옵션이 도입되었다. 이 옵션은 연령에 관계없이 적격기간이 최소 40년이고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적격기간에는 소득활동기간이나 산모수당, 육아수당, 재가 아동 양육수당, 양육지원금, 개호급여 등의 수급 기간이 포함된다. 육아를 위한 이들 기간 외에 최소 32년의 소득 활동 또는 개호급여의 경우 소득활동기간 30년이 필요하다. 적격 기간은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 한 명당 1년씩 줄어드는데 다 합해서 최고 7년까지 줄일 수 있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몇몇 관대한 조기 수급 옵션이 공적연금제도에 존재했다. 근로기간이 긴 사람들은 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거나 급여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고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 때문에 조기수급 신청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광부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해놓은 직종의 종사자들은 해당 직종 근무기간이 최소 25년이면 조기연금수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특별연금규정이 군인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이들은 매우 일찍 은퇴할 수 있었다. 또한 전직 시장 및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현재는 구 규정에 의해 조기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기적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수급연기

소득비례연금의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은 연기한 기간에 대해 월 0.5%씩 증액된다.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을 얻는 연금수급자들에게 365일의 근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정이 이루어진다. 2011년 1월 1일 기준 조정은 연 소득을 12로 나눈 비율의 월 0.5%였다.

육아

1998년부터 연금 기여금은 육아관련 급여에 기초하여 납부되어야 하며 육아 급여액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이들 급여는 연금 기준에 반영된다. 수급가능한 관련 급여는 산모수당, 육아안심급여, 양육수당 및 육아지원금 등이 있다.

산모수당 (terhességi gyermekágyi segély)은 임신기간 중이거나 출산 후 여성에게 24주(168일)간 지급된다. 급여는 전년도 일 평균 총 소득의 70%수준이다. 육아안심급여 (gyermekgondozási díj)는 산모수당이 만료된 이후 부모 중 한쪽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모의 보험기간만큼 제공되지만 자녀가 두 살이 될 때까지(최대 84주) 수급 가능하다. 급여액은 전년도 일 평균 총 소득의 70%로 최저임금의 두 배까지이다(2013년 130,200 포린트). 2012년 10%였던 개인연금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양육수당 (gyermekgondozási segély)은 부모 중 자녀가 세 돌이 될 때까지(최대 36개월) 또는 쌍둥이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한 년도 말까지, 중증장애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경우 열 살이 될 때(최대 120개월) 해당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나온다. 월 금액은 가족 내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08년 1월부터 28,500 포린트로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며 쌍둥이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의 첫 돌 이후에는 조부모가 급여액을 수급할 수도 있다. 개인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2012년에는 10%였다. 육아지원금 (gyermeknevelési támogatás)은 부모 중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수당으로 막내의 세번째 생일과 여덟번째 생일 사이 기간에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수급한다(최대 60개월). 월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저 노령연금액과 동일하다.

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해당 가구의 구성과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단 기간의 합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급여액은 부가되지 않는다.

2012년, 육아수당을 제외한 연금 기여금은 다음 기관에서 납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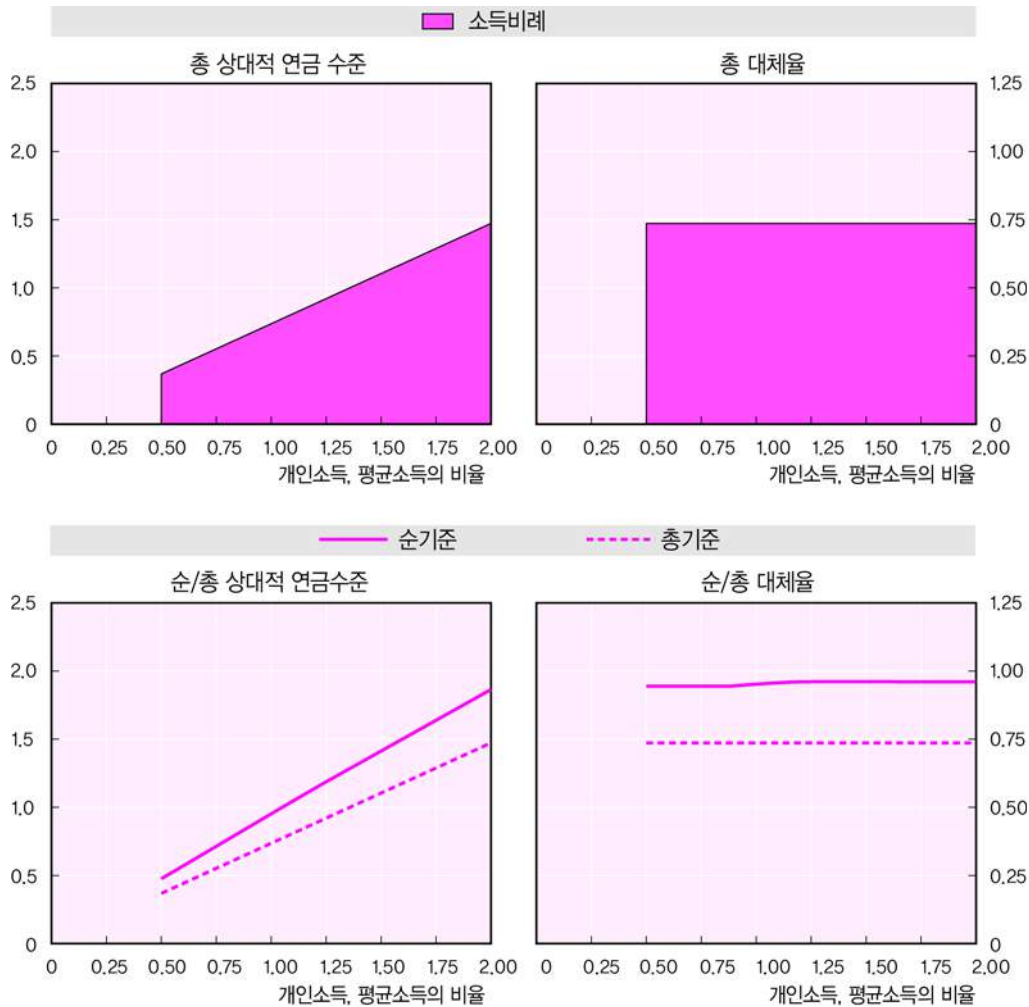
	개인	고용주	정부
산모수당	-	-	-
육아안심급여	×	-	-
양육수당	×	-	-
육아지원금	×	-	-

실업

실업자들은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실업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실업기간에 대한 소득 지표는 (i) 실업급여액 또는 (ii) 실업 소득의 평균 중 유리한 것으로 한다.

고령실업자들은 140일간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했고 5년 이내에 연금수급가능연령에 진입하며 연금수급가능 연령 진입 후 8년 이내에 실업급여수급액을 소진했고 최소 20년간 연금제도에 기여했다면 연금수급연령 전 특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연금 모형 결과: 헝가리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4.5	36.8	55.2	73.6	110.5	147.3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70.4	47.6	71.4	95.2	141.3	186.4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73.6	73.6	73.6	73.6	73.6	73.6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94.4	94.4	94.4	95.2	96.1	96.0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5	10.5	10.5	10.5	10.5	10.5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8	8.8	8.8	8.7	8.6	8.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877>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2012년 연금제도
 소득조사적 기초 공적연금(국민연금)이 있으며 강제적 퇴직연금도 있다.

		핵심 지표	
		아이슬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나(ISK, 백만)	6.08	5.48
	미 달러(USD)	47 3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7	7.8
기대여명	출생 시	82.0	79.9
	65세 시점	20.0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1.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896>

수급조건

정상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67세이다. 전액 기초연금은 40년간 거주해야 수급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비례적으로 감액되며 16세에서 67세 사이에 최소한 3년은 거주해야 한다. 민간부문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연금수급연령은 67세이나 바다에서 25년 이상 일해온 어부의 경우는 60세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모두에게 최저연금을 보장하며 연기금에 납부해놓은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납부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완전 기초연금액 가치는 연 393,300 크로나로 평균소득의 6.5%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공적연금은 감액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나 사회적 부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근로소득, 퇴직연금 또는 자본이득)이 258만 크로나 또는 평균 소득의 42%를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되고 415만 크로나 또는 평균 소득의 68%에서는 중단된다.

선별적 연금

두번째 요소는 보충연금이다. 이 급여의 최대 가치는 독신자의 경우 연 124만 크로나로 평균 소득의 약 20% 정도이다. 이 급여는 근로소득이 연 48만 크로나 (평균소득의 약 8%), 퇴직연금이 12만 크로나, 자본수익이 98,640 크로나를 초과하면 감액된다. 보충연금의 소득조사 감액률은 45%이다.

사회부조특별법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거나 수급자가 사회부조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에 다양한 사회부조 급여가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자에 대한 가구 보충 수당 등 추가적인 보충 및 지원을 위한 특별보충수당이다.

강제적 퇴직연금

모든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의 특정 비율을 연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을 위해 이들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16세에서 70세까지의 국민들에게 강제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최저 기여율은 소득의 12%이다. 근로자는 총 임금의 4%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9%를 납부한다. 공공부문과 그 외 특정 부문에서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더 크다.

법에서는 기여년수 40년의 경우 대체율 56%를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재직년당 지급률이 1.4%가 된다.

연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생애평균소득이다. 연금대상 소득에는 한도가 없다. 과거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3.5% 금리를 더하여 재평가한다.

연금지급은 6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수급개시를 65세로 앞당길 수도 있고 70세로 연기할 수도 있다.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 상 조기퇴직규정은 기금마다 다르며 기금 가입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상 수급개시 연령이 67세이며 65세부터 조기수급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급하는 경우 연 7%씩 연금이 감액된다. 기초연금이나 선별적 연금은 조기 수급이 불가능하다.

수급연기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최대 72세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급여는 매월 0.5%씩 인상된다. 최대 30%까지의 인상이 가능하다.

강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을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급여액은 연 8%정도씩 인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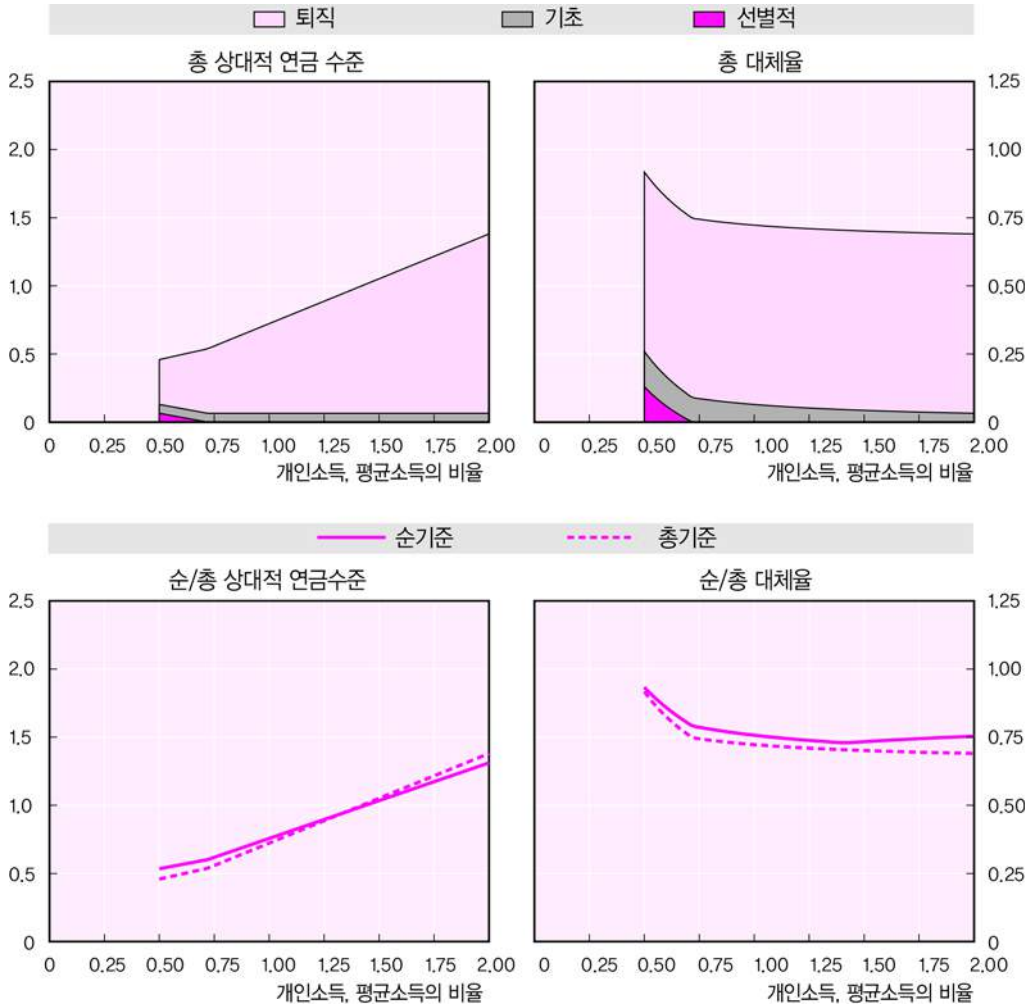
육아

정부의 사회부조 제도는 장기적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세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부모에 대한 급여, 학업중인 저소득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와 기초 급여, 근로도 학업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급여가 그것이다.

실업

최소 10%의 기여가 부과되는 기여 기준(contribution base)은 소득뿐 아니라 실업보험급여도 포함되지만 그 외 모든 급여는 제외된다.

연금 모형 결과: 아이슬란드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9.8	45.9	55.8	72.3	105.2	138.1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65.2	53.5	61.9	75.7	103.4	131.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73.8	91.7	74.4	72.3	70.1	69.0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77.8	93.3	78.6	75.7	73.3	75.4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4	16.1	12.6	12.1	11.7	11.5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6	13.3	9.9	9.0	8.2	7.7
	10.7	14.8	11.0	10.0	9.0	8.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915>


인도

인도: 2012년 연금제도

근로자들은 EPFO(근로자퇴직기금운영기구)에서 운영하는 소득비례연금과 확정기여형(DC) 근로자퇴직기금, 사용자가 운영하는 근로자퇴직기금에 가입되어 있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신 연금제도(NPS)에 기반한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 지표

		인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피(INR)	240 400	2 342 100
	미 달러(USD)	4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여명	출생 시	66.4	79.9
	65세 시점	13.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9.3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934>

수급조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기여년수 최소 10년인 경우 58세이며 소득비례 제도의 경우는 55세이다.

급여 산정

EPF (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

종업원은 월 급여의 12%를 기금에 납부하고 고용주는 3.67%를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에 15.67%가 누적된다.

연금형태의 급여는 제공되지 않으며, 55세 도달하고 퇴직 시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국가와의 대체율을 비교하기 위해 급여는 남녀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물가연동 연금형태(price-indexed annuity)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EPS (Employees Pension Scheme)

위에서 언급한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기여금 12% 중에 8.33%는 EPS로 전용되며 중앙정부가 임금의 1.17%를 EPS에 지원한다. 이 누적액은 은퇴 시 또는 조기 해지 시 다양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가입자가 EPS 제도에서 받게 되는 연금의 종류는 은퇴 연령과 근무 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text{월 연금액} = (\text{연금대상 급여} \times \text{연금대상 근무년수}) / 70$$

최대 가능 대체율은 대략 50%이다. 최대급여를 수급하려면 35년간 제도에 가입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 가입 시 더 높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겠다고 선택해야 한다. 이 옵션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월 6,500루피의 기여금 한도가 있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EPS는 기여년수 10년인 경우 50세부터 수급할 수 있고 급여액은 연 3%씩 감액된다. 가입자가 근무년수 10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인출가능 금액은 퇴사일 기준 월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비율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년수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PF의 경우, 적립액의 조기 수급을 허용하는 몇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결혼, 주택자금, 생명보험 가입, 가족의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분수급이 허용되며 은퇴 1년 전 등의 사유로도 수급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다양한 부분 인출 외에 가입자는 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을 결심한 경우 계좌를 폐쇄하고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5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없다.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NPS, National Pension System)

인도에서는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없고(공적연금 가입율이 근로 인구의 약 12%) 고령화 등 사회변화는 비공식 부문에 대한 연금확대 개혁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인 반면, 공식(organized) 부문에서는 (정부 공무원들)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연금 개혁의 주요 동인이었다.

신 연금제도(New Pension System)의 도입

정부는 2003년 12월 22일자 고시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군인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 연금제도(NPS)를 도입했다. 정부는 2003년 10월 정부 결의안을 통해 임시 감독기구인 임시연기금감독개발청(PFRDA)을 설립했다. NPS의 설계상의 특징은 자축성, 확장성, 개인의 선택, 적용범위 극대화,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연금제도가 건설한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NPS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수립

PFRDA는 국가증권예탁기관(NSDL)을 중앙 기록보관 및 회계처리 기구(CRA)로 선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NPS의 기여금은 현재 CRA로 보내진다. PFRDA는 세 명의 연기금 관리자와 관리자(custodian), 신탁은행을 임명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인 가입자의 적립금과 기여금은 재정부가 비정부 연기금을 위해 만든 투자 지침서에 기반해 투자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을 위한 NPS 투자 지침서가 PFRDA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www.pfrda.org.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 정부, 자치기구, 비조직(un-organized) 부문으로 NPS 확대

NPS는 또한 새로운 부문(자치기구, 주정부, 비조직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27개의 주정부 및 연합주(Union Territories)에서 신규직원들을 위한 NPS 채택을 공지했다. PFRDA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들에게 NPS를 확대하는데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2009년 5월 1일부터 자발적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이들에게 NPS체제를 확산했다.

NPS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임시 PFRDA는 체신부를 POP로 NPS에 합류하도록 했다. 체신부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807개 지점에서 NPS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NPS 네트워크를 체신부의 모든 전자접속지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NPS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1. 2009년 12월 1일부터 연금 가입자에게 일종의 저축 계좌 역할을 하는 두번째 층(second tier)을 NPS에 추가.
2. 공동 기여 제도인 NPS-Lite("Swavalamban*") 출범. NPS의 저비용 버전으로 자영업자, 동호인 단체 등 적은 비용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함.
3. NPS 가입 연령을 55세가 아니라 60세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NP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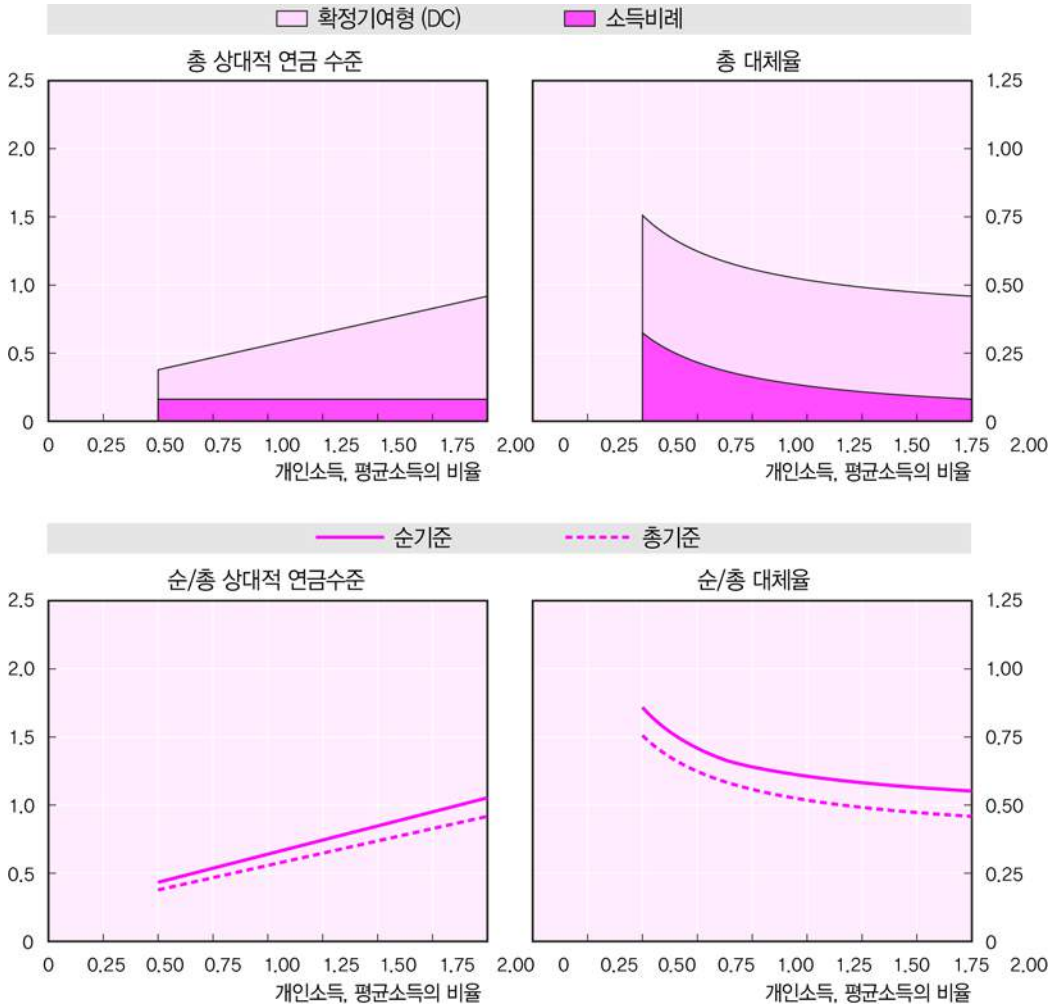
정부의 NPS Swavalamban 프로그램은 공동 기여가 저소득 비조직 부문의 근로자들의 자발적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를 따라 하리아나와 카르나타카 같은 주 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 외에 추가적인 공동기여를 발표했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매년 공동기여로 최대 2,200루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현황, 2013년 3월

고용주/부문	가입자 수	NPS 관리금액 (미 달러, 백만)
1. 중앙정부	1 125 871	3 099
2. 주 정부	1 585 349	1 778
3. 민간부문	202 679	228
4. NPS-라이트	1 579 690	75

* 비조직 부문 근로자들이 은퇴 후를 자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이들 가입자를 위해 신 연금제도(NPS)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Swavalamban"이라고 불리는 공동 기여제도를 중앙정부가 2010년 4월 1일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PFRDA에서 운영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가입자를 위해 연 1,000루피를 기여한다. 정부의 다른 법정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해있지 않고 연 천 루피에서 만2천 루피를 기여한다면 Swavalamban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Swavalamban 제도는 2016-17년까지 열려 있다. PFRDA는 이 제도가 이 기간 중 비조직 부문의 약 7백만 명 정도의 NPS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 모형 결과: 인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48.9	37.8	46.8	55.8	73.8	91.8
(평균 총 소득 %)	45.6	35.6	43.7	51.8	68.0	84.1
순 상대적 연금수준	56.2	43.4	53.7	64.1	84.7	105.4
(순 평균소득 %)	52.2	40.7	49.9	59.2	77.7	96.2
총 대체율	60.4	75.6	62.4	55.8	49.2	45.9
(개인총소득 %)	56.3	71.2	58.3	51.8	45.3	42.1
순 대체율	68.7	85.9	70.9	64.1	58.2	55.2
(개인 순소득 %)	64.0	80.9	66.2	59.2	53.5	50.5
총 연금 자산	10.0	12.4	10.3	9.3	8.2	7.7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4	13.0	10.7	9.6	8.4	7.9
순 연금 자산	10.0	12.4	10.3	9.3	8.2	7.7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4	13.0	10.7	9.6	8.4	7.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95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12년 연금제도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 지표

		인도네시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피아(IDR, 백만)	16.1	418.46
	미 달러(USD)	1 6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여명	출생 시	70.8	79.9
	65세 시점	14.1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9.0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972>

수급조건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55세이다. 은퇴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기여년수가 15년이고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정기적인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15년 미만인 자는 일시불로만 받을 수 있다.

급여 산정

확정기여형(DC) 연금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근로자 사회보장프로그램(Jamsostek)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 경우 1992년 Law No.3에 의거한 OAS(Old Age Security)나 Jaminan Hari Tua(JHT)이다. 총 기여율은 임금의 5.7%이다. JHT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프로그램이며 은퇴자는 부분적으로 일시불로 인출하고 부분적으로 사망 시까지 정기 연금을 받다가 일시불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의 2%를 기여하며 고용주는 3.7%를 납부한다. 연금 잔액이 3백만 루피아가 넘으면 연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최대 5년까지 매달 지급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체율 비교를 위해 급여는 물가연동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새로운 국가 사회보장제도(NSSS)는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다(Law No.40:2004). 새로운 사회보장 연금은 확정급여형(DB)으로 확정기여형(DC)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새로운 확정급여형 제도의 총 기여율은 8%로 제안되어 있다. 급여 산정 방식은 아직 미정이므로 이 급여는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NSSS 프로그램과 임금 기준 기여율

프로그램	공유 기여율(%)			비고
	고용주	종업원	합계	
1. 의료	3.0	2.0	5.0	안
2. 산재	0.25-0.75	-	0.25-0.75	
3. 연기금	3.7	2.0	5.7	Jamsostek
4. 연금 플랜	5.0	3.0	8.0	안
5. 사망급여	0.3	-	0.3	Jamsostek
합계	12.25-12.75	7.0	19.25-19.75	

출처: National Social Security Council (2012)

경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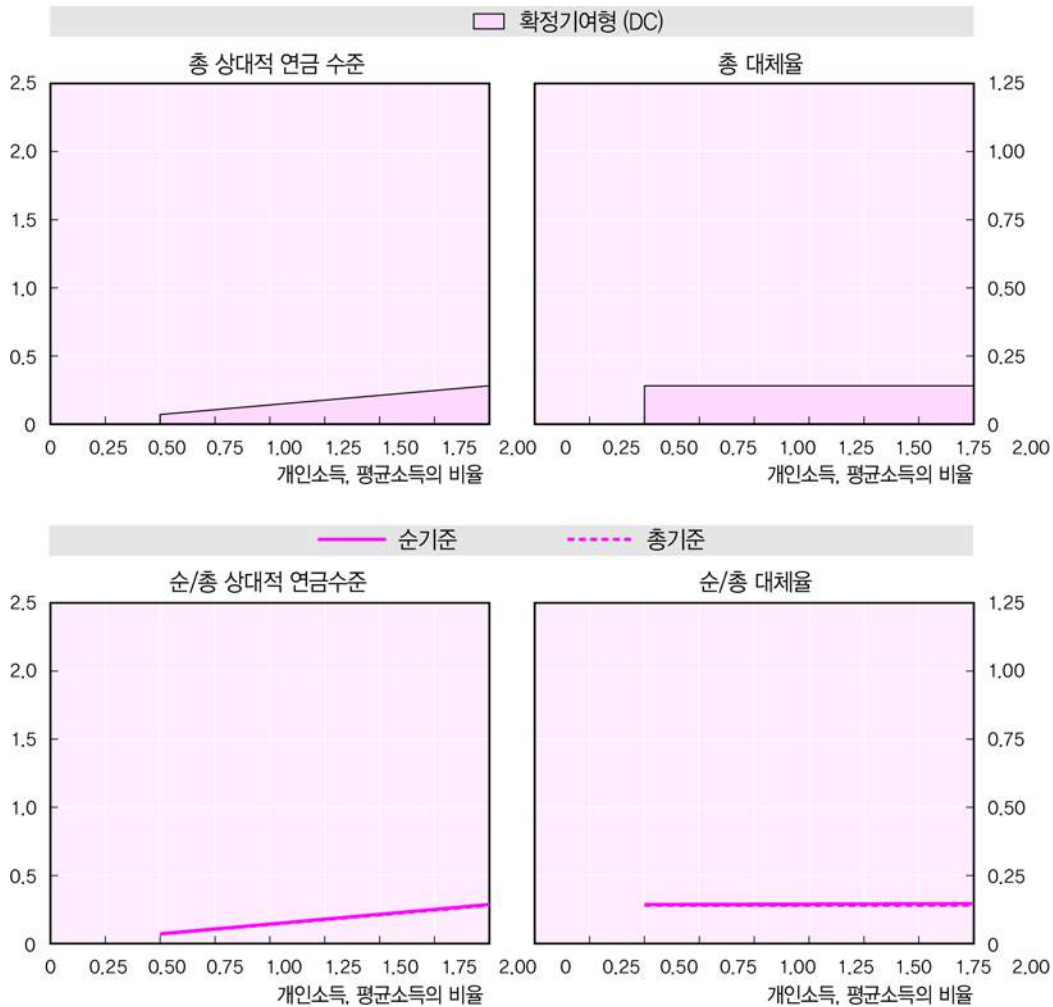
조기수급

기여년수 최소 5년이면 어떤 연령에서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연기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 모형 결과: 인도네시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11.4	7.0	10.6	14.1	21.1	28.1
(평균 총 소득 %)	10.5	6.5	9.7	13.0	19.4	25.9
순 상대적 연금수준	11.6	7.2	10.8	14.4	21.5	28.7
(순 평균소득 %)	10.7	6.6	9.9	13.2	19.8	26.5
총 대체율	14.1	14.1	14.1	14.1	14.1	14.1
(개인총소득 %)	13.0	13.0	13.0	13.0	13.0	13.0
순 대체율	14.4	14.4	14.4	14.4	14.5	14.6
(개인 순소득 %)	13.2	13.2	13.2	13.2	13.4	13.5
총 연금 자산	2.6	2.6	2.6	2.6	2.6	2.6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6	2.6	2.6	2.6	2.6	2.6
순 연금 자산	2.6	2.6	2.6	2.6	2.6	2.6
(개인 총 소득의 배수)	2.6	2.6	2.6	2.6	2.6	2.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8991>


아일랜드

아일랜드: 2012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기여 조건을 충족한 모든 이들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제도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자산조사적 연금도 있다. 자발적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율이 높으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있다.

핵심 지표

		아일랜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32 600	32 400
	미 달러(USD)	43 0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5.1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6	79.9
	65세 시점	19.1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9.4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010>

수급조건

공적연금(기여형)은 66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2014년부터 66세로 표준화되고 있으며 공적연금 (과도형)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21년 67세, 2028년 68세로 상향 조정된다.

두 급여 모두 전액 수급하려면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연 평균 48주의 기여 또는 크레딧이 필요하다. 기여이력이 불완전한 경우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공적연금 (기여형)은 연 10주의 최소 평균 기여기간을 필요로 하며 공적연금 (과도형)은 최소 연 24주를 필요로 한다. 최소 총 납부 (크레딧과 반대개념) 기여 기간 520주도 필요하다(10년의 완전 가입에 해당).

자산조사적 연금은 66세부터 지급가능하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공적연금 (기여형)과 공적연금 (과도형)의 최대 가치는 둘 다 2010년의 경우 주당 230.30유로(연 52주간 지급)로 평균 소득의 37%에 해당한다. 자격조건을 갖춘 이들에 대해서는 생산연령의 피부양 성인에 대해 153.50유로, 66세 이상인 피부양자에 대해 206.30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연금은 대개 연 단위로 증액되며 이는 연간 예산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증액은 없었다.

연금 수급자들은 여러 종류의 현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물 급여로 지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의료 지원을 제외하고 연 904유로 수준이다. (모형에서는 현금 급여만 다루고 있고 현물 급여는 빠져 있다.)

선별적 연금

자산조사적 급여의 최대 가치는 2010년 독신자의 경우 주당 219유로이며 성인 피부양자에 대해 추가로 144.70유로가 지급된다. 독신자의 급여는 평균 소득의 35%에 해당한다. 자산조사 시 주당

30유로의 소액 소득공제와 200유로의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그 이상을 초과하면 급여는 소득의 100% 수준에서 감액된다. 자산 조사(assets test)도 있는데 2만 유로 이상의 자본은 표준 산식을 이용해 소득으로 전환된다.

자발적 사적연금

추가적인 자발적 연금이 존재하며 확정기여형(DC)인 것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10%로 가정했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연금은 정상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수급할 수 없다.

수급연기

공적연금(과도형) 제도 상 주당 소득이 38유로 미만인 경우 근로와 연금수급을 병행할 수 있으며, 1년에 대해 지급가능하다. 그러나 공적연금(기여형)은 소득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금 수급의 연기는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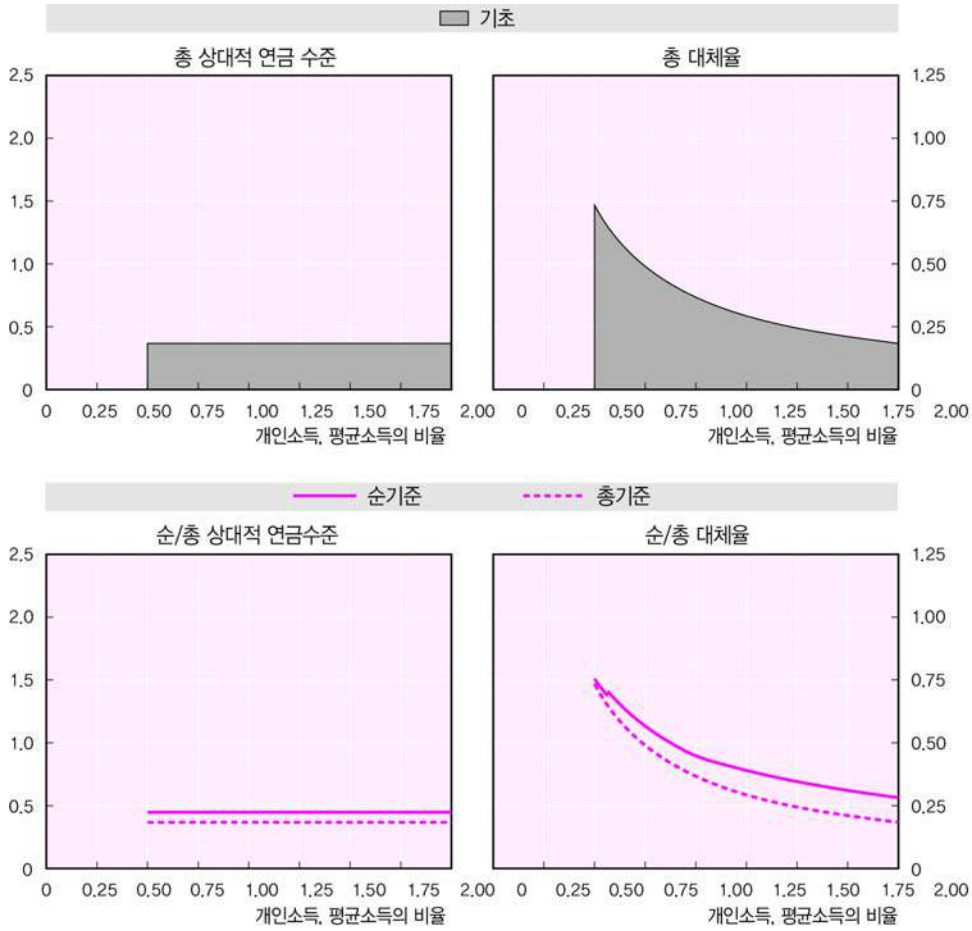
육아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업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모형 결과: 아일랜드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6.7	36.7	36.7	36.7	36.7	36.7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4.8	44.8	44.8	44.8	44.8	44.8
총대체율 (개인총소득 %)	44.2	73.4	48.9	36.7	24.5	18.4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52.2	75.5	56.7	44.8	34.6	28.2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3	13.8	9.2	6.9	4.6	3.5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3	13.8	9.2	6.9	4.6	3.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029>

이스라엘

이스라엘: 2012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보편적 연금보험과 자산 조사에 기초하는 소득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까지 두번째 층(second-pillar) 연금이 상당히 보편적이었으나 자발적 형태였다. 2008년 1월에 확정기여형(DC) 연금에 대한 강제적 기여가 도입되었다.

핵심 지표

		이스라엘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셰켈 (ILS)	119 900	159 400
	미 달러(USD)	32 1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5.0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7	79.9
	65세 시점	19.9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9.4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048>

수급조건

공적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이 2004년부터 남자는 65세에서 67세로, 여자는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남자의 은퇴연령은 2010년에 67세에 도달했으며 여자는 62세이고 2017이 되면 법에 따라 64세에 도달하게 된다. 남자는 70세까지, 여자는 2009년 현재 67세까지 (70세로 상향 조정 중) 연금을 수급하려면 근로 소득액이 한도 미만이어야 한다.

급여 산정

노령연금

제도 가입자의 경우 이스라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 소득의 0.22%를, 이상인 경우는 3.85%를 기여하며 평균 임금의 60%는 2012년 1월 기준 8,619 셰켈이었다.

기여 목적의 최저 소득은 4,100 셰켈로 최저임금과 같았다. 이 금액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버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여 목적의 최대 소득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국가 평균 임금의 다섯 배였다.

사회보험

독신 연금수급자는 한 달에 노령 기초 금액의 17.7%를, 부부는 26.6%를 받는다. 노령 기초 금액은 8,370 셰켈이다.

보험 가입기간(insurance coverage)이 10년을 초과하면 연 2%씩 연금이 증액되며 연금의 50%까지 증액된다.

이스라엘의 통계 데이터는 이스라엘의 해당 정부기관 책임 하에 동 기관이 제공하였다. OECD는 국제법에 따라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 지역 유대인 정착촌의 상황에 대한 편견없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소득보충은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 생계 유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다. 월 지급액은 노령 기초연금의 28.8%에서 62.9% 사이이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금액은 7% 인상되었다.

소득 지원은 확정기여형(DC) 연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있으면 60% 감액된다.

확정기여형 연금

2008년 1월부터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평균 임금까지 강제적 기여가 적용되었다. 처음에는 총 기여율이 2.5% 정도에 그쳤으나 2013년까지 15%로 인상될 예정이다(5%는 근로자, 10%는 고용주가 부담). 고용주 기여금의 절반은 퇴직보험(severance insurance)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사용되면 연금이 줄어든다.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위에서 설명한 사회보험에 속해 있다.

경력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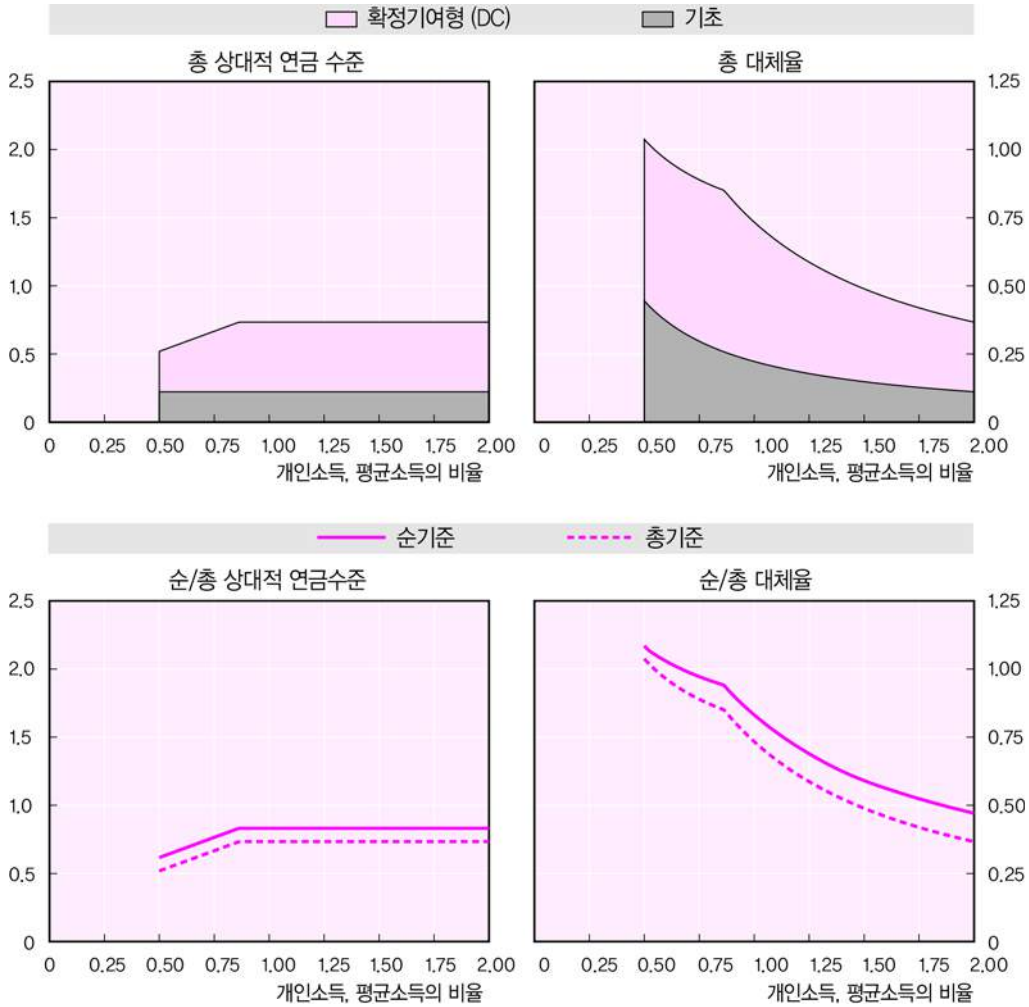
조기수급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급연기

연금은 연 5%씩 인상된다.

연금 모형 결과: 이스라엘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70.2	51.9	66.7	73.4	73.4	73.4
(평균 총 소득 %)	62.2	46.9	59.3	64.8	64.8	64.8
순 상대적 연금수준	80.1	61.7	76.5	83.2	83.2	83.2
(순 평균소득 %)	72.0	56.2	69.1	74.7	74.7	74.7
총 대체율	86.7	103.7	88.9	73.4	48.9	36.7
(개인총소득 %)	76.8	93.9	79.0	64.8	43.2	32.4
순 대체율	95.5	108.5	97.2	83.2	59.1	47.1
(개인 순소득 %)	85.9	98.8	87.8	74.7	53.0	42.3
총 연금 자산	14.3	17.1	14.7	12.1	8.1	6.1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2	18.6	15.7	12.9	8.6	6.4
순 연금 자산	13.2	16.5	13.6	11.1	7.4	5.6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4.3	18.0	14.8	12.0	8.0	6.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067>


이탈리아

이탈리아: 2012년 연금제도

신 이탈리아 연금제도는 명목 계정에 기반하고 있다. 2011년 개혁 이후 모든 근로자들은 현재 NDC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여금은 GDP 성장에 연계하여 수익률을 얻는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 자본이 은퇴 시점의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1996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에게 전면 적용되고 있다.

핵심 지표

		이탈리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28 900	32 400
	미 달러(USD)	38 1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5.4	7.8
기대여명	출생 시	82.2	79.9
	65세 시점	20.3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4.5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086>

수급조건

신 제도 상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남녀 공히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2년에는 민간부문 여자 근로자는 62세, 자영업 여자 63세, 남자(고용과 자영업 공히) 66세였다. 여자의 경우 연금개혁으로 인해 수급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2018년이면 남자와 똑같이 66세가 된다. 2018년 이후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 연장이 발생하며 2021년에는 최소 67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2011년 연금 개혁에서는 연금 수급시기를 62세부터 70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령 연금은 기여년수가 최소 20년이고 연금액은 사회부조의 1.5배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후술 참조).

급여 산정

소득 비례 제도

기여에 기초하는 연금제도에서는 민간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기여율이 33%이며 그 중 3분의 1은 근로자가 3분의 2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연금액은 두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생애 총 기여금을 명목 GDP 성장률에 연계한 것(5년 단위로 움직이는 평균값에 맞춰)과 연금전환계수인데, 이 연금전환계수의 계산은 주로 사망확률, 배우자를 남길 확률, 유족 급여 지급 년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급여액은 은퇴 연령과 큰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액도 낮아진다.

연금전환계수는 3년에 한번씩 검토한다. 2011년 연금개혁과 탄력적 은퇴시기 운용에 따라, 연금 전환계수는 62-70세에 대해 사용된다. 가장 최근의 계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계수로 다음과 같다.

연령	계수	값(%)
57	23,236	4,304
58	22,647	4,416
59	22,053	4,535
60	21,457	4,661
61	20,852	4,796
62	20,242	4,940
63	19,629	5,094
64	19,014	5,259
65	18,398	5,435
66	17,782	5,624
67	17,163	5,826
68	16,541	6,046
69	15,917	6,283
70	15,288	6,541
할인율 = 1,5%		

출처: Gazzetta Ufficiale, 24 May 2012

모든 국가의 모형산출 시 기준 가정은 2%의 연 실질 급여 인상이다. 이탈리아의 노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 GDP 성장률을 연 1.6%로 가정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경우 2012년 기여 목적의 최저 임금은 주당 192.21유로였다(평균 소득의 35%).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상한은 신 체제에서는 연 96,056유로 또는 평균 소득의 332%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연금지급액의 연동은 누진적이며 연금액이 낮을수록 좀더 관대한 연계가 이루어진다. ISTAT “생활비” 지수에 따른 연금 급여액 연계는 2012년과 203년에 대해서는 중단되었다. 2012년에는 월 1,400유로 이상의 연금 급여액에 대해 중단이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월 935유로를 초과하는 연금 급여에 대해 중단되었다(최저액의 두 배). 2009년 1월 이후 일반적인 규정은 연금액을 최저연금의 다섯 배까지 연계하며 이 기준선을 넘으면 완전 가격 연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의 75% 기준으로 조정되어 왔다.

사회부조

기여형 제도에서는 연금액이 오로지 기여금을 기준으로만 결정된다. 그러나 기여금이 최저수준(2012년 월 481유로) 미만인 사람들은 연간 연금소득이 6,253유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급여(social payment)를 지급할 수 있다. 기여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65세부터 자산조사적 비과세 사회부조

급여(assegno sociale)를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이 연령은 65세 3개월로 연장되며 수급 연령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처럼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보충연금을 포함해 독신자에 대한 2012년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의 가치는 연 5,582.33유로 또는 월 429.41유로이며 1년에 13회 지급된다. 2013년에는 급여가 월 442.30유로(연 5,749.90유로)로 인상된다. 최소한 70세인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의 수급자들은 월 연금액이 최대 188.03유로까지 올라가 사회이전(social transfer)을 통한 최대소득이 연 8,026.72유로에 도달하게 된다. 65세 수급자의 최저 기여연금과 사회부조급여(assegno sociale)의 가치는 각각 평균소득의 22%와 28%에 해당한다.

자발적 사적연금

부가적인 자발적 보충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개방적 기금과 폐쇄적 노사협약 기금으로 구분된다. 폐쇄적 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TFR에 의해 재원이 확보된다. 개방적 기금은 기여를 바탕으로 한 연금을 제공한다. 현 TFR 기여율은 총 임금의 6.91%이다. 투자된 기금은 고정금리 1.5%와 소비자가격지수의 연 증가율의 75%에 해당하는 변동적 요소를 적용하여 매년 적립된다. 사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숫자는 여전히 적다. 그래서 2007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는 최근 통과된 연금개혁이(약간의 변화와 더불어) 두번째 층(second pillar)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i)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ii) 사적퇴직금(TFR) 이전을 위해 무반응을 동의로 간주(silence-as-assent)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누적되어 있는 퇴직금을 해당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사적연기금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적연기금에는 여전히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2011년 개혁에서는 정상 수급연령 이전에 수급을 개시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기여 기록을 확보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쿼터 제도 -서로 다른 조합으로 연령/기여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는 폐지되었다. 이전 제도에서 근로자들은 기여년수가 35년 이면 61세에 수급 개시할 수 있었다. 현 제도상으로는 2011년 개혁 이전에 확정급여형(DB) 제도에 완전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의 경우 기여년수가 남자는 최소 42년 1개월, 여자는 41년 1개월이면 감액 없이 연금수급이 62세부터 가능하다. 이러한 요건은 기대여명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게 된다. 2013년 필요 요건은 남녀 공히 4개월 늘어났다. 조기수급 기간 동안 연금 수급액은 1%-연령 포인트만큼 감액된다. 최저 연령인 62세를 2년 앞두고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조기수급 기간동안 연 2%-연령 포인트씩 감액폭이 커진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여형 또는 혼합형 제도상에서는 수급자가 기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령에 따른 페널티 없이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또는, 이들 근로자는 기여년수가 최소 20년이라면 63세에 수급 개시할 수 있다.

수급연기

65세 이후로 수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연금전환계수가 62세에서 70세 사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급여에 임금의 32.7%(즉, 내야 할 기여금 액수)에 해당하는 월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 급여는 비과세이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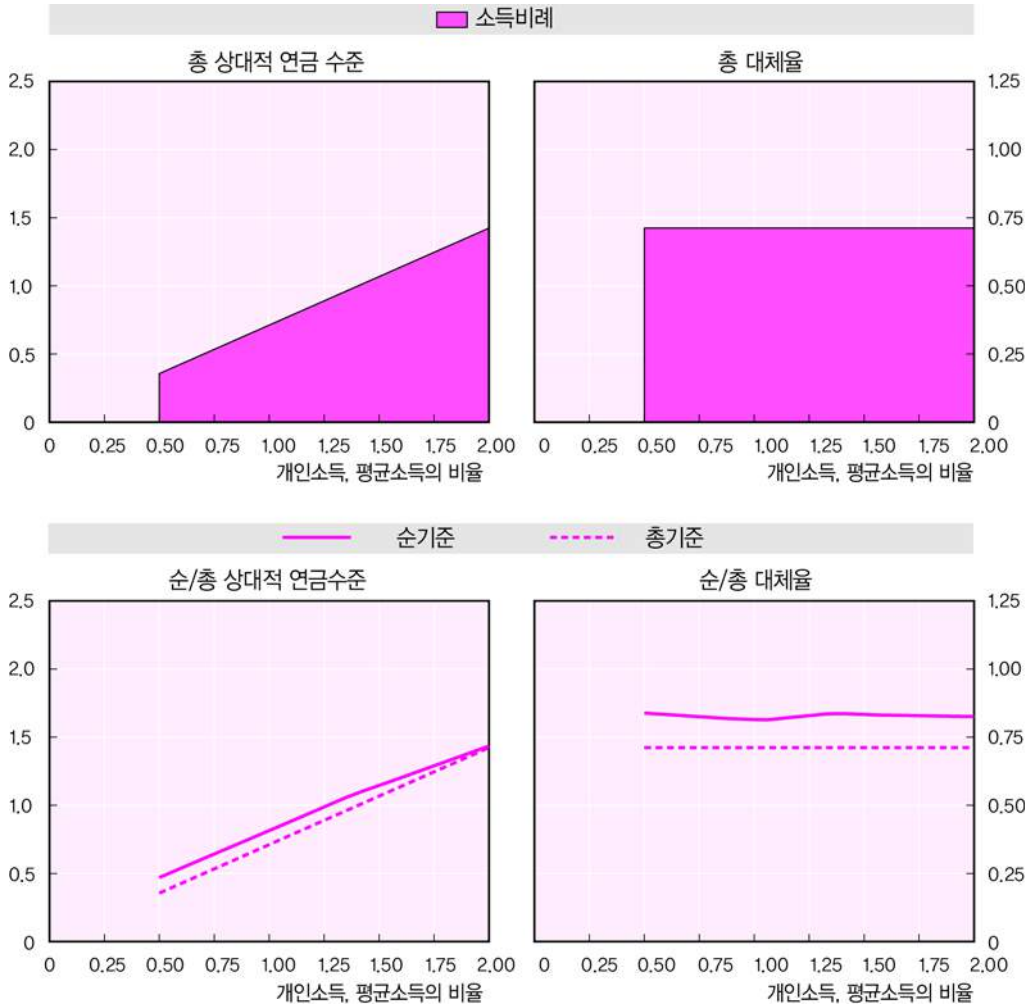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좀더 관대한 변형 계수를 제공하여 연금을 증액한다. 한두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실제 수급개시 연령에 1년을 더한 변형 계수를 사용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실제 수급개시 연령 + 2년이다. 그러므로 추정 변형 계수에 따르면 한두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연금액이 약 3% 정도, 세 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 6% 정도 증액된다. 또는, 기여형 제도나 혼합형 제도상에서는 워킹맘이 자녀 한 명당 4개월, 최대 12개월의 조기퇴직이 가능하다.

실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가 개입해 CIG(Cassa Intergrazione Guadagni)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제공한다. CIG는 임원, 연수생/실습생, 재택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다양하지만 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또는 24개월간 지급된다. 금액은 마지막 임금의 80%이지만 한도가 있다. 2012년에는 최대 급여 한도액이 월급 2,014.77유로인 근로자의 경우 월 931.28유로, 연 24,177유로였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수당은 월 1,119.32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급액에서 사회기여금 5.84%가 차감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 월 순 급여액은 876.89유로와 1,953.95유로가 된다. 그러면 이 급여는 정상 소득 과제의 대상이 된다.

의도치 않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들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8개월까지 월 수당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나온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에 놓이기 이전 2년 중 최소 1년간의 완전 기여 이력이 필요하다. 건설이나 농업 부문의 실습생/견습생이거나 근로자의 경우 요건이 완화된다. 급여는 직장을 잃기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60%수준이다. 첫 6개월이 지나면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50%로 내려간다. 기여율에 의한 감액은 없다. 2012년, 지급액 한도는 평균 임금이 월 2,014.77유로 이하의 근로자는 월 931.28유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 1,119.32유로였다. 실업급여는 2012년 개혁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연금 모형 결과: 이탈리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60,5	35,6	53,4	71,2	106,8	142,4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71,1	47,0	64,3	81,5	114,6	143,5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71,2	71,2	71,2	71,2	71,2	71,2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82,0	83,9	82,6	81,5	83,3	82,6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9	11,9	11,9	11,9	11,9	11,8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7	10,9	10,0	9,5	8,9	8,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105>


일본

일본: 2012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두 개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초정액제도 다른 하나는 소득비례제도(피용자연금제도)이다.

핵심 지표

		일본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엔(JPY, 백만)	4.79	3.70
	미 달러(USD)	55 3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0.2	7.8
기대여명	출생 시	83.5	79.9
	65세 시점	21.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42.2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124>

수급조건

기초노령연금은 기여년수 최소 25년이면 65세부터 지급된다. 2012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기여년수 최소 10년이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기여년수 40년이 필요하며 기간이 짧거나 길면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급여액이 조정된다.

피용자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피용자연금은, 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고 있다면 최소 1개월의 기여기간을 충족했을 때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특별 제공” 피용자연금 연령은 정액제도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남자는 2001년에서 2013년 사이, 여자는 2006년에서 2018년 사이) 소득비례 제도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남자는 2013년에서 2025년 사이, 여자는 2018년에서 2030년 사이) 상향 조정된다. 피용자연금은 보수 및 기여년수의 증감에 따라 조정된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2012년 완전 기초연금은 연 786,500엔으로 평균 근로자 소득의 16%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된다.

사회부조

기타 소득 보장 제도로 사회부조가 있다. 2012년 도쿄의 60-69세 독신 가구의 사회부조 금액은 주택급여와 기타 관련 급여를 제외하고 연 969,840엔이다.

소득비례연금

피용자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연금급여액은 보수와 기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한도가 있는데 평균근로자 소득의 155%에 해당하는 월 62만 엔이다. 2025년까지, “특별 제공” 피용자연금은 60-64세에 부분적으로 제공 가능하다. “특별 제공” 피용자연금은

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액 급여는 출생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12년에는 월 1,676엔에서 3,143엔 사이였다. 소득비례 급여는 피용자연금과 비슷하게 보수와 기여년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별 제공” 피용자연금은 남자는 2013년까지, 여자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피용자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 평균 연금대상 보수의 월 금액 \times 0.7125% \times 2003년 3월까지 기여기간 +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 과세대상 보수액 \times 0.5481% \times 2003년 4월 이후 기여기간.

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ing out)

최소 1000명 이상 피용근로자를 가진 사용자는 자체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비례연금(대체부분)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약 15%가 이러한 제도가 참여하고 있다. 탈퇴하려면 공적 소득비례제도가 제공하는 급여의 최소 150%(2005년 이전에는 110%)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한다. 탈퇴에 필요한 연금 산정은 생애 평균 명목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액의 연계와 과거 소득의 재평가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ing-out) 제도의 기여율은 해당 근로자의 연령 구조와 계리적 가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1996년까지 그 비율은 모든 제도가 동일했다. 2005년 이후 그 비율은 총 보수의 2.4%에서 5% 사이로 다양해졌다.

2001년부터 정부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 역시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몇 근로자 연기금은 해체되었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2001년까지 “특별제공” 피용자연금을 60세에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며 급여 전액을 받으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급여의 감액을 감수한다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모두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급여는 월 0.5%씩, 즉 연 6% 감액된다. 개인 수급자는 60-65세 사이에 근로자연금의 정액 요소를 수급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순 평균소득에 연계되며 65세 이후부터는 가격에 연계된다.

수급연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월 0.7%, 연 8.4%씩 급여액이 증가한다. 연금 수급권은 65세 이후 납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생한다.

2006년부터 65세 이후 연금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단 총 소득(근로소득과 연금을 합친 소득)이 48만 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비례연금액 전액

에서 초과분의 절반이 삭감되거나 기초연금은 전액 지급된다. 2007년 4월부터 70세 이상의 근로자에 제도 감액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육아

육아를 위해 휴직한 기간은 소득비례제도에 반영된다. 2005년 현재 최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육아 기간 중 자녀가 더 태어나면 이 기간은 마지막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중에는 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금이 전액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급여액과 수급조건 산정 시 기간 전체가 반영된다. 부모가 육아로 인해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기여금은 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되지만 연금 급여액은 이전의 전일제 근무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12년부터 출산휴가는 사회보험 보험료가 면제된다.

3년 이후에도 유급근로를 시작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후술하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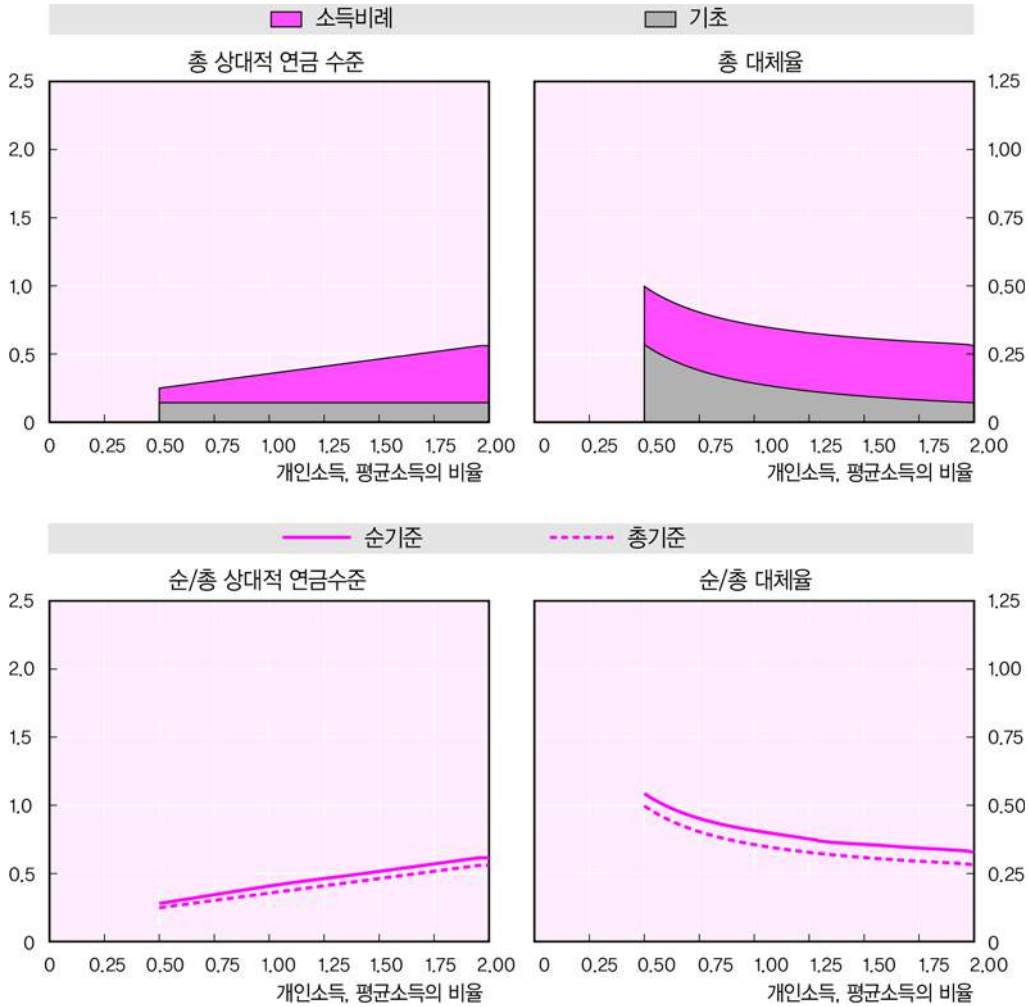
실업

실업상태가 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근로자들은 소득비례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기초연금은 납부해야 한다. 실업인 경우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기여금의 전부, 4분의 3, 절반 혹은 4분의 1만큼 기여금이 면제될 수 있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57만 엔 미만인 독신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소득 93만 엔 미만인 경우 기여금의 4분의 1, 141만엔 미만인 경우 절반, 189만엔 미만은 4분의 3을 납부한다.

완전 면제의 경우 기초연금의 3분의 1(2009년 4월 이후에는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4분의 1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절반(2009년 4월 이후 8분의 5)을 받을 수 있다. 기여금을 절반만 납부하는 기간 중에는 기초연금의 3분의 2(2009년 이후에는 4분의 3)를 받으며 4분의 3을 납부하는 경우는 6분의 5(2009년 4월 이후에는 8분의 7)를 받을 수 있다. 수급조건을 평가할 때는 면제 기간도 전액 기여기간에 들어간다.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나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모형 결과: 일본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3.0	24.9	30.2	35.6	46.3	56.1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37.7	28.0	34.4	40.8	51.5	61.6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37.5	49.8	40.3	35.6	30.8	28.0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42.5	54.3	45.2	40.8	35.7	32.8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8	9.1	7.4	6.5	5.6	5.1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2	8.0	6.6	5.9	4.9	4.4
	7.1	9.3	7.6	6.8	5.7	5.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143>


한국

한국: 2012년 연금제도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으며 소득비례제도이며 누적적 산식을 사용하는데 급여가 개인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모두 연금산정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핵심 지표

		한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원(KRW, 백만)	38,50	45,49
	미 달러(USD)	36 1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2,1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3	79,9
	65세 시점	19,5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7,9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162>

수급조건

10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6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5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다.

정상 개시연령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65세에 이르게 된다. 모형에서는 장기 연금 연령을 65세로, 조기 연금 연령은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될 것으로 가정했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2년 현재 48%이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매년 0.5%씩 삭감되었으며, 2028년 40%가 될 때까지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연금액 산정기준은 임금 인상에 따라 평가되는 개인별 생애평균소득과 물가에 따라 환산되는 수급전 3년간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A값)이다. 연금대상 소득의 상한선은 2012년 월 389만원, 즉 A값의 206% 수준이다.(2012년 A값 = 1,891,771)

급여액의 최대수준은 개인소득의 100%이다. 퇴직이후 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 60세 이상의 사람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 연령이후에는 급여의 증액도 없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국민의 약 70%가 자산조사적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의 5%를 정액으로 산정한다.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부부 합산 비율은 독신자의 80%이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2013년 초,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조기 수급연령은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60세에 수급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노령연금의 70% 수준이다. 급여는 매년 6%씩 인상되므로 64세에 은퇴하는 사람은 노령연금 전액의 94%를 받을 수 있다.

수급연기

수급을 연기함으로써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급여는 1년에 7.2%씩 인상되며 최대 5년,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65세 미만 연금수급자는 수급연기를 한번씩 신청할 수 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금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에 지급되는 급여수준은 완전노령연금의 50%이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10%씩 증가한다. 이를 재직자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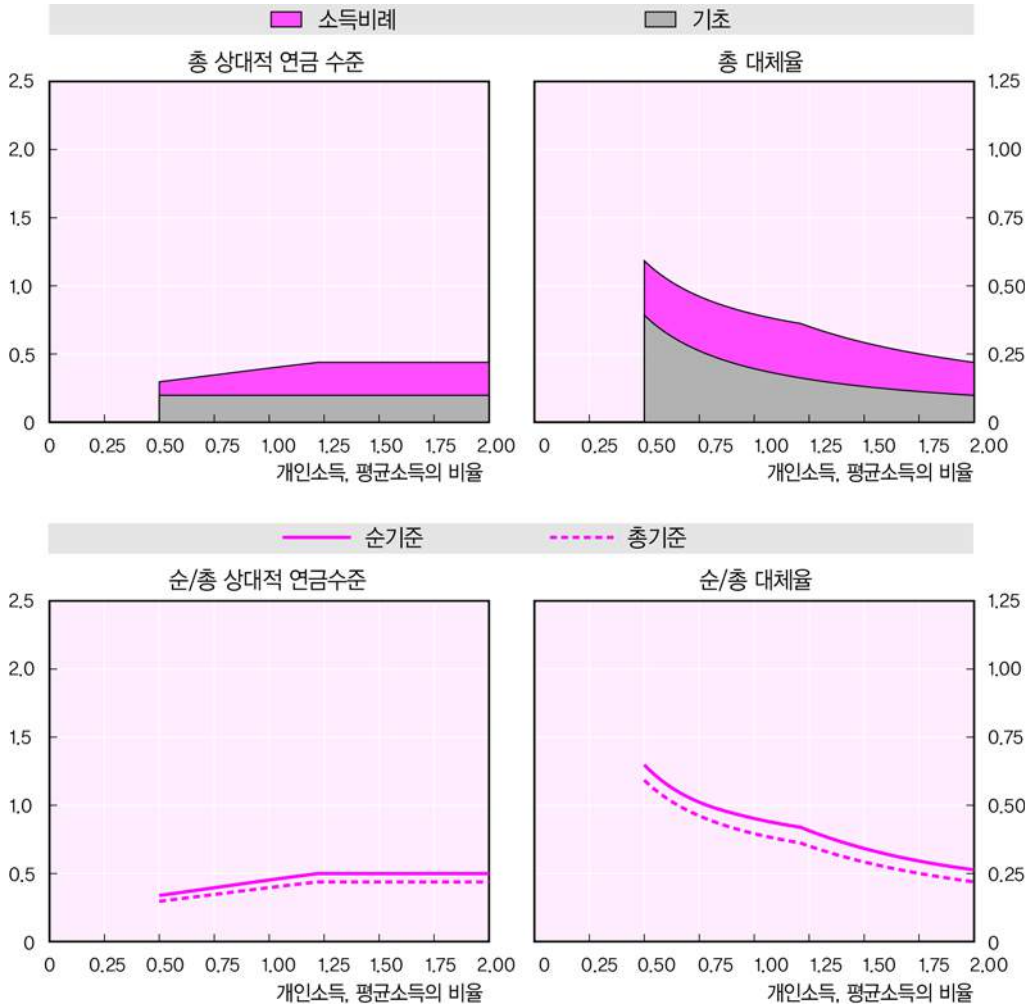
육아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기간 중에는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다. 이후 소득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면제된 기여금을 스스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입자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연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크레딧은 해당 시점 이후 태어난 자녀 수에 따라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이다.

실업

실업상태인 경우 기여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에는 기여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소득 활동을 재개한 후 면제되었던 기여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연금 모형 결과: 한국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6.0	29.6	34.6	39.6	43.8	43.8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1.1	33.9	39.5	45.2	49.9	49.9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43.9	59.2	46.1	39.6	29.2	21.9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49.1	64.8	51.2	45.2	34.2	26.3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9	10.6	8.3	7.1	5.2	3.9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8	10.6	8.2	7.0	5.2	3.9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181>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2012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두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가입년수에 따른 정액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이 그것이다. 그 외에 최저연금도 있다.

핵심 지표

		룩셈부르크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51 300	32 400
	미 달러(USD)	67 7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7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4	79.9
	65세 시점	19.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2.6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200>

수급조건

초기 연금은 기여년수 40년 (강제적이건 자발적이건)이면 57세부터 수급 가능하다. 강제, 자발적 혹은 크레딧이 반영된 기여년수 40년인 경우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될 수 있다. 모형에서는 20세부터 완전경력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60세에 은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가입년수 최소 10년).

급여 산정

기초

가입기간 40년인 경우 2013년 월 436유로였다. 이는 평균소득의 약 10%에 해당한다. 완전경력인 아닌 경우 급여는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은 기준소득(2013년 기준 1,846유로)의 23.61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연말 수당”도 있는데 기여년수 40년인 경우 연금액에 월 59유로씩을 추가해준다. 40년 미만의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되며 가입 년당 월 1.48유로 정도 감액된다. 연말수당은 명목 소득에 연계된다 (하기 참조).

소득비례

소득비례연금의 지급률은 1.844%이다. 산식에 사용된 소득 지표는 생애 평균 급여를 명목 소득에 맞춰 재평가한 것이다.

지급률은 고령 근로자와 기여년수가 긴 경우 높아진다. 93(연령 + 기여년수)을 초과하면 매년 지급률은 0.011퍼센트씩 높아진다. 최대 지급률은 연 2.05%이다. 20세에 시작된 완전경력을 가정했을 때 지급률은 1.921%이다.

2013년 최대 연금은 월 7,692유로였다 (이전에는 기준 금액의 4.17배로 규정). 이는 평균 소득의 18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급여는 생활비 증감에 자동 연계된다(누적 인플레이가 최소 2.5%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상승에 대한 조정도 매년 고려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임금에 대한 연금액 조정은 연간 기여금 수입이 연금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저

최저연금은 기여년수 40년인 경우 월 1,662유로(기준 금액의 90%로 정의)이며 평균 소득의 약 39%에 해당한다. 최저 가입기간(강제적, 자발적 또는 크레딧 기여년수)은 20년이며 기간이 짧아지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사회부조

사회부조 안전망 수준은 독신자의 경우 월 1,315유로이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기여금 납부기간 40년인 경우에는 57세에, 납부기간 또는 크레딧이 적용된 기여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60세에 수급개시가 가능하다. 조기 수급자는 소득과 연금 수급액이 경력기간 중 최고 5년간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조기 수급에 대해 계리적 급여액 조정은 없다.

그 외에 여러 조기 수급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본 보고서와 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조기 수급 연대와 조기수급 적응 제도이다. 첫번째 제도는 고용주가 고용 당국에서 할당된 구직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조기 수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두번째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구조조정이나 부도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 조기수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57세부터 최고 60세까지 허용된다. 조기수급 급여액은 첫해에는 이전 소득의 85%, 두번째 해에는 80%, 세번째 해에는 75%이다. 소득 측정지표는 이전 3년의 임금이다.

수급연기

연금은 65세에 신청해야 한다. 이 연령을 지나면 연금액 감액 없이 연금액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육아

“육아기간(Baby years)” (한 자녀는 2년, 두 자녀는 4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연금대상 소득은 육아기간(baby years) 신청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기간은 수급조건에 포함되며 연금 산식의 정액 요소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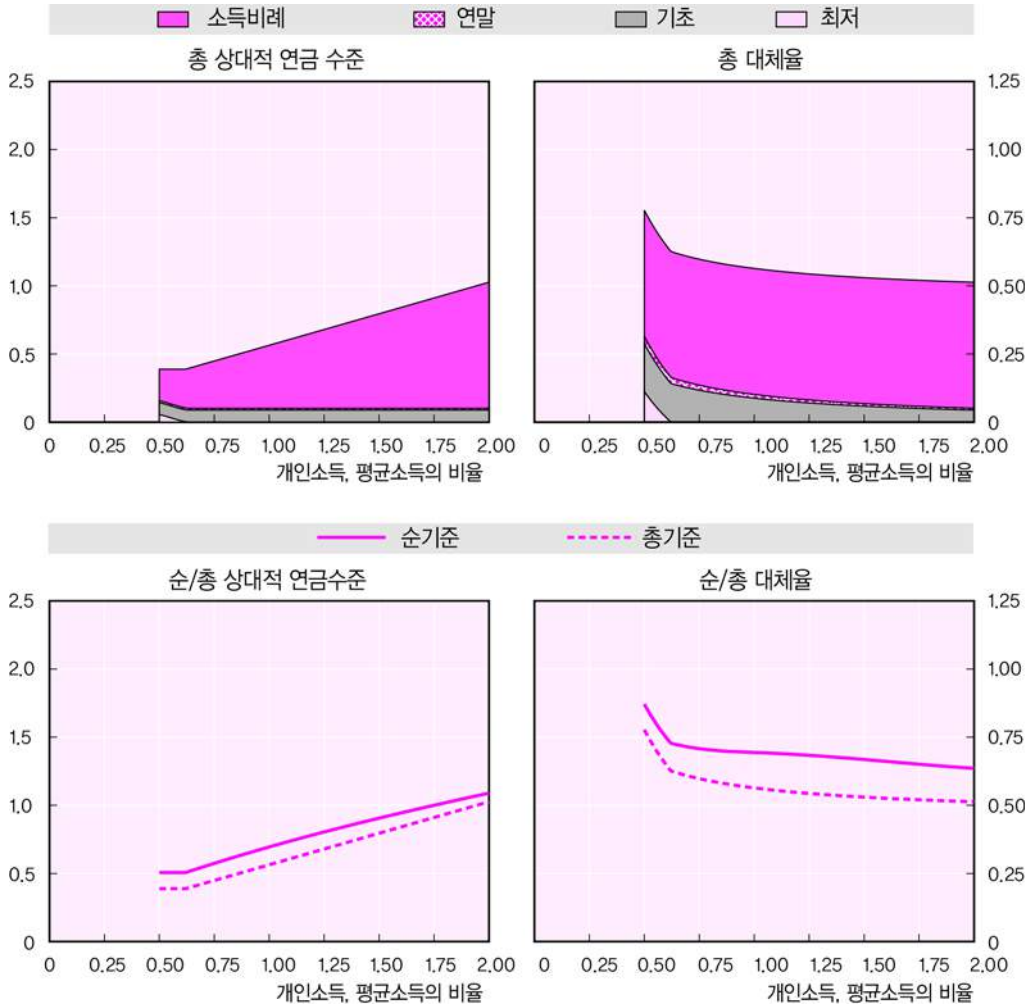
기여 기간이 부족해 육아기간(baby years)을 신청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은퇴 시 자녀 한 명당 106유로의 특별 월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비 기여 기간은 수급 조건에 포함된다.

실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크레딧을 받는다. 즉 이 기간중의 연금 기여금은 국가(3분의2)와 수익자(3분의 1)가 납부한다. 실업기간은 수급조건에 포함되며 연금 산식의 소득비례요소에 들어간다. 이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가 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연금 모형 결과: 룩셈부르크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6.2	38.9	44.8	56.4	79.5	102.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8.8	50.7	57.3	69.4	90.7	108.9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9.3	77.7	59.8	56.4	53.0	51.3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70.5	87.1	70.8	69.4	66.8	63.6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5.0	19.7	15.2	14.3	13.5	13.0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3.8	18.6	14.0	12.7	11.1	10.0
	15.9	21.4	16.1	14.6	12.7	1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219>


멕시코

멕시코: 2012년 연금제도

2007년 4월 1일 이후 가입했거나 그 이전에 가입했으나 새 제도로 이동할 것을 선택한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노령 연금은 강제적 확정기여형(DC)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최저연금을 보장한다.

핵심 지표

		멕시코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페소(MXN)	94 100	553 600
	미 달러(USD)	7 3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7	7,8
기대여명	출생 시	77,3	79,9
	65세 시점	18,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1,4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238>

수급조건

민간부문근로자: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남녀 65세이며 기여기간은 1,250주(약 24년)이다.

급여 산정

적립식 제도

민간부문 근로자: 근로자와 고용주가 소득의 총 6.275%를 개인 계좌에 기여하며 정부가 소득의 0.22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한다. 추가 5%의 기여가 개인주택자금 저축계좌에 적립되며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계좌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분기별로 인플레이에 연계된 고정금액을 개인 퇴직계좌에 기여일마다 납부하는데 이는 *cuato social*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부른다. 2009년 5월,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누적적인 사회급여(*social fee*)를 확립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2012년 12월 기준 사회급여(*social fee*)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급여(*social fee*)는 4.44페소이다. 최저임금의 1.01배에서 4배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은 4.25페소, 4.01배에서 7배는 4.07페소, 7.01에서 10배는 3.88페소, 마지막으로 10.01배에서 15배까지는 3.70페소이다. 그보다 높은 임금의 근로자들에게는 사회급여(*social fee*) 기여가 없다. 사회급여(*Social fee*)는 3개월에 한번씩 인플레이와 연계된다.

기여에는 한도가 있으며 최저 임금의 25배이다.

단계별 인출을 선택하는 연금 수급자는 월 종신연금액이 보장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시, 개인은 적립된 계좌 잔액(유족 급여 보증을 위해 보험료 인하)을 물가연동연금 또는 단계별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률은 남녀가 다르며 장애여부를 고려한다.

우리의 계산에서는 민간근로자가 적립된 계좌잔액(유족급여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유족보험 할인)을 정상 수급개시 연령에 가격 연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연금률은 남녀구분이 있다.

최저연금

민간 부문 근로자: 최저 (보장) 연금은 인플레이에 연계한 1997년 최저임금과 같다(2012년 26,112 페소).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민간 부문 근로자: 조기 수급은 60세부터 64세까지 가능하다. 조건은, 고용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최소 1,250주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최저 보장연금보다 최소 30% 높은 종신연금(life annuity)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라면 60세 이전에 언제든지 수급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여기간 1,250주는 여전히 완수해야 한다.

수급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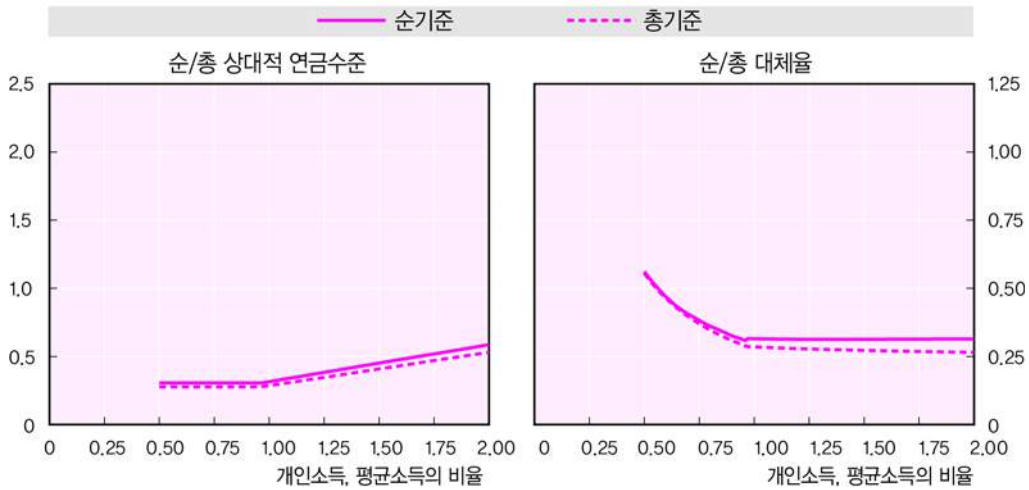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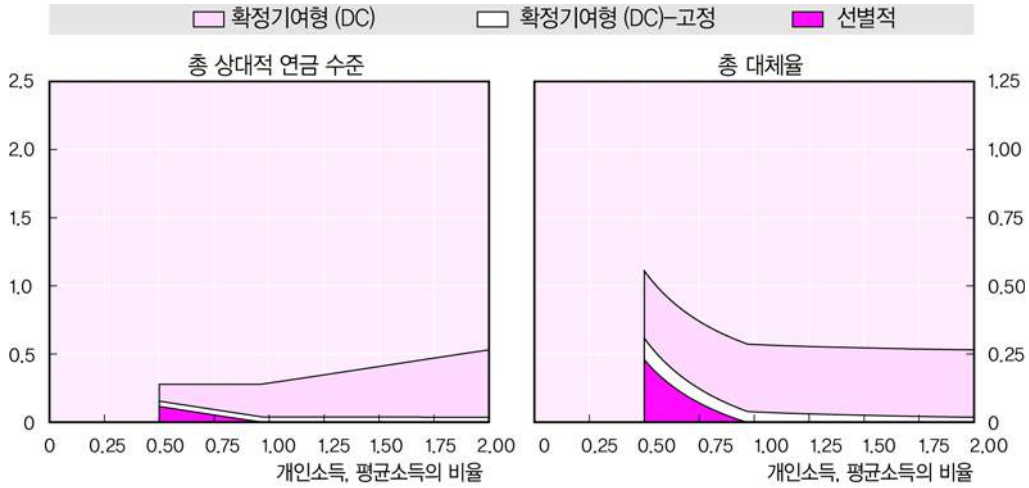
65세 수급개시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실업


민간부문 근로자: 실업상태일 경우 5년에 한번 본인의 노령/퇴직 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 계좌를 실업기간으로부터 최소 5년 전에 개설한 가입자는 기여금을 납부한 마지막 250주간의 평균 급여의 90일분과 계좌 잔액의 11.5% 중 낮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급여는 최대 여섯 번의 월 할부로 지급될 수 있다. 개인 계좌를 실업기간 최소 3년 전에 개설했고 최소 2년간 기여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최대 30일분의 임금(한도: 월 최저임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실업기간 시작 후 46일째부터 실업급여액을 수급할 수 있다.

연금 모형 결과: 멕시코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27,7	27,7	27,7	28,5	40,9	53,0
(평균 총 소득 %)	27,7	37,7	48,9			
순 상대적 연금수준	30,7	30,7	30,7	31,5	45,2	58,6
(순 평균소득 %)	30,7	41,6	54,0			
총 대체율	44,7	55,5	37,0	28,5	27,2	26,5
(개인총소득 %)	27,7	25,1	24,4			
순 대체율	45,3	56,2	38,2	31,5	31,3	31,4
(개인 순소득 %)	30,7	28,9	28,9			
총 연금 자산	7,6	9,4	6,2	4,8	4,6	4,5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10,2	6,8	5,1	4,6	4,5
순 연금 자산	7,6	9,4	6,2	4,8	4,6	4,5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2	10,2	6,8	5,1	4,6	4,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257>


네덜란드

네덜란드: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제는 정액 공적연금제도와 소득비례 기업퇴직연금제도 두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산별 노사협정 덕분에 피용근로자의 91%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제도는 준 강제적 제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핵심 지표

		네덜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46 400	32 400
	미 달러(USD)	61 2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5.1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9	79.9
	65세 시점	19.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7.3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276>

수급조건

기초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수급 가능하다. 모든 거주자들은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은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65세이다. 2013년부터 발효되는 법정 연금 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23년에는 67세에 도달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연령이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된다. 2013년에는 2015년부터 상향조정을 가속화하여 2021년에는 67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독신자의 경우 2012년 총 연금 급여액은 상반기에는 월 1,079.93유로, 하반기에는 월 1,085.63유로였다. 그 외에 연 720.18유로의 추가 휴가수당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연 총액은 13,713.54유로 또는 평균소득의 30%가 된다. 부부의 경우 총 연 급여액은 19,130.76유로였다. 급여액의 가치는 순 최저임금에 연계되며 순 최저임금은 2년에 한번 조정된다.

기초급여는 근로자가 네덜란드에서 살거나 일하는 기간 매 1년마다 완전액의 2% 수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부조 제도도 있다. 사회부조 기준액은 순 기초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제도

네덜란드의 사적연금제도는 가입률이 높다. 이 제도는 2012년 초 4,544개의 연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2년 말에는 414개였다. 이중 74개는 2012년 말 기준, 업계차원의 제도였다. 특정 조건 하에서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자사의 직원들에게 동일한 급여액을 제공하는 사내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계차원의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327개의 단일-고용주 제도도 존재한다. 그 외에 40,818개의 (2011년 말) 중소기업들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을 제공한다.

2012년 초, 연기금에 가입해있는 근로자의 약 93.5%는 확정급여형(DB) 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다.

확정급여형(DB)제도 가입자의 거의 98%는 소득 지표가 생애 평균 소득에 근거하고 있으며 1% 미만은 최종 임금에 근거하고 있다. 나머지는 두 가지의 혼합형(1%)이거나 정액(1% 미만)이다.

대부분의 최종 임금 제도는 근무 년당 이들 소득의 1.75%를 주는데 이는 40년 경력기간을 완료한 후 대체율이 70%라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평균 임금 제도에서는 지급률이 근무 년 당 1.75%에서 2.25%까지 다양하다. 2014년부터 최대 허용 지급률은 최종 임금제도의 경우 2%에서 1.9%로, 평균 임금 제도는 2.25%에서 2.15%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급률은 낮아지면서 새로운 연금 수급권을 구축하기 위한 은퇴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퇴직전 소득에 대한 재평가방법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행은 사회적 파트너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제도마다 다르다. 평균 임금 제도 가입자의 약 90% 정도는 과거 소득이 평균 소득 증가에 맞춰 재평가되는 반면 10%는 인플레이율이 사용된다. 모형에서는 평균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평균 임금 제도를 가정하고 있다.

상향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지만 대부분의 연금 지급액은 매년 상향 조정된다. 연금지급액의 거의 55%가 개별 산업의 임금인상률에 연계되며 연금의 약 42%는 가격에, 3%는 임금과 가격 인상에 연계된다.

이직 시에는 연금 수급권이 백 퍼센트 이전된다. 은퇴 전에 연금 제도를 떠나는 사람들의 연금 수급권을 연금 지급액이 연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존재한다. 권한확정기간(vesting period)은 매우 짧다.

연금대상 소득에는 한도가 없다.

기업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된다. 현 세법에서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모두 65세에 최종 급여의 최대 100%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총대체율 목표를 최종 급여의 70%로 잡고 있어서 사적 급여는 franchise amount만큼 감액된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기초연금은 65세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005년, 별도의 조기수급프로그램(VUT)의 세제혜택과 60-65세 사이의 조기연금이 폐지되었으며 이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수급연기

기초 노령연금수급을 65세(2023년 67세로 점진적 상향)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초 연금 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수급연기 규정은 퇴직연금마다 다르다.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하면서 동일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안에 관련한 법규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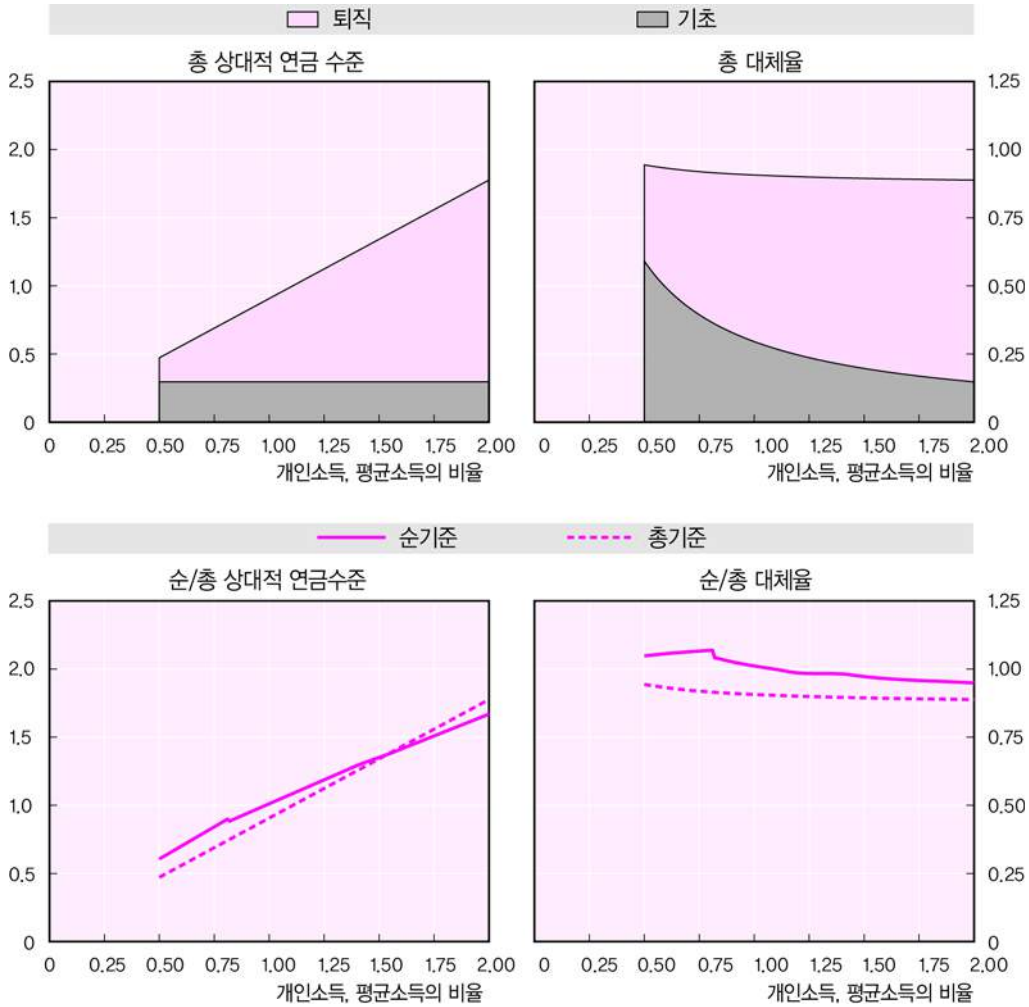
육아

기초 노령 연금제도에서 유급근로를 중단한 기간은 자동적으로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연금에서는 육아를 위해 유급근로를 중단한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없지만 연금 수급권 발생은 남은 근로 기간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많은 제도에서 육아로 인한 근로중단 기간에도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실업

퇴직연금제도에서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기간을 자동으로 커버한다.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들이 기금(FVP)을 관리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실직 기간 중 정해진 기간동안 연금 수급(pension accrual)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금과 공식적인 관련이 없다. FVP 기금은 현재 청산 중이다.

연금 모형 결과: 네덜란드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76,8	47,2	68,9	90,7	134,1	177,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89,9	60,6	84,2	101,1	135,1	166,9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91,4	94,4	91,9	90,7	89,4	88,8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103,8	104,8	106,6	101,1	97,2	94,9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7,8	18,4	17,9	17,6	17,4	17,3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9	14,6	13,5	12,1	10,8	10,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295>


뉴질랜드

뉴질랜드: 2012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거주자를 바탕으로 한 정액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키위세이버 제도의 가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핵심 지표

		뉴질랜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뉴질랜드달러(NZD)	51 300	51 700
	미 달러(USD)	42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4.7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0	79.9
	65세 시점	19.9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3.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314>

수급조건

20세부터 10년간 거주하면 (50세 이후 5년 포함) 6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급여 산정

기초연금

홀로 거주하는 독신자의 연금은 2012년 4월 1일부터 주당 총 400.07 뉴질랜드 달러였다. 2011/12년에는 389.14달러였다. 증액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아래 설명한 정상 연 조정 프로세스와, 역시 아래 설명된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총 연금액은 평균 소득의 41%에 해당하는 20,804달러가 된다.

총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외국으로부터 받는 공적연금 수급액을 고려하여 최종 수급액이 결정된다.

공적연금액은 CPI나 평균 세후 주급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부부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세후 연금액이 조사된 세후 주급 지표의 65%에서 72.5%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신자의 세후 연금액은 부부의 65%(홀로 거주하는 경우)와 60%(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 가격 변동이 조사된 세후 주급 변동분에 계속해서 미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후자가 지수가 된다.

정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세후 연금액이 세후 소득지표의 65%가 아니라 최소 66%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자발적 사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율은 한동안 하락해왔다. 고용된 근로자 중 고용주가 후원하는 전체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3년 13.89%에서 2011년 10.38%로 하락했다. 이들 제도는 세제나 기타 장치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다.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발적 퇴직 저축 제도로서 200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키위세이버 가입자 수는 15-64세 생산연령 인구의 약 34%였다. 이 제도의 기본 기여율은 소득의 4%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한다. 2013년 4월 1일부터 이 제도의 기본 최저 기여율은 소득의 6%로 인상되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한다. 근로자는 4% 또는 8%의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다. 적격자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연 최대 520달러까지 지원된다. 키위세이버(KiwiSaver) 가입자들은 65세부터 연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의 형태로 수급하지는 않는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강제 수급개시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상 수급개시 연령인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다. 65세 이상의 수급자에는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파트너도 포함되며 이 경우 부부 소득에 대한 소득조사 대상이 된다.

수급연기

공적연금의 수급은 은퇴 시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금과 고용을 병행할 수 있다.

수급가능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반드시 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을 연기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이득은 없으며 연금의 소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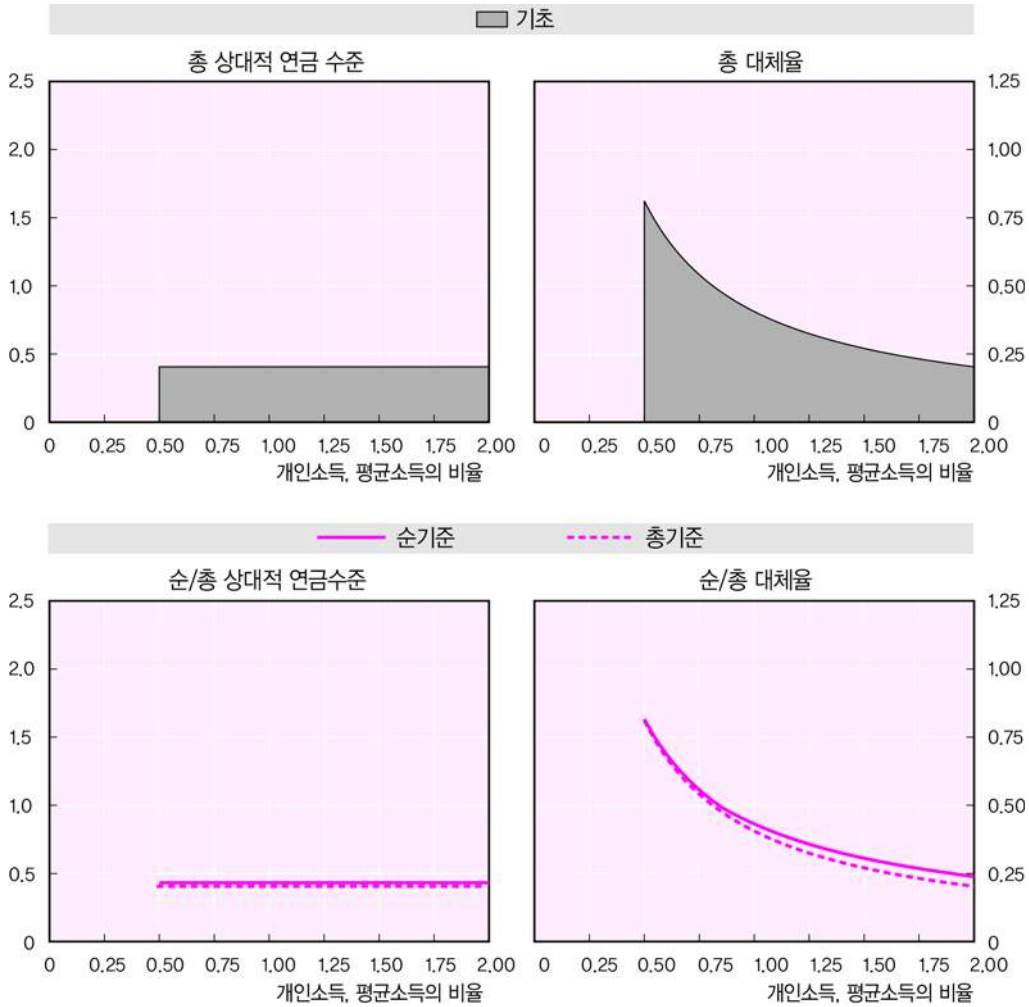
육아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 목적으로 유급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업

궁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모형 결과: 뉴질랜드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0.6	40.6	40.6	40.6	40.6	40.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3.2	43.2	43.2	43.2	43.2	43.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0.1	81.1	54.1	40.6	27.0	20.3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51.7	81.7	55.7	43.2	30.6	23.9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9	17.6	11.7	8.8	5.9	4.4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5	15.4	10.2	7.7	5.1	3.8
	10.6	17.3	11.5	8.6	5.8	4.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333>


노르웨이

노르웨이: 2012년 연금제도

2011년에 시작된 새로운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소액인 사람들을 위한 보장 연금으로 구성된다. 보장연금은 소득 연금에 대한 소득조사적 연금제도이다. 2006년에는 공적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강제적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핵심 지표

		노르웨이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네(NOK)	510 700	237 600
	미 달러(USD)	91 8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5.4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4	79.9
	65세 시점	19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6.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352>

수급조건

노르웨이 거주기간이 16세에서 66세 (포함) 사이에 최소 3년인 경우 신제도의 보장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생긴다. 거주기간 40년인 경우 보장연금이 전액 나오며 거주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연금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신제도에서 연금 수급액은 13세에서 75세 사이 근로 소득 또는 다른 유형의 소득을 통해 누적된다. 개인은 연금대상 소득의 18.1%에서 상한선까지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을 매년 증가시키게 된다. 연금 수급액은 매년 임금 상승률에 맞춰 증액된다.

국가 보험 제도 상의 여러 급여는 기초 금액(G)에 관련하여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2012년 평균이 81,153크로네였다. 한도는 기초금액의 7.1배였다. 2012년 노르웨이의 전일제 근로자 평균 임금은 OECD 추정자료를 기준으로 약 510,700 크로네 또는 기초 금액의 6.3배였다. 연금가능 소득의 한도는 그러므로 평균 임금의 약 113%가 된다.

2011년부터 계리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62-75세 연령 집단의 탄력 은퇴제가 공적연금제도에 도입되었다. 62세부터 소득조사없이 근로와 연금 수급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신규 노령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의 기대수명 조정 역시 도입되었다. 기대수명 제수(divisor)는 주로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각 집단에 대해 결정된다. 제수는 집단이 61세에 도달하면 결정되며 이후 조정되지 않는다. 각 집단은 62세부터 75세까지 일련의 기대여명 제수를 받게 된다. 은퇴 시 연간 연금액은 누적된 연금 수급액을 기대여명 제수로 나누어 산정된다.

은퇴 후 받는 소득연금은 매년 임금상승률에서 연 0.75%의 고정계수를 차감한 값으로 인상된다.

보장 연금

보장연금은 현 연금제도의 최저연금을 대체하게 되며 최저연금과 동일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보장연금은 소득조사 시 소득비례연금의 80%까지 반영한다.

독신연금수급자의 최저연금은 2012년 평균 160,956크로네였으며 이는 평균소득의 약 32%에 해당한다.

보장 연금은 임금에 연계되지만 67세에 기대여명 요인의 영향에 따라 조정한다. 노르웨이 통계청의 장기 전망에서는 67세의 기대여명은 대략 연 0.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전망에 따라 보장연금은 임금에 따라 조정된 후 기대여명 조정으로 인해 대략 연 0.5%의 계수를 차감하게 된다.

확정기여형(DC) 제도

2006년부터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소득의 최저 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확정기여형(DC) 연금 제도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그 대신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액은 강제적 2% 기여금 상의 예상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여는 기초 금액에서 기초금액의 12배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62세부터 탄력적 은퇴가 2011년부터 확정기여형(DC) 제도에도 도입되었다. 급여는 종신연금(life annuity) 또는 최소 77세까지 인출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급여는 남녀공통의 사망률 표를 이용해 산정된 가격 연계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자발적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직장 관련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자발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전체 근로자의 약 3분의 2가 AFP(근로계약에 의한 조기수급제도)에 참여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62세부터 연금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2011년부터 공적 노령연금제도에 62세부터 탄력적 은퇴가 도입된 이후 62-66세 연령집단에 대한 AFP 제도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소득조사없이 근로와 연금수급을 병행할 수는 없으며 특정 수급 조건이 존재한다. 연 소득이 은퇴 시 최소 기초금액(G)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연간 임금이 50세 이후 최소 10년간 최소금액(G)을 초과해야 한다. 1967년부터 은퇴 직전연도까지 최고 10년간의 소득은 최소한 기초금액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AFP 연금은 영구적 장애연금(67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연금 포인트 취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또한 AFP 연금수급자는 소위 AFP 보충연금을 수급한다.

2011년부터 민간부문의 AFP 제도는 공적노령연금제도에 종신 보충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공적 노령연금과 AFP 보충연금, 소득조사없이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충 연금은 연금대상 소득의 약 4.2%에 해당하며 최대 62세까지 누적할 수 있다. 보충 연금은 계리적 중립성과 기대여명 조정을 바탕으로 하며 62세에서 70세 사이에 인출할 수 있다.

민간부문 AFP 연금에는 일정한 수급조건이 있다. 첫째, 근로자는 62세에 지난 5년 중 3년간 사적 AFP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인출 연령을 기준으로 마지막 3년간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은퇴직전 연간소득이 최소 기초금액(G)의 1배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연기

67세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하고 근로를 지속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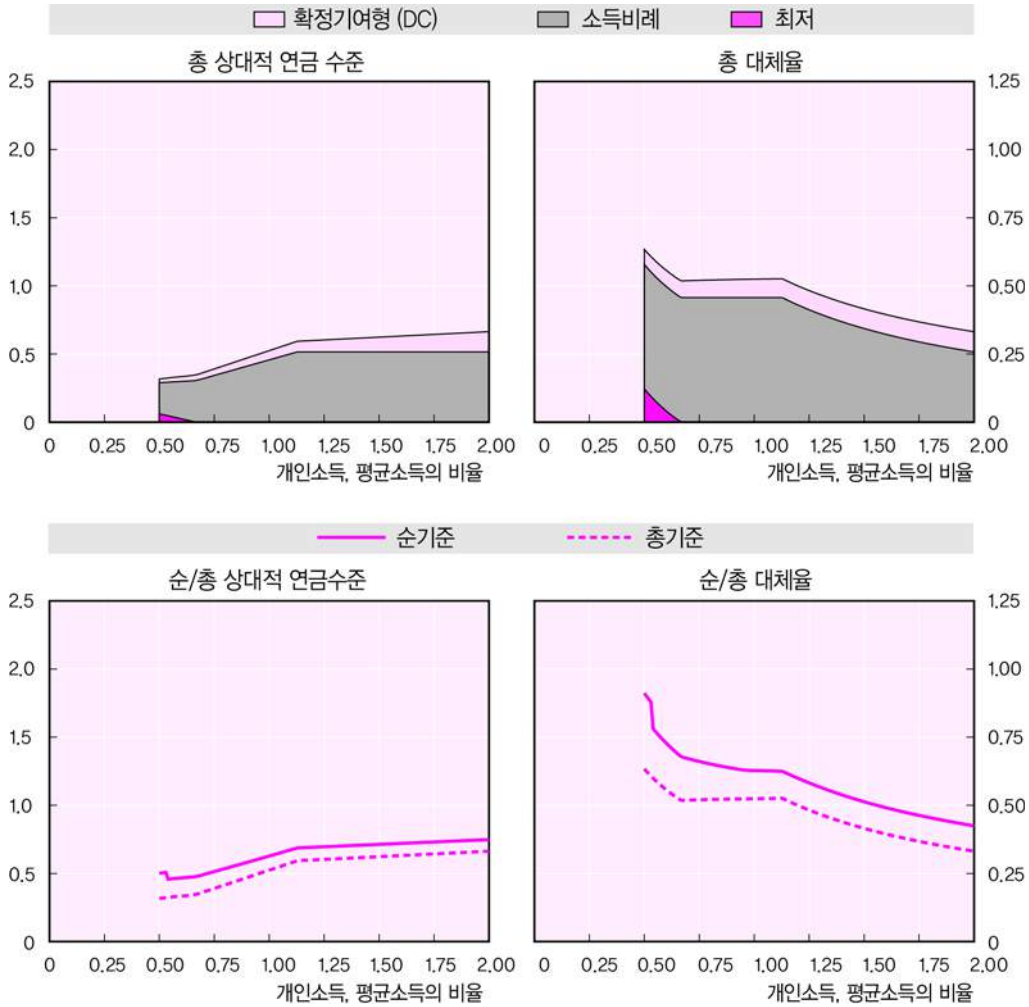
육아를 하는 경우 소득비례연금에 연 기초금액의 4.5배 또는 약 36만5천 크로네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을 적립할 수 있다. 이는 평균 전일제 임금의 약 71%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가정에서 장애인, 환자 또는 노인을 무급으로 돌보는 자이다.

연소득이 기초금액의 4.5배 미만인 부모는 보충 수당을 받는다. 연 소득이 4.5 기초금액을 초과 하는 부모는 보충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소득은 가족 단위로 신청하며 엄마 대신 아빠가 수급 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연금소득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다른 집단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은 개인 단위로 수급한다.

실업

실업상태에 놓이기 전의 소득을 근거로 연금 소득을 적립할 수 있으며 한도는 7.1 기초금액이다.

연금 모형 결과: 노르웨이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46.5	31.7	39.0	52.5	62.3	66.4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7.7	50.2	51.4	62.8	71.4	74.9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2.3	63.4	52.0	52.5	41.6	33.2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63.8	91.1	66.1	62.8	51.3	42.5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0	12.2	9.9	10.0	7.9	6.2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7	13.6	9.2	8.5	6.4	4.9
	10.1	15.8	10.7	9.8	7.3	5.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371>


폴란드

폴란드: 2012년 연금제도

신 제도는 명목계정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개혁 당시 30세 미만인 자 (1969년 및 이후 출생자)는 적립식 제도에 참여해야 하며 30-50세인 자 (1949년에서 1968년 출생자)는 적립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1999년에 이루어졌으며 조기 은퇴자를 제외하고는 번복이 불가능했다.

핵심 지표

		폴란드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즈워티(PLN)	38 900	132 100
	미 달러(USD)	12 6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1.8	7.8
기대여명	출생 시	76.3	79.9
	65세 시점	17.1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1.6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390>

수급조건

최저 수급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였다. 2013년 1월1일부터 연금수급연령은 매년 1월, 5월, 9월에 1개월씩 연장되어 남녀 공히 67세에 도달하게 된다(여자 2040년, 남자 2020년). 최저연금의 경우 남자는 25년, 여자는 20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소득의 12.22% (또는 1949년에서 1968년 사이 출생한 근로자 중 적립식 층(tier)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19.52%)가 개인의 명목 계정에 적립된다. 명목 금리는 적용 임금 상승의 100%로 정의되어 있으며 가격 인플레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명목 금리는 2000년부터 계정에 소급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금(ZUS) 내의 추가적인 서브 계정 생성도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변경사항은 하기 “확정기여형(DC)”에 설명되어 있다). 기여금을 서브 계정에 연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금(ZUS)에 이미 존재하는 계정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과 다르다. 또한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은퇴 시, 누적된 명목 자본은 “G 값”으로 나누어 연금 급여액을 산정하게 된다. G값은 은퇴 연령 당시 평균 기대여명이다. 이 과정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연금화(annuitisation) 과정과 동일하다. G 값은 중앙 통계국에서 발간하는 생명 표를 이용해 산정한다. 모형에서는 UN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계리적 자료를 사용했다.

기여금과 연금대상 소득의 한도는 국가 예산법상 해당 연도에 대해 추정된 평균 월 소득의 2.5배로 설정되어 있다. 2012년 한도는 105,780즈워티, 2013년은 111,390즈워티였다.

연금 급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계된다. 2008년부터 고정된 연계율을 기반으로 (3월 1일부터) 매년 연계가 이루어졌다. 연계 후 연금액은 개인 급여액에 연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계율은 전년도 평균 월 소득의 실질 상승분의 최소 20%만큼 인상된 전년도 소비자 및 서비스의 평균 연간 지수로 이해된다. 연계율 인상은 사회경제사안을 위한 삼자위원회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연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계율은 내각 심의회 조례에 따라 고정된다. 2010년 3월 1일부터 최저연금액 (사회연금 포함) 역시 연계의 결과로 인상되었다. 연계는 연계일로 지정된 3월 1일 이전에 부여된 연금 급여액에도 적용된다. 연계는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될 모든 급여액에 적용된다. 2011년, 연금에 대한 연계율은 103.1%였다(2010년 104.62%, 2009년 106.1%). 2012년에는 연금 급여액 연계에 예외가 적용되었으며 2012년 3월 1일에 모든 연금이 71즈위티씩 인상되었다. 2013년에는 연금에 대한 연계율이 104%였다(2013년 3월 1일부터).

최저연금

부과방식 제도에는 최저연금이 있으며 평균소득의 약 25%에 해당한다. 최저연금은 2012년 3월 1일부터 799.18즈위티였으며 2011년 3월 1일부터는 728.18즈위티였다. 2013년 3월부터는 831.15즈위티이다.

연계는 부과방식제도로부터의 연금과 동일하다. 급여의 정기적 연계가 없을 때에는 연금 수급액이 적은 수급자들을 위한 추가적 일시불이 지급되었다 (2005년과 2007년).

신 연금제도에서는 최저은퇴보장(minimum retirement guarantee)의 재정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며 총 강제적 노령연금액이 최저연금보다 낮으면 지급한다.

확정기여형(DC) 제도

총 기여의 약 7.3%는 강제 가입자 또는 이 옵션을 선택한 이들을 위해 적립식 제도로 전용되었다.

2009년 초에 의회에서 채택한 연금법에서는 연금 저축이 65세 미만이 아닌 연금수급연령의 남녀 공통 생명표를 이용해 단일 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은퇴하는 여성들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프로그래밍된 지급구조(withdrawal)를 바탕으로 개인계좌로부터 연금액(임시 자본 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이는 개방형 연기금(Open Pension Funds)에서 관리한다. 65세에 도달하면 개인계좌의 잔액은 종신연금을 매수하는데 사용된다. 임시 연금은 소득비례 층(tier)으로부터의 연금처럼 산정되고 연계된다(모형 산정에서 사용).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11년 5월 1일부터 7.3%가 아니라 2.3%가 적립식 제도로 전용되었다. 나머지 5%는 특별 개인 서브 계좌로 들어갔다. 이 금액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연 GDP 증가율(현 가격 기준)에 의해 재평가된다. 사회보장기금(ZUS)과 적립식 제도 내의 서브 계정에 할당된 기여금의 비중은 2017년까지 변경되며 각각 3.8%와 3.5%에 도달하게 된다. 누적 자본은 상속 가능하다.

국가 및 적립식 제도에 대한 연금 기여

기간	국가 제도		적립식 제도	
	%	서브계정	OPF	합계
2011년 4월 30일까지	12,22	-	7,3	19,52
2011년 5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12,22	5,0	2,3	19,52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	12,22	4,5	2,8	19,52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12,22	4,2	3,1	19,52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12,22	4,0	3,3	19,52
2017년 1월 1일~	12,22	3,8	3,5	19,52

경력 차이

조기 수급

일반 연금 제도에서는 조기 수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노령 연금제도(1949년 이전 출생자에 적용)는 광부, 철도 노동자, 교사, 특별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자,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조기 수급을 허용했다. 조기수급 적용은 2008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그리고 광부들의 경우 2005년부터 조기수급제도가 1999 이전 규정에 따라 부활했다.

2009년부터 발효된 브릿징 연금제도는 새로운 목록(의학적으로 검증된)을 바탕으로 특별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 c.a. 270 000. 근로자들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최고 5년 동안 브릿징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파일릿, 제철소 근로자 등 일부 직종은 10년). 이 급여는 국가 예산으로 재정을 충당한다(2010년부터는 고용주가 납부한 기여금으로도 충당). 브릿징 연금은 소득 비례제도의 연금 산식과 마찬가지로 60세 시점의 남녀공통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브릿징 연금 수급자격이 없고 특수한 조건에서 15년간 근무했거나 2009년 1월 1일 이전에 특별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들은 새 법규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보상은 은퇴 시점에 산정되며(여성-최소 60세, 남자-최소 65세) 초기 자본에 추가된다.

2009년 7월부터 보상 급여는 교사의 경우도 여자 55세, 남자는 현재 55세이고 2018년부터는 57세 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입 근로 기간이 30년(시간제 근로 20년 포함가능)을 초과해야 하며 고용을 종료해야 한다.

수급연기

연령 제한없이 명목 연금 및 적립식 확정기여형(DC) 연금 요소를 둘 다 연기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기하는 경우 기여를 계속하면서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전액을 수급하기 전에 고용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종료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계속하면서 전액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현재 근로 중이며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법정 수급개시 연령 미만이거나,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병행을 신청

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다. 소득(연금 급여액 포함)은 과세대상이다.

육아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출산 급여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에서 납부해주는데 출산 급여는 지난 12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값이다. 2009년부터 지급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한 자녀의 경우 20주, 두 자녀는 31주, 세 자녀는 33주, 네 자녀는 35주,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37주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한 명당 최대 4주까지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며(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주로 연장되었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늘어난다. 추가적인 출산휴직 중인 부모는 시간제로 근로할 수 있다(단, 최대 50%). 이 경우 출산휴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2010년 1월 1일부터 아버지는 2주간 부모수당(parental benefit)을 수급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부모수당은 자녀 한 명당 최대 36개월까지 수급 가능하다. 이 기간 중에는 가입자로 있는 제도에 연금 기여금이 납부되며 사회복지급여액이 연금, 장애 및 보건 기여에 대한 기준(420즈워티)으로 사용되었다. 2009-11년에는 기여 지급에 대한 기준이 최저임금(즉, 평균임금의 40%)였으며 2012년부터는 평균 임금의 60%이다(그러나 기준은 지난 12개월간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휴직 중인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기여금을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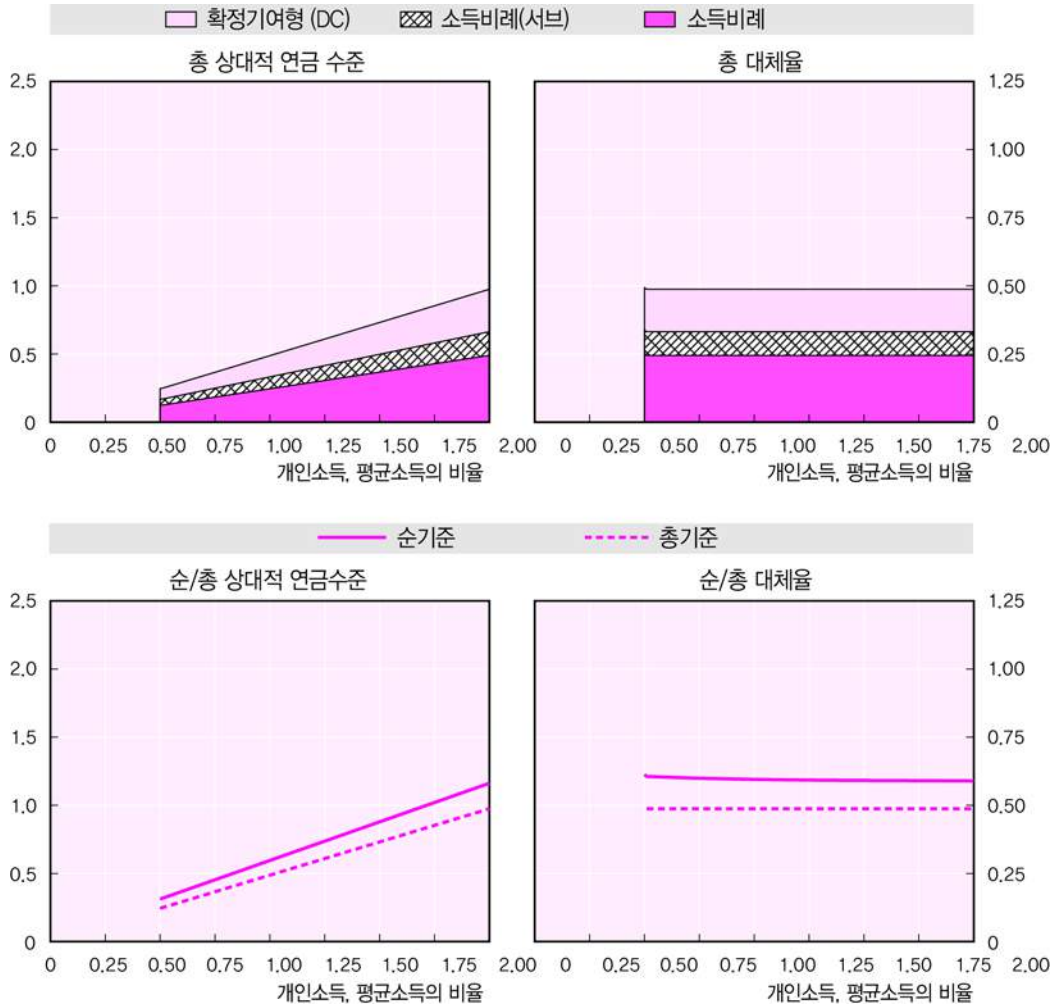
기여금이 납부되는 모든 기간이 최저연금보장 조건에 포함된다.

실업

정리 해고된 이들(예: 청산,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 전 수당 제도가 있다. 은퇴 전 수당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데 여자는 55세부터, 남자는 60세부터 연금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들 규정은 2004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전의 은퇴 전 급여는 여자는 50세부터, 남자는 55세부터 지급되었다. 은퇴 전 급여는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의 대상이 아니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에 정부는 실업급여의 규모(급여의 12.22%는 명목계정으로, 7.3%는 확정 기여형(DC) 제도로)을 기준으로 연금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다. 2011년 5월부터 5%는 서브 계정으로 납부된다(상기 “확정기여형(DC)”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기여금이 납부된 모든 기간은 최저연금보장 조건에 포함된다.

연금 모형 결과: 폴란드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9,0	24,6	36,6	48,8	73,1	97,5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8,2	31,5	45,4	59,5	87,9	116,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48,8	49,3	48,8	48,8	48,8	48,8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59,8	61,3	59,9	59,5	59,1	58,9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0	7,1	7,0	7,0	7,0	7,0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2	6,5	6,3	6,2	6,1	6,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409>


포르투갈

포르투갈: 2012년 연금제도

포르투갈은 소득조사적 안전망과 함께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다.

핵심 지표

		포르투갈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15 700	32 400
	미 달러(USD)	20 7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2,3	7,8
기대여명	출생 시	79,8	79,9
	65세 시점	18,9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0,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428>

수급조건

표준 수급개시 연령은 65세이다.

사회연금은 65세부터 지급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매년 7월과 12월에 연금수급자들은 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추가 연금을 수급한다. 그러나 포르투갈 경제조정프로그램(PAEF)에 따라 13월과 14월 연금지급이 2012년, 일시 중단되었다. 단, 그 기간에도 최저연금수급자들은 보호되었다. 뿐만 아니라 월 600유로를 초과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특별연대기여(CES)가 시행되었다. 13월, 14월 연금은 2013년 재도입되었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

연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text{연금액} = \text{기준 소득} \times \text{지급율} \times \text{지속가능성 요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등록되고 기준소득의 산정(RE)에 반영된 연 소득은 주택가격은 제외된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조정된다.

전체 기여 이력에 따라 연금을 산정하려는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된 소득 금액은 CPI의 75%, 그리고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기여금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평균 변화가 CPI 보다 클 경우 이 변화의 25%의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된다. 연간 조정 지수는 CPI + 0.5% 보다 높을 수 없다.

조정은 고려대상인 각 연도에 해당하는 계수를 기준 소득 산정에 고려된 연 소득에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산정 기준 조정을 위한 연계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기준 소득 산정의 목적으로, 소득 등록 년수가 40일 초과하는 경우 조정 후에 최고의 40건의 연 소득을 고려하게 된다.

연금은 기여년수 20년 미만인 경우 기여기간의 각 년에 대해 소득기준의 2% 수준에서 지급되며 하한선은 30%이다. 기여년수 21년 이상의 수급자들의 경우 지급률은 소득에 따라 2%에서 2.3%의 범위이다. 지급률 스케줄은 IAS (Indexante dos Apoios Sociais - Social Support Index; 2012년 419.22 유로). 소득의 각 층(tier)은 서로 다른 비율로 연금을 발생시킨다. 연금은 최대 40년간 발생한다.

기준 소득/IAS	≤1.1	>1.1-2.0	>2.0-4.0	>4.0-8.0	>8.0
지급률 (%)	2,3	2,25	2,2	2,1	2,0

소득 지표는 최종 15년 중 최고소득을 올리는 10년간이었다. 현재 이 기준은 연장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생애 평균 소득이 된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기여금을 납부했고 노령 연금에 대한 수급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다음 세가지 산식 중 가장 유리한 산식을 사용해 연금이 산정된다. 1) 이전 규정을 적용 (기여년 당 2% 발생 및 최종 15년 중 최고의 10년간 발생한 소득 기준), 2) 위에서 설명한 신규정을 기여경력 전체에 적용. 3) 기여경력에 따라 두 규정을 안분하여 적용.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여금은 납부했지만 해당일 현재 노령연금 수급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이들의 경우,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은퇴한다면 위의 세가지 산식 중 가장 유리한 산식으로 연금을 산정할 수 있고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 은퇴하는 경우라면 2번과 3번 산식 중 유리한 산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여년수가 40년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의 40년만 급여 산식에 포함된다.

지속가능성 지수(factor)은 인구학적 변동에 대한 연금제도의 적정성 지수이다. 이 factor 지수는 2006년 65세 인구의 평균 기대여명과 연금 수급 직전 년도의 평균 기대여명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산정된다. 고려된 지속가능성 지수는 장애연금(invalidity pension)이 노령연금으로 전환된 일자 또는 노령연금 시작 연도에 검증된다. 이 지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전환으로 인한 노령연금에 적용된다(연금수급자가 66세로 넘어가기 직전, 전환일에 적용된다).

이 지속가능성 지수는, 가입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작되는 장애 연금의 전환으로 발생하는 노령연금이나 총 장애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입자의 65번째 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이미 20년 이상 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 2007년 6월 1일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해당 일자부터 65번째 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의 기간동안 이 연금을 수급했다.

2012년 지속가능성 지수는 3.92%였다.

월 연금액이 600유로에서 1,100유로 사이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13월과 14월 연금액은 다음 산식을 통해 산정된다.

$$\text{연금액(13월, 14월)} = 1,320\text{유로} - (3.2 \times \text{월연금액})$$

연금 지급액 발생에 대한 가격연계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며 연금액이 적을수록 많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격에 연계되었으나 이 메커니즘은 2012년에 중단되었다.

노령연금과 함께 소득이 누적되는 경우 연 연금액은 등록된 총 소득의 2%씩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매년 1월 1일 발효되며 전년도에 등록된 소득을 참조한다.

특별 연대 기여(extraordinary solidarity contribution)는 그 출처에 관계없이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적 적립식 은행 상품 등)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에 대해 시행되어 왔다. CES 금액은 세전으로 산정되며 12 x IAS와 18 x IAS 사이 연금 소득의 25%, 18 x IAS를 초과하는 연금 소득의 50%에 해당된다.

최저연금

기여제도에는 월 최저연금이 존재하며 값은 아래 표와 같이 기여 경력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월 지급은 14회 이루어진다.

기여년수	유로
>15	254.00
15 to 20	274.79
21 to 30	303.23
31 and over	379.04

일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이 최저보장금액보다 적으면 최저보장금액과 법정 또는 법적 연금액 간의 차액과 동일한 소외 사회 보충급여만큼 증액된다.

사회 보충 급여는 자산조사나 거주지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선별적 연금

소득비례제도의 수급자격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월 사회연금은 2012년 195.40유로였다.

이것은 독신자의 총 연금이 IAS의 40%, 부부의 경우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역시 월 급여가 연 14회 지급된다.

사회연금 수급자들은 연금 외에 추가 연대 보충수당(solidarity extra supplement)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급여의 월 지급액은 70세 미만인 경우 17.54유로, 70세 이상은 35.06유로이다.

노인 빈곤을 타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요 목표 급여인 SSE (Solidarity Supplement for the Elderly)는 수급자격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2008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급여의 추가적인 수급조건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 (자산조사를 이행하지 못해 사회 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국민들 역시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음) 및 SSE 자산 조사 이행이다.

SSE는 Social Insertion Income과 비슷한데, 이유는 SSE의 보충수당이 수급자의 소득과 해당 기준선 간의 격차와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동시에 자산조사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SSE는 수급자의 소득과 다음 기준금액(RA, Reference Amounts) 간의 차이와 같다.

- 독신자의 경우 연 5,022.00유로
- 부부는 연 8,788.50유로

수급자의 소득은 본인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로 표시되는 자녀의 가구 소득의 일부로 구성된다.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 요소가 수급자의 소득에 부가되는 것은 수급액과 SSE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가족연대(Family solidarity)”를 산정하려면, 각 아들/딸 가구의 총 연소득을 구한 후 해당 가구에 속하는 성인의 수로 나눈다(균등화 척도: 첫번째 성인은 1, 이후의 각 성인당 0.7, 미성년자 각각에 대해 0.5). 그리고, 하기 표에 따라 가족연대를 가구 균등화 소득의 비율로 결정한다. 자녀의 가구 균등화 소득이 네번째 층(tier)에 속하는 경우는 SSE를 수급할 수 없다.

층	가구의 균등화 소득	가족연대(균등화 소득의 %)
첫번째	$2.5 \times RA$	0
두번째	$>2.5 \times RA$ and $\leq 3.5 \times RA$	5
세번째	$>3.5 \times RA$ and $\leq 5 \times RA$	10
네번째	▶ $5 \times RA$	SSE 대상에서 제외

경력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2014년까지 중단되고 있다. 이전에는 가입자가 최소 55세이고 소득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조기수급이 가능했다.

가입자가 수급연령을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에 따라 65세 이전에 연금수급을 신청하면 65세까지 매달 0.5%씩 감액된다. 그러나 3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3년마다 12개월씩 예상 개월 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상 개월 수는 예상되는 연금 수급일과 가입자의 65번째 생일 전날 사이로 결정된다. 감액된 예상 연금을 수급하고 활동을 중단한 가입자는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계속 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가입자가 감액 요인 적용없이 예상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데 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연금은 요건이 충족된 월부터 가입자가 65세에 도달한 일자 또는 65세 이전이라면 연금 시작일자 사이의 개월 수에 0.65%를 적용하여 증액된다.

수급연기

가입자가 65세를 초과한 시점에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연금산정과 관련있는 소득 등록기간이 최소 15년이라면, 연금액은 각 월별 금액에 연금 시작 월부터 65세 도달 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증액된다. 근로 연령 한도는 70세이다.

월 증액률은 연금 시작일까지의 소득 등록 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연령	기여 경력 (년수)	월 증액률
65세 초과	15~24	0,33
	25~34	0,50
	35~39	0,65
	40 이상	1,00

전체적인 증액률을 산정할 때는 유효 근로 때문에 소득 등록 개월 수를 고려하게 된다. 증가한 연금액은 법정 연금 산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던 기준 소득 중 최고 기준 소득의 92%를 초과할 수 없다.

육아

출산휴가 기간 (완전한 휴가 및 시간제 근로)은 연금 수급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 기간은 수급 조건을 따질 때 포함된다. 이 기간의 연금대상 소득은 휴가가 시작된 후 두번째 달 이전의 6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2002년부터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며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전일제 근로기간으로 간주해준다.

실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금 수급액 산정 시 포함된다. 이 기간의 연금대상 소득은 실업기간 시작 후 두번째 달 이전 6개월간의 급여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실업과 사회실업급여에 둘 다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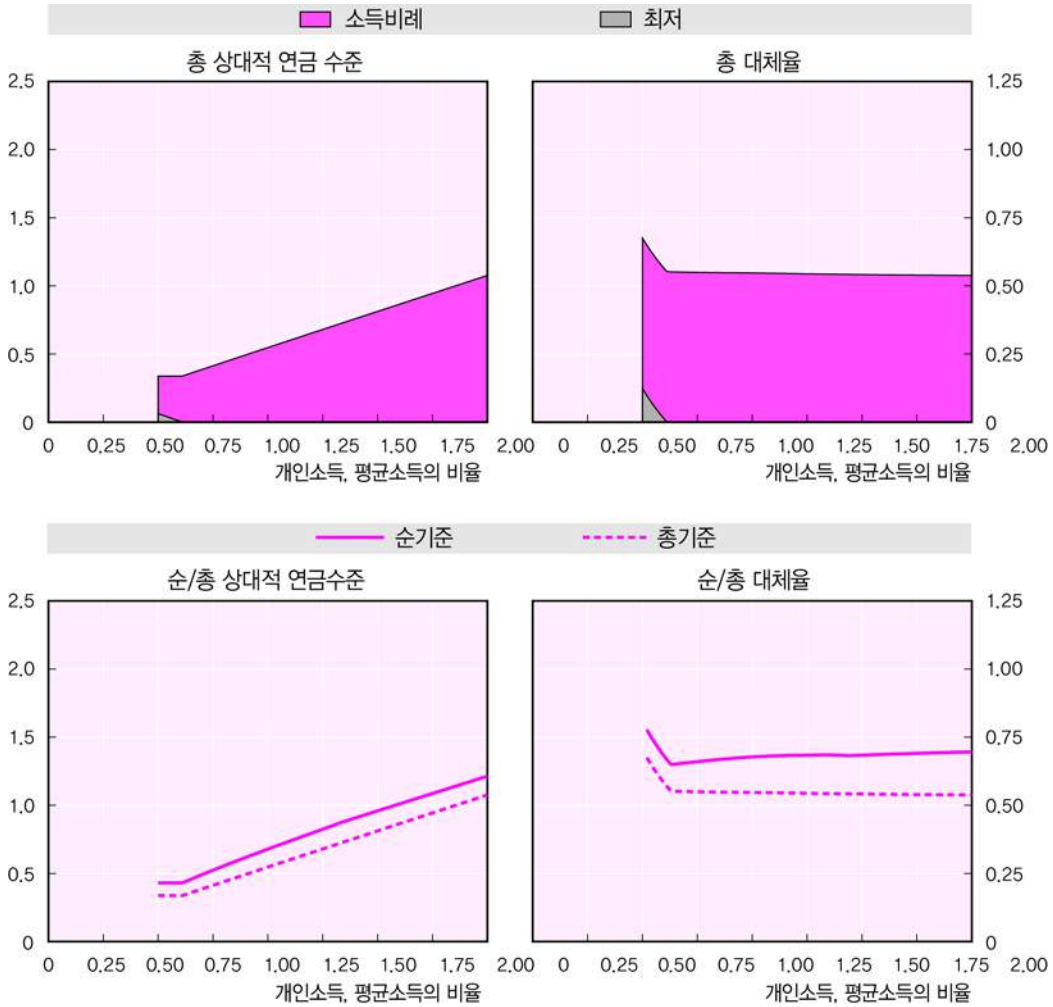
장기실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다. 오랜 기간 실업상태로 있는 57세 이상인 자는 62세에 감액없이 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최저 기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업 급여 수급이 고갈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기 수급은 또한 실직 시 52세 이상인 경우 22년의 기여년수를 확보하고 있다면 57세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금은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의 감소가 적용된다.

실업이 합의된 근로 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연금액은 추가 감액률의 대상이 되며 이는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등록된 기여기간이 실업 전 12개월 중 180일을 초과하고 실업 전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면 자산조사적 실업 부조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수급자가 50세인 경우 조기수급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금 모형 결과: 포르투갈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8,0	33,8	41,2	54,7	81,2	107,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8,5	43,1	52,6	69,7	99,3	125,4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5,0	67,5	55,0	54,7	54,1	53,8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65,6	77,7	66,3	67,8	68,4	69,6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6	9,7	7,6	7,6	8,1	8,1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6	9,7	7,6	7,3	7,5	7,1
	8,8	11,2	8,8	8,5	8,4	8,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447>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2012년 연금제도

강제적 노령연금의 명목확정기여형(NDC)에 기반한 소득비례 부분과 확정기여형(DC)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정 사회연금과 비 국가(사적) 연기금의 자발적 연금 저축도 있다.

핵심 지표

		러시아 연방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루블(RUB)	321 900	1 303 500
	미 달러(USD)	10 5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9,2	7,8
기대여명	출생 시	68,0	79,9
	65세 시점	13,9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9,6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466>

수급조건

노령 노동연금의 정상 연금수급 연령은 남자 60세, 여자 55세이며 가입기간 최소 5년이 필요하다. 보험 적격 기간에는 근로 기간 외에 군 복무 기간 및 가족 구성원을 포함 기타 유사한 유형의 서비스(홈 오피스, 국가 소방시설 근무 등) 기간, 일시적 장애로 인해 공적 사회보험을 수급한 기간, 부모 중 한 명이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돌본 기간(단, 합계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유급 공적 근로 참여 기간, 국가 고용청에서 고용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근무를 명한 경우 이동 기간, 부당하게 탄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나 차후 형사상 무죄인 것으로 판결이 나 사회에 복귀한 경우의 복역 기간, 감금되고 망명한 경우 복역기간, 비 장애인이 장애인(장애 1집단), 장애아동 또는 80세 이상 노인을 돌본 기간 등이 포함된다. 부부의 경우 가장의 군복무 또는 공무수행 기간 중 배우자도 보험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합해 5년을 넘을 수 없다.

방사능이나 기타 인재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50세(남자) 또는 45세(여자) 이상이고 근로(service) 기간이 최소 5년인 경우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국가 사회연금은 장애인이나 남자 65세, 여자 60세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된다.

연금수급은 은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연금수급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는 없다.

급여 산정

연금은 강제연금보험법에 따라 강제적 연금 보험 제도(명목 확정기여형 - NDC)에 대한 기여금과, 러시아연방 연기금 예산과 법정 사회연금 및 급여에 대한 연방 예산 이전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2012년, 고용주의 기여율은 51만2천 루블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22%, 51만2천 루블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10%였다. 2013년에는 56만8천 루블까지는 22%,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이다.

노령 노동연금

노령 노동연금은 두가지 요소의 합으로 산정된다.

- 명목 확정기여형 요소 - 명목계정에 기반한 급여
- 적립식 요소 - 2012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개인계정의 값에 기반한 급여 (6%의 기여율 + 이자)

2012년 명목확정기여형의 기초부분 (기초 정액 “급여”)은 피부양자가 없고 장애인이 아닌 80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 3,279루블이었다.

러시아 연방의 노동연금법에 따라 명목 확정기여형 요소(기초 정액 “급여”제외)는 정부가 정한 대로 연간 연계의 대상이 되는 명목 적립식 계정의 연금에 대한 적용 일자를 기준으로 적립된 소위 연금 자본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2년 1월 1일 현재 연금자본의 연계를 위한 연간 계수 (coefficient)는 1.10이다. 통합된 기초 및 명목 확정기여형에 대한 기여율은 51만2천 루블 미만은 16%, 그 이상은 10%이다.

월 연금액 (명목 확정기여형 및 적립식 요소)은 계정의 연금자본액수를 예상 연금지급 개월 수로 나눈 몫으로 결정된다. 2013년에는 228개월 (19년)이다. 할당된 명목확정기여형 요소 역시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른 연계의 대상이 된다. 적립식 요소의 연금액은 일부 정의된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될 수 있다.

노령 노동연금은 방사능 및 인재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지급 가능하다. 금액은 사회 연금의 250%이다.

공식적인 최저 또는 최대 월 연금은 없다.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강상 해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정집단의 사람들(근무년수는 조건과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의 경우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기수급 급여는 국가에서 부과방식으로 지급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특수한 조건을 가진 직종의 고용주와 조기연금수급 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은 강제적 연금보험 제도에 추가 보험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2013년에는 2%와 4%, 2014년 4%와 6%, 2015년 6%와 9%이다.

수급연기

노령 노동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명목 확정기여형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기한 기간 만 1년마다 예상 연금 지급 기간이 1년 (12개월)씩 줄어든다. 최저 예상 연금 지급 기간은 14년 (168개월)이다. 2012년 말, 정부는 퇴직급여를 늘리기 위한 수급연기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포함한 장기 연금제도 전략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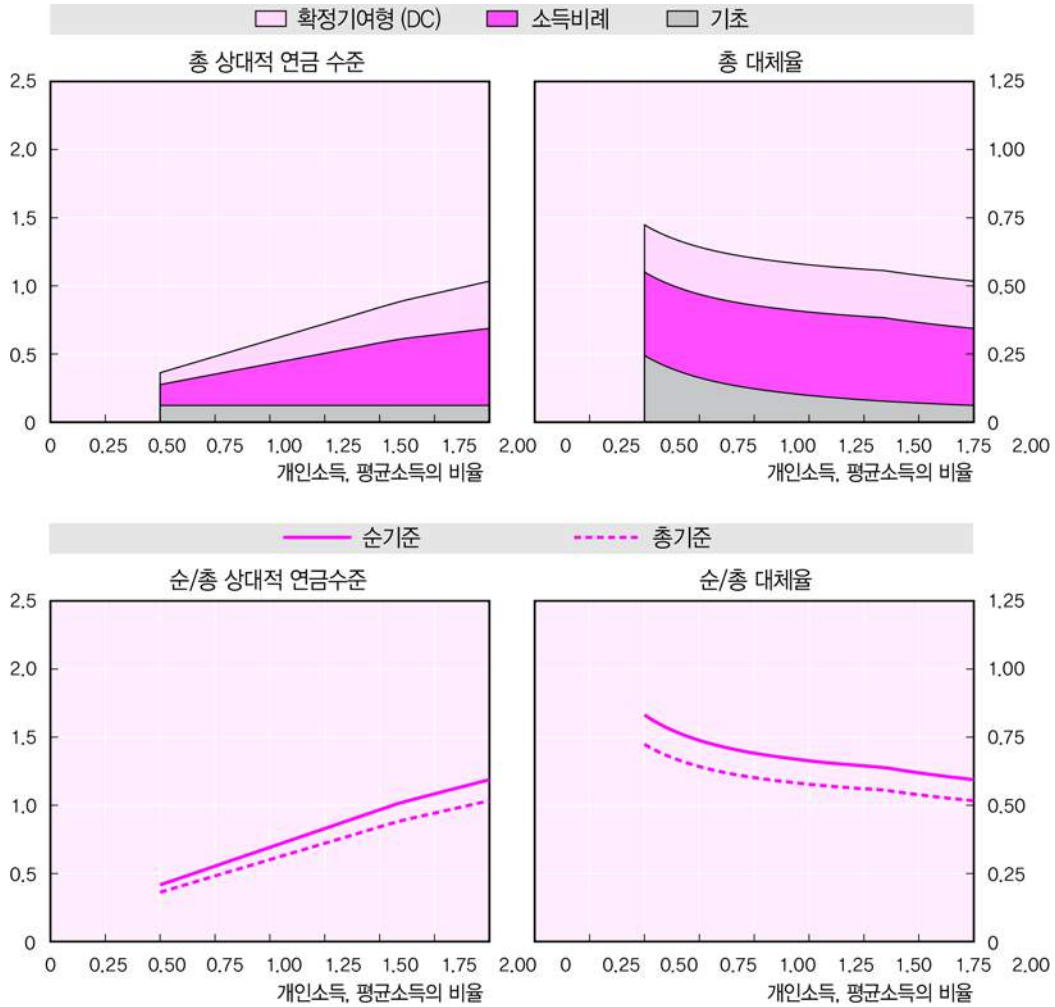
육아

육아기간 (18개월 이하의 자녀. 단, 합계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은 보험 산정(수급조건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

실업

국가고용청의 제안이 있고 고용 조건이 부족한 경우, 최대 60세(남자)와 55세(여자)까지 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가능연령으로부터 2년보다 앞선 시점에는 불가하며 보험가입기간이 남녀 각각 25년과 20년을 초과해야 하고 회사나 사주의 부도, 직원 감원의 경우 조기수급의 근무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액은 노동 노령연금의 보장 부분의 경우 러시아 연방의 노동연금법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모형 결과: 러시아 연방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51.0	36.2	48.2	60.2	84.1	103.4
(평균 총 소득 %)	45.7	32.9	43.2	53.6	74.2	90.8
순 상대적 연금수준	58.7	41.6	55.4	69.1	96.7	118.8
(순 평균소득 %)	52.5	37.8	49.7	61.6	85.3	104.3
총 대체율	63.0	72.4	64.2	60.2	56.1	51.7
(개인총소득 %)	56.4	65.8	57.6	53.6	49.5	45.4
순 대체율	72.4	83.2	73.8	69.1	64.5	59.4
(개인 순소득 %)	64.9	75.6	66.2	61.6	56.9	52.2
총 연금 자산	8.2	9.5	8.4	7.9	7.3	6.8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4	13.3	11.7	10.8	10.0	9.2
순 연금 자산	8.2	9.5	8.4	7.9	7.3	6.8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4	13.3	11.7	10.8	10.0	9.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485>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연금제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 해외 근무자, 강제 가입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자발적 제도가 있다.

핵심 지표

		사우디아라비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리얄(SAR)	172 500	160 200
	미 달러(USD)	46 0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여명	출생 시	75.6	79.9
	65세 시점	15.6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4.9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504>

수급조건

기여기간 (기여금 납부 또는 기여인정) 최소 120개월인 경우 (기여인정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 남자 60세, 여자 55세.

급여 산정

노령연금

연금은 각 기여기간에 대해 가입자의 마지막 2년간 평균 월 소득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까지이다.

급여 산정 목적의 최저 월 소득은 1,500 리얄이다. 급여산정 목적의 최대 월 소득은 45,000리얄이다.

급여산정 목적의 평균 월 소득은 최종 5년의 기여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의 가입자 월 소득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입자의 월 소득이 은퇴 전 마지막 2년간 감소한다면 급여산정 목적으로 사용된 평균 월 소득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 조항이 적용된다.

최저연금은 월 1,725리얄이다.

노령 정착연금(Old-age settlement)

기여기간 첫 5년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은퇴 전 마지막 2년간 평균 월 소득의 10%가, 그 외의 추가 기간에 대해서는 12%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경력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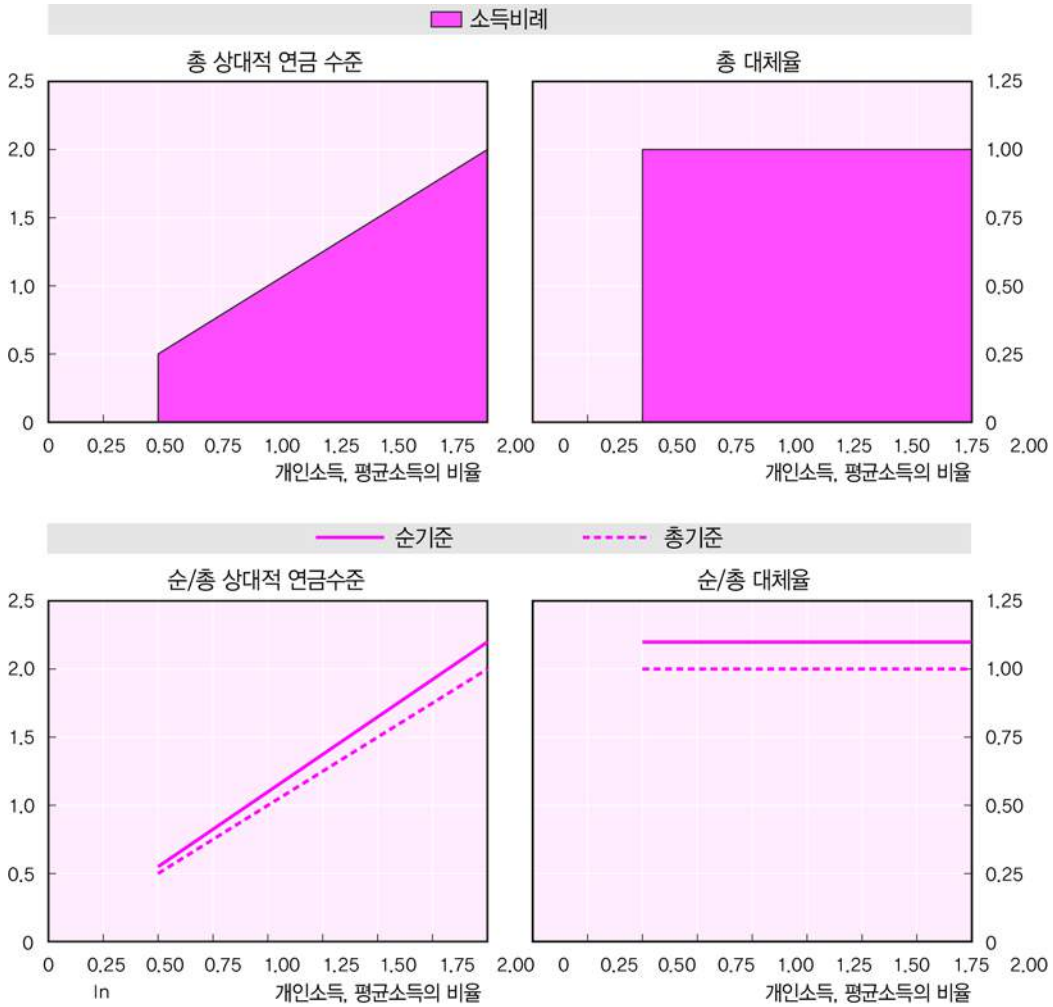
조기수급

기여기간 300개월 이상이고 더 이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조기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연기

수급연기는 불가능하다.

연금 모형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81.0	50.0	75.0	100.0	150.0	200.0
(평균 총 소득 %)	70.9	43.8	65.6	87.5	131.3	175.0
순 상대적 연금수준	89.0	54.9	82.4	109.9	164.8	219.8
(순 평균소득 %)	77.9	48.1	72.1	96.2	144.2	192.3
총 대체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인총소득 %)	87.5	87.5	87.5	87.5	87.5	87.5
순 대체율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개인 순소득 %)	96.2	96.2	96.2	96.2	96.2	96.2
총 연금 자산	18.4	18.4	18.4	18.4	18.4	18.4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9.3	19.3	19.3	19.3	19.3	19.3
순 연금 자산	18.4	18.4	18.4	18.4	18.4	18.4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9.3	19.3	19.3	19.3	19.3	19.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523>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2012년 연금제도

소득비례제도는 포인트 제도와 유사하여 평균 대비 개인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 소득금액을 통해 보호받는다. 모든 연금수급자는 사회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초에 확정급여형(DB) 제도가 도입되었다.

핵심 지표

		슬로바키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9 800	32 400
	미 달러(USD)	12 9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0	7,8
기대여명	출생 시	75,3	79,9
	65세 시점	15,9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9,2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542>

수급조건

2008년 1월부터 연금보험 기간 15년이 있어야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수급 연령은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남녀 공히 62세로 높아질 예정이다. 남자의 경우 2008년에 이미 62세에 도달했다. 여자는 2004-14년에 걸쳐 상향 조정된다. 모든 여자는 실질적으로 2024년에 단일 연금수급연령 62세에 도달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여성의 수급연령이 62세에 도달하는 연도는 2015년부터이다. 예를 들면, 2014년에 53세가 되고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99개월이 늘어나 53세가 연금수급 연령이 된다. 2017년부터 법정 연금수급 연령은 은퇴연령 기준 기대여명 증가에 맞춰 연계하게 된다. 두번째 기준 기간의 변화 대비 첫번째 기준 기간의 평균 기대여명 변화에 365를 곱하여 실제 증가폭이 산정되며 결과값은 일수로 나타난다. 기준 기간은 두번째 기준 기간 (기준 연도 이전의 8년, 2017년이 기준 연도라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비 첫번째 기준기간 (기준 연도 이전의 7년) 동안의 평균 기대여명으로 산정된다.

노령 저축 제도에서는 연금수급 연령 도달 외에도 최소 10년간의 저축 기간이 필요하다. 모형에서는 2056년 정상 연금수급 연령을 67세로 가정하고 있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간 연금 포인트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 평균 소득 대 개인 소득 비로 산정된다. 단, “연대 요소(solidarity element)”라는 것이 있어서 평균 연금 포인트가 1.25를 초과하면 감액하고(감액 계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4%에서 60%로 점차 하락) 평균연금포인트가 1미만이면 증액한다(증액 계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6%에서 22%로 점차 증가).

연금 수급액은 경력기간 중 획득한 연금 포인트의 합에 연금 포인트 값을 곱한 것이다. 2012년에는 9.8182유로였다. 연금 포인트 값은 평균 소득에 연계된다(3분기 성장에 따라). 2011년 국가 평균 소득은 월 786유로였다. 포인트 값을 소득으로 나누면 확정급여형(DB)제도의 지급률이 나오는데 1.25%에 불과하다.

기여 소득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평균 소득의 네 배로 설정되어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한도는 평균소득의 다섯 배로 늘어난다. 소득자료가 뒤처진다. 뒤처진다는 것은 납부 기여금 상한선이 평균 소득의 다섯 배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의미이다. 소득증가와 가격인플레이에 대한 기준 가정에서, 뒤처진다(lagging)는 것은 납부 기여금 한도가 현재 평균 소득의 다섯 배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의미이다.

연금 지급액은 소득 증가율과 가격 인플레이의 산술 평균에 연계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도기간 중 연금 급여액은 고정 금액만큼 증액된다. 재평가에서 소득증가율과 인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바뀌게 된다(2014년 40:60, 2015년 30:70, 2016년 20:80, 2017년 10:90). 2018년부터 재평가는 연금 가구에 대한 소비자 가격 변화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공적, 소득비례제도상의 급여액은 공적제도에 잔류해 있는 근로자 급여액의 약수(aliquot part)이다. 이들 근로자는 연금의 두번째 부분을 생명보험이나 생명보험 +노령연금의 조합을 통해 받게 된다.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동일한 연금 목적의 최저평가기준은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평가기준은 2년 전 평균 임금의 50%까지 증가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337.70유로였으며 자영업자의 최저평가기준은 2013년 1월초부터 393.00유로였다.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약 41% 수준이다.

자발적 확정기여형(DC) 제도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기여율은 소득의 6%이다. 2012년 9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DC) 제도의 기여율은 4%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부터 기여율은 매년 0.25%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6%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5년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 외 근로자들은 혼합형 제도에 가입하거나 2006년 6월까지 공적제도에만 잔류할 수 있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혼합형 제도에 대한 참여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에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의 변동으로 인해 제도는 2년간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가입제도로 바뀌었다. 자동 가입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신규 근로자들에 대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자발적 참여는 35세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종신연금의 형태로 수급하거나 스케줄이 정해진 인출 및 종신연금을 결합한 형태로 수급할 수 있다. 모형에서는 남녀공통 연금율을 사용해 가격 연계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가능하다. 급여액은 30일에 0.5%씩 감액되거나 부분적으로 감액된다 (연 6.5% 수준). 또한, 조기 수급하는 연금액이 성인기준 최저생계비의 1.2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성인기준 최저생계비(subsistence income level)은 2012년 7월1일부터 194.58유로로 평균 소득의 24% 수준이다. 이는

조기수급에 필요한 최저연금이 평균소득의 29%인 233.49유로보다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평균 조기 수급연금은 2012년 12월 374.50유로로 평균소득의 46%이다.

현재 조기수급에 필요한 조건이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금수급연령까지 2년 이하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둘째, 기여년수 최소 15년이 필요하며, 셋째 급여액 수준에 대한 요건이 존재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면서 강제적 연금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 급여액은 30일에 0.5%씩 증액된다(연 6%).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지속하는 이들의 경우, 그 기간 중 취득한 포인트의 절반을 추가하여 실제 은퇴 시점에 연금액이 재 산정된다.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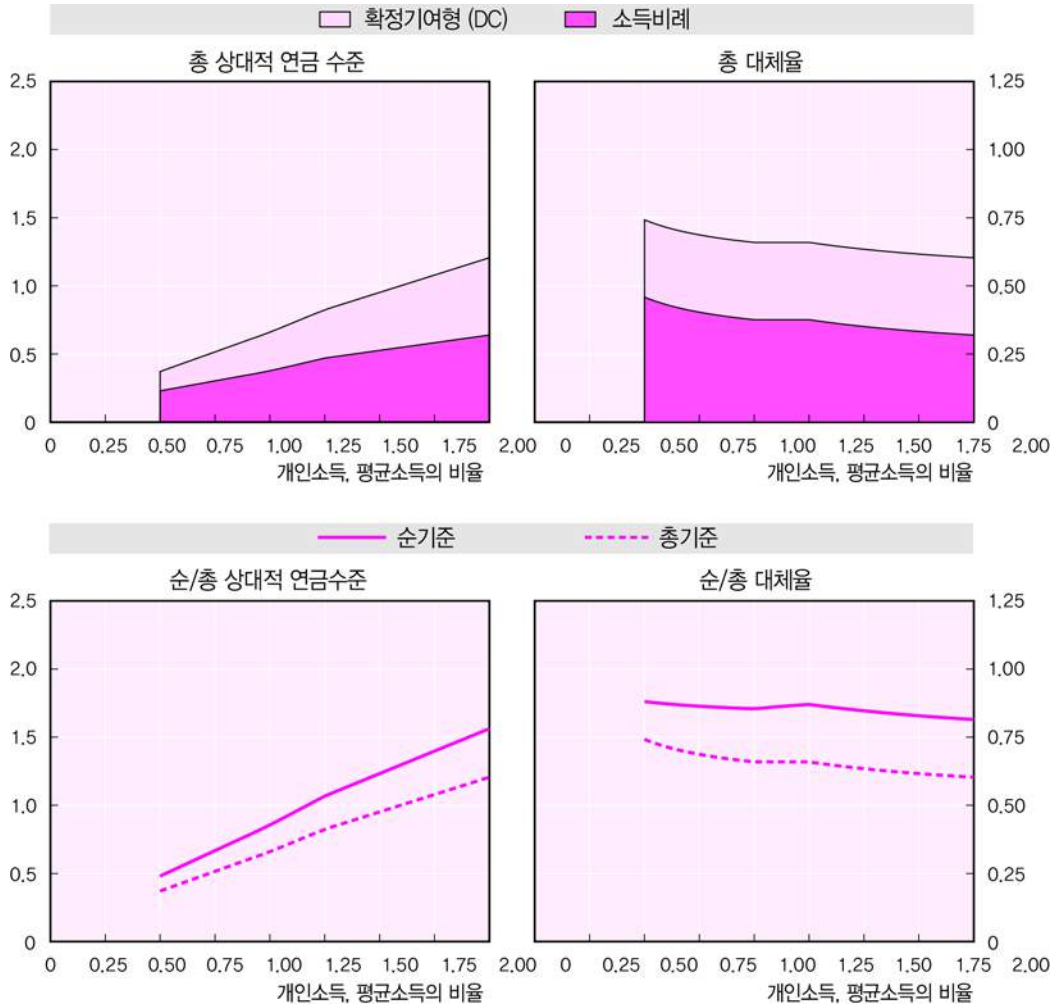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금 크레딧이 주어지며 국가가 관련 기여금을 납부한다. 연금의 평가 기준은 육아 휴직 이전 소득 평균의 60%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평가기준은 일반 한도 규정에 맞춰 조정되어 연간 평균 임금 수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휴직년(2011)으로부터 2년 전(2009)부터 유효했다.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좀더 관대한 조항이 적용된다(18세 이하의 장애아를 돌보는 경우의 연금 크레딧). 양육자와 자녀 모두의 영구적인 주소지가 슬로바키아여야 하며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을 사유로 연금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확정기여형(DC) 제도(노령 연금제도)에도 적용된다.

실업

실업기간은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상태라도 자발적 연금 보험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기여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연금 모형 결과: 슬로바키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5,0	37,1	51,5	65,9	95,1	120,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71,2	48,1	66,7	85,4	123,3	156,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67,9	74,2	68,7	65,9	63,4	60,3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86,1	88,1	86,4	85,4	84,7	81,5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1	9,9	9,2	8,8	8,5	8,1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7	11,7	10,8	10,4	10,0	9,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561>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소득비례 공적제도와 최저연금 그리고 선별적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지표

		슬로베니아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EUR)	17 200	32 400
	미 달러(USD)	22 7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10,9	7,8
기대여명	출생 시	79,5	79,9
	65세 시점	18,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6,6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580>

수급조건

주요 수급조건은 표에 나와 있다. 여자는 최저연령에 은퇴하는데 필요한 기여년수가 연 3개월씩 증가하고 있어 2013년부터 38년이 된다. 동시에 여자의 경우 최저연금연령이 월 4개월씩 증가하여 2014년부터 58세가 된다.

남자	기여년수	15	20	40
	연금수급연령	65세	63세	58세
여자 (2012)	기여년수	15	20	37년9개월
	연금수급연령	63세	61세	57세4개월
여자 (2014)	기여년수	15	20	38
	연금수급연령	63세	61세	58세

완전 연금수급 연령은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남자는 63세, 여자는 2023년부터 61세에 도달하게 된다. 장기적 연금수급 연령은 2013년 개혁에 따라 남녀 공히 65세로 추가 연장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 개혁은 모형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제도는 최초 수급조건(기여년수 15년)이 충족되면 남자는 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의 35%, 여자는 38%를 지급한다(연금 평가기준은 2012년 연금 개시의 경우 명목 (순) 임금 상승률 73.2%에 해당하는 재평가 계수를 이용해 최고 18년의 (순) 임금 평균을 가지고 산정한다). 2000년부터는 지급률이 연 1.5%이다. 2000년 이전에는 지급률이 1992년 연금 및 장애 특별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것은 완전 기여 조건(남자 40년, 여자 38년)의 순 대체율이 2012년 기준 남자는 57.7%, 여자는 61.9%임을 의미한다.

소득지표는 1970년 이후 최고 순차년도로 이루어진 기간에 기반한다. 평가 기간은 2000년 이후 확대되어 2008년부터 18년이 되었다. 연금은 개인 순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

생활비와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과거소득의 재평가 조정은 현재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초반 연도의 소득을 국가차원의 평균 소득 성장률에 맞춰 재평가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연도에 연금을 개시한 수급자들간에 연금액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규 수급자들의 급여는 지난 수년간의 소득 증가율 지수(factor)만큼 감액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의 재평가 소득은 원래 액수의 73.2%로 감액되었다. 2010년에 개시하는 사람의 경우 감액 지수(factor)는 74%였다.

연금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최저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도 있다. 최저 기준은 2012년 연금 조정이 실패하는 바람에 201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2012년의 최저기준은 평균 월 551.16유로였다.

연금대상 소득에 대한 최대값도 있는데 최저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의 네 배로 설정되었다. 2012년 평균 월 2,204.64유로였다.

연금 지급액은 연 2회 평균 총 소득 증가율에 맞춰 증가한다(2월과 11월). 연금 인상분의 지표는 위에 언급한 최저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의 증가분이며 2012년에는 긴축재정 조치의 일환으로 연금 조정을 중단하도록 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인상되지 않았다. 2012년의 연금 조정 실패와 201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특별법에 의한 저소득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 수당의 지급 및 이전 중단은 2011년 대비 평균 연금에 영향을 미쳤다.

평균연금의 인상은 2000년 이후 매 적격연도의 값 변동폭보다 낮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조정 작업으로 인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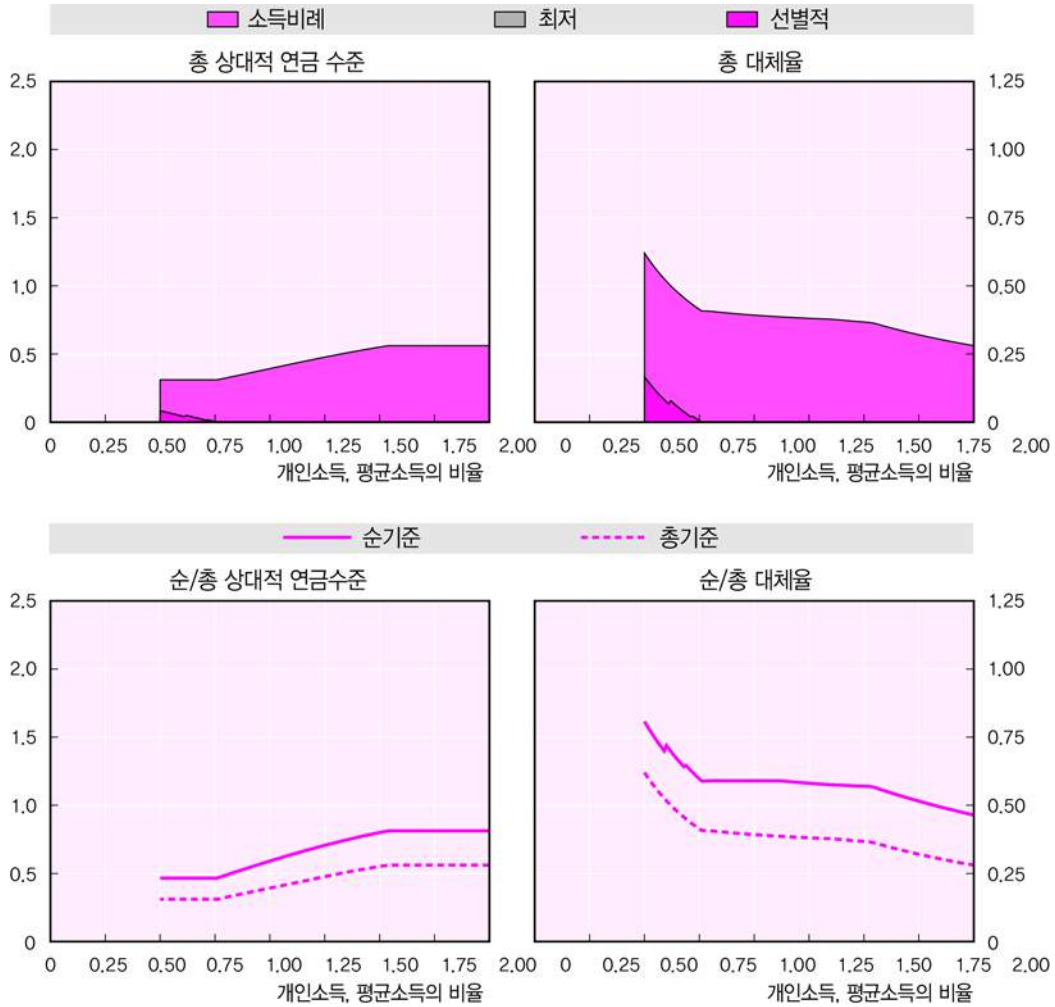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최저연금 평가기준(rating base)의 35%로 정의된다.

선별적 연금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적 사회보장 급여가 존재했다(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부터 이 급여는 사회보호법으로 이전되었다.

연금 모형 결과: 슬로베니아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2,9	31,0	31,0	39,2	55,1	56,1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9,4	46,6	46,6	59,0	80,0	81,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40,6	62,0	41,4	39,2	36,7	28,0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59,0	80,8	59,7	59,0	57,0	46,5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8	13,5	9,0	8,5	8,0	6,1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8,8	13,5	9,0	8,5	7,7	5,9
	11,3	17,3	11,5	10,9	10,2	7,8
	11,3	17,3	11,5	10,9	9,9	7,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599>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12년 연금제도

공적연금은 거주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액제도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다수 존재하지만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높지 않다.

핵심 지표

		남아프리카공화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랜드 (ZAR)	135 600	362 400
	미 달러(USD)	16 0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7.8
기대여명	출생 시	57.0	79.9
	65세 시점	12.9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9.8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618>

수급조건

연금수급연령은 2010년 남녀 공히 60세로 통일되었다.

급여 산정

노령연금 (사회부조)

자산조사적 연금으로 독신자는 소득이 31,296랜드, 부부는 62,592랜드 미만이고 자산은 독신의 경우 518,400랜드, 부부는 1,036,800랜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급여액은 독신자는 월 1,080랜드, 부부는 2,160랜드까지 지급된다. 2012년에 사용된 평균 임금은 135,600랜드였다.

자발적 사적연금

퇴직제도의 평균 기여율은 소득의 약 15%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어 납부한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급연기

노령연금의 수급은 은퇴여부와 관계없다. 그러므로 수급자의 소득이 자산조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금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적격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연기에 따른 잇점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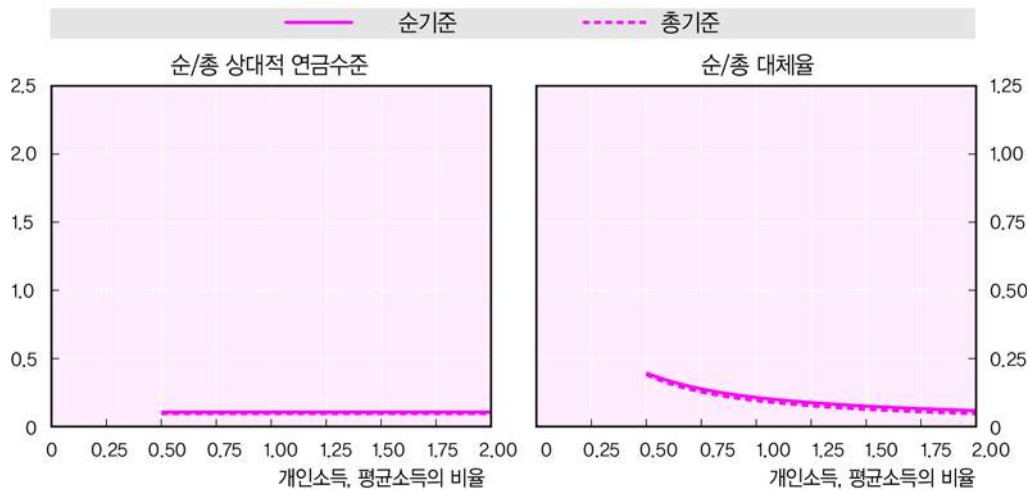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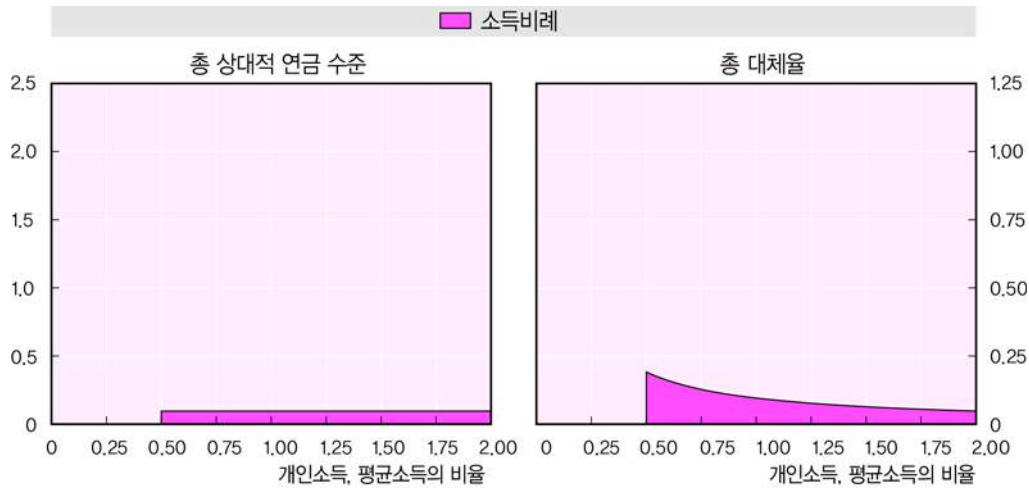
육아

공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육아 목적으로 유급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업

공극적인 공적연금 수급액은 실업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모형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9.6	9.6	9.6	9.6	9.6	9.6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10.7	10.7	10.7	10.7	10.7	10.7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11.8	19.1	12.7	9.6	6.4	4.8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12.9	19.7	13.8	10.7	7.5	5.9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6	2.6	1.7	1.3	0.9	0.7
순 연금 자산 (개인 순 소득의 배수)	1.6	2.6	1.7	1.3	0.9	0.7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637>


스페인

스페인: 2012년 연금제도

스페인의 공적연금에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의 소득비례연금과 자산조사적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기여 자사조사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특별 사회부조 제도를 대체한다.

핵심 지표

		스페인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유로 (EUR)	25 600	32 400
	미 달러(USD)	33 7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9,3	7,8
기대여명	출생 시	82,0	79,9
	65세 시점	20,4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7,9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656>

수급조건

2011년 연금개혁에 따라 전액 연금을 위한 개시연령은 남녀 공히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5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기여년수 38.5년인 경우 감액없이 65세에 수급을 개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모형에서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기여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가정에 따르면 연금수급연령은 65세가 된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이전에는 급여가 다음 스케줄에 따라 지급되었다. 기여년수 15년이 지나면 소득 기준의 50%이다. 다음 10년간은 매년 추가 3%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연 2%가 발생한다. 최대 지급률은 100%이며 기여기간 35년 이후 도달할 수 있다. 개혁 이후 지급률은 기여기간 15년 후에는 여전히 50%이며 37년 이후에는 100%에 도달하게 된다.

개혁 이후, 소득기준은 마지막 25년 (개혁 전에는 15년)의 과거 소득을 최종 2년을 제외하고 가격에 따라 조정한 값이 되었다. 이는 최종 임금 대비 대체율이 100% 미만임을 의미한다.

기여 및 급여 목적의 소득 한도는 39,150유로이며 이는 평균 소득의 153%에 해당한다.

급여는 가격에 연계된다.

최저 및 최대연금

65세부터 지급되는 최저연금은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월 618.9유로, 즉 평균 소득의 34%이며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연금수급자는 월 763.6유로, 평균 소득의 42%이다. 연 14회 지급된다. 또한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최저연금도 있는데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월 715.6유로 이고 고아를 위한 최저연금도 있다.

최저연금은 최근의 물가지수를 초과하여 증가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가격 지수는 22.87% 증가한 반면, 최저연금은 연금 유형에 따라 55.6%에서 40.5% 사이로 증가했다.

최대연금은 2012년 월 2,522.89유로이며 연 14회 지급된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63세(비자발적 실업)와 65세(자발적 실업)부터 가능하며 이전에는 61세(비자발적 실업)와 63세(자발적 실업)부터 가능했다. 단, 기여년수 33년 또는 35년을 채워야 한다(이전에는 두 경우 모두 33년 필요). 급여액에 대한 계리적 감액은 기여기간에 따라 분기당 2%에서 1.5%까지 다양하다.

조기 수급자에 대한 최저연금은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평균소득의 578.9유로 또는 평균 소득의 32%이며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715.6유로 또는 평균 소득의 39%이고 65세 이후에는 더 높아진다.

부분적 수급은 63세(신규 근로자) 또는 65세(대체없음)에 가능하다. 신규 근로자와 부분 수급 근로자 모두 연금제도에 완전하게 기여하게 된다. 개혁 전에는 부분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근로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납부했다.

수급연기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로 수급을 연기할 수도 있다. 기여년수 15년에서 25년 사이이고 67세 이후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연금 급여액은 추가된 기간에 대해 연 산정 기준의 2%씩 증가한다. 기여기간 25년에서 37년까지는 2.75%, 37년인 경우 4% 증가한다.

67세부터는 부분연금과 시간제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근로시간을 대체할 의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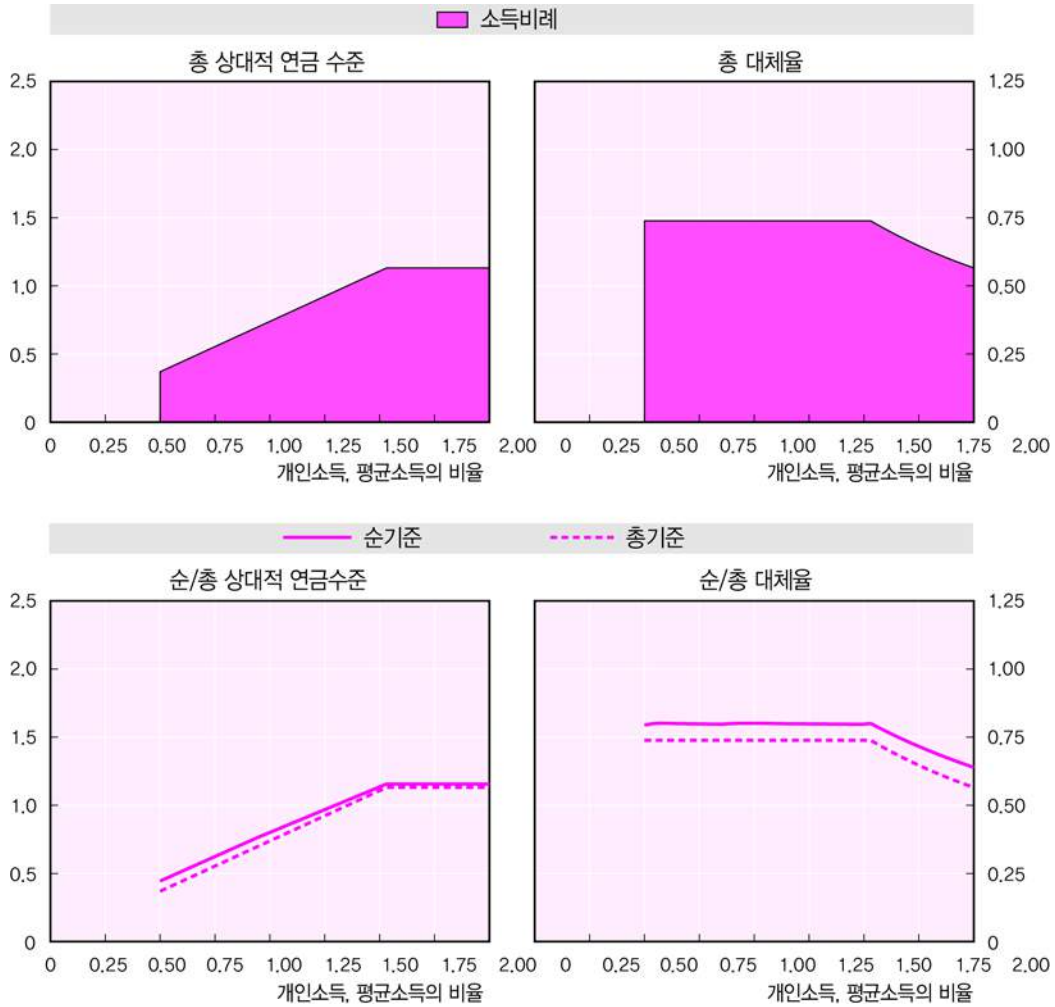
육아

출산휴가와 부성휴가기간이 반영된다. 육아휴직 2년은 연금 급여 산정 시 감안된다.

실업

실업수당 수급기간 중에는 정부가 고용주의 기여분을 전액 납부하고 종업원 기여분은 근로자가 납부한다. 기여에 대한 기준 임금은 실업 전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이다. 급여 기간은 이전 6년간의 기여일 수에 따라 다르며 4개월부터 2년까지이다. 이후 지급되는 실업 부조는 55세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는 연금 크레딧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 노령연금에 대한 기여는 연금수급연령까지 정부가 납부한다. 이 기여금은 월 748.2유로에 달하는 최저소득 기준의 100%에 부과된다.

연금 모형 결과: 스페인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7,6	36,9	55,4	73,9	110,8	113,2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64,6	44,4	62,4	80,1	113,6	115,7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73,9	73,9	73,9	73,9	73,9	56,6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79,8	79,5	79,9	80,1	79,8	63,9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9	12,9	12,9	12,9	12,9	9,8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1	12,0	11,2	10,8	10,2	7,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675>


스웨덴

스웨덴: 2012년 연금제도

소득비례 부분은 명목 계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인 확정기여형(DC) 적립식 연금에 대한 소규모의 강제적 기여도 있다. 또한, 소득조사를 통한 연금보충 제도도 존재한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DB) 요소와 확정기여형(DC) 요소를 갖춘 - 는 가입률이 높다.

핵심 지표

		스웨덴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크로나(SEK)	387 300	278 000
	미 달러(USD)	59 5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8,2	7,8
기대여명	출생 시	81,7	79,9
	65세 시점	19,8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32,5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694>

수급조건

소득연금(pension from the income)과 프리미엄 연금은 61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은 거주기간 3년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 65세부터 보장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보장 연금은 거주기간 40년인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그 기간보다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급여 산정

기여율은 연금대상소득의 18.5%이며 3년 단위로 움직이는 국가 평균 소득에 맞춰 조정된다. 연금대상 소득은 소득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종업원 기여분을 뺀 것 (명목 계정 제도와 프리미엄 연금제도 모두)이며 종업원 기여분은 총 소득의 7%로 총 소득에 대한 유효기여율은 17.21%, 그 중 14.88%는 명목계정제도에 대한 기여이고 2.33%는 확정기여형(DC) 적립식 연금에 대한 기여율이다. 기여금은 연 소득이 2012년, 평균 소득의 0.5%를 약간 밑도는 18,612 크로나를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며 소득이 그 하한선을 초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는 소득 전체에 대해 기여금이 부과된다. 연금대상 소득 측면에서 산정된 급여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2012년 409,500크로나로 총 소득 대비 실질 상한선은 2012년 440,323크로나였다(평균 소득의 114%를 약간 하회). 고용주 기여분은 상한선까지만 납부되지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연금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며 연금수급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소득비례연금

신규 소득비례 제도는 명목계정을 사용한다. 명목계정은, 생존자와 동일한 연령의 사망자 연금 잔액의 분포 (상속이익(inheritance gains))만큼 매년 상승한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최저연령(61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이익(inheritance gains)이 이와 유관하다. 이 연령 이후에는 상속이익(inheritance gains) 요소는 이전 기간에 대해 관찰된 사망률 기준으로 추정된다(5년 단위 남녀공통 사망률 표로 산정).

은퇴 시, 누적된 명목 자본이 연금으로 전환된다. 산정 시에는 개인 은퇴 연령과 당시 기대여명(이전 5년간 남녀공통 사망률 표에 근거)에 따른 계수를 사용한다. 실질 할인율인 연 1.6%도 연금 산정에 포함된다. 65세의 연금 계수에 대한 illustrative values는 2000년 15.4였고 2020년까지 16.8, 2040년까지 17.4로 올라간다. 1946년 출생자의 경우 실제 연금 계수는 현재 은퇴 연령 65세 기준 16.31이고, 61세 기준 18.64, 70세 기준 13.41이다.

은퇴 후 연금은 명목 평균 소득의 증가에 연금 제수(annuity divisor)의 귀속 금리 1.6%를 뺀 값에 맞춰 조정된다.

또한 “균형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자산(완충기금에 기여 세수의 형태를 띤 자산의 추정 가치를 더한 것)이 부채(발생한 명목 연금 자본과 미지급연금의 자본가치)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연금 지급액 연계와 명목 계정에 반영되는 수익률이 자산 대 부채 비만큼 감소한다. t라는 연도에 대한 균형비는 t+2년의 균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 또는 균형값(balance number)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활성화된 균형 메커니즘은 국가제도로부터의 대체율은 낮아지지만 연금제도가 회복되고 균형값이 높아지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함을 의미한다(균형 지수는 회복 기간 중 소득 지수를 초과할 수 있다). 2012년의 균형비와 2014년의 균형값은 0.9837이다.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균형 비	0.9837	1.0198	1.0024	0.9549	0.9826	1.0026

모형에서는 연금 계수를 위의 규정과 UN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사망률 자료를 이용해 산정했다. 또한 균형 메커니즘이 급여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최저연금

“보장연금”은 명목계정으로부터의 급여가 낮은 수준인 수급자들에게 소득 조사적 보충연금을 제공해주기 위한 장치이다. 독신자의 경우 2012년 완전 보장 급여액은 1938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93,720 크로나였으며 이는 총 평균 소득의 24%에 해당한다.

보장연금은 소득비례연금에 대해 55,440크로나(2012년)에 달할 때까지는 100% 감액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8% 감액된다. 이 기준선은 평균 소득의 14%에 해당한다. 소득비례 연금이 135,076 크로나 -평균소득의 35%에 육박-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장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보장 수준은 현 제도상 가격에 연계된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대한 모형의 기준 가정은 안전망 퇴직 급여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생활수준 대비 하락하기보다는 평균 소득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독신 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5,000크로나의 주택 수당이 있어 주택 비용을 93% 충당할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인당 170크로나가 주택수당에 추가되었다. 이 수당은 스웨덴 연금 수급자의 최저 생활수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조사적 급여인 이 수당은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DC) 제도

연금대상 소득의 추가 2.5% (총 소득에 대한 유효 기여율이 2.33%가 됨)가 개인연금계정인 프리미엄 연금에 납부된다. 사람들은 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시에는 급여 인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투자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연금을 종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변동 연금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펀드매니저가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연금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금 산정의 원칙은 계정의 가치를 연금 제수(annuity divisor)로 나누는 것이다(추정 평균 기대여명에 근거). 그리고 연금 급여액에는 추정된 미래 금리 3%에 관리비를 제외한 값이 추가된다. 수익률이 3%를 초과하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계정의 잔액이 높아져 연간 연금의 산정 기준선도 높아진다.

준 강제적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은 통틀어 전체 근로자의 90%에 가깝다. 주요 퇴직연금 제도는 네 개뿐이다. 모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ITP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재협상 과정에 있다. 구 제도는 현재 1978년 이전 출생자를 위한 것이며 약간의 변화를 가한 형태이고 신 제도는 1979년 출생자 및 그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된다.

ITP1

2007년 1월 1일부터 1979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급여 근로자는 25세부터 신 제도인 ITP1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완전한 확정기여형 제도이다. 기여율은 급여분의 4.5%이며 상한선은 소득연동 기본액의 7.5배이다(2012년 409,500크로나). 기본액의 7.5배를 초과하는 넘는 급여분에 대해서는(12로 나눠 1개월분 산출) 기여율이 30%이다. 연금대상 소득은 비용 환급액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총 급여가 된다. 보험료는 급여분에서 우선적으로 납부된다.

근로자들은 저축과 펀드 매니저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여금의 최소 절반은 전통적인 연금 보험에 투자된다. 근로자는 또한 5, 10, 15 또는 20년간 연 1, 2, 3, 또는 4 가격 기준액의 재지급보장과 가족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급보장이나 가족보장이 전통적 연금 보험에 투자된다. 이 기본 선택이 모형에 반영되었다.

연봉이 기본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2012년 546,000 크로나)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신제도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전통적인 ITP2 제도를 갖고 있느냐 대안적 ITP를 선택했느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력의 차이

조기수급

연금수급은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61세부터 가능하다(소득연금과 프리미엄 연금 모두). 정해진 수급연령은 없다. 명목계정과 연금 산정은 수급연령에 따라 자동 계리적 감액을 제공한다.

소득 조사적 보장연금은 65세 이전에는 수급할 수 없다. 명목계정연금을 6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65세 인출과 마찬가지로 보장연금이 산정된다.

신제도인 ITP1 제도에서는 연금이 일반적으로 65세에 지급되지만 55세부터 지급될 수도 있다. 연금은 평생 지급되지만 최소 5년 등 제한적인 기간 동안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될 수 있다. 종신 연금은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형에 반영했다. 연금의 규모는 납부된 보험료 금액과 수익률, 수수료와 세금, 연금 분포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수급연기

명목계정과 프리미엄 연금은 연령 상한선 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이번에도 자동 계리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은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연금 전액의 25, 50, 75%). 보장 연금은 스웨덴 노령연금제도 상의 타 연금과 유사한 외국의 공적연금에 맞춰 조정되지만 임금 소득, 자본 소득, 퇴직연금 또는 사적연금 보험에 따라 감액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장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65세 이후로 ITP1 퇴직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와 특별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65세 이후에 추가적인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육아

4세 이하의 자녀와 동거한 기간은 공적연금제도에 반영이 된다. 부모 두 명이 있는 가구의 경우 특별히 선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크레딧이 간다. 크레딧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첫째, 소득이 전무하거나 이전 소득보다 낮을 경우 크레딧은 자녀 출생 전년도 소득에 근거한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나 육아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크레딧은 국가 평균 소득의 75%에 근거한다. 셋째, 육아 책임이 시작되면서 소득이 실제로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우, 크레딧은 소득연동 기본액의 100% 수준으로 설정된다. 세 경우 모두 정부가 기여금을 전부 납부한다(소득연금과 프리미엄 연금 모두). 그러나 “확정기여형(DC)” 섹션 상에 정의된 연금제도의 소득 상한선까지만이다.

그 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부모 수당도 연금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수혜자는 수당 소득의 7%를 종업원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정부는 부모 수당을 포함해 사회보장으로 인한 소득의 10.21%라는 “고용주 기여분”을 전부 납부한다.

부모 수당은 다음과 같이 480일간 지급가능하다.

- 부모 연 소득의 80% 수준에서 390일. 한도는 물가연동 기본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2012년 연봉 440,000 크로나 상당).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루 180크로나의 정액으로 90일

부모 수당은 일 단위로 산정된다. 저소득이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는 하루 180크로나의 최저 보장 급여를 받는다. 현금 급여 지급일 480일은 부모에게 똑같이 나눠 적용된다(부모 한 명당 240일씩). 부모 간에 최대 180일까지 양도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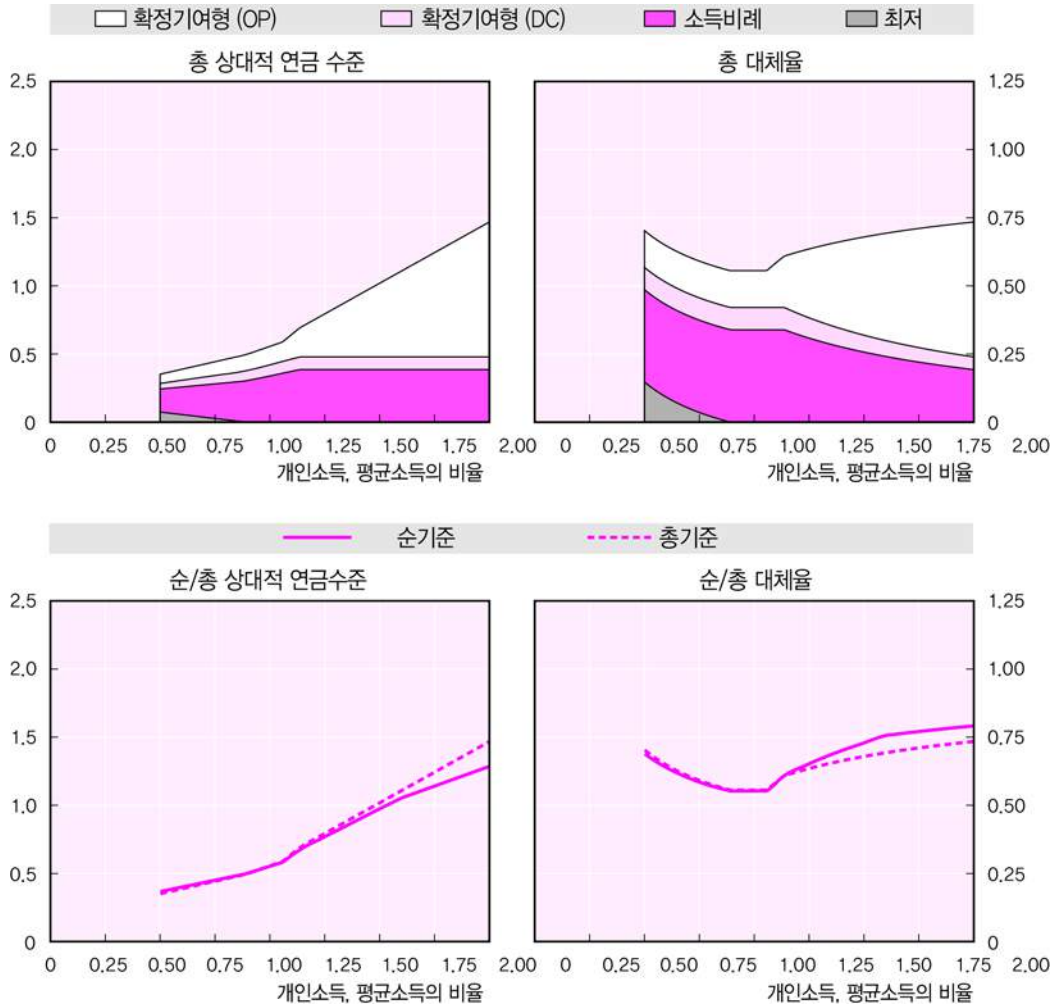
ITP 퇴직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을 통해 부모수당이 지급되는 최대 13개월간 종업원 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고대로 이행하고 있다).

실업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실업자에 지급되는 실업 수당과 교육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정부가 “고용주” 기여분을 납부해준다. 소득 관련 실업 급여는 첫 200일간은 이전 소득의 80% 수준이다. 201일차부터 300일차 까지는 이전 소득의 70% 수준이 된다. 그 이후에는 급여 기간이 종료되나, 단, 수급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급여는 150일간 이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지급된다. 실업 급여는 일 최대 680크로나까지 지급되며 최저지급액은 일 320크로나이다(수급자가 실직 전 12개월간 전일제로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

실업수당 지급을 받으면 수급자는 직업개발 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생긴다. 직업 개발 보장 프로그램 참여자는 활동 지원 또는 계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프로그램 등록 전에 실업 수당을 받아왔다면 이 수당은 실업 전 소득의 65% 수준이 된다(일 680크로나까지). 구직자가 이전에 실업수당을 수급하지 않았다면 223크로나의 일 급여를 수급한다.

연금 모형 결과: 스웨덴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50,0	35,1	44,3	55,6	101,9	146,8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0,2	36,7	45,0	55,3	97,5	128,6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55,6	70,2	59,1	55,6	67,9	73,4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55,3	68,8	58,5	55,3	72,9	79,1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9,9	12,4	10,5	9,9	12,0	12,9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7,5	9,8	8,0	7,4	8,6	8,5
	8,4	10,9	9,0	8,3	9,6	9,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713>


스위스

스위스: 2012년 연금제도

스위스의 연금체계는 크게 세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적 산식을 가지고 있는 소득비례 공적연금, 강제가입의 기업퇴직연금 및 소득조사에 기초하는 보충급여제도.

핵심 지표

		스위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스위스프랑(CHF)	86 900	39 100
	미 달러(USD)	94 9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6,3	7,8
기대여명	출생 시	82,5	79,9
	65세 시점	20,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8,1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732>

수급조건

공적제도와 강제적 퇴직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남자 65세, 여자 64세이다. 연금전액을 수급하려면 남자 44년, 여자 43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

공적연금은 생애 평균소득에 기반한다. 생애 평균소득은 기여금을 납부한 년수와 20세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한다. 이 두 개 기준선 사이에서는 “투 브랜치(two-branch)” 급여 산식으로 평균 소득이 선호된다. 급여 산정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다. 전액 기여의 경우 급여액은 13,920프랑에서 27,840프랑 사이이다. 이는 평균 소득의 16%와 32%에 해당한다. 최대 급여는 생애 평균소득이 국가 평균 소득의 96%에 해당하는 83,520프랑일 때 달성된다. 기혼 부부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최대 급여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급여는 2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연금 지급액은 50%가 가격에, 50%가 명목 소득에 연계된다.

강제적 퇴직연금

강제적 퇴직보험제도는 1985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개인의 연금 계정에 대한 “확정 크레딧”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연 최소 20,880프랑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연령	25-34	35-44	45-54	55-64/65
노령 크레딧 (조율된 임금 중 %)	7	10	15	18

은퇴 시 누적된 크레딧의 가치는 초반 년도의 기여금에 적용된 필수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는 현재 1.5%이다. 노령 크레딧은 매년 조율된 임금의 비율로 산정된다. 금리가 소득 인상률과 대체로 일치한다면 제도상 완전경력이면 65세 시점에 누적 크레딧이 소득의 500%가 된다. 그러나 금리가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하면 더 높은(또는 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모형에서는 크레딧에 적용된 금리가 장기간 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노령 크레딧의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이 나머지를 납부한다.

개인연금 계정은 은퇴 시 연 퇴직 급여로 전환되며 남자 6.90%, 여자 6.85%의 전환율(conversion factor rate)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은퇴자산의 최소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강제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최저연금에 해당한다. 등록된 연금기관(연기금)은 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급여액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 급여액은 “의무초과(over-obligatory)” 급여로 불린다. 강제 제도에 가입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런 종류의 “의무초과(over-obligatory)” 급여를 받는다.

선별적 연금

소득비례급여와 기타 소득원으로는 기초 생계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자산조사적 보충 급여가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 급여액은 인식된 지출액과 산정된 소득(급여, 근로소득, 자산 수익률 등) 간의 차이에 해당한다. 독신자의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보충급여산정시 요인 (PC)	연 금액 (집에서 거주하는 독신자)
필수품 (Coverage of essential needs)	CHF 19 050
최대 총 렌트	CHF 13 200
질병 및 장애 비용 환급 한도 금액	CHF 25 000

보충 급여는 공적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즉, 50%는 가격에, 50%는 임금에 연계된다.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재량적 주(州)별 부가수당이 있다. 이 부분은 모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발적 제도

기여금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자발적 연금 저축을 장려하고 있다. 기여금은 은행계좌에 저축하거나 전용 보험증권에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2년, 투자 가능한 최대금액은 근로자 6,682프랑, 자영업자 33,408프랑이었다. 추가 기여금 납부는 최대 5년까지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 이루어질 수 있다. 자발적 사적연금은 연금수급연령 이전 최대 5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급여액은 소득세 대상이 된다.

경력 차이

조기수급

공적제도의 조기수급은 표준 연금수급연령의 2년 전인 남자 63세, 여자 62세부터 가능하다. 조기수급의 경우 연 6.8%씩 급여액이 감액된다. 이는 OECD 모형 가정에서는, 급여를 인출하는 추가연도에 대해 4.5%의 계리적 조정, 소실되는 수급 년도에 대해 2.3%의 계리적 조정에 해당한다.

1939년에서 1947년 사이에 출생한 여자의 경우 급여는 은퇴연령의 증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2001년 63세, 2005년 64세) 연 3.4%씩 감액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조기수급을 허용하며 58세부터 수급 가능하다. 연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조기수급 조건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는 연 연금 급여액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연금 자산에 적용되는 전환율은 연 0.15에서 0.20 퍼센트씩 감소한다. 0.2포인트 감소는 전통적으로 측정되는 조기수급의 연 2.95%의 계리적 조정에 상당한다 (조기수급 정도에 따라 증가). 조기수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여금과 크레딧 손실분도 반영하면 이론적 급여는 조기수급 기간에 대해 1년에 7.1% (1년)에서 6.35% (5년) 사이이다.

유급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는 것도 일정 한도까지는 가능하다.

수급연기

공적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로 연기 가능하다. 공적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다음 표에 따라 증액된다.

연기	1년	2년	3년	4년	5년
조정(%)	5.2	10.8	17.1	24.0	31.5

소득이 연 16,800 프랑 미만인 경우에는 남자 65세 이후, 여자 64 이후에도 근로하는 이들에게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이 이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수급을 연기하거나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 기여금이 부과되지만 추가적인 연금 수급액을 취득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 급여는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조건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연방사회보험국의 권고에 따라 연기된 기간에 대해 연 0.2퍼센트씩 전환율이 증가한다(연기금이 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수급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경력이 불완전하거나 일찍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정상 연금수급 연령 이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을 연기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공적연금제도상에서는 65세 이후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다.

육아

육아기간 (16세 미만 자녀)은, 소득이 부모가 은퇴하는 연도의 최저연금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적제도 상 크레딧을 취득한다. 2012년에는 국가 평균 소득의 48%에 해당하는 41,760프랑이었다. 양육자가 이 양육 기간 중 결혼하는 경우 크레딧은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와 똑같이 나누어 취득하게 된다.

육아에 대한 크레딧은 퇴직연금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친지 돌봄 (Caring for close relatives)

의지할 곳 없는 친지(노인 혹은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care-taking) 보너스가 발생한다. 이 크레딧은 자녀 양육 크레딧과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이 보너스는 최저 연 노령 연금 급여액의 세 배에 해당한다. 결혼(또는 등록된 파트너십) 기간 중 취득한 보너스는 파트너와 반반씩 나눈다.

친지 돌봄 크레딧은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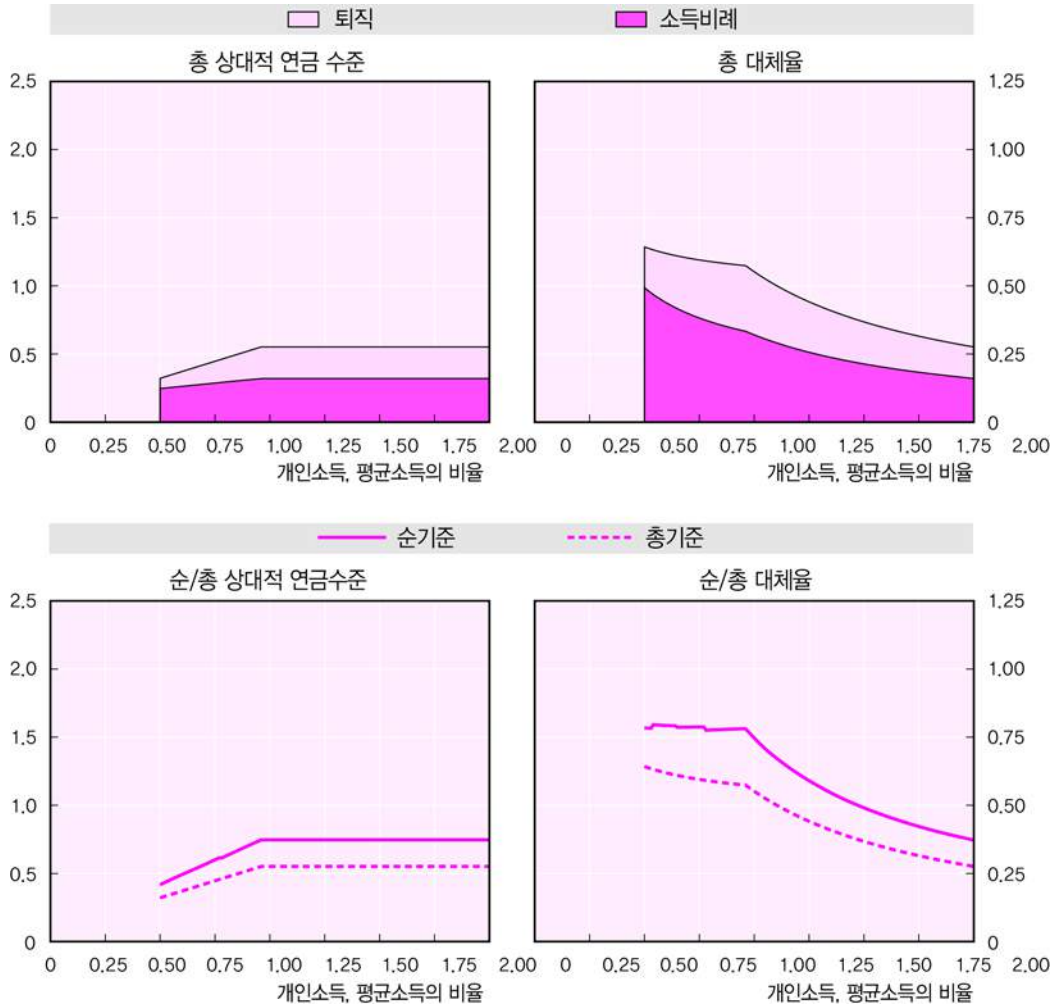
실업

실업수당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대상이므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에 대해 반영된다. 실업 보험에서는 이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육아(child maintenance)의무가 없고 140프랑을 초과하는 일 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보장 임금(insured salary)의 70%를 수급한다. 실업 보험 기간은 90일에서 640일까지 다양하다. 일단 실업보험급여의 수급기간이 완료되고 수급자가 사회부조에 의존하게 되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소득이 매우 낮으면 지방자치정부에서 최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망위험 및 장애위험에 대비해 강제적 기준의 보장을 계속해서 받는다. 노령연금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실업상태의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노령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근로자분과 고용주 분 모두).

질병/사고로 인해 수급한 일별 수당은 마찬가지로 기여의 대상이 된다.

연금 모형 결과: 스위스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49,6	32,1	44,6	55,2	55,2	55,2
(평균 총 소득 %)	48,9	31,9	44,1	54,3	54,3	54,3
순 상대적 연금수준	66,6	41,8	60,1	74,7	74,7	74,7
(순 평균소득 %)	65,5	41,4	59,2	73,5	73,5	73,5
총 대체율	58,4	64,3	59,5	55,2	36,8	27,6
(개인총소득 %)	57,6	63,7	58,7	54,3	36,2	27,2
순 대체율	77,8	78,4	78,8	74,7	49,1	37,3
(개인 순소득 %)	76,6	77,7	77,6	73,5	48,3	36,7
총 연금 자산	11,1	12,4	11,4	10,5	7,0	5,2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2,9	14,6	13,2	12,1	8,1	6,1
순 연금 자산	9,9	10,7	10,2	9,4	6,3	4,7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1,5	12,5	11,8	10,9	7,3	5,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751>


터키

터키: 2012년 연금제도

연금체계는 소득비례 공적연금, 소득조사 안정망 및 정액보충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지표

		터키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터키리라(TRY)	27 500	76 200
	미 달러(USD)	15 4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6,8	7,8
기대여명	출생 시	75,1	79,9
	65세 시점	16,7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12,5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770>

수급조건

1999년 9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에 제도에 가입한 경우 기여기간 7,000일이면 남자 60세, 여자 58세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는, 기여기간 4,500일인 경우 보험가입기간 25년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08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기여기간 7,200일이면 남자는 60-65세부터(연금수급연령이 점차 연장), 여자는 58-65세(연금수급연령이 점차 연장)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는, 기여기간 5,400일인 경우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자산조사적 연금은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이면서 다른 사회보장 권리가 없는 경우 지급가능하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연금

1999년 9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제도 상의 연금은 평균 생애 소득에 근거하며 실질 GDP 성장과 CPI 증감에 따라 $[(1+GDP) \times (1+CPI)]$ 재평가된다.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비선형(non-linear)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첫 10년은 급여의 35% 연금을 취득하며 이후 15년간은 연 2%, 그 이후에는 연 1.5%씩 추가된다.

2008년 10월 이후

신제도상의 연금은 평균 생애 소득에 근거하며 실질 GDP 성장과 CPI 증감에 따라 $[(1+GDP) \times (1+CPI)]$ 재평가된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년당 2%이며 연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여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하한선이 있다. 하한선은 2012년 상반기 886.5리라였고 하반기에는 940.5리라였다.

연금대상 소득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5,762.3리라, 하반기에는 6,113.3리라였다.

1999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연금이 매월 소비자가격지수에 연계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연금 지급액 연계는 1년에 한두 번 예산법/기타법 또는 내각위원회(Board of Cabinet)에 의해 결정된다. 개혁에 따라 연금은 이전 6개월간의 CPI에 연 2회, 즉 1월과 7월에 연계된다. 2012년에는 1월에 6.79% 인상되었다(이 규정은 2012년분에 대해서는 시행되지 않음). 2012년 하반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1.95, 공무원은 4% 연금 인상이 있었다.

최저연금

근로자의 최저연금은 2012년 상반기에 835.5리라, 하반기에는 851.8리라였다.

선별적 연금

자산조사적 연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2012년 상반기에는 연금이 월 117.09리라였으며 하반기에는 월 121.77리라였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특정 산업 (예: 광산업)의 근로자 및 장애인은 조기수급이 가능하나 그 외 근로자들은 연금수급 연령 이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수급연기

연금수급을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은 65세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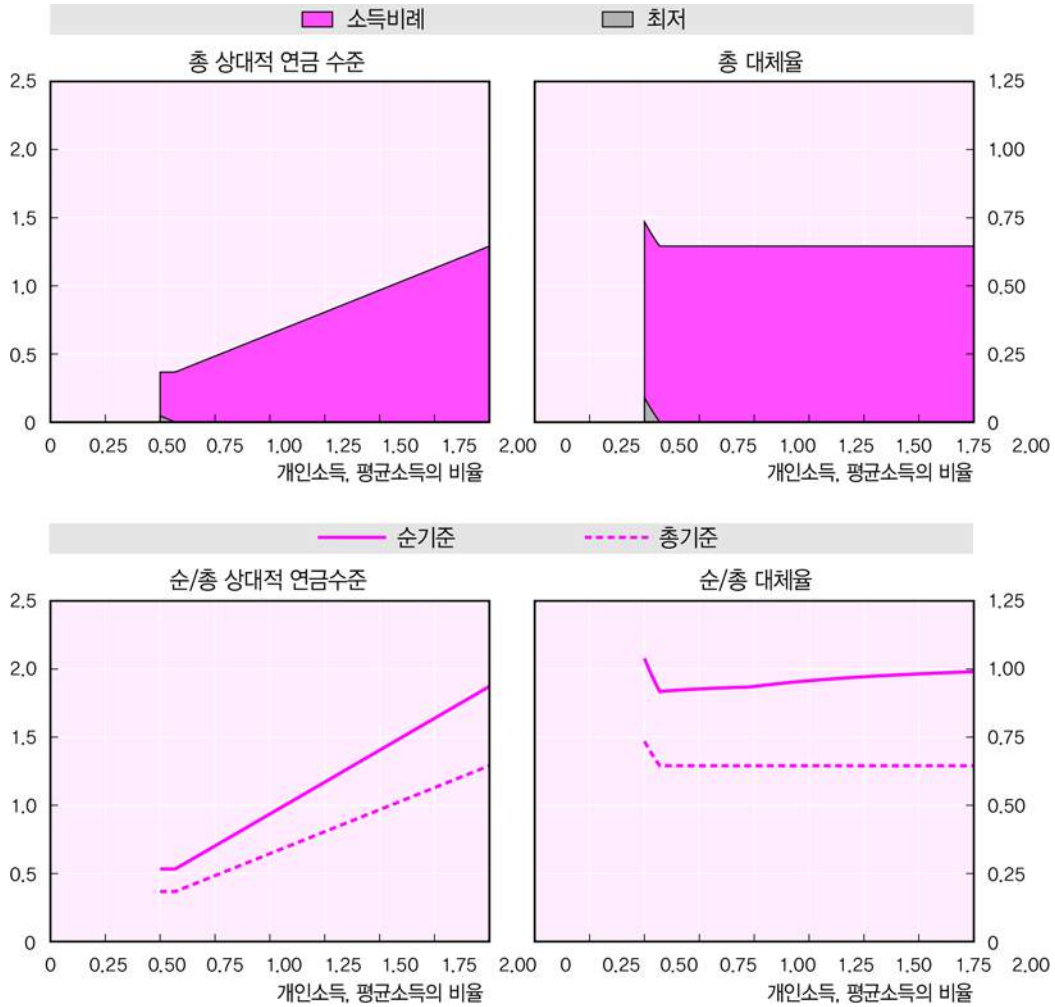
육아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녀 한 명 당 2년, 최대 두 명까지의 육아 기간이 반영된다.

실업

실업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 결과: 터키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6.8	36.8	48.4	64.5	96.8	129.1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53.3	53.3	70.2	93.6	140.4	187.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66.8	73.5	64.5	64.5	64.5	64.5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94.9	103.9	92.7	93.6	97.2	99.0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5	11.6	10.2	10.2	10.2	10.2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10.5	11.6	10.2	10.2	10.2	10.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789>


영국

영국: 2012년 연금제도

공적제도는 두 개의 층(tier) (정액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가 연금)을 갖고 있으며 대규모의 자발적 사적연금 부문으로 보완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공적연금의 두번째 층을 “탈퇴”하고 다른 종류의 사적연금에 가입한다. 소득연계 보충급여는 극빈층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지표

		영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파운드(GBP)	35 900	26 300
	미 달러(USD)	58 3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6,2	7,8
기대여명	출생 시	80,4	79,9
	65세 시점	19,3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8,9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808>

수급조건

공적연금수급 연령은 현재 1950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 출생자의 경우 남자 65세, 여자 60세이다. 2010년 4월 6일부터 여자의 공적연금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수급연령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남녀 공히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연금 크레딧에 대한 적격 연령 역시 공적연금수급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2034년에서 2036년 사이, 2044년에서 2046년 사이 두 차례 추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67세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수급 연령을 향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를 현재 고민 중이다. 이것은 67세와 68세로 연장하는 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수급 연령에 대한 추가 변경은 연금 크레딧 취득 연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연금법에 따라 2010년 4월 6일 이후 공적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잠재적 근로기간 중 30년 동안 국가보험 기여금을 (1) 납부하거나 (2)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3)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취득함으로써 전액 기초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액된 기초 공적연금이 지급되며 하한선은 크레딧 혹은 기여년수 1년이다.

2010년 4월 6일 이전에 공적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가보험기여년수와 잠재적 근로기간의 약 10분의 9에 해당하는 크레딧(공적연금수급연령 60세인 여자는 39년, 공적연금수급연령 65세인 남자와 여자는 44년)을 충족하면 기초공적연금 전액이 지급된다.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비례적으로 감액된 공적연금이 지급되며 최저수준은 25%이다(즉, 공적연금수급연령 60인 여자는 10년, 공적연금수급연령 65세인 남녀 11년).

급여 산정

기초연금

독신자에 대한 기초공적연금은 2012년 주당 107.45파운드였으며 평균 소득의 약 16%로 추정된다.

소득비례연금

소득이 저소득 한도(2012/13년 연 5,564파운드)와 저소득 기준선(14,700파운드) 사이인 경우 대체율은 차액의 40%이다. 이는 또한 크레딧의 적용을 받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저소득 기준선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도 해당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이다. 다음 범위는 40,040 파운드가 한도이며 대체율은 10%이다.

급여 가치는 평균 생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거소득은 평균 국가 소득에 맞춰 조정된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가격에 연계된다.

탈퇴(Contracting out)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는 공적연금의 부가적인 연금 요소를 “탈퇴” 할 수 있다. 탈퇴한 제도에서는 국가보험의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로 최저수준의 연금을 제공해야 했다. 2012년 4월부터 연금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확정기여 제도의 탈퇴규정을 폐지했다. 단일 층(tier)의 연금채택은 확정급여형(DB) 제도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 사적연금제도

2012년 10월, 정부는 직장연금제도의 자동 가입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일단 완료되면(2018년 2월), 모든 고용주가 22세부터 법정 연금수급 연령 사이의 8,105 파운드(2012/13 기준) 소득의 모든 해당 근로자들을 직장 연금 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는 법정 의무를 갖게 된다. 최저 기여는 2018년 10월까지 법정 소득 범위(2012/13년 기준 5,564파운드에서 42,475파운드)의 8%까지 구축된다.

자동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탁기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를 설립했다. NEST는 고용주가 자동 가입시킨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시장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중, 저소득 근로자와 전환기의 근로자, 영세 사업주에게 저비용의 질 좋은 연금을 제공할 공공서비스상의 의무를 가진다.

선별적 연금

연금 크레딧은 소득비례 급여이며 국가보험 기여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 연금 크레딧에는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보장 크레딧과 저축 크레딧이 그것이다. 보장 크레딧은 적격 연령(하기 참조)에 도달했고 소득이 표준 최저 보장 금액 미만인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2011/12년에는 개인은 137.35파운드, 부부는 209.70파운드였다(이 금액은 종종 장애인, 돌봄 책임이나 특정 주택 비용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

저축 크레딧은 비교적 소액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급하는 추가 금액이다. 이것은 유효 급여 지급률을 이전의 100%에서 40%로 인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소득(보장 크레딧 제외)이 보장 크레딧 최저 보장수준 미만이고, 2011/12년 개인 103.13파운드이고 부부 164.55파운드인 저축 크레딧 기준선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소득과 기준선 간 차액의 60%를 수급하며 상한선은 개인 20.52파운드, 부부 27.09파운드이다. 소득이 보장 크레딧 최저 보장액을 초과하는 경우(즉, 보장 크레딧 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 최대 저축 크레딧은 보장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분의 40%만큼 감소한다.

연금 크레딧의 적격 연령은 여성의 공적연금수급 연령 상승과 함께 65세로 점차 연장되고 있다.

자발적 사적연금

정부는 자격을 갖춘 직장 연금제도에 대한 자동 가입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확정기여형(DC) 제도는 전반적인 기여율 최저 8%를 필요로 한다.

경력차이

조기수급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수급 연령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연기

추가 공적연금 증액을 위한 수급연기는 항상 가능했다. 이러한 추가 공적연금은 해당 수급자가 최초로 또는 재차 연금을 수급할 때 정상 공적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2005년 4월 6일까지 공적연금을 수급 연기하면 약 연 7.5%씩 (7주에 1%씩) 추가 연금이 발생한다. 2005년 4월 6일부터 증액률은 연 10.4% 정도로 증가했다(또는 5주에 1%씩).

확보하게 되는 추가 금액은 공적연금을 얼마동안 연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더 높은 주당 국가 종신 연금(공적연금을 최소 5주간 연기하는 경우)
- 일회성의 과세 일시불 지급(공적연금이 최소 1년간 계속해서 연기된 경우). 일시금은 연기 기간 중 받지 못한 공적연금액과 (영국은행 기준율) 초과 최소 2퍼센트 포인트를 보장하는 금리를 더한 값이다. 이 옵션은 공적연금을 수급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육아

공적연금제도의 두 개 층(tier) 모두(기초 공적연금과 2차 공적연금 (second pension)) 육아 기간을 보호하고 있다. 유급근로를 중단한 사람들과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 하한선 미만의 소득이어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을 둘 다 대상으로 한다. 2010년 4월 6일 이전에는 기초 공적연금의 경우 HRP(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에서 보호를 제공했으며 16세 미만의 자녀 최소 한 명에 대해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연수에 대해 제공된다. HRP는 기초 공적연금 전액에 필요한 연수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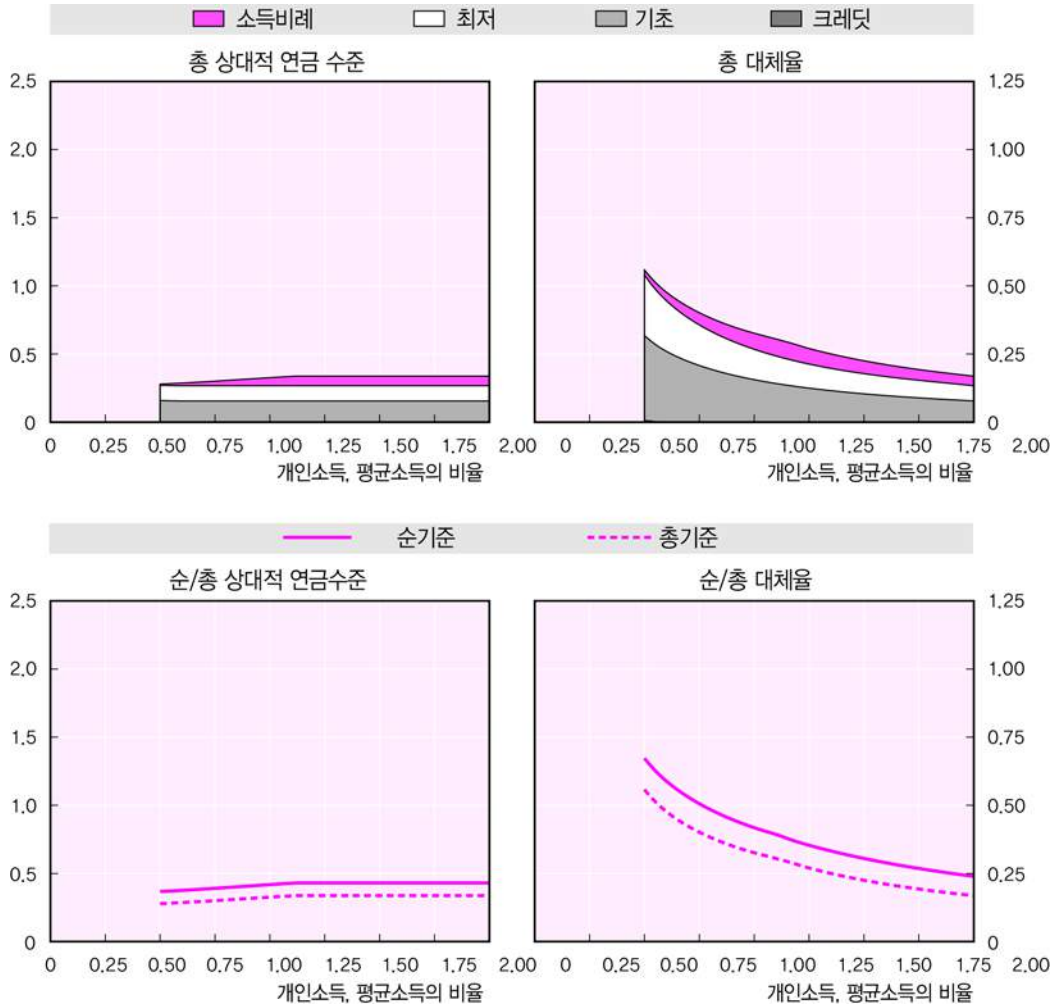
시켜 HRP가 충분한 경우, 근로기간 20년만 필요하다(국가보험기여금 크레딧 기간 포함). 2층 부가연금(second pension)의 경우,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이 크레딧으로 적립된다. 양육 부모는 저소득 기준선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HRP는 부모와 돌봄자(carers)에 대해 주당 국가 보험 크레딧 제도로 대체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공적연금수급 연령을 달성한 이들은 12세 미만 자녀에 대해 양육 수당을 받는 경우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기초 공적연금과 2층 부가연금(second pension) 수급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2010년 이전 취득한 HRP 년수는 공적 보험 크레딧의 수급 기간으로 전환되었다.

실업

보험금이나 부조 급여를 수급하는 실업 기간은 기초 공적연금을 위한 공적 보험 기여 기록에 크레딧이 반영된다. 2층 부가연금(second pension)의 경우 이들 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공적 보험 크레딧은 없다.

연금 모형 결과: 영국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0.7	27.9	30.1	32.6	33.8	33.8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39.8	36.8	39.1	41.8	43.0	43.0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37.9	55.8	40.1	32.6	22.5	16.9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48.0	67.2	50.6	41.8	30.5	23.9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5.9	8.7	6.3	5.1	3.5	2.6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5.7	8.6	6.1	4.9	3.4	2.5
	6.3	9.4	6.7	5.4	3.7	2.8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827>


미국

미국: 2012년 연금제도

사회보장으로 알려져 있는 공적연금은 누진적 급여 산식을 갖고 있다. 또한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는 자산조사적 보충 급여가 제공된다.

핵심 지표

		미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AW)	미 달러(USD)	47 600	42 700
	미 달러(USD)	47 600	42 700
공적연금 지출	GDP의 %	6,8	7,8
기대여명	출생 시	78,8	79,9
	65세 시점	19,2	19,1
65세 이상 인구	생산연령 인구 중 비율	22,8	25,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846>

수급조건

연금수급연령(정상 은퇴연령 - NRA로 칭함)은 2012년 66세였으며 2022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퇴직 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은 기여년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0년의 기여년수가 필요하다.

급여 산정

소득비례

급여 산식은 누진적이다. 해당 소득 중 월 급여 첫 767달러는 대체율 90%가 적용된다. 월 767달러에서 4,624달러까지의 소득 범위는 대체율이 32%이다. 이 기준선은 2010년 국가 평균 임금 지수의 각각 22%와 133%에 해당한다. 15% 대체율은 4,624달러 기준선에서 소득 상한선까지 적용된다. 50%의 피부양자 가급연금은 기혼 부부에게 제공되는데 두번째 소득자의 수급액이 더 적고 자격요건을 갖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초반 년도의 소득은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국가 평균 소득 증가에 맞춰 재평가된다. 60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 조정이 없다. 기초 급여는 62세에 지급을 위해 산정된다. 그 이후에는 기초 급여가 가격 인상에 따라 조정된다. 재평가 후에는 급여는 재평가 후, 필요한 경우 소득이 전무한 기간부터 총 35년까지를 포함하여 소득 최고 35년에 대한 생애 평균소득에 근거한다.

기여금과 급여에 대한 소득 상한선은 연 110,100달러이며 2010년 추정 국가 평균임금수준의 264%에 해당된다. 이 지수는 국가차원의 임금 증가율에 맞춰 매년 업데이트된다.

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에 맞춰 조정된다.

선별적 연금

미국은 노인에게 대해 보충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하는 자산조사적 급여를 제공한다.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개인은 자산 및 기타 소득에 따라 연 8,376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급여액은 12,576달러 (독신자보다 50% 높음)이다. 이들 급여액은 2012년 평균 소득의 18%와 26%에 각각 해당된다. 최대 급여액은 물가상승에 연동된다.

자산 조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배우자(eligible spouse)가 없는 개인은 자산 2천 달러까지, 부부는 3천 달러까지 제한되며 개인 소유물, 주택, 자동차, 장래보험과 생명보험 (마지막 두 개는 가액 최대 1,500달러까지)은 제외된다. 급여 산정에 있어 대부분의 소득 유형에 대해 소규모(월 20달러)의 “소득공제(disregard)”가 적용된다. 월 65달러의 소득과 나머지 소득의 절반에 대해 또 다른 공제(disregard)가 제공된다. 모든 해당 공제가 적용된 후 급여액은 이 수준을 초과하는 총 소득(countable income)에 대해 1:1로 감액된다.

연방에서 결정한 최저연금을 각 주와 DC(District of Columbia)에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복잡해진다. 여섯 개 주에서는 연방 최저연금만 지급하는 반면 30개 주는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8개 주에서는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는 보충연금을 제공하며 7개 주에서는 주와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둘 다 운영하는 보충연금을 제공한다. 이들 15개 주에서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평균 보충 지급액은 배우자가 없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연방 급여의 19%, 부부 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이다. 모형에서는 이들 부가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 사적연금

부가적으로 자발적 연금이 존재하며 확정기여형(DC)인 것으로 가정했다. 기여율은 9%로 가정했다.

경력직 차이

조기수급

조기수급은 62세부터 가능하며 계리적 감액 대상이 된다. 정상 연령 이전의 조기수급 기간 중 급여액은 6.67%씩 감액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감액률이 5%로 떨어진다. 이는 65세 이상인 정상은퇴연령(NRA)의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수급연기

연금의 초기 수급은 정상은퇴연령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최대 70세까지의 연기에 대해 크레딧이 발생한다. 2012년 및 그 이후 62세에 도달한 경우 계리적 증액은 연기한 기간에 대해 연 8%이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할 수도 있으며 소득조사의 대상이 된다. 정상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연도 이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은 14,64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분의 50%만큼 감액된다. 정상은퇴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근거한 급여액 감액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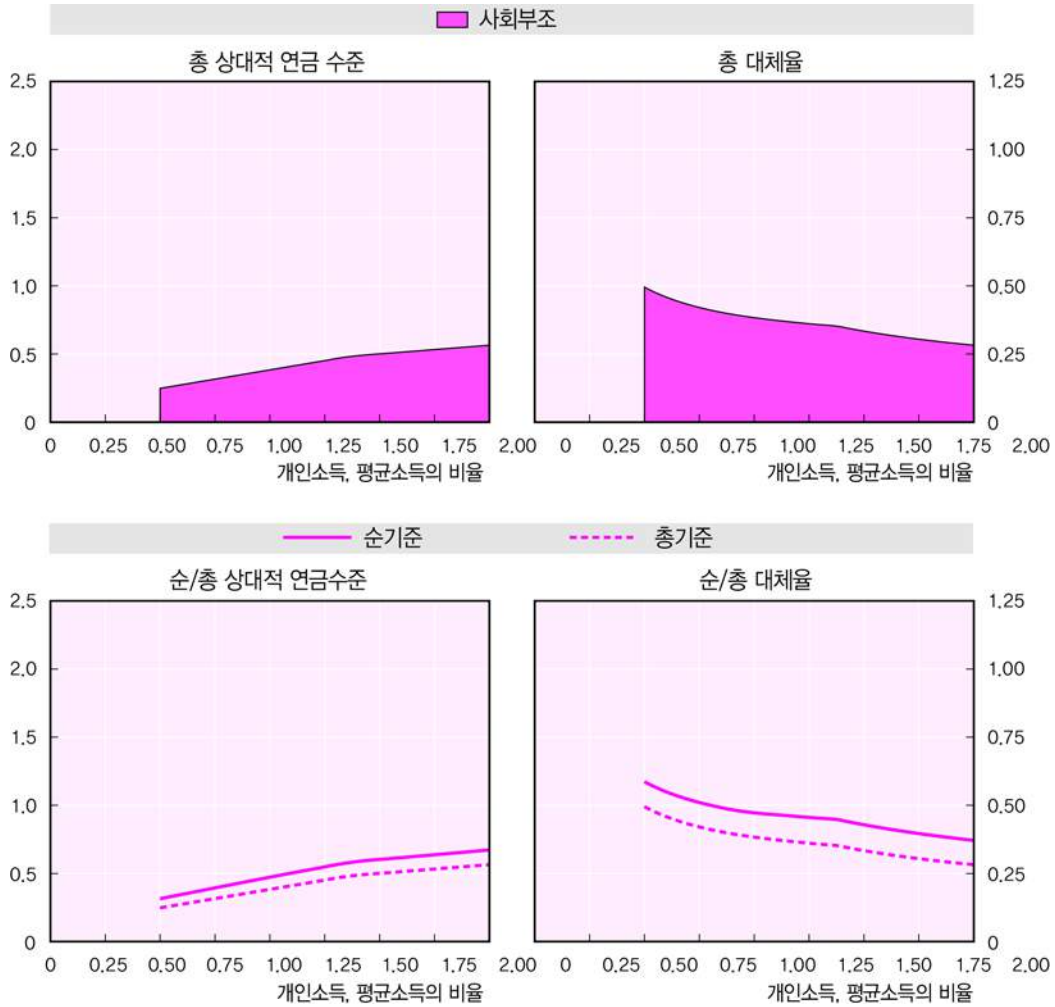
육아

육아크레딧에 대한 조항은 없다(젊은 나이에 장애인이 된 근로자의 경우는 급여 산정 시 육아 기간을 감안할 수 있다).

실업

실업크레딧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급여 산정 시 소득 최고 35년을 고려하므로 실업 기간이 급여 목적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 기간은 고려대상이 되는 소득기간 35년에서 제외된다.

연금 모형 결과: 미국



남자 여자(남자와 다를 경우)	중위 소득자	개인소득,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적 연금 수준 (평균 총 소득 %)	33,2	24,8	31,6	38,3	50,1	56,4
순 상대적 연금수준 (순 평균소득 %)	41,3	31,5	39,4	47,3	60,2	67,2
총 대체율 (개인총소득 %)	41,0	49,5	42,1	38,3	33,4	28,2
순 대체율 (개인 순소득 %)	49,9	58,7	51,0	47,3	42,9	37,1
총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3	7,6	6,5	5,9	5,1	4,4
순 연금 자산 (개인 총 소득의 배수)	6,1	7,5	6,3	5,6	4,8	4,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9865>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발행처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발행인 주정미

발행일 2014년 5월

인쇄처 월드프린테크

<http://www.oecdkorea.org>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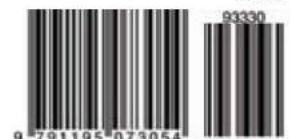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목차

- 제 1장 최근의 연금개혁과 개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 제 2장 노후의 적정 생활수준을 위한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의 역할
- 제 3장 연금제도의 설계
- 제 4장 연금 수급액
- 제 5장 노후소득과 빈곤
- 제 6장 연금제도의 재정
- 제 7장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측면
- 제 8장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적립금
- 제 9장 한 눈에 보는 연금 2013: 국가별 현황

비매품



ISBN 979-11-950730-5-4